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백서
- 피해보상편 I -

국토해양부

발 간 사

- 사고 수습과정 평가와 반성, 훗날 큰 도움 -



지난 2009년도 상반기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방제부문 백서”를 발간한데 이어 “보상부문 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7일 서해안 태안 앞바다에서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 유출로 오염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정부 노력의 결과, 이제 대부분의 피해지역이 회복되고 정상적인 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을 잠시 외면했던 관광객들도 다시 찾고 있으며, 오염해안을 떠났던 갯벌새들도 돌아와 둥지를 트는 등 지역경제와 생태계가 차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정부 지원과 국제기금 등의 손해 배·보상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고 해양환경을 복원하기 위하여 ‘특별법령’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류오염사고 지원 특별대책위원회 및 피해보상지원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피해주민 지원체계를 갖추어 대부·대지급 등 피해주민의 손해보전 지원,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국제기금 등 손해 배·보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피해지역 광역자치단체와 태안군을 비롯한 11개 시·군에서도 사고수습 지원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중앙정부와 피해주민 간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부 지원사항의 집행, 주민 방제 인건비 선 지급, 피해대책위원회 활동 및 손해 배·보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주민들에 대한 국제기금 등의 손해 배·보상과 정부 지원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야 피해주민들의 손해 배·보상 청구가 거의 이루어졌으며, 향후 최소 3년이 지나야 손해 배·보상 청구권에 대한 사정 및 보상과 정부지원이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피해주민에 대한 국제기금 측의 신속하고 정당한 손해 배·보상과 합리적인 정부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피해보상 부문 백서는 사고발생 이후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단체 등의 사고수습 및 손해 배·보상 지원 노력과 피해지역 주민들의 손해 배·보상 청구 등에 관한 사항, 국제기금 및 선주보험사의 손해 배·보상 추진상황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백서는 피해주민에 대한 정부지원 및 국제기금 등의 손해 배·보상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일련의 사고수습 과정을 매뉴얼 방식으로 사실대로 기록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 향후 유사사고 발생 시 원활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백서에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손해 배·보상 및 정부 지원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증보판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지면을 통해 지금까지 사고수습 및 생업 복귀를 위하여 노력하신 피해지역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 보상 및 제반 사고수습에 적극 협력해주신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단체, 국제기금 및 선주보험사, 피해조사기관 관계자 등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백서 발간에 직접 참여하신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연구진과 편찬위원으로 참여한 국토해양부, 충청남도 및 태안군, 해양환경관리공단 관계자 모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 6.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현

일러두기

본 백서를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 경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부처의 명칭 변경사항, 주요 용어해설 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본 백서는 2009년도 상반기에 발간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방제 부문 백서에 이어 발간하는 피해보상부문 백서로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피해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항과 국제기금 등의 손해 배·보상 추진상황 등을 중심으로 기술되었습니다.
- 따라서 방제부문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으므로 2009년도 상반기에 발간한 방제부문백서를 참고하셔야 되며, 2010년 1월 1일부터 보상업무의 마무리 단계까지의 보상부문에 대한 내용은 향후 발간할 예정인 보상부문백서 증보판을 보셔야 됩니다.
- 본 보고서에서 표기하고 있는 기관명 및 조직은 정부조직법 개정·시행(법률 제8867호, 2008.2.29공포)과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시행(법률 제8260호, 2007.1.19 공포, 2008.1.20시행)에 따라 법률 시행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기술되었습니다.

사고당시(변경 전)	현재(변경 후)	변경사유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개편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정부조직 개편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항만청	정부조직 개편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해양환경관리공단	법률개정, 공단전환

- 따라서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양수산부 소관업무가 국토해양부(해양·해운·항만 분야)와 농림수산식품부(수산분야)로 각각 이관됨에 따라 사고당시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지원 업무도 각각 이관되어 추진되었습니다.
- 국제기금 지급한도액 203백만SDR(3,216억원)은 제40회 국제기금 집행위원회의 2008년 3월 13일자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했습니다.
- 1 SDR(Special Drawing Right, IMF 공시) = 1,584.330원

□ 본 백서에 나오는 주요 용어에 대한 해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92CLC(1992 Civil Liability Convention) : 92년 국제민사책임협약
 - 1992년 제정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 92FC(1992 Fund Convention) : 92년 국제기금협약
 - 1992년 제정된 유류오염손해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국제통화기금
 - 세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하여 가맹국의 고용증대, 소득증가, 생산자원 개발을 위하여 1945년 미국 워싱턴에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 2007년 가맹국은 총 185개국임
-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국제해사기구
 - 1959년 1월 6일 설립된 세계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UN 산하 정부간 국제기구(영국 런던소재). 정회원국이 162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62년 4월 10일 가입
 - 총회, 이사회, 해사안전위원회(MSC) 등 5개 분과위원회, 11개 소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2007년 현재 35개 국제협약과 921개 결의서 채택
- IOPC FUND(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민사책임협약에 의한 배상금을 초과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화주측 석유업계가 분담하여 만든 기금으로, 민사책임협약 체약국만이 동 기금의 체약국이 될 수 있으며 1971년 채택하여 1978년 10월 16일 발효
- ITOPF(International Tanker Owners Pollution Federation Limited) : 국제유조선주연맹
 - 해양에서 유류, 화학물질 기타 위험물질의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조선 선주들의 연합체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며, 오염에 대한 기술적 권고 및 관련 정보를 제공
- OPA(Oil Pollution Act 1990) : 미국유류오염법
 - 1989.3.발생한 Exxon Valdez호 기름오염사고에 따른 효율적 기름제거 및 형사상 그리고 민사상 책임을 대폭 강화한 유류오염법

- P&I CLUB(Protection and Indemnity Club) :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 선주들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상호보험 형태로 담보하기 위해 1869년 최초로 영국 런던에 설립된 보험조합으로 통상 UK P&I Club이라 함
 - 16개 클럽 중 최대 가입톤수를 확보하고 있어 규모와 위상 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으며, 한국 P&I Club은 2000년 1월 설립
- SDR(Special Drawing Rights) : 특별 인출권
 -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 인출권을 의미, 일종의 국제준비통화로서 금이나 달러의 뒤를 잇는 제3의 통화(1SDR=1,584원('08.3.13현재))
- SLQ(Standing Last in the Queue) : 최후순위청구
 - 국제기금 보상청구액에 대한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지출한 방제비 등을 피해보상의 후순위로 할 것을 국제기금 등에 청구하는 제도로, SLQ 금액은 국제기금의 지급률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총 피해 사정액이 국제기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받지 못함
- SFP 2003(The Supplementary Fund Protocol) : 추가기금의정서
 - EU의 유류피해 보상한도액 증액 요구에 따라 IMO에 의해 채택('03.5)되어 발효('05.3)된 추가기금협약으로 최대 1조 2천억 원까지 보상됨 (1SDR=1,584원 기준)
- KOMOS : 국제기금등에 청구된 손해배상 청구(관광분야 제외)에 대해 그 피해액을 조사하는 기관(조사분야 : 방제 및 양식 수산업)
- 협성검정 : 국제기금등에 청구된 손해배상 청구(관광분야 제외)에 대해 그 피해액을 조사하는 기관(조사분야 : 어선어업, 맨손어업)
- L&R : 관광분야 청구액을 사정하기 위해 국제기금측에 의해 지정된 영국의 관광클레임컨설팅 전문회사(스파크인터내셔널, 인테코 등을 국내 파트너로 지정·운영, 태안 현지 상주)
- 법무법인 김&장 : 선주보험사측 법률대리인
- 법무법인 세경 : 국제기금측 법률대리인

목 차

제 1 장	피해현황과 초기대응	1
제 1 절	사고개요와 피해현황	1
1.	사고의 개요 및 원인분석	1
2.	지역별·분야별 피해현황 분석	6
제 2 절	사고 초기단계의 대응	16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급대응	16
2.	국제기금 및 선주보험사 등의 대응	32
3.	피해지역 주민의 동향 및 대응	34
제 3 절	피해지역 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49
1.	긴급생계안정자금의 지원	49
2.	국민성금 모금 및 지원	64
3.	공공근로사업 등 주민소득보전 지원	66
제 2 장	피해보상 지원기반 구축	73
제 1 절	지원제도의 마련	73
1.	특별법령의 제정	73
2.	특별법령의 개정	83
3.	훈령·고시 등의 제·개정	85
4.	교훈 및 과제	100
제 2 절	피해보상 지원조직의 운용	101
1.	피해보상 지원조직 개괄	101

2. 국토해양부의 지원조직	102
3.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조직	109
4.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조직	112
제 3 절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 심의기구 구성·운영	116
1.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116
2.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	120
 제 3 장 정부의 본격적인 피해보상지원	 129
제 1 절 정부채권 후순위청구 선언	129
1. 정부채권 후순위(SLQ) 개요	129
2. 정부채권 후순위(SLQ) 선언경과	130
3. 정부 및 지자체 지출비용 현황	135
4. 정부채권 후순위 선언의 효과	137
제 2 절 민간방제비 및 피해주민의 손해보전 지원	138
1. 민간방제비 지원	138
2. 손해보전의 지원	148
3. 정부지원의 성과와 평가	189
제 3 절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이미지 개선	193
1. 태안지역 해수욕장 적기 개장 지원	193
2.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198
3.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 추진	212
제 4 절 피해보상 행정지원체계 구축·운영	227
1. HS보상지원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227
2. 대주민 피해보상 행정지원	232

제 5 절	관련 부처·단체의 협력 및 지원	248
1.	농림수산식품부	248
2.	유관 중앙행정기관	257
3.	피해지역 지자체	271
4.	공공 및 민간단체	283
제 4 장	피해보상 국제협력 대응	301
제 1 절	IOPC Fund 회의대응	301
1.	IOPC Fund 회의의 조직 및 기능	301
2.	IOPC Fund 회의 대응 및 결과	305
3.	정부 대응의 주안점과 성과	332
제 2 절	선주보험사와의 협력체계 구축	337
1.	2차 협력계약 체결 및 에스크로우 계좌 개설	337
2.	이중지급방지협약	351
제 3 절	정부와 HS센터 정례회의	355
1.	회의 운영개요	355
2.	주요의제 및 논의결과	356
3.	정부의 노력과 성과	362
제 5 장	손해 배·보상 현황	367
제 1 절	유류오염 손해 배·보상제도 개관	367
1.	국제협약 개요	367
2.	민사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	371

3.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380
4.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	382
5. 국제기금보상청구매뉴얼(IOPC Fund Claims Manual)	384
제 2 절 손해 배·보상 절차 및 현황	391
1. 손해 배·보상의 한도와 범위	391
2. 손해 배·보상 절차	393
3. 손해 배·보상 진행상황	400
4. 손해 배·보상관련 정부의 지원 노력	404
제 3 절 선주책임제한절차의 개시 및 제한채권 신고	406
1. 선주 책임제한 절차의 개념과 제한채권 신고의 의의	406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책임제한 절차 개시 및 진행	410
3. 삼성중공업의 상법상 책임제한 절차 개시 및 진행	414
제 4 절 손해 배·보상 관련 소송	416
1. 손해배상 청구소송	416
2. 생계비지급 가처분신청	419
3. 피해조사업체에 대한 업무중지 가처분 신청	420
4. 삼성중공업의 대응조치	422
제 5 절 국내·외 손해 배·보상 사례 비교	424
1. 보상한도액의 초과피해액에 대한 피해보상	424
2. 손해사정기간 및 피해보상의 지급시기	426
3. 무자료 영세업자에 대한 피해보상	426
4. 사고초기의 생계지원	427
5. 평가 및 시사점	428
제 6 장 주요 정책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	433

제 1 절	정부의 선 보상체계 도입	433
1.	시사점	433
2.	향후과제	434
제 2 절	신속한 주민 방제인건비 지급체계 구축	436
1.	시사점	436
2.	향후과제	437
제 3 절	손해사정 신속화 및 사정을 제고방안	440
1.	시사점	441
2.	향후과제	442
□ 부 록		451
1.	HS센터 신고서 양식	453
2.	1차 협력계약서(국·영문)	456
3.	2차 협력계약서(국·영문)	475
4.	2차 협력계약 부속계약서(국·영문)	495
5.	에스크로우 계약서 및 송금지시서(국·영문)	499
6.	손해 배·보상금 이중지급방지절차에 관한 합의각서(국·영문)	513
7.	유류오염 손해 배·보상 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통지서(국·영문)	522
8.	정부대지급금 지급에 따른 대위행사 통지서	532
9.	대부금에 대한 확인서(국·영문)	533
10.	수협업무협약서	537
11.	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도면	542
1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상황 일지	553
13.	HS 유류오염사고 수습 및 보상업무를 함께한 사람들	608

표 차례

<표 1-1> 사고선박 현황.....	2
<표 1-2> 선박 운항 현황.....	3
<표 1-3> 제1심 재결에 따른 충돌의 직접 및 간접 원인.....	4
<표 1-4> 제2심 재결에 따른 충돌의 직접 및 간접 원인.....	5
<표 1-5> 양식장 시설 피해현황.....	8
<표 1-6> 지자체별 피해신고 현황(2009. 3월 기준).....	9
<표 1-7> 수산분야 제한채권신고 현황(서산지원, 2009. 6. 9 기준).....	11
<표 1-8> 비수산분야 제한채권신고 현황(서산지원, 2009. 6. 9 기준).....	13
<표 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일자별 주요상황.....	18
<표 1-10> 일자별 조업재개 현황.....	23
<표 1-11>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현황.....	25
<표 1-12> 피해보상관련 설명회 개최 현황.....	27
<표 1-13> 방제인력 및 장비 투입현황.....	38
<표 1-14> 충남지역 피해대책위원회(35개).....	40
<표 1-15> 충남지역 피해주민연합회(5개).....	42
<표 1-16> 전남지역 피해대책위원회(7개).....	42
<표 1-17> 전북지역 피해대책위원회(14개).....	43
<표 1-18> 손해사정법인별 피해주민단체 및 피해신고 현황(2008.12.31 기준).....	44
<표 1-19 > 손해사정법인별 · 피해주민단체별 피해신고 현황(2008.12.31 기준).....	46
<표 1-20> 충남 시·군별 산정지표 지수.....	52
<표 1-21> 충남 시·군별 배부액 산정을 위한 가중치 부여방안.....	53
<표 1-22> 충남 시·군별 및 산정지표별 배분을 위한 가중치.....	54
<표 1-23> 전남 군별 산정지표 지수.....	55
<표 1-24> 전남 군별 지원 배분비율 및 지원액.....	56
<표 1-25> 충남의 개인별 지원기준.....	58

<표 1-26> 전남의 개인별 지원기준.....	59
<표 1-27> 생계안정자금 지원 및 배분 현황(2008.10.6 기준)	66
<표 1-28> 유류피해지역 정부지원 현황(2009.12월말 기준).....	67
<표 1-29> 공공근로사업계획 내용.....	68
<표 1-30>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실적.....	69
<표 1-31> 특별공공근로 추진실적(2009.12.31 기준).....	69
<표 2-1> 관리대상 자금.....	94
<표 2-2> 대지급 관리계좌의 관리방법.....	95
<표 2-3> 한도초과보상금 관리계좌의 관리방법.....	95
<표 2-4> 대부 관리계좌의 관리방법.....	96
<표 2-5> 충남지역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현황.....	98
<표 2-6> 전라지역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현황.....	99
<표 2-7> 피해보상지원단의 근무인력 현황.....	104
<표 2-8> 팀별 주요 업무내용.....	104
<표 2-9> 피해보상지원단 팀별 주요기능.....	108
<표 2-10> 수산피해대책본부의 주요 업무내용.....	110
<표 2-11> 서해안유류사고 대책지원총괄본부의 정·현원 현황.....	113
<표 2-12> 서해안 유류사고 대책지원총괄본부 팀별 주요업무.....	114
<표 2-13>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조직.....	115
<표 2-14>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의 지원조직.....	116
<표 2-15>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117
<표 2-16> 조정위원회 구성.....	121
<표 2-17> 조정위원회 개최실적.....	124
<표 3-1> 국제기금의 피해액 추정규모.....	133
<표 3-2> 피해규모 변경 추이.....	134

<표 3-3> 초기 보상지급률 예시	135
<표 3-4> 기관별 제한채권 신고현황(2009.5.8 기준)	135
<표 3-5> 손해보전지원 예산요구 세부내역	149
<표 3-6> 중기재정 산출근거	150
<표 3-7> 대지급시 주요 검토·확인사항	154
<표 3-8> 최초 대지급 사례	158
<표 3-9> 구상합의 실시 및 구상금 회수 현황(2009.12.31 기준)	159
<표 3-10> 피해분야별 대지급금 지급 및 구상현황(2009.12.31 기준)	160
<표 3-11> 충남지역 분야별 대지급금 지급 및 구상현황(2009.12.31 기준)	160
<표 3-12> 충남지역 시·군별 대지급금 지급 및 구상현황(2009.12.31 기준)	161
<표 3-13> 전북지역 분야별 대지급금 지급 및 구상현황(2009.12.31 기준)	161
<표 3-14> 전북지역 시·군별 대지급금 지급 및 구상현황(2009.12.31 기준)	162
<표 3-15> 전남지역 분야별 대지급금 지급 및 구상현황(2009.12.31 기준)	162
<표 3-16> 전남지역 군별 대지급금 지급 및 구상현황(2009.12.31 기준)	163
<표 3-17> 업체 방제비 대지급 및 구상현황(2009.12.31 기준)	163
<표 3-18> 지자체 방제비 대지급 및 구상현황 총괄(2009.12.31 기준)	164
<표 3-19> 충청남도 방제비 대지급 및 구상현황(2009.12.31 기준)	164
<표 3-20> 전라남·북도 방제비 대지급 및 구상현황(2009.12.31 기준)	165
<표 3-21> 지역에 따른 대부기준 점수	167
<표 3-22> 업종에 따른 대부기준 점수	167
<표 3-23> 소득에 따른 대부기준 점수	168
<표 3-24> 개인별 대부 상한액 조건표(제정 당시)	170
<표 3-25> 개인별 대부 상한액 조건표(개정기준)	172
<표 3-26> 대부 심사표	177
<표 3-27> 피해지역 지자체 회계관직 지정내역	180
<표 3-28> 대부지원현황(2009.12월말 기준)	181
<표 3-29> 대부금 최초 지급사례	182

<표 3-30> 한도초과보상금 중기재정 운용계획(2009.6월 기준).....	185
<표 3-31> 2009년도 한도초과보상금 예산변경내역(2009.6월 기준).....	185
<표 3-32> 이차보전 예산절감 추정액.....	186
<표 3-33> 정부지원현황(2009.12월말 기준).....	194
<표 3-34> 가이드라인 기준항목(해역 : 해수수질 기준).....	195
<표 3-35> 개장단계별 가이드라인.....	195
<표 3-36> 가이드라인에 따른 해수욕장개장시 조치사항.....	195
<표 3-37> 지원요청사업 협의결과.....	200
<표 3-38> 수용사업 현황(9개).....	200
<표 3-39> 일부 수용사업 현황(29개).....	201
<표 3-40> 중장기 검토사업 현황(43개).....	202
<표 3-41>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상사업 현황(60개).....	203
<표 3-42> 조정위원회 심의·의결사업(39개) 추진실적.....	205
<표 3-43> 2009년도 추가검토사업 총괄현황.....	207
<표 3-44> 32개 사업 추진실적.....	207
<표 3-45> 2010년도 예산 반영현황.....	210
<표 3-46> 태안국제바다수영대회 시상 내역.....	214
<표 3-47> 낚시대회 시상내용.....	216
<표 3-48> 행사명 및 행사내용.....	218
<표 3-49> 2009년도 선정사업의 개요 및 소요예산.....	223
<표 3-50> 공공기관별 꽃박람회 지원현황.....	227
<표 3-51> HS보상지원 업무관리시스템 주요 공유정보.....	228
<표 3-52> 현장지원반의 주요 활동내용.....	234
<표 3-53> 일자별 현장지원반 주요 활동내역.....	235
<표 3-54> 피해보상 소식지 발간 및 주요 내용분석.....	243
<표 3-55> 특별영어자금 대출실적(2008.10.31 기준).....	251
<표 3-56> 특별영어자금의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지원실적.....	252

<표 3-57> 농특회계자금 대출현황(2008.2.29 기준).....	253
<표 3-58> 농특자금 상환연기 지원실적.....	254
<표 3-59> 수산물 안전성 조사 현황.....	256
<표 3-60> 특별공공근로사업의 개요.....	258
<표 3-61> 특별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259
<표 3-62> 특별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260
<표 3-63> 지원사업 유형과 예산규모.....	263
<표 3-64> 의약품 지원현황.....	264
<표 3-65> 연금보험료 지원실적.....	265
<표 3-66> 보험료 경감실적.....	265
<표 3-67>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지원활동 주요내용.....	268
<표 3-68> 충청남도의 긴급대응 및 방제활동.....	272
<표 3-69> 시·군별 생계안정자금(1단계) 지원 및 배정현황.....	274
<표 3-70> 시·군별 생계안정자금 총 지원 및 배정현황.....	275
<표 3-71> 피해지역 시·군별 행사개최 실적.....	278
<표 3-72> 전라남도의 긴급대응 및 방제활동.....	279
<표 3-73> 시·군별 생계안정자금 배분현황(2008.2.13 기준).....	280
<표 3-74> 시·군별 생계안정자금 집행현황(2008.7.8 기준).....	281
<표 3-75> 전라북도의 긴급대응 및 방제활동.....	283
<표 3-76>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조치 실적.....	290
<표 3-77> 일자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조치사항.....	291
<표 3-78> 국립공원관리공단 선박과건.....	293
<표 3-79> 방제장비 투입현황.....	293
<표 3-80> 방제활동 단계별 주요조치 현황.....	294
<표 3-81> 지원실적(2007.12.12~2008.2.21).....	295
 <표 4-1> 국제기금 사무국의 추정피해액 조정현황.....	 330

<표 4-2> 손해 배·보상 재원 관리방안별 장·단점 비교.....	343
<표 4-3> 협력계약 체결시 경제적 이익분석.....	344
<표 4-4> 2008년도 선주보험사의 에스크로우 이자 입금현황.....	347
<표 4-5> 2009년도 선주보험사의 에스크로우 이자 입금현황.....	351
<표 4-6> 정례회의 주요의제 및 결과.....	356
<표 5-1> 92CLC 및 2000년 개정의정서의 책임한도액.....	373
<표 5-2> IMO 유류오염손해배상협약의 책임한도 비교.....	378
<표 5-3> 유류오염사고에 관한 국제협약의 주요내용 비교.....	380
<표 5-4> 배·보상의 대상이 되는 유류오염 피해.....	393
<표 5-5> 손해 배·보상금 청구현황(2010.1.4 기준).....	400
<표 5-6> 손해 배·보상청구 사정현황(2010.1.4 기준).....	402
<표 5-7> 손해 배·보상금 지급현황(2010.1.4 기준).....	403

그림 차례

<그림 1-1> 사고발생 지점 및 유류오염 확산지역	1
<그림 1-2> 허베이 스피리트호	2
<그림 1-3> 삼성 1호(크레인 부선).....	3
<그림 1-4> 해수욕장 유류오염 현장.....	6
<그림 1-5> 해안가 유류오염 및 양식시설 피해 현장.....	7
<그림 1-6> 피해신고 접수현황(전체).....	14
<그림 1-7> 피해신고 접수현황(맨손어업).....	14
<그림 1-8> 유류오염사고 발생 당시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16
<그림 1-9> 중앙사고수습본부 현장지원반의 방제활동	17
<그림 1-10> 천수만 오일펜스 설치 현장.....	21
<그림 1-11> 대정부 및 삼성중공업 관련 피해주민 집회현장.....	37
<그림 1-12> 피해지역 주민의 방제작업 참여현장.....	38
<그림 2-1> 특별법 제정 과정	80
<그림 2-2> 피해보상지원단 조직도(1).....	103
<그림 2-3> 피해보상지원단 조직도(2).....	103
<그림 2-4> 피해보상지원단 조직도(3).....	105
<그림 2-5> 피해보상지원단 조직도(4).....	106
<그림 2-6> 피해보상지원단 조직도(5).....	107
<그림 2-7> 농림수산식품부 수산피해대책본부 조직도	109
<그림 2-8> 농림수산식품부 피해어업인지원단 조직도	111
<그림 2-9>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조직도	112
<그림 3-1> 대지급금 지급절차.....	157
<그림 3-2> 대부금 지급절차.....	179

<그림 3-3> 유류오염 피해해수욕장 개장을 위한 업무 추진도	197
<그림 3-4> 바다수영대회 현장모습	213
<그림 3-5> 바다낚시대회 시상식 전경	217
<그림 3-6>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현장	225
<그림 3-7> HS보상지원 업무관리시스템 구성 개념도	230
<그림 3-8> 현장설명회 모습	246
<그림 4-1> 92FC 사무국 조직도	301
<그림 4-2> 에스크로우 이자 산출방식(기산일) 의견 도식표	346
<그림 5-1> 유류오염사고 손해 배·보상 일반절차	398
<그림 5-2> 유류오염사고 손해 배·보상절차(특별법 반영)	399

제 1 장 피해현황과 초기대응

제 1 절 사고개요와 피해현황

1. 사고의 개요 및 원인분석

1.1 사고의 개요

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 06분경 태안군 원북면 신도타서 등대로부터 진 방위 약 252도 거리 약 5.1마일 해상에서 예인선 2척(삼성 T-5호, 삼호 T-3호)이 해상 크레인 부선 삼성 1호를 병렬로 연결하여 항해하던 중, 좌측 예인선(삼성 T-5호)의 예인줄 절단으로 삼성 1호(크레인 부선)가 밀리면서 대산항 입항 대기 중이던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9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좌현 1번, 3번, 5번 등 3개 화물창에 과공이 발생하여 원유 약 10,900톤(12,547kl)¹⁾이 해상에 유출되었다.²⁾



<그림 1-1> 사고발생 지점 및 유류오염 확산지역

- 1) 선적항 출항시 검정량과 소형 유조선 이적량 및 본선 화물 잔량과 하역 전 검량결과를 비교한 결과 원유 총 12,547kl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됨.
-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방제부문 백서, 2009, 3.

사고선박 중 삼성 1호는 총 톤수가 11,828톤으로 소유자·운항자는 각각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이고, 주 예인선이던 삼성 T-5호는 총톤수가 292톤으로 소유자·운항자는 각각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이었으며, 보조 예인선이던 삼호 T-3호는 총톤수 213톤으로 소유자·운항자는 각각 삼호아이앤디과 삼성중공업이었다. 그리고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총톤수가 146,848톤으로 소유자·운항자가 같은 허베이 스피리트 쉽핑(Hebei Spirit Shipping)이다.

<표 1-1> 사고선박 현황

선 명	총 톤 수 (L× B× P)	용 도 (선 적)	주기관 (출력)	소유자 (운항자)
삼성 1호	11,828톤	크레인부선 (거제)	무동력 (피 예인부선)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 T-5호	292톤	예인선 (거제)	1,765KW× 2기 약 4,800마력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호 T-3호	213톤	예인선 (부산)	1,323KW× 2기 약 3,600마력	삼호아이앤디 (삼성중공업)
허베이 스피리트	146,848톤	유조선 (홍콩)	20,594KW× 1기 약 28,000마력	Hebei Spirit Shipping (Hebei Spirit Shipping)

※ 자료 : 국토해양부 피해보상지원단³⁾



<그림 1-2> 허베이 스피리트호

3) 이하 별도의 자료표기가 없는 각종의 통계표 및 통계자료는 국토해양부 피해보상지원단 자료임.



<그림 1-3> 삼성 1호(크레인 부선)

충돌 선박별 운항현황을 살펴보면, 삼성예인선단은 인천항 인천대교 공사현장을 2007년 12월 6일 출항하여 거제 고현항(삼성중공업)으로 운항 중이었으며,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지르쿠 아일랜드를 2007년 11월 16일 출항하여 대산항 외항에 투묘(투묘시간 '07.12.6 19:10) 정박 중이었다.

<표 1-2> 선박 운항 현황

선 명	출항지 (출항시간)	선박 운항	비 고
삼성1호 등 예인선단	인천항 인천대교 공사현장('07.12.6, 14:50)	거제 고현항으로 (삼성중공업) 항해 중	○ 사고일시 - '07.12.7, 07:06분 ○ 사고장소
허베이 스피리트	지르쿠 아일랜드 ('07.11.16, 10:42)	대산항 외항 투묘 정박 중	- 태안 신도타서 등대 252도 5.1마일 해상

1.2 사고의 원인분석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특별심판부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에 따르면, 충돌사고의 직접 원인은 급격한 기상변화에 조기에 대처하지 못한 삼성예인

선단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또한 허베이 스피리트호도 정박당직을 수행하지 않는 등 안일하고 소극적인 피항 동작을 함으로써 충돌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을 지적하였다.

1.2.1 제1심 재결로 본 사고원인 분석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특별심판부의 제1심 재결내용을 분석하여 충돌(1차 사고)의 직·간접 원인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 1-3>와 같다.

<표 1-3> 제1심 재결에 따른 충돌의 직접 및 간접 원인

구 분		직 접 원 인	간 접 원 인
삼 성 (예인선단)	예인선	1. 예항능력이 사고 당시 기상상태를 감당하지 못함 2. 피예인물 저항계산 등 예항검사가 부적절하였음 3. 예인줄 파단(동적하중) ※ 예인줄의 강도는 규정치 이상의 강도를 가져 충돌과는 무관 4. 현실적으로 투묘가 가능하였으나, 조기에 비상 투묘를 하지 않았음 5. 인근 선박에 위험을 알리지 않고, 관제실 호출에 답하지 않는 등 경계태만	1. 비상시 예항 검사자와 선주 등 외부에 연락하지 않아 조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함 2. 기상변화의 파악을 소홀히 하였고, 피항시기가 지연됨
	삼성중공업	-	1. 예인선단 항행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안전관리체계가 결여됨
	보람(주)	-	1. 예항승인 점검표와 상이한 예인줄 구성방치 등 예항검사 결과실행에 소홀히 함
허베이 스피리트 (유조선)		1. 1등 항해사가 실습항해사에게 경계를 맡기고 정박당직을 수행하지 않았음 2. 안일하고 소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함(뚫줄을 풀면서 극미속 후진)	

재결에서는 해양오염(2차 사고)의 원인으로 1차 충돌사고 후 원유유출량 최소화를 위한 유조선의 대응조치 미흡이 유류오염의 과도한 확산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해양오염방지법(現 해양환경관리법) 및 해양오염방지협약에서 정한 ‘선박기름오염 비상계획서(SOPEP, The Shipboard Oil Pollution Emergency Plan)⁴⁾’에 따른 유출구역 차단, 손상탱크 기름이송, 평형수 조절 등 초기대응 미흡이 해양오염 확산을 초래한 것으로 보았다.

1.2.2 제2심 재결로 본 사고원인 분석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제2심 재결 내용도 제1심 재결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며, 제2심 재결 내용상 충돌(1차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요약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 제2심 재결에 따른 충돌의 직접 및 간접원인

구 분		직 접 원 인	간 접 원 인
삼 성 (예인 선단)	예인선	1. 기상악화로 예방능력 부족 2. 기상변화 파악소홀, 피항시기 지연 3. 예방검사 부적절 4. 예인줄 파단(동적하중) ※ 예인줄의 강도는 규정치 이상 5. 조기 비상투묘 미이행 6. 항해 당직 중 경계태만	1. 외부연락 등 안전조치 미이행
	삼성 중공업	-	1. 예인선단의 안전관리 체제 결여
	보람(주)	1. 선단지휘 체계부재 등 안전관리체제 결여	1. 예인항해 준비 및 지원 소홀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		1. 정박 당직 태만 2. 소극적인 피항동작 ※ 주기관만으로 피항 가능 3. 주기관 조종불능 상태	

4) 해양환경관리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선박(피예인선 제외)의 소유자는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선박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2. 지역별·분야별 피해현황 분석

2.1 피해현황 개요

총 피해면적⁵⁾은 34,703.5ha(충남지역 25,104.5ha, 전남지역 6,049ha, 전북지역 3,550ha)에 이르며, 유류유출사고에 의한 피해어장 비율은 전체어장 면적(257,432ha)의 약 13.5%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안가 및 해수욕장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해안선은 375km(충남~전남, 도서 101개)가 오염되었고, 해수욕장은 충남 만리포 해수욕장 등 15개소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4> 해수욕장 유류오염 현장

아래의 <표 1-5>는 양식장 시설 피해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표에서 보듯이 유류오염 지역 전체 피해 어가수(42,863어가) 중 충남지역이 전체 피해 어가수의 97.67%(41,866어가)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지역과 전북지역은 각각 1.0%(437어가), 1.37%(560어가)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세분화하여 기초자치단체별 피해 어가수를 살펴보면, 보령지역이

5) 양식장 시설 피해현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음.

23,088어가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태안지역이 13,839어가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5> 해안가 유류오염 및 양식시설 피해 현장

피해면적별로 살펴보면, 전체 34,703.5ha의 피해면적 중 충남지역이 72.3%로 압도적으로 넓으며, 전남지역과 전북지역이 각각 17.4%와 10.3%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면적을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보령지역이 13,789.5ha로 피해면적이 가장 넓으며, 다음으로 태안지역이 5,868ha, 신안지역이 5,026ha, 서천지역이 4,567h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양식장 시설 피해현황

지 역	시 · 군	피 해 현 황	
		어가수	면적(ha)
합 계		42,863(100%)	34,703.5(100%)
충 남	소 계	41,866(97.67%)	25,104.5(72.3%)
	보령시	23,088	13,789.5
	서산시	524	244
	서천군	214	4,567
	당진군	4,201	636
	태안군	13,839	5,868
전 남	소 계	437(1.0%)	6,049(17.4%)
	무안군	75	778
	함평군	3	76
	영광군	15	169
	신안군	344	5,026
전 북	소 계	560(1.37%)	3,550(10.3%)
	군산시	317	2,862
	부안군	243	688

2.2 피해신고 현황분석

피해신고 현황을 허베이 스피리트호 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시점('09.2.9)/종료시점('09.5.8)] 를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각 지역별 피해대책위원회로 접수된 전체 피해신고 건수 <표 1-6>과 책임제한절차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하 “서산지원”이라 한다.)이 공식 접수한 수산분야와 비수산분야 각각의 피해신고 현황 <표 1-7>, <표 1-8>로 구분하여 분석·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2.2.1 지역별 피해신고 현황

아래의 <표 1-6>은 서산지원의 선주책임 제한채권 신고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피해지역 해당 지자체에서 파악한 지역별 피해신고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지역별 피해신고현황을 보면, 전체 피해신고 건수는 119,657건으로, 이 중 86.6%인 103,676건이 수산분야 피해신고로 전체 피해신고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수산분야는 15,981건으로 전체 피해신고 건수의 13.4%를 차지하고 있다.

<표 1-6> 지자체별 피해신고 현황(2009. 3월 기준)

(단위: 건)

피 해 지 역		합 계(100%)	수 산(86.6%)	비수산(13.4%)
합 계		119,657(100%)	103,676(100%)	15,981(100%)
충 남	소 계	70,269(58.7%)	56,373(54.4%)	13,896(87.0%)
	태 안	25,766	18,476	7,290
	보 령	16,356	13,426	2,930
	서 천	9,969	8,752	1,217
	당 진	8,050	6,896	1,154
	서 산	5,805	4,933	872
	홍 성	2,523	2,090	433
	복 합	1,800	1,800	-
전 남	소 계	28,070(23.5%)	26,585(25.6%)	1,485(9.3%)
	신 안	15,638	14,618	1,020
	영 광	7,080	6,900	180
	무 안	3,406	3,146	260
	진 도	1,910	1,910	-
	합 평	36	11	25
전 북	소 계	21,318(17.8%)	20,718(20.0%)	600(3.7%)
	부 안	7,073	6,787	286
	고 창	6,100	6,008	92
	군 산	3,604	3,472	132
	김 제	2,973	2,947	26
	복 합	1,568	1,504	64

수산분야 피해신고 현황을 지역별 살펴보면, 충남지역의 수산분야 피해신고 건수는 전체의 56,373건으로 5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지역은 26,585건으로 전체의 25.6%를 차지하고, 전북지역은 20,718건으로 전체의 2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산분야의 피해신고 건수는 충남지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남지역과 전북지역에서도 다수의 피해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비수산분야의 경우는 전체 15,981건의 피해신고 건수 중 충남지역이 13,896건으로 전체의 8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지역과 전북지역에서는 각각 9.3% 및 3.7%의 피해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수산분야 및 비수산분야를 합한 전체 피해신고 건수를 기준하면 58.7%(70,269건)는 충남지역에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남지역이 23.5%(28,070건), 전북지역이 17.8%(21,318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상과 관련하여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2.2.2 전주책임제한절차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현황

서산지원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책임제한절차는 법률적으로는 2009년5월8일 마감하였으나, 실제로는 산고누락자의 추가신고, 신고서류의 보완 등을 고려하여 2009년6월9일에야 제한채권 신고가 마감되어 총 126,289건이 신고되었으며, 이를 수산분야와 비수산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수산분야>

아래의 <표 1-7>은 서산지원이 허베이 스피리트호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09.2.9)을 함에 따라 2009년 6월 9일까지 수산분야 피해신고 접수를 받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전체 104,839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맨손어업 피해신고가 84,937건(81.0%)으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어선어업이 9,037건(8.6%), 양식어업이 6,052건(5.8%), 기타 4,813건(4.6%)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체 신고건수의 51.2%인 53,710건이 충남지역이며, 전남지역은 26,514건(25.3%), 전북지역은 22,442건(21.4%)을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 및 지역별 신고현황을 보면 양식어업의 경우 전체 6,052건의 신고건수 중 2,877건(47.5%)이 충남지역이며, 전남지역은 2,724건(45.0%), 전북지역은 451건(7.5%)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선어업의 경우 전체 9,037건의 피해신고건수 중 4,882건(54.0%)이 충남지역이며, 전남지역은 2,078건(23.0%), 전북지

역은 2,054건(22.7%)으로 나타났다. 맨손어업의 경우 전체 84,937건의 피해 신고 건수 중 45,196건(53.2%)이 충남지역이며, 전남지역은 20,007건(23.6%), 전북지역은 19,734건(23.2%)으로 나타났다. 기타 어업의 경우는 전체 4,813건의 피해신고 건수 중 755건(15.7%)이 충남지역이며, 전남지역은 1,705건(35.4%), 전북지역은 203건(4.2%), 기타 지역이 2,150건(44.7%)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7> 수산분야 제한채권 신고현황(서산지원, 2009. 6. 9 기준)

(단위: 건)

피 해 지 역		합 계 (100%)	양식어업 (5.8%)	어선어업 (8.6%)	맨손어업 (81.0%)	기타어업 (4.6%)
합 계		104,839 (100%)	6,052 (100%)	9,037 (100%)	84,937 (100%)	4,813 (100%)
충 남	소 계	53,710 (51.2%)	2,877 (47.5%)	4,882 (54.0%)	45,196 (53.2%)	755 (15.7%)
	태 안	8,510	411	752	6,856	491
	보 령	15,136	777	1,221	13,137	1
	서 천	10,390	318	1,062	9,007	3
	당 진	6,788	1	546	6,184	57
	서 산	12,371	1,370	1,301	9,498	202
	홍 성	515	-	-	514	1
	복 합	-	-	-	-	-
전 남	소 계	26,514 (25.3%)	2,724 (45.0%)	2,078 (23.0%)	20,007 (23.6%)	1,705 (35.4%)
	신 안	14,454	733	744	11,922	1,055
	영 광	6,724	239	743	5,139	603
	무 안	3,337	25	409	2,856	47
	진 도	1,910	1,727	182	1	-
	합 평	89	-	-	89	-
전 북	소 계	22,442 (21.4%)	451 (7.5%)	2,054 (22.7%)	19,734 (23.2%)	203 (4.2%)
	부 안	7,295	34	354	6,865	42
	고 창	6,105	154	268	5,669	14
	군 산	5,669	191	1,381	4,089	8
	김 제	3,125	72	51	2,985	17
	복 합	248	-	-	126	122
기 타		2,173 (2.1%)	-	23 (0.3%)	-	2,150 (44.7%)

<비수산분야>

아래의 <표 1-8>은 서산지원이 허베이 스피리트호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09. 2. 9)을 함에 따라 2009년 6월 9일까지 비수산분야 피해신고 접수를 받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서산지원에는 전체 21,450건의 제한채권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기타 분야가 14,250건(66.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판매대여업이 3,201건(14.9%), 요식업이 2,162건(10.1%), 제조가공업이 935건(4.4%), 숙박업이 902건(4.2%)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충남지역은 17,261건으로 전체 피해신고 건수의 80.5%를 차지하고 있고, 전남지역은 2,747건(12.8%), 전북지역은 1,141건(5.3%)을 차지하고 있다.

신고현황을 피해지역별로 피해유형에 따라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요식업의 경우 전체 2,162건의 피해신고가 있었는데, 이 중 1,659건(76.7%)은 충남지역이며, 전남지역은 405건(19.0%), 전북지역은 98건(4.5%)을 차지하고 있다.

숙박업의 경우는 전체 902건의 피해신고가 있었는데, 이 중 580건(64.3%)은 충남지역이며, 전남지역은 295건(32.7%), 전북지역은 26건(2.9%)을 차지하고 있다. 숙박업의 경우 전북지역의 피해신고가 저조한 것이 특징적이다.

판매대여업의 경우는 전체 3,201건의 피해신고가 있었는데, 이 중 3,165건(98.9%)이 충남지역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지역은 35건(1.1%), 전북지역은 단 한 건의 피해신고도 없었다.

제조가공업의 경우 전체 935건의 피해신고가 있었는데, 이 중 전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527건(56.4%)의 피해신고가 있었고, 충남지역에서 400건(42.8%), 전북지역에서 8건(0.9%)의 피해신고가 있었다.

기타의 경우 전체 신고건수 14,250건의 피해신고 가운데, 11,457건(80.4%)이 충남지역이며, 전남지역은 1,485건(10.4%), 전북지역은 1,009건(7.1%), 기타 지역은 267건(1.9%)의 피해신고가 있었다.

<표 1-8> 비수산물분야 제한채권 신고현황(서산지원, 2009. 6. 9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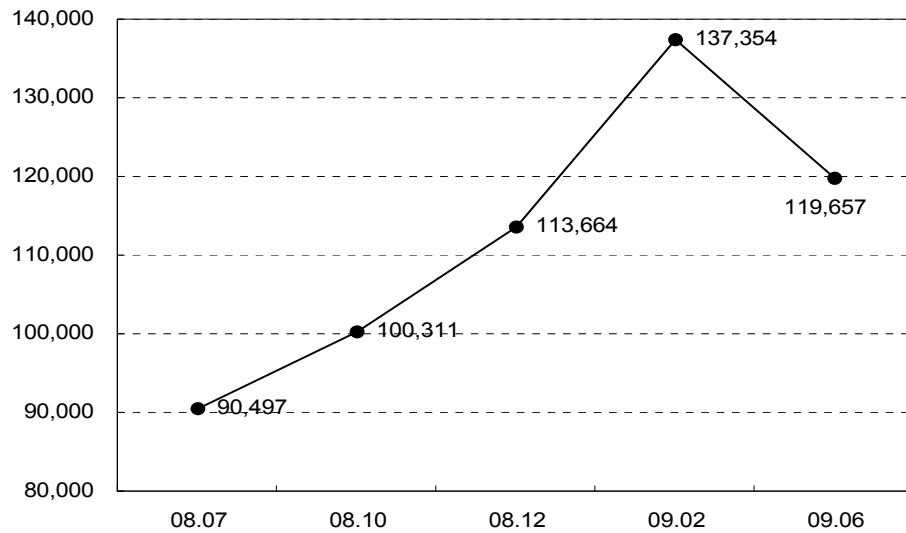
(단위: 건)

피해지역		합 계 (100%)	요식업 (10.1%)	숙박업 (4.2%)	판매대여업 (14.9%)	제조가공업 (4.4%)	기 타 (66.4%)
합 계		21,450 (100%)	2,162 (100%)	902 (100%)	3,201 (100%)	935 (100%)	14,250 (100%)
충남	소 계	17,261 (80.5%)	1,659 (76.7%)	580 (64.3%)	3,165 (98.9%)	400 (42.8%)	11,457 (80.4%)
	태안	10,678	466	116	1,080	90	8,926
	보령	2,999	35	-	1,033	37	1,894
	서천	1,589	425	213	416	213	322
	당진	1,179	467	191	416	-	105
	서산	371	127	60	105	59	20
	홍성	445	139	-	115	1	190
	복합	-	-	-	-	-	-
전남	소 계	2,747 (12.8%)	405 (19.0%)	295 (32.7%)	35 (1.1%)	527 (56.4%)	1,485 (10.4%)
	신안	1,200	133	138	-	46	883
	영광	976	132	157	-	276	411
	무안	268	115	-	33	-	120
	진도	257	-	-	-	205	52
	함평	46	25	-	2	-	19
	기타	-	-	-	-	-	-
전북	소 계	1,141 (5.3%)	98 (4.5%)	26 (2.9%)	-	8 (0.9%)	1,009 (7.1%)
	부안	390	-	-	-	-	390
	고창	99	34	17	-	-	48
	군산	617	46	9	-	8	554
	김제	35	18	-	-	-	17
	복합	-	-	-	-	-	-
	기타	-	-	-	-	-	-
기 타		269 (1.3%)	-	1 (0.1%)	1	-	267 (1.9%)
정 부		32 (0.1%)	-	-	-	-	32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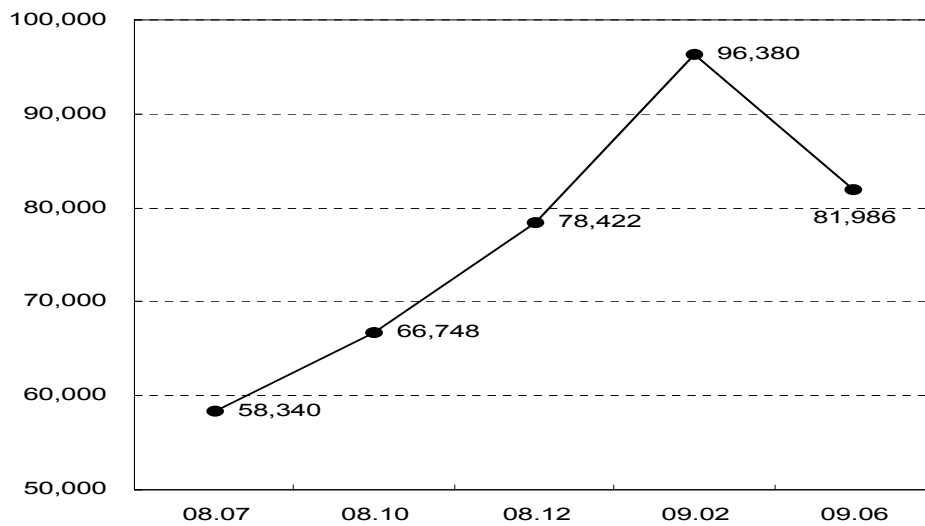
2.3 교훈과 과제

사고발생 후 피해지역에는 피해주민으로 구성된 피해주민단체가 구성되어 피해주민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피해

지역 광역자치단체(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를 통해 피해주민단체별 피해신고 접수현황을 보고받아 전체 피해신고현황을 집계하고 관리하였다.



<그림 1-6> 피해신고 접수현황(전체)



<그림 1-7> 피해신고 접수현황(맨손어업)

이를 분석해 보면, 최초로 피해신고현황을 집계한 2008년 7월 기준 전체 피해신고 건수는 90,497건이었으며, 그 중 맨손어업이 58,340건으로 전체 피해신고 건수의 64.5%를 차지하고 있다. 그 후 피해신고건수는 매월 증가하여 같은 해 12월에는 전체 피해신고 건수가 113,664건으로 23,167건이 증가하였

는데, 이 중 맨손어업 피해신고가 20,082건 증가하여 78,422건으로 86.7% 증가하여 전체 피해건수의 69.0%를 차지하게 되어 전체 피해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해 7월보다 4.5% 증가하였다.

또한, 2009년 2월 기준 전체 피해건수는 137,354건으로 맨손어업 피해건수가 96,380건으로 보고되어 전체 피해건수에서 차지하는 맨손어업의 비중이 70.0%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국토해양부의 피해보상소식지를 통한 허위·부정신고 제도 활동, 농림수산식품부의 피해지역 대국민담화를 통한 허위·부정신고 제도 활동으로 2009년 6월 9에는 전체 피해건수 119,657건 중 맨손어업 피해건수는 81,986건으로 감소하여 전체 피해건수에서 차지하는 맨손어업 비중이 68.5%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사고 발생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까지 피해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특히 맨손어업)하게 된 것은 아래와 같은 요인들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첫째, 미신고 맨손어업자에 대해서도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보상대상에 포함하기로 함에 따라 미신고 맨손어업자의 피해신고가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사고이전에 신고된 맨손어업 31,145건, 미신고 조사대상 19,479건 등 총 50,624건의 맨손어업 피해조사 대상을 선정·확정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맨손어업 피해조사 대상으로 선정·확정된 피해신고에 대해서만 대부금을 지급하기로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도 하였다.

둘째, 피해지역(충청남도, 전라남도)에 긴급 생계안정자금이 지원됨에 따라 당초 피해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전라북도)에서도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해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함으로써 맨손어업자의 피해신고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셋째, 일부 피해지역에서 특정 손해사정업체가 주민지원활동을 과도하게 전개(간접피해 및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을 홍보하면서 피해신고를 독려)하여 피해신고를 무분별하게 접수함에 따라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전에 피해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피해주민 제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손해사정사들에 의한 무분별한 홍보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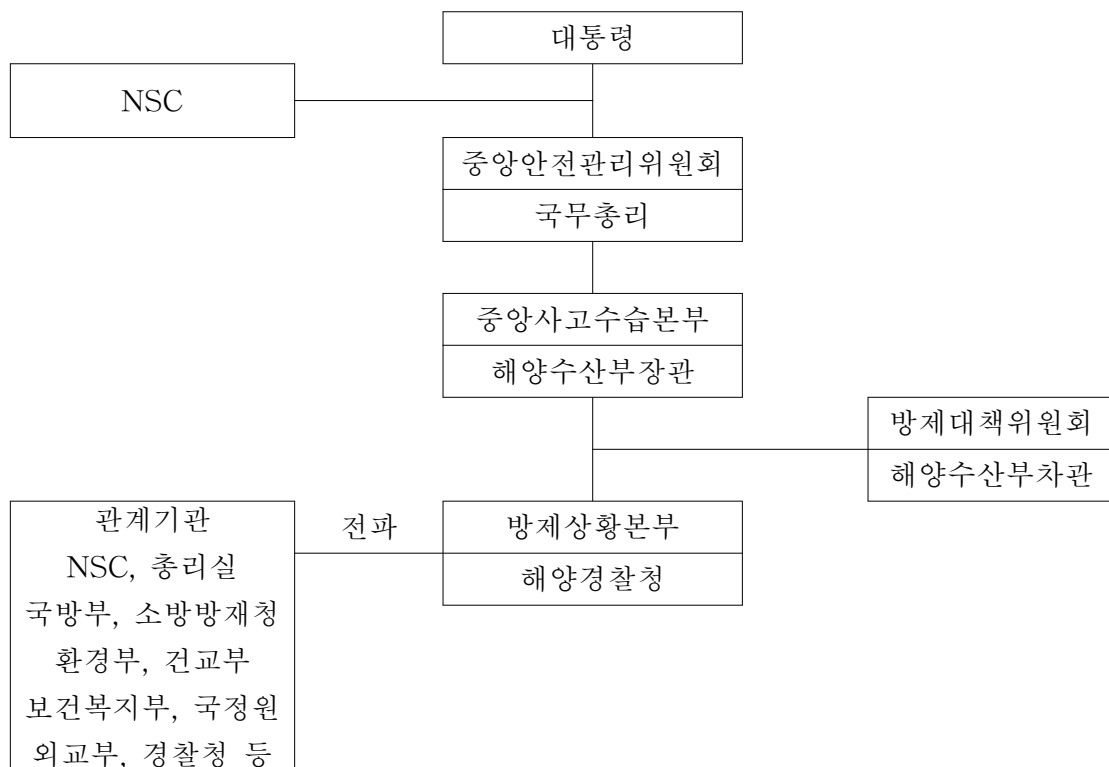
제 2 절 사고 초기단계의 대응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급대응

1.1 사고수습대책본부 설치 및 가동

사고발생 직후 중앙부처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사고현장에서는 방제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사고수습 지휘체계를 확립하였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공조체제를 구축하였다.

아래의 <그림 1-8>은 사고발생 당시 유류오염사고 위기관리를 위한 중앙부처의 업무수행 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에 해양수산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산하에 방제대책위원회를 두고 방제상황본부를 설치하여 각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사고수습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림 1-8> 유류오염사고 발생 당시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사고현장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제대책본부가 설치되었는데, 여기에는 지역방제대책협의회 및 방제기술지원단 등을 두었고, 방제대책본부장 직속기관으로 해상방제팀(해양경찰서, 방제조합, 방제업체), 기동방제팀, 해안방제팀(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방제업체, 국방부, 소방방재청) 등을 설치하였다.



<그림 1-9> 중앙사고수습본부 현장지원반의 방제활동

그리고 사고발생 4일 뒤인 2007년 12월 10일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현장지원반을 편성하였다. 현장지원반의 기구는 지원반, 수산반, 해경상황실, 수산과학원, 민원 콜센터 등으로 구성되었다. 현장지원반의 주요 임무는 본부 및 지방청 그리고 산하단체 현장 방제작업투입 총괄 조정·지원, 해양경찰청·지자체·자원봉사단체 및 방제기관 인력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운영, 민원 콜센터 설치 운영, 중앙사고수습본부와의 연락망 유지, 어업인·주민 및 환경단체 이해·설득·격려 및 협조지원, 방제대책본부(태안해경) 지원, 어업피해 보상에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어업인 현장지원, 어업피해에 대한 시·군·수산과학원·국제기금 조사관에 의한 합동확인 등이었다.

아래의 <표 1-9>는 사고발생 이후 17일간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취한 상황 일자별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고발생신고 접수 후, 정부가 즉시 방제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가동하여 사고발생 당일 국제기금에 사고내용을 통지하고, 긴급방제 및 오염 민감 해역 보호조치 등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사고발생 2일 만에 신속하게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5일 만에 충남지역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으로써 중앙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사고수습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표 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일자별 주요상황

일자	주요 상황
12.7.(금)	● 사고발생(07:06) 및 접수(07:15) ● 대산청 선박사고 구두보고, 본부 상황실 장·차관 등 보고(07:35) ● 방제대책본부 구성(08:10)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08:30) ● 청와대, 총리실, 국정원에 사고 상황 보고(08:45) ● 장관주재 긴급대책회의 개최(09:10) ● 해경경비함정 30척 및 방제조합 방제선 10척, 헬기 4대 사고현장 출동 ● 오염현황 및 조치계획 기자 브리핑(14:00) ● 총리주재 관계 장관회의 보고(14:30) ● IOPC펀드에 사고내용 통지
12.8.(토)	● 재난사태 선포(행정자치부장관) ● 태안지역 유류오염방제지침 수립·배포 ● 환경 민감 해역 보호를 위해 오일펜스 7.7km 설치 - 설치지역: 가로림만(양식장), 학ampo(해수욕장), 군소만(양식장)
12.9.(일)	● 연안유류 수거차량 등 방제지원 세력 지원요청 ● 한국해사감정·P&I SKULD·ITOPF 관계자 사고해역 방문 ● 1번 탱크 임시 봉쇄
12.10.(월)	● 해양방제활동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
12.11.(화)	● 충남 태안 등 6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 중앙사고수습본부 현장지원반 구축 운영(태안군 수협에 설치)
12.13.(목)	● 유조선 세양호 및 동주호에 잔존유 이적 ● 풍랑예비특보 발효에 따른 재해예방 강화 지시 ● 해양오염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회의 개최
12.14.(금)	● 크레인 부선 삼성 1호 인천항 대기 표박지로 이동조치

일자	주요 상황 내용
12.15.(토)	- 미국 방제전문가 4명 현장방문 - 싱가폴 항공방제기(1대), 유처리제(15.5톤) 및 고압세척기(4종 42대), 연안방제장비 김포공항 도착 - UN·EC 전문단 방문, 사고개황 및 오염현황 파악
12.16.(일)	- 생계지원방안 발표 브리핑(300억원 지원 내용) - ITOPF 및 보험사측 관계자와 오염피해현황 조사 - 국제 방제 전문단 오염피해 및 방제작업 현장방문과 각종 자문활동
12.17.(월)	- 타르 덩어리 관련 전문가회의 - 피해지역 돕기 직원모금운동 전개 - 가로림만·천수만지역 해역오염현황 조사 - 피해어민 손해배상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재경부 주관)
12.18.(화)	- 사고 유조선 선체세척 후 대산항 현대 오일뱅크 원유부이 도착 - 최장현 차관보, 충남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대책에 대한 브리핑 - 해안방제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환경부·지자체·방제조합·국립공원 관리공단 참석 및 협조요청) 「해양오염 영향조사 및 해양생태계 복원연구」 용역 추진
12.19.(수)	- 사고선박 화물유 검량결과 발표 - 일본지원 무상 유흡착제(10.1톤) 인도·인수식 개최
12.20.(목)	- 피해보상을 위한 수협,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보험 및 기금관계자 회의 - 가로림만 어업피해 추가 조사
12.21.(금)	- EC/UN, 한국해사감정·P&I SKULD·ITOPF·USCG^{주1)}/NOAA^{주2)}공동 조사단 조사결과 합동설명회 - 해수욕장 복원을 위한 전문가회의 개최 “오염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관리” 관계기관 실무회의 개최 - 어류 가두리 양식장 밀집지역(천수만, 가로림만) 예찰
12.22.(토)	- 암반, 갯바위 등의 안전사고 우려지역은 작업시 안전요원 배치 및 작업전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해양생태계 복원연구」 용역을 위한 전문 가 회의 개최
12.23.(일)	- 백사장 복원에 관한 공동조사 세부계획 수립 - 서해상 광역 오염실태 조사
12.24.(월)	- 사고해역에 대한 해수 및 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 국가해양 환경 측정망 정점을 이용한 광역오염 실태조사

※ 주1) USCG : United States Coast Guard, 미국해안경비대

주2) NOAA :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미국해양대기
관리처

1.2 주요 어장 등 오염피해 민감 해역 보호조치

해양경찰청은 사고접수('07.12.7 07:30) 직후, 가용함정 및 방제정의 현장이동을 지시(07:40)하여 경비함정 및 방제정이 현장에 도착(09:05)하자 방제작업을 착수하기 시작하였고, 사고선박에 직원을 승선(09:35)시켜 사고선박의 3번, 5번 파공탱크 잔존유를 반대편 빈 공간으로 즉시 이적토록하였다. 그러나 1번 탱크는 파공부위가 선수만곡부 상부에 위치하고 계속 유출되는 상태로 선박접근이 어려워 이적 및 차단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 한편, 정부는 해양수산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긴급 대책회의(09:10)시 전국의 가용 방제장비의 대산항 집결지시 및 현장인력 보강 등의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2007년 12월 7일 오전 12시까지 해경 경비정 30척, 헬기 4대, 방제선 10척 등이 출동하여 사고 선박 주변에 오일펜스 설치 등 방제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사고 2일차인 2007년 12월 8일에는 환경민감해역(가로림만, 학암포, 근소만) 보호를 위한 방제작업이 시작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태안반도 주변 해역은 조석의 변화가 심하며 담수의 직접적인 유입은 없는 지역으로, 충남 지역 연안습지 중 태안군이 143.6km²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충남의 연안습지는 가로림만, 근소만 등을 비롯하여 태안군 안면도 해안에 생태적으로 양호한 넓은 갯벌이 고르게 분포해 있다. 가로림만은 전형적인 호리병 모양으로 생긴 반 폐쇄성만으로 유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담수와 퇴적물의 양이 극히 적지만, 조수간만의 차가 큰 해역으로 내만에는 매우 광활한 펄질의 갯벌이 분포해 있다. 이 지역에는 저서돌말류 110종과 대형저서생물인 버들 갯지렁이 등 147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바지락이 대량으로 서식하는 곳으로 우리나라 바지락 생산량의 7%를 점유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태안군 근소만의 갯벌은 육지 쪽으로 깊게 만입되어 입구가 매우 좁은 반 폐쇄성 지역이며, 큰 조차로 인하여 매우 넓은 조간대 퇴적 환경이 발달해 있고, 그 주변지역으로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들이 분포해 있다.

특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가장 피해가 심했던 태안군 북부 해안인 원북면 방갈리에서 소원면 파도리에 이르는 지역은 포켓비치(pocket beach, 연안 침식물에 의해 초승달 모양으로 작게 형성된 해변) 형태의 사빈(沙濱, 모래가 깔려 있는 바닷가의 땅), 사빈의 배후에 발달한 해안사구 등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학ampo, 구레포, 신두리, 구름포, 의항리, 백리포, 천리포, 만리포, 어은돌, 파도 해빈 등 10여개의 사빈들이 남북으로 분포해 있다. 이 중 원북면 신두리 해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해안사구가 발달해 있는 지역으로 지형적으로 희귀성과 가치가 매우 높으며, 해안사구의 모래밭에는 사구식생⁶⁾이 널리 분포해 있었다. 방제대책본부는 이 같은 환경 민감해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제선 67척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오일펜스 7.7km 설치 및 긴급 방제조치를 실시하였고, 군산해경 소속 헬기 4대를 동원하여 사고해역 탐색 및 항공방제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림 1-10> 천수만 오일펜스 설치 현장

1.3 사고선박에 대한 압류조치

유류오염사고 직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2007년 12월 24일 서산지원에 사고선박인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대해 ‘선박임의 경매 및 감수·보존조치(압류조치)’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동 선박을 압류함으로써 방제조합의 방제비용 정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출항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선박 압류는 방제비에 대한 가해자측의 구체적인

6) 사구식생 : 해안이나 사막에서 바람에 의해 운반·퇴적되어 이루어진 모래언덕에서 모여 사는 특유한 식물의 집단

지급보증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선박이 출항하는 경우 방제비 지급을 받는데 장기간이 소요됨으로써 방제조합의 경영상 압박이 예상되기 때문에 취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국내 은행 계좌에 일정액을 예치하는 등 방제비 청구시 조기에 지급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선박출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정부의 입장은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뿐만 아니라, 수산 및 관광피해자의 경우도 피해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가해자측에게 500억 원을 별도구좌에 예치하고,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정 완료 및 사정 결과에 동의한 피해자에 대해 조속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사고선박의 출항을 수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해자측은 국제기금 및 선주측 보험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을 압류한 조치는 이해할 수 없으며, 선박 압류 후 제시한 선주측 현금예치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 이유는 선주책임제한범위외의 현금예탁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후 사고 발생시 전례가 될 수 있으며, 또한 피해규모가 선주책임제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선주보험사의 보상금액이 선주책임제한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이었다.

다만, 피해보상 청구 후 6개월 이내에 사정을 완료하고, 합의된 금액의 조기 지급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으나, 500억 원 예치요구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치 없이 사정이 완료된 방제비(또는 인건비)에 대하여는 2008년 설날 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2008년 1월 6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보험사와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방제인건비 2개월분 120억 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나머지 방제작업에 소요된 자재비 등을 6개월 내에 배상받기로 합의한 후 가압류 조치를 해제함으로써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2008년 1월 7일 대산항을 출항하였다.

1.4 출어자제 및 수산물 유통·소비에 관한 조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오염된 연안 및 도서 지역의 해역에서 생산한 오염된 수산물의 유통·판매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

및 피해지역 수산물 이미지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해역의 수산물 채취 및 포획을 자제할 것을 사고발생 당일('07.12.7)에 조치하였다.

출어자제 조치 이후 4개월이 지난 2008년 3월부터는 태안군을 제외한 다른 시·군은 정상조업 및 위판 중이었으며, 해변가의 음식점소도 태안 모항, 학ampo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영업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태안군 일부지역(근흥면, 소원면, 원북면) 어선어업은 정상조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태안군 대다수 어업인들은 조업재개를 희망하였으나, 일부 어업인이 조업재개시 해당 수역오염으로 인한 수산물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조업불가에 따른 정부차원의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어선어업인들 사이에는 조업재개에 대한 입장이 양분되어 있었다.

<표 1-10> 일자별 조업재개 현황

일 시	조업재개 조치사항
'08.4.18	○ 태안어장 어선어업 조업재개 발표 -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라 어선어업 조업재개 발표(방제작업이 진행 중인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제외) - 태안 연안의 패류는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유보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직원을 태안군 지정위판장 7개소에 배치
'08.4.29 '08.5.22~23	○ 수산물 안전성 교육실시 -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자체, 수협, 어촌계장 및 어업인 대상 교육실시
'08.5.9	○ 원북면, 이원면 어선어업 조업재개
'08.5.19	○ 마을어업(근소만, 천수만) 조업재개
'08.6.10	○ 마을어업(가로림만, 안면읍, 고남면, 남면) 조업재개
'08.6.11	○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파견조치 - 기간/장소 : 6.11~7.18 / 모항항, 천리포항
'08.7.24	○ 모항항, 천리포항, 개목항 어선어업 조업재개
'08.8.13	○ 맨손, 나잠어업(안면읍, 남면, 근흥면, 이원면) 조업재개
'08.8.27	○ 형망어업 조업재개
'08.9.3	○ 마을, 맨손어업, 나잠어업(소원면, 원북면) 조업재개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사고해역 수산물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및 시료 정밀분석('08.4.4~4.16)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업재개 여부를 발표하였고('08.4.18), 보상청구 이전에 생계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 어업인들을 위해 조기에 적극 조업재개를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는 어업인과 수차례 조업재개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 끝에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결과 문제가 없는 지역의 품목부터 점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1.5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은 충남, 전남 및 전북지역을 합하여 모두 15개 시·군이다. 정부는 이 중 피해가 심한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충청남도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과 전라남도의 신안군, 무안군, 영광군 등 9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당초 전라남도는 함평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함평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가 경미하여 특별재난지역 지정시 제외하였다.

또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공포 '08.3.14, 시행 '08.6.15)」 제2조에 따라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전라북도 군산시, 부안군 2개 지역이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지역이미지 훼손 및 수산물 소비감소 우려 등을 이유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을 하지 않았었지만, 이후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도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08.5.26)하였다. 이에 따라 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당시 상대적으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신고 접수도 없는 고창군을 제외한 군산시와 부안군을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으로 지정하였다.⁷⁾

7) 고창군의 경우도 전북도 공무원의 조정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피해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진도군의 경우 피해신고가 1,953건이 접수됨에 따라 2009년 2월 11일 진도 군수로부터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정 건의가 있었으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국제기금의 배·보상 청구가 가능하고, 사고 발생이후 1년이 지난 피해지역의 지정 신청시점, 피해신고·오염해안 현황 및 고창 등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추가 지정은 곤란한 것으로 회신(지원기획팀-207, '09.3.11)하였다.

<표 1-11>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현황

구분	선포일 (지정일)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공고번호
특별재난지역	'07.12.11	충청남도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내 유류유출사고 피해발생지역	대통령공고 제204호
"	'08.1.18	전라남도 신안군, 무안군, 영광군내 유류유출사고 피해발생지역	대통령공고 제207호
특별대책위원회 지정지역	'08.6.19	전라북도 군산시, 부안군 피해발생지역	-

특별법에 따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피해지역 및 주민들에게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지급금, 대부금, 한도초과 보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자금,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상환유예·이자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도 지원된다.

1.6 손해 배·보상 청구에 대한 주민홍보 및 행정지원

해양수산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하자 긴급방제조치 및 오염 민감 해역 보호조치,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기본적인 사고수습조치와 함께 피해주민들에 대한 원활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손해 배·보상 청구에 대한 주민 홍보 및 행정지원을 시행하였다.

사고 초기부터 피해주민이 보험사 및 국제기금을 상대로 원활한 피해보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07년 12월 18일 태안군청 대강당에서 피해보상 청구절차 등에 관한 첫 설명회를 개최한 이래 총 29회에 걸쳐 손해 배·보상 청구 등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법무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들로 피해조사지원단을 구성해 2007년 12월 18일부터 태안 현지에 개설되는 지원단 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어민들의 피해보상 청구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사고초기단계 해양수산부는 피해주민들의 손해 배·보상금 사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수집과정과 보상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에 역점을 두고 현장위주의 행정지원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사고수습활동 및 정부지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조직개편(2008.2.29)으로 인해 해양수산부가 폐지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수행하던 피해주민 지원 및 손해 배·보상 지원업무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각각 이관되어 추진되었다.

국제기금등의 손해 배·보상 관련 대응, 피해주민 생계안정 지원, 특별법 등 피해주민 지원제도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된 국토해양부는 2008년 3월 6일자로 직원 24명으로 구성된 피해보상지원단을 조직하고 본격적인 피해주민 지원활동에 임하였는데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현장지원반을 새로이 재정비하여 방제작업 및 보상신청 지원, 지역주민 애로 해결 등 현장중심의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피해보상지원단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손해 배·보상금 정부 대지급, 국제기금등의 보상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정부지급, 피해주민에 대한 대부지원,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에 관한 현장설명을 통해 피해주민이 정부지원제도를 이해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한편, 수산업무를 관장하게 된 농림수산식품부도 보상관련 현장의견 수렴 및 행정지원을 하였는데, 2008년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3일간 충남, 전북, 전남 지역에서 수산·농업분야 합동으로 유류피해 조사 및 보상관련 현장의견을 수렴하였다. 합동 현장 방문팀은 총 11팀 34명(수산분야 11명, 농업분야

11명, 어촌지도사 12명)으로 구성되어 피해가 심한 어촌계를 중심으로 방제 현황, 보상에 대비한 피해조사 진행상황 등에 대해 어업인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지원대책에 반영하고, 유류사고 이후 지금까지의 방제과정 및 피해복구 과정에서 어업인들이 느꼈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도출하였으며, 어업피해조사 진행과정에서 나타났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함은 물론 피해지역에서 단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필요사항 등을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표 1-12> 피해보상관련 설명회 개최 현황

구분	일시	장 소	대 상	주 요 내 용
서울	'07.12.13	해수부 회의실	KP/∫I, KMI 등 24명	유류오염 어업피해 손해 배상률 제고 방안 등
	'08.12.22	평촌 사무실	손해사정업체 등 15명	피해조사·청구 독려 등
	'09. 5.20	국회 귀빈식당	주관 :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대표 강기갑, 김영신, 이인 기), 관계자 100여명	주제 : ‘유류오염피해 손해 배상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 * 박광열 팀장 참석
	'09. 6. 2	평촌 사무실	지자체 대부담당자 등 25명	대부기준 개선방안 협의
태안	'07.12.18	태안군 대강당	어업인, 비수산인 등 550명	피해보상 절차, 신고서 작성, 증빙자료 확보요령 등 설명 및 질의·응답
	'08. 1. 5	태안 남면수협	피대위원, 어민 등 90명	
	'08. 1. 6	태안군청	비수산분야 사업자 350명	
	'08. 1.11	안면읍 농협	요식업협회 회원 100명	
	'08. 1.14	안면읍 농협	민박/펜션협회 등 180명	
	'08. 1.15	남면초등학교	남면주민 등 300명	
	'08. 1.16	고남면사무소	숙박업자 등 50명	
	'08. 1.16	고남면사무소	음식업 등 50명	
	'08. 1.21	이원면사무소	전업종 100명	

구분	일시	장 소	대 상	주 요 내 용
태안	'08. 1.29	안면읍 문예회관	비수산 전업종 50명	피해보상 절차, 신고서 작성, 증빙자료 확보요령 등 설명 및 질의·응답
	'08. 1.30	원북면사무소	비수산 전업종 40명	
	'08. 4.15	태안 문예회관	태안·서산·당진지역 어민 등 350명	특별법시행령 설명 및 질의 응답
	'08. 5.21	태안빌딩(5층)	관광분야 손해 사정사 등 15명	비수산분야(관광) 보상청구 설명
	'08. 6.19	충남도 대책위	충남도 관계자 등 10여명	1차 대책위 의결안건 등 설명
	'08. 6.30	태안빌딩	방제업체 관계자 등	'08.1.~2. 방제인건비 대지급관련 방제업체 설명
	'08. 9.23	태안군청	피해주민단체, 지자체 등	대부지원기준 및 절차 설명
	'09. 3. 9	태안문예회관	지자체담당자, 피대위(서베이어) 등 100여명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관련 신청요령 및 질의응답
	'09. 6.12	태안군 유류피해 대책지원과	태안 지자체 및 피대위, 어촌계장 등	대부기준 등 개선방안 설명
	'09. 6.18	태안군	충남도, 태안군, 국립수산물 과학원, 한국해양연구원, 환경단체, 주민(번영회) 등	유류오염 피해지역 하계 해수욕장 개장 관련 현지 공청회 개최
	'09. 9.10	태안군 유류피해 대책지원과	충청남도·태안군 공무원, 피대위 대표 및 어촌계장	어촌계 총유어업권에 대한 대지급방안 설명 등
서산	'08.12.19	서산 문화회관	지자체관계자 등 52명	대부 등 보상관련 설명 등
	'07.12.25	서산수협	피대위원, 어민 등 37명	피해보상 절차, 신고서 작성, 증빙자료 확보요령 등 설명 및 질의·응답
	'07.12.31	서산수협	파도리 등 어촌계 130명	
	'08. 1. 2	서산수협	모향복지회관 120명	
	'08. 1. 4	서산수협	피대위원, 어민 등 170명	
	'08.12. 5	서산 문화회관	피대위 등 700여명	피해보상지원 현황 설명
	'09. 2.25	서산 시민회관	지자체, 피대위, 서베이어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관련 신청요령 및 질의응답
	'09. 6.12	서산시 2층 상황실	서산·당진 지자체 및 피대위, 어촌계장 등	대부기준 등 개선방안 설명
	'09. 9.10	서산시청 중회의실	충청남도·서산시 공무원, 피대위 대표 및 어촌계장	어촌계 총유어업권에 대한 대지급방안 설명 등
	'09.12.19	서산 문화회관	HS 보상지원단 및 관련 지자체 담당 52명	보상지원을 위한 지자체와의 합동 워크숍 개최

구분	일시	장 소	대 상	주 요 내 용
서천	'08. 1. 7	서천수협	피대위원, 어민 등 30명	피해보상 절차, 신고서 작성, 증빙자료 확보요령 등 설명 및 질의·응답
	'08. 1.25	상항면사무소	지역주민 등 20명	
	'08. 1.25	서면사무소	지역주민 등 50명	
	'09. 6.11	서천군 재난 안전관리과	서천군 지자체 및 피대위, 어촌계장 등	대부기준 등 개선방안 설명
	'09. 9. 9	서천문예의전당	충청남도·서천시공무원, 피대위 대표 및 어촌계장	어촌계 총유어업권의 보상청구에 따른 대지급방안 설명
보령	'08. 1. 9	보령·신협수협	피대위원, 어민 등 80명	피해보상 절차, 신고서 작성, 증빙자료 확보요령 등 설명 및 질의·응답
	'08. 1.19	보령시 한화콘도	전업종 200명	
	'08. 4.15	보령 문예회관	보령·서천·홍천지역 어민등 100명	특별법시행령 설명 및 질의 응답
	'08.10.31	보령 신협수협	피대위, 서베이어등 50여명	펀드회의 결과, 대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 설명
	'09. 3. 9	보령문예회관	지자체담당자, 피대위(서베이어) 등 100여명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관련 신청요령 및 질의응답
당진	'08. 1. 3	당진수협 회의실	피대위원, 어민 등 170명	피해보상 절차, 신고서 작성, 증빙자료 확보요령 등 설명 및 질의·응답
	'08. 1.15	삼교호 관광사무소	삼교호 상인대표 30명	
	'08. 2.14	장고항 복지회관	지역주민 등 80명	
	'09. 9. 8	당진수협 회의실	충청남도·당진군공무원, 피대위 대표 및 어촌계장	어촌계 총유어업권의 보상청구에 따른 대지급방안 설명
홍성	'08. 1.17	홍성읍 문화회관	전업종 40명	피해보상 절차, 신고서 작성, 증빙자료 확보요령 등 설명 및 질의·응답
보령 홍성	'09. 9. 8	보령시 수협 (회의실)	충청남도·보령시·홍성군 공무원, 보령시·홍성군 피대위 대표 및 어촌계장	어촌계 총유어업권의 보상청구에 따른 대지급방안 설명
전남	'08. 1. 7	목포청	공무원, 수협직원 등 30명	국제기금의 유류오염 보상 제도 설명 등
	'08. 1. 7	전남도 사회의실	지자체, 수협, 어업인 20명	피해보상 절차, 신고서 작성, 증빙자료 확보요령 등 설명 및 질의·응답
	'08. 1.11	전남도 사회의실	공무원, 수협, 어업인 30명	
	'08. 1.29	목포청 회의실	어촌계장, 어업인 등 200명	

구분	일시	장 소	대 상	주 요 내 용
전남	'08. 4.16	무안 승달회관	무안·영광·신안지역 어민 등 250명	특별법시행령 설명 및 질의응답
	'08. 6.20	신안군청 대회의실	피대위·지자체관계자 및 김양식업자 등 80명	김양식업 피해보상 청구방법 등 설명
	'08. 9.24	전남도청	피해주민단체 및 지자체 관계자 등	대부지원 기준 및 절차
	'09. 3.17	영광수협	영광지역 대위 및 서베이어 등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관련 신청요령 및 질의응답
	'09. 6.17	전남도청 서재필실	전남·무안·영광·신안 지자체 및 피대위 등	대부기준 등 개선방안 설명
	'09. 9. 3	전남도청	전남·무안·영광·신안 지자체 및 피대위 등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관련 주민 설명회
전북	'09. 3.16	전북도청	지자체, 피대위 및 서베이어 등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관련 신청요령 및 질의응답
	'09. 6.16	부안수협	전북·군산·부안 지자체 및 피대위 등	대부기준 등 개선방안 설명
	'09. 9.15	군산시 수협 어촌계 협의회	전라북도·군산시·부안 군공무원, 피대위 대표 및 어촌계장	어촌계 총유어업권에 대한 대지급방안 설명 등

1.7 교훈과 과제

사고발생 직후 해양수산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방제대책본부 설치, 사고지역 현장지원반 운영, 특별재난지역선포, 신속한 사고선박의 구난 및 방제조치, 사고발생 당일 출어자제 및 유류에 오염된 수산물의 유통·소비에 대한 조치, 손해 배·보상 청구에 관한 주민홍보 및 행정지원 등 사고수습 노력은 일부 지역적인 논란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시의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은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된다.

첫째, 해상에서의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유출유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출유 확산 예측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고, 대규모 유류오염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환경피해 민감해역 및 방제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동단계에서 유출유의 확산 예측을 통해 어장, 생태계 보호구역 등 환경 민감 해역으로의 확산 및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여 유류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고선박의 압류조치로 인하여 2007년 말까지 발생한 방제 인건비를 2008년도 설날 전에 지급하기로 선주측과 협의하였고, 방제작업에 소요된 자재비 등을 6개월 안에 배상받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그 이후의 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받는 것을 합의한 효과를 보았고,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촉진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그러나 사고선박에 대한 압류조치로 인하여 국제협약에 가입된 여러 국가 및 국제기구(IMO) 등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출어자제 및 조업재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의한 출어자제 조치는 사고발생 직후부터 2008년 4월 17일까지 지속되었다. 게다가 특정지역(태안군 소원면, 원북면)의 경우 2008년 9월 3일에 이르러 마을·맨손·나잠어업에 대한 조업재개가 발표되었다.

출어자제 조치에 대하여 국제기금측과 우리 정부의 견해 차이, 즉 과학적 관점에서 조업자제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국제기금측과 방제진행상황 및 사고해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적 요인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한국정부측간에 견해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취한 출어자제 조치는 피해어업인 보상금액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국제기금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정부가 취한 출어자제 조치는 합리적이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자료, 모니터링 자료 등 각종 근거를 토대로 국제기금이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제기금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 및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피해주민들에게 긴급생계안정자금이 지급되었고, 각종 금융 및 세제지원 혜택, 공공근로사업 등이 피해지역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만은 사실이지만, 당시 긴급생계안정자금 집행과

관련 세부적인 집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집행기준을 누가 마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논란이 있었고, 그로 인해 집행이 다소 늦어진 점은 재난대비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이번 사고 수습과정에서 피해주민들에게 긴급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한 사례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정부가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유사사고 발생시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가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국제기금 및 선주보험사 등의 대응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국제기금측은 유조선 보험사와 협의하여 클레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한국에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와 관광클레임 사무소를 각각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신속한 접수 및 사정을 위한 전문가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국제유조선연맹(ITOPF, The International Tanker Owners Pollution Federation Limited, 이하 'ITOPF'라 함)뿐만 아니라, 현지의 전문가들(코모스, 협성)을 활용하여 사정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2.1 1차 협력계약의 배경 및 체결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당시에 미국(국제기금 협약국은 아님)에서 한진해운 용선선박의 오염사고와 관련한 선박억류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사고선박인 허베이 스피리트호를 압류하여 선주에게 배상금 우선 지급 및 보상기간 단축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압류조치를 하더라도 사고선박은 선주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법원이 이를 인정할 가능성이 적으며, 실질적인 배상금은 관련 법률로 보장되므로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 2007년 12월에 발생한 방제비용과 우심지역 굴양식장 철거비용 마련에 대한 지역사회의 주장은 계속 증대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사고 이후 해양경찰과 더불어 방제작업을 실시해 온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현 해양환경관리공단)은 2007년 12월 24일 오염사고 방

제비용의 확보를 위해 대산항에 정박하고 있던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대한 선박의 임의경매 및 감수보존처분을 서산지원에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은 압류선박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동 조치 이후 유조선 선주 및 선주 보험사측과 방제조합 및 해양수산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2007년 12월 27일 긴급 업무협의를 개최하였고, 양측은 수차례 긴급 업무협의를 통해 협력계약서의 토대를 마련하여 2008년 1월 5일 1차 협력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부록 2> 1차 협력계약서’ 참조).

1차 협력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2008년 1월 15일 선주보험사와 국제기금은 공동으로 피해보상 청구서 수령을 위한 사무소를 개설기로 합의하고, 동 사무소의 연락처를 알리는 안내문을 2008년 1월 24일자 주요 일간지(조선, 동아 등)에 게재하였다. 이후 방제인건비 등 2007년 12월분 방제비용 중 주민 인건비 100%와 민간방제비용 일부를 우선 지급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8년 2월초부터 선주보험사의 지급이 개시되었고, 24개 클레임에 대한 인건비 9,725백만원과 방제조합 및 방제업체의 방제비용에 대한 일부 선지급금 1,487백만원 등 약112억원이 2008년 3월초까지 지급되었다.

1차 협력계약서를 통해 선주측 배상금 약112억원이 지급됨에 따라 선주보험사는 피해 배·보상금 지급에 적극 개입하게 되었고, 1차 협력계약은 향후 결정될 국제기금의 지급률에도 불구하고 선주측 지급범위 내에서 추후 사정액 100%를 일괄 지급하기로 하는 2차 협력계약서 체결의 계기가 되었다.

2.2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 개설 및 운영개시

2.2.1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 개설

1차 협력 계약체결 이후 2008년 1월 15일 정부와 선주보험사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한 원활한 손해 배·보상을 위해 국내 사무소를 설립기로 합의하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선주, 선주의 유류오염손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자인 아슈어란스 포레니겐 스컬드(겐지디그) [Assurance foreningen SKULD(Gjensidig)] 및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이 주체가 되어 2008년 1월 24일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이하 ‘HS센터’라 함)”를 개설하였다.

이와 같은 HS센터의 개설로 인해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

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비로소 유류오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HS센터에 배·보상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2.2.2 HS센터 운영

현재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HS센터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손해 배·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및 선주보험사의 국내 공식창구로서 손해 배·보상청구 안내 및 접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손해 배·보상청구방법, 손해사정절차 등의 안내 및 청구서 접수 등과 같은 주요기능 외에 피해보상 청구 자료의 전산시스템 입력 및 선주·선주보험사·국제기금·ITOPF·조사기관(KOMOS, 협성검정, L&R 등)⁸⁾에 피해보상청구 자료를 송부하는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3. 피해지역 주민의 동향 및 대응

3.1 피해지역 주민동향 및 주장

3.1.1 유류사고발생 초기 주민동향 및 주장

사고발생 3개월이 경과해도 조업중단이 장기화되고 서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경기침체, 생계불안 가중 등을 호소하며 일부 주민의 자살 등의 극단적인 행동 및 지역별·업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다. 특히, 유류피해와 관련하여 국제기금에서 손해 보상이 확실시 되고 있는 방제비 중 주민인건비(지역주민 방제활동비)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조속한 재기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특별 지원대책을 강력히 요구

8) ① KOMOS, 협성검정 : 국제기금측이 HS센터에 청구된 손해배상 청구액(관광분야 제외)에 대해 1차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조사분야 : KOMOS(방제작업분야 및 양식수산업), 협성검정(맨손어업 등 신고어업)]

② L&R : 관광분야 청구액을 사정하기 위해 국제기금측에 의해 지정된 영국의 관광클레임컨설팅 전문회사(스파크인터내셔널 등을 국내 파트너로 지정·운영, 태안 현지)

하면서도, 정부에서 지급한 생계안정자금 배분문제, 피해보상 청구와 관련하여 지역별, 업종별로 갈등 양상이 다수 표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별, 업종별 피해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아울러 정부의 선보상과 삼성중공업측의 무한책임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지난 2008년 2월 29일 삼성중공업측의 1천억원 출연 발표에 강력히 반발하였다.⁹⁾ 특히 국제기금측의 3,000억원 초과하는 피해추정액 발표와 관련하여 총 보상규모가 피해추정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측의 크레인 선박은 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고 기상악화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항 중 피항 중인 유조선에 충돌사고를 야기했으므로 무한책임보상을 해야 하며, 삼성중공업측과 피해주민 대표들간의 원만한 대화를 위해 정부에서 중재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의 집회 및 시위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였으나, 향후에는 불법·기습으로 삼성 본사를 점거하여 피해주민의 뜻을 관철시킬 계획임을 천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삼성중공업의 출연금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2008년 4월 23일 출연금 관련 의견수렴을 위하여 피해지역 지자체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의견수렴 결과, 피해주민들은 피해복구·보상청구 및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삼성중공업 출연금 규모가 완전한 피해보상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매우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출연금 수렴을 반대하였다. 이후 이에 대한 논의는 중단되었다.

유류사고발생 100일 이후에는 방제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특별법 국회통과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높은 기대감속에 점차 지역안정을 되찾아 가는 모습이었으며, 조업재개와 함께 관광객이 증가되면서 침체되었던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아 가는 등 상황이 점차 호전되었다. 또한 비록 특별법이 주민의 요구와는 차이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제정 및 지원을 기대하고,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피해지역에 대한

9) 2008년 1월 23일 정부는 삼성중공업측에 피해지역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합리적 기여방안을 촉구하였다. 당초 삼성중공업 측은 상법에 규정된 선주책임제한 범위인 50억원 이내에서만 피해보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국토해양부는 50억원이내 배상만으로는 안 된다며,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다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 삼성중공업측은 1천억원 출연을 발표하였다.

과감한 투자와 함께 무자료, 무허가 맨손어업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의 주장이 변화되었다.

3.1.2 각종 시위도중 제시된 피해주민의 주장

(2008년 5월 6일) 전주연합회 회원 28명이 삼성중공업을 향의 방문하여 유류오염사고 후 조업을 하지 못한 만큼 선박을 매입하거나, 피해가 가장 큰 선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하고 어업허가증·선적증서 795척분을 삼성중공업에 제출하였다.

(2008년 5월 15일) 나잠어업 종사자인 소원 해녀영어조합법인 소속(태안 소원면) 해녀 30명이 삼성중공업을 향의 방문하여 생계지원과 해녀들이 채취하는 수산물을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측은 회사차원의 공식적 구매는 할 수 없으며, 사원들에 의한 개인적 구매는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삼성중공업의 계열사인 에버랜드 예식사업부에서 이들의 생산물을 1,000만원 정도 구매하였다.

(2008년 5월 29일) 태안군 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는 삼성 본관 앞 집회에서 삼성과 정부의 무한책임 및 무한보상, 특별법 개정 및 유류특검 실시, 특별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정부가 나서서 피해주민들과 삼성중공업간 합의 유도, 엑스포 등 정부 차원의 세계적 행사 개최, 관광명소 계획수립, 생계형 현금지원·세금감면·대출 실시, 태안 먹거리 알리기 캠페인을 위한 특별예산편성 및 매스컴 홍보, 관광문화·레저 및 첨단기업 인프라 구축, 생태투어·그린투어 등 프로그램 개발, 규제완화로 관광개발 여건 조성 등이었다.

한편, 태안읍 유류피해대책위원회 등 피해관련 단체는 종로구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면담요청 및 공개질의를 하면서, 합리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조사 및 선 보상 실시, 피해 주민들의 손해 사정 및 소송비용 지원, 사고 발생 후 환경복원과 피해주민 건강대책 마련, 가해기업에 대한 책임 및 징벌 요구, 사고 묻고 징벌조치 등을 요구하였다.

(2008년 6월 3일) 태안군 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가 삼성중공업에 사고관련 서면요구서를 발송하였는데, 여기서의 요구사항은 태안군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성명 요구, 매월 정례회의 개최 등 대화창구 일원화 운영 요구 등이었다.



<그림 1-11> 대정부 및 삼성중공업 관련 피해주민 집회현장

3.2 방제활동 참여 및 장비지원

기름유출사고의 피해지역 주민들은 피해당사자로서 직접 방제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식사와 간식,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방법으로 방제활동에 직·간접 참여하였다.

방제기간 내내 지역주민들의 집과 화장실은 개방되었고, 각급 학교의 운동장은 주차장으로, 교실은 자원봉사자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었으며, 지역운송회사들은 버스를 지원하는가 하면, 어부들은 어선을 지원하였다. 이렇게 방제활동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의 수는 사고 직후부터 2008년 10월 10일까지 모두 563,896명(도서지역 동원 인력수 240,562명은 제외)에 달했다. 또한, 2008년 10월 10일까지 피해어민들이 지원한 어선의 수는 11,444척에 달했으

며, 트랙터는 1,304대, 경운기는 2,842대 등이었다.



<그림 1-12> 피해지역 주민의 방제작업 참여현장

아래의 <표 1-13>은 2008년 10월 10일까지의 방제인력 및 장비 투입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해상방제를 위해 투입된 총 선박수는 20,210척으로 나타났고, 해안방제를 위해 투입된 장비는 총 28,973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육상에 투입된 인력은 총 2,132,322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중 자원봉사자의 수가 1,226,730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수가 563,896명, 군인 152,69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3> 방제인력 및 장비 투입현황

해상(선박) 투입현황(단위: 척수/대)							
계	해경	해양환경 관리공단	해군	어업 지도선	민간업체	기타 (어선)	헬기
20,210	6,630	889	723	97	81	11,444	346

해안 방제장비 투입현황(단위: 대)

계	트랙터	포크레인 (굴삭기)	크레인	경운기	페이로드	트럭	세척기
28,973	1,304	5,559	143	2,842	90	9,991	9,044

육상 인력 투입현황(단위: 명)

계	해양 경찰	경찰청	해양환경 관리공단	주민	군인	업체	자원 봉사	지자체
2,132,322	17,460	32,356	6,663	563,896	152,695	55,838	1,226,730	76,684

※ 도서지역 인력동원 현황 : 240,562명

3.3 피해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사고발생 이후 충남지역과 전남지역 및 전북지역에서는 지역별 혹은 업종별로 총 57개의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중 충남지역에서 35개의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전남(7개) 및 전북지역(14개)에서도 21개의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수산분야의 피해대책위원회 수는 16개, 비수산분야의 피해대책위원회 수는 8개, 수산 및 비수산분야를 종합한 피해대책위원회의 수는 32개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 수를 살펴보면 태안지역에서 가장 많은 15개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다음으로 전북 부안지역에서 9개 피해대책위원회, 보령지역에서 7개 피해대책위원회, 서천지역에서 4개 피해대책위원회, 당진 및 홍성지역에서 각각 3개 피해대책위원회, 전북 군산 및 전남 영광지역에서 각각 2개 피해대책위원회, 기타 지역에서도 1개 이상의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조사와 대책 및 배·보상을 위해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의 가시적인 역할 및 활동이 없어 실제 피해복구 및 배·보상시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다.¹⁰⁾ 실제 서산수협 관계자의

면담('08.12.15)에 따르면 피해대책위원회의 난립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피해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해관계에 따른 피해대책위원회의 구성으로 수십 개의 피해대책위원회가 난립하고, 무자격 조사기관이 선정되어 피해민들에게 2차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가 없는 주민들의 피해신고로 조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실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운데 2008년 2월 12일 태안지역의 15개 피해대책위원회가 「태안군 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로 통합되었다. 그 이유는 피해대책위원회가 단일화되지 않으면 향후의 피해보상과 복구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특히 충청남도 서해안 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피해조사배상지원팀에서 통합된 연합 피해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표 1-14> 충남지역 피해대책위원회(35개)

공식명칭	약칭	관할지역	피해접수	대표자	손해사정업체
서산수협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위원회	서산수협 피해대책위원회	태안 서산	수산	이원재	한국농촌공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전 피해민 손해배상 대책위원회	전피해민 손해배상대책위원회	태안 서산	수산 비수산	성정대	나사손해사정
선주피해대책위원회	선주피해대책위원회	태안	수산	김진권	비선임
태안남면수협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어업피해배상대책위원회	태안남면수협 피해대책위원회	태안	수산	강학순	비선임
안면도수협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위원회	안면수협 피해대책위원회	태안	수산	김상욱	한국감정원 한국어업피해연구소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피해민원이대책위원회	원북·이원대책위원회	태안	수산	백영곤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 군산대수산과학연구소
태안읍 유류피해 대책위원회	태안읍 유류피해대책위원회	태안	수산 비수산	노진용	공익소송대리인단 (대한감정평가법인)
(사)한국해산종묘충남협회 유류피해비상대책위원회	(사)한국해산종묘충남협회 유류피해비상대책위원회	태안	수산	김종문	(주)메이텍부설 생태환경연구소

10) 연합뉴스, 2007년 12월 26일자.

공식명칭	약칭	관할 지역	피해 접수	대표자	손해사정업체
안면읍 비수산분야 비상대책위원회	안면읍비수산분야 비상대책위원회	태안	수산 비수산	박남규	법무법인한승 & 굿모닝코리아 한국손해사정사회 (공동추진)
고남면 비수산분야 대책위원회	고남면비수산분야 대책위원회	태안	수산 비수산	박종민	
남면 비수산분야 비상대책위원회	남면비수산분야 비상대책위원회	태안	수산 비수산	이삼형	
근흥면 유류피해 비상대책위원회	근흥면비수산분야 비상대책위원회	태안	수산 비수산	최한진	
소원면 비수산 대책위원회	소원면비수산분야 비상대책위원회	태안	수산 비수산	국응복	
원북면 비수산업분야 비상대책위원회	원북면비수산분야 비상대책위원회	태안	수산 비수산	최영목	
이원면 비수산분야 비상대책위원회	이원면비수산분야 비상대책위원회	태안	수산 비수산	정광훈	
보령지역 유류피해대책위원회	보령지역 유류피해대책위원회	보령 홍성	수산	최대운 유병두	법무법인충정 (나사손해사정)
원유유출 보령피해대책위원회	원유유출보령 피해대책위원회	보령	비수산	박치규	장기옥법률사무소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
보령제조업 유류피해대책위원회	보령제조업 피해대책위원회	보령	비수산	최재웅	유로드림 컨소시엄
보령시음식숙박택시업 유류피해대책위원회	보령음식,숙박,택시업 피해대책위원회	보령	비수산	최병선	법무법인충정 (나사손해사정)
천북 손해배상 대책위원회	천북손해배상 대책위원회	보령	수산 비수산	최명수	순윤하&안정한법률 사무소(나사손해사정)
천북 굴 바지락 유류피해대책위원회	천북굴,바지락 유류피해대책위원회	보령	수산	양영돌	장기옥법률사무소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
오천면 피해주민 대책협의회	오천면 유류피해대책위원회	보령	수산 비수산	박윤규	비선임
서천 서부수협 유류오염사고 피해대책위원회	서천서부수협 피해대책위원회	서천	수산 비수산	김영규	나사손해사정
서천군 수협피해대책위원회	서천군수협 피해대책위원회	서천	수산 비수산	정원문	유로드림 컨소시엄
서면 어선어업 피해대책위원회	서면어선어업 피해대책위원회	서천	수산 비수산	조덕환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
서천군 비수산분야 피해대책위원회	서천군비수산분야 대책위원회	서천	비수산	조희연	나사손해사정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 당진수협유류피해대책위원회	당진수협 피해대책위원회	당진	수산	양명길	한국어업피해연구소 한국해양연구원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 당진군피해민대책위원회	당진피해민 대책위원회	당진	수산 비수산	김갑수	나사손해사정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 당진군비수산손해배상대책위원회	당진비수산분야 사고대책위원회	당진	비수산	문종문	나사손해사정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백서

공식명칭	약칭	관할 지역	피해 접수	대표자	손해사정업체
서산시비수산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피해배상대책위원회	비수산분야서산 피해대책위원회	서산	비수산	김종우	나사손해사정
서산시수산분야유류오염사고 피해배상대책위원회	수산분야서산 피해대책위원회	서산	수산	안도근	한국농촌공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서해안유류피해홍성군 피해대책위원회	서해안유류피해홍성군 피해대책위원회	홍성	수산 비수산	김선태	유로드림 컨소시엄
홍성관광수산피해대책위원회	홍성관광수산 피해대책위원회	홍성	수산 비수산	이상직	장기옥법률사무소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
광천특산물(토굴새우젓,조선킴) 영어조합법인피해대책위원회	광천특산물영어조합 법인피해대책위원회	홍성	비수산	양해성	유로드림 컨소시엄
	전국양만피해보상 대책위원회	충남	수산	신용호	유로드림 컨소시엄

<표 1-15> 충남지역 피해주민연합회(5개)

약칭	관할지역	회장
보령시 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	보령시	박덕규
서산시 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	서산시	박종권
서천군 유류피해주민단체연합회	서천군	정원문
홍성 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	홍성군	김옥태
태안군 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	태안군	박남규, 김진권

<표 1-16> 전남지역 피해대책위원회(7개)

공식명칭	약칭	관할 지역	피해 접수	대표자	손해사정업체
미신고 단체	신안수협 피해대책위원회	신안	수산	오무정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목포대,전남대참여
미신고 단체	신안비수산 피해대책위원회	신안	비수산	최정수	유로드림 컨소시엄
영광군 유류피해 대책위원회	영광수협 피해대책위원회	영광	수산 비수산	조병남	유로드림 컨소시엄
법성포굴비특품사업단 피해보상대책위원회	법성포굴비 피해대책위원회	영광	수산	오진근	유로드림 컨소시엄
미신고단체	목포수협 피해대책위원회	무안 함평	수산 비수산	김상현	(주)메이텍부설 생태환경연구소
진도군 유류오염사고 피해대책위원회	진도수협 피해대책위원회	진도	수산	김향동	비선임
전남통합피해주민단체위원회	전남통합피해 주민단체위원회		수산 비수산	석오송	유로드림 컨소시엄

<표 1-17> 전북지역 피해대책위원회(14개)

공식명칭	약칭	관할 지역	피해 접수	대표자	손해사정업체
부안 수협 피해대책위원회	부안수협 피해대책위원회	부안	수산 비수산	김진태	나사손해사정
장북 피해어민 대책위원회	부안군장북 피해대책위원회	부안	수산 비수산	이수호	나사손해사정
청언석 피해민 대책위원회	부안군청언석 피해대책위원회	부안	수산 비수산	임면호	나사손해사정
장신 피해민 대책위원회	부안군장신 피해대책위원회	부안	수산 비수산	김동택	나사손해사정
백련 피해민 대책위원회	부안군백련 피해대책위원회	부안	수산 비수산	권영일	나사손해사정
변산 피해민 대책위원회	부안군변산 피해대책위원회	부안	수산 비수산	김재권	나사손해사정
줄포보안 피해대책 위원회	부안군줄포보안 피해대책위원회	부안	수산 비수산	김인술	나사손해사정
진서 피해대책위원회	부안군진서 피해대책위원회	부안	수산	김정희	대전손해사정
계화면 피해대책위원회	부안군계화면 피해대책위원회	부안	수산	강해진	대전손해사정
고창군 피해주민단체위원회	고창군유류오염사고 피해대책위원회	고창	수산 비수산	김요병	유로드림컨소시엄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 사고피해대책위원회	군산수협 피해대책위원회	군산	수산 비수산	임성식	나사손해사정
군산 어선어업 손해배상 대책위원회	군산어선어업 손해배상대책위원회	군산	수산 비수산	최용철	나사손해사정
미신고단체	김제시 피해주민단체위원회	김제	수산 비수산	노경호	유로드림컨소시엄
전라북도 피해보상대책위원회	전북유류 피해대책위원회	전북	수산 비수산	신석찬	유로드림컨소시엄

3.4 손해사정인의 선임 및 피해조사활동 전개

3.4.1 손해사정인별 피해주민단체 및 피해신고 현황

대부분의 피해주민 및 피해대책위원회는 보상청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손해사정업체 또는 법무법인 등 전문기관을 선임하였다.

서해안 유류유출사고로 인하여 피해주민 단체가 선임한 손해사정인은 나사손해사정(법무법인 충정, 손윤하 & 안정환법률사무소), 한국농촌공사·대화감

정평가법인, 법무법인한승 & 굿모닝코리아 한국손해사정사회, 유니코 & 로이드 드림컨소시엄, 한국어업피해연구소,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군산대, 장기육법률사무소), 한국어업피해연구소, 한국감정원, 공익소송대리인단, 대한감정평가법인, (주)메이텍부설 생태환경연구소, 대전손해사정, 미래세한감정평가법인 등이다.

<표 1-18> 손해사정법인별 피해주민단체 및 피해신고 현황(2008.12.31 기준)

손해사정법인별	피해주민 단체수	피해신고 건수
합 계	55(100%)	113,664(100%)
나사손해사정 (법무법인 충정, 손윤하 & 안정환법률사무소)	18 (32.7%)	34,146 (30.0%)
한국농촌공사 대화감정평가법인	2(3.6%)	10,795(9.5%)
법무법인한승&굿모닝코리아 한국손해사정사회	7 (12.7%)	8,704 (7.7%)
유니코&로이드 드림컨소시엄	11(20.0%)	33,743(29.7%)
한국어업피해연구소	1(1.8%)	6,573(5.8%)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 군산대, 장기육법률사무소	5 (9.1%)	4,486 (3.9%)
한국어업피해연구소, 한국감정원	1(1.8%)	4,396(3.9%)
공익소송대리인단, 대한감정평가법인	1(1.8%)	2,296(2.0%)
(주)메이텍부설 생태환경연구소	2(3.6%)	2,740(2.4%)
대전손해사정	2(3.6%)	1,353(1.2%)
미래세한감정평가법인	1(1.8%)	2,920(2.6%)
비선임	4(7.3%)	1,512(1.3%)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전체 55개 피해주민 단체들 중 나사손해사정을 선임한 피해주민단체는 18개 단체(32.7%)이며, 다음으로 유니코 & 로이드 드림컨소시엄을 선임한 피해주민단체는 11개 단체(20%), 법무법인 한승 & 굿모닝코리아 한국손해사정사회를 선임한 피해주민단체는 7개 단체(12.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지 않고, 피해주민단체가 직접 피해신고를 한 곳

도 4개 단체(태안 선주피해대책위원회, 태안 남면수협 피해대책위원회, 오천면 유류피해대책위원회, 진도수협 피해대책위원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주민단체가 선임한 손해사정인들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접수한 피해신고 건수는 총 113,664건인데, 이 중 전체 피해신고 건수의 30%에 해당하는 34,146건이 나사손해사정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전체의 29.7%에 해당하는 33,743건이 유니코 & 로이드 드림컨소시엄을 통해 피해신고가 이루어졌다. 그 외 한국농촌공사·대화감정평가법인을 통해 10,795건(9.5%), 법무법인 한승 & 굿모닝코리아 한국손해사정사회를 통해 8,704건(7.7%)의 피해신고가 이루어졌다.

피해신고 건수 대비 손해사정인 수를 볼 때, 손해사정인 1개당 1개의 피해주민단체가 평균 2,199건의 피해신고를 한 것이다.

반면,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지 않은 곳에서는 1개 피해주민단체당 378건의 피해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를 볼 때, 전문손해사정인을 선임한 단체에서 보다 더 많은 신고가 접수된 것을 알 수 있다.

3.4.2 피해주민 단체별 피해신고 현황

앞서 기술한 피해대책위원회의 구성과 현황에서 지역별·분야별 현황은 기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선임기간과 피해신고 건수만을 간략히 논의한다.

먼저, 선임기간을 지정하여 손해사정인을 선임한 피해주민 단체 수는 18개 단체이며, 보상금 수령 완료시까지를 선임한 피해주민 단체 수는 32개 단체였다. 또한 선임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정하지 못한 단체(한국해산중요충남협회 유류비상대책위원회)도 1개 있었다.

한편,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장 많은 피해신고를 한 지역 및 피해대책위원회(혹은 피해주민 단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 기간 동안 총 113,66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 이 중 12.1%인 13,728건은 보령 및 홍성지역(보령지역 유류피해대책위원회)에서 나사손해사정사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태안 및 서산(서산수협 피해대책위원회)지역에서 한국농촌공사 및 대화감정평가법인이 신고한

10,795건(9.5%), 신안(신안 비수산피해대책위원회)지역에서 유니코 & 로이드 드림컨소시엄이 신고한 9,782건(8.7%)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피해신고 건수가 5천건이 넘는 지역 혹은 피해대책위원회는 당진수협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한국어업피해연구소가 6,573건(5.8%)을 신고하였고, 고창군 유류오염사고 피해대책위원회와 영광수협 피해대책위원회 및 서천군 수협피해대책위원회 등에서 유니코 & 로이드드림컨소시엄이 각각 6,075건(5.3%)과 5,292건(4.7%) 및 5,183건(4.6%) 등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신고가 극히 미미한 피해대책위원회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안군 창북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나사손해사정사가 11건(0.01%)만을 신고하였으며, 한국해산종묘충남협회 유류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임받은 (주)메이텍 부설 생태환경연구소는 52건(0.05%)을 신고하였고, 홍성지역의 광천특산물 영어조합법인 피해대책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유니코 & 로이드 드림컨소시엄도 83건(0.07%)만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래의 <표 1-19>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피해신고 접수를 받은 결과이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간이 경과하면서 손해사정인의 피해신고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2009년 10월까지 한국해사감정에 더 많은 피해신고가 접수 및 사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9> 손해사정법인·피해주민단체별 피해신고 현황(2008.12.31 기준)

수탁업체 (공동참여)	피해주민단체 (지역피대위 '약칭')	접수 지역	접수 분야	대표자 (위원수)	선임기간	피해신고 건수
나사손해사정 (법무법인충정, 윤하&안정환 법률사무소) (34,146건)	전피해민손해 배상대책위원회	태안 서산	수산 비수산	성정대 (20)	'08.3.1- '09.9.30	4,571
	비수산분야서산 피해대책위원회	서산	비수산	김종우 (7)	'08.3.13- '09.9.12	323
	서천서부수협 피해대책위원회	서천	수산 비수산	김영규 (20)	'08.2.14- '09.2.13	2,991
	서천군비수산 분야대책위원회	서천	비수산	조희연 (17)	'08.2.22- '09.8.21	759
	보령지역유류 피해대책위원회	보령 홍성	수산	최대윤 (45)	보상금수령 완료시까지	13,728 (12.1%)
	보령음식,숙박,택시 업피해대책위원회	보령	비수산	최병선 (10)	보상금수령 완료시까지	719
	천북손해 배상대책위원회	보령	수산 비수산	최명수 (6)	보상금수령 완료시까지	712

수탁업체 (공동참여)	피해주민단체 (지역피대위 ‘약칭’)	접수 지역	접수 분야	대표자 (위원장)	선임기간	피해신고 건수
	당진피해민 대책위원회	당진	수산 비수산	김갑수 (10)	보상금수령 완료시까지	482
	당진비수산분야 사고대책위원회	당진	비수산	문종문 (14)	보상금수령 완료시까지	1,007
	군산수협 피해대책위원회	군산	수산 비수산	임성식 (13)	보상금수령 완료시까지	1,163
	군산어선어업손해 배상대책위원회	군산	수산 비수산	최용철 (2)	보상금수령 완료시까지	2,386
	부안수협 피해대책위원회	부안	수산 비수산	김진태 (10)	‘08.4.1- ‘09.8.31	2,122
	부안군창북 피해대책위원회	부안	수산 비수산	이수호 (10)	‘08.5.15- ‘09.10.14	11 (0.01%)
	부안군청언석 피해대책위원회	부안	수산 비수산	임면호 (20)	‘08.5.23- ‘09.10.22	592
	부안군장신 피해대책위원회	부안	수산 비수산	김동택 (11)	‘08.5.13- ‘09.10.12	381
	부안군백련 피해대책위원회	부안	수산 비수산	권영일 (11)	‘08.5.16- ‘09.10.15	410
	부안군변산 피해대책위원회	부안	수산 비수산	김재권 (22)	‘08.5.15- ‘09.10.14	1,621
	부안군줄포보안 피해대책위원회	부안	수산 비수산	김인술 (19)	‘08.5.26- ‘09.10.25	168
유니코&로이드 드림컨소시엄 (33,743건)	서천군수협 피해대책위원회	서천	수산 비수산	정원문 (16)	보상금수령 완료시까지	5,183 (4.6%)
	보령제조업 피해대책위원회	보령	비수산	최재웅 (12)	보상금수령 완료시까지	158
	서해안유류피해홍성 군피해대책위원회	홍성	수산 비수산	김선택 (12)	보상금수령 완료시까지	670
	광천특산물영어로조합 법인피해대책위원회	홍성	비수산	양해성 (10)	보상금수령 완료시까지	83 (0.07%)
	전국양만피해 보상대책위원회	충남	수산	신용호 (15)	보상금수령 완료시까지	1,800
	고창군유류오염사고 피해대책위원회	고창	수산 비수산	김요병 (5)	보상금수령 완료시까지	6,075 (5.3%)
	김제시피해주민 단체위원회	김제	수산 비수산	노경호 (12)	보상금수령 완료시까지	2,923
	전북유류피해 대책위원회	전북	수산 비수산	신석찬 (6)	보상금수령 완료시까지	1,495
	영광수협 피해대책위원회	영광	수산 비수산	조병남 (15)	보상금수령 완료시까지	5,292 (4.7%)
	법성포굴비 피해대책위원회	영광	수산	오진근 (6)	보상금수령 완료시까지	282
	신안비수산 피해대책위원회	신안	수산 비수산	최정수 (10)	보상금수령 완료시까지	9,782 (8.7%)

수탁업체 (공동참여)	피해주민단체 (지역피대위 ‘약칭’)	접수 지역	접수 분야	대표자 (위원장)	선임기간	피해신고 건수
법무법인한승& 굿모닝코리아 한국손해사정사회 (8,704건)	안면읍비수산분야 비상대책위원회	태안	수산 비수산	박남규 (12)	보상금수령 완료시까지	8,704
	고남면비수산분야 대책위원회	태안	수산 비수산	박종민 (9)	보상금수령 완료시까지	
	남면비수산분야 비상대책위원회	태안	수산 비수산	이삼형 (16)	보상금수령 완료시까지	
	근흥면비수산분야 비상대책위원회	태안	수산 비수산	최한진 (12)	보상금수령 완료시까지	
	소원면비수산분야 비상대책위원회	태안	수산 비수산	국응복 (26)	보상금수령 완료시까지	
	원북면비수산분야 비상대책위원회	태안	수산 비수산	최영목 (12)	보상금수령 완료시까지	
	이원면비수산분야 비상대책위원회	태안	수산 비수산	정광훈 (8)	보상금수령 완료시까지	
한국농촌 공사, 대화감정 (10,795건)	서산수협 피해대책위원회	태안 서산	수산	이원재 (46)	‘08.2.5- ‘09.3.30	10,795 (9.5%)
	수산분야서산 피해대책위원회	서산	수산	안도근 (16)	‘08.2.5- ‘09.3.30	-
대일에셋 감정평가법인 군산대, 장기육 법률사무소 (4,486건)	서면어언어업 피해대책위원회	서천	수산 비수산	조덕환 (22)	보상금수령 완료시까지	1,129
	원북·이원 대책위원회	태안	수산	백영곤 (13)	보상금수령 완료시까지	521
	원유유출보령 피해대책위원회	보령	비수산	박치규 (20)	보상금수령 완료시까지	2,213
	천북굴바지락유류 피해대책위원회	보령	수산	양영돌 (8)	보상금수령 완료시까지	382
	홍성관광수산 피해대책위원회	홍성	수산 비수산	이상직 (12)	보상금수령 완료시까지	241
한국감정원 한국어업피해 연구소(4,396건)	안면수협 피해대책위원회	태안	수산	김상욱 (40)	‘08.3.24- ‘09.3.23	4,396
공익소송대리인 단,대한감정 (2,296건)	태안읍유류 피해대책위원회	태안	수산 비수산	노진용 (23)	보상금수령 완료시까지	2,296
한국어업피해 연구소(6,573건)	당진수협 피해대책위원회	당진	수산	양명길 (15)	‘08.3.1- ‘09.2.28	6,573 (5.8%)
(주)미래재한 감정평가법인 (2,920건)	신안수협 피해대책위원회	신안	수산 비수산	오무정 (15)	‘08.1.26- ‘09.1.30	2,920

수탁업체 (공동참여)	피해주민단체 (지역피대위 ‘약칭’)	접수 지역	접수 분야	대표자 (위원수)	선임기간	피해신고 건수
(주)메이텍부설 생태환경연구소 (2,740건)	한국해산종묘충남협회 유류비상대책위원회	태안	수산	신용호 (15)	-	52 (0.05%)
	목포수협 피해대책위원회	무안 함평	수산 비수산	김상현 (25)	보상금수령 완료시까지	2,688
대전손해사정 (1,353건)	부안군진서 피해대책위원회	부안	수산	김정희 (6)	‘08.12.5- ‘09.12.31	296
	부안군계화면 피해대책위원회	부안	수산	강해진 (10)	‘08.12.5- ‘09.12.31	1,057
비선임 (1,512건)	선주 피해대책위원회	태안	수산	김진권 (47)	-	-
	태안남면수협 피해대책위원회	태안	수산	강학순 (14)	-	677
	오천면유류 피해대책위원회	보령	수산	박윤규 (22)	-	-
	진도수협 피해대책위원회	진도	수산	김향동 (30)	-	-
	영광군(개별접수)	영광	수산	-	-	835

제 3 절 피해지역 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1. 긴급생계안정자금의 지원

1.1 지원배경 및 경위

정부는 2007년 12월 7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자 4일 후인 2007년 12월 11일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근거하여 충남의 피해지역(6개 시·군 :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을 제1차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대통령 공고 제204호, 2007.12.13).

충남의 사고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후 피해주민이 생계에 곤란을 겪자 정부는 2007년 12월 14일 태안지역 기름유출사고 관련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충남 특별재난지역에 긴급 생계지원금 300억원을 지원기로 결정하

였다. 그리고 정부는 2007년 12월 24일 충남에 생계안정자금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고, 2007년 12월 28일 지원금을 배정하였다.

한편, 충남은 피해가구가 1만 5천 가구에서 3만 가구로 배증함에 따라 2008년 1월 9일 추가로 생계자금 300억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전남도 타르불에 의한 피해지역 8,400가구에 대한 생계비 300억원의 지원을 2008년 1월 15일자로 요청하였다.

한편, 정부는 동 유류오염사고로 전남의 양식장 및 어장 등에 피해가 발생하고 타르불의 확산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자, 2008년 1월 18일 전남의 피해지역(3개 시·군 : 신안군, 무안군, 영광군)을 제2차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대통령 공고 제207호, 2008.1.23).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1월 25일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충남에 300억원과 전남에 168억 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결정하고, 2008년 1월 31일 충남과 전남에 추가자금을 각각 배정하였다.

정부가 충남에 1차로 생계안정자금 300억원을 배정한 후 약 20여일이 지난 2008년 1월 21일 충남은 6개 시·군과의 생계안정자금 지급기준을 합의하고 시·군에 배정하였다. 그 후 충남의 6개 시·군은 2008년 1월에서 4월까지 자체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지급을 완료하였다.

전남은 충남과는 달리 3개 시·군과 생계안정자금의 지급·배분기준을 초기에 합의하였다('08.1.25 정부지원금 결정, '08.1.28 전남 지급기준 합의).

2008년 1월 31일에 정부의 2차 지원금 468억원(충남 300억원, 전남 168억원)이 충남과 전남에 각각 배정되자, 충남과 전남은 즉시 관련 시·군에 이를 배정하였고, 관련 시·군은 2008년 2월에서 5월에 걸쳐 자체적으로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하였다.

1.2 지원기준 및 피해지역별 지원내역

생계안정자금의 지원은 크게 정부에서 지방정부(충남 및 전남)로 송금하고, 지방정부는 다시 이를 시·군으로 송금하며, 시·군에서 자체적인 분배기준에 따라 각 개인으로 배정하는 단계로 진행되었다.

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생계안정자금의 배정은 관계 차관회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지방정부에서 시·군으로 배정하는 기준과 시·군에서 각 개인별로 배정되는 분배기준을 살펴본다.

1.2.1 시·군별 지원기준 및 지원내역

가. 충청남도

충청남도의 시·군별 지원기준에 대한 기본방침은 ① 시·군별 피해정도와 생활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있는 8개 지표(피해정도 6개, 생활수준 2개)를 선정하고, ② 공식통계자료를 근거로 시·군별 점유비율을 산정하고, ③ 각 지표별로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한 3개 대안에 대하여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군별 배분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충남의 “피해정도”를 나타내는 6개 지표는 다음과 같다.

- ① 피해 읍·면 가구 수
- ② 장기간 방제해야 할 해안선 길이(도서포함)
- ③ 피해 해수욕장 개소 수
- ④ 피해 읍·면의 어장면허 면적
- ⑤ 피해 읍·면의 어업종사자 수
- ⑥ 피해 읍·면의 음식·숙박업소 수 등이다.

“생활정도”를 나타내는 2개 지표는 ① 피해 읍·면 기초생활수급자 수, ② 피해 시·군의 재정자립도이다.

<표 1-20>은 6개 피해정도 지표와 2개 생활정도 지표를 가지고 공식통계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각 시·군별 산정지표의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당진군은 수산업 부문의 피해는 제외되고 음식·숙박업소 수만 포함되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높은 점수가 부여되었다.

<표 1-20> 충남 시·군별 산정지표 지수

유 형		계	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	당진
피해정도	피해읍면 가 구 수 (호)	52,407	9,888	9,635	5,725	1,651	25,508	-
		100%	18.8%	18.4%	10.9%	3.2%	48.7%	-
	장기방제 해 안 선 이 길 (도서포함) (km)	181	14	-	-	-	167	-
		100%	7.7%	-	-	-	92.3%	-
	피 해 해수욕장 (개소수)	15	-	-	-	-	15	-
		100%	-	-	-	-	100%	-
	어장면허 면 적 (ha)	12,311	2,045	1,674	2,115	830	5,647	-
		100%	16.6%	13.6%	17.2%	6.7%	45.9%	-
	어 업 가 구 수 (호)	7,347	1,129	931	1,386	480	3,421	-
		100%	15.4%	12.7%	18.9%	6.5%	46.5%	-
생활정도	음 식 숙박업소수 (개소)	1,158	66	157	80	83	667	105
		100%	5.7%	13.5%	6.9%	7.2%	57.6%	9.1%
	기초생활 수급자수 (명)	5,300	1,730	609	696	100	2,165	-
		100%	32%	12%	13%	2%	41%	-
	재 정 자 립 도	-	23.7	34.5	11.9	14.8	20.8	-
		100%	18%	17%	23%	22%	20%	-

<표 1-21>은 6개 피해정도 지표와 2개 생활정도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한 3개의 대안을 표시하고 있다. 제1안, 제2안, 제3안 모두 피해정도 지표와 생활정도 지표에 가중치가 각각 90 및 10이 부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정도 지표 중 “어장면허 면적”과 “음식·숙박업소 수”에서 제1안은 수산업 부문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제2안은 수산업 및 비수산업 부문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제3안은 비수산업 부문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2007년 12월 26일 6개 시·군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제2안으로 협의하였다.

<표 1-21> 충남 시·군별 배분액 산정을 위한 가중치 부여방안

기 준		1안	2안	3안
계		100	100	100
피 해 정 도	소 계	90	90	90
	① 가구수	5	5	5
	② 장기방제 해안선 길이(도서포함)	25	25	25
	③ 피해 해수욕장 수	20	20	20
	④ 어장면허 면적	15	10	5
	⑤ 어업가구 수	10	10	10
	⑥ 음식·숙박업 수	15	20	25
생 활 정 도	소 계	10	10	10
	① 기초생활수급자	5	5	5
	② 재정자립도	5	5	5
대 안 비 교		수산업 부문에 높은 가중치부여	수산업, 비수산업 부문 형평성 유지	비수산업부문에 높은 가중치부여

아래의 <표 1-22>는 위의 제2안에 의해 산정한 각 시·군별 가중치를 보여 주고 있는데, 태안이 69.32로 월등히 많으며 다음 보령(9.71), 서산(7.70), 서천(7.33), 홍성(4.12), 당진(1.82) 순이다. 동 가중치를 300억원에 곱하여 산정한 배분액은 다음과 같다.

● 보령 : $300\text{억} \times 0.0971 = 29.13\text{억원}$	● 홍성 : $300\text{억} \times 0.0412 = 12.36\text{억원}$
● 서산 : $300\text{억} \times 0.0770 = 23.10\text{억원}$	● 태안 : $300\text{억} \times 0.6932 = 207.96\text{억원}$
● 서천 : $300\text{억} \times 0.0733 = 21.99\text{억원}$	● 당진 : $300\text{억} \times 0.0182 = 5.46\text{억원}$

<표 1-22> 충남 시·군별 및 산정지표별 배분을 위한 가중치

시·군별 가중치 항목		계	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	당진
계		100	9.71	7.70	7.33	4.12	69.32	1.82
피 해 정 도	소 계	90	7.21	6.25	5.53	2.92	66.27	1.82
	가 구 수	5	18.8%	18.4%	10.9%	3.2%	48.7%	-
			0.94	0.92	0.54	0.16	2.44	-
	해 안 선 (도서포함)	25	7.7%	-	-	-	92.3%	-
			1.93	-	-	-	23.07	-
	해수욕장	20	-	-	-	-	100%	-
			-	-	-	-	20	-
	어 장	10	16.6%	13.6%	17.2%	6.7%	45.9%	-
			1.66	1.36	1.72	0.67	4.59	-
	어 가	10	15.4%	12.7%	18.9%	6.5%	46.5%	-
			1.54	1.27	1.89	0.65	4.65	-
	음식·숙박	20	5.7%	13.5%	6.9%	7.2%	57.6%	9.1%
			1.14	2.70	1.38	1.44	11.52	1.82
생 활 정 도	소 계	10	2.50	1.45	1.80	1.20	3.05	0
	기초생활	5	32.0%	12.0%	13.0%	2.0%	41.0%	-
			1.6	0.6	0.65	0.1	2.05	-
	재정자립	5	18.0%	17.0%	23.0%	22.0%	20.0%	-
			0.9	0.85	1.15	1.1	1.0	-

나. 전라남도

전남의 시·군에서는 6개의 산정지표를 정하고, 각 산정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원기준을 설정하였는데, 6개의 “산정지표”는 다음과 같다.

- ① 어업가구 수(호)
- ② 해조류(김) 양식어가 수(호)
- ③ 해조류 피해규모(상, 중, 하)
- ④ 어선어업·횃집 수(척, 개소)
- ⑤ 타르볼 유입규모((톤)
- ⑥ 재정자립도

<표 1-23>은 전남 군별 6개의 산정지표는 공식통계를 근거로 산정한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충남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표 1-23> 전남 군별 산정지표 지수

유형별		계	영광	무안	신안	비고
어업 가구수(호)		8,377	3,151	1,566	3,660	
		100%	37.6%	18.7%	43.7%	
해조류(김) 양식어가(호)		622	16	116	490	
		100%	2.6%	18.6%	78.8%	
해조류 피해 규모별	상	177	2	30	145	
		100%	1%	15%	84%	
	중	210	8	55	147	
		100%	4.0%	26%	70%	
	하	235	6	31	198	
		100%	3.5%	15%	83.5%	
어선어업, 횃집 수 (척, 개소)		1,631	856	275	500	
		100%	52.5	16.9	30.6	
타르볼 유입규모 (톤)		1,064	398	238	428	
		100%	37.4%	22.4%	40.2%	
재정 자립도		-	17.1	10.2	6.4	
			18.6%	31.4%	50.0%	

<표 1-24>는 6개의 산정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한 후 배정한 군별 지원금액을 나타내고 있다.

각 산정지표별로 부여한 가중치는 피해어업가구 수(35%), 어선어업·횃집 수(20%), 타르볼 유입톤((20%), 김양식어가 수(10%), 해조류 피해규모(10%), 재정자립도(5%) 순으로 부여하였다.

군별 배정금액은 신안(7,856백만원), 영광(5,730백만원), 무안(3,168백만원) 순으로 차이가 있으나,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3개 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표 1-24> 전남 군별 지원 배분비율 및 지원액

유 형 별		가중치	계	영광	무안	신안	비고
가구수(호)			8,377	3,151	1,566	3,660	
가구당 평균 지급액(백만원)			5.987	1.818	2.023	2.146	
총 배분금액(백만원)			16,754	5,730	3,168	7,856	
어 업 가구수(호)	대	35%		37.60%	18.70%	43.70%	
		5,864	5,864	2,205	1,096	2,563	
김 양식 어가(호)	대	10%		2.60%	18.60%	78.80%	
		1,675	1,675	44	311	1,320	
김 양식 피해규모	대	5%		1%	15%	84%	
		838	838	8	126	704	
	중	3%		4.0%	26.0%	70.0%	
		503	503	20	131	352	
	소	2%		3.0%	15.0%	82.0%	
		335	335	9	49	277	
어선어업·횃집 수	대	20%		52.0%	17.0%	31.0%	
		3,351	3,351	1,742	570	1,039	
타르볼 유입규모(톤)	대	20%		43.00%	18.00%	39.00%	
		3,351	3,351	1,441	603	1,307	
재정자립도/	대	5%		5.8%	31.4%	50.0%	
		837	837	261	282	294	

1.2.2 개인별 지원기준

가. 충청남도

개인별 지원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시·군별 지원기준을 결정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2005년 폭설 피해시 지원하였던 사례를 참조하여 지원기준을 설정하였다.

-
- 가구당 200만원~500만원씩 차등지원
 - 주택파손(전파 : 500만원, 반파 : 290만원, 침수 : 200만원)
 - 소상공인(200만원)
 - 농어업 시설(80%이상 피해 : 500만원, 50%~80% 피해 : 300만원)
-

개인별 지원대상자 결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충남의 기본방침은 ① 지원기준은 시·군별 배분 지원금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지역별 피해정도와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② 지원대상자는 사전에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는 것이었다.

아래의 <표 1-25>는 위와 같은 기본방침하에 결정된 충남의 개인별 지원기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6개 시·별 지원기준이 서로 상이하다.

공통기준은 앞에서 언급한 기본방침에 따라 시·군별 배분 지원 금액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지역별 피해정도와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도대책본부의 배분기준 산정지표 8개(피해정도 6개, 생활정도 2개)를 고려하여 시·군별 생계안정자금 배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지원대상자’는 사전에 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바, 그 절차는 지급기준 심의(시·군심의위원회) → 대상자 접수·심의(읍·면) → 대상자 심의·확정(시·군심의위원회) → 개인(가구·세대)별 지급 순이었다.

각 시·군별 지원기준은 크게 태안과 나머지 5개 시·군으로 구별할 수 있다. 태안의 경우는 읍·면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되 동일 읍·면에서는 피해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나머지 5개 시·군(보령·서산·서천·홍성·당진)의 경우, 수산업 분야와 비수산업 분야는 차등을 두어 지급하되, 시·군간 동일유형은 동일수준의 금액을 지원하였고, 어업기반을 상실한 영세어가는 호당 200만원, 50%이상 영업손실 소상공인은 호당 100만원 수준을 지원하였다.

위와 같이 개인별 지원기준에 약간의 차등을 둔 데에는 ① 개인별 지급기준은 6개 시·군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② 영세어가 호당 200만원, 영세소상공인 호당 100만원 수준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 지배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이다.

<표 1-25> 충남의 개인별 지원기준

(단위 : 백만원, 세대)

구분	지 급 기 준	지급실적 (지급세대)
충남 공통 기준	- 지원기준은 시·군별 배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지역별 피해정도와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결정 - 도 대책본부의 배분기준 산정지표 8개(피해정도 6, 생활정도 2)를 고려 시·군별 생계안정자금 배분기준 마련 - 지원대상자는 사전에 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 - 지급기준 심의(시·군심의위원회)→대상자 접수·심의(읍·면) → 대상자 심의·확정(시·군심의위원회)→개인(가구·세대)별 지급	99,311 (67,575)
보령시	1차 지급 : 세대원 수 및 육지와와 거리 ‘2인이상’ 세대 : 먼섬 270만원, 가까운섬 220만원, 연안 150만원 ‘1인’ 세대 : 먼섬 200만원, 가까운섬 150만원, 연안 100만원 2차 지급 : 피해지역 전세대 균등 70만원 지급 3차 지급 : 장기방제 도서지역(오천면) - 도서 및 연안 - 도서 : 2인 이상세대 120만원, 1인세대 90만원 - 연안 : 잠수기 선주 70만원, 해안가(영보리) 30만원	14,329 (13,357)
서산시	1차 지급 : 어촌계 관할구역 및 수산업 관련 등 4개 등급 - 어촌계 관할구역 어가 445만원, 관할구역 요식업·편의시설 378만원, 맨손어업·유어선·수산물노점상 등 200만원, 기타 70만원 2차 지급 : 지역별 5등급(우도, 비해안 등), 업종별 2개 등급 - 우도 200만원, 비해안 100만원, 기타지역 125~175만원	10,705 (4,377)
서천군	김양식 피해자 234만원, 일반 피해자 180만원	7,634 (9,373)
홍성군	- 피해지역 대상가구 일괄 균등 297만원 - 어선·면허어업, 맨손어업, 요식업, 숙박업, 기타(운송업 등)	3,068 (2,053)
태안군	1차 지급 : 읍·면별 배정, 지역·업종별 차등 지급(마을별 심의) 2차 지급 : 읍·면별 4개, 업종별 3개 및 세대원수별 4개 등급	60,774 (34,250)
당진군	1차 지급 : 읍·면별 심의 수산·비수산 등 4개 등급 2차 지급 : 읍·면별 심의 수산·비수산 등 4개 등급	2,801 (4,165)

나. 전라남도

전남은 충남과 달리 비수산업 분야의 피해는 미미한 편이며, 대부분 수산

분야가 타르볼에 의한 피해를 입은 특징이 있다. 따라서 3개 군별로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표 1-26>은 전남의 개인별 지원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공통기준은 다음의 것들이다.

- ① 2007년 12월 30일 현재 현업에 종사하거나 경영하는 자 중 피해자일 것
- ② 타르볼이 직접적으로 유입된 지선 해역일 것
- ③ 2개 이상의 업종과 중복될 시 지원이 많은 1개 업종 적용함
- ④ 피해업이 주된 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함(공무원, 회사원 등 제외)

개인별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전남과 3개 군이 다음과 같이 동일한 공통기준을 적용하였다.

1차 지급은 허가·면허와 신고어업을 대상으로 차등지급하였는데, 김 양식(1책~100책미만 : 400만원, 100책~200책미만 : 500만원, 200책이상 : 600만원), 어선(어구)어업(300만원), 맨손어업(170만원), 마을·굴양식어업(맨손어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 : 170만원), 기타(기타 해조류, 가두리, 종묘생산업, 축제식양식, 육상양식, 횃집 : 200만원) 등으로 통일하였다.

2차 지급은 김 양식업에 추가로 지급하였다(1책~100책미만 : 200만원, 100책~200책미만 : 300만원, 200책이상 : 400만원).

3차 지급은 무신고 맨손어업인을 대상으로 약 15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무신고맨손어업인 신청세대수가 많아서 실제로는 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무안군 : 150만원, 영광군 : 120만원, 신안군 : 109만원).

<표 1-26> 전남의 개인별 지원기준

구분	지 급 기 준	지급실적 (지급세대)
전남 공통 기준	● '07.12.30일 기준 현업에 종사하거나, 경영하는 자 중 피해자 ● 타르가 직접적으로 유입된 지선 해역 ● 2개 이상의 업종과 중복될 시 지원이 많은 1개 업종 적용 - 피해업이 주생계 수단인 경우에 한함(공무원, 회사원 등 제외) * 생계안정자금 배분기준 산정지표 6개(피해정도 5, 생활정도 1)	

구분	지 급 기 준	지급실적 (지급세대)
전남 공통 기준	<전남도 및 3개 군의 지급(동일)기준 합의> ● 1차 : 허가·면허, 신고어업 대상 차등지급(부군수협의, 1.28) - 김 양식 · 1책~100책미만 : 400만원, 2) 100책~200책미만 : 500만원, · 200책이상 : 600만원 - 어선(어구)어업 : 300만원 - 맨손어업 : 170만원 - 마을·굴양식어업 : 170만원 (맨손어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 - 김 가공업 : 600만원 - 기타(기타 해조류·가두리·종묘생산업·축제식양식·육상양식·횃집) : 200만원 ● 김양식업 추가지급(군 담당과장 협의, 2.26) - 김 양식 · 1책~100책미만 : 200만원, 2) 100책~200책미만 : 300만원 · 200책 이상 : 400만원 ● 3차 : 무신고맨손어업인 지급협의(군 담당과장 협의, 3.5) - 무신고 맨손어업인 : 예상금액 150만원 · 실지급액(무안군 150, 영광군 120, 신안군 109만원) * 무신고맨손 신청세대가 많아 생계지원금 예산 범위내 지급	17,839 (9,838)
무안군	● 1~2차 지급 : 전남도 및 3개 군이 합의한 기준 ● 3차 지급 : 무신고 맨손어업인 세대당 1,500천원 - 어획물 채취 및 유통사실 확인(인우보증 및 현장실사) ● 4차 지급(재해구호성금) : 김양식업 75어가/11,575책 - 지급기준 : 1책당 17,020원 지급 * 타르 직접 유입지역 김양식 어업인 양식자재 전량 폐기처분으로 소득원 상실	2,504 (1,090)
영광군	● 1~2차 지급 : 전남도 및 3개 군이 합의한 기준 ● 3차 지급 : 무신고 맨손어업인 세대당 120만원 기준 - 어획물 채취 및 유통사실 확인(인우보증 및 현장실사) ※ 무신고맨손어업자에 대한 지급기준 - '07. 12.30일 기준일로서 현업에 종사하거나, 경영하는 자 중 피해가 있는 자(사실주의) - 피해대책위원회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접수된 자(신고주의) - 무신고 실제 맨손어업자(어촌계장 인정) -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굴·바지락·백합 등을 영리 목적으로 채취, 판매하고 있는 자 - 타르가 직접적으로 유입된 지선해역(지역한계) - 무신고 맨손어업 지급금액 : 1,200천원(어가당)	

구분	지 급 기 준	지급실적 (지급세대)
영광군	● 4차 지급 : 2,041명 781,722천원(국고 427,722 + 성금 354,000) * 국고잔액 및 재해구호성금(국민성금) 집행기준 - 타르피해자 중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한 자 - 생계안정지원금 지급자(합법어업)에게 가구당 206천원 일괄균등, 김양식 15어가는 가구당 630천원 지급(생산시기 직접피해)	6,084 (3,246)
신안군	● 1~2차 지급 : 전남도 및 3개 군이 합의한 기준 ● 3차 지급(무신고맨손어업) - 지급기준 : 무신고 맨손어업인 세대당 약 1,090천원 * 세대당 지급기준액 : 1차 860천원, 추가지급 230천원 - 어획물 채취 및 유통사실 확인(인우보증 및 현장실사-어업확인) - 어촌계 또는 마을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후 신청 * 재해구호성금(488백만원)은 국고보조금과 통합하여 지급. - 다만, 신안군 수협에 성금 전액을 이체하여 별도 관리	9,251 (5,502)

1.3 교훈과 과제

1.3.1 생계안정자금의 지원기준

정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충남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2007년 12월 24일 광역지자체로 하여금 생계안정자금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2007년 12월 28일에는 1차로 생계안정자금 300억원을 배정하였다. 그 후 약 20여일이 지난 2008년 1월 21일 충남은 6개 시·군과 생계안정자금 지급기준을 합의하고 시·군에 배정하였고, 개인별 지급기준은 시·군에 위임하였다. 그 후 충남의 6개 시·군은 2008년 1월에서 4월까지 자체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하였다. 정부가 2차로 추가지원한 468억 원도 2008년 2월에서 5월에 걸쳐서 지급되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생계안정자금 지원이 결정되고 동 금액이 충청남도에 즉시 배정되었으나, 시·군별 지원기준과 개인별 지원기준이 결정되지 않아 지급이 지연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충청남도에서 지원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고, 충청남도는 해양수산부가 지원기준을 정하여 생계안정자금을 보내줄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주민에 대한 확인 및 피해정도는 지자체가 더 잘 알고

있다는 논리에 의거 지자체가 지원기준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토록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충청남도는 피해지역 6개 시·군과 협의하여 공통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공통 지원기준을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기준 마련은 해당 시·군에 위임하였다. 해당 시·군이 개인별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인적재난 발생과 관련한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세부지침이 없어 개인별 지원기준을 마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지역의 시·군, 읍·면, 부락, 업종, 주민 상호간의 갈등과 불화가 발생하였다.

한편, 타르볼에 의한 수산분야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은 충남지역의 사례가 있어 기준마련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신안, 무안, 영광 등 3개 군이 개인별 지원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피해정도(어업의 종류별 어업규모에 대한 피해규모의 비율)에 따른 생계안정자금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가별 지급기준 마련에 일부 애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와 같은 자연재난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 발생시, 피해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긴급생계유지를 위해 자연재해와 같이 국가의 지원근거와 지급기준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추진하였으나, 관계기관 협의결과 유류오염 관련 법령 및 국제협약 등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 상황에서 생계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인적재난 관련자의 도덕적 해이의 소지가 있고, 당사자 보상원칙, 재해보험 확대추세 등을 이유로 무산되었다.

1.3.2 생계안정자금의 성격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충남의 6개 시·군과 전남의 3개 군의 피해주민의 생계가 곤란을 겪자 정부가 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긴급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일반 국민들 또한 피해주민의 생계를 위한 모금 운동을 펼쳤다.

그런데 국제기금의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긴급 생계안정자금 및 국민성금을 받을 경우 피해보상액에서 동 금액을 삭감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 문제는 “피해보상 청구자가 정부기관 등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이를

표명해야 한다.”는 국제기금 보상청구 매뉴얼로 인해 더욱 크게 부각되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는 정부의 긴급생계안정자금이 손해 배·보상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한 선주보험사나 국제기금과의 협의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정부는 국제기금에 문의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였다.

국제기금에서는 ①정부 지원금이 ‘오염손해’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 아닌 경우에는 대위권이 존재하지 않아 국제기금에 청구할 수 없으며, ②‘오염손해’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최종 사정금액에서 지원금액이 삭감되며, 정부가 지원금에 대한 대위권을 가진다고 답변하였다.

국내 전문가(최종현 연세대 법대교수, 前 국제기금 국내담당 변호사)의 자문결과(’07.12.26)는 생계안정자금은 피해보상과 별도의 성격이라는 것이었다. 즉 ①정부가 피해주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②따라서 국제기금의 보상금 삭감에 대비하여 현 단계에서 어업인 등 피해자로부터 청구권 양도서류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③다만, 국제기금에서 생계안정자금을 ‘오염손해’ 보상금으로 간주하여 삭감할 경우에 대비하여 향후 대위권 행사를 위한 기초자료는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었다.

또 다른 국내 전문가(자문변호사 : 법무법인 세창)의 자문결과(’08.1.7)는 생계안정자금이 정부의 지급의무에 의해 지급되었는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①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정부의 의무에 의한 것이라면, 국제기금에 대해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②‘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 경우 법률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고, ③다만, 향후 국제기금의 대위권 분쟁에 대비하여, 정부에서 지급된 보상금액수와 그로 인한 권리의 이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주민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검토결과를 근거로 정부는 충남도의 질의에 대해 “정부의 긴급생계안정자금을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되, 국제기금에서 보상금 성격으로 간주하여 보상액을 삭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향후 정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위로금 수령인 명부 및 수령자 확인 등 기초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충남은 긴급생계안정자금 지급시 ①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관련 정부의 긴급생계안정자금 지급대상자는 추후 배상금 수령 대상자를 포함한 시점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주민으로 추후 배상금 지급시 배상받은 가구와 배상받지 않은 가구가 혼재되어 있어 배상액에서 생계비 공제에 따른 지역주민 혼란이 예상되고, ②생계안정자금 지급시 지원대상 가구가 수만 가구이기 때문에 제출받을 구비서류는 신청과 관련 없이 세대부 확인 절차를 거쳐 시·군에서 개인통장에 입금시킬 계획으로, 채권확보 관련서류 징구·관리가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주민반발이 예상되어 생계비 조기지급이 불가한 실정이며, ③또한 국제기금 사무국장 방한시 태안군청에서 지역 언론의 질의시 “정부의 단순 위로금 성격의 생계비는 배상에서 차감되지 않으나, 피해배상 성격의 경우 차감될 수 있으며, 추후 대위권 행사로 재청구가 가능하다(’08.1.15, 태안군청)”는 답변내용이 언론에 공표되었기 때문에 구비서류 징취가 사실상 불가함을 정부에 통보하고, 수령인 명부도 금융기관에서 무통장 입금 처리되므로 추후 입금표로 대체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수령인 명부 및 수령인 확인방법은 충남의 요청대로 금융기관의 무통장으로 입금하여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국가예산 및 국민성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가 최초의 사례였기 때문에 국제기금도 정부가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한 긴급생계안정자금 300억원에 대해 상술한 바와 같이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답변을 할 뿐,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은 이번 사고사례에 따라 긴급생계안정자금의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이 경우 정부는 어떤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위로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2. 국민성금 모금 및 지원

2.1 모금배경 및 결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의한 피해는 국가적인 재난에 해당하여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해당지역을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일반 국민들은 TV 등 매스컴을 통해 시커먼 원유가 사고 유조선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또한 어민 등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인 양식장 및 어장, 그리고 해변을 포함한 전 해안이 오염되는 것을 보고 그 피해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추운 겨울(12월, 1월, 2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1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직접 사고 지역으로 달려가 방제작업에 동참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유류오염으로 인해 피해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게 되었다. 즉 어민들은 오염으로 인하여 출어자제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조업재개 이후에도 사고지역의 수산물에 대한 전국적인 수요는 급감하였다.

수산업 이외의 다른 분야(펜션, 식당, 도소매업 등)는 대부분 관광객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관광객의 급감으로 인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 주민들이 나타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긴급생계안정자금 300억원을 지원하고 다시 468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이에 일반 국민들도 전국적으로 피해주민을 위한 성금을 모았는데 그 규모는 254억 원이었다. 대형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을 위한 생계안정자금 지원 및 국민성금의 예도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었다. 국민성금 254억 원의 접수처별 금액은 충남 24,330백만 원(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15,830백만원, 태안군 8,000백만원, 재해구호협회 500백만원)과 전남 1,039백만원(재해구호협회)이었다.

2.2 지원 기준 및 피해지역별 지원내역

일반 국민 등에 의해 모여진 성금은 정부의 “긴급생계안정자금”과 동일한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급되었다.

<표 1-27>은 정부의 지원금 768억원, 충남 지방비 150억원, 국민성금 254억원 등 총 1,171억원에 대한 피해지역별 지원내역이다. 충남은 지방비 15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전남은 지원하지 않았다.

<표 1-27> 생계안정자금 지원 및 배분 현황(2008.10.6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교부금	지급액	지급률	세 대 수	
				지급대상	지급세대
계	117,169	115,757	98.8	46,008	76,736
충청남도	99,330	99,133	99.8	37,608	66,091
태안군	60,774	60,702	99.9	19,397	34,252
보령시	14,330	14,267	99.6	6,161	12,980
서산시	10,708	10,705	99.9	2,677	4,277
서천군	7,636	7,590	99.4	4,175	8,364
홍성군	3,081	3,068	99.6	1,033	2,053
당진군	2,801	2,801	100	4,165	4,165
전라남도	17,839	16,624	93.2	8,400	10,645
신안군	8,390	8,390	100	3,683	6,621
영광군	6,084	5,730	94.2	3,151	3,009
무안군	3,365	2,504	74.4	1,566	1,015

3. 공공근로사업 등 주민소득보전 지원

3.1 지원배경 및 경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조업중단 장기화, 서해안 관광객 및 수산물거래 감소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충남 피해지역의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해지기 시작하였다. 생계터전의 손실과 함께 그동안 소득원이었던 방제작업¹¹⁾(’07.12~’08.6)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주민의 소득원이 상실되고 피해보상은 보상청구 지연 및 사정지연 등으로 보상금 지급도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 생계안정자금 지원과 더불어 주민의 생계지원 대책이 필요하였는바, 주로 충남의 특별재난지역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공공근로사업 이외에도 기타 많은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2009년까지 피해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은 총 534,897백만원이었다. 이 중 긴급생

11) 피해지역의 주민이 참여한 숫자는 1일 약 4,000명으로 방제작업 보수는 남자는 하루 7만원, 여자 하루 6만원이었다.

계안정자금 등으로 228,793백만원을 직접 지원하였고, 306,104백만원을 자금
융자, 이자감면 등으로 간접 지원하였다.

<표 1-28> 유류피해지역 정부지원 현황(2009.12월 말 기준)

구분	부 처 별 지 원 세 부 내 역	지원규모
소계	직접지원 실적	228,793
직접 지원	● 특별재난지역 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07.12~'08.12) - 정부 76,800(충남 60,000, 전남 16,800), 지방비 15,000(충남), 성금 25,369(충남 24,330, 전남 1,039)	117,169
	● 관계부처 합동 특별공공근로사업 시행('08.7~12) - 행안부 4,973, 노동부 5,032, 환경부 4,734	14,739
	● 생태계 복원 및 주민생활 안정지원('09.3~'09.6) - 지자체 503, 환경부 1,099	1,602
	● 피해지역 학생 교육활동 및 저소득층 지원 - 교과부 2,000, 충남교육청 1,151(도비 414, 성금 737) - 농식품부 저소득층 쌀 및 의약품 지원 120	3,271
	● 각종 공공보험료 및 전기·통신료 지원 - 건강보험료(3개월분) 경감 431(충남 427, 전남 4), - 연금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6개월) 225(충남 195, 전남 30) - 통신료(1개월) 감면 1,382, 전기료(3개월) 감면 526 - 방제업체 산재(447)·고용(148)보험료 납기연장 등 628	3,192
	● 허베이 특별법 관련 지원 - 정부 대지급금 30,733, 정부 대부금 3,029 - 지자체의 주민 방제인건비 등 18,550	52,312
	● 환경복구·오염영향조사 등 관련 지원 - 유류오염 굴양식시설 철거사업 12,610(농식품부) -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 2,000(농식품부) - 오염영향조사 및 해양생태계복원연구 4,663(국토부) - 유류오염사고 피해조사 지원 780(국토부) - 피해지역 자연자원정밀조사 1,500(환경부), - 환경보건센터 중장기 건강영향 조사 3,204(환경부) - 유류유출사고 단기 건강영향조사 144(환경부) - 급성기 건강영향조사 25, 태안정신보건센터 지원 151(복지부)	25,077
	● 피해지역 이미지개선 등 관련 지원 - 관광이미지개선 및 관광활성화 지원 1,795(문광부) - 장관배 바다낚시·수영대회 등 이미지개선 436(국토부) - 태안지역 경제활성화 홍보 지원 100(농식품부) -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지원 2,000(농식품부) - 태안군 피해지역 해수욕장 정비 7,100(국토부)	11,431

구분	부 처 별 지 원 세 부 내 역	지원규모
소계	간접지원 실적	306,104
간접 지원	- 자금융자,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 특별영어자금(17,507), 수산경영회생(2,187) 등 96,752 - 농협 정책자금(57,267) · 상호자금 지원(948) 등 87,793 - 기존 대출금 이자감면·상환유예 등 74,013 * [금융위] 신용보증 2,635, 농신보 17,162, 기보 52,293, 기은 813 * [중기청] 재해 중소기업 특별보증(충남신보) 530, [문광부] 재해 관광사업체 개보수/운영자금 융자 580	258,558
	- 국세(16,094) · 지방세(충남 2,230) 등 세제지원 - 국세 및 지방세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18,324
	- 방제작업 관련 지원 - 응급복구비 지원 10,500(행안부) - 군방제 1,468(국방부), 방제작업 개인보호복 500(복지부), 방제 장비 등 방제작업 306(환경부), 해경 방제작업 등 16,060(해경청), 지휘본부 전기가설비·요금감면 31(한진)	28,865
	- 방제작업 자원봉사 등 기타 지원 * 통일부 6, 문광부 7, 노동부 100, 여성부 13, 국세청 17, 관세청 68, 조달청 10, 병무청 5, 문화재청 10, 농진청 10, 특허청 20, 기상청 2, 행복청 2, 대검 59, 방통위 28	357

3.2 지원기관 및 피해지역별 지원내역

공공근로사업의 규모는 <표 1-29>와 같이 200억원(행안부 50억원, 노동부 55억원, 환경부 45억원, 충남 50억원)이었으며, 대상지역은 피해규모가 큰 충남 특별재난지역(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 당진)이었다. 사업내용은 특별공공근로, 일자리 창출, 생태계 복원, 공공근로 등 약 3,800명/일×5개월이었으며, 총 14,739백만 원(전체 대비 73.7%)이 집행되었다.

<표 1-29> 공공근로사업계획 내용

기관명	사업비(원)	주요사업	비 고
합 계	200억		관계부처 합동('08.6)
행정안전부	50억	특별공공근로	피해지역 지자체(7.2~)
노동부	55억	일자리 창출	보령 · 천안지방노동청(9.1~11.30)
환경부	45억	생태계 복원	국립공원관리공단('07.12~'08.12)
충남도	50억	공공근로	자체절감예산 등

<표 1-30>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계획대비	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	당진
합 계	14,739	73.7	1,149	539	50	25	12,669	307
행정안전부	4,973	99.5	498	100	50	25	4,152	148
노동부	5,032	91.5	651	439	(보령시와 동시시행)	(태안군과 동시시행)	3,783	159
환경부	4,734	105	-	-	-	-	4,734	-
충남도	-	-	-	-	-	-	-	-

※ 노동부 자료 : 보령시노인회-보령·서천 주관, 태안군방범대-태안·홍성 주관

※ 충남도는 초기 방제작업 등에 많은 비용을 지출, 별도의 사업추진실적 없음.

<표 1-31> 특별공공근로 추진실적(2009.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시군	사 업 내 용		사업비 집행현황			참 여 인 원		비고 (종료)
	사업유형	세부 사업	계 획	실 적 (비율)	잔액 (비율)	계 획	실 적 (비율)	
계	15개	36개	5,000	4,973 (99.5)	27 (0.5)	165,602	120,979 (73.1)	
보령	환경정비사업	1	500	498 (99.6)	2 (0.4)	8,197	11,151 (136)	(12월)
서산	환경정화사업	11	100	100 (100)	- (-)	2,742	2,559 (93.3)	(9.5)
서천	공공생산성사업	2	50	50 (100)	- (-)	860	1,056 (123)	(10.29)
	해수욕장 주변관리	1						
	항포구 주변관리	1						
	특산품 홍보관운영	1						
홍성	항포구 주변정리	1	25	25 (100)	- (-)	741	560 (75.6)	(9.19) (11월)
태안	공공생산성사업	6	4,175	4,152 (99.4)	23 (0.6)	150,525	102,253 (67.9)	(12월)
	해수욕장주변정리	1						
	항포구 정비사업	1						
	수산물시장정비사업	1						
	기타사업	1						
당진	공공생산성사업	6	150	148 (98.7)	2 (1.3)	2,537	3,400 (134)	(12월)
	해수욕장주변관리	1						
	항포구주변관리	1						

※ 행정안전부 소관

제 2 장 피해보상 지원기반 구축

제 1 절 지원제도의 마련

1. 특별법령의 제정

1.1 특별법의 제정

1.1.1 제정이유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 특별법안」(2007.12.31, 문석호 의원 대표발의), 「해상 및 해안 유류유출 오염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 복구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2008.1.21, 김학원 의원 대표발의),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로 인한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2008.1.24, 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손해배상 및 경제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2008.1.29, 심대평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의 의원입법과 「태안지역 유류오염사고 관련 임시조치법 제정에 관한 청원」(2007.12.31, 류근찬·홍문표 의원 소개) 등 1건의 청원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1.1.2 제정경과

가. 법률안 발의 및 입법청원 소개

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 특별법안」 (’07.12.31, 문석호 의원 대표발의)

□ 주요 내용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만 적용하는 한시법적 성격

- 국가는 일정범위의 보상금액에 대한 선급금 선지급 및 보상청구권 대위행사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고시, 해양복원계획 수립·시행 및 해양환경복원위원회 설치
- 국가 및 지자체는 지역개발사업, 지역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와 사업 등 지원
-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 및 공공근로사업 우선 채용 등

② 「해상 및 해안 유류유출 오염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복구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08.1.21, 김학원 의원 대표발의)

□ 주요 내용

- 모든 유류오염사고에 적용되는 일반법적 성격
- 중앙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또는 지방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 국가 또는 지자체는 일정범위의 보상금액에 대한 선급금 선지급 및 구상권 행사
- 국가 등은 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피해관련 증거보전 조치 및 보상관련 소송의 사법절차 등 협조·지원 및 이에 따른 소요 비용 지급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고시, 해양환경 복원계획 수립·시행
- 국가 등은 수산업자의 어업권 반납 또는 휴·폐업시 손실액 지원, 영세 피해 어업인 최저생계비 지급 및 공공근로사업 우선 채용 등

③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로 인한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08.1.24, 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 주요 내용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만 적용하는 한시법적 성격
- 중앙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또는 지방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 국가는 배상금 전부를 미리 지급하되 국제기금협약의 배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은 신속히 지급, 피해지역 어가 및 지역주민의 보상청구권을 대위행사

- 맨손어업자에 대한 일정 소득 보전 또는 최저생계비 지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통·관광·음식·숙박업자 등에 사고 직전의 3년간 연평균 소득액의 일정 범위내 소득 보전 등

④ 「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손해배상 및 경제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08.1.29, 심대평 의원 대표발의)

□ 주요 내용

- 모든 유류오염사고에 적용되는 일반법적 성격
- 중앙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 국가는 일정범위의 보상금 미리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급금 등 재정지원에 대하여 보장법에 따른 구상권 행사
- 국가 등은 피해복구 참여자에 대한 의료지원, 방제·소송 등에 대응할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 국가 등은 오염사고 지역에 대한 필요 예산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원
- 지급된 배상금과 지원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 미 부과 등

⑤ 「태안지역 유류오염사고 관련 임시조치법 제정에 관한 청원」('07.12.31, 류근찬·홍문표 의원 소개)

□ 주요 내용

- 유류오염 피해지역 및 그 해제의 결정, 관행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피해 배상
- 리·동별 피해사실 확인 위원회 설치
- 국가는 피해자 등이 받을 배상금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배상책임자를 대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 및 구상권 행사
- 국가는 피해자 단체와 배상책임자간에 중재법에 의한 중재 합의권고,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중재 재정부 설치

나. 법률안 심의¹²⁾ 및 공포

2008년 2월 13일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법률(안)과 함께 이와 직접 관련된 안건인 심대평 의원(안)과 청원(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2월 18일 (월) 14:00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산회되었다.

2008년 2월 18일 제4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4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안)을 심사하기 위해 먼저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수렴하였다. 공청회에서는 진술인들의 진술을 들은 후에 질의를 진행하였다.

2008년 2월 18일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4건의 법률안과 1건의 입법청원(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일반법으로 할 것인지 특별법으로 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국회 전문위원 대안과 국무조정실 안을 수정해서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특별법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해양수산부 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입장이었다. 이후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2008년 2월 19일 제5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4건의 법률안과 청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일부 수정하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대체 법률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별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특별법 형식으로 제정토록 하였다.

한편, 제5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11조 제1항 제4호 ‘그 밖에 유류유

12)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는 법률의 성격과 관련하여 제정 법률의 성격을 특정 사고로 한정하는 것은 처분적 법률의 소지가 있고, 향후 유사 사고 발생시 다른 특별법 제정 수요를 양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법적인 특별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법안에 특별한 특혜 차원에서 규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법안의 내용을 볼 때, 일반법적인 성격으로 제정한다면, 국가의 부담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희박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법화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예를 들어서 보상한도 3,000억원을 초과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약 1조 300억원까지 국제기금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소위 추가기금협약이라는 국제조약 비준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조항이 필요 없는 상황이 머지않아 오며 따라서 이번 법률은 당장 현안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 사안에 한정해서 특별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법률안심사소위 위원은 대체적으로 동의하였다(제271회 국회(임시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2회 참조).

출사고와 관련된 피해주민을 위한 생계지원'을 '그 밖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피해주민 중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으로 하여 '생계'라는 용어를 삭제하였다.

2008년 2월 21일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상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시한 동 법안이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와의 공동 법안으로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한 부처로 된 것을 공동으로 넣는 쪽으로 자구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소위로 넘기기로 하였다.

2008년 2월 22일 제3차 법제사법소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차관은 제11조제1항4호 '그밖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피해주민 중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인'이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실질적인 보상으로 되면 보상을 받았는데 「피해청구자가 제대로 보상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여 분쟁의 소지를 아예 없애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실질적인'을 삭제하기로 의결하였다

아울러 제8조에서 제5항 다음에 제6항(국가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통해서 제5항에 따른 대부 등 지원을 할 수 있다)을 신설하려 하였으나 농특회계법을 개정하지도 않고 특별법에 끼워 넣게 되면 법체계 및 목적상 맞지 않다는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2008년 2월 22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본회의에 접수하였다.

2008년 2월 22일 제271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동 법률안을 상정·심의·의결한 다음, 가결된 법률을 2008년 2월 29일 정부로 이송하였다.

정부로 이송된 법률은 2008년 3월 14일 법률 제8898호로 공포됨으로써 특별법 제정 논의가 있는 후 3개월여만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5조 내지 제9조, 제11조 및 제13조 등 일부조항의 경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1.1.3 주요내용

가.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제5조 및 제6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복원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 된다.

대책위원회와는 별도로 대책위원회에 부의될 안전의 사전 검토·조정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나. 피해주민단체(제7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은 피해주민단체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고, 대책위원회,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주민단체의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손해보전의 지원 등(제8조 및 제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대위권 행사를 전제로 일정 범위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제

기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보상 청구 후 6개월 이내에 손해액의 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손해액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 사정(査定)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등(제10조)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유류오염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 이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생태계복원을 위하여 유류오염 관련 연구·조사 및 해양환경 측정·분석을 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학술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제11조 및 제1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하여 의료·방역·방제,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의연금품 특별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고,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피해주민 중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법 제정 과정

입법 청원		- 충남도 - 특별법 제정 건의('07.12.14) - 임시조치법 제정에 관한 청원 소개('07.12.31)
법률안 발의 및 의견수렴		- 대통합민주신당(문석호 의원)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 특별법안('07.12.31) - 특별법 제정 의견수렴회('08.1.8) - 피해대책위원회 주최, 태안군 문예회관 - 한나라당(김학원 의원) - 해상 및 해안 유류유출 오염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복구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08.1.21) - 민주노동당(강기갑 의원) -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로 인한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08.1.2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사('08.1.28) - 제271회 국회(임시회) 5차 전체회의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가결)('08.2.19)
	법제사법위원회	- 법사위 회부 및 체계자구심사('08.2.19) - 제271회 국회(임시회) 6차 전체회의 상정/소위 심사보고/의결(수정가결)('08.2.22) - 제271회 국회(임시회) 3차 법안심사 제2소위 의결(수정가결)('08.2.22)
접수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제안('08.2.22)
본회의		제271회 제8차 본회의 상정/심의/의결('08.2.22)
정부이송		본회의 가결 법률(안) 정부이송('08.2.29)
공포		법률 공포('08.3.14)

<그림 2-1> 특별법 제정 과정

1.2 특별법 시행령의 제정

1.2.1 제정이유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의 구성 등과 같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특별법 시행령’이라 함)」이 대통령령 제20821호로 제정되었다.

1.2.2 제정경과

- 2008. 2. 23 ~ 2008. 3. 20 : 시행령(안) 입안
- 2008. 3. 21 ~ 2008. 3. 31 : 정부 관계 부처간 협의
- 2008. 4. 2 ~ 2008. 4. 22 : 시행령(안) 입법예고
- 2008. 4. 15 ~ 2008. 4. 16 : 시행령(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
 - 4월 15일(화) 10:30~12:30/ 태안문예회관/ 태안, 서산, 당진
 - 4월 15일(화) 15:30~17:50/ 보령문예회관/ 보령, 서천, 홍성
 - 4월 16일(수) 10:30~12:30/ 무안승달회관/ 무안, 영광, 신안
- 2008. 4. 28 ~ 2008. 5. 8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2008. 5. 15 ~ 2008. 5. 27 : 시행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 2008. 6. 3 국무회의 의결
- 2008. 6. 13 공포(대통령령 제20821호)/ 2008. 6. 15 시행

1.2.3 주요내용

가.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제2조 내지 제4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

로 하고, 대책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의 검토나 그 밖에 관계 부처와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의 10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대부 신청방법 등(제12조 및 제13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기금 등에서 손해액의 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액의 사정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부신청서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다.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절차 등(제17조 및 제18조)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정의 목적 및 위치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절차를 정하고,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하고 있다.

라.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제19조)

의료, 방역 등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사업 내용은 대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대책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특별법령의 개정

2.1 특별법의 개정

2.1.1 개정이유

2008년 3월 14일 법률 제8898호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09년 12월 현재 까지 2차례(법률 제9739호, 2009.5.27일부개정, 2009.5.27시행/법률 제9740호, 2009.5.27타법개정, 2009.11.28시행)의 개정이 있었다.

2008년 11월 17일 변웅전 의원 등 33인이 특별법 개정을 위한 의원입법을 발의함에 따라 2009년 5월 27일 법률 제9739호로 일부 개정·시행되었다. 또한 2009년 5월 27일 법률 제9740호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특별법에서 일부 준용하는 내용 및 조문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특별법도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2.1.2 주요내용

가. 제1차 개정의 주요내용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4호 중 “피해지역”을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으로 하였다. 제11조의 제목을 “피해지역”에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으로 하였으며, 동조 제1항 제4호를 개정하여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¹³⁾

한편, 특별법에 대한 의원입법 발의안 중 법안 제9조 제2항 단서 “다만, 총 사정액을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공인한 국내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아 초과가 인정된 부분에 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에 대하여는 국제기금에서 인정하지 않는 피해액에 대하여는 국제협약상 국내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제될 수 있는 보상체계가 이미 존재하고 이를

13) 제11조 제1항 제4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수용할 경우 국제협약과 국내법의 피해보상(조사·사정) 업무가 중복되어 일관성 결여 등 보상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며 정부도 입증주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국제기금 사정액과의 차액은 없거나 미미하고 중복사정에 따른 배·보상이 상당기간 지연 되는 등을 사유로 하는 정부의 수용곤란 입장을 반영하여 삭제되었다.

또한 관광업소 및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농어업인의 업종전환 및 휴·폐업 지원, 금융세제 및 특별생계 지원 등 추가 발의안에 대하여는 타법령에 지원근거가 있거나, 既 지원 또는 지원 중에 있는 안건으로 신설 근거가 미미하다는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회입법과정에서 모두 삭제되었다.

나. 제2차 개정의 주요내용

특별법 제2조 제1호 중 “선박”을 각각 “유조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4호”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7호”로 하였다.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1항”을 각각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제1항”으로 하였다.

2.2 시행령의 개정

2.2.1 개정이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를 입었으나,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739호, 2009.5.27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특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의 피해주민에 대한 대부지원 기산일과 관련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청구일”에 대한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시행령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개선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대통령령 제21989호, 2010.1.11 일부개정·시행).

2.2.2 주요내용

첫째, 제12조 제1항 제3호¹⁴⁾를 신설하여 대부신청시 구비해야할 서류를 추가하였다. 둘째, 제12조 제2항의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기준이 국제기금 등이 지정한 사무소에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도달한 날인지, 위 사무소가 접수된 날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그 접수된 날인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¹⁵⁾ 이를 반영하여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¹⁶⁾ 셋째,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0조¹⁷⁾의 법문에 사용되는 용어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3. 훈령·고시 등의 제·개정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각종의 유류오염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의 세부적인 시행절차 및 업무처리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각종의 훈령, 고시, 지침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유류오염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제정한 고시에는 특별법 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 등에 근거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정부지원(대부·대지급)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41호)」,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14) 3. 국제기금 등이 청구인에게 보상청구서를 접수하였다는 통보를 한 문서의 사본

15)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이란 국제기금 등이 지정한 사무소(HS센터)가 접수된 날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그 접수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16) 제12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은 국제기금 등이 청구인에게 보상청구서를 접수하였다는 통보를 한 문서의 시행일로 한다.’

17) 제목을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에서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 자란”을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는”으로, “자를 말한다”를 “자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상”을 “손해배상 또는 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규모는”을 “규모, 방법 등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의 오염 현황 및 특성에 따른 생태계모니터링 및 환경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해양환경보원지역 지정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11호)」가 있다.

유류오염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해 제정된 훈령에는 특별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각종의 사항을 심의·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운영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15호)」, 특별법 제5조 제7항 및 시행령 제4조 제4항·제5조 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126호,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40호)」, 그리고 특별법에 따른 대부·대지급 등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시·군 및 금융기관에서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대지급, 대부 업무처리 지침」 등이 있다.

3.1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운영규정

3.1.1 제정이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이 제정·시행되고, 동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각종의 사항을 심의·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였다(2008.7.10제정, 국무총리 훈령 제515호).

3.1.2 주요내용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은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의 주요기능에 관한 사항이다. 대책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즉 피해주민

이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국가가 손해 배·보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전제로 국제기금이 사정한 손해액의 일정금액을 대지급함에 있어서 지급할 대지급금의 수준을 결정한다.

둘째, 손해 배·보상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해주민의 소득, 생활상태 및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부 등의 지원수준을 결정한다.

셋째, 국제기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보상한도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되는데, 이때 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결정한다.

넷째,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3.2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3.2.1 제정이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7항 및 시행령 제4조 제4항과 제5조 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8.8.7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126호/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40호).

3.2.2 주요내용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은 조정위원회의 주요기능에 관한 사항이다. 동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을 검토하고, 회부할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둘째, 특별법에 따른 각종 조치사항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조정권한을 갖는다. 셋째,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피해주민의 지원, 지역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환경

의 복원 등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지시한 사항을 수행한다. 넷째, 그 밖에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3.3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3.3.1 제정이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3.3.2 제정경과

-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지원을 위한 고시(안) 마련('08. 9)
-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대부 지원수준 및 절차 심의·의결('08. 9.26)
- 고시(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08.10.17)
-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 2008년 12월 17일 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41호)

3.3.3 주요내용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지급금 및 대부금 등 정부지급금을 지원하기 위한 지급절차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지급금(대부, 대지급금)의 신청 및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한도초과보상금(국제기금 보상한도액 초과금액)의 범위 및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대부지원을 위한 개인별 대부 상한액 지정에

관한 규정, 피해보상지원시스템 관리 및 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대부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고시에서는 대부기준을 피해의 정도, 피해업종,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4개 지역등급(태안군A, 태안군B, 기타충남지역, 전남·북지역)과 23개 업종(수산 8, 비수산 15)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다.

3.3.4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

가. 개정이유

2009년 5월 8일에 제한채권신고 종료에 따른 본격적인 피해청구가 예상됨에 따라 HS센터측의 사정지연에 따른 대부청구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었고, 현행 대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부 대상을 보완하고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1차 개정을 실시하였다(2009.8.24 전부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92호).

이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대국민 불편·부담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서식 일제 정비 방침에 따라서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의 별지서식을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서식설계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 대부금상환약정서(별지 제4호 서식)의 중복된 규정을 정리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2차 개정을 실시하였다(2009.12.17, 국토해양부 고시 제1193호).

나. 주요내용

(제1차 개정 : '09.8.24) 2009년 5월 8일 선주책임제한 채권신고 종료결과 신고된 채권 약 12만 6천여 건이 단기간 내 집중 청구됨으로써 사정지연으로 인한 대부 신청이 급증하게 되면 대부채권 확보를 위한 질권설정 통지업무가 대량 발생하게 되고, 국제기금측은 국토해양부가 설정한 질권의 관리업무가 추가발생하게 되어 손해사정 및 보상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부대상 및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인별 대부상한액 조건표 및 비고란의 적용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실제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대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 특별법시행령 제12조제2항 중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에 대한 정의를 “국제기금등이 보상금 청구인에게 청구서를 접수했다는 의사를 표시한 문서의 시행일”로 규정하여 대부 신청 기산점 명확화
- 대지급금 대위행사의 명확화를 위해 보상 청구권에 가압류 등 권리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급 대상에서 제외
- 어촌계·영어조합법인·수협 등 단체 소유 어업권의 개인별 손해액을 구분하여 청구한 경우와 관광분야의 택시기사 등을 대부대상에 포함
- 대부대상 업종의 분류체계를 관련법령과 현실에 맞게 대·중·소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재분류하고, 새로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는 대부상한액을 적정수준으로 설정
-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합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서만 대부대상으로 인정하되 맨손어업자는 사고 이후 신고자도 “유류피해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제2회 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가 인정
- 법원으로부터 손해 배(보)상 청구권에 대한 채권 가압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이 있거나 채권의 양도 등으로 보상 청구인의 권리가 제한된 경우 대부 대상에서 제외
- 개인별 대부상한액 조건표에도 불구하고 보상 청구의 인과관계, 오염지역과 청구인 사업 활동의 지리적 근접성, 청구인 사업의 의존도 등을 고려 지자체에서 대부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2차 개정 : '09.12.17)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83조 서식설계기준에 적합한 서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별지서식 제1호(대지급금 지급신청 접수증), 제2호(대지급금 지급의뢰서), 제3호(대부금질권설정동의서), 제4호(대부금 상환약정서), 제5호(대부금 지급신청 접수증), 제6호(대부금 지급의뢰서), 제7호(대부금 상환통지서)를 개정하고, 별지서식 제4호(대부금 상환약정서)의 제2호 및 제3호의 중복된 규정을 정리하여 반영하였다.

3.4 세부시행지침 등의 제·개정

3.4.1 대지급, 대부 업무처리 지침 제·개정

가. 제·개정 이유

대지급, 대부 업무처리 지침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부·대지급 등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시·군 및 금융기관에서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대부·대지급 등에 관한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09.3.11).

(제1차 개정 : '09.4.20) 유류오염사고의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대부제도와 관련하여 제3자와 채권 경합시 대부금의 우선변제를 통한 채권 확보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제2차 개정 : '09.9.7) '어촌계 총유어업권의 손해 배·보상 청구에 따른 정부의 대지급 방안'이 마련('09.8)됨에 따라 정부 지원업무 처리의 세부사항을 정한 지침에 이를 반영·시행한 하기 위함이었다.

(제3차 개정 : '09.11.18) '어촌계 총유어업권의 손해 배·보상 청구에 따른 정부의 대지급 방안 보완' 및 대부원금의 신속한 상환을 위한 국가채권 회수관리 제좌 운영 개선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 지원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한 지침에 이를 반영·시행하기 위함이었다.

나. 주요내용

① 대지급, 대부 업무처리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지급금 신청과 지급, 대위통지 및 대위행사, 대지급금 정산에 관한 사항 등 대지급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둘째, 대부금의 신청과 대부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대부금 상환 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대부금의 상환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대부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등 대부금 지원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셋째, 대지급·대부 관련 서류정리 및 대지급·대부 관련 부서에 관한 사항 등 기타 행정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② 제1차 개정의 주요내용은 대부금의 우선변제를 통한 채권확보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질권설정 동의서 및 대부금 상환 약정서 원본은 우편송부하기 전에 먼저 Fax송부를 하도록 하여 국토해양부가 이를 근거로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으로 HS센터에 질권설정 통지를 하도록 하였다.

③ 제2차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지급업무와 관련하여 첫째, 청구권 행사 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촌계장 명의로 신청한 경우와 어업권 행사계약자 명의로 신청한 경우로 구분 제출토록 하였다. 이를 위해 어촌계 총유어업권의 손해 배·보상 청구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신청시 추가 제출해야할 서류(붙임1) 및 필요서류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둘째, 지자체(시·군)가 대지급 신청 검토/지급/사후관리 단계별 확인·검토할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다.¹⁸⁾ 셋째, 종전 지급대장은 허베이 스피리트호보상지원 시스템 입력·관리로 대체하되, 시스템 이중화 등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 지급대장을 병행 유지하도록 하였다.

대부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첫째, 지자체가 대부 심사시 대부대상 여부 및 대부금액의 판단에 고려할 사항을 추가하였다.¹⁹⁾ 셋째, 고시 별표 1에 따라 대부금액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대부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넷째, 지자체가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질권설정동의서 및 대부금 상환 약정서 원본은 대부금 입금의뢰시 국토해양부로 즉시 송부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손해 사정액 통보를 받고 6개월 이내 대지급금 신청 또는 사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의 상환통지 시기 등을 추가하였다.²⁰⁾ 다섯째, 종전의 대부금 지급 대장 기록의무를 삭제하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보상지원 시스템 입력·관리로 대체하여 ‘보상 청구자 정보’, ‘대부금 신청등록’, ‘대부금 상환통지 등록’ 등

18) 시장·군수에게 허베이 스피리트호 보상지원시스템을 활용한 ‘권리행사제한 사유’ 확인 및 신청인의 기본정보 입력의무를 부여하고, 국토해양부 보고서 반드시 대부금액을 기재토록 하고 신청인에게 휴대폰을 통하여 입금알림 문자서비스를 시행중임을 홍보하도록 하였다.

19) 어촌계 총유어업권 중 어촌계장 명의로 손해 배·보상을 청구한 경우는 개별 피해금액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대부 가능하며, 이동 영업 또는 복수 지역 영업을 하는 자의 대부기준 적용지역은 주된 영업활동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보상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채권양도 등 청구인의 권리 행사 제한사유 존재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대부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20) 상환 기한 : 손해사정 결과 통지 6개월 경과일 부터 1개월 이내.

대부신청·지급·상환에 따른 정보를 즉시 입력하도록 하였다.

④ 제3차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지급업무와 관련하여 첫째, 어촌계 총유어업권 중, 어촌계장 명의로 대지급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투명화 하였다.²¹⁾ 둘째, 대지급 대위통지는 대지급금 지급의뢰와 동시 대위통지 하도록 하고, 대위행사는 대지급금 입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하여 대지급금의 대위통지시기 및 대위행사(청구) 의사표시 시기를 명확하게 하였다.

대부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첫째, 대부금 회수계좌를 지자체 명이가 아닌 국토해양부 명의로 개설한 후, 개설된 국토해양부 계좌를 피해지역 지자체별로 개별 부여하여 대부금 회수계좌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둘째, 가압류 등 권리행사 제한사항 접수시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²²⁾

3.4.2 정부지원자금 관리지침의 제·개정

가. 제·개정 이유

특별법에 따른 대부 및 대지급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하되, 낭비·비효율적인 부분은 최소화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정부예산 및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회수되는 각종 자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류오염 피해보상지원관련 정부자금 관리지침」을 제정하였다('09.1.23).

이후 지자체의 자체계좌 개설로 인한 관리·감독상의 문제점과 상환기간 과다소요에 따른 이자부담을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채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회수관리 계좌”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1차 개정('09.3.3)이 이루어졌으며²³⁾, 같은 해 11월에는 “회수관

21) 마을어업 및 어업권 행사에 관한 관련자료 제출이 어려운 어업권의 경우 해당 어업권의 대지급 신청·수령·배분 등에 관한 어촌계 총회 의결서로 대체함.

22) 보상청구인이 원채무자이고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 등의 권리행사 제한 서류가 접수될 경우, 해당 내역 유선 및 팩스 통지 후 국토해양부에 문서로 즉시 보고하도록 함.

23) 종전 주단위의 상환처리 방식이 일단위로 처리됨에 따른 대부금 이자부담이 있었지만, 상환처리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예산절감이 가능(이자부담 기간 : 단축됨 → 2일)하고, 지자체 자체계좌 개설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리 계좌” 운영 개선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국토해양부 명의의 별도 계좌개설을 통하여 즉시 대부금을 상환처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09.11.19).

다. 주요내용

동 지침은 대부 및 대지급금, 한도초과보상금 등 관리대상자금과 관리대상자금의 계좌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차 개정은 지자체의 자체계좌 개설로 인한 관리·감독상의 문제점과 상환기간 파다소요에 따른 이자부담을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채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회수관리 계좌”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2차 개정의 주요내용은 첫째, 대부금 회수계좌를 지자체 명의로 아닌 국토해양부 명의로 개설한 후, 개설된 국토해양부 계좌를 피해지역 지자체(분임수입징수관)별로 개별 부여하여 대부금 회수계좌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둘째, 국토해양부 명의로 각 지자체에 부여된 회수계좌의 수납내역을 지자체 및 수협 확인 후 대부원금을 즉시 상환처리 하도록 하였다.

동 지침상 관리대상인 자금은 대지급금·대부금 및 한도초과보상금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의 자금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방침을 정하고 있다.

<표 2-1> 관리대상 자금

계좌명		관리대상 자금
대지급관리		- 국토해양부에서 국제기금 등에 대위 행사하여 수령한 보상금 - 초과 지급된 대지급금의 반납금
대부관리	총괄계좌	대부받은 자의 보상금
	지자체 상환계좌	지자체별 대부 상환금
한도초과보상금관리		한도초과보상금

<표 2-2> 대지급 관리계좌의 관리방법

관리대상 자금	관리 방법
국토해양부에서 국제기금 등에 대위행사하여 회수한 보상금	●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자금관리지침 3-가의 국토해양부 명의의 대지급관리계좌로 보상금이 입금되면 즉시 국토해양부에 보고하여 그 내역을 확인하여(국토해양부에서 내역을 미리 통보한 경우에는 보고 생략) - 한도초과보상금으로 대지급하고 대위행사하여 회수한 자금인 경우에는 한도초과보상금 관리계좌로 이체 - 수협자금으로 대지급하고, 대위행사하여 회수한 자금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로부터 확인한 대지급금 계좌별로 상계처리 * 한도초과보상금으로 수협자금을 미리 상환한 경우에는 한도초과보상금 관리계좌로 이체 ● 보상금 입금일로부터 이체 또는 상계처리일까지의 이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서 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
초과지급된 대지급금의 반납금	● 시·군으로부터 초과지급된 대지급금 반납금이 국토해양부 명의의 대지급관리계좌로 입금되면 국토해양부의 출금지시가 있을 때까지 예치 ● 반납금 입금일로부터 출금일까지의 이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서 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

<표 2-3> 한도초과보상금 관리계좌의 관리방법

관리대상 자금	관리 방법
한도초과보상금	● 국토해양부로부터 한도초과보상금이 교부되면 - 수협자금으로 대지급하고 대위행사하였으나 회수되지 않은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급금을 우선 상환하고 - 잔액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중 최고금리 예금상품에 예치하여 관리하면서 ● 국토해양부에서 대지급금 지급의뢰시 - 한도초과보상금 잔액범위 내에서는 한도초과보상금으로 대지급금 지급

※ 수협에서 기 대지급한 금액 중 국제기금에 SLQ(후순위채권)으로 선언한 방제비는 한도초과보상금으로 상계처리

<표 2-4> 대부 관리계좌의 관리방법

관리대상 자금	관리 방법
대부받은 자의 보상금	●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자금관리지침 3-가의 국토해양부 명의의 대부관리 총괄계좌로 보상금이 입금되면 수협에서는 즉시 국토해양부에 보고 하여 그 내역을 확인(입금내역으로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보고 생략) ● 입금된 보상금은 국토해양부등으로부터 확인된 보상금 관련 대부금 계좌별로 신속히 상계처리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대부금을 지급했던 계좌로 송금한 후 국토해양부에 보고 ● 보상금 입금일로부터 상계처리일까지의 이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서 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
지자체별 대부 상환금	● 11개 지자체에 개별 부여된 국토해양부 계좌로 대부상환금이 입금되면 매일 확인하여 입금된 날(은행 영업 시간내) 다음날까지 대부금 상환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국토해양부와 해당 지자체에 결과보고 ※ 다만, 입금된 날에 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그 다음날까지 상환처리 한다. ● 상환금 입금일로부터 상계처리일까지의 이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서 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

3.4.3 국가채권관리매뉴얼

가. 작성이유

특별법에 따른 대부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시·군별로 임명된 회계관직(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이 수행할 국가채권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에게 지원된 대부금에 대한 「국가채권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였다('09.3.9).

나. 주요내용

동 매뉴얼에는 첫째, 관리대상의 채권유형, 채권관리법률(국가채권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민법, 국고금관리법),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둘째, 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는 소멸시효의 개념, 국가채권관리법상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셋째, 채권관리부 등재, 납입고지 등 납입절차에 관한 사항, 미납시 독촉, 채무자 재산조사, 가압류 등 채권보전 절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집행권원의 획득 및 강제집행에 관한 사항 등 채권관리 업무별 그 처리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있다.

넷째, 수입 징수 및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으로는 수입 징수 보고, 국고금 계산서 제출, 채권현황보고에 관한 사항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3.5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고시

3.5.1 지정이유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장기적인 생태계모니터링 및 환경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려는 목적으로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지정·고시하게 되었다.

3.5.2 지정경과

2008년 6월 국토해양부는 유류오염 사고 직후부터 실시한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주관연구기관 : 한국해양연구원)를 바탕으로 2008년 6월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안)을 마련하였다. 2008년 6월에 마련된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안)은 유류오염 피해지역을 그 오염 정도(해안 유류표착 정도, 생물 및 퇴적물 내 유류성분 잔류상태, 생태계 훼손 여부 등)에 따라 3개 지역군으로 구분하였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6월부터 8월까지 복원지역 지정(안)에 대해 관련기관(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해당 지자체) 및 전문기관(한국해양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태안해안국립공원관리공단) 회의, 지역공청회('08.8.28, 충청남도 ; '08.9.3, 전라남도)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와 같은 의견 수렴과정에서 복원지역 지정 시기 및 방법 변경에 대한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당시 지역 현안인 피해보상감정이 일단락되는 2009년 4월 이후에 지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은 유류오염 피해지역의 등급화(3개 지역군으로 구분)로

인한 피해보상 사정 차별화 등을 염려하여 유류오염 피해지역 전체를 등급화된 지역구분 없이 단일복원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유류오염 피해지역을 단일지역으로 지정한 안을 2009년 4월 마련하고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 지역 공청회('09.6.29, 태안군청), 지역설명회('09.6.30, 보령수협)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11호, 2009.7.31)」하였다.

3.5.3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현황

동 고시에 의해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충청남도 태안군 등 3개도 12개 시·군 지역에 속하는 해안 및 도서 등을 합하여 총 6,474km²에 이른다(상세지정 내역은 ‘<부록 11> 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도면’ 참조).

<표 2-5> 충남지역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현황

행정 구역	해안 시군구(읍면리)	포함 도서명	면적 (km ²)
충청 남도	당진군(장고항리, 고대리, 한진리 해안)	대난지도, 소난지도, 대조도, 우무도, 소조도, 비경도, 분도, 철도	30.9
	서산시, 태안군, 보령시, 홍성군 (대산항 서쪽끝단 ~ 천수만 북쪽끝단 해안 및 외해역)	대우도, 소우도, 조도, 옥도, 고파도, 웅도, 분점도, 닭섬, 목개도, 정족도, 거아도, 나치도-치도, 삼도, 울미도, 지채도, 토도-토끼섬, 가의도, 웅도, 화창도, 내파수도, 외도, 외파수도, 귀도-구도, 대도, 방행도, 신도, 안도, 연돌도, 궁시도, 고대도, 관장도, 길웅암, 납작도, 녹도, 대길산도, 대청도, 로도, 대화사도, 마차도, 명덕도, 명장도, 모도, 불모도, 삼시도, 석도, 소길산도, 소도, 소청도, 소화사도, 외고도-외점소, 외연도, 중청도, 원산도, 군관도, 증도, 장고도, 중길산도, 추도, 호도, 황도, 황견도, 효자도, 용도, 무명도, 월도, 육도, 허육도, 추도, 소도, 안마도, 왓새섬, 소산여, 상목도, 하목도, 노지지도, 노랑섬, 죽도, 명덕도, 모도, 전도, 오가도, 월이도, 금바위도, 불광도	3049.6
	서천군	아목도, 오력도, 유부도	234.1

<표 2-6> 전라지역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현황

행정 구역	해안 시군구 (읍면리)	포함 도서명	면 적 (km ²)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연도, 관리도, 말도, 명도, 무녀도, 방축도, 선유도, 신시도, 야미도, 장자도, 횡경도, 비안도, 십이동파도, 어청도	483.0
	부안군 (위도면, 변산면)	거륜도, 식도, 위도, 정금도, 왕등도, 하섬	197.6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성산1리 ~ 염산면 옥실리 남단, 낙월면)	상낙월도, 하낙월도, 송이도, 안마도, 대각이도, 소각이도, 목도, 대각시도, 소각시도	280.4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도리포 ~ 대사리 백학 북단)	저도	38.2
	신안군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비금면, 도초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 팔금면, 암태면, 압해면)	지도, 어의도 작은포자도, 큰포자도, 사옥도, 증도, 부남도, 도덕도, 호강섬, 대섬, 대단도,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임자도, 대노룩도, 굴도, 갈도, 재원도, 섬타리도, 육타리도, 두리대섬, 대섬, 수도, 자은도, 할미도, 두리도, 소두리도, 둔북섬, 비금도, 우세도, 소우세도, 노대도, 상수치도, 수치도, 도초도, 우이도,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하의도, 대야도, 신도, 능산도, 개도, 장병도, 옥도, 문병도, 대장도, 소장도, 간암도, 상태도, 하태도, 장산도, 가세섬, 막금도, 섬막금도, 안좌도, 대도례도, 소도례도, 닭섬, 상사차도, 하사차도, 담백도, 팔금도, 암태도, 추포도, 진목도, 말목도, 삼도, 초란도, 당사도, 압해도, 역도	1495.7
	진도군 (조도면, 지산면, 진도읍)	관매도, 관사도, 나배도, 내병도, 눌옥도, 대마도, 동거차도, 모도, 상조도, 서거차도, 성남도, 소마도, 옥도, 외병도, 장죽도, 장도, 죽향도, 청등도, 하조도, 가사도, 맹골도	664.2

동 고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내 해양오염영향 조사 및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지역 또는 해역별로 세분화된 조사 및 모니터링 계획과 생태계복원계획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3.5.4 향후 추진계획

국토해양부는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고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계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장복원계획, 환경부의 생태계복원계획을 종합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을 마련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잔존유에 따른 해양생태계 영향 및 생태계 회복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생태계모니터링과 주요 생물자원 서식처 복원 등을 담당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훼손된 어장복원 및 수산자원 관리 등을 담당하며, 환경부는 태안국립공원 내 생태계 모니터링, 주요 서식처 및 훼손된 지역 복원 등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였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과 그 후속조치로 수립한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에 따라 유류오염 사후 환경영향조사 및 평가, 장기 생태계모니터링, 해양환경 및 생태계복원 사업을 2010년부터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

4. 교훈 및 과제

특별법이 제정된 주요이유는 민사책임협약(92CLC) 및 국제기금협약(92FC)에 의한 국제유류오염 손해보상체계가 갖는 한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CLC 및 FC의 유류오염손해보상체계에서는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보상한도가 2억300만SDR(약3,216억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 추정액이 5,420~5,770억원('09.10월 기준)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경우는 부분적인 보상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²⁴⁾

둘째, 국제기금에 의한 손해사정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되기까지는 길게는 수년간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국제기금 보상매뉴얼은 유류오염손

24) 1. 1992년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92민사책임협약, The Protocol of 1992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 92CLC)은 선박의 크기에 따라 4.51백만 SDR에서 최대 89.77백만 SDR까지 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음.
2. 1992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92 국제기금협약, The Protocol of 2003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 92FC)은 92CLC에 따른 배상한도액을 포함하여 최대 203백만 SDR까지 국제기금에서 추가 보상하고 있음.

해보상과 관련하여 클레임청구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입증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대부분의 피해주민들은 국제기금 보상매뉴얼이 요구하는 입증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입증자료가 있더라도 이를 준비하는 데에도 장시간의 시일이 소요되고,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손해보상을 청구하더라도 청구에 대하여 국제기금이 손해사정을 하는데 또한 장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국제기금과의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셋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해보상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손해배·보상절차가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 CLC 및 FC에 의한 손해보상체계에는 손해 배·보상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자들의 생계지원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피해주민들은, 특히 영세사업자 및 영세주민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심각한 생계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IMO체제하의 유류피해보상체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속한 보상과 한도초과보상, 생계지원 등을 위하여 특별법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각종의 고시, 지침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특별법 제정·시행은 국제기금 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한 정부보상 및 손해보전지원(대부, 대지급)제도를 도입함으로써 CLC 및 FC의 유류오염손해보상체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과거에 없었던 선례를 남김으로써 향후 유사한 유류오염사고 뿐만 아니라, 대형재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지역 주민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여지를 남겼다.

제 2 절 피해보상 지원조직의 운용

1. 피해보상 지원조직 개괄

앞서 언급하였듯이²⁵⁾ 사고발생 직후 중앙부처에서는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그리고 사고현장에서는 해양경찰청장

25) 제1장 제2절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급대응' 부문 참조.

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제대책본부가 구성되었다. 또한 사고발생 4일 뒤인 2007년 12월 10일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현장지원반을 편성하였고, 현장지원반의 기구는 지원반, 수산반, 해경상황실, 수산과학원, 민원 콜센터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구성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조직 통·폐합(국토해양부 신설 및 기존 수산기능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으로 다시금 변천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유류오염사고 손해 배·보상지원 업무의 공백방지와 특별법 후속 조치 등 지원대책 및 국제기금과의 협의 등을 책임지고 추진할 소관 부처의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8년 2월 22일 해양수산부 관련 국장회의를 개최하였다.²⁶⁾ 이 자리에서 주관부처는 신설되는 국토해양부로 하고, 생계지원 등 일정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의 협조를 구하는 형태로 소관부처를 검토하였고, 보상지원 업무는 양 부처가 소관별로 추진하고, 특별법 시행령 등 추진일정에 문제가 있는 업무 및 공동추진 필요업무는 양 부처가 협조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2008년 3월 이후에는 국토해양부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보상지원단 등으로 변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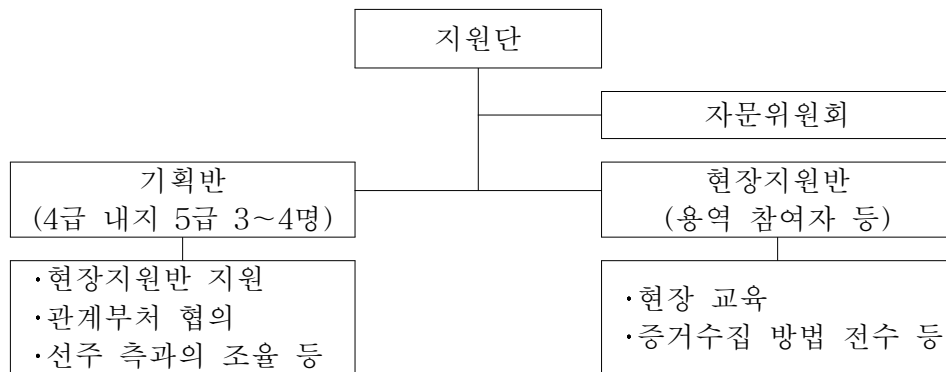
이에 본 절에서는 피해보상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자체의 피해보상 지원조직의 변천과정을 조직의 구성과 정원 및 주요업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국토해양부의 지원조직

2.1 별도 정원 확보 이전 지원조직

2007년 12월 13일 해양수산부에서는 「오염피해조사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주요 기능은 ①피해주민들이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손해 배·보상 절차에 대한 사전교육, 증거수집방법 안내 등 간접지원으로 한정할 것인지 또는 피해자(주로 수협)의 조사를 직접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②피해주민들에게 조사 및 자료작성 기법 등을 교육하고 필요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이며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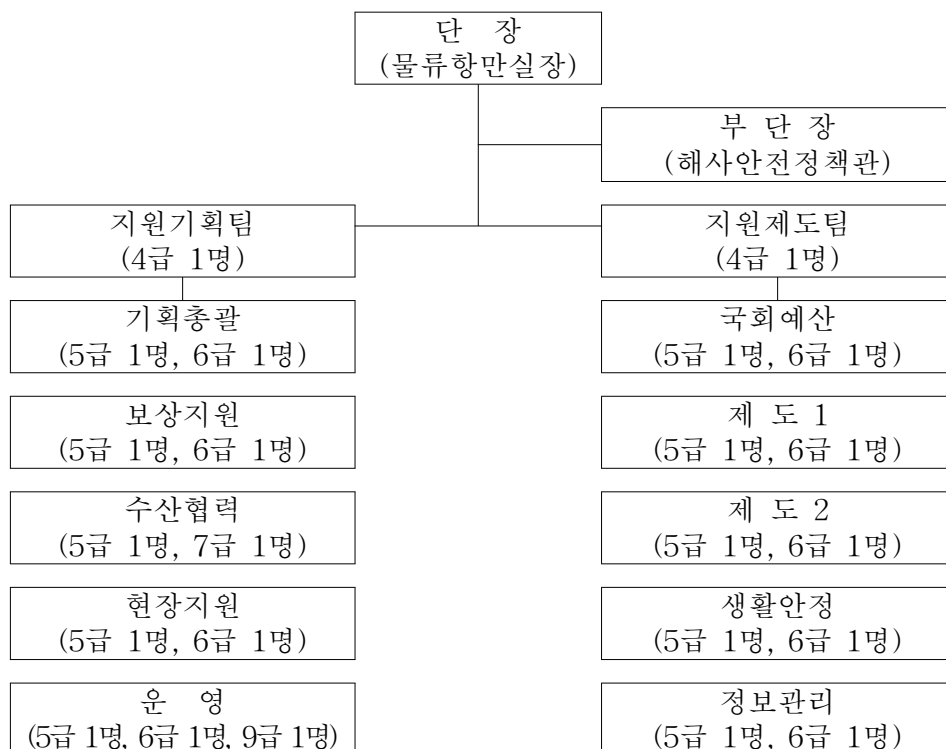
26) 해양정책본부장, 안전관리관, 환경기획관리관, 수산정책국장, 어업정책과장, 피해보상반단장, 해양환경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그림 2-2> 피해보상지원단 조직도(1)

국토해양부 출범 후 보상지원 업무의 연속성과 손해 배·보상과 관련된 당면 과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다른 인사보다 우선적으로 「피해보상지원단」을 조직·운영하였으며('08.3.6), 문서처리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물류항만실 내 고유 업무조직 코드를 부여 받은 바 있다('08.3.24).

2008년 3월 6일 국토해양부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보상지원단 구성 당시 피해보상지원단 구성은 단장(1명) 아래에 부단장(1명)을 두고, 단장 직속으로 지원기획팀과 지원제도팀을 두었다. 지원단 조직 구성은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피해보상지원단 조직도(2)

그리고 근무인력은 겸직인 단장, 부단장을 제외하고 3급 1명, 4급 2명, 5급 10명, 6급 9명, 7급 1명, 9급 1명 등 총 24명을 배치하였다.

<표 2-7> 피해보상지원단의 근무인력 현황

구 분	3급	4급	5급	6급	7급	9급	합 계
인원수	1	2	10	9	1	1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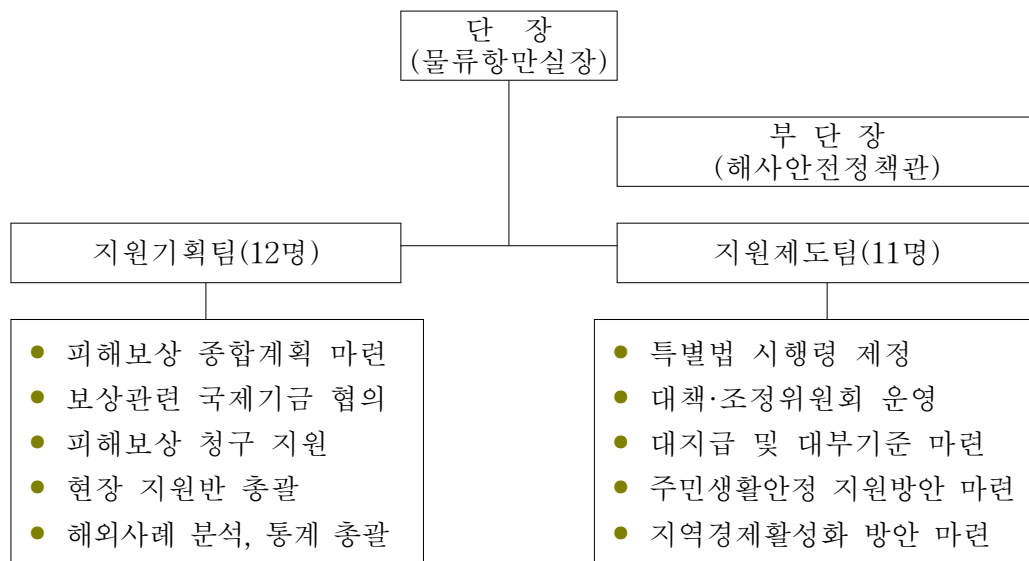
피해보상지원단의 중요정책결정사항은 전직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통해 의견수렴 후 결정하도록 하였고, 2팀 10담당으로 운영하되 주요 이슈에 따라 담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였는데 팀별 주요업무 내용은 <표 2-8>과 같다.

<표 2-8> 팀별 주요 업무내용

지원기획팀	지원제도팀
< 기획총괄담당 > ● 삼성중공업 출연금 관리방안 마련 ● 국제해사팀 및 대외업무협의 총괄 ● 선주책임 제한 절차 상황관리 ● SLQ·선주보험사 옵션 검토 < 보상지원담당 > ● 선주보험사, 펀드 조사기관 협력 ● HS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 방제비 지급현황 파악 < 수산협력담당 > ● 수산피해 조사 지원 ● 수산부문 협력 총괄 < 현장지원 담당 > ● 피해대책위원회 관리, 피해조사자 지도 ● 피해조사 및 손해배·보상 청구 지원 ● 현장지원반 운영 ● 책임제한 절차 채권신고 지도 < 운영담당 > ● 대책위원회/조정위원회 운영 등	< 국회·예산담당 > ● 피해보상관련 국회 대응 ● 피해보상지원 예산 확보 < 제도 1담당 > ● 특별법시행령 제·개정(법제처협의) ● 유류오염사고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제도 2담당 > ● 특별법시행령 제정(내용작성, 검토) ● 유류오염사고대책위원회 심사기준 작성 ● 방제·복원사업 추진상황 관리 ● 정부지급금, 대부금 입출금시스템구축 < 생활안정담당 > ● 생활안정자금, 금융지원대책 ● 주민 소득제고, 학자금 지원방안 ● 비예산 지자체 주민 지원사업 관리 < 정보관리담당 > ● 지역발전 통계, 관련계획 분석

2008년 3월 27일에는 특별법 시행 이전이라는 이유로 법적근거가 미약한 전담대응조직(T/F)의 해체지시가 있었으나, 2008년 4월 1일 국무회의시 국무

총리께서 유류오염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보상을 위하여 특별법 시행 이전이라도 피해보상지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피해보상 지원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08년 3월 14일 공포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08년 4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피해보상지원단을 재구성하여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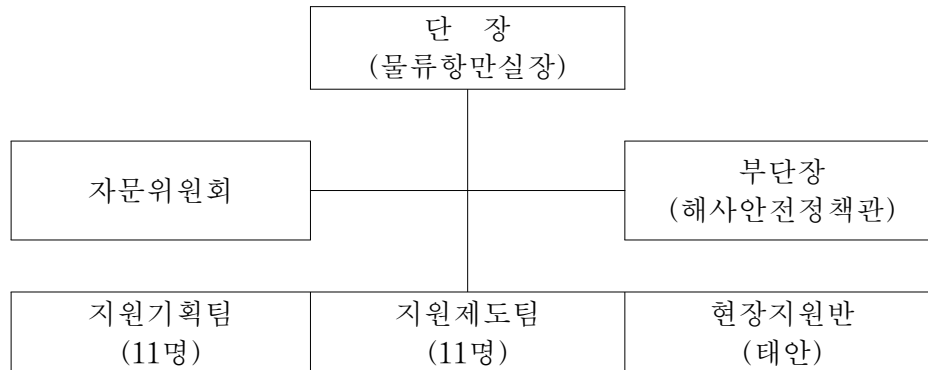
<그림 2-4> 피해보상지원단 조직도(3)

2.2 별도 정원확보 이후 지원조직

2008년 3월 6일 구성·운영된 국토해양부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보상지원단의 조직구성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피해보상지원단장 아래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것과 태안에 상주하는 현장지원반 및 연구용역 관련 현장지원반 등을 구축하여 운영하였다는 점이다.

자문위원회는 분야별로 인력을 구성하였는데 보험, 국제기금 대응, 수산유통, 세무회계, 법무, 어촌관광, 해양환경, 수산자원, 해양생물, 양식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현장지원반의 경우는 국토해양부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보상지원단 소속 2명과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직원 2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용역 관련 현장지원반은 수산분야(메이텍), 관광·유통분야(한국해양수산개발원), 회계분야(삼일회계법

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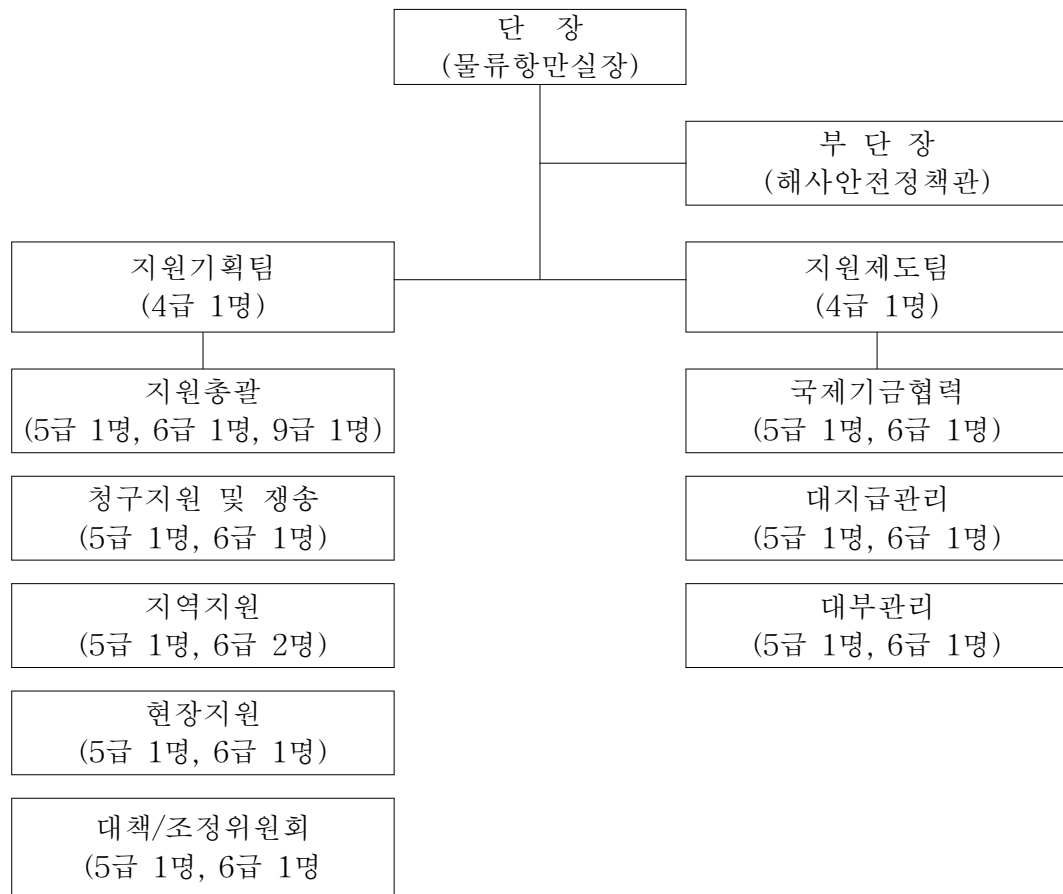


<그림 2-5> 피해보상지원단 조직도(4)

2008년 11월 4일 특별법 제5조에 근거, 피해보상지원단 구성에 필요한 별도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결과, 5명의 별도 정원(3·4급 1, 4급 1, 5급 3)을 확보하고, 정식적인 별도 조직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방제작업의 마무리와 함께 피해조사의 본격적인 추진 및 주민들의 손해 배·보상에 대한 관심 증대 등 피해보상 여건의 변화에 따라 2008년 12월 29일부터는 국토해양부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보상지원단의 조직 및 인원도 개편·조정되었다.

먼저 기존의 지원기획팀에 있던 기획총괄담당의 부서 명칭을 지원총괄담당으로 변경하였고, 또한 보상지원담당, 수산협력담당, 운영담당 등의 부서를 폐지하고, 청구지원 및 쟁송담당, 지역지원담당, 대책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담당 등의 부서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지원제도팀의 경우 기존 국회예산담당, 제도 1담당, 제도 2담당, 생활안정담당, 정보관리담당 등의 부서를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이 국제기금협력담당, 대지급관리담당, 대부관리담당 등이 신설되었다. 이처럼 기존의 2팀 10담당에서 2팀 8담당으로 조직이 감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력도 기존의 24명에서 22명으로 감축되었다.



<그림 2-6> 피해보상지원단 조직도(5)

그리고 이렇게 정비된 각 팀의 주요 업무내용을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 2-9>이다.

먼저 지원기획팀의 주요 업무로는 피해보상지원 총괄, 국회 및 예산 대응, 특별법 운용, 피해대책위원회 및 서베이어 관리(배·보상 청구 독려), 국내 쟁송 대응, 선주책임제한절차 대응, 삼성중공업 관련 사항, 현장여론수렴,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이미지 개선사업 추진, 주민생계안정 지원, 대책위원회·조정위원회 운영, 특별법 개정,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등이었다.

또한, 지원제도팀의 주요 업무로는 정례협의회 등 국제기금 협상 총괄, 국제기금과 정보공유체제 구축운영, 방제비 등 지급 지원, 대지급금 지원, 대지급금 대위행사, 정부후순위채권(SLQ) 관리, 에스크로우 계좌관리, 대지급금·대부금·한도초과보상금 지급 등 세부규정 마련, 대부금 지급, 대부채권 관리 등이었다.

<표 2-9> 피해보상지원단 팀별 주요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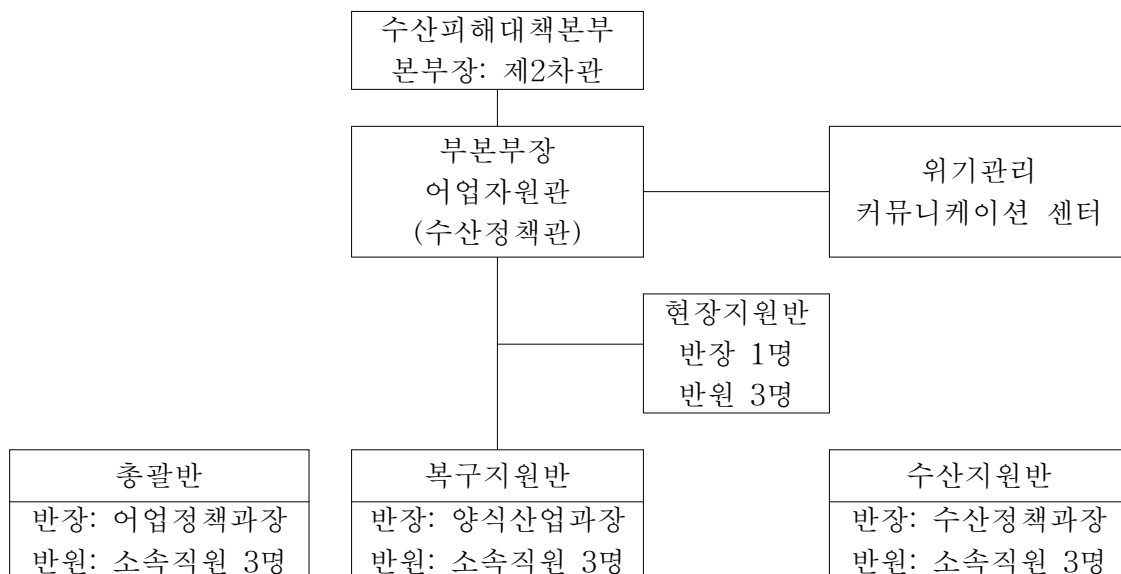
지원기획팀	지원제도팀
< 지원총괄담당 > ● 피해보상지원 총괄 ● 대내외 보고 종합 ● 국회 및 예산 대응 ● 통계유지 및 관리	< 국제기금협력담당 > ● 정례협의회 등 국제기금 협상 총괄 ● 국제기금과 정보공유체제 구축운영 ● 백서제작
< 청구지원 및 소송담당 > ● 피대위 및 서베이어 관리(청구독려) ● 비제도권 청구자 지원 등 ● 국내 소송 대응 ● 선주책임제한절차 대응 ● 삼성중공업 관련 사항	< 대지급관리담당 > ● 방제비 등 지급 지원 ● 대지급금 지원 ● 대지급금 대위행사 ● 정부후순위채권(SLQ) 관리 ● 에스크로우 계좌관리
< 지역지원담당 > ● 현장지원 총괄(현장여론수렴) ●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 피해지역 이미지개선 사업 추진 ● 주민생계안정 지원방안 ●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3호	< 대부관리담당 > ● 대지급금, 대부금, 한도초과보상금 지급 등 세부규정 마련 ● 대부금 지급 ● 대부채권 관리
< 대책/조정위원회담당 > ● 대책위원회·조정위원회 운영 ● 특별법 개정 ● 주간 상황보고 및 주간자료 ● 홍보, 민원 ●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 현장지원담당 > ● 피해대책위원회 관리, 피해조사자 지도 ● 피해조사 및 손해배·보상 청구 지원 ● 책임제한 절차 채권신고 지도	

이렇게 정비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보상지원단 조직 및 인원은 2009년도에 업무 추진상황 및 보상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담당 및 인원이 단계적으로 조정되었는데 2009.12월말 기준으로 지원제도팀의 대지급담당 및 대부관리담당을 통합되어 2팀 6담당, 18명으로 축소·조정되었다.

3.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조직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 농림부는 손해 배·보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기름제거 작업에 소속 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 강화 및 성금 전달 등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활동을 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2007년 12월 14일부터 2008년 2월 1일까지 농림부 본부 및 소속기관 봉사단 510명이 총 23회에 걸쳐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였고, 2007년 1월 31일에는 농림부장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주민들을 위로하고 성금을 전달하였다.

이후 농림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되었고 국토해양부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주관 부서가 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요 역할은 해양오염사고 수산피해대책본부 및 현장지원반 설치·운영, 오염정도에 따라 출어자제 및 재개대책과 어장복원 추진, 어업인 방제활동 등 어장·양식장 피해예방대책 마련, 오염된 양식수산물 채취 및 유통통제대책 마련, 어장(양식장)피해 증거수집 지도, 수산물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 추진 등 수산분야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림 2-7> 농림수산식품부 수산피해대책본부 조직도

농림수산식품부는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산피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그 하위 조직으로 총괄반과 실무반 및 현장지원반 등을 두어 국립수산물

학원(수산사무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자체(시·군), 수협 등의 협조를 받아 운영하였다. 수산피해대책본부의 인력구성은 본부장 1명, 부분부장 1명, 현장지원반 4명, 총괄반 4명, 복구지원반 4명, 수산지원반 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었다.

총괄반의 주요 업무는 사고수습 추진상황종합보고, 사고원인 조사·분석 및 대책수립 등이었고, 복구지원반의 주요 업무는 현장 긴급복구업무 지원, 양식어장 및 마을어장 피해예방 및 경감조치 지원 등이었으며, 수산지원반의 주요 업무는 피해조사 현황관리 및 민원관리, 피해어업인 지원방안 강구(영어자금, 방제참여 어선 면세유 지원 등) 등이었다. 그리고 현장지원반의 주요 업무로는 피해조사 현장지원업무 수행, 피해어업인 현장지원 방안 강구 등이었다. 또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농림수산 식품부의 대책발표 및 조치에 대한 여론조사, 대언론 신속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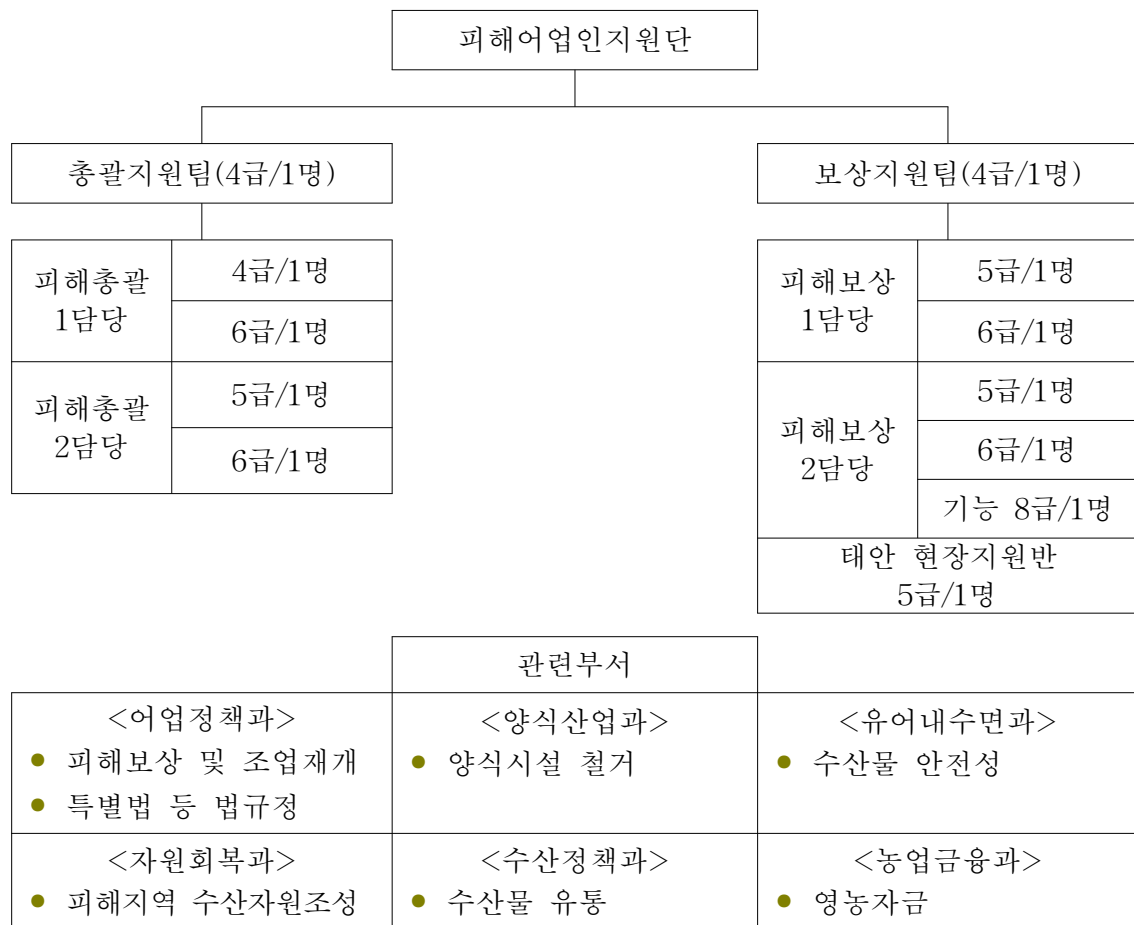
<표 2-10> 수산피해대책본부의 주요 업무내용

구 분	반별 주요 업무내용
총괄반	● 사고수습 추진상황 종합 보고 ● 사고원인 조사·분석 및 대책 수립 ● 각 실무반 활동상황 지원
복구지원반	● 사고수습기관과의 업무 협조 ● 현장 긴급복구업무 지원 ● 양식어장 및 마을어장 피해예방 및 경감조치 지원
수산지원반	● 어업피해관련 국내·외 기관과 업무 협의 ● 피해현황 및 민원 관리 ● 피해어업인 지원방안 강구(면세유, 영어자금 등)
현장지원반	● 어업피해관련 현장민원 관리 ● 피해조사 현장지원업무 수행 ● 피해어업인 현장 지원방안 강구

그러나 방제작업의 마무리와 함께 피해조사와 피해신고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피해어민들의 손해 배·보상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2008년 12월에 수산피해대책본부를 ‘피해어업인지원단’으로 변경하였다.

피해어업인지원단의 조직구성은 크게 생계지원, 소송, 서무, 홍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총괄지원팀과 피해집계, 특별법, 방제업무, 환경복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상지원팀으로 구성되었는데, 총괄지원팀에는 피해총괄 1담당, 피해총괄 2담당을 두었고, 보상지원팀에는 피해보상 1담당, 피해보상 2담당, 그리고 태안 현장지원반 등을 두었다.

피해어업인지원단의 관련 부서로 어업정책과, 자원회복과, 양식산업과, 수산정책과, 유어내수면과, 농업금융과 등이 있었다. 어업정책과는 피해보상 및 조업재개, 특별법 등 법규정 등과 관련하여 피해어업인지원단과 연결되었으며, 자원회복과는 피해지역 수산자원 조성, 양식산업과는 양식시설의 철거, 수산정책과는 수산물 유통, 유어내수면과는 수산물 안전성, 농업금융과는 영농자금 등과 관련하여 피해어업인지원단과 연결되었다.



<그림 2-8> 농림수산식품부 피해어업인지원단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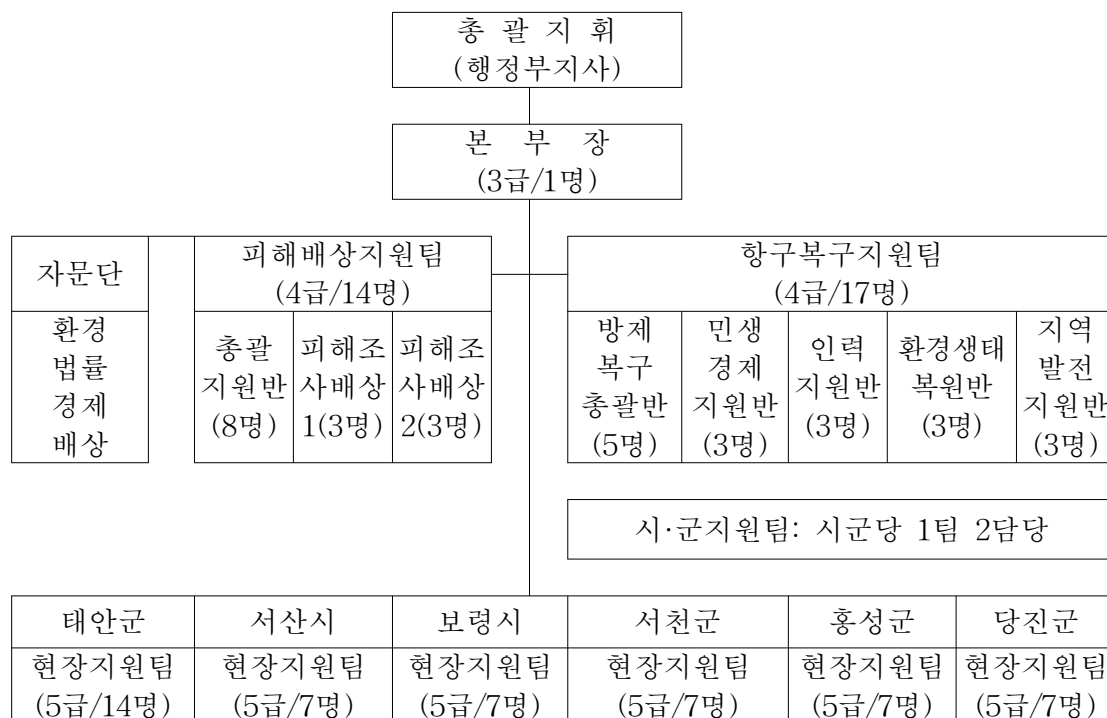
4.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조직

유류오염 피해가 극심했던 충청남도는 본청에 서해안유류사고 대책지원총괄본부라는 별도 조직을 설치·운영하였고, 충남지역 6개 시·군은 유류사고 지원팀 혹은 대책팀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오염피해가 심하지 않았던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의 경우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기존 관련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였다.

4.1 충청남도의 지원조직

충청남도의 유류사고 지원조직은 사고 당일인 2007년 12월 7일 종합상황실을 설치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하였고, 2007년 12월 11일 사고 현장인 태안군에 행정부지사가 총괄·지휘하는 종합사고 대책반을 설치·운영하였으며, 이후 12월 17일에 서해안유류사고 대책지원총괄본부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총괄본부의 조직구성은 자문단, 피해배상지원팀, 항구복구지원팀, 6개 시·군 지원팀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2-9>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조직도

구체적으로 자문단은 환경분야, 법률분야, 경제분야, 배상분야 등의 4개 분야로 구성하였고, 피해배상지원팀에는 총괄지원반, 피해조사배상 1담당, 피해조사배상 2담당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항구복구지원팀은 방제복구총괄반, 민생경제지원반, 인력지원반, 환경생태복원반, 지역발전지원반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6개 시·군 지원팀에는 시·군당 1팀 2담당을 두었으며, 현장지원반을 6개 시·군에 설치하였다.

정원기준으로 조직별 인력구조를 살펴보면 피해배상지원팀은 총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괄지원반 8명, 피해조사배상 1담당 3명, 피해조사배상 2담당 3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항구복구지원팀은 총 17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방제복구총괄반 5명, 민생경제지원반 3명, 인력지원반 3명, 환경생태복원반 3명, 지역발전지원반 3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직급별로 살펴보면 3급 1명, 4급 2명, 5급 8명, 6급 9명, 7급 6명, 기능직 3명, 전문계약직 2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2-11> 서해안유류사고 대책지원총괄본부의 정·현원 현황

구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전문계약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부이사관	행정	행정	해양수산	환경	시설	행·해양수산	행정	시설	해양수산	보건	환경	행정	시설	해양수산			환경	
정원	31	26	1	2	4	1	1	1	1	4	1	2	1	1	3	1	1	1	3	2	
현원	21	18	1	2	4	1	1	1	-	2	-	2	1	1	1	-	1	-	3	-	
증감	△ 10	△ 8	-	-	-	-	-	-	△ 1	△ 2	△ 1	-	-	-	△ 2	△ 1	-	△ 1	-	△ 2	

피해조사배상지원팀은 지원총괄본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체계 구축, 본부 및 팀 소관업무의 종합 조정 총괄, 국내외 유사사례 수집과 분석 및 대책 마련, 유류사고 피해조사 및 보상업무 지원, 국제기금 기준에 맞는 피해

조사 및 배상지원 활동 전개, 전문가(계약직) 그룹 및 시민단체의 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항구복구지원팀은 분야별 피해복구 및 사고수습 총괄, 사고수습 총괄지원 및 중앙·도·시군과의 협력 지원, 방제대책 및 사고수습 공동대응과 대책회의 개최, 인력 및 장비수급·보건위생·안전관리·피해복구 등 분야별 대책 지원, 유관기관 협조 지원(군인, 경찰, 해경 등), 자원봉사자 인력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2-12> 서해안 유류사고 대책지원총괄본부 팀별 주요업무

팀 구 분	주 요 업 무
피해조사 배상지원팀	● 지원총괄본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체계 구축 ● 본부, 팀 소관업무의 종합 조정 총괄 ● 국내외 유사사례 수집 및 분석, 대책 마련 ● 유류사고 피해조사 및 보상업무 지원 ● 국제기금 기준에 맞는 피해조사 및 배상지원 활동 전개 ● 전문가(계약직) 그룹 및 시민단체 활동 지원 ● 해양·환경분야, 피해복구·보상분야, 지역경제분야
항구복구 지원팀	● 분야별 피해복구 및 사고수습 총괄 ● 사고수습 총괄지원 및 중앙·도·시군과의 협력 지원 ● 방제대책 및 사고수습 공동대응, 대책회의 개최 ● 인력·장비수급, 보건위생, 안전관리, 피해복구 등 분야별 대책 지원 ● 유관기관 협조 지원(군인, 경찰, 해경 등) ● 자원봉사자 인력 관리 총괄

충청남도 6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조직을 살펴보면, 보령시는 유류사고지원팀을 구성하여 피해보상과 항구복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서산시는 유류유출사고대책팀을 구성하여 여기에 행정지원반과 배상지원반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서천군은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정책기획실 재난관리과에서 기획업무와 피해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 태안군은 유류대책지원과를 설치하여 그 산하에 총괄지원담당, 배상지원 1담당, 배상지원 2담당을 두었다. 홍성군은 해양오염사고대책단을 설치하고 여기에 피해배상지원담당과 항

구복구지원담당을 두었다. 당진군은 해양환경오염사고대책단을 설치하고 대책단 내에 배상지원팀과 항구복구지원팀을 두었다.

6개 기초자치단체 지원조직의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태안군 유류대책지원과는 14명, 서산시 유류유출사고대책팀은 7명, 보령시 유류사고지원팀은 7명, 서천군 재난관리과는 7명, 홍성군 해양오염사고대책단은 7명, 당진군 해양환경오염사고대책단은 7명의 지원인력을 각각 배치하였다.

<표 2-13>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조직

구 분		지원조직	담당업무
충 청 남 도	보령시	● 유류사고지원팀 * 피해배상담당 * 항구복구담당	* 유류피해총괄지원 * 방제복구지원
	서산시	● 유류유출사고 대책팀 * 행정지원반 * 피해조사배상지원반	* 유류피해총괄지원 * 수산·비수산분야
	서천군	● 유류피해대책지원단 * 유류피해지원담당	* 유류피해총괄지원
	홍성군	● 해양오염사고대책단 * 피해배상지원담당 * 항구복구지원담당	* 유류피해총괄지원 * 방제복구지원
	태안군	● 유류피해대책지원과 * 총괄지원담당 * 배상지원 1담당 * 배상지원 2담당	* 유류피해총괄지원 * 비수산분야 * 수산분야
	당진군	● 해양환경오염 사고대책단 * 배상지원담당 * 항구복구지원담당	* 유류피해총괄지원 * 방제복구지원

4.2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의 지원조직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의 경우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수산자원과 수산자원담당, 수산담당 및 해양항만과와 같은 기존의 조직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무안군, 영광군, 신안군, 군산시, 부안군)도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해양수산과 등의 기존의 부서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였는데 지원조직은 <표 2-14>와 같다.

<표 2-14>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의 지원조직

구 분		조직명칭	담당업무
전라 남도	도 청	수산자원과/해양항만과	수산자원담당/수산담당
	무안군	해양수산물과	수산피해/환경복원
	영광군	해양수산물과	수산피해/오염방지
	신안군	해양수산물과/경제투자사업단	수산피해/해양생물
전라 북도	도 청	해양수산물과	해양환경담당/수산피해담당
	군산시	해양수산물과	수산피해
	부안군	해양수산물과	수산피해

제 3 절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 심의기구 구성·운영

1.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2008년 3월 특별법 제정 이후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별대책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었고, 2008년 6월 제1회 특별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1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특별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으로 한다.

대책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의 검토나 그 밖에 각종 조치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농림수산식품장관 및 국토해양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또한 대책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대책위원회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필요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2-15>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충청남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간 사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국토해양부 제2차관

1.2 특별대책위원회 운영

특별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책위원회를 대표하고,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특별대책위원회 운영

- 간사 :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 회의소집 : 위원장이 일시, 장소,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보
- 운영 : 대책위 상정을 위해서는 조정위원회 검토를 거쳐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생략 가능

□ 특별대책위원회 기능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심의(특별법 제2조3호 관련)
-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특별법 제8조 관련)
-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특별법 제10조 관련)
-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의 심의(특별법 제12조 관련)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1.3 특별대책위원회 운영 성과

2008년 6월 19일 국무총리실에서 제1회 특별대책위원회가 개최 되었다.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에서 각각 1안씩 총 4건의 안건이 보고되었고 의결 안건 4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1.3.1 특별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특별법 및 시행령이 6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는 특별대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운영규정이 마련됨으로써 국무총리실에서는 향후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 특별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주요내용

- 특별대책위원회의 기능 및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두는 간사를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및 국토해양부 제2차관으로 하고 그 직무를 정함(안 제2조)
 -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차관 또는 차하급자가 대리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출석자에게도 의결권 부여(안 제4조)
 - 대책위원회 상정안건은 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일 7일전까지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에게 대책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
-

1.3.2 대지급금 및 한도초과보상금의 지급수준 규정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및 제15조 제2항에서 대지급금과 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수준을 대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제1회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손해보전 지원방침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 대지급금 및 한도초과보상금의 지급수준 주요내용

- 대지급금, 한도초과보상금은 국제기금 사정액을 기준으로 전액 지급
 - 정부 지급액 중 국제기금의 보상한도(3,216억원) 내의 금액은 대위행사를 통해 회수하고,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
-

특별법상 대지급금은 국제기금의 사정금액의 일정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한도초과보상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피해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수준에서 대지급금 및 한도초과보상금의 지급범위를 결정하였다. 제1회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러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제기금의 신속한 사정 및 보상을 촉구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1.3.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배·보상채권의 순위 결정

2008년 3월 국제기금(IOPC Fund) 집행위원회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 손해 배·보상과 관련한 국제기금의 초기지급률을 60%로 결정하면서, 방제비 등 국가의 손해 배·보상채권을 피해주민의 손해 배·보상채권보다 후순위로 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정하고자 하였다.

□ 국가 등의 후순위 채권 주요내용

- 5월말 현재 국가 등이 지출한 방제비 등의 비용은 482.8억원 수준
 - 향후 방제 종료 시까지 추가 방제비용,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에 따른 환경복원비용 및 지역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비용 등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음
-

이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금에 대한 손해 배·보상 채권을 피해주민 등의 손해 배·보상 채권보다 후순위로 두도록 결정함으로써 피해주민 등에 대한 국제기금의 보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국제기금의 초기 보상률도 청구액의 60%로 높게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주민에 대한 국제기금의 신속한 보상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1.3.4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추가 지정

특별재난지역 지정 당시(충남 6개 시·군 : 보령·서산·서천·홍성·태안·당진, '07.12.11/ 전남 3개 시·군 : 영광·무안·신안, '08.1.18) 전북지역은 실제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특별대책위원회는 유류오염사고로 실제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전북지역 2곳(군산, 부안)을 추가로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로 인해 특별법에 따른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2.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특별대책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의 검토 및 특별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조정을 목적으로 특별법 제5조 제4항 및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2008년 8월 4일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었다.

조정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운영되며, 2008년 8월 제1회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2.1 조정위원회 구성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대책위원회의 위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장관은 제외)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10명)과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3명), 그 밖에 해양환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조정위원

회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자 4명 이내 등 19명 이내로 구성된다. 다만, 민간인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표 2-16> 조정위원회 구성

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위원	● 중앙부처(10명) - 대책위원회 위원인 다음 각 부처 장관이 지명하는 고위 공무원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 지자체(3명) :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및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 민간위원(4명) : 고려대 김인현 교수, 전남대 강연실 교수, 군산대 이정열 교수,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팀장
간사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

2.2 조정위원회 운영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 조정위원회 위원 위촉기준

-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위원은 총 4명인데 2명은 시·도지사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된 피해주민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
- 유류오염사고와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 및 피해자 또는 피해주민단체와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 ① 해양환경 및 피해보상 관련 국제기구에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 ② 유류오염사고 관련 소송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 ③ 손해사정업체에 소속된 자로서 유류오염사고 관련 손해사정업무 수행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④ 유류오염사고, 해양환경, 수산업, 관광 또는 보험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또는 정책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
 - ⑤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위원장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자

□ 조정위원회 기능

- 특별대책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의 검토 및 심의·의결
 - 특별법에 따른 각종 조치사항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조정
 -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피해주민의 지원, 지역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환경의 복원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지시한 사항
 - 그 밖에 특별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
-

2.3 조정위원회 운영성과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07.12.7)이후 국토해양부 장관 주재로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다.

2008년 8월 4일 개최된 제1회 조정위원회에서는 국토해양부 등 3개 부처에서 총 5건의 안건(보고안건 3, 의결안건 2) 보고·상정되었고,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제1회 조정위원회는 첫째,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대책위원회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목적으로 조정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의결하였다(국토해양부 훈령 제126호/ 농림수산물식품 훈령 제40호).

둘째, 유류오염사고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인건비('08.1~2월분)의 중간사정결과 지역별 편차가 크고, 최종 사정이 지연됨으로써 주민갈등 및 생계곤란이 지속되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우선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행정안전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주민방제인건비 부족분 지원방안을 의결하였다.

2008년 9월 26일 개최된 제2회 조정위원회에서는 국토해양부 등 3개 부처에서 각각 1안건씩 총 3건의 안건이 상정되었고, 의결안건 3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제2회 조정위원회는 첫째, 유류오염사고 이후 보상 기대심리 등으로 맨손어업피해신고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선의의 피해 어업인을 구제하고, 허위피해신고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맨손어업피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국제기금측과 협의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맨손

어업 유류피해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안을 가결하였다.

둘째, 유류오염사고 초기에 수행된 방제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국제기금에 신청된 지역주민의 방제비용이 정부채권의 후순위 청구(SLQ)선언으로 인해 국제기금(국제기금 보상한도 초과시 정부)으로부터 장기간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국제기금의 사정이 완료된 방제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대지급하려는 목적으로 주민방제비 대지급(안)을 가결하였다.

셋째, 특별법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대부 등의 지원 수준과 절차를 대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부 수준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목적으로 대부 지원수준 및 절차(안)을 가결하였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제출('08.5)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침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지원추진(안)을 가결하였다.

그리고 2009년 8월 7일부터 14일 까지 제3회 조정위원회가 대부금 상환절차 등 사후관리 방법의 명확화 등을 목적으로 대부 대상 및 수준 등 개선안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하여 서면심의 방식으로 개최 되었고, 심의결과 조정위원 19명 중 17명이 심의의결서를 제출하여 동의함으로써 원안가결 되었다.

마지막으로 2009년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4회 조정위원회가 유류오염피해지역에 대한 해양환경 복원을 위해 유류오염피해지역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안)을 상정하여 서면심의 방식으로 개최되었고, 심의결과 조정위원 19명 중 17명이 심의 의결서를 제출하여 동의함으로써 원안가결 되었다.

이와 같이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07.12.7)이후 국토해양부장관 주재로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개최된 조정위원회의 주요 개최실적 및 주요성과는 <표 2-17>와 같다.

<표 2-17> 조정위원회 개최실적

위원회	개최일	주요 의결사항
유류오염 사고조정 위원회	'08.8.4 (제1회)	'08.1~2월분 주민방제인건비에 대한 국제기금 중간사정 차액(44.7억원) 지원 * 지자체로 자금배정(8.14) 및 주민 지급 완료(9.9) -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확정
	'08.9.26 (제2회)	- 맨손어업 : 사고이전 신고필증 취득한 경우 전수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고이후 취득한 경우 일정기준(입증자료 등)을 통해 조사대상으로 선정 - 지자체 대리청구 주민방제비(42억원) 대지급 추진 - 대부 수준 및 대부조건(무이자), 상환기간(보상금 수령시), 대부절차 등 결정 - 피해지역 경제활성화사업('08년사업-18개, 966억원/'09년사업-21개, 825억원) 등 추진
	'09.8.7 ~8.14 (제3회) 서면심의	- 대부 대상 및 수준 등 개선(고시 개정) - 대부대상 업종과 지역의 재분류, 대부대상자 및 대부수준의 재조정, 대부금 상환절차 등 사후관리 방법의 명확화 등
	'09.10.27 ~11.2 (제4회) 서면심의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피해지역 특별 해양환경복원 계획(안) 산정 - 유류사고해역 주변 생태계 조사 및 복원 - 피해어장 수산자원 영향평가 및 복원 - 태안해안국립공원 복원

2.4 시사점 및 의의

제1회 조정위원회 의결결과 첫째, 특별법에 따라 개최되는 '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확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조정위원회의 주민 방제인건비 차액지원 결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향후 국제기금의 최종적인 사정결과에 주민 인건비 청구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현재까지 미지급된 다른 민간 방제비용에 대해서도 국제기금에 신속한 사정을 촉구할 수 있게 되었다.

제2회 조정위원회 의결결과 첫째, 맨손어업 피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주민방제비 대지급 방안, 대부 지원 수준 및 절차, 피해지역 경제활성화사업 지원 추진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주민을 위한 세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피해신고가 급증해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는 맨손어업인을 구제하고 허위 피해신고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07.12.7) 이전에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취득한 맨손어업인은 당연히 피해조사대상으로 하나, 사고이후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취득한 맨손어업인에 대해서는 국제기금과 협의하여 일정한 기준(피해 및 조업사실 입증자료, 사고이전부터 피해지역 거주 여부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피해조사대상으로 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자체가 국제기금을 상대로 청구한 사고초기 주민방제비(25건, 약 42억원 규모)지급이 정부채권 후순위 선언으로 지급지연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주민생계곤란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기금의 사정이 완료된 주민방제비에 대해서는 일반정부채권과 구분해 국토해양부가 우선 신속히 대지급하기로 의결해 충남, 전남, 전북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에 기여하였다.

넷째, 2차 조정위원회에서는 특별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대부제도 시행을 위해 대부기준 등을 확정함으로써 무이자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지역의 관심이 높은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사업 지원 추진방안에 대해 조정위원회는 지자체가 건의한 271개 사업 중 39개 사업을 '08년과 '09년도에 걸쳐 적극 추진키로 하였고, 추가검토 필요 사업으로 분류된 32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처별로 재점검해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별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선정기준 및 지원 세부방안 마련 등은 국토해양부가 용역을 통해 추진키로 결정함으로써 피해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2009년 8월 7일부터 14일까지 서면심의 방식으로 개최된 제3회 조정위원회 의결에서는 대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부 대상업종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분류함으로써 어촌계 등 단체 및 공동명의로 어업권도

개인별 청구금액이 확인된 경우 대부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²⁷⁾. 또한 대부금 채권관리의 명확화를 위해 보상 청구권에 가압류 등 권리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와 무면허, 무허가, 미신고 등 불법 영업행위자는 대부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대부 심사·결정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대부 신청인 영업활동 지역의 오염여부, 경제활동 의존도, 유사업종 사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부 대상과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대부금 관리 및 상환 절차 개선을 통해 시장·군수의 임무(자료입력·관리) 및 국토해양부의 사후관리·회수시 조치할 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2009년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면으로 개최된 제4회 조정위원회 의 결결과 유류사고해역 주변 생태계 조사 및 복원피해어장 수산자원 영향평가 및 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복원 등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피해지역 특별 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유류오염피해지역에 대한 해양환경 복원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27) 현행 : 개인만을 대부대상자로 하고 법인은 제외하였음.

제 3 장 정부의 본격적인 피해보상지원

제 1 절 정부채권 후순위청구 선언

1. 정부채권 후순위(SLQ) 개요

1.1 SLQ의 개념

정부채권 후순위 선언(SLQ, Standing last in the queue)은 동일한 지급순위를 가진 다수의 채권 가운데 정부채권을 다른 채권의 변제가 이루어진 후에 변제를 받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즉 유류오염 피해에 따른 정부의 피해에 대한 채권을 일반 채권에 비해 후순위로 변제 받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채권 중 후순위 선언한 채권은 국제기금의 지급률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피해 사정액 총액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²⁸⁾

정부채권에는 방제비 등 정부가 방제 등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이나, 정부가 입은 피해금액으로 배·보상청구권이 정부에 있는 것이 SLQ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모두가 SLQ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방제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정부가 국제기금 등을 대신하여 지급한 방제인건비는 정부채권이기는 하지만, 이는 SLQ에서 제외된다. 즉 정부가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주민을 대위하여 청구권을 가진 것이므로 SLQ에서 제외된다.

1.2 SLQ 선언배경

국가나 지자체(국가 등)가 지출한 방제비용, 지역이미지 개선홍보비용 등은 국제기금(선주보험사 포함)에 손해배상 및 보상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국가 등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채권은 피해주민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채

28) 2008년 6월 27일 현재 국제기금에서 추정하는 피해금액은 약5,735억원이며, 2008년 6월 27일 현재 국제기금의 최고 보상한도금액은 약3,216억원이다.

권과 동등한 순위에 있지만, 통상의 방제비 등 정부채권은 입증자료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피해주민의 손해 배·보상청구보다 시기적으로 먼저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 등이 국제기금으로부터 피해주민보다 먼저 보상을 받는 것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추정피해의 규모가 국제기금 보상한도액보다 클 경우에 정부가 국제기금에 대해 갖는 채권에 대하여 후순위 선언(SLQ)을 하게 되면 정부채권에 대한 손해사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주민 채권이 우선적으로 사정되고 보상되므로 그만큼 신속한 손해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즉 정부채권의 후순위 청구선언을 하게 되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 내에서 일반 피해보상이 종결된 이후에 책임한도가 초과되지 않는 경우에만 정부가 채권을 행사하여 최종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추정피해규모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국제기금의 보상한도 중 정부 보상금액만큼이 피해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률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고, 국제기금에 대해 정부가 갖는 채권액만큼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²⁹⁾

따라서 정부는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한 손해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SLQ선언을 하게 되었다.

2. 정부채권 후순위(SLQ) 선언경과

29) 에리카호 사고에서도 피해추정규모가 펀드지급 한도보다 큰 경우 프랑스정부가 정부채권의 후순위 선언을 함으로써 지급률이 상향조정되어 일반 피해주민의 초기지급률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었다.

※ 에리카호 사고사례(프랑스 정부의 SLQ선언)

- 에리카(Erika)호 사고('99.12)에서 펀드의 보상한도는 185백만 유로인 반면, 총 피해추정규모는 총545백만 유로에 달하였음
 - 정부채권 191백만 유로, TOTAL(정유회사)채권 143백만유로, 피해주민 채권 211백만 유로
- 프랑스 정부는 펀드한도가 피해주민의 피해사정액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피해주민의 보상이 끝날 때까지 정부와 정유회사의 채권은 최후순위로 하기로 결정하고, IOPC 집행위원회에 2000년 2월 SLQ방침을 통보
 - 프랑스 정부의 SLQ 선언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초기지급률을 50%로 결정하고('00.6), 이후 60%→80%→100%까지 피해주민에 대한 펀드보상금 지급률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였음

제40차 국제기금(IOPC Fund) 회의에서 조기보상결정을 하였지만, 지급률에 대해서는 과다지급 위험성을 이유로 일부 국가가 강하게 반대하자, 노르웨이는 과다지급 위험성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정부부문 채권의 보상청구를 일반청구자보다 최후순위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정부는 피해보상청구를 후순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차기 회의까지 최종방침을 확정하여 통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6월 19일 제1회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정부채권을 다른 청구인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할 것을 의결하고, 2008년 6월에 개최된 제41차 국제기금(IOPC Fund) 회의에서 정부 및 자치단체가 지출한 방제비용 등 정부채권에 대하여 후순위(SLQ)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2.1 제40차 IOPC Fund 회의

-
- 개최기간(장소) : 2008. 3. 11 ~ 3. 14(모나코)
 - 대표단(총 17명)
 - 정부대표 : 고위공무원 전병조 등 7명
 - 자문 : 해양오염방제조합 등 관계자 10명
-

동 회의에서 정부대표단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의 피해현황, 방제활동 및 피해복구사항 등을 보고하고, 피해규모에 대한 추정치를 3,520~4,240억원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피해보상 지급률을 60%로 제안하면서 집행위원회가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추정피해액이 선주책임한도(약1,300억원)를 초과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P&I 보험사가 보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급률에 대한 지침을 조기에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이에 대다수 국가들이 동의하였다.

특히 추정 피해규모가 3,000억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사무국의 보고에 대하여 집행이사회가 이를 인정함에 따라 국제기금의 보상필요성을 결정하고 당시 환율을 계산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를 약 3,216억원으로 승인하였다. 이는 다른 유사한 대형유류오염사고 사례에 비추어 상당히 신속한 결정으로

사무국장 방문시('08.1.14~18) 조기보상결정을 요청하는 등 조기보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 다른 사례에서의 사고일/보상실시 결정시점

- Erika호 : '99.12(사고시점) ~ '00.6(보상실시 결정시점)
 - Prestige호 : '02.11(사고시점) ~ '03.5(보상실시 결정시점)
 - Nakhodka호 : '97.1(사고시점) ~ '97.2(보상실시 결정시점)
-

다만, 조기보상결정에는 동의하였지만, 지급률에 대하여는 과다지급 위험성이 있음을 이유로 일부 국가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50%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노르웨이는 60% 지급률에 따른 과다지급 위험성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정부부문의 보상청구를 일반청구자보다 최후순위로 하는 방안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측은 집행위원회가 60%의 지급률을 금번 회의에서 잠정 결정한다는 조건으로 정부 피해보상청구를 후순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피해보상의 후순위 청구원칙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6월 또는 10월 회의까지 최종방침을 확정하여 통보하기로 하였다.

이에 의장은 2008년 6월 또는 10월에 개최예정인 차기 회의까지 후순위 청구방침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정부부문의 예상 청구액 규모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차기 회의에서 정부의 후순위 청구방침통보 여부와 지급률 수준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국제기금에 대하여 청구할 채권에 대하여 SLQ 선언을 검토한 다음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률을 잠정적으로 60% 수준에서 결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으로 보상금 지급사무를 사무국장에 위임하였다.

※ 추정피해대비 60% 지급률은 매우 높은 수준임

- Erika호 ⇒ 50%(지급한도 2,101억원)
 - Prestige호 ⇒ 15%(지급한도 2,096억원)
 - Nakhodka호 ⇒ 60%(지급한도 2,239억원)
-

<표 3-1> 국제기금의 피해액 추정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피해액 추정규모	60% 지급시
합 계	3,686~4,442(£ 190-229백만)	2,212~2,665
방제비용	1,144(£ 59백만)	686
수산부문	1,785(£ 92백만)	1,071
관 광 등	757~1,514(£ 39-78백만)	530~1,060

※ 40회 집행위원회의 '08.3.13 환율기준(£1 = 1,939.79원, 외환은행 환율고시)

※ 국제기금 지급한도액 : 203백만SDR(3,216억원)

- 1SDR(Special Drawing Right, IMF 공지) = 1,584,330원('08.3.13 기준)

2.2 특별대책위원회(제1회)

- 일자 : 2008년 6월 1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무총리실 9층 대회의실

제40차 IOPC Fund 집행위원회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손해배상 및 손해보상 관련 국제기금 초기 지급률을 60%로 하면서 방제비 등 국가의 손해배상 및 손해보상채권을 피해주민의 손해배상 및 손해보상채권보다 후순위로 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제1회 특별대책위원회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관련부처 및 피해지역 지자체 등과 합의하여 기지출한 약 483억원(5월말 기준)에 대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른 청구인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할 것을 의결하였다.³⁰⁾

30) 정부채권의 후순위 선언 근거(특별법 시행령 제11조).

2.3 제41차 IOPC Fund 회의

-
- 개최기간/장소 : 2008.6.23 ~ 6.27(5일간)/영국 런던
 - 정부대표단(총14명)
 - 수석대표 : 주영 국토해양관
 - 정부대표 :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충청남도 등 9명
 - 자문 :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

동 회의에서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가 지출한 방제비용 등 정부채권 약 550억 원에 대하여 일반 주민의 피해청구보다 후순위로 손해 배·보상금을 수령할 것임을 선언하고, 이러한 후순위 청구금액은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복원, 소비촉진 등의 정부 활동에 따라 증가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표 3-2> 피해규모 변경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피해 추정규모 (2.18 기준)	피해 추정규모 (6.20 기준)	35% 지급시 (6.20 기준)	비 고
합 계	3,520~4,240	5,385~5,735	1,885~2,008	2.18대비(증1,865~1,495)
방제비용	1,100	1,345	471	2.18대비(증245)
수산부문	1,700	2,060	721	2.18대비(증360)
관 광 등	720~1,440	1,980~2,330	693~816	2.18대비(증1,260~890)

한편, 동 회의에서 최대 추정피해액의 규모가 4,240억원에서 5,735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와 같이 국제기금의 추정 피해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회원국들은 제40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초기지급률 60%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대폭 인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우리 대표단은 지급률의 급격한 하향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제기금(IOPC Fund) 사무국장은 초기 지급률을 40%~50%로 하향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회원국이 선호하는 지급률이 40%와 30%로 양분됨에 따라 우리 정부측 대표는 국제기금(IOPC Fund)사무국장이 제안한 지급률의 최소수준인 40%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장이 이를 중재하여 초기 지급률은 35%로 결정되었다.

<표 3-3> 초기 보상지급률 예시

구 분	국제기금 회의 개최년도 / 지급률(%)					비 고('06년 환율기준)
에리카호 사고발생 (‘99.12.)	’00.2	’00.6	’01.1	’01.6	’03.5	- 보상한도 약2,200억원 - 약 1,560억원 보상 및 약 740억원 소송 중
	미결정	50	60	80	100	
프레스티지호 사고발생 (‘02.11.)	’03.2	’03.5	’05.10	’07.12	-	- 보상한도 약2,200억 원 - 사정액이 7,6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
	미결정	15	30	30	-	

※ 에리카호, 프레스티지호 사고 당시 국제기금 보상한도액 : 2,200억원('03.11이전)

3. 정부 및 지자체 지출비용 현황

선주책임제한절차와 관련 제한채권 신고현황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가 지출한 비용을 보면, 총1,559.2억원 중 국토해양부가 637억원으로 전체 지출비용의 약40.9%, 충청남도(시·군 포함)가 470억원으로 전체의 30.1%, 농림수산식품부가 178억원으로 전체의 약 11.4%로 나타난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출한 비용의 대부분은 방제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기관별 제한채권 신고현황은 아래의 <표 3-4>와 같다.

<표 3-4> 기관별 제한채권 신고현황(2009.5.8 기준)

(단위: 억원)

신고기관	신고액	주요 채권내역
국토해양부	637	정부지급금 이자보전(471), 환경(71), 대지급(43), 보상지원(52) 등
농식품부	178	굴양식장 철거(126), 특별영여자금 지원(50), 지역홍보(1) 등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백서

신고기관	신고액	주요 채권내역
태안해경	170	해양경찰청해상·항공방제비용(165)등
환경부	38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관련비용, 국립공원관리공단 신고분 제외
충청남도 교육청	24	피해지역 학생 지원비용(24)
해군(4건)	15	작전사(3), 2함대(10.7), 3함대(0.6), 해병대(0.3) 방제비 개별신고
충청남도	141	방제관련 작업비용, 인건비 등
태안군	203	방제 관련비용 및 주민인건비 선지급금 등
보령시	68	방제 관련비용 및 주민인건비 선지급금 등
서산시	36	방제관련 작업비용, 인건비 등
서천군	9	방제관련 작업비용, 인건비 등
홍성군	8	방제관련 작업비용, 인건비 등
당진군	5	방제관련 작업비용, 인건비 등
전라북도	1.2	방제 관련비용
군산시	3.2	방제 관련비용
고창군	0.1	방제 관련비용
부안군	1.7	방제 관련비용
전라남도	2.2	방제 관련비용
신안군	7.0	방제 관련비용
영광군	2.1	방제 관련비용
무안군	2.1	방제 관련비용
진도군	7.5	방제 관련비용
그외 기관	0.1	통일부(방제 비용 0.06), 대전지방노동청(0.01) 태안 고남면(주민인건비 0.003)
계	1,559.2	28개 기관에서 총 32건의 정부 제한채권을 신고

※ 이 중에서 정부가 대지급한 방제비(2008년 1월~2월분 방제인건비 및 2007년 12월분 민간부분 방제비)는 대위청구를 통하여 회수하였음.

4. 정부채권 후순위 선언의 효과

국제기금 등은 모든 피해보상 및 방제비용 채권을 동일하게 취급하며 국제기금 등의 지급한도가 넘을 경우 균등 배분을 위해 지급수준을 정하여 보상하기 때문에 피해규모가 사무국이 추정하는 피해규모를 상회하는 경우 초기 지급률이 높으면 과다지급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급률을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일반채권보다 후순위 선언을 하는 경우 국제기금의 보상한도 내에서 정부채권에 대한 보상액만큼이 피해주민의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제기금의 과다지급 위험에 따른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기금의 지급률 상향조정³¹⁾을 이끌어 내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금에 의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청구는 국제기금에 의해 피해주민에 대한 일반채권이 보상된 이후, 피해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액 총액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주민의 청구에 대한 사정과 배·보상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부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국제기금의 피해조사 및 사정절차 등 보상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주민의 피해보상청구 접수현황에 따라 사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됨으로써 신속한 보상을 도모할 수 있다.

정부채권 후순위 선언을 한 제41차 국제기금(IOPC Fund) 회의 당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한 유류오염 추정피해규모³²⁾는 최대 5,735억원으로

31) 국제기금의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급률에 의한 금액이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피해주민에게 복잡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법에 의해 초과한도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기금의 지급률 상향조정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2) IOPC Fund 회의(제40차 ~ 제45차) 추정피해규모 변경 추이

구 분	추정 피해금액(단위 : 억원)					
	IOPC펀드회의 (08.3.14)	IOPC펀드회의 (08.6.27)	IOPC펀드회의 (08.10.17)	IOPC펀드회의 (09.3.27)	IOPC펀드회의 (09.6.19)	IOPC펀드회의 (09.10.16)
방 제 비	1,100	1,345	1,623	1,633	1,730	1,950
어업 및 양식	1,900	2,060	2,060	2,060	2,090	1,490
관 광	720~1,240	1,980~2,330	1,980~2,330	1,980~2,330	1,980~2,330	1,980~2,330
총 계 (초기 보상율)	3,720~4,240 (60%)	5,385~5,735 (35%)	5,663~6,013 (35%)	5,673~6,023 (35%)	5,800~6,150 (35%)	5,420~5,770 (35%)

국제기금의 보상한도 3,216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였다.

따라서 정부는 추정피해규모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를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정부채권을 사실상 포기³³⁾함으로써 피해주민의 보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제 2 절 민간방제비 및 피해주민의 손해보전 지원

1. 민간방제비 지원

해수욕장, 자갈, 암벽 등의 해안방제는 해상방제와는 달리 기계적인 방제장비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사람의 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바, 일명 ‘갯닦기’같은 방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더욱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서해안 전체가 오염될 정도로 오염범위가 넓어 지역주민의 손에 의해서 해안방제와 일부 해양방제까지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당시 해안방제작업에 연인원 56만명 이상의 지역주민이 참여하였다. 그런데 이들 지역주민은 영세한 민간방제업체들에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어 해안방제에 참여하였으며, 일부 주민들은 수거된 폐기물의 운반에 사용될 트럭이나 해양의 타르볼 수거에 필요한 선박 등 방제장비를 대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제활동에 투입되는 방제비용은 크게 방제인건비, 장비 및 자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방제인건비”의 세부구조를 살펴보면, ① 일용직 형태로 고용된 지역주민의 인건비(주민인건비), ② 민간방제업체 직원의 인건비, ③ 직원의 숙박비, ④ 주민 및 직원의 산재·고용보험료 등이며, “방제장비대”란 지역주민이 소유한 선박, 트랙터, 차량 등 장비를 방제업체에 대여해 준 대가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여러 방제비용 중 손해 배·보상 과정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주민인건비와 장비대를 중심으로 이슈가 된 원인과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해 온 과정을 기술하고자 한다.

33) 정부가 SLQ를 선언한 정부채권은 국제기금의 지급률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총 피해사정액이 국제기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한다. 다만, 피해주민 보상액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1.1 지원배경 및 경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사고발생 지점인 태안군에서부터 전남 진도군에 이르기 까지 서해안 연안 3개도, 15개 시·군의 해상, 해안 또는 도서지역이 광범위하게 오염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해안방제작업 참여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피해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도서지역의 최종 방제작업이 완료되기까지는 10개월 이상 소요되어 방제기간동안 방제작업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수는 연인원 56만 명을 초과하였다.

해안방제에 참여한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주로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생업에 제약을 받게 된 어촌계의 어업인, 오염지역의 식당, 숙박,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생계가 어려운 피해지역 주민들이 대부분으로 이들 피해주민들에게는 매일 매일의 방제인건비가 생계수단이나 만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방제인건비는 전체 방제비용에 포함되어 있어 다른 클레임과 마찬가지로 방제작업 주체인 방제업체의 청구에 따라 국제기금 등에서 사정이 되어야 지급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주민 방제인건비 지급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어 갔고, 급기야 정부가 주민들의 생계안정차원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단계적으로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다.

1차적으로 사고초기인 2007년 12월분 주민의 방제인건비 지급 지연이 문제가 되었다. 2007년 12월 추운 날씨와 심각한 오염상황에서 방제작업에 참여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방제인건비 지급이 2008년 2월이 되어 설날이 다가오는데도 지급될 가망이 없자 주민들의 불만이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사고 초기부터 대규모 방제작업을 실시한 해양오염방제조합(현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방제비용 수령을 목적으로 사고선박에 대한 압류 및 감수보전 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선주 보험사, 방제조합 및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해양수산부는 선주, 선주보험사(Skuld P&I Club) 및 해양오염방제조합과의 1차 협력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었다. 이와 같은 1차 협력계약에 따라 선주보험사는 2007년 12월분 방제비용에 대한 긴급 사정을 실시하고, 주민인건비 청구 전액(97억원)과 민간방제업체의 방제비 청구액의 약 15% 수준인 15억원(방제비는 향후 추가 사정기로 함) 등 총 112억원을 설날 전에 지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2007년 12월분 주민인건비는 2008년 2월에 지급되었으나, 2008년 1~2월분 주민인건비의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높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8년 1~2월분 주민인건비만 분리하여 선주보험사 등과 신속한 사정 및 지급을 협의코자 하였으나, 방제업체는 주민방제 인건비만 분리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청구방법이 아니며, 또한 방제업체의 비용 사정이 한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방제업체들에 대한 긴급 융자지원방안과 함께 2008년 1~2월분 주민인건비를 업체방제비와 분리하여 최우선 청구토록 유도하고 이와 병행하여 선주보험사 및 국제기금과는 보다 신속히 주민 방제 인건비에 대한 사정을 추진토록 협의하였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방제인건비에 대해 보다 신속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고 이후 2008년 6월분까지의 주민 인건비 지급에 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다.

1.2 주민 방제인건비 조기 지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³⁴⁾, 정부는 민간방제비의 조속한 지급을 위해 선주보험사 및 국제기금과의 긴밀한 협의 및 설득과 함께 직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방제비 지급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민간방제비를 지급하였는데, 민간 방제비 지급과정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고 초기 방제작업에 참여한 피해지역 주민의 2007년 12월분 방제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설전 생계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또한 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 방제비용과 관련하여 신청한 사고선박에 대한 압류 및 감수보전 조치를 법원이 결정함에 따라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출항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양오염방제조합 및 선주보험사(Skuld P&I Club)와 협력계약(1차) 체결을 통해 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압류를 해제하는 대신, 선주보험사는 2007년 12월분 방제인건비 청구 전액(97억원)과 민간방제업체의 방제비청구액의 약 15% 수준인 15억원

34) 1.1 지원배경 및 경위 참조.

등 총 112억원을 설(구정) 즈음인 2월 중에 지급하였다. 또한 국제기금측이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클레임 접수를 통해 신속한 보상·배상을 위해 클레임 사무소를 개설토록 하였다.

2007년 12월분 주민 방제인건비가 설날 전에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분 주민 방제인건비 또한 지급이 계속 늦어짐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높았다. 이에 정부는 선주보험사 등과의 협의('08.5.14~16)를 통해 2008년 1~2월분 주민인건비(23개 클레임, 138억원)가 5월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고, 방제업체에는 2008년 1~2월분 주민인건비를 일반 방제비와 분리하여 최우선 청구토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안방제에 참여한 민간방제업체의 입장은 또 달랐다. 평균 자본금이 1억원 정도로 매우 영세한 민간방제업체가 수개월 동안 자기 자금으로 방제자원을 구입하고 방제비의 지급이 늦어진 결과 자금난으로 도산 직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민간방제업체는 정부와 선주보험사간에 2008년 1~2월분 주민인건비만을 조기 지급하는 문제를 논의하는데 일부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즉 주민인건비를 최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나, 주민 인건비의 조기 지급에 관한 사항만이 부각될 경우 방제비용 전반에 대한 보상이 지연될 수 있고, 이는 방제업체의 경영난과 직결되어 방제작업 중단 등과 연계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민간방제업체들은 주민인건비와 일반 방제비를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청구하려 하였다. 하지만, 주민인건비가 일반 방제비와 분리되지 않고 청구 및 사정될 경우 주민인건비의 지급은 무한히 늦어질 염려가 있었다.

따라서 주민인건비의 조기 지급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방제업체가 주민인건비를 우선하여 청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였다. 이에 정부는 민간방제업체와의 수차례의 협의('08.4.1 민간방제업체와의 간담회 포함)를 통해 주민인건비의 최우선 분리·청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그 결과 민간방제업체의 장비임대료 및 임금지급 지연 등 심각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민간방제업체는 자발적으로 주민인건비를 2008년 4월말까지 분리·청구키로 합의하였다. 이에 당시 국토해양부가 수협중앙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던 “유류오염피해구제자금”을 활용하여

용자지원을 신청한 방제업체 16개사에 16억원(업체당 1억원)을 긴급 용자지원함으로써 방제인건비³⁵⁾의 분리청구가 실시되었다.

한편, 정부와 국제기금·선주보험사는 2008년 1~2월분 주민인건비(22개 업체의 23개 클레임, 138억원)의 조기 지급을 위한 협의를 계속한 결과, 국제기금 및 선주보험사가 2008년 6~8월 동안에 2008년 1~2월분 방제인건비를 중간사정하면, 동 사정금액은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대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기금은 5월부터 22개 민간 방제업체의 2008년 1~2월분 주민인건비 청구에 대한 중간사정³⁶⁾을 실시하였다. 중간사정의 결과 평균 사정액이 청구액의 67%³⁷⁾에 지나지 않았고 클레임에 따라서 청구액의 10~100%까지 편차가 심하였기 때문에 피해주민의 불만이 야기되었다. 특히 만리포(15%) 및 모항리(22%) 등의 주민 불만이 극심하였는데 국제기금의 사정업체인 한국해사검정(KOMOS)과 조사기관인 ITOPF가 제시한 주민인건비 기준(남자 7만원/일, 여자 6만원/일)과 실제 인건비에 대한 지급액의 차이가 가장 큰 불만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방제업체 및 현지 주민들은 국제기금의 중간사정결과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중간사정 차액 보전 방안 등에 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였다.

한편, 선주보험사는 사고 초기에 선주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다.³⁸⁾ 만약, 선주의 선주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면 선주는 주민인건비를 포함하여 모든 클레임에 대하여 법원에 공탁한 선주책임제한액만큼만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선주보험사는 법원에 선주책임제한액 전액을 공탁하고 주민인건비 등을 별도 지급할 경우 지급액 만큼 이중 부담(공탁금 및 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인건비를 우선 지급하기 위해서는 선주책임제한액 공탁에 대한 이중 배상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만약 선주보험사가 법정 의무에 따라 공탁을 실시하게 될 경우 선주보험사의 주민인건비, 방제비용 지급 등 배상금 지급이 무한히 지연될 것은 자명

35) 방제인건비 : 주민인건비, 업체인건비, 업체직원 숙박비 및 산재·고용보험료

36) 국제기금은 중간사정의 경우 과다 보상금 지급의 위험성 등이 있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임에 따라 우선 인건비에 대한 최종 사정을 실시하되, 다른 방제비 내역(장비 사용 내역) 등과 인건비를 비교하는 최종사정을 실시(일부 증액 가능)기로 함

37) 중간사정 결과(23건 중 11건)

□ 주민인건비 : 평균 67%(최고 100%~ 최소 35%)

□ 업체인건비 : 평균 48%(최대 95%~ 최소 11%)

38) 선주책임제한절차의 개시에 관하여는 제5장 제3절 참조.

한 상황이었다. 선주책임제한 관련법원의 최종 피해액 사정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통 5~7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책임제한액이 법원에 묶이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선주책임제한액 공탁과 주민방제인건비를 분리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제기금은 선주책임제한액을 초과한 보상액에 관해서는 선주보험사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지만 선주책임제한액 범위내의 주민 방제인건비지급에 관해서도 선주보험사 측에서 우선 선주책임한도액까지 지급한 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추가 지급하는 것이 국제기금의 기본 입장이며, 조기지급 문제는 국제기금 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표명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주보험사의 요구는 주민 인건비 등 방제비용은 물론 선주보험사의 배상금 지급에 대한 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정부는 선주보험사와 2008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관련 협의를 실시하여 포괄적인 협약체결에 의해 선주보험사가 국제기금이 사정한 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2008년 7월 1일 정부와 선주보험사간에 2차 협력계약³⁹⁾을 체결하였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선주보험사, 국제기금, 민간방제업체와 주민인건비의 조기지급을 위한 협의와 설득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조기지급이 늦어질 것에 대비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특별법에 따라 2차례의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민 방제인건비 지급을 지원하였는데, 우선 2008년 1~2월분에 대해서는 국제기금 및 선주보험사의 사정액을 정부에서 대지급(93억원)하되, 청구된 인건비와 국제기금 등의 사정한 금액과의 차액(45억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청구액 전액(138억원)을 정부예산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2008년 3월~6월분 주민 방제인건비 101억원은 2008년 9월부터 12월 기간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채 등을 통해 전액 선지급함으로써 2008년 7월 이후 분을 제외한 주민 방제인건비를 모두 지급할 수 있었다.

또한 조정위원회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민간방제업체가 시행한 해안방제와 관련된 주민인건비 및 방제장비대 이외에 사고발생 초기에 주민 등 지역사회에서 실시한 방제비로 주민의 직접 청구가 어려워 지자체가 대

39) 2차 협력계약의 상세는 제4장 ‘제2절 선주보험사와의 협력체계 구축’ 참조.

리청구한 방제와 관련된 방제작업비(총 26개 클레임, 44억원 청구)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별도로 실시한 방제비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비용을 대리 청구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청구권자가 되면 정부 후순위 채권으로 간주되어 사정 및 보상이 제한될 수 있음을 감안, 국제기금측에는 보상금 수령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피해지역 주민임을 적극 설득하여 이들 지자체가 대리청구한 방제비에 대해서는 국제기금측이 우선 사정을 실시하면 사정액을 정부 대지급금으로 지급하되, 청구권에 따른 비용(채권)은 정부 후순위 채권으로 관리(선지급, 후보상)기로 국제기금과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클레임에 대해서는 국제기금에서 사정을 실시하였으며 사정된 42억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지급금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주민 방제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급노력의 연장선상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전 해양오염방제조합)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고용한 주민의 방제인건비 전액(32억원)을 해양환경관리공단자금으로 국제기금의 사정전에 우선 지급한 바 있다.

□ 주민인건비 지급 현황('09.12.31 현재)

- 2007. 12월분 : 총 97억원(약 149천명분) 지급, 선주보험사 지급
 - 2008. 1~2월분 : 총 138억원(약 212천명 분) 지급, 정부 대지급금 및 사정차액 지차제 선지급(45억) 포함
 - 2008.3~6월분 : 101억원(약 155천명 분) 지급, 지자체 선지급(기채 포함)
 - 2008.7 이후 분 : 국제기금 사정 진행 중(약 6천명 분)
 - 해양환경관리공단 : 32억원(약50천명 분) 지급
 - 지자체 대리청구 주민방제비 : 42억원(정부 대지급 후, 후순위 채권으로 관리)
-

한편, 주민들과 관계되는 방제비는 주민인건비 이외에 방제장비대가 있는데, 방제장비대는 민간방제업체가 해상에서 타르볼 수거를 위한 선박 또는 해안방제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운송처리를 위한 트럭 등의 운송장비를 지역 주민들로부터 주로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한 비용(이들 비용은 일반 방제비용에 포함되어 청구 및 사정됨)이다. 선박임대료는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선장인건비 포함하여 42만/일 그리고 5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 36만/일이다. 이러

한 방제장비대는 총 72억원이며, 정부는 국제기금으로 하여금 조기에 사정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있다. 2009년 12월 기준으로 주민 방제장비대 중 42억원 가량은 사정이 완료되어 관련 비용이 지급되었으나, 나머지 30억원 가량의 방제장비대는 아직 국제기금의 사정이 진행 중이다.

1.3 그 외 민간 방제비 보상 관련 정부지원

앞의 1.1과 1.2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전국의 20여개 이상의 민간 방제업체가 태안, 보령 등 충청남도를 비롯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해안가 및 도서 등에서 적극적인 방제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들 방제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6개월 이상 방제작업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방제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차례 건의하였다. 하지만 방제를 담당하는 행정기관들은 방제업체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2008년 주민 방제인건비의 우선 분리 청구를 위해서는 실제 방제비용 청구자인 방제업체의 분리 청구가 선행되어야 하나, 일부 방제업체들은 직원 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청구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방제업체의 경영난을 덜어주면서 주민 인건비 청구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협중앙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던 “유류오염피해구제자금” 중 집행이 가능한 16억원을 2008년 4월 16개 방제업체에 긴급 용자지원(업체당 1억원)하고 국제기금측과도 방제업체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주민 인건비와 함께 업체의 인건비 및 관련 비용(직원 인건비, 숙박비 및 인건비 관련 산재·고용보험료)을 함께 중간사정토록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방제업체측 인건비 및 관련 비용은 주민인건비와 함께 2008년 6월에서 8월 기간 중 정부 대지급(약 45억원)을 통해 지급되었다. 또한, 방제업체에게 용자된 유류오염피해구제자금은 방제업체의 용자금 상환현황을 고려 그 이후에도 2차례의 추가 용자지원(2008년 7월 2차 용자지원 13억원,

2009년 1월 3차 용자지원 6억원)하는 등 총 38억원을 지원하였다. 그 밖에 주민 방제인건비를 포함한 민간방제비 지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율 적용 및 각종 보험료 징수와 관련한 방제업체의 애로사항이 접수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방제업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먼저, 민간방제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세무당국에서는 유류오염사고의 방제비는 용역의 성격이므로 관련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국토해양부는 세무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사고 선박인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외국적 선박이며, 방제비를 용역의 대가로 보기보다는 국제기금협약이 인정하는 손해 배·보상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민간 방제비용에 대해서는 선주보험사의 배상금 또는 정부 대지급금을 수령하더라도 방제업체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주민 방제인건비 지급에 따른 산재보험료 납부에 대하여도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과 국토해양부의 업무협의를 통해 3차례 납부유예토록 하는 등 민간 방제비용과 관련한 정책적·제도적 문제해결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1.4 민간 방제비 청구 및 사정의 지연 사유

민간 방제비 중 사회적 이슈가 된 주민인건비 및 장비대는 구조적으로 방제업체가 임의로 지급할 수 없었고, 국제기금 등의 사정절차를 거쳐 해당 방제업체가 투입한 방제비용을 보상받아야만 주민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방제업체의 청구와 국제기금 등의 사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손해 배·보상 절차를 통해서는 신속한 민간방제비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먼저, 민간 방제비를 신속하게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방제업체가 투입한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고, 비용 산출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속한 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3개도 11개 시·군에 걸친 광범위한 방제활동 구역과 10개월이나 소요된 장기간의 방제작업으로 인하여 청구서류 준비와 방제작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상황이 전개되어 청구서류 준비에도 시간이 걸리지만, 청구 서류의 오류에 따른 보완, 청구비용의 합리성 여부 등 확인 등으로 국제기금의 사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실제로 허

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의 2008년도 1~2월분 방제비용(방제인건비 포함)의 경우 대부분 2008년 2/4분기부터 실질적인 청구가 이루어졌으며 업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국제기금의 사정(방제인건비 최종사정 포함)은 2009년 1/4분기 내지 2/4분기(2009년 12월에 사정이 완료된 사례도 있음)에 이루어졌다. 또한, 방제비 보상지연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사고 초기 긴급방제 조치에 대한 관리 미흡과 방제작업의 규모 및 방식에 대한 국제기금측 전문가와의 의견 불일치에서도 찾을 수 있다.

사고초기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원활한 방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 긴급방제조치(해상은 해양경찰청장, 해안은 시장·군수에게 조치의무 부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장(방제대책본부장)의 지휘와 해당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방식으로 긴급방제활동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해안방제에 투입한 장비 및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방제업체의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확한 입증자료 제시에 한계가 있었고, 일부지역에서의 방제활동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즉 대부분 민간방제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방제작업, 주민 인력관리 및 청구작업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국제기금측은 국제기금의 보상청구 매뉴얼에 따라 합리적인 방제작업만을 보상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방제작업에 투입된 주민 인원수와 방제작업 방식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방제업체,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금측의 입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대규모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긴급방제활동단계에서 해안방제가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제업체 투입, 방제인력 및 장비 운용관리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방제활동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사고 초기부터 국제기금측과 방제작업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물론 방제비의 지급(청구양식 및 비용 입증서류의 통일화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도 긴밀히 협의하고 상호 이견을 좁혀 나가야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신속한 방제비용 청구와 지급이 가능할 것이며 국제기금측의 엄격한 사정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2. 손해보전의 지원

2.1 지원제도의 마련 및 예산 확보

국토해양부는 2008년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41호, 2008.12.17)’을 마련하여 정부 대지급금 및 대부금 지급절차와 상환방법 등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동시에 정부 대부, 대지급에 대한 실무처리 지침도 마련하여 통보('09.3)하였다. 또한 손해보전 지원관련 2009년 예산의 조기배정도 완료하여 금년부터 피해주민의 본격적인 대지급금 및 대부금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사업내용('08.12.기준)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한도초과보상금(2,169억원), 대지급금, 대부금 등 1식
-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국고50%, 지방비50%), 민간경상보조(국고100%)
- 사업시행주체 : 국토해양부(수협중앙회), 지자체

나. 2009년도 요구예산

①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위한 대지급금, 대부금,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지역이미지 개선 등의 재원소요를 감안해 신규 요구(64,100백만원)
- 국제기금보상한도 초과보상금 1차년도 지원액 : 43,700백만원⁴⁰⁾
- 대지급금 이자보전 : 연 11,860백만원⁴¹⁾
- 대부금 이자보전 : 7,900백만원⁴²⁾
-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현장조사 및 지원심사자료 확보 : 400백만원
- 피해지역 경제회복을 위한 지역이미지 개선 : 100백만원
- 대위청구 등 피해보상 관리 : 140백만원

40) 한도초과보상액 : 2,169억원(국제기금 추정 5,385-국제기금 보상한도 3,216)

☞ 연차소요(억원) : ('09) 437 → ('10) 500 → ('11) 600 → ('12) 632

41) 산출내역 : 1,764.72억원('08-'09년 소요예산) × 조달금리 6.72% ≒ 11,860

42) 산출내역 : 1,176.48억원('08-'09년 소요예산) × 조달금리 6.72% ≒ 7,900

<표 3-5> 손해보전지원 예산요구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7예산	'08예산 (A)	'09예산안		증 감 (B-A)	%
			요구	검토(B)		
●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지원	-	-	34,680	64,100	64,100	순증
- 기금한도 초과보상금	-	-	-	43,700	43,700	
- 대지급금 이자보전	-	-	10,080	11,860	11,860	
- 대부금 이자보전	-	-	6,720	7,900	7,900	
- 미보상인 지원기준 마련	-	-	400	400	400	
- 피해보상 관리	-	-	140	140	140	
- 지역이미지 개선	-	-	-	100	100	
● 세출예산비목	-	-	17,340	64,100	64,100	
- 일반수용비	-	-	68	58	58	
- 국내여비	-	-	22	22	22	
- 국외여비	-	-	50	50	50	
- 사업추진비	-	-	-	10	10	
- 연구개발비	-	-	400	400	400	
- 민간경상보조	-	-	-	43,700	43,700	
- 이차보전금	-	-	16,800	19,760	19,760	
- 자치단체경상보조	-	-	-	100	100	

② 지원 필요성

-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대지급금, 대부금 및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필요

다. 중기재정 소요전망('08~'12)

-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른 대부·대지급 융자금 운영 및 한도초과보상금 등 지급 필요

<표 3-6> 중기재정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2009	64,100	● 국제기금한도 초과보상금 지원 43,700백만원 ● 대지급금 이자보전 $176,472\text{백만원} \times 6.72\% \approx 11,860\text{백만원}$ ● 대부금 이자보전 $117,648\text{백만원} \times 6.72\% \approx 7,900\text{백만원}$ ● 보상받지 못한 자 현장조사 및 지원심사자료확보 400백만원 ● 대위청구 등 피해보상 관리 140백만원 ● 지역이미지 개선 100백만원
2010	66,273	● 국제기금한도 초과보상금 지원 50,000백만원 ● 대지급금 이자보전 $140,472\text{백만원} \times 6.72\% \approx 9,440\text{백만원}$ ● 대부금 이자보전 $93,648\text{백만원} \times 6.72\% \approx 6,293\text{백만원}$ ● 보상받지 못한 자 현장조사 및 지원심사자료확보 300백만원 ● 대위청구 등 피해보상 관리 140백만원 ● 지역이미지 개선 100백만원
2011	72,240	● 국제기금한도 초과보상금 지원 60,000백만원 ● 대지급금 이자보전 $104,472\text{백만원} \times 6.72\% \approx 7,020\text{백만원}$ ● 대부금 이자보전 $69,648\text{백만원} \times 6.72\% \approx 4,680\text{백만원}$ ● 보상받지 못한 자 현장조사 및 지원심사자료확보 300백만원 ● 대위청구 등 피해보상 관리 140백만원 ● 지역이미지 개선 100백만원
2012	71,310	● 국제기금한도 초과보상금 지원 63,200백만원 ● 대지급금 이자보전 $68,472\text{백만원} \times 6.72\% \approx 4,602\text{백만원}$ ● 대부금 이자보전 $45,648\text{백만원} \times 6.72\% \approx 3,068\text{백만원}$ ● 보상받지 못한 자 현장조사 및 지원심사자료확보 300백만원 ● 대위청구 등 피해보상 관리 140백만원

2.2 손해 배·보상금의 정부 대지급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대지급제도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보상청구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범위의 금액을 보상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등에 대한 피해보상이 지연되어 보상청구자가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게 됨에 따라 국제기금에 의한 보

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것을 전제로 국제기금의 사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대위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국제기금에 대위청구하여 대지급금을 회수하게 된다.⁴³⁾

2.2.1 정부대지급업무절차

가. 신청자격

국제기금에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국제기금에서 사정한 손해액을 통보받은 자(국제기금 사정결과에 대해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함),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국제기금에서 사정한 손해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자는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신청서류

대지급 신청시 모든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다.

※ 대지급 신청서류

- ① 대지급금 지급신청서(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
 - ②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 ③ 특별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
 - ※ 대부 증명자료 : 시·군에서 대부금 지급사실을 통보한 공문
 - ④ 국제기금의 사정결과 통지서
 - ⑤ 제한채권신고서 사본
 - ⑥ 대부금의 양도대상 제외 동의서^{주1)} 원본
 - 대부를 받았고, 정부지원금을 제3자에게 채권양도 하였으나, 양도대상에 대부금 제외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됨
 - ⑦ 정보공개동의서(해당자에 한함)
-

※ 주1) 대부금은 채권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대지급금 신청자와 제3자간에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서 등에 대부금이 제외되어 있지 않으면 대부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양도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함.

43) 제1회 특별대책위원회('08.6.19)는 국제기금의 사정금액 100%를 대지급금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음.

단체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상기의 기본서류 외에 제출해야 하는 추가서류는 아래와 같다.

※ 단체 명의로 대지급 신청할 경우 추가서류

- ① 대표청구인이 배·보상금 청구만 위임 받고, 수령권한은 위임 받지 않은 경우
 - ‘나. 대지급금 신청 서류’에 배·보상금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개인별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 ② 대표청구인이 구성원 모두의 배·보상금 청구 및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은 경우(단체 구성원의 일부로부터 위임받은 경우도 해당됨)
 - ‘나. 대지급금 신청 서류’에 배·보상금 청구 및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별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 수령한 대지급금의 구체적 사용 계획서(개인별 지급내역 등)
- ※ 기존에 작성된 위임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면 기존 위임장을 징구할 수 있음
-

어촌계총유어업권에 대해 대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어업권 행사계약자 명의 또는 어촌계장 명의로 신청하는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추가서류는 아래와 같다.

**※ 어촌계 총유어업권에 대해 대지급금을 신청할 경우 추가서류
(어업권 행사계약자 명의로 신청할 경우)**

- ① 어업권 행사계약자 확인 및 어촌계장 명의 청구 불행사 확약서
 - 어업권 행사(입어)계약서 사본 첨부(어촌계장 원본대조필)
 - 어업권 행사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해당 시·군에 제출한 시설완료보고서 또는 종묘살포(입식)신고서 사본첨부(반드시 시·군 담당공무원 원본 대조필)
 - ② 어업권 행사계약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원본(피대위에 위임한 경우에 한함)
 - ③ 사고당시 어장관리규약 사본, 어업권 행사계약에 관한 총회의결서 사본(어촌계장이 원본 대조필/어업권 수에 관계없이 1부만 제출)
 - 사고당시 총회 의결서 사본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 어촌계 총유어업권에 대해 대지급금을 신청할 경우 추가서류
(어촌계장 명의로 대지급을 신청할 경우)

- ① 어업권 행사계약자(손해 배·보상금 청구자) 명부 확인서
 - 어업권 행사(입어)계약서 사본 첨부(어촌계장 원본대조필)
 - 어업권 행사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해당 시·군에 제출한 시설완료 보고서 또는 종묘살포(입식) 신고서 사본첨부(반드시 시·군 담당공무원 원본대조필)
- ② 어업권 행사계약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원본(피대위에 재위임한 경우는 재위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원본)
- ③ 대지급금의 사용 및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마을어업 및 어업권 행사자가 불명확한 양식어업의 경우에 한함, 어촌계장 원본대조필)
- ④ 사고당시 어촌계 정관 및 어장관리규약 사본, 어업권 행사계약에 관한 총회 의결서 사본(어촌계장이 원본 대조필/어장관리규약은 어업권별로 제출)

※ 다만, 사고당시 총회 의결서 사본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다만, 마을어업 및 어업권 행사에 관한 관련자료(시·군에 제출한 시설완료 보고서 또는 종묘살포(입식) 신고서 등) 제출이 어려운 어업권의 경우에는 어촌계 총유어업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지급금 수령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피대위에 위임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수령계좌 지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사용 동의에 관한 사항, 기타 대지급금 신청·수령·배분과정에 필요한 일체의 절차적 행위에 관한 사항을 담은 총회의결서(의사록 포함)을 제출하면 상기의 『어촌계 총유어업권 관련 어촌계장 명의로 대지급 신청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 중 1항의 “가” 및 “나”, 3항, 4항의 “사고당시 총회 의결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

다. 국토해양부 검토사항

시·군으로부터 대지급금 신청서류가 보고되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여부, 대지급금 신청금액 적정여부, 채권양도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주요 검토·확인사항은 아래의 <표 3-7>과 같다.

<표 3-7> 대지급금 주요 검토·확인사항

주요 검토사항	세 부 검 토 내 용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여부	「대지급, 대부업무처리 지침(4)」 II. 대지급금 지원, 1. 나항의 ‘대지급금 신청서류’ 제출여부 확인
대지급금 신청금액 적정여부	국제기금 등에서 사정한 손해액 범위여부 확인
대지급 지급여부	허베이 스피리트호보상지원시스템에서 확인
대부금 지원여부	허베이 스피리트호보상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국제기금의 보상금 지급여부 (선지급금 지급여부 등)	- 손해배·보상금 이중지급 방지절차에 따라 국제기금 지급 여부확인 - 국제기금 등으로 부터 방제비용 관련, 선 지급 받은 금액 등
권리행사 제한사유 존재여부 (특별법시행령 제8조제3항제3호)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가압류·압류 등의 권리행사 제한사유 확인
채권양도여부	채권양도시 양도된 조건대로 분리지급이 가능한가의 여부확인(분리지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채권양도 자료 보완요청)
수협 구제자금 지원여부	- 수협으로부터 지원받은 유류오염피해 구제자금 (이자별도) - 우선상환 확약 지정 예금계좌로의 대지급금 수령 여부

라. 대지급금 지급절차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대지급금 신청인)는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대지급신청을 하고⁴⁴⁾, 대지급금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대지급금 신청 자격 등을 확인(허베이 스피리트호 보상지원시스템 등)하여 대지급이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증을 발급하여 주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보상지원시스템상에 접속하여 대지급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입력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장·군수로부터 보고된 대지급금 신청과 관련하여 대지급

44) 대지급금은 국제기금에서 사정한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제기금이 사정한 손해액에서 국제기금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을 차감한 금액을 신청금액으로 함.

금 신청서류, 허베이 스피리트호 보상지원시스템 관련내용, 이중지급방지절차 및 고시 제5조제4항 각호의 사항⁴⁵⁾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대지급금을 결정하여 수협중앙회에 대지급금 지급의뢰를 공문으로 통보한다. 아울러 대지급금 지급의뢰 정보를 허베이 스피리트호 보상지원시스템상의 “대지급금 신청등록” 메뉴에서 청구번호 또는 주민(사업자)번호를 클릭하여 대지급금 지급의뢰 정보를 입력한다.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대지급금 지급의뢰를 받은 수협중앙회는 대지급금 지급전 허베이 스피리트호 보상지원시스템에서 관련사항을 확인⁴⁶⁾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지정일 이내에 입금 의뢰된 계좌번호로 대지급금을 입금하고 국토해양부 및 해당 시·군에 지급사실을 공문으로 보고한다.

마. 정산 및 대위청구 절차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국제기금이 사정한 손해액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보상액(확정보상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먼저, 대지급금보다 확정보상액이 큰 경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국제기금 등이 사정한 손해액과 확정보상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또한 대지급금보다 많은 확정보상액을 통보받은 자가 시·군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시장·군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장·군수에게 대지급금 신청내용을 보고받으면 차액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결정하여 수협중앙회에 대지급금 지급 의뢰를 하며, 수협중앙회는 대지급금을 입금의뢰 계좌에 입금하고 대지급금 지급사

45) 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지급금 신청인에게 불지급 사실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1. 합의 등에 의해 국제기금 등의 보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된 경우
2. 대지급을 신청한 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3. 대지급금 신청인이 국제기금 등에 대하여 갖는 보상금 채권이나 정부가 지급하고자 하는 대지급금을 대상으로 제3자의 질권설정, 법원으로부터의 가압류·압류·추심명령 및 전부명령, 제3자의 채권양도 등 권리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만 채권양도의 경우 대지급금 지급 시점에서 양도금액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46) 국제기금의 손해사정액 및 보상금 지급 여부, 대부금 지원 여부, 권리행사 제한사항 존재 여부 등

실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장·군수에게 보고한다. 시장·군수는 수협중앙회로부터 대지급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으면 대지급금 신청자에게 지급내용(정산내용)을 통보한다.

□ 대지급금보다 확정정보상액이 큰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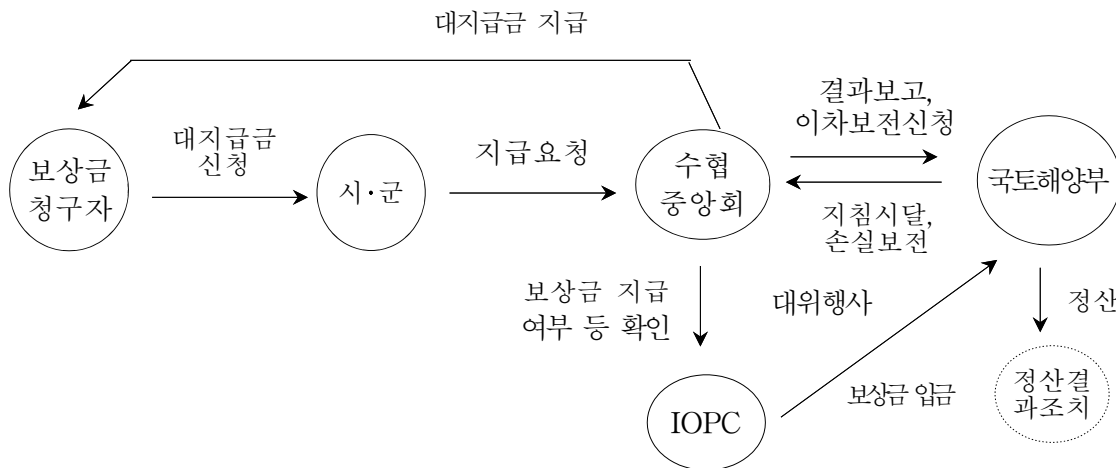
-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국제기금 등이 사정한 손해액과 확정정보상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통보
 - 시장·군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 대지급금보다 많은 확정정보상액을 통보받은 자가 시·군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시장·군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 국토해양부장관은 차액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결정하고 수협중앙회에 대지급금 지급 의뢰
 - 수협중앙회는 대지급금을 입금의뢰 계좌에 입금하고 대지급금 지급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
 - 시장·군수는 수협중앙회로부터 대지급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으면 대지급금 신청인에게 지급내용(정산내용) 통보
-

한편, 대지급금보다 확정정보상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지급금 초과지급분 반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대지급금보다 확정정보상액이 적은 경우

- 시·군에서는 해당자에게 차액을 6개월 이내에 반납토록 대지급금 초과 지급분 반납통지서(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발송
 - ※ 기한 내 반납할 경우 생계 등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면 6개월 연장
 - 반납금은 국토해양부 계좌로 입금하고, 국토해양부 및 수협중앙회에 통보
-

또한, 확정정보상액과 최초사정액의 차액이 대지급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국제기금에 대위행사(청구)하게 되며, 국제기금은 대위청구금액에 대해 심사하여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대위청구를 승인하고, 정부가 지정한 계좌(수협)로 대지급금을 입금한다.



<그림 3-1> 대지급금 지급 절차

2.2.2 정부의 대지급금 지급 및 구상

가. 최초 대지급 사례

정부는 유류오염사고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의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어 피해주민 생계곤란으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방제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방제비용의 대지급을 시행하기로 하고, 선주보험사 등과의 협의('08.5.14~16)를 통해 1~2월분 방제비를 5월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민간방제업체들에게는 융자지원 등을 통해 2008년 1~2월분 방제인건비를 분리하여 청구토록 하였으며, 국제기금과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우선 국제기금에서 중간사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기금은 5월부터 22개 민간 방제업체의 2008년 1~2월분 방제인건비 청구(28건)에 대한 중간사정을 실시하였고, 중간사정결과를 통보받은 방제업체는 중간사정액에 대한 대지급 신청을 하기에 이른다.

정부는 대지급 준비기간('08.6.18~6.20) 동안 관계기관에 대지급 기준 통보, 대지급 신청서식 발송 및 방제업체의 융자금 처리계획(재융자금 설정)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중간 사정된 2008년 1~2월분 방제인건비에 대한 정부의 대지급이 2008년 6월 26일 첫 지급되었는데, 이는 특별법 제정·발효에

따라 시행되는 최초의 대지급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최초로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하여 선주보험사측과 구상권 행사를 위한 구상합의서 마련 등 세부 협의를 통해 대지급금 전액을 선주보험사로부터 구상·회수하였다. 이와 같은 첫 대지급은 특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대지급을 실시하고 이들 채권에 대한 대위행사를 통해 선주보험사로부터 대지급금을 구상·상환한 첫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표 3-8> 최초 대지급 사례

업종	청구인(청구업체)	대지급액(원)	대지급일	지역
방제비	OO방제업체	457,787,600	'08.6.26	신안, 진도
기타(관광)	이OO 외 2인	27,742,925	'09.3.23	보령
	계	485,530,525		

나. 어촌계 총유 어업권 관련 민원해결 사례

어촌계장 명의로 청구된 전남 김양식장 피해청구에 대해서는 사정금액을 명시하였지만, 일반적인 피해청구와 같이 사정금액에 대한 동의여부 등은 묻지 않고 청구인의 적합성, 행사계약자 명단 및 어업권 행사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송부하는 등 청구 및 수령권한의 소재에 대해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 청구인의 불만은 고조되어 있었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전남 김양식장과 같은 어촌계 총유어업권 청구 관련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어촌계 총유어업권에 대한 손해 배·보상 청구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역 및 어업형태에 따라 조사 및 청구주체가 어촌계장 또는 어업권 행사계약자 명의로 이원화 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청구주체를 하나로 통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양태에 따라 청구주체를 인정하되 법률적 효과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어촌계 총유어업권의 손해 배·보상 청구에 따른 정부 대지급금 지급방안”을 마련하여 국제기금측과 동 방안에 대하여 신속히 협의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09.7.30~31)하여 어촌계 총유어업권 관련 대지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서류 작성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피해 주민들이 “정부 대지급금 지급방안”의 요건을 갖추어 대지급금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으며, 동시에 접수된 서류에 대한 신속한 검토로 대지급 신청 당일 대지급('09.8.14)금이 지급되게 하였다. 이처럼 정부가 직접 피해 주민에게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피해주민들의 생계 및 경영상의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를 하게 되었다.

다. 대지급 및 구상현황

구상청구일을 기준으로 2009년 12월말까지 정부가 지급한 대지급금 대위청구분(17차례)은 모두 HS센터와 구상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제1차부터 제17차까지 정부가 구상청구한 금액은 총25,974,877,558원(296건)이다.

구상청구 금액 중 2009년 12월말까지(구상회수일 기준) 구상회수가 완료된 것은 제15차 구상청구분까지이며, 구상회수금액은 총25,869,253,990원(288건)이다.⁴⁷⁾ 구상합의 실시 및 구상금 회수 현황은 아래의 <표 3-9>와 같다.

<표 3-9> 구상합의 실시 및 구상금 회수 현황(2009.12.31 기준)

회 차	청구 건수	구상금액(원)	구상합의일	구상금 회수(입금)일	비 고
제1차	22	12,948,539,041	2009.03.09	2009.3.12	방제비
제2차	8	3,183,097,576	2009.03.12	2009.3.19	방제비
제3~10차	232	9,076,514,157	2009.09.21	2009.9.28	
제11차	13	546,255,223	2009.09.25	2009.10.15	
제12~13차	7	25,558,551	2009.10.15	2009.10.29	
제14~15차	6	89,289,442	2009.11.10	2009.11.26	
소 계	288	25,869,253,990			
제16차	2	98,142,677	2009.12.11	2010.1.6	
제17차	6	7,480,891	2010.01.12		청구('09.12.16)
합 계	296	25,974,877,558			

47) 구상완료시점 기준을 구상합의일로 하는 경우 2009년 12월 말까지 구상합의 완료된 금액은 25,967,396,667원(290건)이 된다.

2009년 12월말 현재 정부가 대지급금으로 지급한 관광, 방제, 수산, 양식, 기타(재산, 환경피해 등) 분야별 대지급 현황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청구 현황, 대위청구를 통한 구상회수현황과 미회수된 대지급금 현황은 아래의 <표 3-10>과 같다.

<표 3-10> 피해분야별 대지급금 지급 및 구상현황(2009.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지급		대위통지		대위청구		구상회수		구상미회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32	30,733	302	14,601	296	25,974	288	25,869	44	4,864
관광분야	138	800	138	800	128	731	122	724	16	76
방제분야	57	21,682	27	5,550	31	16,992	31	16,992	26	4,690
수산분야	0	0	0	0	0	0	0	0	0	0
양식분야	136	8,209	136	8,209	136	8,209	134	8,111	2	98
기타(재산, 환경피해 등)	1	42	1	42	1	42	1	42	0	0

- ※ 구상회수된 방제분야 대지급금(30건/16,132백만원)은 대위통지 없이 구상완료되었음
- ※ 방제분야 대지급(57건/21,682백만원) 중 지자체 방제비용(25건/4,167백만원)은 정부 후순위채권(SLQ)으로 대위청구를 하지 않았음

<표 3-11> 충남지역 분야별 대지급금 지급 및 구상현황(2009.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지급		대위통지		대위청구		구상회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충청남도	188	19,263	160	4,557	161	16,444	153	16,339
관광분야	138	800	138	800	128	731	122	724
방제분야	46	18,316	18	3,610	29	15,566	29	15,566
수산분야	0	0	0	0	0	0	0	0
양식분야	3	105	3	105	3	105	1	7
기타(재산, 환경피해 등)	1	42	1	42	1	42	1	42

- ※ 업체방제비 30건/16,089백만원, 지자체(SLQ) 16건/2,227백만원

<표 3-12> 충남지역 시·군별 대지급금 지급 및 구상현황(2009.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지급		대위통지		대위청구		구상회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태안군	38	16,045	11	2,415	30	14,588	28	14,490
관광분야	4	50	4	50				
방제분야	32	15,897	5	2,267	28	14,490	28	14,490
양식분야	2	98	2	98	2	98		
보령시	147	2,889	146	1,813	131	1,856	125	1,849
관광분야	134	750	134	750	128	731	122	724
방제분야	11	2,090	10	1,014	1	1,076	1	1,076
양식분야	1	7	1	7	1	7	1	7
기타(재산, 환경피해 등)	1	42	1	42	1	42	1	42
서산시	1	20	1	20	0	0	0	0
방제분야	1	20	1	20				
서천군	1	234	1	234	0	0	0	0
방제분야	1	234	1	234				
홍성군	1	75	1	75	0	0	0	0
방제분야	1	75	1	75				

<표 3-13> 전북지역 분야별 대지급금 지급 및 구상현황(2009.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지급		대위통지		대위청구		구상회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라북도	5	843	5	843	0	0	0	0
관광분야	0	0	0	0	0	0	0	0
방제분야	5	843	5	843	0	0	0	0
수산분야	0	0	0	0	0	0	0	0
양식분야	0	0	0	0	0	0	0	0

<표 3-14> 전북지역 시·군별 대지급금 지급 및 구상현황(2009.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지급		대위통지		대위청구		구상회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부안군	2	568	2	568	0	0	0	0
방제분야	2	568	2	568				
고창군	1	91	1	91	0	0	0	0
방제분야	1	91	1	91				
군산시	2	184	2	184	0	0	0	0
방제분야	2	184	2	184				

<표 3-15> 전남지역 분야별 대지급금 지급 및 구상현황(2009.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대지급		대위통지		대위청구		구상회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라남도	139	10,627	137	9,201	135	9,530	135	9,530
관광분야	0	0	0	0	0	0	0	0
방제분야	6	2,523	4	1,097	2	1,426	2	1,426
수산분야	0	0	0	0	0	0	0	0
양식분야	133	8,104	133	8,104	133	8,104	133	8,104
기타(재산, 환경피해등)	0	0	0	0	0	0	0	0

※ 업체방제비 2건/1,426백만원, 지자체(SLQ) 4건/1,097백만원

<표 3-16> 전남지역 군별 대지급금 지급 및 구상현황(2009.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대지급		대위통지		대위청구		구상회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영광군	7	786	7	786	6	541	6	541
방제분야	1	245	1	245				
양식분야	6	541	6	541	6	541	6	541
신안군	121	5,752	120	5,294	120	5,265	120	5,265
방제분야	2	945	1	487	1	458	1	458
양식분야	119	4,807	119	4,807	119	4,807	119	4,807
무안군	9	3,975	8	3,007	8	3,696	8	3,696
방제분야	2	1,247	1	279	1	968	1	968
양식분야	7	2,728	7	2,728	7	2,728	7	2,728
진도군	1	86	1	86	0	0	0	0
방제분야	1	86	1	86				
함평군	1	28	1	28	1	28	1	28
양식분야	1	28	1	28	1	28	1	28

라. 지역별 방제비 대지급 및 구상회수 현황

충청남도, 전라남북도에서 지급된 업체별 방제비 대지급 건수 및 지급금액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청구 및 구상회수 현황은 아래의 <표 3-17>과 같다.

<표 3-17> 업체 방제비 대지급 및 구상현황(2009.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지 역	대지급		대위통지		대위청구		구상회수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 체	32	17,515	2	1,383	31	16,992	31	16,992	
충청남도	30	16,089	2	1,383	29	15,566	29	15,566	
전라북도	0	0	0	0	0	0	0	0	
전라남도	2	1,426	0	0	2	1,426	2	1,426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각 지자체에서 지급한 업체별 방제비 대지급 건수 및 지급금액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청구 및 구상회수 현황은 아래의 <표 3-18>과 같다.

<표 3-18> 지자체 방제비 대지급 및 구상현황 총괄(2009.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지자체명	대지급		대위통지		대위청구		구상회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5	4,167	25	4,167	0	0	0	0
충청남도	16	2,227	16	2,227	0	0	0	0
전라북도	5	843	5	843	0	0	0	0
전라남도	4	1,097	4	1,097	0	0	0	0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내 시·군별로 지급한 업체별 방제비 대지급 건수 및 지급금액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청구 및 구상회수 현황은 각각 아래의 <표 3-19>, <표 3-20>과 같다.

<표 3-19> 충청남도 방제비 대지급 및 구상현황(2009.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지자체명	청구내역	대지급		대위통지		대위청구		구상회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6	2,227	16	2,227	0	0	0	0
태안군	주민방제비(SLQ)	3	884	3	884	0	0	0	0
보령시	주민방제비(SLQ)	10	1,014	10	1,014	0	0	0	0
서산시	주민방제비(SLQ)	1	20	1	20				
서천군	주민방제비(SLQ)	1	234	1	234				
홍성군	주민방제비(SLQ)	1	75	1	75				

<표 3-20> 전라남·북도 방제비 대지급 및 구상현황(2009.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지자체명	청구내역	대지급		대위통지		대위청구		구상회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라북도		5	843	5	843	0	0	0	0
부안군	주민방제비 (SLQ)	2	568	2	568	0	0	0	0
고창군	주민방제비 (SLQ)	1	91	1	91				
군산시	주민방제비 (SLQ)	2	184	2	184	0	0	0	0
전라남도		4	1,097	4	1,097	0	0	0	0
영광군	주민방제비 (SLQ)	1	245	1	245				
신안군	주민방제비 (SLQ)	1	487	1	487				
무안군	주민방제비 (SLQ)	1	279	1	279				
진도군	주민방제비 (SLQ)	1	86	1	86				

2.3 손해 배·보상 청구인에 대한 대부지원

대부금은 특별법 제8조 제5항에 근거하여 국제기금의 보상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무이자, 채권담보(손해 배·보상 청구권) 형식의 정책금융자금으로 정부의 대지급금 또는 보상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사고 초기에 지급된 ‘생계안정자금’이나 특별법에 근거하여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한도초과보상금’ 또는 ‘대지급금’과는 구별된다.

2.3.1 대부제도 추진경과

사고 초기 국제기금은 가능한 한, 보상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사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에 따라 특별법 제정시 보상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사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자에게 대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고(제8조 제5항), 대부수준은 대책위원회

에서 결정토록(제8조 제6항) 함에 따라 대부 지원수준 마련에 착수하였다.

국토해양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조사 지원 용역의 일환으로 ‘대부기준 설정방안’ 연구를 시작하여 2차례의 대부기준 결정모형 마련과 5차에 걸친 모형수정 및 분석을 거치고, 피해지역 지자체 및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표 3-21> 피해지역의 등급, <표 3-22> 피해업종의 등급, <표 3-23> 종사업종의 소득수준을 고려한 대부결정모형을 기준으로 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개인별 대부수준 및 절차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은 피해지역 및 업종 등급 적용기준 설정을 놓고 등급상향조정 요구 등 지역간(충청남도지역과 전라남북도, 태안지역과 보령시지역, 태안지역 내) 이견이 표출되었고,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업종임에도 적용기준이 저평가된 수산분야의 김양식업, 어선어업, 종묘생산어업 등과 비수산 분야의 횃집, 모텔·호텔·여관 등 숙박업종이 업종등급상향조정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해양오염당시 양식시설물을 철거한 전남지역의 김양식업에 대한 1급지 적용, 피해정도를 고려한 태안군 지역내의 등급 구분(1급지 : 태안군 A, 2급지 : 태안군 B), 맨손어업의 대부기준 하향 조정 등 일부의견을 반영한 ‘개인별 대부수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2008년 9월 26일 개최된 제2차 조정위원회에 상정·의결하고 이를 토대로 대부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개인별 대부기준액 및 지급 절차, 대부조건 및 상환기한, 그 밖의 절차 등을 규정한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지원’을 위한 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및 국제기금 사무국과 협의하여 제정·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71호, 2008.12.17 시행)하였다. 고시 제정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08.6.18~8.17 : 대부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KMI, 국민연금연구원)
- '08.8.12~8.13 : 대부기준 설정방안에 대한 현장 순회설명(전남, 충남지역)
- '08.9.4 : 대부채권 확보방안에 관한 법률 자문(법률사무소 선진)
- '08.9.9 :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대부기준 마련 방침 결정
- '08.9.26 : 조정위원회 상정안건 검토(기획재정부)
- '08.9.23 : 조정위원회 상정안건 현장설명회(충남유류사고대책본부)
- '08.9.26 : 제2회 조정위원회 상정·의결

- '08.10.7~10.17 :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고시(안) 관계부처 협의
- '08.10.13~17 : IOPC Fund 회의에 참가, 특별법에 따른 정부대부금의 상환 절차 협의(런던)
- '08.11월 중 :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규제심사 등
- '08.12.12 :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결재(장관)
- '08.12.17 :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표 3-21> 지역에 따른 대부기준 점수

구 분	내 용	점 수
1급지	태안군 A지역(이원면, 원북면, 소원면)	40
2급지	태안군 B지역(근흥면, 남면, 안면읍, 고남면), 서산시, 보령시	30
3급지	태안읍, 당진군, 홍성군, 서천군, 충남기타	20
4급지	전·남북	18

<표 3-22> 업종에 따른 대부기준 점수

구 분	세부 업종	점 수
수산	면허양식업	100
	어선어업, 종묘생산업, 구획어업, 축제식양식업	80
	나잠어업, 기타 수산업	70
비수산	횃집,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기타요식업, 호텔, 펜션, 여관, 민박, 기타숙박업, 편의점, 슈퍼마켓, 놀이기구대여점, 낚시기구대여점, 기타 판매대여업	60
기타	맨손어업, 노점상	30

※ 수산분야와 비수산분야의 피해규모는 대등하지만, 해상사고인 점을 감안하여 수산분야의 비중을 다소 상향 설정하였음

<표 3-23> 소득에 따른 대부기준 점수

상대비	세부 업종	점 수
1.7~2.57	호텔, 종묘생산업, 여관, 펜션	170~257
1.2~1.61	축제식양식업, 횃집, 편의점, 낚시기구대여, 슈퍼마켓, 기타 숙박업, 민박, 유흥음식점, 일반음식점, 기타요식업, 기타 수산업, 기타판매대여업, 어선어업, 면허양식업	120~161
1.0~1.05	구획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놀이기구대여점, 노점상	100~105

※ 업종별 평균소득(국민연금 부과기준)을 점수화하되, 소득이 가장 낮은 노점상을 기준으로 한 상대 소득비율을 점수화하였음

고시 제정 이후 대부업무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일부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제한채권신고 종료('09.5.8) 이후 대부신청이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대부기준을 현실화하고, 대부를 목적으로 하는 허위청구를 예방함으로써 실제 피해주민에 대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대부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09.6.9)하고, 지역 설명회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피해위 등 피해주민 의견을 수렴한 다음,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지원을 위한 고시'를 전부 개정하였다(2009.8.2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92호). 이후 동 고시는 2009년 12월 17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1193호로 일부 개정되었다.

2.3.2 대부제도의 개요

가. 신청자격

대지급, 대부 업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대지급, 대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국제기금에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보상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액의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는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⁴⁸⁾

48) HS센터에서 그룹으로 보상청구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청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부 대상이지만, 타 업종으로 이미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같은 업종에 대해 피해기간을 분리하여 청구한 경우라도 대부는 1건만 가능하다(다수의 보상청구가 있어도 대부는 1인 1건).

나. 대부기준

① 제정당시 기준(2008.12.17, 국토해양부 고시 2008-741호)

대부금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별 대부금액은 소득을 기준으로 대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향후 피해주민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정도를 반영하여 대부금과 보상금의 오차를 최대한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별로 4개의 지역등급으로 나누고(태안군A, 태안군B, 기타 충남지역, 전남·북지역), 업종별로는 23개 업종으로 세분화(수산 8, 비수산 15)하여 정부의 예산사정과 피해주민의 수, 피해의 정도, 피해업종, 소득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표 3-24>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대부기준에 따라 피해주민 개인별로 최저 150만원에서 최대 935만원까지(개인별 평균 292만원) 지원받게 되며, 대부금액은 주민표본 37,436명의 개인부금액을 산출한 후, 총 합계를 구한 다음(11,001,796점), 다시 7.2만명으로 환산(21,156,455점)하였다.

<표 3-24> 개인별 대부 상한액 조건표(제정 당시)

(단위: 만원)

지역 업종	태안A	태안B	태안읍	서산시	보령시	당진군	홍성군	서천군	충남 기타	전남·북
면허양식업	850	650	450	650	650	450	450	450	450	410
어선어업	690	530	370	530	530	370	370	370	370	340
종묘생산업	720	560	400	560	560	400	400	400	400	370
구획어업	680	520	360	520	520	360	360	360	360	330
맨손어업	280	220	160	220	220	160	160	160	160	150
나잠어업	600	460	320	460	460	320	320	320	320	290
축제식양식업	710	550	390	550	550	390	390	390	390	360
기타수산업	610	470	330	470	470	330	330	330	330	310
횃 집	550	430	310	430	430	310	310	310	310	290
일반음식점	530	410	290	410	410	290	290	290	290	270
유형음식점	540	420	300	420	420	300	300	300	300	270
기타요식업	530	420	300	420	420	300	300	300	300	270
호 텔	590	470	360	470	470	360	360	360	360	330
펜 셴	550	430	310	430	430	310	310	310	310	290
여 관	550	430	310	430	430	310	310	310	310	290
민 박	540	420	300	420	420	300	300	300	300	270
기타숙박업	540	420	300	420	420	300	300	300	300	280
편의점	550	430	310	430	430	310	310	310	310	280
슈퍼마켓	550	430	310	430	430	310	310	310	310	280
노점상	280	220	160	220	220	160	160	160	160	150
놀이기구대여	520	400	280	400	400	280	280	280	280	260
낚시기구대여	550	430	310	430	430	310	310	310	310	280
기타판매대여	530	410	290	410	410	290	290	290	290	270

※ 비 고

1. 국제기금 등에 보상금을 청구한 개인에 대한 대부기준이며 법인은 제외됨
2. 2개 이상의 업종에 대해 보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유리한 업종만 적용함
3. 1개 가구에서 가구원이 각각 보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각각 대부할 수 있음
4. 태안 A지역 : 태안군 이원면·원북면·소원면
5. 태안 B지역 : 태안군 근흥면·남면·안면읍·고남면

6. 전남지역 김양식업은 태안 A지역 먼허양식업 기준을 적용함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음
 - 가. 먼허양식업 중 김, 굴, 전복, 어류를 양식하는 경우
 - 나. 어선어업 중 3톤 이상(근해어업은 대부대상에서 제외됨)
 - 다. 구획어업 중 정치망어업
 - 라. 횃집 중 테이블 7개 이상
 - 마. 일반음식점 중 테이블 10개 이상
 - 바. 유흥음식점 중 객장 면적 20평 이상
 - 사. 여관 중 객실수 30개 이상
 - 아. 민박 중 객실수 5개 이상
 - 자. 펜션 중 객실수 10개 이상
 - 차. 편의점·슈퍼마켓 중 10평 이상

② 개정된 기준(2009.8.24, 국토해양부 고시 2009-692호)

선주 책임제한 채권신고기간 종료('09.5.8) 후 12만 6천여 건의 제한채권신고와 더불어 피해보상청구가 본격화됨에 따라 대부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부제도 집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대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부 대상을 추가하고 대부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지원을 촉진하고자 제정 당시 대부기준을 정비하였다.

개정된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대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부대상 업종을 관련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분류, ②어촌계 등 명의의 어업권(행사계약자) 등을 대부대상으로 추가 인정, ③보상 신속화를 위해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등 불법 영업행위와 가압류 등 보상 청구권 권리 제한자를 대부 대상에서 제외⁴⁹⁾, ④신청접수 및 결정을 담당하는 지자체에 대부대상과 수준을 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 마련, ⑤시장·군수의 임무(자료입력·관리) 및 국토해양부의 사후관리·회수시 조치할 사항을 명확화(대부절권설정 통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국제기금 등에 통지)에 관한 사항으로 최초 대부기준의 범위 내에서 대부대상 및 지원수준을 체계적으로

49) 2차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맨손어업 유류피해 조사대상자 선정(안)」에 의해 추가 선정된 맨손 어업자는 대부대상으로 인정하였다.

정비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한 맨손어업 유류피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맨손어업자들이 대부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반발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대부지원 및 신속한 손해 배·보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시켜 규정 개정안을 관철시켰다.

<표 3-25> 개인별 대부 상한액 조건표(개정기준)

(단위 : 만원)

업종\지역				태안A	태안B	서산시	보령시	당진군	홍성군	서천군	전남 전북	
수 산 분 야	면 허 어 업	개 인 어업권	정치망어업 양식 어업	850	650	650	650	450	450	450	410	
				단 체 어업권	양식어업	수하식	600	460	460	460	320	320
		바닥식	430			330	330	330	230	230	230	210
		마을어업		280	220	220	220	160	160	160	150	
	허 가 어 업	어선어업			690	530	530	530	370	370	370	340
		종묘생산어업			720	560	560	560	400	400	400	370
		육상해수양식어업			710	550	550	550	390	390	390	360
		구획어업			680	520	520	520	360	360	360	330
	신고 어업	맨손어업			280	220	220	220	160	160	160	150
		나잠어업			600	460	460	460	320	320	320	290
	수산물 가공업				610	470	470	470	330	330	330	310
관 광 등 비 수 산 분 야	식 품 접 객 업	횃집		550	430	430	430	310	310	310	290	
		일반음식점영업		530	410	410	410	290	290	290	270	
		유호/단란 주점영업		540	420	420	420	300	300	300	270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		530	420	420	420	300	300	300	270	
	숙 박 업	호텔, 콘도, 펜션(관광진흥법)		590	470	470	470	360	360	360	330	
		펜션, 모텔 등 일반숙박시설		550	430	430	430	310	310	310	290	
		농어촌 민박, 휴양림숙박시설		540	420	420	420	300	300	300	280	
	판 매 대 여 서 비 스 업	편의점/슈퍼마켓		550	430	430	430	310	310	310	280	
		놀이기구대여점		520	400	400	400	280	280	280	260	
		낚시기구대여점		550	430	430	430	310	310	310	280	
		택시운송 사 업	개인택시	400	320	320	320	220	220	220	200	
			일반택시	280	220	220	220	160	160	160	150	
		노점상		280	220	220	220	160	160	160	150	
		기타판매대여업		530	410	410	410	290	290	290	270	

※ 비 고

1. 동 조건표상의 해당업종의 피해로 인하여 국제기금등에 보상금을 청구한 개인에 대한 대부기준이며 법인은 제외됨(다만,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명의를 어업권이나, 법인택시 등의 경우 대부 신청당시 개인별 손해액을 구분하여 손해배(보)상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개인의 청구로 간주함)
2. “단체어업권”이란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명의로 어업의 면허를 취득한 어업권을 말한다.
3. 2개 이상의 업종에 대해 보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유리한 업종만 적용함
4. 공동소유 어업권의 경우 지분권자별로 보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각각 대부할 수 있음
5. 1개 가구에서 가구원이 각각 보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각각 대부할 수 있음
6. 태안 A지역 : 태안군 이원면·원북면·소원면·근흥면
7. 태안 B지역 : 태안군 태안읍·남면·안면읍·고남면
8. 김 또는 굴 양식업 중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양식물을 철거한 경우를 포함)에는 태안 A지역 면허양식업 기준을 적용함
9. 어선어업 중 근해어업은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자치단체가 관할하는 해역에 한정하여 조업구역이 설정된 어업(해당 조업구역의 근해어선이 포획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업을 포함한다.)에만 적용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 가. 면허양식업 중 김, 굴, 전복, 어류를 양식하는 경우
 - 나. 어선어업 중 3톤 이상
 - 다. 구획어업중 정치성어업
 - 라. 횃집중 테이블 7개 이상
 - 마. 일반음식점중 테이블 10개 이상
 - 바. 유흥음식점중 객장 면적 20평 이상
 - 사. 여관중 객실수 30개 이상
 - 아. 민박중 객실수 5개 이상
 - 자. 펜션중 객실수 10개 이상
 - 차. 편의점·슈퍼마켓중 10평 이상
11. 휴게음식점업이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

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

12. 기타판매대여업이란 위 조건표상의 판매대여서비스업에 분류되지 아니한 업종으로 수산 및 관광분야의 피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물품을 제조·유통·판매·대여하거나 시설을 대여하는 업종을 말한다.

13. 시장·군수는 대부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대부 여부 및 대부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가. 관련 법률에 따른 해당업종의 합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청구에 대해서만 대부를 실시하되, 맨손어업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추가 조사대상자는 대부대상 인정

나. 법원으로부터의 배(보)상 청구권에 대한 채권 가압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이 있거나 채권의 양도 등으로 보상 청구인의 권리가 제약된 경우 대부대상에서 제외

다. 국제기금등의 보상청구매뉴얼 상 유류오염과 피해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따라 배(보)상 여부가 결정되는 “순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에 따른 대부 신청은 아래 항목을 검토하여 유류오염이 피해사실과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대부여부 및 대부금액 결정

- 1) 오염지역과 청구인 사업 활동의 지리적 근접성 여부(공통)
- 2) 수산분야의 경우 오염된 어업장소의 어획자원에 대한 청구인 사업의 의존성
- 3) 비수산분야 중 관광분야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이 오염영향을 받은 해안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정도(매출결과의 구성요소가 차지하는 범위 등)
- 4) 오염지역의 수산업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사업 여부(유류 및 얼음공급업자, 수산물 운반업자 및 보관업자, 수산물유통판매업자, 기타 선용품 공급업자 등)

라. 상기 “다” 호의 유류오염과 피해사이의 인과관계와 대부금액을 판단함에 있어 보상청구인의 영업활동 지역의 실질적인 유류오염여부, 해당지역 유사업종의 사정결과, 대부신청인의 보상청구액 및 서류 등을 확인하여 청구금액이 대부상한액보다 적거나 보상액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상청구액 이하 또는 상한액의 50% 이내에서 대부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대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주된 경제활동 구역이 기름오염 사실이 없거나 기름이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피해청구에 대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

다. 대부조건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대출은 담보나 보증과 같은 물적·인적담보가 요구되고, 정부가 농·어업인이나 중소기업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도 최소한의 신용보증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주민 대부분이 부채가 많고, 신용상태도 좋지 않은 등 담보능력이 미약하고, 보상금채권 외에는 현실적으로 담보물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할 경우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주민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별법에 따른 대부제도는 그 금액은 다소 적지만, 피해주민의 담보능력이나 신용상태가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대부금 지급이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는데 따른 지원이라는 점과 대부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무이자로 지원한다.

다만, 이와 같이 별도의 대부조건이 없기 때문에 향후 대부금 회수여부가 불투명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금 회수를 위하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서 대부금의 우선 상환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제14조 제2항(대지급금 또는 한도초과보상금과의 상계)을 제외하고는 대부금 회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3자(他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질권설정과 그 통지방식(내용증명우편통지) 등 대부채권의 우선변제 방안을 마련하여 채권 확보의 안정성을 제고하였다.⁵⁰⁾

2.3.3 정부대부업무절차

가. 대부 신청

대부 신청자격을 갖춘 피해주민이 대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5호 서식을 이용하여 해당 시·군에 대부 신청을 하는데,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⁵¹⁾

50) 질권설정 통지는 원칙적으로 질권설정자(대부받는 지역주민)가 확정일자부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질권설정자(지역주민)를 대리하여 질권설정 에 관한 확정일자부 통지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41호 별지3호 서식 이용).

51) 대부신청시 유의사항

- 대부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작성·접수해야 하며, 대부금 수령 계좌는 반드시 본인 계좌이어야 함(‘지급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

-
- ① 대부 신청서(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 ② HS센터에서 발급한 보상청구 접수번호가 기재된 문서
 - 문서에 보상청구 접수번호가 부여되었다고 해서 보상청구가 접수된 것이 아니며, 반드시 ‘접수되었음’이 명기되어야 함
 - ③ HS센터에 제출한 보상청구서류 사본
 - 보상청구서류 사본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 보상청구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④ 질권설정동의서(고시 별지 제3호 서식)
 - ⑤ 대부금상환약정서(고시 별지 제4호 서식)
 - ⑥ 정보공개동의서(붙임4, 해당자에 한함)
-

나. 대부 심사 및 결정

개인별 대부금액은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41호)」의 대부 상한액 조건표에 따라 대부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지자체에서 보상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1인이 다수의 보상청구를 한 경우 사정결과가 1건이라도 나오는 경우에는 대부신청이 불가(다만, 사정결과가 “0원”인 경우는 가능)하며, 대부 심사결과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대부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문서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 다음 대부금 지급을 요청하게 된다.

대부금 결정 및 그 지급수준은 해당 지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고시 제8조의 2), 규정에 존재하지 않은 사례 등에 대해서는 담당기관에서 보상청구와 실제 피해실태를 파악하여 연관성 정도에 따라 대부여부 및 대부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
- 단, 거동불편 등 예외적인 경우에 본인 이외의 자가 대리 접수가 가능하며, 이런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분증(대리 접수자) 등을 함께 제출해야함.

<표 3-26> 대부 심사표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상청구번호	신청인이 국제기금등에 보상 청구한 전체 청구번호를 기재함	대부신청일	
	보상청구금액	신청인이 보상 청구한 전부를 합산한 금액을 기재함	대부신청금액	
심사 내용				
항 목		결 과	비 고	
1. 보상청구일로부터 6개월 경과		☐ 경과 ☐ 미경과	○ 허베이센터 접수공문 시행일 : ○ 허베이 스피리트호보상지원시스템의 보상청구일 :	
2. 국제기금 손해사정 여부		☐ 사정됨 ☐ 사정 안됨	※ 사정된 경우 사정금액 및 사정일자 기재	
3. 타업종으로 대부금 지원 여부		☐ 지원됨 ☐ 지원 안됨	※ 타업종으로 대부받은 경우 그 내용 등 기재	
4. 권리행사 제한사유 존재 여부		☐ 있음 ☐ 없음	※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기재 예) 압류, 채권양도 등	
5. 질권설정 동의서 제출 여부		☐ 미제출 ☐ 제출		
6. 대부금 상환 약정서 제출 여부		☐ 미제출 ☐ 제출		
7. 피해지역 및 업종		☒ 피해지역 : 시·군 단위 입력(태안은 면단위) ☒ 피해업종 : 별표/ 조건표상 업종 기재 ☒ 대부 상한액 :		
심사 결과		☐ 대부적격 / 대부금액은 _____ 원임 ☐ 대부 부적격 (사유: 대부 부적격 사유를 간략히 기재)		

다. 대부금 지급

지급할 대부금액이 결정되면, 해당 시·군은 수협중앙회에 대부금 지급을 의뢰하고, 지급의뢰를 받은 수협중앙회에는 시·군 의뢰에 따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대부금을 입금한다.

이때 피해주민들이 지급사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수협중앙회 및 보상지원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주민에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09.7.1 개통)

라. 대부금 상환

대부기간은 정부 대지급금(국제기금등의 손해배·보상금) 수령일까지이며, 대부를 받은 자가 대지급금을 받거나,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4조). 따라서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에서 대부금을 상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령(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대지급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계좌를 국토해양부 계좌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대부금을 차감하고 잔액을 지급한다(시행령 제14조 제3항).

※ 대부금이 손해사정액보다 적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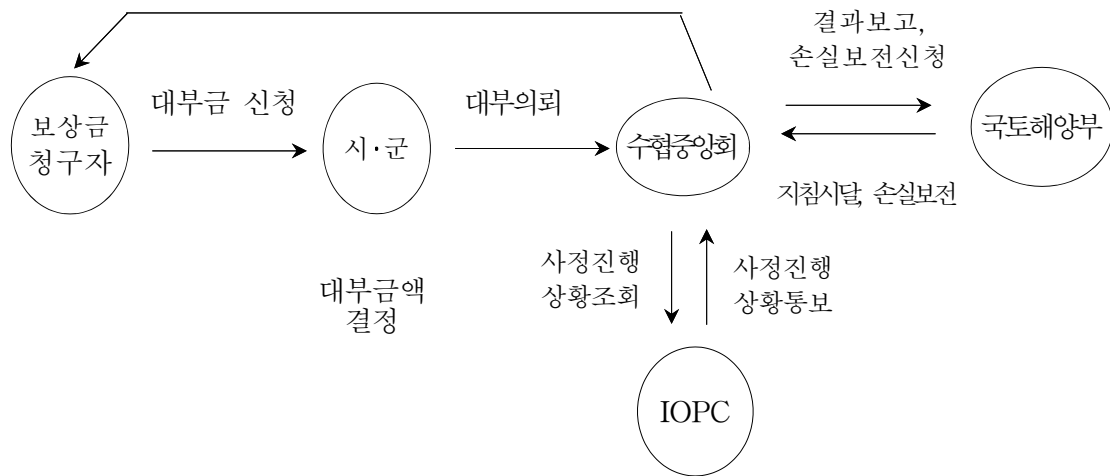
- 대지급금 신청시에는 대지급금에서 상계처리
- 대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국제기금의 보상금에서 회수
(국가에서 질권 실행)

※ 대부금이 손해사정액보다 많은 경우

(손해사정액이 '0원'인 경우 포함)

- 손해사정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해사정액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함

한편, 대지급금 또는 보상금으로 대부금을 전액 상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상환하면 되는데, 만약, 6개월 이내에도 대부금 잔액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강제집행, 압류 등 채권회수절차에 따라 회수하게 된다.



<그림 3-2> 대부금 지급절차

마. 대부 채권관리

① 채권관리

대부금을 상환고지서 기간(통상 6개월)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 채권관리대상으로 등재가 된다.

이에 따라 적용 법률도 국가채권관리법이 적용되는데 이는 민법이나 민사집행법 등에 의한 일반 채권의 회수절차와 동일하며, 채권자인 국가 또는 지자체는 법무부 장관(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법원에 강제이행을 청구하고,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판결에 따라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등 강제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② 채권관리관 지정

국토해양부는 국가 채권관리를 위하여 11개 피해지역 지자체에 분임 채권관리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을 지정('09.1)하였으며 향후 상환기한 이내에 상환하지 않은 대부금에 대해서는 통상의 대부금 상환절차가 아닌 국가채권관리관에 의해 국가채권 회수 절차에 따라 대부금에 대한 회수가 이뤄지게 된다.

<표 3-27> 피해지역 지자체 회계관직 지정내역

도별	시군별	회계직구분	회계관직 추천직위	비고
충남도	태안군	수입징수관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채권관리관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홍성군	수입징수관	해양오염사고대책단장	
		채권관리관	해양오염사고대책단장	
	서천군	수입징수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채권관리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산시	수입징수관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채권관리관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보령시	수입징수관	재난안전과장	
		채권관리관	재난안전과장	
	당진군	수입징수관	해양환경오염사고대책단장	
		채권관리관	해양환경오염사고대책단장	
전남도	무안군	수입징수관	해양수산과장	
		채권관리관	해양수산과장	
	영광군	수입징수관	해양수산과장	
		채권관리관	해양수산과장	
	신안군	수입징수관	해양수산과장	
		채권관리관	해양수산과장	
전북도	부안군	수입징수관	해양수산과장	
		채권관리관	해양수산과장	
	군산시	수입징수관	해양수산과장	
		채권관리관	해양수산과장	

2.3.4 대부지원현황

2009년까지 대부금은 <표 3-28>에서 보는 것처럼 충남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태안지역에서 신청이 많았는데, 이 경우는 태안 남면수협의 551건의 단체청구가 포함된 수치이다.

사고일로부터 2년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대부 발생이 저조한 이유는 일단 보상청구 자체가 지연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선주책임제한 신고마감('09.5.8) 이후 보상 청구가 집중된 상황에서 2010년도 상반기부터는 대부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3-28> 대부지원현황(2009.12월말 기준)

(단위 : 원)

지역		건수	금액	비고
충남	당진	147	425,100,000	
	태안	618	2,078,637,000	
	홍성	74	214,600,000	
	서천	75	280,390,000	
	보령	6	30,050,000	
	소계	920	3,028,777,000	
전북	군산	-	-	
	부안	-	-	
	소계	-	-	
전남	신안	-	-	
	무안	-	-	
	소계	-	-	
총 계		920	3,028,777,000	

가. 대부금 최초 지급사례

대부제도가 시행된 이래 보령과 태안지역에서 각각 1건씩의 대부금이 최초 지급되었다.

보령지역은 수산분야(양식업) 피해주민이 신청한 것에 대하여 2008년 12월 16일에 7,150,000원이 지급되었고, 충남 태안지역에서는 2009년 3월 4일 비수산 분야에 대하여 4,300,000원이 지급되었다.

<표 3-29> 대부금 최초 지급사례

(단위 : 원)

분야	업종	청구인(청구업체)	대부금액	대부 지급일	지역
수산	양식	김○○	7,150,000	'08.12.16	보령
비수산	펜션	정○○	4,300,000	'09. 3. 4	태안

나. 단체 클레임 지급사례

남면수협 소속 피해민들은 남면수협을 통하여 피해보상청구를 업종별로 단체로 묶어서 2008년 10월 28일과 2009년 3월 30일에 각각 82억 5242만 3천 원(677건)과 9억 5750만 5천원(159건)을 국제기금에 피해보상청구를 하였다.

청구에 대한 손해사정이 지연됨에 따라 2008년 5월 14일 대부신청 의사가 있는 주민 551명이 1차적으로 17억3378만7천원의 대부금 지급신청을 정부에 하였고, 국토해양부는 태안 남면수협 등을 통해 대부신청한 551명에 대하여 신청 대부금 전액을 같은 해 6월 11일에 지급하였다.

대부신청에 따른 질권설정(개인 클레임과 청구금액 기재)을 위해서는 담보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태안 남면수협의 경우 업종별로 묶어서 보상신청을 한 관계로 1개 클레임에 수백명의 보상청구자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담보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였으나, 단체 클레임 내에 각 개인별로 보상청구금액을 확인할 수만 있으면 대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4 한도초과 보상금 지급

2.4.1 특별법상의 한도초과보상의 개요

한도초과보상금이라 함은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면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할 자가 없거나, 또는 발생한 손해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면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않아 선박소유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기는 하지만, 선박소유자의 무자력 등 배상능력이 부족하여 손해액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배상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한도초과보상금 지급제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특별법 제9조(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첫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면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인정되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자가 없는 경우

둘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면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은 있으나, 선박소유자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상기의 경우 특별법에서는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 사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한도초과 보상금 지급제도의 시행을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에서는 피해주민의 한도초과 보상금 지급신청과 그에 따른 지급수준의 결정,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대지급금의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4.2 필요성 및 근거

국제기금과 국내법은 선주의 고의·과실과는 무관한 일정한 사유로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선주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제3자에 대한 선주의 손해배상책임한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고선박의 선주를 보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주와 국제기금의 책임이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됨에 따라 선

주와 국제기금의 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제도의 미비로 피해주민이 피해배상 및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주와 국제기금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한 손해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선주와 국제기금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한 손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다(제9조 및 시행령 제15조).

2.4.3 예산확보 및 운영

정부는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되는 금액(특별법 제9조 제1항)으로 제1회 특별대책위원회('08.6.19)에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사정액 전액을 정부가 대지급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위하여 국제기금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5년(2009년~2013년) 동안 수협에 국고보조금 형태로 교부·집행하기로 하였다.

2008년 6월 19일 개최된 제1회 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2008년 6월 현재 국제기금의 추정 피해액(5,385~5,735억원)⁵²⁾을 기준으로 한도초과보상금 총액을 확정·산출하고, 국제기금에서 사정한 손해액 전액(100%)을 한도초과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한도초과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2009년 1월 현재 한도초과보상금 예산계획은 약437억원으로 2009년 1/4분기 한도초과보상금은 계획대로 2009년 1월에 237억원을 교부하였고, 2/4분기 및 3/4분기에는 당초 예산(분기별 100억원) 대비 각각 54.45억원, 136.83억원을 증액된 154.45억원, 236.83억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특별법은 유류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를 초과할 것이라 전제하에 한도초과보상금 지급규정을 두었지만, 2009년 12월 31일 현재 순수한 한도초과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은 없다.

다만,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대

52) 2009년 10월 현재 한도초과보상금의 규모는 국제기금의 추정피해액(5,673억)에서 국제기금 보상한도액(3,216억)을 뺀 금액인 2,45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급금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에 따른 청구인별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에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에 따른 청구인별 지급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한도초과보상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기금의 최종사정결과가 나와야 한도초과보상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피해추정액(6,000억원 내외)이 국제기금 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고, 국제기금등과의 협력계약(2차)에 따라 손해 배·보상액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대지급금에 일정부분 한도초과보상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 3-30> 한도초과보상금 중기재정 운용계획(2009.6월 기준)

(단위 : 억원)

예산 과목	한도초과보상금 산출 내역(억원)	년도별 편성 금액(억원)					비 고
		'09	'10(안)	'11(안)	'12(안)	'13(안)	
민간 경상보조 (320-01)	국제기금추정 피해액(5,673) - 국제기금보상한도액(3,216) = 2,457	437	528	600	632	260	5년간 분할집행

※ 국제기금 추정 피해액(5,673억)은 2009년 3월회의 기준임.

<표 3-31> 2009년도 한도초과보상금 예산변경내역(2009.6월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교부결정액	분기별 교부 결정액					비 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당초	추가			
당 초	437	237	100	-	100	-	
변 경	628.28	237	100	54.45	236.83	-	사업조기 집행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국제기금의 지급률에 따라 대지급금의 100%가 회수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국토해양부와 선주보험사간의 제2차 협력계약서('08.7.1) 합의문 2번에 따라 선주보험사 배상한도액(1,400억원)까지는

대지급금의 100%를 회수 가능함에 따라 대위행사 회수자금으로 수협이 대지급 원금을 상환하면 한도초과보상금 예산은 집행할 필요가 없어 불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한도초과보상금을 우선 대지급금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불용하지 않고도 추가 이자수입 발생과 더불어 이차보전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표 3-32> 이차보전 예산절감 추정액

구 분	이차보전금
수협자금으로 우선 대지급(A) * 한도초과보상금 불용	147억원×6.72%×45일/365일×12개월 =14.6억원
한도초과보상금으로 우선 대지급(B) * 한도초과보상금(437억) 우선집행(2.97월)	147억원×6.72%×45일/365일×9.03개월 =11.0억원
예산절감액(A-B)	3.6억원

※ '09년도 대지급금 1,765억원 지급(월평균 147억원), 이차보전금리 6.72%

※ 대지급금 원금회수기간 45일로 가정할 경우 한도초과보상금의 신축적 집행을 통해서 3.6억원 절감(2.97개월 이자비용 절감)

한도초과보상금을 수협중앙회에 교부하여 원금보장 및 수익률이 높은 예금 상품에 가입(MMDA/’08.12 기준금리 3.0%)하여 관리하고, 국토해양부의 대지급금 지급의뢰시 한도초과보상금 잔액 범위 내에서는 이를 우선적으로 지급토록 지시하는 경우 단기 자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1.6억원⁵³⁾의 국고수입 증대(이자발생 추정액) 효과가 있다.

이차보전예산 절감과 이자발생으로 인해 총 5.2억원(3.6억원 + 1.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2.4.4 한도초과보상금 재원 확보방안 개선

한도초과보상금은 국제기금의 사정진행에 따라 집행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상당히 유동적인 성격을 띠는 국고보조사업에 해당한다. 이와

53) 219억원×3.0%×90일/365일≒ 1.6억원(219억원 : 437억원의 2.97개월 평균잔액)

같이 집행시기가 유동성을 갖는 국고보조사업은 매년 이월·불용액이 발생하고, 이월 또는 불용액에 대한 예산의 재확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집행상의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집행 구조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도초과보상금 지원사업도 1년 단위의 단년도 결산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경직성으로 인해 피해주민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한도초과 보상금은 국제기금등의 보상한도액 초과분에 대해 정부가 전액 보상한다는 특별법상의 입법 취지와 예산의 집행시기가 유동적이고, 다년간에 걸쳐 집행해야 하는 예산집행 구조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매년 이월 및 불용을 반복하는 단년도 결산방식보다는 전체 사업기간의 예산집행 결과로 결산하는 사업기간 결산방식으로 집행하도록 한 다음,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가정산 형태의 결산으로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기존의 단 년도 결산으로 유지할 경우 매년 이월·불용, 예산의 재확보라는 악순환의 반복이 예상됨에 따라 한도초과보상금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결산방식을 사업기간 결산방식으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09.6.23).

2.5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방안

2.5.1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개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라 함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받은 자를 말한다.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수산 및 관광분야 등의 직·간접적인 피해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5.2 지원방안 연구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등과 더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을 위하여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방안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고(용역기간: 10개월), 이를 통하여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범위,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방안 등에 관한 연구”⁵⁴⁾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제2장에서는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법리와 특별법의 제정에 관한 사항⁵⁵⁾, 제3장에서는 국제기금의 보상실무에 관한 사항⁵⁶⁾, 제4장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실태에 관한 사항, 제5장에서는 업종별 손해유형과 「보상받지 못한 자」의 발생가능성 등에 관한 검토, 제6장에서는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법리 검토⁵⁷⁾, 제7장에서는 금전적 지원을 위한 「보상받지 못한 자」의 범위에 관한 검토⁵⁸⁾, 제8장에서는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의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⁵⁹⁾, 제9장에서는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의 시기 및

54) 연구기간 : 2008.10.28~2009.10.23.

연구책임자 : 구충서(정부법무공단)

공동연구책임자 : 강연실(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참여연구진 : 서규영, 문병상, 길진오, 박시준, 김승아, 손호철, 서혜진, 송미미 (이상 정부법무공단), 김병기(중앙대학교), 김대현, 양경옥, 안주열(이상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 위탁연구 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은 별책 발간.

55)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유류오염손해전보의 법적 근거, 선박소유자 등의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 국제기금의 손해배상책임, 유류오염손해전보 방법, 현행 유류오염손해전보법리의 문제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 등.

56) 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IOPC Fund)의 보상범위, 손실 또는 손해유형에 따른 개별적 보상기준, 국제기금의 유류오염사고 관련 피해조사 및 사정방법 분석 등.

57) 유류오염손해 책임법제의 대강과 문제점,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 및 성질 등.

58) 보상받지 못한 자의 요건, 구체적 업종별 ‘보상받지 못한 자’의 범위 검토, 국제기금 사정 및 법원 판결과 「보상받지 못한 자」의 범위 등.

59) 기준설정의 단계 및 유의사항, 금전적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대책위 기준금액의 설정방법, 실회해액 산정의 기준 및 조사방법, 지원범위의 기준, 국제기금 보상사례 분석이 주는 기준액 산정 방식에 대한 시사점 등.

절차, 제10장에서는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비금전적 지원 근거 및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당초에는 2009년도에 상당한 배·보상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피해주민의 청구 및 국제기금의 사정지원 등으로 보상사례가 불충분하여 보상받은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손해 배·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 하반기부터 지역별·업종별 보상사례 분석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5.3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을 위한 심사자료 확보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피해주민 중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현지조사 및 지원심사 자료 확보를 위하여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9년에는 2008년 및 2009년도에 손해 배·보상 청구자 중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 및 지원심사자료를 확보하였다.

향후 2010년, 2011년, 2012년도에 손해 배·보상 청구자 중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 및 지원 심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정부지원의 성과와 평가

3.1 민간방제비 사정·지급노력 및 성과평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가장 큰 오염사고였으며 전 서해안이 오염되었었다. 해상방제는 해양경찰청 및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보유한 방제장비 및 자재를 동원하여 완료하였으나, 해안방제는 주로 자원봉사자 및 지역주민의 맨손에 의한 방법에 의존하였다. 2007년 12월부터 수개월동안 해안방제에 참여한 지역주민은 총 2만여명(연인원 약 56만여명)에

이르렀다. 이들 지역주민의 대부분은 오염으로 조업이 제한된 어촌계 주민 및 오염지역의 식당, 숙박, 도소매업 등 생계가 어려운 피해주민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지역주민들은 자원봉사자들과는 달리 생계차원에서 민간방제업체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참여하였다. 그러나 민간방제업체의 영세성과 국제기금의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주민인건비 지급이 지연되고 자칫하면 일반 오염피해 클레임과 같이 무한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이들 지역주민들은 오염으로 인하여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었고 또한 정부의 긴급생계지원자금 및 국민성금이 지급되지 않는데다가 주민인건비마저 지급이 지연되자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고 마침내 집단적 불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주민인건비가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국제기금 및 선주보험사 그리고 민간방제업체를 설득하고 협의하면서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였는바, 그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민간방제업체에게 주민인건비를 업체의 방제비와 분리하여 조기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영세한 민간방제업체들은 수개월 동안 자신들의 방제비를 지급받지 못해 도산지경에 이르렀고, 주민인건비 문제가 부각되자 자신들의 방제비와 주민인건비를 병행·처리하려고 하였었다. 이에 정부가 긴급 용자를 통해 민간방제업체를 통해 주민인건비를 조속히 분리·청구하도록 유도한 점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된다.

둘째, 정부는 민간방제업체로 하여금 2008년 1~2월분 주민인건비를 분리·청구토록 한 다음, 선주보험사 및 국제기금으로 하여금 중간사정을 통해 조속히 사정하도록 하였다. 비록 중간사정 결과 일부지역의 불만이 있기는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국제기금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중간사정을 하기 때문에 중간사정이 최종사정보다 낮은 사정율을 보인다. 정부는 중간사정액을 대지급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청구액과 중간사정액과의 차이는 특별교부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는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특별법의 부칙을 원용한 아주 과감하고 지혜로운 전략이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인건비는 특별법이 시행('08.6.13)된 이후에 지급되었다.

셋째, 정부는 민간방제업체와 선주보험사 및 국제기금과 주민인건비의 조기 청구 및 사정을 설득·협의·유도하면서 동시에 이에 필요한 자금은 결국 정부재정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조정위원회 의결 등을 걸쳐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 두었다. 이는 주민인건비의 분리·청구와 중간사정을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정 즉시 주민 방제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주민 방제인건비는 민간방제업체의 영세성과 국제기금의 손해 배·보상체계의 한계로 지급이 무한정 지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적절한 조치로 주민 방제인건비 지급이 조기에 이루어져 사회적 동요로 이어질 수 있는 주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2008년 1~2월분과 2008년 3~6월분 주민인건비는 모두 정부예산 및 지자체 기채로 지급된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지역주민들이 해안방제에 참여한 초기부터 정부 또는 지자체가 개입하여 방제비용 보상 매뉴얼에 적합하게 방제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재원을 미리 마련하는 등 주민 방제인건비의 선 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면 주민방제인건비 지급 지연에 따른 주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향후 유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간과하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

3.2 대지급, 대부 등 손해보전지원 노력과 성과평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의 손해보전지원제도들을 수립·시행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중에서 대지급, 대부제도 등과 같은 손해보전지원제도는 국제기금의 손해 배·보상 지연으로 인해 겪고 있는 피해주민과 방제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의 지원제도들이 실제 시행됨에 있어서 일부 제도의 실효성이 다소 반감되는 측면이 있었다.

방제비 대지급제도의 경우 국제기금의 최종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잠정적인 중간 사정결과를 근거로 지급되기 때문에 방제작업 종료시점과 방제업체의 청구액에 대한 쟁점 등으로 인해 지급규모 및 지급시기에 다소 논란이 있기는 하였지만, 방제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방제작업에 참여한 피해주민의 생계곤란을 해결함과 동시에 정부의 후순위채권(SLQ)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대위청구함으로써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손해보전지원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제도의 경우 피해주민 및 대부업무를 처리하는 수협 관계자를 상대로 한 면담조사에 의하면, 맨손어업 등을 하는 영세어민과 달리 양식업 등 피해규모가 큰 어민들의 경우 대부금액이 지나치게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생계안정자금의 수준의 단기 대부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대부금의 신청시기 또한 국제기금의 사정이 6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적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가시적인 지원실적은 없지만, 용역 발주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손해 배·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개념정립, 지원기준, 범위 등을 정하여 향후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단초를 꾀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향후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는 것과 보상의 수준과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은 국제기금 등에의 손해 배·보상청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아니한 손해 배·보상청구를 유발시킨 요인으로 작용한 점도 있는 바, 향후 유사사고에 따른 특별법 제정시 제고해야 할 제도라 사료된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초기부터 별도의 예산확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업발굴과 선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기존 사업 시스템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지자체 및 피해주민의 기대감만 고조되고, 이를 실행할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시적인 사업추진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가 수립·시행한 각종 손해보전 지원제도들 중 일부 제도들이 시행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부의 문제점들로 인하여 사업추진 효과가 다소 반감되기는 하였으나, 피해보상지원단을 중심으로 피해지역 및 지자체 방문 등을 통하여 지원제도의 제·개정에 따른 설명회와 여론수렴을 거쳐 지원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의 미흡한 점과 불합리한 점을 끊임 없이 개선하고, 국제기금 및 선주보험사 등과의 협력체계구축 등을 통해 종래

유사한 유류오염사고를 겪은 다른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피해주민에 대한 손해 보전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수립·시행한 점은 12.6만 여건에 이르는 손해 배·보상 청구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 3 절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이미지 개선

1. 태안지역 해수욕장 적기 개장 지원

1.1. 추진배경 및 필요성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이후 초동 및 긴급방제의 종료시점 결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유류오염 피해 해수욕장 개장에 대한 지역 및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내에는 방제 종료시점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해수욕장 개장과 관련하여서는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해양수산부 훈령제402호, 2004. 5. 25)만 마련되어 있었다. 한편, 유류오염 피해 해수욕장의 경우 유류오염에 의한 모래사장의 유분 및 타르 존재여부, 이들의 인체 위해성 여부, 해수욕장 및 주변 공간의 심미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장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1.2 주요 지원내용 및 결과

정부는 유류오염 피해지역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태안지역 해수욕장 적기개장을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 및 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아래의 <표 3-33>은 환경복구 및 오염조사,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 등과 관련한 정부 지원현황을 요약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당시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에 포함된 기준 항목만으로 유류오염 피해 해수욕장 개장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그 동안 다년간 연구사업으로 진행 중이던 『해양환경 기준설정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내에

서 “유류피해 해수욕장 개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08.2)하였다.

<표 3-33> 정부지원현황(2009.12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직접 지원	● 환경복구·오염영향조사 등 관련 지원 - 유류오염 굴양식시설 철거사업 12,610(농식품부) - 태안어장 정밀조사 및 복원사업 998(농식품부) - 유류피해지역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2,000(농식품부) - 오염영향조사 및 해양생태계복원연구 4,663(국토부) - 유류오염사고 피해조사 지원 780(국토부) - 피해지역 자연자원정밀조사 1,500(환경부), - 환경보건센터 중장기 건강영향 조사 3,204(환경부) - 유류유출사고 단기 건강영향조사 144(환경부) - 급성기 건강영향조사 25, 태안정신보건센터 지원 151(복지부)	26,075
	● 피해지역 이미지개선 등 관련 지원 - 관광이미지개선 및 관광활성화 지원 1,795(문광부) - 장관배 바다낚시·수영대회 등 이미지개선 436(국토부) - 태안지역 경제활성화 홍보 지원 100(농식품부) -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지원 2,000(농식품부) - 태안군 피해지역 해수욕장 정비 7,100(국토부)	11,431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업무를 이관 받은 국토해양부는 해수욕장 개장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과 병행하여, 2008년 6월말(또는 7월초) 태안군 유류오염 피해 해수욕장 15개소의 전면 개장을 목표로 관계기관(충남도, 태안군, 한국해양연구원, 국립수산물과학원 등)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별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였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 마련('08.6.15)한 해수욕장 개장 가이드라인에는 “유류오염 피해 해수욕장 개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해수욕장 개장 후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이 중 해수욕장 개장 여부는 개장 관련 과학적 기준(해역별 수질기준, 인체 위해성 관련 해저퇴적물 권고기준)의 유막 존재 및 기름냄새 등 심미적 사항 등이 고려되었다.

<표 3-34> 가이드라인 기준 항목(해역 : 해수수질 기준)

해양 퇴적물	항 목	권고값(국제기준)
	TPH(총석유계탄화수소)	100 ppm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	4 ppm
관능 기준	● 해수표면에 부유성 유류가 없고, 유막이 보이지 않아야 하며,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함 ● 모래사장 및 공극수에 유막이 없고,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며, 만졌을 때 손에 기름이 묻어 나오지 않아야 함.	

※ 해역 수질기준(환경정책기본법) 및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상 항목 기준 만족

<표 3-35> 개장단계별 가이드라인

형태	가이드라인
녹색/감시	● 수표면, 공극수 및 모래사장 등에 유막이 없으며, 냄새도 없을 것 ● 단일시료에 대하여 용매추출유분 < 0.01 mg/L ● 백사장 퇴적물내 총석유계탄화수소 < 100 ppm, PAHs < 4 ppm
황색/경계	● 수표면, 공극수 및 모래사장 등에 유막 또는 냄새가 관찰 ● 0.01 mg/L < 용매추출유분 < 0.3 mg/L ● 백사장 퇴적물, 총석유계탄화수소농도가 100 ppm 초과하는 시료가 총 시료의 10%이상, PAHs < 4 ppm
적색/행동	● 수표면, 공극수 및 모래사장 등에 유막이나 유류냄새가 항상 관찰 ● 24시간 이내에 2개의 연속시료에서 용매추출유분 > 0.3 mg/L ● 백사장 퇴적물내 총석유계탄화수소 > 100 ppm, PAHs < 4 ppm

<표 3-36> 가이드라인에 따른 해수욕장 개장시 조치사항

형태	개장 여부	해수욕장 이용가능 범위	해수욕장 개장 및 조치사항
녹색/감시	개장	직접 및 간접접촉가능	1 주일단위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황색/경계	부분 개장	간접 접촉만 가능 ※ 다만 유막, 냄새 등의 해수 수질기준 만족 시에는 직접 접촉인 수영이 가능	해수욕장 위험지역 접근금지 팻말 설치 등, 오염원과 위험성, 유막 및 냄새 등에 대해 확인된 시점에서 24시간 주기로 조 사하되, 이상이 나타나지 않은 시점에서 는 1주일 단위로 조사
적색/행동	폐쇄	직접 및 간접접촉 불가능	경고(public warning), 오염원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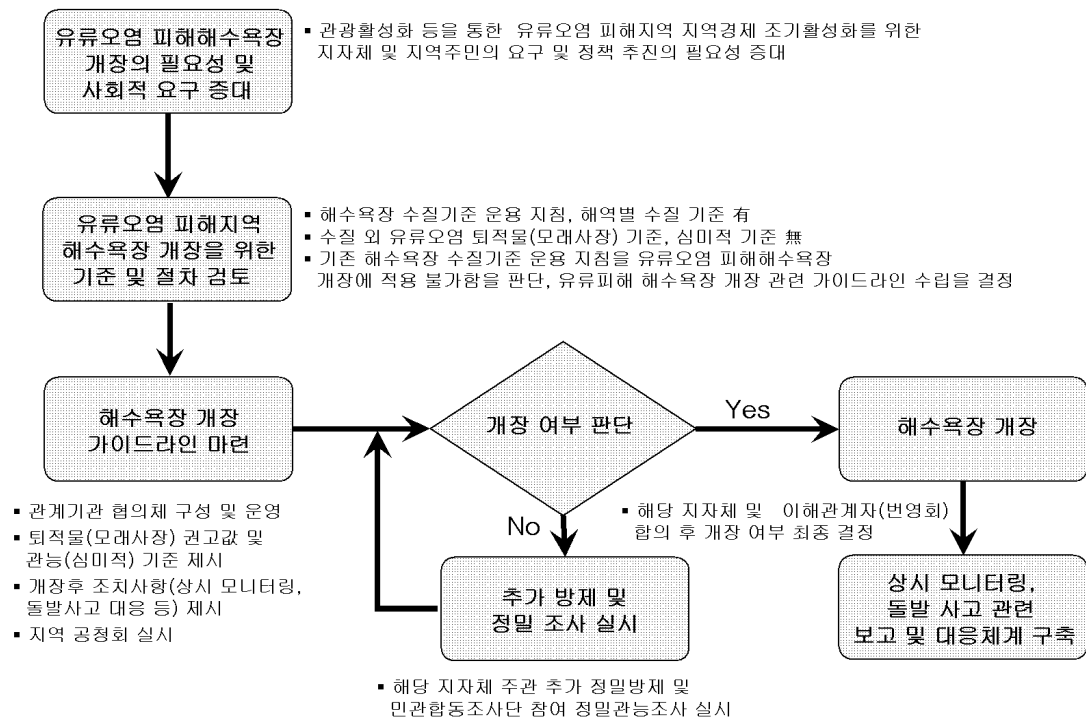
국토해양부는 해수욕장 개장을 위해 관계기관, 환경단체, 지역주민(번영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공청회를 개최('08.6.18)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공청회에서 유류오염 피해해수욕장 해수 수질 및 퇴적물 분석결과와 해수욕장 개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당시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수행한 해수 수질 및 퇴적물 분석결과('08.4월 기준)에 따르면, 유류오염 피해해수욕장 중 구름포를 제외한 14개 해수욕장에서 환경정책기본법 해역수질기준의 I등급을 만족하였다. 또한 유류오염 피해해수욕장 총 15개소의 모래사장 내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는 개장 가이드라인인 100ppm과 4ppm을 만족하였다. 그러나 충남도에서 민·관 합동조사반을 통해 실시한 1차 관능조사('08.6.9~11, 백사장 표면 유막 존재 여부, 공극수 기름냄새, 공극수 유막 색깔 등 확인) 결과, 구름포, 의항 등 9개 해수욕장 일부 구간에서 백사장 표면 유막 및 냄새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태안군은 1차 관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가 확인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구간별 집중방제를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2008년 7월 4일까지 민·관 합동조사반을 통해 문제해수욕장에 대한 추가 정밀관능조사(1차 관능조사 포함 총 5회)를 실시하였다. 지자체 및 번영회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해수욕장 개장 가이드라인과 정밀관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류오염 피해해수욕장 개장여부를 최종 결정하였다. 그 결과, 만리포 해수욕장의 개장('08.6.27)을 시작으로 유류오염 피해해수욕장 15개소 중 구름포와 의항 해수욕장을 제외한 13개 해수욕장이 전면 개장하게 되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유류오염 피해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조치사항(모니터링 및 사고 발생 대응)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08.6.24)하였으며, 충남도 및 태안군은 동 조치사항에 따른 대응계획(상황보고 체계 및 사후조치 계획)을 마련·시행하였다. 태안군(문화관광과)에서 마련한 유류오염 피해해수욕장 개장 후 필요 조치 사항에는 해수 및 퇴적물(모래사장) 모니터링, 상황별 보고체계 및 대응, 대응 매뉴얼 작성·배포, 안내판 설치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조류 및 기상 상황에 따라 인근 지역의 유분이 해수욕장으로 유입될 경우 유분 및 유막에 접촉된 해수욕장 이용자가 피부질환 등 증상을 호소할 수 있다고 판단, 관계기관(보건복지부, 환경부)에 질병발생 시 역학조사 및 응급조치 등의 대응조치 마련을 요청하였다.

반면, 13개소 해수욕장 개장과 관련하여 환경단체 등 일부에서는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무리한 개장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지역 이해관계자가 적극 동참하여 유류오염 피해지역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유류오염 피해해수욕장 개장을 추진하였다. 개장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의 과학적인 조사결과 활용, 민·관합동 조사반을 통한 정밀관능조사 실시 및 지역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개장 여부 결정, 개장 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후속계획 수립 등을 통한 일련의 조치 등이 이루어졌으며, 2008년 개장된 13개소 피해해수욕장에서 국민건강과 관련한 불편신고 사례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중앙부처의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과 관계 지자체, 전문기관, 지역 주민 등의 적극적인 협력 등을 통한 유류오염 피해해수욕장의 적시 개장을 위한 노력은 유류오염 사고 극복의 모범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태안지역 해수욕장 적기 개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노력과 해수욕장 개장 이후 정부 및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총체적인 재난극복 의지로 다양한 이벤트 등이 개최되었으나, 실제 관광객은 전년의 30% 수준에 그쳐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그림 3-3> 유류오염 피해해수욕장 개장을 위한 업무추진도

2.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2.1 추진배경 및 필요성

허베이 스프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사고발생지역 인근의 연안 생태계와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에 다양한 피해를 초래했으며, 연안환경과 지역공동체, 지역 경제가 조화를 이루며 순환하던 서해안 지역의 경제·사회적 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1차적으로는 경제적 삶의 터전인 연안 생태계 파괴로 인해 어로, 양식업, 맨손어업 등의 어업활동이 중단되어 핵심 경제활동의 타격 및 지역공동체의 균열을 가져왔고, 2차적으로는 서해안지역 전체의 이미지 훼손으로 인해, 직접적인 기름오염 피해를 입지 않은 내륙지역에서도 생산물의 판매저조, 관광객 격감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는 등 내륙지역까지 피해가 확산되었다.

특히 유류오염사고 이후 피해지역 수산물의 판매부진과 급격한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법 제11조와 제12조에 근거하여 정부의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유류오염사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어업 활동의 중단 및 양식장 등 해양생태계의 오염으로 인한 수산관련 피해,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 동 지역의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생산품의 판매부진 등에 의한 피해지역의 경기침체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2.2 대상사업 선정 경위 및 결과

2008년 9월 개최된 제2회 조정위원회에서는 특별법(제11조, 제12조)에 근거하여 지역 경제활성화 사업 지원추진(안)을 가결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

□ '08년 제2차 조정위원회 의결(지자체 건의사업 위주)

- 지자체가 건의한 271개 사업(13조8,782억원)중 39개 사업(1,791억원) 선정하여 '09.12월말까지 2,757.2억원을 투자하여 초과 지원
 - 39개 사업외 추가검토 사업 32개사업(5조2,351억원)에 1,618억원 지원
 - ※ 39개 사업 중 13개 사업과 추가검토 사업 32개 중 11개 사업이 중복

□ 피해 주민 밀착·체감형 추가 지원사업 발굴 추진(용역, 주민건의사항 위주)

- 피해 주민·피대위 면담을 통한 지원사업 발굴 : ~'09.2
 - 발굴현황 : 총 335개사업(충남 217개, 전북 73개, 전남 45개)
- 평가대상(231개) 확정, 전문가그룹 구성·평가 : ~'09.3
 - 전문가 그룹 : 총 22명(지역전문가 8명 - 충남4, 전남·북 각 2)
 - 평가방법 : 계층화 분석법(AHP)(평가기준 5개, 5점 만점)
- 추가지원 대상(111개) 확정 및 향후 추진계획 통보 : '09.3
 - 대상사업 재분류·규모화, 지자체별 정책사업(안) 마련
 - 정책사업(안) 관계부처 예산요구(안) 제출 및 협의 등
- 정책사업의 관계부처 예산요구(안) 반영 추진 : '09.4~
 - 추가지원 대상사업 관련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요청
 - 111개 선정사업 중 충남은 기존 63개 사업(2,230억원)이 선정되었으나, 시·군 의견 등을 거쳐 50개 사업(1,923억원)으로 자체 조정
 - 정책사업 관계부처 '10예산요구(안) 제출 및 반영 협의
 - 예산요구현황 : 5개 부처 98개 사업 1,495억원
 - 2010년 추가지원사업 예산 반영 현황 : 17개 사업(255억원 요청)에 90억원 반영

□ 기타 지원사업

- 2008년 특별공공근로사업 등 4,223억원
-

2.3 주요사업 추진현황

2.3.1 지자체 지원요청사업 관계기관 협의결과

2008년도 지자체가 지원 요청한 271개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결과 (<표 3-37> 참조) 수용 9건, 일부수용 29건, 중장기 검토 43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이 60건 및 여건상 수용이 곤란한 사업 등 130건이었다.

<표 3-37> 지원요청사업 협의결과 총괄 현황

(단위 : 건)

	계	수 용	일부수용	중장기	균특회계	수용불가
계	271	9	29	43	60	130
기획재정부	1	-	-	-	-	1
교육과학기술부	5	-	1	1	-	3
행정안전부	21	1	-	2	-	18
문화체육관광부	38	-	4	1	21	12
농림수산식품부	88	3	6	8	25	46
지식경제부	7	-	-	4	-	3
보건복지가족부	16	-	4	-	-	12
환 경 부	18	2	1	8	5	2
국토해양부	62	2	8	19	7	26
소방방재청	6	-	4	-	-	2
문화재청	4	1	-	-	1	2
중소기업청	5	-	1	-	1	3

<표 3-38> 수용사업 현황(9개)

검토부처	시도	시군	사 업 명	사업비 (억원)
계			9개 사업	4,545
행안·환경·노동부	충남	공통	충남지역 주민생계지원 특별공공근로	200
농식품부	충남	공통	충남지역 지방어항건설	2,468
농식품부	충남	당진군	자라양식장 단지화 조성	10
농식품부	전남	신안군	김 가공공장 현대화	1,187
환 경 부	충남	태안군	태안해안국립공원내 공중화장실 설치	10
환 경 부	전남	신안군	비위생 매립지 정비	4
국 토 부	충남	서천군	장항산단 제2진입도로 4차로 완공	351
국 토 부	충남	태안군	백사장항 해양관광자원개발	15
문화재청	충남	태안군	태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	300

※ 사업비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국비기준임

<표 3-39> 일부 수용사업 현황(29개)

검토부처	시도	시군	사 업 명
교과부	충남	공통	대학생 등록금 및 장학금 지원
문화부	충남	공통	서해안 살리기 관광광고
문화부	충남	공통	서해안 살리기 콘서트 개최
문화부	충남	공통	주요도시 게릴라식 관광홍보전 개최 등
문화부	충남	서천군	문화예술인촌 건립
농식품부	충남	공통	조업재개 유류비 지원
농식품부	충남	공통	연근해어선 구조조정
농식품부	충남	공통	2009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농식품부	충남	서천군	어업인 유류보조금 지원
농식품부	충남	홍성군	해변관광 승마타운 조성
농식품부	충남	태안군	농지구묘화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완화
복지부	충남	공통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확대지원
복지부	충남	보령시	보건기관 운영비 지원
복지부	충남	홍성군	노인·장애인 복지타운 조성(노인 관련)
복지부	충남	태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환경부	전남	신안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
국토부	충남	공통	피해지역 해양환경 정화사업
국토부	충남	공통	연안항(대천항·비인항) 개발 사업
국토부	충남	서산시	대산항 조기 건설
국토부	충남	서산시	국도 38호선(대산~가곡) 도로건설
국토부	충남	태안군	국도 32호선(태안~만리포) 확·포장
국토부	충남	당진군	석문산단 진입로 확·포장 조기개설
국토부	전남	신안군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 전국시범
국토부	전북	군산시	도서지역방문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방재청	충남	서천군	서면 도부소하천 정비
방재청	충남	홍성군	신도 소하천 정비공사
방재청	충남	홍성군	갈오 소하천 정비공사
방재청	충남	홍성군	구정 소하천 정비공사
중기청	충남	서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무료공연 지원

<표 3-40> 중장기 검토사업 현황(43개)

검토부처	시도	시군	사 업 명
교과부	충남	보령시	서해갯벌 생태과학관 건립
행안부	충남	공통	피해극복 및 자원봉사 승리기념관
행안부	충남	서산시	대산소도읍 종합육성 사업 선정
문화부	충남	공통	2010 지역 방문의 해 충남 유치
농식품부	충남	공통	굴양식 시설 현대화
농식품부	충남	공통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
농식품부	충남	태안군	안홍항 다기능어항 개발
농식품부	전남	신안군	온실가스 저감용 해조류 양식단지 조성
농식품부	전남	신안군	김양식 기자재 지원
농식품부	전북	군산시	국가어항 연도항 준설공사
농식품부	전북	부안군	위도 국가어항 정비사업 조기 시행
농식품부	전북	부안군	어업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
지경부	충남	서산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 확대지정·개발
지경부	충남	태안군	종합에너지특구 홍보관 설립
지경부	전남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및 테마파크 조성
지경부	전북	부안군	피해지역 해양관광개발 특구지정
환경부	충남	서천군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대책
환경부	충남	서천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
환경부	충남	홍성군	마을하수도 정비
환경부	충남	태안군	환경보전센터 건립
환경부	충남	태안군	태안해안국립공원 재조정 및 용도변경
환경부	충남	태안군	반계리 하수처리시설 설치
환경부	충남	태안군	고남 마을하수 처리시설
환경부	전남	신안군	농어촌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국토부	충남	보령시	대천항(관광허브항) 개발
국토부	충남	보령시	보령신항 개발
국토부	충남	서산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연장

검토부처	시도	시군	사 업 명
국토부	충남	서천군	금강생태라인~대안사업단지 연결도로 정비
국토부	충남	서천군	서해안 고속도로 봉선IC 설치
국토부	충남	홍성군	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국토부	충남	홍성군	국가지원 지방도 96호(관교~오두) 확·포장
국토부	충남	홍성군	국가지원 지방도 96호(광천IC~은하) 확·포장
국토부	충남	태안군	천안~당진간 고속도로 태안연장
국토부	충남	태안군	서해산업선 철도 건설
국토부	충남	당진군	송산산업단지 진입로 조기개설
국토부	충남	당진군	당진항 크루즈 전용터미널 및 부두건설(항만)
국토부	전남	신안군	국도 77호선(신장~복용) 도로 확장
국토부	전남	신안군	새천년대교(압해~암태) 연도교 건설
국토부	전남	신안군	다이아몬드제도 연도교 건설
국토부	전남	신안군	지도~임자간 연도교 건설
국토부	전남	신안군	압해 송공~학교간 국도 2호선 확장
국토부	전남	신안군	지도~해제간 국도 24호선 확장
국토부	전남	신안군	송공항 연안항 개발

〈표 3-4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 현황(60개)

검토부처	시도	시군	사 업 명
문화부	충남	서산시	별천포항 관광지 개발
문화부	충남	서산시	팔봉산·구도항·고파도 연계관광지 개발
문화부	충남	서천군	스포츠테마파크 조성
문화부	충남	홍성군	천수만권역 관광시설 확충
문화부	충남	태안군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문화부	충남	태안군	군립도서관 신축
문화부	충남	태안군	이원호 주변 관광지 조성
문화부	충남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문화부	충남	당진군	삼교호 관광지 생활체육공원 조성
문화부	충남	당진군	삼교호관광지 해안관광도로 개설
문화부	충남	당진군	난지도 관광지 해안도로 개설
문화부	충남	당진군	서해대교앞 전망분수대 설치

검토부처	시도	시군	사 업 명
문화부	충남	당진군	왜목선착장 진입도로 개설
문화부	충남	당진군	왜목관광지 상징조형물 설치
문화부	충남	당진군	왜목관광지 조망루 설치
문화부	충남	당진군	왜목관광지 주변조성
문화부	전남	영광군	백수해안 위락시설단지 조성
문화부	전남	영광군	백수해안도로 친수공간 조성
문화부	전남	신안군	다이아몬드제도 해양관광자원화
문화부	전남	신안군	홍도2구 마을복원 및 재정비
문화부	전북	부안군	진서 해양예술공원 조성
농식품부	충남	공통	청정해양수산 복합단지 건설
농식품부	충남	공통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농식품부	충남	서산시	양식어장 정화
농식품부	충남	서천군	김가공 특화단지시설 지원
농식품부	충남	서천군	수산물 판매촉진 및 활성화
농식품부	충남	홍성군	하춘지구 배수개선
농식품부	충남	홍성군	기계화 경작로 포장
농식품부	충남	태안군	수산자원 육성센터 신축
농식품부	충남	당진군	대호간척지내 경작로 확·포장
농식품부	전남	영광군	백수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식품부	전남	영광군	간척지 패류양식장 복원
농식품부	전남	영광군	수산종묘(종패) 방류
농식품부	전남	영광군	법성포 수산물위판장 활성화
농식품부	전남	영광군	염산 설도항 젓갈타운 및 회센터 건립
농식품부	전남	영광군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 타워시설
농식품부	전남	신안군	신안특산물 종합물류센터 조성
농식품부	전남	신안군	권역별 명품 수산물 가공육성
농식품부	전남	신안군	닷자망 어구 지원
농식품부	전남	신안군	육상채묘장 및 냉동망 보급
농식품부	전북	군산시	수산종묘 방류
농식품부	전북	군산시	어장환경개선
농식품부	전북	부안군	수산자원 조성
농식품부	전북	부안군	수산물종합판매·유통단지 조성

검토부처	시도	시군	사 업 명
농식품부	전북	고창군	수산물 산지유통·판매장 건립
농식품부	전북	고창군	수산물 산지유통·판매장 건립
농식품부	전북	고창군	양식어장(공유수면) 저질개선 정화
환경부	충남	서산시	대산읍 오지·옹도리 상수도시설 확충
환경부	충남	서산시	인지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환경부	충남	서천군	종천, 서면 지방상수도 확충
환경부	충남	홍성군	농어촌 상수도(금마) 신설
환경부	전남	신안군	국제 철새공원조성
국토부	충남	서산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간월도 관광도로)
국토부	충남	홍성군	대판천 하도 준설
국토부	충남	홍성군	판교천 하도 준설
국토부	충남	태안군	해양수족관 조성
국토부	전남	영광군	계마 해양레포츠단지 조성
국토부	전남	영광군	칠산바다 청소년 바다체험장 조성
국토부	전북	부안군	위도 해양랜드 조성
문화재청	전남	무안군	무안 해저유물 사적기념전시관 건립
중기청	충남	서천군	장항재래시장 현대화

2.3.2 제2차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39개 사업

2008년도 제2차 조정위원회에서 지자체에서 건의한 271개 사업중 심의·의결된 39개 사업과 이에 대한 2008년도 및 2009년도 추진실적은 <표 3-42>와 같다.

<표 3-42> 조정위원회 심의·의결사업(39개) 추진실적

연번	부 처	사 업 명	지원예산	
			'08	'09
	합 계	39개 사업(당초계획 1,791억)	1,357.1	1,400.1
<충남도> 33개 사업			1,337.1	1,356.1
1	문광부	충남 서해안 살리기 관광광고	2	-
2	문광부	충남 서해안 살리기 콘서트	2	-

연번	부 처	사 업 명	지 원 예 산	
			'08	'09
3	문화부	충남 주요도시 게릴라식 관광홍보전 개최 등	4	14
4	농식품부	충남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추경-특별지원)	223	105
5	농식품부	홍성 해변관광 승마타운 조성	-	3.4
6	복지부	보령지역 보건기관 시설개선 등 지원		5.1
7	복지부	홍성 노인·장애인 복지타운 조성(노인)	5.3	6.1
8	복지부	충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확대 지원	0.4	2
9	환경부	환경보건센터 건립·운영	31	10
10	국토부	보령시 대천항 연안항 개발	-	12
11	국토부	보령신항 개발	-	-
12	국토부	서산시 국도 38호선(대산-가곡) 도로건설	250	625
13	국토부	서산시 대산항 조기 건설	280	389
14	국토부	서천군 비인항 연안항 개발	16	66.4
15	국토부	서천군 장항산단 제2진입도로 4차로 완공	352	-
16	국토부	태안군 국도 32호선(태안-만리포) 확·포장	실시설계	실시설계
17	행안·환경·노동	충남 피해지역 생계지원 특별공공근로사업	155	-
18	농식품부	2009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개최지원		20
19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차장등 기반시설 설치		41
20	국토부	충남 피해지역 해양환경 정화	16.4	26.1
21	국토부	당진군 석문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		31
<전남·북도> 6개사업			20	40
22	환경부	신안군 매립지 정비		4
23	환경부	신안군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 설치		13.5
24	환경부	신안군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20	26
25	국토부	신안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시범)**		-
26	국토부	군산 도서지역방문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		0.5

※  음영부분은 '08년도, '09년도 지원사업 중 중복사업(13개)을 표기함

※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신안해양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은 '10년도 설계비 8억원 등 '12년까지 2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2.3.3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추가 검토 32개 사업

2008년도 지자체 지원요청 사업 271개 사업중 심의·의결된 39개 사업을 제외한 추가 검토 32개 사업에 대한 추가검토 필요사업 총괄현황 및 추진실적은 <표 3-43>, <표 3-44>와 같다.

<표 3-43> 2009년도 추가검토사업 총괄현황

구분	합계	충 남(26개)							전 남(3개)			전 북(3개)	
		공통	태안	보령	서산	홍성	서천	당진	신안	무안	영광	군산	부안
사업수	32	9	7	1	2	3	2	2	3	-	-	1	2

※ 부처별 사업 : 교과부(1개), 문화부(2개), 농식품부(9개), 복지부(2개), 환경부(4개), 국토부(14개)

※ 세부사업의 ‘사업규모’는 지자체에서 요구한 (추정)금액이므로 예산반영시 별도검토

<표 3-44> 32개 사업 추진실적

연번	관계부처	사 업 명	요구 사업비	지원예산	
				'08	'09
	계	32개 사업	52,351	719.5	898.2
1	교과부	충남지역 대학생 등록금 및 장학금 지원	-	공문	
2	문화부	충남 주요도시 게릴라식 관광홍보전 개최 등	18	4	14
3	문화부	충남지역 서해안살리기 콘서트 개최	10	2	
4	농식품부	충남지역 굴양식시설 현대화	25		
5	농식품부	신안군 김양식 기자재 지원	105		
6	농식품부	서천군 어업인 유류보조금 지원	325	0.6	
7	농식품부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	18	10.8	6.5
8	농식품부	조업재개 유류비 지원	40.4	7.8	
9	농식품부	부안군 위도 국가어항 정비 사업 조기시행	83		20
10	농식품부	태안군 안흥항 다기능어항 개발	161	8.8	
11	농식품부	피해지역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	500	164.7	84
12	농식품부	충남지역 연근해어선 구조조정	130.8	223	105
13	복지부	충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확대 지원	10.7	0.4	2
14	복지부	보령시 보건기관운영비 지원	25	-	5.1

연번	관계부처	사 업 명	요구 사업비	지 원 예 산	
				'08	'09
15	환경부	태안군 환경보건센터 건립	200	31	10
16	환경부	서천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	187		
17	환경부	태안군 반계리 하수처리시설 설치	61.6		
18	환경부	태안군 고남 마을하수처리 시설	28		
19	국토부	태안군 국도 32호선 (태안~만리포) 확·포장	1,819	실시설계	실시설계
20	국토부	서산시 국도 38호선 (대산~가곡) 도로건설	50	250	625
21	국토부	충남 피해지역 해양환경정화 사업	6,000	16.4	26.1
22	국토부	신안군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 전국시범	3,172		
23	국토부	군산시 도서지역 방문관광객 편의시설 설치	214.2		0.5
24	국토부	서산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연장	10		
25	국토부	홍성군 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1,600		
26	국토부	홍성군 국가지원 지방도 96호 (판교~오두) 확포장	269.5		
27	국토부	홍성군 국가지원 지방도 96호(광천IC~은하) 확·포장	850		
28	국토부	태안군 천안-당진간 고속도로 태안연장	231		
29	국토부	태안군 서해산업선 철도건설	29,422		
30	국토부	당진군 송산산업단지 진입로 조기개설	4,520		
31	국토부	당진군 석문산단 진입로 확·포장 조기개설	1,969		
32	국토부	신안군 지도~임자간 연도교 건설(국도 24호선)	296		

※  음영부분은 '08년도, '09년도 지원사업 중 중복사업(11개) 표기

2.4 추가 지원사업 발굴

2.4.1 주민 밀착형 추가 지원사업 발굴(용역)

기존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들은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업위주로 선정하고 제2차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해 온 사업들로 기존의 인프라 구축 및 개선사업,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이후 발굴 추진한 홍보성 사업이 대부분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주민에게 직·간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주민 밀착형 사업 발굴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였다.

<연구용역 개요>

-
- 계약기간 : '08.10.31~'09.3.27(5개월, 정부법무공단·한국해양대학)
 - ※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방안 등에 관한 용역' 세부추진과제 위탁
 - 용역수행기관 : 한국해양대학교(국제해양문제연구소)[참여: KMI]
 - 주요 내용 : 지원기준(안) 마련 및 외국사례 분석, 주민·피대위 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발굴 및 유형별 효과분석
-

<추진경위>

-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추진현황 알림 : '08.11.14.
- 주민·피대위 면담 등 제안사업 의견수렴('08.12~'09.2)
- 의견수렴 결과 통보 및 지역전문가 추천 요청('09.2.5)
 - 제안사업 설명자료, 지역전문가 8명(충남 4, 전북 2, 전남 2)
- 전문가 그룹 구성 및 평가기준(안) 마련('09.2~'09.3)
 - 전문가 그룹(총22명), 평가기준(피해지역 주민연계성 등 5개) 마련
- 전문가 평가협조 요청 및 전문가 평가('09.2.26~3.12)
- 평가결과 및 선정사업 추진계획 설명회 개최('09.3.18~3.24)

2.4.2 주민 밀착형 추가지원 대상사업 선정 결과

추가지원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먼저 현지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발굴된 총 335개의 사업(충남 217개, 전북 73개, 전남 45개)들 중 중복과 계속사업 104개를 제외한 231개 사업을 1차적으로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1차 검증된 231개 사업을 사업별로 수산분야(79개), 관광분야(51개), SOC분야(68개), 기타분야(33개)로 그룹화하였고, 최종적으로 사업별로 분류된 1차 검증사업을 평가대상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계층화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 AHP⁶⁰)을 활용하여 전문가⁶¹평가를 실시하여 2차 검증결과 총231개 사업 중 5점 만점에 평가점수 3.00 이상에 해당

60) 평가방법 : 계층화 분석법(AHP)(평가기준 5개, 5점 만점)

61) 전문가 그룹 : 총 22명으로 구성됨(7개 연구기관 연구원 12명, 5개 대학교수 10명)

하는 111개 사업(충남 63, 전북 28, 전남 20)이 최종 선정되었다.⁶²⁾

2.4.3 2010년도 예산 반영

5개 부처 총 98개 사업에 1,495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17개 사업(255억원)에 90억원이 예산 반영되었다.

<표 3-45> 2010년도 예산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10년 요구(안)	'10년 반영예산
총 계		17개 사업	72,775	25,464	8,973
<충남 계> 9개 사업			52,875	16,064	5,755
농식품부	보령시(2)	삼시도·고대도 양식장 조성	10,000	2,000	600
		어항시설 보강(무창포 및 보령관내 어항)	11,550	3,459	1,200
	당진군(2)	수산물 판매장 신축	2,000	2,000	900
		내수면 자원조성(종묘매입방류)	1,500	300	100
	태안군(1)	종패살포(전복, 바지락, 가무락) 및 전북진주양식<어장환경복원>	1,225	405	100
	홍성군(1)	바지락 종패살포 및 양식장환경개선	10,000	2,000	80
환경부	태안군(2)	유류오염지역 환경복원 촉진사업 추진	5,000	2,500	600
		피해지역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7,600	2,000	2,000
국토부	당진군(1)	안섬포구 친수 연안정비사업	4,000	1,400	175
<전남 계> 5개 사업			17,800	7,800	1,338
농식품부	무안군(2)	양식어장관리<해양환경정화>	300	300	80
		수산종묘관리<우량수산종묘방류>	2,500	500	64
	영광군(2)	수산종묘관리<수산종묘(종패)방류사업>	3,000	1,000	74
		수산물유통판매시설지원(젓갈타운 조성)	10,000	5,000	1,000
	신안군(1)	양식어장관리	2,000	1,000	120
<전북 계> 3개 사업			2,100	1,600	1,880
농식품부	군산시	수산종묘관리<전북,해삼,바지락 종패살포>	400	400	80
	부안군(2)	수산종묘관리<연안지역 종패살포사업>	700	700	100
		수산유통시설건립(젓갈타운 조성)	1,000	500	1,700

62) 총괄현황, 내용별 선정현황, 세부사업별 선정현황 등은 연구용역보고서를 참조.

분야별 선정사업은 수산분야 65개, 관광분야 20개, SOC분야 21개 및 기타 5개 사업.

2.5 시사점 및 향후과제

정부는 2008년 9월 개최된 제2회 조정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지원 추진(안)을 가결한 이후 2008년, 2009년, 그리고 추가지원 사업 발굴까지 피해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2008년도 지자체 건의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예산편성체계(균특, 국고보조)와 무관하게 사고관련 전액(100%)의 국비 지원요청(지방비 분담액 삭감)이 대다수를 차지함으로써 국비 지원체계상 피해지역(3개도) 전체에 대한 특별지원이 곤란하였고, 다른 지역 지원사업과 형평성 등 예산편성 체계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또한 2009년도 추가사업 선정시에는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는 바, 이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선정된 사업이 정부정책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주민 밀착·체감형 사업의 경우 대부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72%)이 많아 지자체 예산 편성의 어려움은 물론, 피해지역 시·군의 경우 지원조건 등 예산체계와 무관하게 사고관련 관계부처의 전액(100%) 국비 지원을 요구함에 따라 정부의 제한된 재원운용과 정책 우선순위 등으로 신규사업 편성 및 기존사업 예산확대의 어려움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자체 정책사업(안)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예산협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주민에게 밀착·체감 사업에 대한 추가 협의 등을 통해 특별 지원이 필요한 몇 개의 특정사업에 집중하여 특별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향후 특별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함께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 동서남해안권발전 기본계획 등의 예시와 같이 각종 법령에 의한 중앙정부의 중장기 개발계획 또는 기본계획 수립시 적극적인 참여로 피해지역 관련 지원사업을 우선순위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2008년 관계부처 합동 특별공공근로사업(153억원)과 2009년 희망근로사업(2,053억원) 등과 같이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각종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 추진

3.1 태안국제바다수영대회

3.1.1 추진경위 및 목적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태안 해안국립공원이 심각하게 오염됨에 따라, 생 활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생계위협에 직면해 있었으며, 수산업과 관광업에 의 존하던 태안지역의 경제도 침체 위기를 맞게 되어 따라 피해주민들의 경제 적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이미지 개선사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특별법(제12조)상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바다수영(OWS)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태안 해역의 청정성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해양관광의 증진을 통해 지역경 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양스포츠 바다수영대회 정착 및 국제화를 위한 기 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3.1.2 대회의 개요 및 내용

태안 해역에서 바다수영 대회를 개최하고, 연차적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하 여 지속적으로 발전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해양관광을 증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태안을 한국 바다수영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장관배 태안국제바다수영대회의 취지였다.

바다수영은 태안 해역이 오염으로부터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홍보수단이며, 국토해양부의 해양레저·스포츠 진흥 과 해양관광 활성화 시책과 부합되는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다.

-
- 일시 : 2008년 7월 12일(토) ~ 13일(일)
 - 장소 :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
 - 주최/주관 : (사)한국바다수영협회/(사)대한수영연맹
 - 행사내용 : 개인전·단체전 바다수영, 서해안 수산물시식회 등 부대행사
-

태안국제바다수영대회는 개인전(남·녀, 3.2km, 500m)과 단체전(200m × 4명 릴레이)으로 구성하였고, 참가자격은 (사)한국바다수영협회 회원 또는 등록선수, 심신이 모두 건강한 자로서 정기적으로 수영연습을 하고 있는 자,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자) 또는 70세 이상인 자는 보호자 또는 친족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시상 및 특전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상과 참가자에 대한 특전으로 모든 환영자에게는 환영증을 수여하였다. 참고로 2009년도 행사는 행사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당일 기상악화로 취소되었다.



<그림 3-4> 바다수영대회 현장모습

3.1.3 태안국제바다수영대회의 성과

국토해양부장관, 지역 국회의원, 해양경찰청장, 충남도 행정부지사, 태안군수, 해양문화재단이사장 등 1,00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그리고 대회 선수로 220명이 참여 하였으며, 국토해양부장관상 13점(상장번호 제150호-163호)이 수여되었다.

<표 3-46> 태안국제바다수영대회 시상 내역

구 분			대상자	인 원	시상내역	비 고
개인전 (부문별 남녀)	3.2km	고등부	1위~3위	6명	국토해양부 장관상	상장, 상패, 소정의 부상
		일반부	1위~3위	6명		
	500m	초등부	1위~3위	6명		
		중등부	1위~3위	6명		
단 체 전			1위~3위	3팀 12명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오염피해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를 순화시키고 청정해역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홍보하는 효과를 가져 왔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다수영을 대표적인 전국민 참여형 해양스포츠로 육성·발전시키고 국제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하였고, 국민들에게 해양환경보호 및 해양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해양사상을 홍보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비치발리볼 대회(8명, 수원시청 여자선수), 태안복원 기원제(녹색습지교육원 주관 70여명이 솟대 세우기, 소원지 매달기, 사물놀이, 갯벌 노래공연, 세밀화 전시 등 개최), 해양사진 전시회(제3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당선작을 전시하여 1,000여명이 관람), 서해안 수산물 시식회(태안군 직능사회단체협의회 주관하에 광어, 우럭, 해삼, 전복 등 서해안 수산물 시식) 등과 같은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하였다.

3.2 국토해양부장관배 바다낚시대회

3.2.1 추진배경과 목적

태안 앞바다에서 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유류오염사고 1주년을 맞아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지역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태안지역이 ‘살아 숨 쉬는 기적의 현장’으로 되살아났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오염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안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한편,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바다낚시라는 해양레저·스포츠를 진흥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바다낚시대회는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 중의 하나인 태안의 모항항에서 출조하였으며, 낚시어선과 미끼, 지원인력은 모항항을 비롯한 파도리, 의항리 등 주변에서 조달하였고, 지역특산물을 상품과 기념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접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3.2.2 대회 개요와 진행방법

- 장소: 태안군 해역(유류오염사고현장, 만리포 북서방 8km 해상)
 - 유류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모항에서 출조 및 시상식 개최
- 주관: 한국낚시채널 FTV
- 제1회 국토해양부장관배 바다낚시 대회
 - 접수방법: 낚시채널(인터넷 및 전화), 전국 지정 낚시점
 - 일시: 2008년 12월 13일(토) 03:30 ~ 16:00
 - 참석인원 : 450명(선박 40척, 1척당 선수 10명, 감독관(현지주민) 1명 승선)

시 간	내 용	비 고
03:30~05:30	참가선수 등록	아침식사 제공(도시락)
05:30~06:00	안전교육 및 출항 준비	어선별 승선자 결정
06:00~07:00	승선 및 출항	감독관
07:00~13:00	낚시대회 진행	현장계측(감독관)
13:00~14:00	대회 종료 및 귀항	감독관
14:00~15:00	계측 및 집계	계측결과 집계(현장요원)
15:00~16:30	시상식	물류항만실장

- 제2회 국토해양부장관배 바다낚시 대회
 - 접수방법: 낚시채널(인터넷 및 전화), 전국 지정 낚시점
 - 일시: 2009년 10월 10일(토) 03:30 ~ 16:30(제2회)
 - 참석인원 : 600명(선박 50척, 1척당 선수 10명, 감독관(현지주민) 1명 승선)

시 간	내 용	비 고
03:30~05:30	참가선수 등록	FTV 스태프
05:30~06:00	안전교육 및 출항 준비	감독관 대표
06:00~07:00	승선 및 출항	감독관
07:00~13:00	낙시대회 진행	감독관
13:00~14:00	대회 종료 및 귀항	감독관
14:00~15:00	계측 및 집계	감독관 대표, FTV 스태프
15:00~15:50	레크레이션	전문 MC
15:50~16:30	시상식	사회자

- 참가자 다수인에게 <표 3-47>과 같이 수상기회 제공(160명)
- 본상(우럭 2마리 합계 길이), 기타 선박별·어종별 최대어상 등
 - 상장은 물류항만실장이 수여하고, 장관 축하 영상 방영

<표 3-47> 낙시대회 시상내용

구 분		시 상 내 용	어 종	기 준	비 고
국토 해양부 장관상	1등	상장·부상(300만원 상당)	조피볼락	2마리 길이 합계	길이 동일시 연장자 우선
	2등	상장·부상(200만원 상당)			
	3등	상장·부상(100만원 상당)			
선단별 순위시상	1등	부상(10만원 상당 상품)	조피볼락	2마리 길이 합계	길이 동일시 연장자 우선
	2등	부상(5만원 상당 상품)			
	3등	부상(3만원 상당 상품)			
특 별 부 문 시 상	자연보호상	부상(5만원 상당 상품)	-	-	대회위원장이 별도기준 마련
	최고령상	부상(10만원 상당 상품)	-	-	
	최연소상	부상(5만원 상당 상품)	-	-	
	숙녀상	부상(5만원 상당 상품)	-	-	
	어종특별상	부상(5만원 상당 상품)	광어, 농어 장대	최대어 1마리 길이	어종별 1명



<그림 3-5> 바다낚시 대회 시상식 전경

3.2.3 바다낚시대회 성과와 과제

바다낚시대회를 통해 지역특산품을 상품 및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대회에 필요한 낚시어선, 지원인력 등을 현지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태안지역만의 낚시 대회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낚시전문채널인 낚시티브이(FTV)를 통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파워인터뷰, 스포츠광고, 자막광고)하여 진행하였다.

대회 우승자에게는 국토해양부장관상과 함께 300만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되었으며, 그 밖에 최대어상, 최다어상, 선단별 최대어상, 자연보호상, 최고령상, 최연소상, 숙녀상, 어종별 특별상 등 많은 상이 주어졌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태안 특산 수산물이 기념품으로 제공되었다.

국토해양부장관배 바다낚시대회를 계기로 해양레저·스포츠의 발전이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낚시공원, 해양 복합레저 공간 조성과 같은 바다낚시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3.3 태안비치 골프대회

3.3.1 추진경위 및 대회 개요

해수욕장을 이용한 특이한 골프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최하였다. 또한 골프는 골프장에서만 한다는 고정관념을 타파하여 국내·외적 관심을 유도하고, 골프를 통해 피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부여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 기간 / 장소 : '09. 6. 22 ~ 6. 27 / 태안군 일원 18개 해수욕장 및 각급 학교
- 내용 : 비치골프대회, 갯벌골프 이벤트, 골프교실, 콘서트
18개 해수욕장(각 1개 홀)을 이용한 이색 골프대회
- 참가예상자 : 36팀(주민 6, 연합회 24, 연예인 3, 스포츠스타 3) 등 144명
- 주최·주관 : SBS 골프, 중앙일보·국민생활체육 전국골프연합회
- 소요예산 : 2억원(자체조달)

<표 3-48> 행사명 및 행사내용

행 사 명	내 용	예상 참가인원
비치골프대회 (09.6.26~27)	18개 해수욕장을 선정하여 1개 해수욕장에 1개 홀을 조성(총 18홀)하고, 정규 골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	72명(동호인, 연예인, 스포츠스타,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외국인 등)
갯벌골프 이벤트 (09.6.22~23)	장타대회, 벙커샷대회, 니어핀대회	1,000명
골프교실 (09.6.24~25)	지역주민과 청소년에게 골프기초지식 및 기능 전수	400명 (주민, 초·중고 학생)
콘서트 (09.6.26)	지역주민 위안을 위한 음악콘서트	3,000명 (지역주민)

이와 같은 비치골프대회를 개최하여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참가자의 제반 부대비용(숙식비·유흥비 등), 운영비(택시 임차비 등), 시설비(대회장 조성비 등) 등 약 5억원이었으며, 간접 효과는 세계적 관심 촉발로 국내·외적 홍보효과, 농수산물 소비촉진, 새로운 관광수요의 창출 등 약 50억원이상 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3.3.2 행사 지원내용

태안군과 생활체육 전국골프연합회는 국토해양부에 태안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비치골프대회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09.4.27)을 하였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태안의 자연환경(32개 해수욕장과 모래질의 넓은 갯벌 보유)을 이용하여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상품으로 육성 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히 비치골프대회는 세계적으로 태안에서만 가능한 행사로 독특한 경험제공, 지역 특성을 살린 창의적 아이디어로 이벤트의 성공조건이 충족되어 다른 분야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되어 지원을 결정하였다.

게다가 유류오염사고로 야기된 부정적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토해양부가 피해지역 경제회복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서해안 명품 브랜드화 사업'에 가장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국토해양부는 태안군의 참여로 민원가능성이 희박하고, 자연 상태의 해수욕장 이용으로 환경훼손 우려가 적으며, 자체 비용조달로 예산지원이 불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비치골프대회를 적극 후원하고 지원하였다. 주요지원내용은 대회 후원, 국토해양부장관 상장 3매 수여, 장관 축하, 홍보 등이었다.

3.3.3 비치골프대회의 성과와 과제

연예인 및 체육인 등 명사초청 비치골프대회 결과, 12개 팀이 2개조로 나누어 9개 해수욕장 18홀에서 개최되었다. 자연특성을 이용한 이색 이벤트로 지역의 관심과 언론의 호응이 좋아 명품 관광 상품으로의 육성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지역주민들도 행사에 적극 협조한 이미지개선 모범사례로 할 만하였다.

그러나 현지 상황과 준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초 기획안과 달리 실제 행사내용은 약간 축소·실시되었다.⁶³⁾ 이는 재정지원 및 스폰서 확보 문제, 일정 촉박으로 인한 홍보부족,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으로 인한 개최 시기 지연 등에 그 원인이 있었다.

63) 18개 해수욕장 18홀에서 9개 해수욕장 18홀, 1라운드 18홀에서 하프 라운드 9홀, 18팀 18홀 동시라운드방식에서 12팀 4개조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따라서 비치골프대회의 개선 및 향후 과제로서 첫째, 안전문제 등으로 인하여 해수욕장 개장 전(4~6월초)의 주중으로 시기를 조정하고, 예산지원 방안 강구 및 스폰서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언론의 관심과 지역민의 호응을 연계하여 세계적인 명품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치밀한 기획 및 준비와 함께 골프 채널 등을 통한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행사방법 개발(1개 해수욕장 18홀, 18개 해수욕장 18홀, 2일간 2라운드 등) 등 대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4 명품브랜드 사업

3.4.1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명품 브랜드화 사업이란 갯벌에서 개최 가능한 이벤트를 발굴·시행하고 육성·발전시켜, 지역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 항구적인 해양관광 증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기존 자치단체의 성공 브랜드 사례로서는 보령 머드 축제, 함평 나비 축제 등이 있다.

국토해양부가 명품브랜드 사업을 추진한 배경 및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고 후 1년간 다양한 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방문객 저조현상(2008년 태안지역 해수욕장 이용객은 전년도의 14%에 불과하였음)은 여전하였기 때문에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이미지 개선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서해안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 항구적인 관광객 유치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갯벌의 이용과 보전을 통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훼손된 피해지역의 이미지를 원상회복하는 한편, 갯벌과 바다에 대한 친숙도 제고를 통한 바다사랑 및 해양사상 고취 등을 위해 추진하였다.

이러한 명품 브랜드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브랜드화가 가능한 이벤트를 발굴·시행하였는데, 일차적으로 5~10개 정도의 사업을 선정하여 행사비용 일부를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고, 평가를 거쳐 3~4개로 압축하여 장기적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대표상품(명품 브랜드)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3.4.2 명품브랜드 사업 추진개요

사업추진 주체는 국토해양부·지방자치단체·체육단체 등이며, 필요시 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참여를 요청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사업 추진기간은 우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으로 하고, 2013년 이후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되 필요시 국토해양부가 예산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기로 하였다.

명품브랜드 사업의 개최지는 서해안 유류오염 피해지역(3도 3시 9군) 해수욕장(갯벌)으로 하였으며, 피해지역 시·군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다. 명품브랜드 대상사업은 갯벌에서 개최 가능한 스포츠 행사 중 지역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행사(축구, 골프, 승마, 배구,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풋살, 궁도, 바다수영, 핀수영, MTB 대회 등)로 하였다.

대상사업의 선정은 사업의 특이성, 대중성, 행사의 용이성, 파급효과, 소요비용, 지역정서, 환경훼손 정도, 재미,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와 지자체가 협의하기로 하였다.

명품브랜드 사업은 각 사업별로 기업, 방송사, 신문사와의 연계,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별로 1개 행사 참여 독려(후원, 협찬 등), 해수욕장 자매결연 등을 통해 기업, 미디어 등의 동참 및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행사명칭은 ‘국토해양부장관배’ 또는 ‘자치단체장배’와 함께 ‘갯벌’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대회 개최시 갯벌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지역 집중 억제, 매년 행사지역 변경, 행사 전후의 생태계조사 실시 및 공표, 환경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행사 동참 유도 등 행사 자체의 이미지 관리에도 노력을 했다.

소요예산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은 국토해양부·지자체가 각각 매년 소요예산을 확보하기로 하였으며(2009년 1억원, 2010년 3억원, 2011년 3억원, 2012년 2억원), 2013년부터는 지자체가 매년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필요시 국토해양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3.4.3 2009년도 사업선정 계획 및 선정결과

사업선정 기본원칙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5개 이내의 사업을 선정(충남 3, 전남 1, 전북 1)하도록 하였으며, 선정기준은 사업취지 부합 여부(3점), 소요 예산 확보 여부(3점),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보 여부(2점), 주민참여 및 관 심도(1점), 환경훼손 최소화 대책(1점) 등으로 하였다.

사업계획서 제출자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장 명으로 하되, 주관 체육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동 단체장의 대회주관 확인서를 첨부하여 2009년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국토해양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지원 단 지원기획팀으로 사업계획서 5부를 제출·접수하도록 하였다.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은 일반 제안서 형식 또는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작성(A4 기준)하되,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명, 개최시기, 개최장소, 행사내용(종 목, 참가예상자수 등) 및 운영방법, 소요예산 및 확보계획(사업당 국비 2천만 원 지원 및 동일액의 지방비 확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계획(친절, 자원봉사, 청결·위생수준, 바가지요금 근절 등),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현황(행사 장, 주차·숙식 등 부대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 다른 대회 및 행사와의 차별화 전략, 환경훼손 최소화 대책(환경단체와의 협조 관계 등), 사업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2009년 서해안 명품 브랜드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09.2.3)하고, 모집공고(2.10)를 한 다음 사업신청(3.2~3.4)을 받았다. 사업신청 모집결과 신청한 사업이 계획 정수 이내였고, 모두 사업계획에 부합하여 아래와 같이 서해안 명품 브랜드화 사업을 선정하였다.

<표 3-49>에서 보듯이 2009년도 명품브랜드화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충남 태안 세계 민속궁 대축전, 충남 서천 비치사커 대회, 전북 고창 갯벌스포츠 축제, 전남 갯벌마라톤 축제 등으로 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표 3-49> 2009년도 선정사업의 개요 및 소요예산

사업명	사업 개요	소요예산
국토해양부장관배 제3회 세계민속궁 대축전 (충남 태안군)	- 시기 : '09.9.11~16(6일간) - 장소 : 만리포해수욕장 일원 - 행사내용 : 궁도행사, 전시체험, 특별행사 - 주최·주관 : 생체협/생활체육 전국 궁도연합회 - 참가예상인원 : 4,500명(선수 400명) - 경제효과 : 2억원	154백만원 - 국토해양부 20 - 문광부 100 - 태안군 30 - 궁도연합회 4
서천군수배 춘장대해수욕장 비치사커대회 (충남 서천군)	- 일시 : '09.7.4~5(2일간) - 장소 : 춘장대해수욕장 - 행사내용 : 생활체육 클럽축구대회 - 주최·주관 : 서천군·생체 서천군 축구연합회 - 참가인원 : 3,380명(선수 16팀) - 경제효과 : 5억원	50백만원 - 국토해양부 20 - 서천군 20 - 지역협찬 10
고창군수배 전국갯벌스포츠축제 (전북 고창군)	- 일시 : '09.9.12(1일간) - 장소 : 심원면 만돌 갯벌체험장 - 행사내용 : 갯벌달리기, 모터패러글라이딩 - 주최/주관 : 고창군 - 참가인원 : 2,000명(선수 1,600명) - 경제효과 : 2.6억원	40백만원 - 국토해양부 20 - 고창군 20
영광군수배 영광갯벌마라톤축제 (전남 영광군)	- 일시 : '09.7.25~26(2일간) - 장소 : 연산면 두우리 갯벌 - 행사내용 : 갯벌단축마라톤, 갯벌이벤트 - 주최/주관 : 영광군 생체협/추진위원회 - 참가인원 : 152,000명(선수 4,000명) - 경제효과 : 5억원	200백만원 - 국토해양부 20 - 전남도 80 - 영광군 100

※ 명품브랜드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던 “세계 민속궁 대축전”은 신종플루 확산 우려로 취소되었음

3.4.4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명품 브랜드화 사업을 통해 피해지역이 활력을 찾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명품 브랜드화 사업을 통한 경제효과는 약 15억원으로 추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서천 춘장대 비치사커 5억원, 고창 갯벌축제 2.6억원, 영광 갯벌마라톤 축제 5억원 등이었다.

피해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해당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피해지역 주민에게 자활의지를 불어넣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명품브랜드화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한 점은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걸음마 단계에 있는 브랜드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끊임없는 관심과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스페인 토마토 축제’와 같이 지역주민의 헌신적인 참여가 사업성공의 필수요건이다. 또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10년도 예산 3억원은 계획대로 확보하였으나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중요하다.

향후 명품브랜드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하고 도전의욕을 자극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8해수욕장 18홀을 주축으로 2~3개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하프홀, 3~4개 해수욕장을 연결하는 18홀, 32개 해수욕장을 순회하는 32홀, 1해수욕장 18홀(태안 신두리, 고창 만돌, 영광 두우 등), 지옥 레이스 1해수욕장 18홀 4라운드(태안 신두리 → 고창, 만돌 → 영광, 두우리 → 태안 바람아래) 등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한 다양한 레벨의 비치골프를 창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지역별 명품 브랜드화 사업내용을 차별화하고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영광과 고창의 갯벌 축제는 10km마라톤, 줄다리기 등 아이템이 비슷하고, 서천의 비치사커와 고창의 갯벌축제는 축구(풋살)라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 갯벌에서 할 수 있는 행사에도 한계가 있어 중복이 불가피하지만, 방법이나 대상 등을 달리하는 등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5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지원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침체된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핵심 피해지역인 태안에서 충청남도/충청남도개발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7개 부처·2개청/ 23개 기관단체의 후원아래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되었다. 꽃과 바다와

더불어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꿈”을 실현한다는 의미로 “꽃, 바다 그리고 꿈”이라는 주제로 2009년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27일간 개최되었다.

3.5.1 행사개요 및 성과

- 2009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KOREA FLORITOPIA 2009)
 - 기간 : 2009. 4. 24(금) ~ 5. 20(수). 27일간
 - 장소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꽃지·수목원 일원
 - 주최/주관 : 충청남도·충청남도개발공사/(재)안면도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 주제 : 꽃, 바다 그리고 꿈
 - * 부제 : 백만 자원봉사자의 감동과 태안의 미래
 - 대회장규모 : 79만㎡(주 행사장 꽃지 45만, 보조 행사장 수목원 34만)
 - 개최 성과
 - 관람객 : 1,982,538명(목표 관람객 110만명, 입장권 예매 110만매)
 - * 2002년 실적 : 관람객 165만명(국내 32개 지자체, 국외 20개국 등)
 - 총수입 : 약 184.9억원(입장권 판매 150억, 후원금 28억, 기타 6.9억)



<그림 3-6>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현장

3.5.2 국토해양부의 지원내용

국토해양부장관의 꽃박람회 참관 및 국토해양부 직원과 가족들이 꽃박람회를 많이 참관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특히 수도권·인근지역 기관 중심으로 다수 참관을 유도하였으며, 필요시 기관 자체적으로 입장권 구입 제공, 유류오염 피해지역 정책현장방문과 연계하여 상시학습시간(7시간) 인정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산하 기관·단체장 및 임원진의 자발적 참관을 유도하여 기관 및 단체 소속 다수의 직원과 가족들이 박람회를 참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꽃박람회와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꽃박람회 홍보 이벤트를 개최하였다('09.4.9~4.18). 이벤트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한 퀴즈 참여(꽃박람회 주제 및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한 3개 문항 출제), 포상은 당첨자에게 박람회 입장권 증정(총 500명 × 2매) 등이었다. 이벤트 결과 총 응모자 1,345명 중 958명의 정답자에서 중복 당첨자를 제외하고 524명에게 입장권을 증정하였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각종 홍보매체 및 회의를 통하여 박람회 홍보지원을 수행하였다. 각 기관 홈페이지에 꽃박람회 홍보 배너 설치 및 꽃박람회 조직위 홈페이지와 연계하였으며, e-국토해양뉴스, 국토해양행복+, 각 기관 사보 및 각종 간행물 등의 홍보매체를 통해 꽃박람회를 홍보하였다. 특히 국제기금(IOPC Fund) 집행위원회 참석시 회원국들에게 꽃박람회 홍보(영문 리플릿 제공)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토해양부는 산하 기관들에게 기관 자체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항을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 결과 도로공사 및 국토관리청은 박람회장 접근 교통시설 정비 및 소통 지원,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개통 및 접속국도 연계 개통 검토, 꽃박람회 안내간판 설치, 지능형 교통시스템 전광표지를 이용한 꽃박람회 홍보 및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순찰·점검 등 도로관리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차선 도색, 도로표지 및 갈매기 표지 등 안전시설 정비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립해양조사원은 행사기간 중의 물때 정보(고조·저조)를 꽃박람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대한주택공사는 후원금 1억원을 기탁하였다.

<표 3-50> 공공기관별 꽃박람회 지원현황

기 관 명	지원현황 및 계획
대한주택공사	- 입장권 구매(3,000매, 2,500만원 상당) - 태안군에 행사비용 후원(1억원)
대한지적공사	- 입장권 구매(1,600매, 1,440만원 상당) - 내고장 태안사랑에 성금기탁(2,500만원) - 행사기간 중 직원 참여 독려
한국수자원공사	- 조직위원회에 행사비용 후원(1억원) - 행사기간 중 직원 참여 독려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휴게소 및 요금소에 홍보부스·현수막 설치 및 리플릿 배치 -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 - 행사기간 중 직원 참여 독려
한국철도공사	- 행사기간 중 꽃박람회 관광·셔틀버스 운행 -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교통안전공단	- 홈페이지 배너 및 웹뉴스 등 홍보 - 교통사고 유자녀(70명) 초청 박람회 견학 - 행사기간 중 직원 참여 독려
한국토지공사	- 홈페이지 배너 설치, 사내홍보물 광고게재 - 행사기간 중 직원 참여 독려
해양환경관리공단	- 홈 페이지에 배너 설치 - 행사기간 중 직원 참여 독려
선박안전기술공단	행사기간 중 직원 참여 독려
인천항만공사	인천항여객터미널에 홍보 팜플릿 배치
인천공항공사	공항청사 이용객을 위한 홍보 팜플릿 배치

제 4 절 피해보상 행정지원체계 구축·운영

1. HS보상지원업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 추진배경 및 필요성

특별법에 따른 대부 및 대지급 등 시행을 위한 국제기금측의 피해보상 청구, 사정결과 및 보상금 지급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보공유를 위해 대부금·대지급금 신청접수 및 지급, 보상청구자 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특별법상 손해 배·보상과 관련하여 정부, 지자체, 국제기금 간의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중지급방지 등 손해보전지원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 HS보상지원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표 3-51> HS보상지원 업무관리시스템 주요 공유정보

구 분	주 요 정 보
손해배상 청구관련	● 청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업종 등) ● 청구내용 (청구일, 청구금액, 청구내역, 청구서류 보완일 등) ● 권리행사 제한사유 존재여부(가압류, 압류 등)
손해사정· 지급관련	● 국제기금의 손해사정(통보예정일, 통보일, 손해사정액) ● 손해배상금 지급여부(지급일, 지급금액)
대부관련	● 대부 신청(신청일, 신청금액) ● 대부금 지급(지급일, 지급금액) ● 대부금 상환(상환 또는 상계일, 상환 금액)
대지급관련	● 대지급 신청(신청일, 신청금액) ● 대지급 지급(지급일, 지급금액)
정산관련	● 확정배상액(확정일, 확정금액, 합의·판결여부) ● 정산내역(반환 또는 추가지급액, 보상주체별 분담액 등)
통계관리	● 월별, 지역별, 업종별 지원현황 등 통계자료 관리

1.2 추진경과

당초 국제기금은 민사상 배·보상에 관한 유류오염보상 청구·사정 및 보상 정보를 정부를 포함한 제3자에게는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대부·대지급 등)을 위해서는 국제기금측에 보상정보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7개월여 동안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달·설득하였다. 이런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2008년 10월 국제기금 비공식회의에서 국토해양부와 국제기금은 피해보상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는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와 동시에 국토해양부 및 수협중앙회는 공동의 노력으로 보상지원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을 착수하였고, 국토해양부·피해지역 지자체·수협 등 실제 시스템 사용자의 2개월간의 시범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2009년 4월 1일 정식 개통하게 되었는데 추진경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국제기금측과 정보공유 협의

- 대부·대지급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제기금·선주보험사 간담회를 통해 정보공유의 필요성 제기('08.4)
- 정례회의, 국제기금 집행위 및 총회 등을 통해 정보공유 추진방안 기본틀 협의('08.6~12)
 - ※ IOPC총회 기간 중('08.10) 양측 IT전문가간 정보공유 기술적 방안협의
- 정보공유 시행방안 협의완료 및 국제기금 보상정보 수신('09.2)

□ 보상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 금융업무 위탁기관인 수협중앙회를 시스템구축 주체로 선정하고 시스템 구축업체 선정 및 개발 작업 추진('08.6~'09.1)
 - ※ 국토해양부와 수협중앙회간 업무협약 체결('08.6.13)
- 청구자 개별관리를 위한 DB구조 수정 및 매뉴얼 개발('09.2)
- 시스템 활용을 위한 지자체·수협 등 관계기관 워크숍 실시('09.3)

1.3 시스템 개요 및 구성

HS보상지원 업무관리시스템은 국제기금 청구정보 수신, 대부 신청 등록 및 지급, 대지급 신청 등록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웹기반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 통합관리가 가능하게 하였는데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국제기금 청구정보 수신 및 시스템 업로드

- 매주 청구번호, 청구자명, 접수일, 사정금액, 지급금액 등을 메일로 전송받아 Demon 프로그램을 통해 시스템상 입력
 - ※ Demon 프로그램 : 특정경로에 파일이 생성되면 해당 파일을 읽어 시스템상 표현하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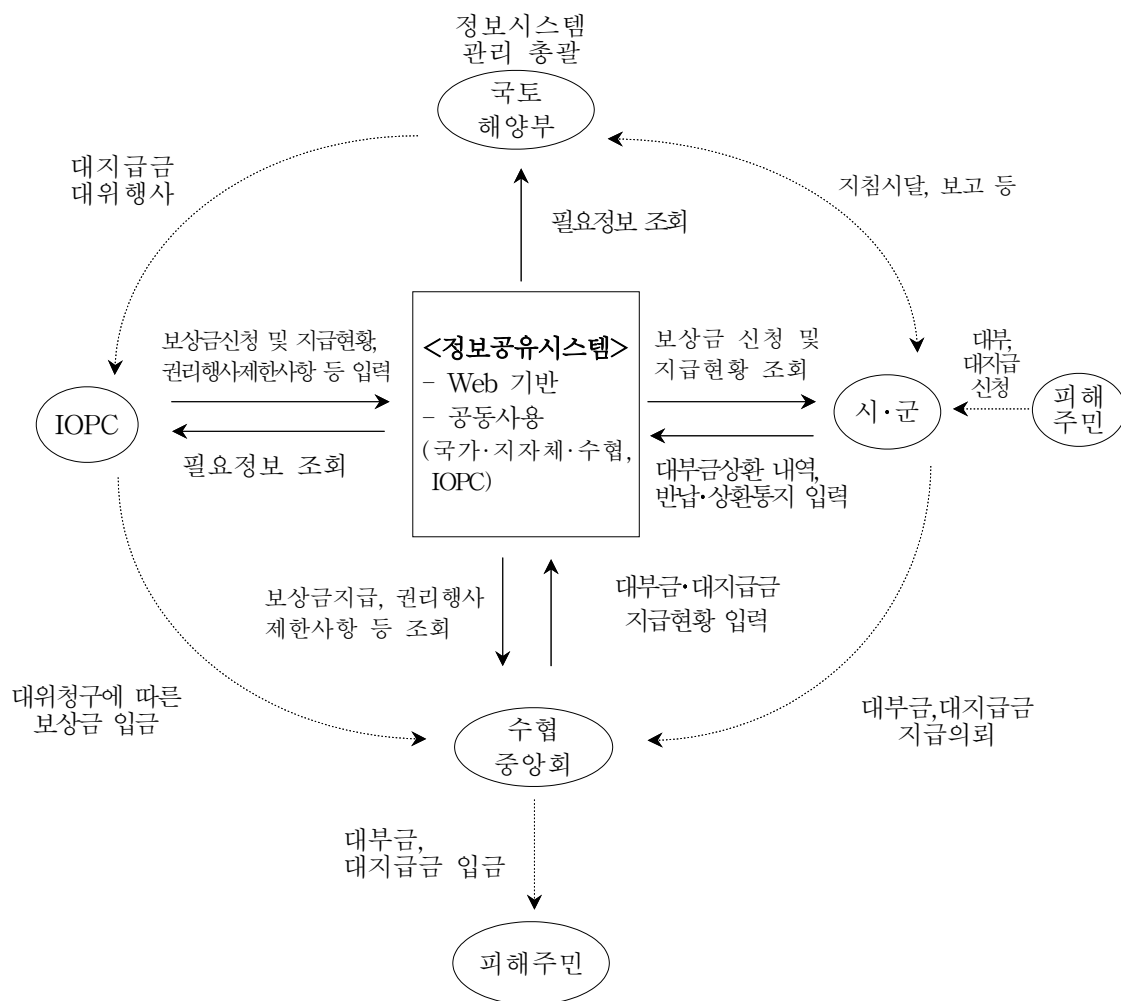
□ 대부 신청 등록 및 지급

- 지자체는 국제기금이 제공한 신청일 등을 시스템 상에서 확인 후 6개월 초과 시 대부접수하고 수협에 지급의뢰

- 수협에서 지급요청 확인 후 지급사실 입력
 - 국토해양부는 시스템을 통해 국제기금측에 대부정보 제공

□ 대지급금 지급신청 등록 및 지급

- 지자체에서 대지급 신청접수 후 국토해양부에 통보
- 국토해양부는 국제기금이 제공한 사정결과와 국제기금의 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시스템 상에서 확인하여 대지급금 지급여부 결정
 - ※ 이중지급 방지를 위해 국제기금 측과 MOA를 체결('09.1.21)함으로써 이중의 안전장치 마련
- 국토해양부의 지급의뢰에 따라 수협에서 지급 및 지급사실 입력



<그림 3-7> HS보상지원 업무관리시스템 구성 개념도

1.4 주요 기능 및 효과

HS보상지원 업무관리시스템의 주요기능 및 효과로는 첫째 보상청구 현황 및 대부 대지급 요건 확인이 원클릭으로 접수현장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대지급을 신청하는 주민에게 지급여부를 즉시 알려 줄 수 있게 되어 신청인에게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둘째 대부 대지급금 지급내역 정보가 보상지원시스템에 통합·관리되어 대부·대지급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었으며, 셋째 대부·대지급금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가 시스템을 통해 일원화되어 대부·대지급에 따른 채권관리 및 구상회수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도 대부·대지급관련 통계작성, 업종별, 지역별 대부·대지급 현황 자료가 보상지원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축적·관리되어 향후 정책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보상지원시스템의 시스템 이중화를 통한 자료 안전성 확보, 보안서버 구축을 통한 해킹예방의 접근보안 강화 등 시스템 전체의 안전성 제고와 지속적인 사용자 중심의 성능개선 등을 통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정부 보상지원업무의 물적 기반체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5 정부지원금 지급 문자서비스(SMS) 제공

정부는 정부지원금 지급시 지급내역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민원편의 증진과 피해대책위원회 대표자가 일괄로 대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입금 사실을 소속 피해주민들에게도 알림으로써 보상금 오(誤)수령 방지를 위하여 정부지원금 지급시 문자서비스를 개시하였다('09.7.1).

통상 대부·대지급금 지급여부를 문서로 통보할 경우 수협에서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에서 신청주민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절차를 지급시 즉시 문자통보를 함으로써 신청주민의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축소하여 민원만족도를 향상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또한 대표자가 일괄수령시 소속 피해주민들도 함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피해보상금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투명한 지급·배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대주민 피해보상 행정지원

2.1 현장지원반 운영

2.1.1 배경 및 운영 개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를 접한 해양수산부는 사고수습 매뉴얼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필요한 긴급대응조치를 취하는 한편, 2007년 12월 1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산하에 최초의 현장지원반을 편성·운영하였다. 당시 현장지원반은 비정규적 형태의 지원조직으로 주요임무는 주로 현장 방제작업 지원, 방제기관 인력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운영, 방제대책본부(태안해경서) 지원, 어업피해 보상에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어업인 계도활동 및 지원 등이었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08.2.29) 이후 2008년 4월에 접어들어 해안 방제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나, 피해조사 및 보상청구 등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피해보상 청구의 촉진 및 현실적인 지원대책 발굴, 피해자 지원제도(특별법에 따른 대지급·대부 등) 시행 등에 따라 현장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피해지역별 담당자 지정 등을 통한 현장지원반 운영의 내실화와 원활한 보상지원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2008년 4월 21일부터 국토해양부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보상지원단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게 되었다.

현장지원반은 피해보상지원단 소속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 대산청 소속 6급 1명, 7급 이하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주중(공휴일 제외)에는 본부 인력과 대산청 인력이 합동 근무하였으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대산청 소속 직원이 단독으로 근무하였다. 근무방법은 조별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1인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인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3박 4일)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현장지원반은 피해조사 및 보상청구 독려·지원, 피해대책위원회 및 주민 애로사항 파악·조치, 현지 당면과제 추진상황 파악 및 지원방안 모색, 피해보상 관련 현지 주요 회의·행사 참석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2.1.2 운영개선 경위 및 내용

방제작업의 진전, 기본적인 손해 배·보상 지원체계 구축 등 현장지원반 활동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장지원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운영개선을 추진하였다. 제1차 운영개선은 2인(사무관·주무관) 1조로 1주일씩 교대근무, 단기근무에 따른 업무연속성 결여, 책임소재 불분명, 피해지역 인적 네트워크 형성 미흡 등 지원활동 과정의 일부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현장지원반 운영 초기의 현장 감각 습득에서 벗어나 업무 전문성·책임감 제고, 피해지역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현안중심의 업무수행 및 피드백 강화로 운영 내실화, 지역 담당제 실시(근무조 별로 담당지역을 할당하여 책임성·전문성 제고), 근무기간의 연장(3박4일에서 4박5일로 연장)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현장지원 활동강화를 위해 2008년 10월 7일에 이루어졌다.

제2차 운영개선은 2008년 10월 10일 도서지역의 해안방제를 끝으로 기본적인 방제작업이 종료되었고, 특별법에 의한 피해주민 지원체제가 구축되는 등 현장지원반 활동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2008년 11월 13일에 이루어졌다. 주요 개선내용은 태안현장 상주근무 방식에서 담당지역별 출장근무방식으로 전환하여 9개 담당지역을 지정하고, 3인 1조로 9개조를 편성·운영하면서 현장지원반 근무매뉴얼에 따라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매뉴얼에 따른 현장지원반의 주요임무는 현장을 방문하여 지자체·유관기관·피해대책위원회·어촌계·번영회 등을 대상으로 지역동향파악, 정부 지원정책 및 국제기금등의 손해 배·보상 관련 피해주민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한 아이디어 발굴, 피해주민단체·지자체·HS센터 관광클레임 조사사무소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 필요시 해경·충남도주관 방제회의 참석 등으로 추가·보완 되었다.

제3차 운영개선은 피해보상지원단 소속 인원 축소⁶⁴⁾로 운영체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2009년 1월 5일에 시행되었다. 우선, 인원축소에 따라 담당지역의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사무관 정원에 맞춰 현행 9개 담당지역을 7개 지역으로 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각각 2개 지역으로 나누어진 전남·북 지역을 전남지역과 전북지역으로 통합하고, 담당지역이 원거리·광역권인 것을 감안하여 3인 1조(사무관 1명, 주무관 2명)로 편성하였다. 또한 인원감소에 따른 1인당 업무량 증가 등으로 장기 출장시에는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주 5일(월~금) 현장근무를 하되, 업무형평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64) 2팀 10담당에서 2팀 7담당으로 변경(사무관 3명, 주무관 1명 감소).

2.1.3 현장지원반 운영의 주요 성과

아래의 <표 3-52>는 현장지원반의 주요 활동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다. 현장지원반의 주요 활동내용은 피해조사 및 보상청구 독려, 피해조사 및 보상청구 지원, 피해지역 시찰 및 동향파악, 피해대책위원회 및 피해주민 애로사항 의견수렴 및 조치, 유관기관 업무협약, 피해보상 관련 정부 지원정책 설명, 피해지역 이미지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디어 발굴, 방제 및 피해보상 관련 현지 주요 회의 및 행사참석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3-52> 현장지원반의 주요 활동내용

현장지원반의 주요 활동 내용	빈 도 수
피해조사 및 보상청구 독려	4(2.0%)
피해조사 및 보상청구 지원	1(0.5%)
피해지역 시찰 및 동향파악	43(21.4%)
피대위 및 피해주민 애로사항 의견수렴	50(24.9%)
피대위 및 피해주민 애로사항 조치	4(2.0%)
유관기관 업무협약	57(28.4%)
피해보상지원 관련 정부정책 설명회	3(1.5%)
피해지역 이미지개선 및 지역경제활성화 아이디어 발굴	2(1.0%)
방제 및 피해보상 관련 현지 주요 회의 및 행사참석	37(18.4%)
계	201(100%)

※ 비고 : 일일 활동 중 중복활동은 중복계산 하였음

현장지원반의 세부 활동 결과는 <표 3-53>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장지원반의 활동은 민·관·군 협력을 이끌어내어 사고발생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해상·해안·도서 방제를 마무리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고, 특히, 피해지역 지자체 및 주민, 피해주민단체, 정부와의 가교역할을 통해 피해주민의 손해 배·보상 청구, 정부의 대지급·대부 등 손해보전 지원, 생태계 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53> 일자별 현장지원반 주요 활동내용

일 자	주요 활동내용
'08.4.22	● 피해주민 보상청구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법무법인, 사정업체)의 활동 현황 파악 및 폐해에 대한 예방조치 검토 요청 ● 삼성중공업에 대한 소송으로 무한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일부 변호사들의 과장된 사실 유포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필요성 검토 요청
'08.5.14	● 굴 양식시설 철거 이후 새로운 양식을 위한 중장기 해역위생조사 실시 필요성 건의 ● 조업중단·양식장 어류 폐사와 보상지연으로 인한 실질적 금융지원 필요성 건의
'08.5.16	● 대부기준 마련과 관련 피해신고자명단을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독려 -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를 정부노임단가보다 상향 지급하고, 인원을 늘려 작업시간을 단축시키도록 요청
'08.5.21	● 비수산분야(관광) 유류피해 보상청구 관련 설명회 개최 - HS 관광클레임 사무소의 역할 및 목적 설명 - 클레임 청구원칙 6가지 설명 - 필요시 HS 클레임 사무소 직원과 검정업체 직원이 공동 현장조사 실시 필요성 건의 - 검정업체의 확고한 소신으로 보상 청구하되, 너무 시간을 지체하지 말 것을 건의
'08.6.9	● 방제인건비 대지급 관련 업체 설명회 참석 및 의견제시 - 1~2월분 방제인건비에 대한 대지급 추진과 관련하여 KOMOS측의 조속한 사정진행을 협조 요청 - KOMOS측에서는 1-2월분 방제인건비 이후의 청구는 방제작업 종료 후 일건으로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제시
'08.6.11	● 소원면 어촌계장 협의회 면담시 건의사항 - 보상은 나중 문제이며, 우선 생계를 위해 조업재개에 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과 대책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는 건의 - 현장지원반은 본부에 신속한 설명회 개최를 요청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소원면 자치센터에서 설명회 개최
'08.7.2	● 충남도 모항 어민회 회장단 면담시 건의 내용 - 태안군수의 방제종료에 따른 모항항 방제 지속문제 건의 - 모항의 준설필요성에 대한 건의 ● 현장지원반은 태안군수와 협의를 통해 '08.7.10부터 방제지속 합의 ● 모항은 국가어항이므로 준설에 대한 견해는 해당부처(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할 수 있도록 의견전달
'08.7.24	● 서산수협피대위를 방문하여 피대위가 보상금 청구 및 수령을 대리하는 문제 협의 - 정부 대지급금은 대리청구를 인정 가능, 대부금은 불가함을 설명 - 정부 대지급금을 피대위에 일괄 지급하는 문제는 세부절차 마련이 필요함을 설명

일 자	주요 활동내용
'08.8.6	태안군 문화관광과 방문하여 지역이미지 개선 및 경제회복지원을 위해 서해안 지역에 적합한 문화관광 이벤트(갯벌 축구, 갯벌 골프 등) 발굴·명품화 추진 협의
'08.8.26	- 태안군 비수산분야 피해주민단체 관계자 면담시 삼성과 피해주민단체 간의 대화주선을 위한 정부의 중개역할 수행 의지 피력 - 삼성측과의 관계개선에 대해서는 필요성 공감
'08.9.16	- HS관광클레임 조사사무소 방문 - 현장지원반: 피대위/주민 등 면담시 클레임 청구 독려 및 조사사무소의 빠른 검토 요청 - 조사사무소: 청구를 독려하며 빠른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요청
'08.9.17	- 모항항 주민 면담시 선박방제비 지급 문의 - 모항항의 경우 방제업체(동화)를 통해 청구하였기에 국제기금의 사정 결과에 따라 지급될 예정임을 설명 - 필요시 방제업체에 대한 독려 및 현황 파악 추진
'08.10.6~8	- 비수산분야(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행사 개최 검토 및 현지협의 18개 해수욕장을 연결한 정규 골프대회 개최 가능성 검토 - 태안비치골프장을 방문하여 골프대회 등 정부가 주관·후원하는 행사에 대해 지원등이 가능하나,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지적
'08.10.29	- 서산시 유류유출사고대책팀 방문시 가로림만내 굴 양식장의 경우 치패, 채묘율 급감, 성장지체 및 폐사 등의 현상이 지속발생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책 강구 요청 - 수과원 서해수산연구소의 피해조사 결과, 피해사실 확인시피해자 및 국제기금측 사정업체에 추가 피해배상문제 협의토록 추진 - 겨울철 어업인들의 주 수입원인 굴 채취 곤란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 공공근로사업 지원요구 2008년도 공공근로사업중 지자체 부담분(50억원)을 활용토록 유도
'08.11.17~21	태안군 남면·부안군·고창군 피대위 관계자 면담 및 특별법 관련 대지급 및 대부 관련 설명
'08.11.28	- KOMOS와 방제업체간 간담회 참석 - 방제업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KOMOS의 인원보강 등을 통해 조속한 사정 요청
'08.12.11~12	- 충남도 대책본부 면담시 지자체 업무담당자들은 국제기금의 피해보상 현황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을 토로 - 지자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토부 지원단에서 파악 중인 HS센터 보상현황을 제공하기로 건의 - 태안군 남면수협 피대위 방문하여 피해보상사례 공유를 위하여 남면수협 청구사례를 국토부 유류피해 소식지에 기고하도록 피대위에 요청 - 태안 모항 어민회 방문시 우럭 및 붕장어 덕장조성을 위한 모항 배후부지 사용허가 요청 - 모항의 경우 국가어항으로서 소관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이며, 부지사용허가권자는 태안군이므로 이를 해당기관에 이관·처리토록 협조 요청

일 자	주요 활동내용
'09.4.14	● 국제기금 사정액과 채권관리인 제시액의 대지급금 지급 여부 - 국제기금 사정액에 대해서는 100% 대지급이 가능하며, 채권관리인 제시액은 최종 확정된 보상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지급 불가하다고 설명 ●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협조 요청 - 정부에서는 2중 사정(국제기금, 국내사정) 등의 불합리한 점을 감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설명 ●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생태계 복원연구 1차년도 결과에 대한 보완요청 - 복원계획 수립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 ● 해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타르의 객관적 조사 요구 - 필요성은 생각하고 있으나, 사업구상은 하지 못한 상태이며, 지원단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
'09.4.29	● 1가구내 다수의 맨손어업신고자 각각에 대해서 대부를 지급할 경우 일반 면허·허가어업 보다도 많은 금액의 대부 발생가능성에 대한 우려(태안군지원단) - 지자체의 공식의견 제출시 대부조건표 및 고시내용에 대한 개정 검토의견 전달 ● 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 국제기금 청구권에 대한 접수 번호 부여가 늦어지는 사유와 사정지연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주민·피대위 사전설명이 필요하다는 건의(태안군지원단) - 정례회의 등을 통해 사정현황파악·협의결과 통보한다는 의견 전달
'09.4.30	● 군산수협피대위는 대부의 경우 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됨으로 인해 서베이어 비용(청구금액의 7.5%) 회수곤란을 지적 - 대부의 경우 무보증·무이자 지원으로 피해보상 청구권을 담보로 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신청인의 계좌에만 대부금 입금이 가능함을 설명하여 설득 ●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주민의 기대치는 높아졌으나, 실제 지역민에 대한 지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 용역 추진배경·선정된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설명
'09.5.6~8	● 당진 군청내 유류배상지원팀의 역할, 업무, 인원 등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인식부족으로 업무에 상당한 애로 발생 - 지자체 스스로 주민지원업무 개발 및 현장활동강화 등을 통한 자치단체장의 인식변화 유도 ●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조기 착수 및 삼성출연금 지역별 배분 후 지역사업에 사용하기를 희망한다는 원북면수산피대위원장의 언급 -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및 삼성출연금은 향후 피해지역별 의견수렴 및 대책위원회 검토 등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전달 ● 태안군청은 대부시스템·대부기준 개선·지역경제활성화사업 재검토 및 조속한 피해사정 촉구 요청 - 지자체 의견수렴 및 대책위원회 검토 등을 통해 추진의사 전달

일 자	주요 활동내용
'09.5.13	●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매듭지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나사손해사정의 지적 -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은 늦어질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피해주민들이 너무 기대하지 않도록 계도 요청
'09.6.25	● 국제기금 측의 8개 항포구에 대한 관광객 증가 주장은 단순한 톨게이트 통과차량을 적용한 것으로 정례협의회 개최 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당진군청의 주장 - 삽교천 관련자료 등 당진군 검토의견을 제출하면 차기 정례협의회시 정부측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통보 ● 당진 시장 내 할머니들의 피해청구 관련 소득추계방식을 적용해 달라는 당진피대위의 요청 - 담당 손해 사정사(나사)와 유선 통화하여 피대위측 주장에 따른 소득추계방식 적용 요청
'09.6.26	● 천리포수목원을 활용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태안군청의 요청 - 홍보콘텐츠 부족 및 세트장 공간협소 등으로 인해 수목원 대상 TV 프로그램 제작·방영은 다소 무리라는 의견전달
'09.7.16~17	● 홍성군 담당자는 주민들의 피해배상액에 대한 관심도는 많이 낮아졌으나, 대부 신청이 가능할 경우 대부분 대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HS센터의 신속한 접수와 사정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 ● 보령시에서는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 장비비의 신속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선지급 등)이 쉽지 않아 민원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주장 - 우리부에서는 국제기금 측의 선지급 검토를 지속 촉구하겠다고 설명하고 관련 동향을 지속 파악·통보토록 시에 협조 요청
'09.7.30	● 서산지원 요청 의견조회서 관련 협의 - 책임제한절차의 조사기일 및 사정재판에서의 피해액 확정, 민사소송에서의 피해액 확정과 국제기금 인정과의 상관관계 및 의견조회서 회신문안에 대해 협의 ● 유조선주 책임제한절차 관련 관리인 작성 제한채권 신고목록에 대해 해당 손해사정업체에서 열람하여 오류 수정 - 관리인 측에서 단기간에 13만여건의 제한채권 신고목록을 작성함으로 인해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되고 있음
'09.8.17	● 특별법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태안읍 재래시장(조식시장) 개선을 위해 정부예산 350억원 지원 필요 -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발굴은 종료되었고 동 사업은 성격상 태안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임을 설명 ●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건립”을 건의하였는 바, 이의 조속한 추진 필요 - 동 사업은 농수산물식품부 소관사업으로 피대위의 의견을 태안군청 및 해당부처에 전달할 것을 설명 ● 기존자료와 중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맨손어업자명단을 제출토록 지자체에 요청했으나, 서천군·보령시는 미제출 - 지자체는 정부부처의 공문을 요청하고 있는 바, 소관부처인 농식품부 담당자와 협의토록 전달

일 자	주요 활동내용
'09.8.24	- 지역경제활성화 추가지원 용역사업에 대해 불만 토로 - 예산확보 방안없이 선정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 피해주민들은 2010년부터 사업이 진행될것으로 기대하는 등 혼란 가중 - 현 예산체계상 국토부의 독자적 예산확보가 곤란함을 설명하고 소관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주민 설득 협조 요청 - 사정 진행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HS 보상지원업무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필요 - 현재 HS 보상지원업무관리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국제기금측과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자료로 추가 제공은 별도협의 및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곤란함을 설명
'09.9.30	- 정부가 발굴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관련, 별도 계정 또는 항목 변경 등을 통해 예산 확보 필요 - 대부분 지자체 고유사업 또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업이므로 국토해양부가 일괄 추진키는 곤란하나, 관련부처에 예산반영 등 적극 검토 요청 -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특별법 반영 및 용역 개시 이후 이렇다 할 성과물이 없어 정부의 추진 의지에 의문 '08년 용역 개시시 '09년 말에는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늦은 피해청구('08.6) 및 보상받지 못한 자 사례 불충분(전체 12만건 대비 약 8백여건) 등으로 금번 용역에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는 다소 곤란함을 설명
'09.10.22	- 향후, 출어자제기간 미포함기간 및 불법어업자 배보상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 - 수협조합장이 국제기금회의에 참석, 정부가 손해 배·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직접 참관 - 유류오염사고 발생 2년이 다가옴에 따라 운영중인 현지 사무실 운영 개선(50평→10평)을 위하여 이전 가능한 사무실을 현지 조사 하였으나 적정규모 및 입지 조건을 갖춘 소규모 사무실 전무 - 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는 거의 없으며, 빈 사무실이 발생하는 경우, 주로 지인을 통하여 임대하고 있어 조사 및 임차에 한계
'09.10.28	- 서산지원은 현재 조사기일 및 사정재판 리허설 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며, 책임제한 절차 진행 협의 간담회는 리허설 개최 후 추진할 예정 - 제한채권신고서 및 제한채권 목록에 오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전체 신고서 및 목록에 대하여 확인 작업 진행 중 - KOMOS와 HS센터에 우리부 소관 채권의 신고방안 협의

일 자	주요 활동내용
'09.11.12	● 자가 재배 농산물 납품업자에 대한 소득추계방안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필요 - 영세 민박업자 외에 타 분야(업종)에도 소득추계방안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설명 ●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중 “해양관광낚시터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필요 - 사업의 성격상 ‘바다낚시터’ 조성 지역의 위치에 따라 지원부처가 달라지므로 우리부 소관인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설명 ● 수산물 등의 중도매인 피해보상 관련 HS센터에서 명확한 조사기관을 정하지 않아 시작조차 하지 못함 - 차기 정례회의시 협의안건으로 상정하여 KOMOS 혹은 협성검정 등 국내 전문조사기관을 조속히 선정토록 요청할 것을 설명
'09.11.23	● 신안군은 김양식 대지급 이후 전체적으로 조용한 상황이며, 맨손어업 사정결과에 따라서 불만이 제기될 수 있음 - 맨손어업 청구관련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에 제외된 신안지역의 맨손어업자의 불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안면수협은 제한채권 신고 건에 대한 보완서류를 제출하는 중이며 향후 이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법원은 현재 전체 신고건 중 약 10%정도만을 선별해서 서류보완을 지시한 상태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대폭 증가 예상
'09.12.9	● 「관광분야 25% 공제 조정을 폐지」 및 「소득추계방안 시범 실시」와 관련한 주민들의 정확한 정보 부재로 인해 피해 배보상에 대하여 관광분야가 수산분야에 비해 우대를 받는다고 생각 - 일부 주민들은 관광분야의 사정율이 25% 상향되었다고 오인함 - 소원면 관계자(부면장)에게 10월 회의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홍보 등 역할 당부 ● 서산시 유류오염사고 2주년 보고회 참석 - 법원 사정액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대지급 해줄 것과 신속·공정한 사정을 위한 정부조사단 구성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사정액 기준으로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 재정손실 및 채권관리 곤란으로 불가하며, 정부조사단의 구성은 사정기간 지연 및 청구건수 증가 예상으로 현시점에서 사정원칙 변경 불가함을 표명 - 출어자제기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안과 지역 지원사업계획 질의 및 정부 보상담당자의 인사발령 자체 요구함. 이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출어자제기간에 대한 우리안(사회·경제적 측면 반영)이 수용되도록 노력할 것을 피력하였으며 특별환경 복원계획(223억 확보) 및 대다수 파견자 활용으로 인한 인사의 애로사항을 설명함.

2.2 피해보상 지원 대내외 홍보활동 전개

2.2.1 피해보상 관련 동영상 제작

피해보상 관련 동영상 제작은 그 동안 신속한 손해 배·보상 및 사정을 제고를 위하여 국제기금 의제문서를 통해 피해주민의 애로 및 피해상황 등을 전달해 왔으나, 단순한 서면만으로는 생생한 피해상황 및 현지사정 전달에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추진하였다. 사고 초기(2008년 3월) 국제기금 회의시 방제작업 및 자원봉사 등의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 회의 참석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2009년 3월에 영문 브로슈어를 제작·활용하여 회원국들의 많은 관심을 유도했던 점에 착안하여 다시 한 번 국제기금 및 회원국 회의 참석자들에게 사고 이후, 지금까지의 보상진행 및 주요 현안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2009년 9월 동영상을 제작하였다(부록 CD 참조).

피해보상 동영상의 주요내용은 오염사고 이후 현재까지 오염피해 영향이 지속됨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과 요구사항 및 주요 현안을 소개하였고, 특히 충남지역 가리비 폐사, 어획량 감소 등 수산부문의 영향 및 전남 무안 김양식장 타르볼 유입 등 잔존 유분 출현에 따른 피해와 주민들의 추가적인 방제요구, 외견상 방제작업은 완료되었으나, 생태계 및 해양환경에 지속되고 있는 악영향과 향후 복원의 어려움, 해양 미생물 개체수 감소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을 통한 환경복원 노력,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국제기금 및 회원국들에 대한 협조 당부사항, 방제비 및 주민 어선 임차비의 조속한 사정과 지급, 피해지역 특성과 무자료 피해자를 위한 소득추계방안 적용 및 피해보상청구에 대한 신속한 사정과 지급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피해보상 관련 동영상 제작·홍보활동을 통해 피해보상 추진상황과 피해지역 특성 및 피해주민의 요구사항 등 현지사정을 생생한 영상화면을 통해 소개함으로써 정확한 사실전달 및 회원국들의 관심을 유발시켜 유류오염사고와 피해의 인과관계는 있으나, 소득증빙자료가 없는 2,400만원 미만의 민박업자의 청구에 대하여 소득추계방식을 적용한 보상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수산분야 손해 배·보상과 관련하여 국제기금등과 우리정부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조업자제문제도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었다.

2.2.2 피해보상 소식지 발간

방제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피해보상에 대한 관심과 업무가 집중되었고, 2009년도 상반기에 보상청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보상 추진상황 및 정부지원제도의 홍보수단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한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현장 활동 등 피해보상지원단의 활동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원단의 인력이 감소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주민단체 등과 소통 및 지원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피해주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워크숍 등을 실시해 왔으나, 피해지역이 충남, 전북, 전남 등에 걸쳐 광범위하고 피해주민단체도 50개가 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민·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피해주민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해 피해보상 소식지를 발간하였다. 2009년 1월에 피해보상 소식지 제1호가 발간된 이래, 지금까지 매월 발간되고 있다.

□ 소식지 발간 개요

- 제 명 : 서해안 유류피해 보상소식
 - 발간시기 : 매월(월간) 첫째 주, 2009년 1월 15일 제1호 발간
 - 배포대상 : 약 200곳(피대위, 피해조사업체, 유관기관 등)
 - 발간부수 : 약 600부,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서비스 제공, 배포대상별로 3부 발송
 - 분량/색도: A4 8쪽(원고량에 따라 유동적) / 2도 인쇄
 - 주요내용
 - 피해보상 관련 정부·지자체의 주요정책 및 추진상황 등
 - 피해주민단체의 보상 진행상황, 사례, 노하우 등
 - 국제기금측 동향, 협의사항 등(IOPC 총회, HS센터 정례회의 내용 등)
 - 전문가 칼럼, 기고 등
 - 원고모집: 매월 말까지 피대위, 지자체 등으로부터 접수
 - 소요예산: 약 200만원/월
-

피해보상 소식지의 주요 내용은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과 정부 대지급·대부제도의 시행사항, 국제기금측과의

현안사항 협의 결과, 민간방제비용에 대한 신속한 지급 노력, 선주 책임제한 절차 개시에 따른 제한채권 신고 절차, 유류오염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추가 사업 발굴 등에 대한 홍보 및 안내와 피해 주민들의 피해보상추구 집회 동향 및 요구사항, 피해지역 지자체의 손해 배·보상, 경제 활성화 등 정책동향 및 지역행사 소식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유류오염피해 신고, 정부의 대부지원제도 등에 대해 지역 피해대책위원회 및 피해주민이 오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실상 및 제도의 내용을 알기 쉽게 게재하기도 하였다. 일부 지역에서 특정손해사정업체의 과도한 홍보로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간접피해’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와 대부금이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된다는 오해에 대해 설명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표 3-54> 피해보상 소식지 발간 및 주요 내용분석

제호 구분	소식지 주요 내용(목차)
제1호 (‘09.1)	1.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2. 정부, 국제기금측과 현안사항 협의 및 신속한 배·보상 촉구 3. 지방자치단체 3~6월분 주민 방제인건비 선지급 완료 4. 대부·대지급 신청하려면 정보공개동의서 제출해야 5. 태안군 환경기본계획 수립 6. 사고 1주년 맞아 피해보상추구 대규모 상경집회 개최 7. 유류오염사고 항소심, 유조선측에도 유죄 판결-배상규모 등에는 영향 적을 듯
제2호 (‘09.2)	1. 유류오염사고 피해자에게 대부 등 본격 실시 2. 국토해양부 추가기금협약 가입 추진 3. 정부 국제기금측에 민간 방제비용에 대한 신속한 보상 촉구 4. 서해안 명품브랜드화 사업 추진 5. 충남지역 어선 검사수수료 면제 6.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특례적용 7. 프레스티지호 유류오염손해 보상사례
제3호 (‘09.3)	1. 선주 책임제한절차 개시에 따른 지역 순회 토론회 개최 2. 지자체가 대리 청구한 주민방제비용 대지급 마무리 단계 3. 정부 국제기금측에 소득추계를 통한 피해사정 촉구 4. 유류오염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추가사업 발굴 5. 국립공원관리공단·태안군, 2009년 생태계복원 촉진사업 실시 6. 선주 책임제한절차와 제한채권 신고 요령

제호 구분	소식지 주요 내용(목차)
제4호 (‘09.4)	1. 정부, 국제기금 집행이사회 회의에서 소득주계방안 적용 요청 2. 유류오염사고 해양오염영향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3. 서해안 명품브랜드화 사업 본격 추진 4. 유류오염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추가사업 선정 5. 유류오염피해 보상지원시스템 개통 6. 삼성중공업 책임제한절차 개시와 배·보상 7. 대부금의 신청과 상환 (대부금의 성격, 대부 한도액, 신청자격 및 대부금의 상환)
제5호 (‘09.5)	1. 국제기금측과 정례회의 개최 2. 유류오염 피해보상 현황, 국제기금 회원국에게 동영상 홍보추진 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4. 유류오염피해 신고 실태를 보며 (피해신고 건수 널뛰기 - 허위·부정 신고의 문제점) 5.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개막 6. 충남도 유류피해지역 어장복원 사업 등에 79억원 추가 투입 7. 대법원 유류오염사고 판결 - 해양오염 유죄, 선박과피 무죄
제6호 (‘09.6)	1. 유류오염피해 손해배상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2. 국제기금 회의에 “사정전문가 풀 구성”제안 방침 3. 희망근로사업 이달 1일부터 시행 4. 앞으로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최대 1조 2천억원까지 피해보상 5. 유류오염어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6.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7. 태안군 관내 해수욕장 이달 25일 개장
제7호 (‘09.7)	1. 유류오염피해 정부지원금 지급 시 문자메세지 발송 2. 유류피해민 대부지원제도 개선 3. 유조선주 책임제한절차 1차 조사기일 심리 열려 4. 국토해양부장관배 바다수영대회 태안에서 열린다 5. IOPC Fund 회의 결과 6. 태안 안면도 관광지 2018년까지 개발
제8호 (‘09.8)	1. 정부 국제기금과 배·보상 현안 협의 2. 전남 신안군 김양식장 피해어민에 정부 대지급 실시 3. 유류오염 피해지역을 특별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 4. 법제처 손해 배보상 청구일에 대한 유권해석 5. 방제비에 부가가치세 면제 6.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백서 발간 추진 7. 삼성중공업 책임제한절차 진행상황(제1차 조사기일)

제호 구분	소식지 주요 내용(목차)
제9호 (’09.9)	1. 정부는 국제기금측과 맨손어업 피해청구 신속접수 등 현안협의 2. 해양오염사고 시·도지사 방제책임 강화 3. 유류피해보상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4. 어촌계 총유어업권에 대한 정부 대지급금 지급방안 마련 5. 제3회 조정위원회 열어 6. 태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배 바다낚시대회 개최 7. 유조선주 책임제한절차 2차 심리 열려
제10호 (’09.10)	1. 2009년 12월 국제기금회의 열려 2. 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 3. 태안어장 환경 및 양식수산물 안정성 회복 중 4. 삼성중공업 책임제한절차 즉시항고사건 심리 열려 5. 조정위원회 개최 6. 해경 해안방제제도 개선 공청회 열어 7. 법무부 보호관찰소, 희망벽화그리기로 사회봉사명령 집행
제11호 (’09.11)	1. IOPC Fund 10월 회의 개최 2. HS센터와 정례회의 개최 3. 정부 대지급금 신청시 제출할 수 있는 대체서류 확대 4. 농식품부 유류오염 피해지역에 216억원 투입 5. 해상오염 방제기자재 비축기지 준공 6. 유류오염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 성과 보고회 열려 7. 추억이 담긴 갯벌 사진 공모전 열려
제12호 (’09.12)	1. 유류오염지역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 마련 2. 유류오염보험 책임보험 가입 선박 확대 3. 태안 모항항 유류오염 퇴적물 조사 최종보고회 열려 4. 유류오염사고 보상백서 발간 중간보고회 개최 5. 농식품부, 태안서 바다낚시대회 개최 6. 국방부, 재난피해 복구지원 사례집 발간

2.3 현장 정책설명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피해현장에서의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은 주로 국토해양부 피해 보상지원단 산하 현장지원반의 활동을 통하여 수행해 왔다.⁶⁵⁾ 또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및 책임제한절차 개시에 따른 지역순회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주민의견들을 수렴해 왔고, 국토해양부 장·차관의 피해지역 순회

65) 현장지원반의 주요 성과내용을 앞서 기술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세부기술은 생략하였다.

시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등도 피해주민 의견수렴의 통로가 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의 대표적인 방법이었던, 특별법 제정 시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 공동주관으로 지역순회 공청회를 개최했을 때, 제시되었던 주민의견들을 일차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전라지역 타르피해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간략히 정리하고, 국토해양부의 조치사항들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전라지역 피해민들의 요구사항을 특별히 기술하는 것은 주민의견수렴이 대부분 충남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3-8> 현장설명회 모습

2.3.1 특별법시행령 제정에 따른 지역순회 공청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2008년 3월 14일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과정에서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 공동 주관으로 지역순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피해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여기서 제시된 주민의견들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지역주민의 생생한 의견전달을 위해 특별대책위원회·조정위원회에

피해지역 자치단체장 및 주민대표 참여와 특별대책위원회·조정위원회에 의견제시 피해주민 단체를 광역자치단체별로 1인에서 시·군별 1인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조정위원회에 피해지역 수산·환경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피해주민단체 요청시 특별대책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를 10일 이내 개최해 줄 것과 대지급금 지급기준을 주민청구액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대부금 지원기준의 완화를 요구하면서 청구액의 50%를 인정해 줄 것과 보상한도액 초과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게다가 소송비용·검증비용·연구조사비용의 지원과 금융·세제·학자금지원 확인서 발급 규정을 신설해 줄 것도 요청하면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명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이미지 회복·지역경제 활성화대책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할 것과 장관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의 삭제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2.3.2 전라지역 타르피해 어업인 요구사항

전라남도 해양수산환경국 어업생산과가 지역피해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 결과, 타르에 의한 피해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특별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현실화 및 어업피해 선보상을 주장하면서 피해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하위법령 제정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유류피해 관련 국제기금에서 배상액이 확실히 되고 있는 방제비 중 인건비(지역주민 방제활동비)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삼성중공업측의 피해어업에 대한 무한배상책임을 요구하면서 정부에서 삼성측과 피해대책위 대표와의 대화 중재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환경복원보다는 피해주민의 생계대책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삼성중공업측이 출연하겠다고 한 환경복원기금 1,000억원은 환경복원보다는 피해주민의 생계지원이 우선이므로 생계대책을 먼저 세워놓고 환경복원을 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류피해 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 신규사업 확대지원과 굴 양식 등 어업면허를 받아 양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어촌계(마을)에서 공동으로 추진가능한 특별자율관리사업 지원요구와 정부 용자사업 시 피해주민의 신용도에 관계없이 용자 가능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해 줄 것을 요망하였다.

게다가 김 양식어업의 경우 손해 배·보상금이 언제 지급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8년 7월부터 2009년산 김 생산시설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설자재구입 자금과 자녀학자금에 대해서 특별용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유류피해 어업인을 위해 수협외 영어자금에 대해서만 이자감면 등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타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해서도 이자감면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이 기름유출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장기적 생계지원과 환경복원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제 5 절 관련 부처·단체의 협력 및 지원

1. 농림수산식품부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 농림부(現 농림수산식품부)는 기름제거 작업에 소속 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 강화 및 성금 전달 등의 간접적인 지원활동을 주로 하였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 후에는 조직 개편 전 해양수산부가 관장해 온 우리나라의 수산정책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가 되었다. 이에 따라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직접적인 많은 지원들을 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특별영어자금 지원 및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유류사고 피해 어업인 현장의견 수렴, 조업재개를 위한 민관합동 시험조사 실시, 신속한 조업재개 지원,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홍보,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확대 지원, 선의의 피해어업인 구제를 위한 조사대상 기준 마련 등 수산분야의 피해를 배·보상하기 위하여 다른 어떤 중앙부처 보다 많은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1.1 수산부문 손해 배·보상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피해어업인보상지원단은 수산부문에 대한 신속한 손해 배·

보상 및 보상을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청구방법에 관한 홍보에 주력하였고, 또한 선의의 피해어업인 구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피해보상 범위 확대와 관련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수산물 판매부진에 대한 손실액도 보상하기로 국제기금측과 합의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분야 추정피해액과 관련하여 관행어업 및 개인 매매로 소득추계가 부정확하여 다소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국제기금측에서는 어업인 소득정보와 추가 피해정보 등이 제공될 경우에는 수산분야 손실피해액 증가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표명하였다. 또한 피해신고 건수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맨손어업 등 생계형 어업종사자들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안면도 천수만내 해상가두리 양식어장(조피불락, 농어, 돔류 등)에서 무더위로 인한 수온상승으로 우럭 성어가 약 50톤이 폐사하였으며, 계속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08년 8월 17일 국제기금측 피해조사업체인 (주)한국해사감정 등으로 하여금 피해실사를 실시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국립수산물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연구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정확한 폐사원인을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하였다. 만약, 폐사원인이 유류사고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2008년 7월 이후 폐사한 양식어류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맨손어업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맨손어업⁶⁶⁾ 피해보상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는 2008년 7월말 기준 맨손어업 피해접수 건수(58,340건)는 수산분야 피해접수 건수(75,456건)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그 후로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보임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맨손어업자를 우선적으로 조사토록 하기 위함이었다.⁶⁷⁾

조사대상자 선정원칙은 첫째, 피해지역간 갈등 최소화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국제기금에서 지정한 조사업체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사고이전 신고필증을 취득한 맨손어업 피해신고자는 전수조사 대상자

66) 맨손어업이란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어업으로서 낚, 호미 등을 이용하여 맨손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굴, 바지락, 낙지 등)을 의미한다.

67)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2007년 12월 7일 사고 이후에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받고 피해신고를 한 건수가 40%(약 23,000건)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로 선정하였다. 셋째, 사고이후 신고필증을 취득한 맨손어업 피해신고자는 유류피해 입증자료가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하여 일정한 기준을 통해 선정하였다.

사고이후 신고필증을 취득하고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생계 유지형 맨손어업자 중 피해입증 및 조업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이며, 피해입증자료는 유류피해와 관련한 사진·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조업사실 입증자료는 해당 맨손어업자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한 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계산서 등 법적 증빙자료 등의 항목을 충족하는 자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사고이후 신고필증을 취득하고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고이후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취득한 맨손어업 피해신고자 또는 어촌계원이면서, 유류피해를 입은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사고이전부터 현재까지 실제 거주하면서 맨손어업에 종사한 피해신고자로 한정하였다.⁶⁸⁾

1.2 특별영어자금 등 금융지원

농림수산식품부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피해 어업인들에게 어업활동 재개 지원 및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영어자금과 농축산 경영자금(영농자금) 및 유류피해지역 농특회계자금 등을 지원하였다.

지원자금의 유형별로 지원대상자, 지원규모, 지원조건, 기타 행정사항 등으로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⁶⁹⁾

우선, 특별영어자금 지원이 있었는데, 지원대상자는 2007년 12월 7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특별대책위원회에서 피해지역으로 지정한 시·군의 어업인으로서 관할 행정기관(시·군)으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어업을 생계의 주업으로 하는 피해 어업인들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지원재원은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배정된 특별영어자금 250

68) 주소지가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있을 경우 거주여부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확인, 주소지가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있지 않을 경우는 이장·어촌계장의 보증을 거쳐 해당자치단체에 확인 후 인정, 주소지가 어촌계 업무구역에 있을 경우라도 교육 등의 사유로 타지역에 거주한 자 또는 정상적으로 출퇴근 직장인은 제외하였다.

69)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의 상세한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연구용역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수산분야 대응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참조하기 바람.

억원 중 미운용 잔액을 활용하였다. 어업별 지원한도는 2007년도 어업별 영어자금 소요액의 50% 이내로 하였지만, 소요액의 50% 이내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였다. 지원조건은 대출금리를 연 3%로 하고,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였다. 특별영어자금의 공급실적은 피해지역에 220억원을 배정하였고, 배정된 자금 220억원 중 76%인 166억원이 집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충남지역은 배정액(170억원)의 89%가 집행되었고, 전남지역은 배정액의 약 52%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북지역의 경우에는 20억원이 배정되었지만, 집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5> 특별영어자금 대출실적(2008.10.31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공급계획 (A)	대출 실적		집행율(%) (B/A)
			건 수	금 액(B)	
합 계		25,000			
배정 완료	소 계	22,000	1,128	16,629	76
	충남(6개 시·군)	17,000	1,011	15,080	89
	전남(3개 군)	3,000	117	1,549	52
	전북(2개 시·군)	2,000	-	-	-
배정 준비금		3,000	-	-	-

※ 어업인에 대한 특별영어자금 대출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둘째, 현재 대출 중인 영어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실시하였는데,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지원실적('07.12.7~'08.8.30)은 총 4,747건에 54,772백만원으로 충남 3,288건에 41,961백만원, 전남 1,459건에 12,811백만원 등이었다. 충남지역의 경우 대상금액(53,436백만원) 대비 78.5%가 지원되었으며, 전남은 대상금액(27,823백만원) 대비 46.0%만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전체 대상금액(81,259백만원) 대비 67.4%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6> 특별영어자금의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지역별	이자감면 및 상환기일 연기			
	대상자금		지원실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8,118(100%)	81,259(100%)	4,747(58.5%)	54,772(67.4%)
충 남	4,730(100%)	53,436(100%)	3,288(69.5%)	41,961(78.5%)
전 남	3,388(100%)	27,823(100%)	1,459(43.1%)	12,811(46.0%)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에서 기름유출피해가 확인되어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대상으로 선정된 농·어업 겸업 농가에 대해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실시하였다.

지원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의 농·어업 겸업 농업인 중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한정하였다.

피해발생일('07.12.7) 현재 농축산경영자금 대출 잔액을 대상으로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과 동일한 지원내용을 적용하였다.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면 1년간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추후 피해율이 50% 이상으로 판명되면 추가로 1년간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혜택을 지원하였다.

셋째, 유류피해지역에 농특회계자금 대출을 실시하였는데, 농특회계자금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자금으로서 농어촌 구조개선 및 농어촌 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부의 특별회계자금이다. 유류오염피해와 관련하여 가두리양식장 육상전환, 노후어선대체, 어업인후계자, 농특세전입금사업, 담수어양어장시설, 물류표준화사업, 산지종합처리시설, 수산물유통보급시설, 수산물종합판매장시설, 수산물처리가공시설, 양식단지조성사업, 양식장개발, 양어장수질정화시설, 어선기관대체, 어촌소득원개발, 연근해어업구조조정 등 총 16개 사업에 걸쳐 특별대출을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 3-57>와 같다.

<표 3-57> 농특회계자금 대출현황(2008.2.29 기준)

(단위: 원)

사 업 명	대 출 금 액	대 출 잔 액	2008년 분할상환액
총 계	19,156,072,600	11,777,862,248	2,431,377,800
가두리양식장 육상전환	200,000,000	33,400,129	20,000,000
노후어선대체	1,678,262,600	1,033,701,416	176,837,800
어업인후계자	7,392,000,000	5,710,472,449	853,000,000
농특세전입금사업	340,000,000	194,204,167	48,510,000
담수어양어장시설	280,000,000	162,000,000	34,000,000
물류표준화사업	18,300,000	9,330,000	2,610,000
산지종합처리시설	680,000,000	194,000,000	97,000,000
수산물유통보급시설	318,080,000	145,397,440	45,410,000
수산물종합판매장시설	2,400,000,000	685,680,000	342,840,000
수산물처리가공시설	1,633,610,000	1,025,620,000	233,490,000
양식단지조성사업	581,200,000	512,320,000	83,040,000
양식장개발	2,172,280,000	1,424,206,647	321,790,000
양어장수질정화시설	160,000,000	78,000,000	16,000,000
어선기관대체	45,440,000	11,360,000	11,360,000
어촌소득원개발	462,000,000	132,000,000	66,000,000
연근해어업구조조정	794,900,000	426,170,000	79,490,000

※ 자료: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2009년도 연구용역 참조

넷째, 피해어업인 생계안정 및 어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특자금 할부금 상환기간을 연장하였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의 어업인 및 수산물제조·가공업자로서 지정일 현재 농특회계자금을 사용 중인 자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받은 자로 한정하였다. 지원 대상자금은 특별재난지역의 수산분야에 지원된 농특회계자금 대출잔액 44,387백만원 중 2008년도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원금은 2,431백만원인데, 이 금액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하였다.

<표 3-58> 농특회계자금 상환연기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대출금액	대출잔액	‘08년 분할상환액	할부금 상환기일 연장 건수/금액	
합 계	52,763	44,387	2,431		
‘08년 상환 미도래	33,607	32,607	-	건수	금액
‘08년 상환 도래	19,156	11,778	2,431	4	194

1.3 피해지역 조업 자제 및 재개 지원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당시 해양수산부)는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한 해역에서 오염된 수산물의 유통·판매로 인한 국민건강의 안전과 지역 수산물 이미지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해역의 수산물 채취 및 포획을 자제하도록 하였다. 이는 유류오염사고 발생에 따라 막대한 수산피해와 수산물 안전성에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였다.

해상방제가 마무리되면서 2008년 1월 22일부터 태안군청에서 어업인, 지자체 등과 조업재개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기 시작했다. 정부 조직 개편 후 수산정책을 관장하게 된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4월에 접어들어 태안지역 유류오염 피해어업인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업재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민·관 합동 시험 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결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산물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충남도, 태안군, 한국해양연구원, 국립공원환경관리공단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여 2008년 4월 4일 태안군 유류피해 장소 일원에서 시험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국립수산물과학원은 현장 현황파악, 어획수산물의 유취 및 외관상태 관찰, 대표 어종 1종에 대한 사후 화학분석(PAHs)을 위한 시료 채집 등을 수행하였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중금속(수은, 납), 패류독소(마비성 패독) 검사, 한국해양연구원은 어류근육 유류오염, 어류 건강도 조사, 퇴적물 유류오염 조사 등이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공원관리공단

은 자체적으로 선정한 조사항목에 대한 시험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농림수산물식품부에 제출되어 조업재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후 정밀조사를 추진하였다. 민·관 합동 시험조사 결과, 태안 연안 수산물인 어류, 게, 쭈꾸미 등 대부분의 수산물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어류 등을 대상으로 조업을 2008년 4월 18일부터 전면 재개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조업재개로 생산되는 수산물은 당분간 지정된 위판장에서 관능검사를 받은 후,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발표하였고, 인체 위해성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 방제작업이 진행 중인 곳의 인접수역, 마을어업 등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인한 후 조업재개를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9월 3일부터 전면 조업재개가 완료되었다.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사고 당일 출어자제 조치이후 어업별·품종별로 5회에 걸쳐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업재개를 실시하여 2008년 9월 3일자로 전면 조업재개를 완료하였다.⁷⁰⁾

1.4 수산물 소비촉진 및 안전관리 홍보

농림수산물식품부는 피해지역의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해당 지자체 및 수산물 안전관련 국책연구기관 합동으로 피해지역 주민 참여하에 유류오염 피해지역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총 5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태안군 전역을 대상으로 2008년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복, 낙지, 피조개, 홍합, 바지락 등의 안전성 및 타르검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2008년 5월부터 8월 기간 중 태안군 관내 피해가 극심한 지역 및 해역을 대상으로 해삼, 전복, 굴, 운모조개, 바지락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4차례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조사현황은 <표3-59>과 같다.

70) 단계별 조업재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제1장 제2절 '1.4 출어자제 및 수산물 유통·소비에 관한 조치' 부문을 참조.

<표 3-59> 수산물 안전성 조사 현황

조사 일자	조 사 기 관	조 사 구 역	조 사 내 용	검 사 결 과
'08.3.22 ~4.04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한국해양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식품부 충남도, 태안군, 어업인 등	태안군 전역	어·패류, 갑각류	어류: 안전 패류: 타르검출 * 관능검사부적합 (바지락 제외)
'08.5.19~21	국립수산과학원	가로림만/안면 읍/고남면/남면	굴, 바지락	안전
'08.6.12	국립수산과학원 외 6개 기관	모항항/천리포 항/개목항/연안 어장 조업구역	연안정착어종 (우럭/장어/놀 래미/꽃게/배 물 고동 등)	안전
'08.7.8~10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식품부 충남도, 태안군, 어업인 등	태안군 연안해역	해삼/전복/낙지 /피조개/홍합/ 바지락	안전
'08.8.11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식품부 충남도, 태안군, 어업인 등	소원면/원북면 일원	해삼/전복/굴/ 운모조개/바지 락 등	안전

※ 자료: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연구용역 참조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8월 29일자로 태안어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를 최종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면 조업재개를 2008년 9월 3일부터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결과를 지자체(충남도/태안군)에 통보하여 조업활성화에 나서도록 촉구하였다.

그리고 태안지역의 수산물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로 하여금 서해안 주요 양식어장의 오염도와 양식생물 피해 정밀조사결과 및 품종별 양식 복원사업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결과를 2008년 9월 18일 태안군 문예회관에서 발표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해수 유분농도, 조간대 퇴적물의 PAHs(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농도, 양식 패

류와 해조류의 안전성, 굴 및 바지락 건강도 등은 모두 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굴 및 바지락 양식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2. 유관 중앙행정기관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의2(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에 따라 생계안정 특별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하였다.⁷¹⁾ 공공근로사업의 내용으로는 유류오염사고와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피해지역 해수욕장 주변 환경정리 및 타르 제거, 피해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 및 폐기물 정리, 항포구·수산물시장 등의 폐사 어패류 수거 및 처리, 방제 보조 및 재난 선포지역내 환경정비 등의 사업이었고, 공공근로사업 대상지역은 충남의 특별재난 선포지역인 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 당진 등 6개 지역이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재난대책과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의2(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및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제1회 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교부세 105억원 및 주민방제인건비 등을 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 어선 유류대, 방제복·유흡착포·유처리제 등 방제기자재 구입을 위해 특별교부세 105억원을 지원하였다⁷²⁾.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방제작업에 참여시킨 지역주민들에게 지급할 임금액과 국제기금 중간사정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방제인건비 지급재원을 마련하도록 특별교부세 4,469백만원을 지원하였다.⁷³⁾

71)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0억원, 노동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비 55억원, 환경부 오염물 및 쓰레기 제거사업비 45억원, 충청남도 예산절감분 50억원 등 총 200억원이 지원되었다.

72) 충남도 90억원, 전남도 10억원, 전북도 5억원 지원 등 총 105억원

73) 충남도 4,449백만원(태안 4,235백만원, 보령 214백만원), 전북도 20백만원(군산 20백만원)

2.2 노동부

2.2.1 특별공공근로사업의 실시

노동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공익형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 3-60>과 같이 특별공공근로 사업비 55억원을 지원하였다. 사업비의 시·군 배분규모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비 배준기준에 따르기로 충남도와 협의하였고, 사업은 2008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였다.

참여인원 1인당 월 788,000원을 지급하였고, 특별공공근로사업의 내용은 해수욕장 및 항포구 주변관리, 폐사 어패류 수거, 해안선 및 수산시장 정비, 재활용품 선별 등이었다.

<표 3-60> 특별공공근로사업의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목적	● 피해지역 주민 공익형 사회적일자리 제공
예 산 액	● 55억원 ● 사업비 시·군 배분 : 충남도와 협의(행안부 사업비 배분기준)
사업기간	● '08.9 ~ 11월
참여인원	● 3,752명(1인당 월 788천원 / 주 40시간)
사업내용	● 해수욕장 및 항포구 주변관리 ● 폐사 어패류 수거 ● 해안선 및 수산시장 정비 ● 재활용품 선별 등

아래의 <표 3-61>은 특별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히 일자별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2008년 3월 26일 충남도는 행정안전부에 특별공공근로사업비 국비 200억원을 요구하였고, 행정안전부는 2008년 5월 28일 기관별 부담금액 확정 및 추진계획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2008년 6월 13일 특별공공근로사업 추진 현안사항 긴급회의를 태안군청 회의실에서 노동부와 공동 개최하였다. 이후 노동부장관이 사업시행 공고를 하였고('08.6.25),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08.8.7) 사업승인, 약정서 체결, 참여자 승인 등을 거쳐 특별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였다('08.9.1).

<표 3-61> 특별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구 분	주 요 내 용
'08.3.26	● 특별공공근로사업비 국비 200억원 요구(충남도→행안부)
'08.4.8	● 공공근로 필요성, 국비지원 타당성 현지조사(태안군)
'08.5.28	● 기관별 부담금액 확정 및 추진계획 협의(행안부)
'08.6.12	● 특별공공근로사업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08.6.13	● 특별공공근로사업 추진 현안사항 긴급회의 ● 1차 회의: 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행안부 사업 협의 ● 2차 회의: 태안군청 회의실/노동부 사업 협의
'08.6.20	● 사업비 배분기준 및 추진사항 건의
'08.6.25	● 사업시행 공고(노동부장관)
'08.7.22	●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위원회 개최
'08.8.6	●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사업비 배분비율 통보 (보령종합 고용지원센터)
'08.8.7	●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위원회 개최
'08.8.8~31	● 사업승인, 약정서 체결, 참여자 승인 등
'08.9.1	● 사업시행

노동부의 특별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피해지역은 보령, 서천, 서산, 홍성, 태안, 당진 등 충남지역의 6개 시·군이었고, 참여단체(위탁시행기관)는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산지회, 홍성군자율방법대, 태안군자율방법대, 대한노인회 당진군지회 등 총 5개 단체였다.

사업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배정액 5,500백만원 중 75.4%인 4,146백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산지역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산지회의 경우 배정액(440백만원) 대비 99.7%인 439백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진지역의 대한노인회 당진군지회의 경우는 배정액(165백만원) 대비 64.8%인 107백만원만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4,080명이었으며, 이중 태안지역의 태안군자율방법대에 참여한 인원수가 3,21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2> 특별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명, %)

구 분	참여단체 (위탁시행기관)	사업비 집행현황			사업 기간	참여 인원
		계 획	실 적	비 율		
합 계		5,500	4,146	75.4	-	4,080
보령 서천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660	434	65.7	9.1 ~ 11.30	254
서산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서산지회	440	439	99.7	9.17 ~ 10.16	510
홍성	홍성군자율방범대	55	49	89.1	9.1 ~ 10.15	42
태안	태안군자율방범대	4,180	3,117	74.5	9.22 ~ 11.7	3,210
당진	대한노인회 당진군지회	165	107	64.8	9.1 ~ 11.30	64

2.2.2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연장 지원

노동부는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에서 방제작업을 실시한 방제업체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2009년 9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한 보험료에 대하여 2010년 3월 31일까지 2차 추가 연장하여 지원하였는데 이러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연장 지원 배경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방제업체들은 국가긴급방제활동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방제주관 기관의 독려와 요청에 따라 방제작업에 참여하였으며, 생계차원에서 참여한 지역주민에게 지급된 방제자재 및 보호 장구류 등은 방제업체 부담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방제업체는 방제과정에서 참여주민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주민의 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국제기금측의 방제비 사정결과 일부 업체는 청구금액의 15% 내지 20%에 불과하였고, 2008년 3월 이후의 방제비 지급시기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보험료 납입에 따른 추가부담까지 가중되어 방제업체의 경영이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이에 태안군(유류피해대책지원과)은 산재·고용보험료 부담 경감 및 납입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청남도(피해조사배상지원팀)에 건의하였다.

이에 충청남도는 국토해양부 피해보상지원단 및 노동부 산재보험과에 방제업체 보험료(고용·산재) 부담경감 조치를 건의하였다. 또한 (사)한국해상방제

사업협회도 국제기금에서 회원사들의 방제작업 비용에 대한 사정이 지연되고 있어 회원사들의 재정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회원사들의 방제비 수령이 지연되어 납부치 못하는 회원사들의 고용·산재보험료를 2010년 3월 31일까지 징수 연장을 국토해양부(HS피해보상지원단) 및 노동부(산재보험과)·근로복지공단 등에 건의하였다.

충청남도 및 (사)한국해상방제사업협회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연장에 관한 협조 및 건의를 접수한 국토해양부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보상지원단도 노동부 산재보험과에 방제업체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2차 추가연장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특별재난지역에서 방제작업을 실시한 방제업체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2010년 3월 31일까지 2차 추가 연장조치를 하였다. 다만, 2008년 1~2월 방제인건비, 보험료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방제업체는 동 지급금액 범위 내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장에 한하며, 아울러 동 납부기한 이전에 대지급금이 지급되는 경우 즉시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2.2.3 장애인고용부담금 가산금 징수예외 및 납부연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 가산금 징수예외 및 납부연장을 지원하였다. 즉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미신고 및 오류신고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면제하여 해당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다.

지원대상인 사업자는 상시 근로자수 200명이상인 사업체 중 의무고용인원 미달 사업주에 국한되기 때문에 지방노동관서 및 공단지사를 통하여 지원대상 사업주를 파악하고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의 예외」를 적용하여 처리하였다.

지원범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군(이상 6개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의무 대상사업주 가운데 고용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체로 하였으며, 지원실적('07.12~'09.12)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고용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체의 부담금 2,975만원에 대하

여 납부기한을 연장(당초 '07.12.28 → 연장 '08.6.30)하고, 가산금 2,975,000원은 면제 조치하였다.

2.3 환경부

환경부 자연자원과는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생태계 영향 장기모니터링 실시, 잔존유류 제거사업 및 정화사업, 공원기반시설 설치, 2차 훼손지 복구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먼저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역내에 2009년도까지 120억원을 투입하여 태안해안국립공원 생태계 복원대책을 수립·추진하였고, 유류오염사고 전후의 생태계 변화 등을 비교하고 향후 생태계 피해산출 및 복원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피해지역 자연자원을 정밀조사 하였다.

정밀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자연자원을 모니터링 하여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4억원을 투입하여 피해지역 자연생태계 장기 모니터링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유류오염사고로 맨손어업 등에 종사했던 지역주민들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어 지역주민들을 고용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생태계복원 공공근로사업(잔존유류 제거사업 및 정화사업)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2008년도에는 환경개선특별회계 국립공원사업비 5,280백만원을 집행하여 총 44,991명에게 소득지원을 실시하였고, 2009년도에는 환경개선특별회계 국립공원사업비 1,465백만원을 투입하여 태안군 지역주민 8,000명을 고용하여 잔존유류제거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역내에 총 4,135백만원을 2009년도부터 투입하여 유류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화장실, 주차장, 야행장 등 국립공원기반시설을 확충하였다.⁷⁴⁾ 이와 더불어 유류오염사고 당시 방제를 위한 사람, 차량 등의 이동으로 인해 훼손된 사구, 임시도로, 확장도로, 터널 등을 원상태로 복원하는 훼손지 복구사업을 실시하였다. 먼저 2009년에 방제작업으로 인한 임시도로 등 2차 훼손지를 조사하였고(임시도로 14구간 30노선 8.54km), 훼손지 복구를 위한 사업은 2011년

74)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총 4,135백만원을 투입하여 공중화장실 16개동 설치 1,000백만원, 학암포오토캠핑장 신규 조성 2,135백만원, 삼봉해수욕장 주차장 신규 설치 1,000백만원 등을 지원하였다.

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35억원을 들여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보건정책과는 환경보건법 제15조 및 제26조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들의 영향조사와 검진을 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비 144백만원을 지원하여 민관 합동회의를 구성하고 주민 등 약 3,2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생체내 유해물질 조사 등 지역주민 및 방제작업자의 급성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별도로 중·고농도 노출 예상지역 주민 등 약 10,000명을 대상으로 2008년 2,504백만원, 2009년 700백만원을 들여 중·장기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2008년에 51백만원을 들여 태안지역 산모 및 영유아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태안군을 거점으로 중장기 건강영향조사 추진, 건강검진 및 정신보건 상담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태안 환경보건센터’를 지정·운영토록 하였고, 이를 위해 2008년 약 4억원, 2009년 3억만원의 국비지원을 하였다.

<표 3-63> 지원 사업 유형과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지원사업 내용	'08년 실적	'09년 실적	'10년 계획
● 급성 건강영향조사	144	-	-
● 중·장기 건강영향조사	2,504	700	-
● 산모 및 영유아 건강영향조사	51		-
●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395	300	-
● 생태계 영향 장기모니터링		400	400
● 잔존유류제거사업(공공근로사업)	5,280	1,465	600
● 공원기반시설 설치	-	4,135	2,000
● 2차 훼손지 복구(임시도로 등)	-	-	-
● 생태계 정밀조사	-	1,500	-
● 방제작업 관련 비용	300	-	-
계	8,674	8,500	3,000

2.4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는 5억원을 들여 AI 인체감염 예방용 개인보호복(Level-D)을 방제작업용으로 10만명분을 지원하였고, 25.2백만원을 들여 급성 건강영향조사 및 지역주민 신경행동검사를 실시하였다⁷⁵⁾.

또한 2007년 12월 12일부터 2008년 2월 4일까지 현장응급의료지원을 실시하였는데, 매일 의사 10명과 간호사 28명을 현장에 지원하였고(연인원 의사 1,276명, 간호사 2,489명), 총 54,976명의 환자들을 진료하였다.⁷⁶⁾ 의약품지원도 이루어졌는데 질병관리본부, 대한제약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을 통하여 피부연고제 등 다양한 품목의 의약품이 지원되었다.

<표 3-64> 의약품 지원 현황

구 분	지 원 품 목
질병관리본부	• 피부연고제 300개, 방제복 300벌, 개인보호복 10만벌
대한제약협회	• 파스 1,200매, 해열진통제 51,500정, 소화제 6,000정 마데카솔 1,651개, 물파스 160개 등 1,200여만원 상당
대한약사회	• 진통제, 감기약, 피부질환연고 등 2,000만원 상당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 아스피린 5,000정, 영양제 3,000정, 찹스틱(입술보호제 600개 등

국민연금정책과는 국민연금법 제97조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연금보험료 지연 납부시 부과되는 연체금 및 가산금을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다⁷⁷⁾. 특히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대상자’ 명부를 입수하여 연체금징수예외 처리를 하였다.

75) 조사대상은 지역주민 300명, 군인방제작업자 2,600명 등 총 2,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불안·우울 증세가 높았고, 자각증상도 보였으며, 신경행동검사에서는 신경행동기능 일부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76) 두통·감기 환자 38,684명, 피부질환 2,281명, 외상 685명, 기타 13,308명 등을 진료하여 총 54,976명을 진료한 실적을 올렸다.

77) 연체금 징수예외 기간은 6개월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5월까지였다.

<표 3-65> 연금보험료 지원 실적

(단위: 명, 월, 천원)

처 리 일 자	해당 지역	연체금 징수예외				
		인원	고지월수	보험료	연체금	과오납
합 계		17,013	84,216	5,865,792	225,143	10,229
6.30	보령·서천·홍성·당진	11,397	64,817	4,591,186	184,625	7,960
8.18	서산·태안	994	5,603	375,100	10,177	813
8.28	신안·무안·함평	1,665	9,657	618,921	20,408	1,024
9.03	영광군	2,957	4,139	280,585	9,933	432

※ 비고 : 연체금은 3%, 징수예외기간 6개월 적용

: 과오납은 예외대상임에도 사전 납부한 경우 되돌려주거나, 차기보험료 고지금액에서 감액처리 대상임

보험정책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제6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 등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태안군 등 9개 시·군 지역을 ‘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으로 고시하여, 피해세대에게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을 하였다. 경감대상은 유류유출사고피해로 긴급생계안정자금을 지급받은 지역가입세대로 하였고, 경감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의 3개월분으로 한정하였는데, 유류오염사고 피해를 입은 7,714세대 지역가입자에게 총 431백만원의 보험료 경감을 지원하였다.

<표 3-66> 보험료 경감실적

(단위: 세대, 천원)

구 분	계		충남지역		전남지역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3개월 경감	7,714	431,115	7,461	426,885	253	4,230

상기 지원정책 외에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및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특별적용을 실시하였다. 즉 태안군 등 해당지역은 ‘유류오염사고 특별법’에 의해 유류오염

사고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통상적인 상황이 아닌, 특별한 상황하에 있음을 감안하여 수급권자의 범위 특례를 적용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방제작업 등 생계유지 수단으로 자활근로⁷⁸⁾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범위 특례를 적용하여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였다.

2.5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2.5.1 방제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선주보험사와 국제기금측은 방제업체, 폐기물처리업체 등의 방제비용 배상 청구에 대한 손해사정시 부가가치세를 불인정하였다. 방제비용 및 예방조치비용은 국제협약 및 국내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실제 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유출유 처리비용 청구(80억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은 인정치 않고 60여억원으로 사정하여 지급하였다. 이에 방제업체 등은 유류오염사고 방제비용 등에 대한 배상금 및 정부 대지급금 수령시 부가가치세법령 적용여부를 문의하였다. 방제업체의 질의내용은 손해 배·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 경우 ‘영의 세율’ 또는 ‘면제’ 가능성, 손해 배·보상금에 대한 정부 대지급금 수령시 동일한 부가가치세 기준 적용 여부 등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적용은 작업지시 주체, 배상금의 지급절차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국세청은 작업지시 주체가 정부가 아닌 외국법인(선주 등)인지 여부 및 배상금(용역대금)이 외화를 획득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및 검토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방제비용을 외국 보험사로부터 직접 배상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정부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차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불가하다는 것이 원칙적 입장이었다.⁷⁹⁾

78) 자활근로 대상사업으로는 방제작업, 특별공공근로사업, 주민지원사업(피해지역 지자체 주관) 등으로 한정하였고, 지원기간은 2007년 12월에서 2009년 6월까지였다.

79) 정부 대지급금은 그 지급절차 및 방법이 부가가치세법령의 영세율 적용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의견 표명이 있었다('09.4.2).

국제협약(조약)상 손해 배·보상금으로 규정된 방제비용 등 유류오염 손해 배·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법령 적용 여부 및 손해 배·보상금과 정부 대지급금에 대한 같은 기준의 적용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방제비용 등 이번 사고의 손해 배·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률 적용·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의 업무이나, 국제협약(민사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 및 국내법(유배법)은 방제 및 예방조치비용을 유류오염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 배·보상금 또한 부가가치세 미적용 대상으로 국토해양부는 판단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더라도 방제작업은 손해 배·보상절차에 따른 배·보상금이 지급되므로 선주측과 업체간 별도 계약은 없고, 홍콩 선적 유조선 선주의 법적 의무를 대행한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정부 대지급금의 경우 신속 보상지원을 위해 특별법에 따라 손해 배·보상청구권의 대위 행사를 전제로 지급하는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국제기금에서 손해사정한 금액 전액을 지급키로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재원의 성격 또한 선주보험사 및 국제기금이 지급하는 배·보상금(정부가 구상)과 같으므로 동일한 법적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국세청 법규과('09.4.1)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9.4.8) 등을 방문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 및 방제작업 진행과정 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손해사정시 방제비용의 부가가치세 불인정 사유에 대해 HS센터에 서면질의 하였고('09.4.10), 방제비용의 부가가치세 적용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국세청에 발송하였다('09.4.20). 또한 국제기금측 회신내용을 국세청에 송부하였고, 필요시 차관회의 또는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방제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안건상정 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면제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하므로 차관회의 또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토해양부 피해보상지원단의 이러한 노력 끝에 국세청은 이번 사고의 방제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키로 결정하였다. HS선주측으로부터 지급받는 방제비용의 경우(손해 배·보상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HS선주 측으로부터 구상되는 정부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제비용도 영세율을 적용키로 발표하였다.⁸⁰⁾

2.5.2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국세납부 유예 등 지원

국세기본법 제6조, 제15조, 제17조, 제8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의 국세납부 유예 등을 지원하였다. 지원사항은 자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였으며, 납기연장 징수유예시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였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한 1년까지 유예하였다.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지원실적을 보면, 충남지역 15,182백만원, 전남지역 120백만원, 전북지역 792백만원 등 총 16,094백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6 기타 중앙정부의 협력 및 지원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기타 중앙행정기관들도 많은 협력 및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대검찰청, 관세청,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기상청, 방송통신위원회, 여성부, 외교통상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일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금융위원회 등이다. 이들 기관들의 협력 및 지원한 사항들은 아래의 <표 3-67>와 같다.

<표 3-67>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지원활동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	지원활동 주요 내용
대검찰청	●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사법처리 시 관용조치 ● 피해지역 지원활동 실시(법률상담 등) - 직원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해구호휴가제 실시 ● 비리신고센터 설치 운영(서산지청) ●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지역학생 초청 검찰청 견학(서산지청)

8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되는 용역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중앙행정기관	지원활동 주요 내용
관세청	● 본청 및 10개 지방세관에서 300명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 부직포 등 방제물품 지원 : 4.8백만원 ● 태안군청 짚통의류 전달(200점) : 37백만원 ● 직원 성금모금 전달 : 24.7백만원 ● 감시정 이용 자원봉사단 및 방제자재 해상이동 지원 : 1.3백만원
교육과학기술부	● 유류오염피해지역 학생 교육활동 지원 : 특별교부금 2,000백만원 - 유치원종일제, 방과 후 학습활동,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공공요금, 난방비 지원 ● 충남교육청 예비비 414백만원으로 유류피해지역 학생지원 - 방과 후 학습활동, 수업료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남지회 : 성금 737백만원(피해지역 학생지원) - 방과 후 학습활동, 수업료 지원
금융위원회	● 신용보증기금 지원 - '08년 지원: 64건 2,635백만원 지원 - '09년 지원: 2,385백만원 지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원 - '08년 지원: 1,106건 17,162백만원 지원 - '09년 지원: 3,000백만원 지원 ● 기업은행 지원 - '08년 지원: 18건 813백만원 지원 - '09년 지원: 800백만원 지원
국방부	● 해안·해상·도서지역에 대한 군병력 및 장비를 이용한 방제지원 - 1,467.7백만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특별재난지역 관광사업체 개보수, 운영자금 융자: 580백만원 ● 피해지역 관광이미지 개선 및 관광활성화 지원: 640백만원 - 관광산업 피해실태 조사: 20백만원 - 관광이미지 개선 홍보광고: 100백만원 - 관광이미지 개선 홍보행사 개최: 500백만원 - 피해지역 연계 여행상품 개발: 20백만원 ● 방제작업 자원봉사 관련 운송차량비 지원: 6.7백만원
기상청	● 충남 태안군 학암포 해수욕장 방제작업 인력지원 - 방제물품 1.6백만원 지원 ● 군산, 목포, 진도, 태안 등 피해지역의 특별기상지원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 충청지역 선박무선국 검사수수료 면제 - '08년 지원실적: 22,774,000원(면제 금액) - '09년 지원실적: 22,869,000원(면제 금액) ● 통신이용요금 감면 및 통신회선 지원 - 통신이용요금 감면: 총 1,382백만원 - 재난 긴급 통신회선 지원: 168회선 ● 태안군 해안가로 유출된 유류 및 폐기물제거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 방제물품 구입 등 17.4백만원 지원 ●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금모금 및 전달: 5.7백만원

중앙행정기관	지원활동 주요 내용
여성부	● 여성단체들과 자원봉사활동 실시 - 여성자원봉사자 1,650명, 여성부 소속직원 150명 ● 방제용품 구입 및 위문금 전달(13백만원)
외교통상부	● 태안 유류유출 사고관련 국제협력 T/F 팀 운영: 외국지원 확보 - 일본: 흡착포 10.2톤 무상지원, 전문가 6명 파견 - 중국: 흡착포 55톤 지원 - 싱가포르: 방제기 1대 지원 - 미국,스페인: 방제전문가 각 4명 파견 - UN/EC 공동조사단 10명 파견 ● 국제지원 동향 홍보 등
조달청	● 피해지역 기름제거 행사 실시 - 버스임차 및 방제장비 1.5백만원 지원 ● 직원 모금운동으로 성금모금 후 전달(1천만원) ● 유류제거용 복구용품 전달: 헌옷 지원
중소기업청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추가보증 실시 ●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한 보증절차 간소화 적용 - 보증지원 실적: 28건, 490백만원(충남신용보증재단)
통일부	●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총 4회에 걸친 자원봉사활동 전개 - 방제물품, 자원봉사자 급식비, 버스 임차료 등 6백만원 지원
지식경제부	● 피해지역 전기요금 납기연장 및 임시전력 공사비 감면 - 전기요금 납기연장신청 가구수 892건, 납기연장금액 525,710천원 지원 - 방제작업현장(태안) 지휘본부운영 관련 임시전력 감면: 31,392천원 지원 ● 방제활동 및 기타 지원 - 소속 기관 및 직원의 자원봉사 인력지원: 2,624명 - 차량지원: 153대
병무청	● 재난지역 병역의무자 입영기일연기제도 운영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중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 입영기일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영일로부터 60일간 연기 처리 - '07 ~ '09.12까지의 지원실적: 14명 ● 피해지역 해안 기름제거 자원봉사활동 지원: 83명 ● 직원 모금운동으로 성금전달: 230만원 ● 생필품 및 유류제거용 복구용품 지원: 2,265천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기름유출 사고현장 방제작업 지원(68명) - 자원봉사 관련 2.8백만원 지원 ● 태안군에 성금(2,250천원) 전달
해양경찰청	● 방제작업 비용 및 함정연료비 7,354백만원 지원 ● 방제작업 소요 자재구입 및 참여인력: 8,706백만원 지원

중앙정부	지원활동 주요 내용
문화재청	● 성금모금 및 전달: 5백만원 ● 기름제거용 흡착포 등 방제물품 구입: 5백만원 ● 자원봉사활동 실시: 직원 280명
농촌진흥청	● 방제작업 자원봉사활동: 연 인원 238명 ● 재난복구 물품지원: 10,000천원
특허청	● 해안방제작업 자원봉사활동: 70명 ● 성금모금 및 전달: 20백만원
통계청	● 자원봉사활동 전개: 236명 ● 성금모금 및 전달: 5,188천원 ● 물품구입 및 지원 - 장화, 방진마스크, 고무장갑 등 266세트: 7,200천원 - 농협상품권 구입: 4,800천원 - 재활용 의복지원: 21박스

3. 피해지역 지자체

3.1 충청남도

3.1.1 사고초기 긴급방제 및 생태계 복원

충청남도는 사고 발생 직후인 2007년 12월 7일 종합 상황실을 설치하고 12월 11일에 사고 현장인 태안군에 행정부지사가 총괄 지휘하는 “종합사고 대책반(’07.12.17, 서해안 유류사고 대책지원총괄본부로 변경)”을 설치·운영하여 방제 및 주민피해 지원을 체제를 신속하게 정비하였다. 충청남도의 단계별 방제활동 실적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대규모 방제인력을 투입하여 긴급방제(’07.12.7~’08.1.31)를 실시한 단계로 행정CP(태안군 17개) 및 현장지휘소(해경 8개) 설치운영, 해경청이 제작한 지역특성과 오염정도 등을 표시한 상세지도 배포, 지역특성 및 오염 상태에 따른 효율적 인력 투입⁸¹⁾ 등이 이루어졌다. 2단계는 중장비를 투입하여 전문방제(’08.2.1~3.31)를 실시한 단계였다. 2단계에서는 우심지역을 중심

81) 자원봉사자는 모래사장, 자갈해안 등 안전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 군부대는 현장 접근이 어려운 절벽·암벽·무인도서 등,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역보호를 위한 오일펜스 설치, 도서 방제, 방제업체(지역주민)는 지역별 담당업체 지정, 우심지역 방제 등으로 분류하여 방제작업을 진행하였다.

으로 방제업체에서 중장비 투입 전문방제를 실시하였다. 3단계는 해수욕장 개장을 목표로 집중방제('08.4.1~5.31)한 단계였다. 2008년 해수욕장 개장을 목표로 도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장비구입 및 임차료 등을 지원하였다. 4단계는 잔여지역 마무리방제 ('08.6.1~10.10)단계였다. 3단계 작업결과 98% 정도 응급방제가 완료되었으나, 작업 여건이 취약한 도서 등 일부지역에서 작업이 지연되었는데, 4단계에서는 이를 마무리 하였다.

<표 3-68> 충청남도의 긴급대응 및 방제활동

일 자	활 동 내 용
2007.12.7	● 도지사 사고현장 점검 및 진두지휘 - 실·국장 긴급회의, 사고 6개 시·군 단체장 화상회의 ● 도 종합상황실 설치, 비상근무 실시 ● 태안해양경찰서 대책본부 파견 조치
2007.12.8	● 유류사고 관련 긴급방제 동원 ● 재난사태 선포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방제작업 헌옷 모집요청(행자부, 해수부) ● 방제인력 및 장비요청(국방부, 산자부)
2007.12.9	● 특별재난지역 지정건의 ● 군 재난상황실 운영 요청(육군 제32 사단장)
2007.12.10	● 여수 씨프린스호 선행사례 벤치마킹 ● 유류오염사고 관련 도지사 담화문 발표 ● 종합상황실 확대설치 운영 - 공보, 구조, 구급, 환경, 인력, 차량, 자원봉사 등 ● 방제흡착포 지원 및 천수만 입구 오일펜스 설치 건의(해수부)

※ 자료: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연구용역, p. 95참조.

또한 사고발생 직후부터 2008년 10월 10일까지 약 309일 동안 4단계 방제를 통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15개 해수욕장 중 13개 해수욕장을 사고발생 약 6개월 후인 2008년 6~7월에 개장하였으며, 도서지역을 포함한 대부분의 해안지역 유류오염을 제거하였다. 충청남도는 조속한 환경복원을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연계하여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였다.

3.1.2 피해조사 및 긴급생계안정 지원

피해조사 및 손해 배·보상 지원을 총력 추진하기 위하여 유류사고대책 총괄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운영체계는 피해지역 현장실태의 심도있는 분석 및 주민여론 수렴 등을 위하여 주1회 피해지역에 담당공무원을 현장근무토록 하여 여기서 발굴된 안전을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에 정책건의, 국무회의·차관회의 등의 안전으로 상정하는 한편, 중앙 및 유관기관 시·군과 사고대책 추진업무를 연계하는 체계였다. 그리고 유류사고대책 총괄지원체계의 중점 추진과제는 해안오염 방제 및 복구, 손해 배·보상 및 생계안정 지원, 수산물 안전관리 및 수산물 소비촉진, 해양오염 영향조사 및 해수욕장·생태계 복원, 피해 주민 금융·세제지원, 피해지역 학생 수업료 및 급식 지원, 재난지역 관광산업 실태조사 및 지원, 의료·방역 지원 등이었다.

또한 피해조사 현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순회반을 구성·운영하였는데 이는 그 동안 ‘오염피해조사지원단’이 주력하였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집체교육 및 증거수집방법 안내 등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따라 현지지원 활동을 집체교육 중심에서 피해주민을 찾아가는 지원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이다. 현장 순회반은 지역별(읍·면·동)로 편성하여 어촌계(또는 마을연합 등)단위로 순회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자료작성 등의 자문을 실시하였다.

각 기관·단체 및 민간전문가로 편성된 순회반은 자료작성 등 자문을 실시하되, 현지 해결이 곤란한 사항은 관련부서에 전달하여 처리결과를 받아 어업인 등에게 통보해 주는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피해 극심한 서산시와 태안군(7개반)을 중심으로 먼저 실시하였으며, 민심 등을 감안하여 추후 보령시 및 서천군 지역(3개 반)에서도 실시하였다.

순회반은 읍·면별 지정 담당자(어촌지도사)와 해양수산부, 충남도, 태안군, 수협중앙회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지정담당자는 현 위치에서 근무하면서 유류피해 관련 동향과 관내 피해주민 요청사항 등을 취합 현장지원반에 통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순회반의 운영방안은 반별 순회방문계획에 의거 미리 해당 어촌계장 및 마을대표와 협의하여 방문시간 등을 결정하고, 순회방문 지원활동을 마친 후, 그 결과를 우선 유선통보하고, 상세사항은 서식에 의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 2담당에 송부토록 하

였다.

결과보고서를 통보받은 지원 2담당은 본부(피해조사지원단 기획총괄팀)에 일일상황으로 보고하고, 현장에서 미해결된 애로 및 건의사항도 송부하여 관련부서의 답변(해결방안)을 받아 해당 피해주민에게 통보토록 하였다.

그리고 유류오염사고발생 후 피해지역 영세어민 등 영세가구의 생계유지 터전 상실과 관광객 감소 및 해산물 소비기피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지역주민 생활안정 대책으로 충청남도는 지방세 세제지원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세 징수유예 2건(1.5백만원), 납기연장 5,391건(550.5백만원) 등 총 5,393건(552백만원)의 세제지원을 하였다.

또한, 정부로부터 2007년 12월 28일 긴급생계안정지원금 교부결정(300억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2008년 1월 9일 충남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생계자금지원 (300억원)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2008년 1월 18일 도지사 주재 특별재난지역 단체장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150억원 범위 내에서 태안지역을 제외한 5개 시·군에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2008년 1월 19일 정부의 생계안정자금 300억원, 국민성금 158.3억원, 충남도 예비비 100억원 등 총 558.3억원에 대하여 시·군에 보조하기로 결정하였고, 보조금 교부결정과 동시에 2008년 1월 21일 558.3억원 전액을 시·군에 송금 조치하였다. 또한 시장·군수 책임하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대상자·지급기준 설정·개인별 구좌입금 조치 등을 지시하였고, 2008년 1월 31일까지 세대별로 지급될 수 있도록 매일 추진상황을 점검 및 독려하였다.

<표 3-69> 시·군별 생계안정자금(1단계) 지원 및 배정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보 령	서 산	서 천	홍 성	태 안	당 진
계	55,830	8,615	8,434	3,931	2,072	31,753	1,025
국 비	30,000	2,715	2,274	2,205	1,239	21,021	546
도 비 (예비비)	10,000	4,500	4,500	600	200	0	200
국민성금	15,830	1,400	1,660	1,126	633	10,732	279

충남지역의 경우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오염이 심각하였고, 또한 방제작업 기간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길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 두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생계안정지원금이 지원되었다. 충청남도의 경우 위의 1단계 지원과 별도로 2단계 및 3단계로 나누어 국비와 도비 및 국민성금 등이 지원되었다. 여기서 1·2·3단계를 종합한 총 지원금 내역을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 3-70>이다. 표에서 보듯이 국비는 총 60,000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도비는 15,000백만원, 국민성금은 16,330백만원이 지원되어 충남도에는 총 91,330백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중 태안군이 57.8%인 52,774백만원이 지원되었고, 다음으로 보령시가 15.7%인 14,330백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0> 시·군별 생계안정자금 총 지원 및 배정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보 령	서 산	서 천	홍 성	태 안	당 진
계	91,330 (100%)	14,330 (15.7%)	10,708 (11.7%)	7,636 (8.4%)	3,081 (3.4%)	52,774 (57.8%)	2,801 (3.0%)
국 비	60,000	5,430	4,548	4,410	2,248	42,042	1,322
도 비 (예비비)	15,000	7,000	4,500	2,100	200	0	1,200
국민성금	16,330	1,900	1,660	1,126	633	10,732	279

이밖에 충청남도는 피해지역 환경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였다. 복원사업의 추진방향은 해양오염 영향조사 지원체계 구축 및 해양생태계 회복 추진 지원, 주민·전문가·환경단체 등 각계각층과 협의를 거쳐 복원기법 도입, 해수욕장 복원사업 추진시 정비사업도 병행 실시 등이었다. 또한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환경전문가 및 NGO 등과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였다. 도지사 직속 자문위원회와 환경NGO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환경복원 기술적용 관련 상호 협력 및 갈등문제 해소, 공동 프로젝트 추진 및 정보교환 등 다양한 협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문위원회와 환경NGO간 합동조사 실시 등 실질적 협력을 유도하였다.

또한 대통령, 중앙부처 국무위원 및 광역시장·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여하는 서해안 수산물 시식회를 2009년 3월 21일 중앙공무원교육원

(경기도 과천시 소재)에서 개최하였다. 시식회의 개최 목적은 전국적으로 서해안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계기를 마련코자 개최하였던 것이다. 또한 유류오염에 따른 서해안 수산물의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판매부진으로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충청남도 주관으로 청정 서해안 및 안전한 수산물 홍보를 위한 시식회 및 염가판매 행사를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2009년 4월 18일 개최하였다.

3.1.3 손해 배·보상 청구 및 보상 지원

피해조사 및 손해 배·보상업무 지원을 위해 국제기금등이 HS센터 서울사무소를 개소 및 운영하여 피해보상 청구안내 및 접수, 청구액 사정, 청구서 영문번역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피해신고서의 작성요령 및 채증방법 교육, 맨손어업·무신고·무자료 거래 입증자료 확보방안 모색, 관계공무원 및 피해대책위원회·손해평가기관과 연석회의 개최, 국제기금 관계자 및 HS센터장 참석 주민설명회 개최⁸²⁾, IOPC 집행위원회 참석('08.3.8~14), 합동피해 및 손해조사('08.2~8월), 피해배상청구서 작성('08.8~12월), 국제기금에 피해배상 청구서 제출('09.2), 유류오염 피해입증을 위한 소득추계방안을 마련하여 보험사 및 국제기금에 반영노력 등을 기울였다.

특히, 국제기금등과의 정례협의회에 참석하여 도내 현안사항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전달하였다. 국제기금등과의 주요 협의내용은 방제인건비 중간사정 결과에 대한 사항, 국제기금과 정부간의 정보공유 협의 관련 사항, 방제업체의 방제비용 조기 사정 관련 사항, 관광분야의 피해보상 방안, 수산업분야의 피해보상 방안, 피해보상을 위한 신속한 피해사정 요구 등이었다. 피해조사 및 배상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2008년 8월 13일 충남도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개최하였다⁸³⁾. 이 자리에서의 주요 토의내용은 보상청구서 신청 후 반복적인 반려 및 보완 요구에 따른 문제 제기, 맨손어업 관련 선의의 피해자 선별 및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 당부, 관광분야의

82) HS센터(피해보상청구 접수사무소)의 기능과 역할, 청구안내, 질의답변 등 순으로 진행하였고, 피해보상청구 안내책자를 배부(600부)하였다.

83) 충남도 대책본부장·피해배상지원팀장·항구복구팀장, 국토부 피해보상지원단 지원기획팀장, 시·군으로는 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 당진 관계자, 23개 피해대책위원회 및 17개 손해사정업체 관계자 등 총 65명이 참석하였다.

경우 손해 배·보상 청구절차 없이 휴·폐업 시 국제기금등의 보상 불가 입장에 대한 정부의 대책, 관광분야 청구를 위한 입증자료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므로 모든 피해대책위원회가 똑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요구 등이 논의되었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특별법의 주민 요구사항 수용이 미흡하였고,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주민 요구사항⁸⁴⁾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이 주민들로부터 요구되었고, 충청남도는 특별법 시행령의 조기제정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다.

또한 피해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에 역점을 두었는데, 청정지역 이미지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방송매체 활용 홍보 강화, 각종 행사유치, 관광루트 개발 등 실질적 지원시책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노래자랑, 6시 내고향 등 주요 방송프로그램 방영 협조를 구하였고, 중앙 및 각 시도 세미나·심포지엄·단합대회·체육행사 등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서해안 해수욕장, 안면도 송림, 천리포 수목원, 해미읍성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가족단위 관광루트 개발 및 수학여행 코스를 개발하였고, 지역생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1사 1촌 자매결연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충청남도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개최를 지원하였다. <표 3-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류오염사고 발생 이후 2008년 6월까지 총 158회의 행사가 충남의 피해지역에서 개최되었는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태안군과 보령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행사 중 69.6%인 110개의 행사가 태안지역에서 개최되었고, 19.6%인 31개 행사는 보령지역에서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개최에 따른 참여 인원수를 보면 총 158회의 행사가 개최되는 동안 총 12,624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1.9%인 6,551명은 보령지역의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43.9%인 5,548명은 태안지역의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개최 횟수 대비 참여인원수를 살펴보면 보령지역의 경우 1회당 211명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행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태안지역의 경우는 1회당 50명이 참여하는 소규모의 행사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84) 주민 요구사항은 수산업 종합발전대책, 특별생계 지원대책, 도로·항만 등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책 등이었다.

<표 3-71> 피해지역 시·군별 행사개최 실적

구 분	개최 횟수	인 원	07.12	08.1	08.2	08.3	08.4	08.5	08.6
보 령	31(19.6)	6,551(51.9)	110	223	238	107	5,484	365	24
서 산	5(3.2)	92(0.7)	-	-	20	32	10	30	-
서 천	2(1.3)	38(0.3)	-	30	-	-	-	8	-
홍 성	4(2.5)	56(0.4)	40	-	16	-	-	-	-
태 안	110(69.6)	5,548(43.9)	364	980	767	1,679	876	812	70
당 진	6(3.8)	339(2.7)	14	20	250	40	15	-	-
합 계	158(100%)	12,624(100%)	528	1,253	1,291	1,858	6,385	1,215	94

3.2 전라남도

3.2.1 초동 대응 조치 및 방제활동 전개

전라남도 지역은 사고발생 후 약 20일이 지난 2007년 12월 27일부터 타르 형태로 유출유 유입 및 오염지역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유입경로를 보면 2007년 12월 27일 영광 안마도 북서 8마일 해상에서 최초 타르 덩어리가 발견된 이래 같은 해 12월 30일에는 신안군 및 무안군 연안과 도서지역 해안가에 타르가 유입되었다.

이에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당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전남지역 현장 지원반), 해양경찰청(남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무안군에 방제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방제작업 및 어장 보호 조치 등 사고수습에 돌입하였다. 구체적인 방제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타르 유입에 따른 지역주민 신고체제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방제인력의 운용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에 의한 본격적인 방제활동을 시작하였다.

전라남도는 2007년 12월 30일부터 방제작업을 시작한 이래 2008년 1월 31일까지 집중방제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약 50일 동안 방제 안정화 및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었다. 3개월의 방제작업 기간 동안 전라남도에서는 약 50개 지역에 유입된 타르덩어리를 모두 수거하였다.

<표 3-72> 전라남도의 긴급 대응 및 방제활동

일 자	활 동 내 용
2007.12.27	- 영광 안마도 북서 8마일 해상에서 최초 타르덩어리 발견 - 목포해양경찰서 신고 접수 - 지역주민 신고체제 구축, 방제인원 및 장비확보 - 자원봉사자 등 동원계획 및 안전교육 준비 - 양식어장 등 피해최소화 방안 강구
2007.12.30	- 영광군 3개 읍면 6개소 항내 및 해안가에 타르 유입 - 신안군 4개 읍면 6개소 항내 및 해안가에 타르 유입 - 무안군 해제면 해안가에 타르 유입 ※ 3개군 타르수거: 공무원, 주민 226명 동원 220kg 수거
2007.12.31	- 전라남도지사 타르방제 적극 참여 조치 - 무안군 방제대책상황실 설치·운영(방제구역 지정) - 무안, 영광, 신안군 해안가에 유입된 타르덩어리 대부분 수거완료 - 방제인원 1,766명, 타르덩어리 47,774kg 수거
본격적인 방제단계 2008. 1. 1.~31.	-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군장병 등 참여하에 본격적인 방제활동 전개 - 김 양식장 피해 합동조사 실시(KOMOS, ITOFF) 지원 - 전라남도 예비비 1억 원 긴급 방제 지원(1. 8) - 유류피해지역(영광, 무안, 신안, 진도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1. 8) - 전라남도 지사 방제현장(무안군 해제면 도리포) 방문(1. 8) - 전라남도 지사 방제현장(신안군 임자도 해수욕장) 방문(1.13) - 유류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영광, 무안, 신안군) 선포(1.18)
방제 마무리단계 2008. 2. 1 ~ 3.21	-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군장병 등 참여하에 유류오염지역별 방제 마무리 작업 계속 - 무안군, 영광군 방제작업 완료(3. 15) - 신안군 방제작업 완료(3. 21)

※ 자료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방제부문 백서 232p~238p 참조

3.2.2 피해조사 및 긴급생계안정 지원

전라남도는 관할지역내 연안 및 도서지역 시·군의 해안 및 양식장 등이 타르 유입으로 인해 김 양식장 및 마을어장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2008년 1월 18일 영광, 무안, 신안 등 전남지역 3개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오염해안에 대한 기본적인 방제조치에 이어 피해주민의 손해 배·보상 청구를 위한 피해입증자료 수집,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긴급생계안정지원 등

을 적극 추진하였다.

먼저 신안군, 무안군 관내 김 양식장 피해와 관련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의 지원하에 국제기금등의 조사기관인 ITOPI, KOMOS(한국해사감정)의 김양식장 피해 합동조사에 입회하여 김 양식 어업인들의 입장에서 조사 진행을 측면 지원하였고, 해양수산부 현장지원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수산물관리과)과의 협력 하에 어업인의 피해사실 입증에 위한 자료 수집방법 등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였다.

아울러 정부(해양수산부)에 긴급 생계안정자금 조기 배정을 요청(2008.1.25)하여 같은 해 1월28일자로 국고보조금(긴급 생계안정자금) 168억 원을 배정받은 다음 피해지역 3개 군 부군수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유형, 피해정도 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재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피해가구수가 가장 많은 신안지역에 배정액의 47.0%인 7,902백만원, 영광지역에 34.1%인 5,730백만원, 무안지역에 18.9%인 3,168백만원 등이 각각 배정되었다.

한편, 피해지역 시·군별로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결과 2008년 2월 13일 기준으로 전남지역 총 피해 가구 수는 8,400가구였으며, 이중 43.8%인 3,683가구는 신안, 37.5%인 3,151가구는 영광, 18.6%인 1,566가구는 무안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3> 시·군별 긴급생계안정자금 배분현황(2008.2.13 기준)

구 분	계	영 광	무 안	신 안	비 고
가 구 수	8,400(100%)	3,151(37.5%)	1,566(18.6%)	3,683(43.8%)	-
배정액(백만원)	16,800(100%)	5,730(34.1%)	3,168(18.9%)	7,902(47.0%)	-
지 급 액	3,366	1,587	1,146	633	20%

이렇게 전라남도에 배정된 긴급 생계안정자금은 타르 유입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중심으로 개인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였는데 그 기준은 어업의 종류(면허·허가어업, 신고어업), 양식어종의 종류와 시설 규모 등이 고려되었으며, 세부 지급기준은 마을어업과 맨손어업 170만원, 김 가공업 600만원, 김 양식업은 100책 미만 400만 원, 100~200책 미만 500만원, 200책

이상 600만원으로 양식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였고, 2008년 7월 8일 긴급생계안정지원금의 집행이 완료되었다.

무안군이 무신고 맨손어업인까지 지급완료 후 발생한 잔액 861백만 원을 전남도에 반납하기로 하여 전남도는 이 금액을 피해가 가장 큰 신안군에 재배정하여 신안지역 무신고 맨손어업인 550가구에 집행하였다.

<표 3-74> 시·군별 긴급생계안정자금 집행현황(2008.7.8 기준)

구 분	당초 배정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최종 배정액	비고
영 광	5,730	5,730(100%)	-	5,730	무안군 집행잔액은 신안군에 재배정 후 집행
무 안	3,168	2,307(73%)	861	2,307	
신안	7,902	7,902(100%)	-	8,763	

그러나 긴급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피해가 심한 김 양식업 및 가공업자 우선 신청 유도하여 즉시 지급하였지만, 맨손(신고)·마을어업의 경우 지급대상자의 대부분(70%)을 차지하나 실제 어업을 하지 않거나, 미거주자도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각 어촌계에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하여 지연되기도 하였다. 실제 무안지역의 경우 전체 어촌계(10개)에서 맨손 및 마을어업 대상자에게는 설 이전에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기도 하였다. 또한 신안지역의 경우 한꺼번에 일괄 지급시 피해가 없는 사람이 포함되었다는 마을내 분란이 예상되어 확실한 피해부터 지급한다고 지체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영광군 백수읍의 경우 총 241가구(맨손 181가구, 패류 등 허가 60가구)이나 1999년도부터 120억 원 상당의 ‘영광 원전’ 폐업 보상을 받은 150가구에서도 지원을 요구하였다.

또한 전라남도는 특별재난 제외지역에 대해서도 재해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원하였다. 예비비 지원 사유는 2008년 1월 18일 특별재난지역(무안, 영광, 신안) 선포시 재난지역에서 제외된 함평, 진도군에 대하여 전남도 예비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었다. 지원액은 총 646백만원으로 이중 진도군에 634백만 원을 지원하여 타르가 유입된 마을공동어장 3,168ha의 관리사업비로 지원하였고, 함평군에는 12백만 원을 지원하여 타르 피해를 크게

입은 김 양식피해 3개 어가에 생계지원금으로 지원하였다.

그리고 전국 재해구호협회의 국민성금 지원액 1,039백만 원을 생계비 지원율에 따라 영광 354백만 원, 무안 197백만 원, 신안 488백만 원을 지원하여 집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신안군은 긴급생계안정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무신고 맨손어업인 2,937세대에 대해 집행완료 후 부족액을 재해구호성금으로 지급 완료하였고, 무안군은 타르피해를 입은 김양식 어업인 75어가(시설량 11,575책)에 책당 17,020원씩 지급 완료하였다. 영광군은 긴급생계안정자금 집행완료 후 저소득층 어업인에 대하여 생계안정대책으로 재해구호성금을 집행하였다.

3.3 전라북도

3.3.1 사고초기 대응 및 도서지역 방제활동

전라북도는 2007년 12월 7일 사고 당일 충청남도 태안군에 전라북도 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사고 초기부터 오염피해의 확대를 예의 주시하였다. 전라북도 지역은 사고발생 후 약 10일 정도 지난 2007년 12월 16일부터 군산시 연도 북서방 2~3km 해역에 최초로 타르가 유입된 이래 계속 남하하였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유입되는 유출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출유의 확산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주요 민감 해역 및 양식장에 차단막을 사전 설치하였다. 이후 전라북도는 새만금 매립지 주변해역 및 부안군 해안, 고군산열도, 위도주변 도서지역 등에 유출유가 유입됨에 따라 적극적인 해안방제를 수행하였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유입된 유출유가 타르화된 양상을 보임에 따라 타르화된 유출유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타르 제거 및 회수방법이 적용되었다. 전라북도는 사고발생 약 10일 후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약 4개월 보름동안 방제작업이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관내 모든 지역의 방제를 완료하였다.

<표 3-75> 전라북도의 긴급대응 및 방제활동

일 자	활 동 내 용
2007.12.7	● 충남 태안군에 전라북도 대책상황실 설치·운영
2007.12.8 ~ 12.19	● 군산관내 도서지역 및 유류오염현장 시찰 ● 유류오염관련 재난안전대책 회의 - 유흡착제 100박스 예비비 구입 ● 유류오염 관련기관 대책 협의회 ● 유류오염관련 피해최소화 수습 종합대책회의 ● 개야도, 연도, 십이동파도, 말도 방제작업 ● 어장보호용 차단막 설치(개야도, 선유도)

※ 자료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방제부문 백서 227p~231p 참조

3.3.2 피해조사 및 긴급생계안정단계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라북도는 지역이미지 훼손 및 수산물 소비감소 우려가 있다는 관련단체 및 지자체의 의견을 고려하여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피해지역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도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08.5.26)하였고, 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만을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그 결과 전라북도의 경우는 전라남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부지원을 많이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⁸⁵⁾, 또한 전라북도 자체 예산으로도 피해지역(군산시, 부안군)에 지원한 별도의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공공 및 민간단체

4.1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4.1.1 지원활동 개요

수산업협동조합은 사고초기 방제활동 지원을 시작으로 어업인 피해배상 청구

85) 실제 전라남도는 지원을 받았으나, 전라북도가 지원받지 못한 중앙정부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보험료 체납금·가산금 면제, 국민건강보험 3개월간 보험료 경감, 생계안정자금 등이었다.

활동 지원, 피해어업인 금융지원 대책 시행, 유류사고관련 어업인 피해대책 T/F팀 구성·운영, 유류오염피해구제자금 운용, 유류오염사고 손해보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다음과 같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활동을 수행하였다.

<사고 초기 대응 및 방제활동 지원>

- ① 유류오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활동 참여
 - 수협중앙회 회장 등 임직원 사고현장 및 유출상태 확인방문('07.12.8)
 - 수협중앙회 회장 외 직원 150명의 방제활동 시작('07.12.9)으로 12월 27일까지 중앙회 및 회원조합 임직원 등 약 2,700명 참여
 - 방제활동 부족물자 지원(양동이, 삽, 장화 등 약 2,200만원 물품 지원)
 - 중앙회 회장 타르볼 피해지역 현장순시
 - 일자 및 장소 : 2008년 1월 21일/전라남도 무안군, 신안군 피해 어촌계
 - 내 용 : 피해지역 어촌계 피해현황 점검 및 피해 어업인 면담·격려
 - 중앙회장의 임직원 186명 방제활동 실시('08.3.15)
- ② 피해복구 및 방제활동 지원체제 구축
 - 대책반 및 실무 운영반 운영
 - 상황반, 배상청구 지원반 등으로 구성 어업피해대책 수립 및 지원
 - 방제 작업 지원 현장지원반 운영(서산, 목포)
- ③ 유류사고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 해양수산부, 해경, 해양오염관리공단(방제조합) 등 유류사고관련 유관기관과의 피해배상관련 각종 회의 및 협의를 통하여 협조체제 구축

<어업인 손해 배·보상 청구 지원>

- ① 손해 배·보상 청구 현장 지원반 구성·운영(3개 반, 10명)
 - 서산, 서천, 목포지역에 설치, 어업피해 상담 및 배상제도 설명, 법률자문단 구성 피해보상 청구관련 법률 조언 등
- ② 유류오염 피해조합 피해배상추진대책 설명회 개최(총 5회, 14개 조합)
 - 서베이어 선임, 오염손해 조사방법, 증거보전 관련 설명 등

- ③ 피해배상 청구추진을 위한 피해대책위원회 구성 지도
 - 2008년 2월 1일 현재 피해지역 14개 조합 피해대책위원회 구성
- ④ 어업피해 조사를 위한 전문가 선임 지도
 - 국내전문 감정기관 및 해상사고 전문 로펌 5곳 추천
 - 서베이어 선임관련 절차 및 계약서 작성 지도 등
- ⑤ 손해 배·보상을 제고를 위한 어업인 지도활동 강화
 - 어업피해 증거자료 수집에 관한 피해조사지침 제작·배포(650부)
 - 유류오염사고 배상제도 안내 핸드북 제작·배포(1,300부)
 - 유류오염사고 배상절차 설명 팸플릿 제작·배포(3,000부)
- ⑥ 어업피해 입증을 위한 유류오염 해역 비디오 촬영(홍보실)
- ⑦ IOPC 사무국장 “Willem Oosterveen” 기자회견 주관 및 질의서 전달
 - 본회 2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 주관 및 어업인 질의서전달('08.1.17)
- ⑧ 국제기금(IOPC Fund)과의 접촉을 통한 적절한 보상추구
 - 제40차 IOPC Fund 집행위원회 대비 제1차 사전대책회의 참석('08.2.12)
 - 제40차 IOPC Fund 집행위원회 대응 워크숍 참석('08.2.18)
 - IOPC Fund 집행위원회 개최 관련 주한 외교관 초청 사전 설명회실시 (해양수산부 공동개최)('08.2.29)
- ⑨ 유류유출사고에 따른 어업피해배상 실무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8.3.17 14:00~17:30/중앙회 2층 강당
 - 참 석 자
 - 중 앙 회 : 상임이사, 회원경영지원부장 및 유류T/F팀원
 - 회원조합 : 군산시, 당진, 영광군, 목포, 신안, 서면, 태안남면, 보령, 신흥, 안면수협 지도 상무 및 지도과장 10명

<금융 및 정책 지원 강화>

- ① 피해 어업인 공제보험지원 대책 시행
 - 지원대상 : 어선원보험 가입조합 또는 선적항이 특별재난지역인 보험가입자
 - 주요내용

- 2008년도 보험료 납입기일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유예
-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체납 보험료 납입시 연체금 면제
- 체납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경·공매 등 강제집행 유예

② 방제어선에 대한 면세유 지급

- 지원 대상 : 사고지역 관내 수협 방제어선
- 지원절차 : 해당조합의 요청에 따른 본회 자재사업부의 지급승인 후 지급
- 주요내용 : 방제작업 종료시까지(휘발류 100ℓ/1일, 경유200ℓ/1일)

③ 피해 어업인 금융지원 대책 시행

- 지원 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의 피해 어업인
- 주요내용
 - 피해율에 따라 1~2년간 영어자금 상환일 연기 및 이자감면
 - 영어자금 회수유예기간 설정(2007.12.01 ~ 2008.12.06)
 - 특별영어자금 지원(규모 : 100억원, 기간 : 1년간, 이자율 : 3%)

④ 피해어업인 지원을 위한 성금계좌 개설

- 수협 전 조직 및 수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모금 실시
 - ※ 2008년 2월 4일 : 14개 조합에 성금 일부 지원(490백만원)
- 모금활동을 위한 “기부금 모집단체” 등록
 - 등록일자 : 2008.2.27/계좌번호 : 026 - 01 - 192788 (수협중앙회)

⑤ 유류오염피해구제자금 운용 세부지침 개정(2008.2.1)

- 주요개정내용
 - 구제자금 지원한도 증액(6억원 ⇒ 소요자금 범위내)
 - 회원조합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근거 신설
- ※ 유류오염피해구제자금 조성액 : 4,776 백만원

⑥ 전남도 영어자금 지원 세부지원기준 시행('08.2.5)

- 대상 : 추가 특별재난지역(신안·영광·무안군) 피해어업인
- 주요내용
 - 특별영어자금 지원, 영어자금 회수유예 승인
 - 영어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감면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

- ① 정부 등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건의(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등)
 - 유류피해관련 금융지원대책 건의
 - 공제보험관련 2008년도 어선원보험료 납입유예, 기존 체납보험료 연체금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
 - 정책금융관련 특별영어자금 지원 및 영어자금 회수유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지원 등
 - 서베이어 선임비용 지원 협조요청
 - 피해조사를 위한 서베이어 선임 용역비 정부지원 협조요청
 - 어업인 단체(수협 등)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 어업인의 대표기관인 수협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요청
 - 주요 금융기관 피해어업인 지원대책 협의
 - 일자 및 장소 : 2008년 1월 23일/재경부
 - 주요내용 : 지자체의 “피해사실 확인서” 징구 없이 금융지원 신속화 방안 논의
 - 피해어업인 지원관련 대책 협의
 - 일자 및 장소 : 2008년 1월 27일/해양수산부
 - 주요내용 : 특별 생활안정자금 지원 마련 방안
- ② 삼성중공업 및 대통령직 인수위 방문, 요구서 및 건의서 제출
 - 중앙회 회장 및 피해지역·업종 조합장(20명) 삼성중공업 항의방문·어업인 요구서 제출
 - 중앙회 상임이사 및 피해지역 조합장(7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방문·어업인 건의사항 제출('08.1.10)
- ③ 국회 관련 어정활동 추진
 - 태안 해양오염 실태 분석 및 대책토론회 참석('08.1.16)
 -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대책 특위 구성 및 회의 참관('08.2.13)
 - 유류사고 관련 지원특별법 공청회 참관('08.2.18)
 -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 이송('08.2.22)
- ④ 유류사고관련 지자체와의 협력
 - 전남지역 피해보상 추진방안 협의('08.1.16/전남도청)

- 주요내용 : 조합별 보상추진 현황 설명 및 보상추진관련 지자체 협조요청
- 피해지역 조업재개 관련 민관합동 실무협의('08.1.22, 2.28)
- 주요내용 : 유류피해지역 연근해 및 양식어업 조업재개 여부 협의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성금 모금 지원>

- ① 공영방송을 통한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
 - KBS 1TV 특별 생방송(방송제목 : 『100일의 희망, 태안을 살립니다』)
 - 방송일시 : 2008.3.3. 10:00~12:00(1부), 17:15~19:00(2부)
- ② 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실시(2008.3.3. 10:00~19:00/노량진수산물시장)
 - 피해지역 수산물의 안전성 및 소비촉진 홍보, 고객 무료 증정품 행사
- ③ 성금모금을 위한 예금 상품 판매(예 금 명 : 『트리플크라운 예금』)
 - 주요내용 : 2008.3.1~2008.7.31 기간중 500만원 이상 정기예탁금의 0.03% 해당액을 조합 및 중앙회 부담으로 기금 조성

4.1.2 유류오염사고 손해보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토해양부와 수협중앙회는 특별법에 따른 대부금 및 대지급금 지원과 관련하여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2008년 6월 13일 체결하였다.

유류오염 피해보상지원관련 정부자금 관리지침에 근거한 업무협약체결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한도초과보상금을 포함한 대부 및 대지급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관한 업무, 대부금 및 대지급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대부 및 대지급 업무를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 중에 있다(<부록 10> 수협업무협약서).

4.2 해양환경 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당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방제전문기관으로서 유류 오염사고의 대응에 있어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상방제 및

해안방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환경부와 함께 방제작업에서 수거된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4.2.1 사고 대응 및 방제활동 지원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사고 직후인 2007년 12월 7일 07시 45분 대동항업으로부터 사고를 접수하여 대산지부 전 직원을 비상소집하고, 본부에 사고상황을 접수하였다. 이후 08시 00분 태안해양경찰서로부터 방제작업 요청을 받고, 08시 45분 대산지부 소속 황금산호를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본사에서는 08시 50분 이사장 주관의 긴급 방제대책회의가 소집되어 방제상황실 및 방제지휘본부가 구성되었다. 방제지휘 본부 구성 이후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는 전국 지부의 방제세력을 총동원하였으며, 한국해양방제사업자 협회를 통하여 전국 민간방제업체의 총동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는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에서 예측한 유출유 확산예측 결과를 토대로 태안군에 해안방제작업 사전 준비를 요청하였으며, 해안방제작업을 위한 유출유의 해안유입을 조사하고 해안방제 계획을 수립하였다. 사고 다음날인 2007년 12월 8일 새벽 02시 00분 만리포 해수욕장에 유출유가 유입되는 것을 시작으로 학암포, 천리포 등의 해수욕장에 유출유가 유입됨에 따라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는 해안오염조사와 함께 해안방제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는 가로림만으로 유출유의 추가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가로림만을 비롯한 환경민감해역에 오일펜스를 설치하였다. 이후 사고 진행에 따라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는 해상방제를 수행하면서 해안방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사고접수 및 초동대응 조치에 이어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본격적인 방제활동은 긴급방제단계('07.12.11~17), 방제 확대 단계('07.12.18~'08.1.8), 방제 안정화 단계('08.1.9~31), 장기 전문방제 및 마무리 단계('08.2.1~10.10) 등의 4단계로 진행되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유류오염사고 발생 직후부터 해상방제 및 해안방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해상방제는 해양경찰청과, 해안방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수행하였다. 또한 해상 및 해안의 방제 마무리를 위하여 도서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해안방제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방제작업에 따른 폐기물 수거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유류오염사고의 대응에 있어 해상방제, 해안방제, 폐기물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 3-76>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조치 실적

구 분		방제조치실적		
		계	해상	해안
폐기물수거량	액상(kℓ)	2,570	1,562	1,008
	고상(톤)	1,337	266	1,071
* 오일붐(펜스)전장(m)		68,461	11,971	56,490
유회수기(대)		268	152	116
인력동원(명)	조합	10,100	3,384	6,716
	주민	49,568	1,261	48,307
	계	59,668	4,645	55,023
선박동원(척)	방제선 등	1,097	731	366
	어선	1,940	135	1,805
	계	3,037	866	2,171
유처리제(ℓ)		18,406	7,448	10,958
유흡착제(kg)		58,799	12,715	46,084

※ 오일붐(펜스)전장(m)은 1일 사용량 기준으로 한 총 누계임.

4.3 국립공원관리공단

4.3.1 초등대응 조치 및 방제활동 지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로 인해 국립공원 생태계가 훼손됨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사고초기 초등대응에서부터 잔존유류 제거작업까지 방제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사고초기 태안해안국립공원 사무소는 사건접수 이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상황보고를 하고 초기 방제업무를 지원하였다.

<표 3-77> 일자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조치사항

일시	활 동 내 용
2007년 12월 7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 상황보고 후 전 직원 비상 근무 실시
2007년 12월 8일	- 유류유출 사고에 따른 자체 업무분장 -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방제물자 수령 후 초동방제 작업 실시
2007년 12월 10일 ~2008년 1월 2일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금강유역환경청, 대한조수류보호협회 합동 야생동·식물 보호 대책반 구성·운영
2008년 2월 28일 ~2008년 12월 12일	- 지역주민고용 생태계복원사업 실시 - 1, 2, 3차 사업 · 사업장소 : 태안해안국립공원 전지역 · 고용인원 : 32,493명 · 소요예산 : 2,183백만원 - 4차 사업 · 사업장소 : 화창도, 능배도, 장고도, 고대도, 닭섬, 외파수도, 태배, 고깔섬 등 8개 도서 지역 · 고용인원: 7,032명 · 소요예산: 1,750백만원
2008 10월 3일 ~2008 12월 12일	- 방제 및 해양 유류오염 쓰레기 수거사업 - 수거량: 200톤 - 소요예산: 136백만원 - 고용규모: 연인원 3,500명

4.3.2 주요 지원활동 실적

가. 주민지원사업

방제작업시 식사조달이 어려운 무인도서의 자원봉사자 및 지역주민에게 간식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립공원이 주민과 함께 한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

해 총 38회, 1,400만원의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나. 임시방제도로 관리

방제도로 개설로 인해 훼손된 국립공원내 산림지역에 대한 산사태 등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비인력을 고용(87명)하고, 통제시설 설치(17개소) 하는 등 2,000만원을 지원하였다.

다. 야생조수류 보호

- 목적 :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야생조수류 구제
- 구성 :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등 3개 기관
- 기간 : 2007. 12. 10~2008. 1. 2(24일간)
- 구조 : 뿔논병아리 등 34마리

라. 태안해안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2008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75명이 참여하여 유류사고로 침체된 태안지역의 탐방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태안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마. 유류오염 역사자료 수집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심각한 환경피해를 알리고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과정을 후손들에게 전시·교육함으로써 바다와 자연에 대한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오일붐, 방제복, 흡착포 등 50여종의 유류오염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 선박파견 및 방제장비 투입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는 방제활동 지원기간 동안 선박파견과 유흡착제, 오일펜스, 유처리제에서 부터 마대, 장갑, 작업복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제장비·자재를 투입하여 방제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표 3-78> 국립공원관리공단 선박파견

구분 선박	파견기간	운행일수	비고
계		25일	
301호	2007.12.14 ~ 2007.12.26(13일)	8일	다도해
302호	2007.12.14 ~ 2008.1.4(22일)	15일	다도해서부
101호	2007.12.28 ~ 2008.3.19(83일)	14일	한려동부

<표 3-79> 방제장비 투입현황

구분	유흡착제 (kg)	오일펜스 (m)	흡착분 (m)	흡착물 (m)	유처리제 (kl)	마대 (개)	장갑 (켈레)	작업복 (벌)	장화 (켈레)	고압세척기 (대)	기타 (개)
전일누계	7,500	420	1,527	2,515	0.44	24,800	4,616	19,361	1,019	740	15,689

4.3.3 본격방제활동 지원

유류사고 이후 범국가적인 초등방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안지역 요소요소에 잔존유류 산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양식장 인근 잔존유류로 인해 지역주민의 양식어업의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초등대응 조치 이후 총 4차 12회에 걸쳐 본격적으로 방제활동을 지원하였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유흡착제, 오일펜스, 유처리제에서부터 마대, 장갑, 작업복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제장비·자재를 투입하여 방제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표 3-80> 방제활동 단계별 주요조치 현황

구 분		지급금액(원)	기 간	사역연인원(명)
계		3,932,267,950		39,525
1차	1회	69,730,000	2.28~3.7	1,118
	2회	95,750,000	3.10~3.19	1,523
	3회	82,910,000	3.20~3.28	1,321
	4회	94,300,000	3.31~4.11	1,504
2차	1회	243,050,000	5.2~5.16	3,817
	2회	74,310,000	5.13~5.23	1,141
	3회	307,890,000	5.19~5.30	4,821
3차	1회	565,820,000	6.16~6.27	8,062
	2회	649,020,000	6.19~7.9	9,186
4차	1회	395,853,500	10.6~10.31	1,040
	2회	1,012,743,950	11.1~11.30	4,583
	3회	340,890,500	12.1~12.14	1,409

4.4 기타 민간단체

4.4.1 농협중앙회

유류오염사고 이후 농협중앙회는 태안반도 재난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중앙회여신, 공제, 상호금융대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특별지원, 복구인력 및 경비지원 등의 노력을 실행하였다.

가. 중앙회 여신

□ 신규여신 특별지원('07.12.12)

○ 지원금액 : 1,000억원(필요시 증액예정)

○ 지원대상 : 행정관서에서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재해지역의 피해농업인, 어업인, 주민 및 중소기업

- 대출기간 : 최장 15년
- 대출금리 : 일반고객금리 수준보다 0.5%p 우대(C2 자금은 1%p 추가우대)
 - 담보대출 : 6.67%(CD+1.0%p)~7.17%(CD+1.5%p)
 - 신용대출 : 7.67%(CD+2.0%p)
- 1인당 지원한도
 - 가계자금 :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최고 3천만원
 - 기업자금 :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
- 우대조건 : 신규대출 취급시부터 6개월간 이자납입유예
- 기존대출 : 원리금 납입유예 및 기한연기
 - 원리금납입유예 : 6개월간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 특별 기한연기 : 채무자의 신용등급에 불구하고 기한연기
- 여신관련 수수료 면제 : 여신관련 수수료 면제(외부기관 지급수수료 제외)

<표 3-81> 지원실적(2007.12.12~2008.2.21)

(단위: 백만원)

구분	피해대책신규(대환포함)		만기연장		납입유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지원실적	5	430	13	1,479	118	33,154

나. 공제

- 「공제료납입유예기간」 연장('07.12.11)
 - '08. 12. 31까지 공제료 납입유예기간 연장
 - 부활연체이자 면제
- '08. 12. 31까지 부활하는 계약은 동 기간 중 발생하는 부활연체이자 면제
- 공제대출 이자납입유예 및 기한연장
 - '08. 6. 30까지 대출이자 납입유예

- '08. 6. 30까지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계좌에 한하여 1년간 기한연장

다. 상호금융대출

☐ 대출금 기한연기('07.12.13)

- 지원대상 : 행정관서에서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재해지역의 피해농업인
- 지원내용
 - 특별기한연장 및 재대출
 - 이자납입 6개월 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

☐ 대출관련 수수료 면제

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특별지원

☐ 농어업재해대책 보증대상 확대('07.12.27)

- 재난에 의거 피해를 입은 농림수산업자도 동 보증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3억원
- 신용조사방법 : 간이신용조사(1억원 이하는 금융기관 위탁발행)
- 보증료 감경 : 최저 보증료율 적용(개인 : 0.5%, 법인 : 0.7%)

마. 복구인력 및 경비지원

☐ 복구경비 지원 : 5억원

- 피해지역 주민지원 : 4억원
- 피해복구 장비지원 : 1억원

☐ 복구를 위한 직원 노력지원

- '07. 12.11~ 충남지역 임직원 주당 1,000명
- '07. 12.17~ 중앙본부 직원 200명

4.4.2 신용보증

수산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 외에 신용보증에서도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농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물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적인 지원활동을 수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용보증기금

☐ 대상기업

- 일반보증신청의 경우에는 일반보증과 동일하게 운영
- 특례보증의 경우에는 원유유출 간이피해사실확인서⁸⁶⁾를 발급받은 ① 수산물가공업, ② 수산물유통업, ③ 수산물 관련 운송업(냉장·냉동업포함)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보증한도

- 일반보증신청의 경우에는 일반심사와 동일하게 운영하되, 특례보증의 경우에는 기존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3천만원 이내
- ※ 기보, 보증재단으로부터 재해복구자금을 받은 기업 제외

나. 충남 지역신용보증재단

- ☐ 태안지역 재난의 경우,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음식업, 여관업 등에 2천만원을 한도로 특례보증 시행

다. 농신보

- ☐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방법」에 의하여 운용

☐ 보증대상자

- 농신보 보증대상자 중 재해대책관련법령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등에

86) 특별재해지역내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 피해자(대책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이장을 경유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장조사 등 피해사실규모 파악 없이 읍·면사무소에서 확인(법적효력 없음)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재해농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단체(법인포함)로 선정된 자

○ 보증대상자 확인

-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피해확인서(또는 재해복구자금배정서)에 의하여 피해 농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단체 확인

○ 보증대상자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단체에게 지원하는 농어업관련 재해대책 자금
- 금융기관이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단체에게 지원하는 농어업관련 재해대책자금

○ 지원범위 : 업체당 3억원 이내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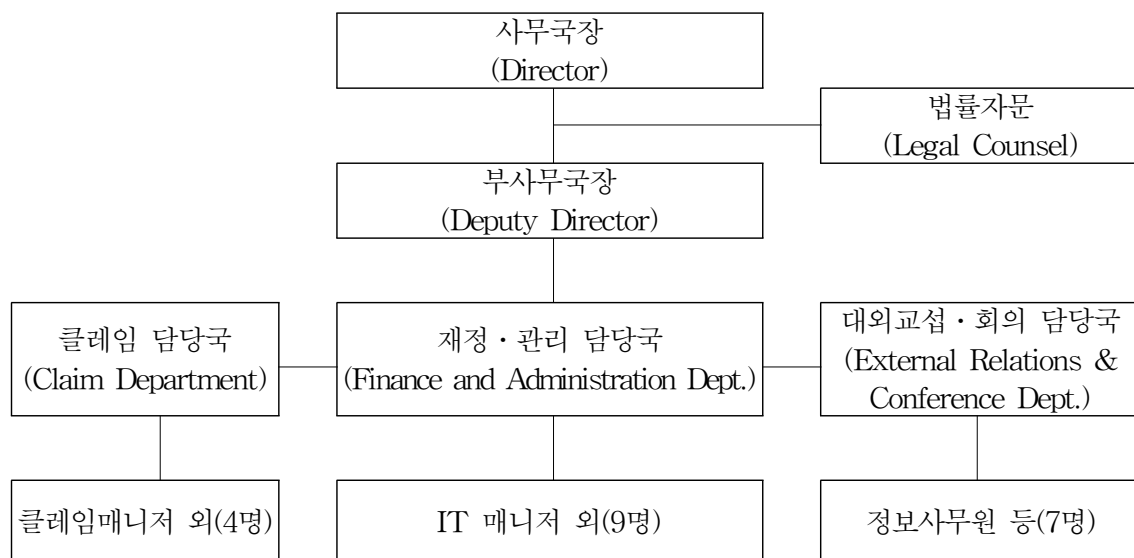
제 4 장 피해보상 국제협력 대응

제 1 절 IOPC Fund 회의대응

1. IOPC Fund의 조직 및 기능⁸⁷⁾

IOPC Fund의 조직은 크게 ①총회(assembly), ②사무국(secretariat headed by a director), ③집행이사회(executive committee)의 3가지로 구성된다.

1971년 국제기금협약은 제16조에서 총회, 사무국, 집행이사회를 규정한 뒤 제21조 내지 제27조에서 집행이사회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었다. 한편,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서는 집행이사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총회와 사무국만 규정하고 있다.⁸⁸⁾ 그러나 보상청구 업무를 위해서는 집행이사회의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18조 제9호⁸⁹⁾에 근거하여 집행이사회를 설립하였다.



<그림 4-1> 92FC 사무국 조직도

87) 국토해양부, IOPC FUND 업무 가이드북, 2009. 12.

88) 2003년 추가기금협약상 국제기금 회의조직도 총회와 사무국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1항).

89) 1992년 국제기금은 총회에 대해 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 또는 상설 보조기관(subsidiary body)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1.1 총회

가. 총회의 구성

92FC의 총회는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가입한 체약국 전부로 구성되는데, 2009년 12월 현재 92FC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필리핀, 노르웨이 등 103개의 체약국으로 구성되어 있다.⁹⁰⁾

나. 총회의 기능

1992년 국제기금협약 제18조 제1항 내지 제14항에서는 총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회의 중 차기 정기회의시까지 직무를 수행할 의장 및 2명의 부의장 선출, ② 총회 자체의 의사규칙(rules of procedure) 결정, ③ 기금의 고유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규정(internal Regulation) 채택, ④ 사무국장(director) 임명, ⑤ 연간예산 채택과 연차 분담금 결정, ⑥ 감사 임명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 승인, ⑦ 기금에 대한 청구의 정산승인, 보상금의 청구권자간 배분 결정, 신속한 보상을 위한 가지불 조건 결정, ⑧ 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 또는 상설 보조기관(subsidiary body)의 설립, ⑨ 총회 또는 보조기관의 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가 허용되는 비체약국의 결정, ⑩ 기금의 운용과 관련 사무국장 및 보조기관에 대한 지시, ⑪ 협약 및 총회 결정의 적절한 집행여부 감독, ⑫ 총회에 부여되거나 기금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기능수행 등이다.

다. 총회의 종류

총회는 매년 1회 사무국장이 소집하는 정기회의(regular session)와 총회 회원국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국장이 소집하거나, 총회 의장과 협의를 통하여 사무국장이 발의하여 소집되는 임시회의(extraordinary session)가 있다(제19조). 임시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국장은 회원

90) 2010년 4월 24일에 시리아(Syrian Arab Republic)가 체약국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체약국 수는 104개국이다.

국에 대하여 회의 30일 전까지 임시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총회는 원칙적으로 공개(public)회의가 원칙이지만, 특정한 회의 등 경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일부를 비공개(private)로 할 수도 있다.⁹¹⁾

라. 의사결정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회원국의 과반수로 하고(제20조), 협약의 각 회원국은 1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제32조 a호), 출석 및 투표한 회원국의 과반수로 의결한다(제32조 b호).

다만, 제13조 제3항에 따라 분담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치를 지속하지 않도록 하는 결정, 사무국장의 임명, 보조기관의 설립 및 그 설립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출석 및 투표한 회원국의 3분의 2로 의결한다(제33조).

마. 행정이사회

협약의 회원국 수가 증가함에 따라 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총회의 의사결정에 장애를 초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제7차 총회에서는 행정이사회(administrative council)제도를 도입하여 소집된 총회의 의사정족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대신하여 행정이사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1.2 집행이사회

가. 집행이사회의 구성

1992년 국제기금협약은 집행이사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언급한 바와 같이 보상청구를 다루기 위하여 1971년 국제기금에서의 집행이사회와 같은 기구를 둘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보상청구를 다루기 위하여 설립한 보조기관이다.

91) Rules of Procedure for the Assembly of the IOPC Fund under the 1992 Fund Convention, Rule 12.

집행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15개국으로 구성되고⁹²⁾, 집행이사국은 매년 1회씩 경신하는데, 그 임기는 최대 2년으로 하고 있다(92FUND/A/FS.1/22; 92FUND/A.2/29).

나. 집행이사회 기능

집행이사회 기능⁹³⁾은 ① 국제기금협약 제18조 제7항에 규정된 기금에 대한 청구의 정산 승인, 보상금의 청구권자간 배분 결정, 가지불 조건의 결정 등에 관하여 총회를 대신하여 결정, ② 보상청구와 관련된 원칙의 새로운 문제점들과 일반정책의 의문점 및 1992년 국제기금이 개입된 사고들의 처리절차에 대한 고찰, ③ 내부규정에 따라 사무국장에게 부여된 청구의 최종 해결(합의)사항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④ 사무국장에게 요청되는 보상을 위한 청구의 처리와 관련된 지시 제공, ⑤ 중요한 의제 등에 있어서 집행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회에 대한 자문제공 등이다.

다. 집행이사회 소집

집행이사회는 최소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는데, 집행이사회 소집은 사무국장이 발의하거나 의장 또는 회원국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국장이 소집하게 된다.⁹⁴⁾ 대체로 집행이사회는 3월과 6월, 그리고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10월 등 연 3회 소집·개최되고 있다.

라. 의사결정

집행이사회 의사정족수는 집행이사회 회원국의 3분의 2로 한다.⁹⁵⁾

92) 2009년 현재 집행이사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홍콩, 리베리아, 스웨덴, 사이프루스, 필리핀, 트리니다드토바고, 프랑스, 카타르, 영국, 인도, 우루과이 등 15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008 및 2009년도에 집행이사국이었으므로 2010년에는 임기만료로 집행이사국에서 제외되었다(2009년 10월 회의). 2010년 집행이사국에는 2009년 집행이사국 캐나다, 스페인, 홍콩, 리베리아, 스웨덴, 사이프루스, 필리핀, 트리니다드토바고, 프랑스, 우루과이에 카메룬, 독일, 싱가포르, 일본, 네덜란드가 집행이사국으로 추가 되었다.

93) 92FUND/A.2/29 _ ANNEX I _ Resolution N°151 - Establishment of the Executive Committee.

94) Rules of Procedure for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IOPC Fund under the 1992 Fund Convention, Rule 2.

1.3 사무국

국제기금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되고(제28조 제1항), 사무국은 영국(런던)에 소재하고 있다.

동 사무국에서는 71FC와 92FC, 그리고 2003 추가기금에 관한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사무국장은 국제기금을 대표하고(제2조 제2항 및 제28조 제2항), 국제기금의 수석 행정직원으로 국제기금협약과 기금의 내부규정 및 총회가 부여한 기능을 수행한다(제29조 제2항).

사무국장은 ①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임용, ② 기금자산의 적정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의 채택, ③ 국제기금협약에 따른 분담금의 징수, ④ 필요한 범위 안에서 기금에 대한 청구의 처리 및 기금의 그 밖의 기능 수행, ⑤ 내부규정(Internal Regulations)에 따라 총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청구의 최종 해결, 내부 규정상의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기금에 대한 청구를 처리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의 채택, ⑥ 연차 재정보고서 및 예산개요의 작성 및 총회에 대한 제출, ⑦ 총회의 의장과 의 합의 하에 전년도 기금의 활동보고서 작성 및 발간, ⑧ 총회 및 하부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서류, 문서, 의제, 의사록 및 자료의 작성, 수집 및 배포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2. IOPC Fund 회의 대응 및 결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의한 손해 배·보상은 유조선 선주와 국제기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바, 유조선 선주 및 국제기금의 보상기준 및 내용은 각각 92CLC 및 92FC에 규정되어 있다. 유조선 선주 및 국제기금은 각각 다른 손해 배·보상 주체이지만 대부분의 손해 배·보상원칙이 국제기금(IOPC Fund) 회의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오염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국제기금(IOPC Fund) 회의에서의 결정사항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국제기금(IOPC Fund) 회의

95) Rules of Procedure for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IOPC Fund under the 1992 Fund Convention, Rule 42

에 만반의 사전 준비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2007년 12월 7일 사고 이후 2009년 12월 31일까지 총회 4회(제13차·제14차 총회 및 임시총회)와 집행이사회 8회(제40~47차 집행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정부는 매 회의 전에 국내에서 정부 담당자 및 전문가 그룹이 모여서 사전 대책회의를 갖고 우리 정부 대표단이 제시할 안건 및 대응자료에 관하여 논의하고 본회의에 대비하였다. 또한 회의에는 정부 담당자(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 뿐만 아니라, 현지의 정부 주재원, 전문가, 피해자 대표 등 가능한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식 회의에서는 대표 발언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전 준비한 자료(홍보동영상, 프리젠테이션)를 이용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사고 내용, 방제노력(자원봉사자 100만 이상의 방제노력 포함), 환경피해 및 복구정책, 피해규모 및 정도, 생계의 곤란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조속하고 합리적 피해보상의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가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국제기금(IOPC Fund)의 담당 직원들과는 비공식 회의를 자주 가지면서 공식회의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실무적인 사항(손해 배·보상 절차 신속화 방안, 손해 배·보상 청구 등에 관한 국제기금과 정부간 전산정보 공유절차, 민간 방제비용 조기 지급, 관광분야 소득추계적용 방안 등)에 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으로써 피해주민에 대한 손해 배·보상과정에서의 실질적인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우리나라 대표들은 국제기금의 주요 회원국가와의 접촉을 통해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피해보상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지할 것을 호소하고 이해를 구했다.

그동안 개최되었던 국제기금회의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제40차 집행이사회

-
- 일시/장소 : '08.3.11~3.14 / 모나코
 - 참가 인원 : 53개국 145명/정부·비정부 기구 50명
 - 정부 대표단 : 17명(민간자문 10명 포함)
-

2008년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국제기금(IOPC Fund) 제40차 집행이사회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이후 첫 번째 국제기금의 회의로서 회원국가들에게 동 사고의 규모와 피해의 심각성, 피해주민들의 생계의 곤란, 한국정부 및 국민들의 방제노력 등을 알리는 중요한 회의였다.

정부 대표단은 집행이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기금 직원들과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동 사고의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대응하였고 또한 주요 회원국들의 대표단과 접촉을 통해 피해보상관련 지원을 당부하였다.

2.1.1 집행이사회

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보고

2007년 12월 7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후 약 3개월 후에 국제기금의 첫 회의가 열렸다. 따라서 그동안 대부분의 회원 국가들은 동 사고에 대해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사무국장⁹⁶⁾은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동 사고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사무국장은 동 사고로 인한 피해규모의 추정치는 3,520~4,240억원이며, 집행이사회가 피해보상 지급률을 60%로 결정해 줄 것과 보상금 지급사무를 사무국장에 위임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피해규모의 추정치 3,520~4,240억원은 피해주민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정부 대표단은 사무국장이 피해 사정액 규모가 92CLC 및 92FC의 보상한도인 3,000억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회원국에게 강조하는 의미로 이해하고, 현재 피해신청이 완료되지 않았고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피해액을 추정하기 곤란한 점을 지적하고, 총 피해액 추정규모는 초기지급률 산정논의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무국장의 추정피해액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였다.

사무국장에 이어 우리나라는 사전에 문서로 제출한 사고현황에 대한 의제 문서를 설명하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의 피해현황, 방제활동 및 피해복구 등에 관한 동영상 상영하였다.

이어서 네덜란드, 이탈리아, 알제리, 프랑스, 캐나다,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등

96) IOPC Fund 사무국장 : Wilem Oosterveen(네덜란드 법무부 출신).

은 동영상을 통하여 이번 사건이 대규모 유류오염사고로서 피해상황과 피해주민의 어려움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나. 피해보상 지급률 결정시기에 관한 논의 및 결과

사무국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제시하며 피해보상 지급률이 조기에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피해 조사와 청구가 초기단계이므로 추정 피해액(3,520~4,240억원)이 불완전한 추정치이지만 피해주민의 고통 경감을 위해 신속한 보상이 필요하며,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 대형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역할에 부정적 평가 우려가 있다. 또한 추정 피해액이 선주책임한도(약 1,300억원)를 초과할 것이 확실시 되므로 선주보험사(Skuld P&I Club)가 보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초기지급률에 대한 지침을 조기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회원 국가들은 피해규모 추정이 아직 많은 불확실성을 담고 있지만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빠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무국장의 제안에 공감하였다. 위와 같이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발생 후 국제기금의 보상실시에 대한 결정이 약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은 다른 사례⁹⁷⁾에 비추어 매우 빠른 결정이었다. 이는 사무국장 방한 시('08.1.14~18) 우리정부의 조기보상 결정 요청과 피해규모가 3,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사무국의 보고를 집행이사회가 인정한 결과이다.

다. 피해보상 지급률 수준에 관한 논의 및 결과

사무국장은 추정 피해규모를 감안하여 60% 수준의 피해보상 지급률을 제시하면서, 신속한 피해보상이 중요하고, 지급률을 60% 수준으로 정하더라도 과다청구 방지노력을 강화한다면 보상금 지급액이 보상한도액인 3,000억원을 초과할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대다수 국가는 사무국장의 제안에 찬성하였으나, 일부 국가는 60% 지급률이 과다지급 위험성이 있음을 이유로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였다. 찬성국가는

97) 유사 유류오염사고일 및 보상실시 결정시점 : Erika호 '99.12/'00.6, Prestige호 '02.11/'03.5, Nakhodka호 '97.1/'97.2.

일본, 덴마크, 스페인, 베네수엘라, 카메룬,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이태리, 알제리, 프랑스, 바하마, 가나,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였으며, 이들 국가들은 피해상황이 광범위하고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준의 지급률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캐나다, 독일, 영국, 노르웨이 등 반대국가들은 피해조사와 청구가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피해추정치가 매우 잠정적인 상태이고, 만약 피해규모가 사무국 추정치보다 상회할 경우 60%의 지급률은 과다지급(over payment)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50% 수준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다만, 노르웨이는 60% 지급률에 따른 과다지급 위험성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정부부문의 보상청구를 일반청구자보다 최후순위(SLQ : standing last in the queue)로 하는 방안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집행위원회 의장은 중식시간을 활용하여 사무국장의 제안에 대한 찬성국과 반대국의 입장을 중재하였는데, 그 요지는 ① 피해조사가 불완전한 단계이지만 조속한 피해보상 필요성과 과다지급의 위험성에 대한 균형된 고려가 있어야 하며, ② 우리 정부가 정부부문의 피해보상 청구를 민간청구보다 후순위(SLQ)로 하기로 할 경우 과다지급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집행이사회가 60%의 지급률을 금번회의에서 잠정 결정한다는 조건으로 정부 피해보상청구를 후순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정부 피해보상의 후순위 청구원칙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6월 또는 10월 회의까지 최종방침을 확정하여 통보키로 하였다. 당시에 우리 정부가 후순위청구의 방침을 철회할 경우 집행이사회가 지급률 수준을 60% 이하로 하향조정할 것이 예상되었다.

금번 회의에서 정부 대표단이 정부채권 후순위(SLQ)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점만 표명하고, 최종 입장은 차기 회의시(6월 또는 10월)까지 밝히기로 하였다. 이는 정부채권 후순위(SLQ) 대상이 정부 방제비는 물론 각종 정부의 지원사업에 대한 손해 배·보상 청구권이 포함되므로 정부채권 후순위(SLQ)의 적용 대상과 금액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의장은 우리 정부가 후순위청구 원칙을 검토한다는 전제하에서 지급률 수준을 잠정적으로 60% 수준에서 결정하고, 집행이사회 결정으로 보상금 지급

사무를 사무국장에 위임하였다. 또한 의장은 2008년 6월 또는 10월회의 시까지 후순위 청구방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예상 정부부문 청구액 규모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차기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후순위 청구방침 통보 여부와 지급률 수준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2.1.2 사무국과의 회의

가. 출어자제 관련 사항

국제기금 사무국측은 우리나라 정부의 출어자제 조치가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부 대표단은 사고 직후 조업자제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단계적인 조업재개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임을 설명하였다. 한편 사무국측은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와의 별도 회의를 개최할 것을 희망하였다.

나. 정부의 생계지원금에 대한 대위권 행사 여부

사무국측은 우리 정부가 피해지역에 지원한 초기 생계지원금(768억원)의 대위권 행사 여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침을 문의하였다. 정부 대표단은 정부가 지원한 생계지원금은 피해보상과 관계없는 순수한 “생계지원금”이므로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임을 통보하였다.

다. 국내 특별법과 국제기금 보상금 지급 절차의 조화

사무국측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한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을 문의하면서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는 특별법과 국제기금 보상체계가 조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부 대표단은 정부 대지급, 대부,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등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하부 시행령 내부 시안을 3월~4월초까지 작성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까지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사무국측은 시행령 작업시 국제기금측과 정부측 변호사가 협의하여 국제기금측 보상금 지급절차와 특별법의 보상절차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이를 위한 양측간의 사전협의를 제안하였다. 정부 대표단은 국제기금과 국내법의 보상체계가 조화되어야 함에 공감하고 양 측간의 공동 회의 등 향후 일정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당시에 2008년 3월 20일(목)에 국제기금 및 P&I 보험측 변호사와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라. 정부의 대지급 방안 설계시 유의사항

사무국측은 정부의 대지급 방안설계시 정부의 최후순위 청구(SLQ) 원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립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이는 정부채권 후순위 상황에서 정부에서 피해청구인에게 피해보상액을 대지급할 경우 정부에서 취득하는 대위(청구)권을 후순위 채권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의미였다.

마. 선주책임제한 절차에 대한 법원 공탁 문제

사무국측은 우리나라 법원의 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과정에서 선주책임제한액인 1,300억원을 공탁하도록 결정할 경우 선주보험사의 피해배상금 지급 업무가 큰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정부 대표단은 관할 법원의 심의과정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원활한 해결방안의 유무를 검토해 볼 것임을 표명하였다.

바. 한국해사감정(KOMOS)에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사무국 측은 일부 피해주민이 제기한 국제기금과 P&I Club의 피해조사 대리인인 한국해사감정(KOMOS)에 대한 업무정지 가처분신청(Injunction)이 받아들여 질 경우 피해조사 지연으로 인한 보상업무의 지연이 불가피함을 강조하였다.

한국해사감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지자체에 관련 문제점을 통보하여 피해 지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 삼성 출연금 활용 문제

사무국측은 삼성측이 제시한 출연금 1,000억원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에 대

하여 질의하였다.

정부 대표단은 삼성의 출연금은 피해보상과 별개의 형태로 주민들에게 지급될 것이므로 국제기금의 피해보상시 공제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아. 피해보상업무 전반에 관한 책임기관(control tower) 중요성 강조

한편, 사무국 측은 피해보상 업무 전반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는 우리 정부 내의 책임기관(control tower) 파악이 곤란하다고 표명하였는 데 이에 대해 정부 대표단은 국토해양부의 피해보상지원단 책임자가 국제기금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책임기관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자. 국제기금(IOPC Fund) 사정 후 보상금 지급 시차

사무국 측은 피해사정이 이루어지면 청구인의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피해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사무국측은 피해사정이 이루어지면 사정금액과 지급률을 감안한 보상금 지급(잠정합의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2.2 제13차 임시총회 및 제41차 집행이사회

-
- 일시/장소: '08.6.23(월)~6.27(금) / 영국 런던
 - 참가국 : 61개국 대표단 및 정부 비정부간 기구 180여명 참가
 - 정부대표단 : 총 14명(자문 5명 포함)
-

2.2.1 집행이사회

가. 피해추정액 상향 조정 및 초기지급률 하향 조정

사무국장은 제40차 집행이사회에서 보고하였던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최대 추정 피해액을 3,520~4,240억원에서 5,380~5,735억원으로 상향하여 보고하

였다. 추정 피해액의 상향 이유로 방제비의 일부 증액, 출어자제의 지속으로 인한 어업피해 증대, 특히 관광관련 피해액의 대폭 증대를 들었다.

이에 따라 사무국장은 제40차 집행이사회에서 결정하였던 피해보상 초기 지급률 60%를 40~50%로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무국장은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보상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급률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면 40%, 낙관적으로 보면 50% 수준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회원국이 선호하는 지급률이 30%와 40%로 양분되었으며, 의장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 금번 회의에서 35%로 결정하고 10월 회의에서 재논의하지고 결정하였다. 30%를 지지하는 국가는 영국, 캐나다, 바하마, 스웨덴이었다. 40%를 지지하는 국가는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이태리, 말레이시아, 바하마, 싱가포르, 일본, 베네수엘라 등이었다.

정부 대표단은 지급률의 급격한 하향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사무국장 제안의 최소수준인 40%로 지급률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35%로 결정되었다.

나. 정부채권 최후순위(SLQ) 선언

제40차 집행이사회에서 정부 대표단은 우리정부가 정부채권 후순위(SLQ)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표명하고, 최종입장은 차기 회의시(6월 또는 10월)까지 밝히기로 약속한 바 있는 데 금번 41차 집행이사회에서 정부 대표단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가 지출한 방제비용 등 약 550억원은 일반 주민의 피해 청구에 대하여 최후 순위(SLQ)에 있음을 선언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부 채권은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복원, 등의 정부 지원활동에 따라 증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다. 피해주민 생계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

국제기금 사무국장은 우리 정부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이었던 피해주민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1,172억원이 피해보상과 관련된 피해보상금인지 또는 기부금인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 대표단은 피해 주민에게 지원되는 생계안정자금은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급된 보상금이 아니라 “무상 생계지원금”임을 분명히 밝혔다.

2.2.2 사무국과의 비공식 회의

가. 맨손어업 등 관행어업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 협의

정부 대표단은 맨손어업 등 생계형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사무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무국 측은 수협 소속 생계형 어업종사자에 대한 피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피해 자료를 제출한 무면허 어업종사자 또는 수협에 소속되지 않은 어업종사자들에 대한 피해조사를 추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나. 굴 소비 기피로 인한 손실 및 양식시설 철거비용 보상 방안

정부 대표단은 굴 소비 기피로 인해 방치 되어온 양식굴 및 양식 시설의 철거 비용이 보상될 수 있도록 국제기금측에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사무국 측은 명백히 기름에 오염된 양식굴과 시설물의 경우 굴 판매 부진으로 인한 손해와 철거비용을 모두 보상할 수 있으나, 유류오염이 적거나 거의 없는 굴 양식장의 경우 시장의 신뢰상실로 인한 굴 판매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으나 철거비용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다. 출어자제로 인해 발생한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

정부 대표단은 출어자제 기간 동안의 어업인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과 조업재개 조치 이후 어획량 감소에 따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였고, 사무국 측은 출어자제 조치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출어자제 일자, 장소 및 출어자제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 근거 자료를 우리 정부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 대표단은 사무국측에 출어자제 및 조업재개 조치와 관련한 정부의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 기타 수산분야의 피해보상

정부 대표단은 종묘배양장 피해 등 기타 수산분야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였으며, 사무국 측은 향후 개최되는 양측간 정례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제안하였다.

마. 방제인건비 지급을 위한 중간사정(interim assessment) 조기추진

정부 대표단은 2008년 1월 이후 방제인건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피해지역 주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므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 중간사정을 완료해 줄 것을 펀드 측에 요청하였고, 사무국 측은 청구자료 부실 등으로 방제인건비 중간사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정부 대표단의 요청에 따라 2008년 7월 15일까지 2008년 1~2월분 방제인건비에 대한 중간사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정부는 국제기금측에서 중간사정액을 제시하면, 이들 인건비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른 대지급을 실시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바. 국제기금측의 사정이 필요한 지자체 동원 방제활동 인건비 문제

정부 대표단은 사고 초기 지자체가 주민, 트랙터, 어선 등을 동원함으로써 발생한 방제비 약 50억원에 대해, 국제기금측이 SLQ 대상이라는 이유로 사정을 거부하고 있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사무국측은 SLQ 적용 청구액은 사정도 최후 순위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 대표단의 요청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청구한 방제비에 대한 사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들 비용에 대해서도 국제기금의 사정이 완료되는 데로 특별법에 따른 대지급을 실시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사. 방제활동이 계속 필요한 지역

정부 대표단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안지역은 계속적인 방제가 필요하나 국제기금측 전문가들은 자연정화에 맡기라고 권고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사무국 측은 이러한 지역의 방제비 보상청구에 대해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다.

아. 민박분야 종사자에 대한 피해 보상

정부 대표단은 피해지역의 민박분야 종사 주민들에 대한 피해조사와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무국 측은 피해자료 입증이 어려운 민박분야 종사자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하여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자. 특별법 시행을 위한 정부측과 국제기금측의 정보공유 문제

정부 대표단은 국제기금의 사정액을 근거로 정부가 대지금을 할 수 있으므로, 국제기금측이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피해청구금액, 사정금액 등의 정보를 우리 정부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사무국측은 청구인이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이러한 정보제공 행위가 국내법상 불법이 아닌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차. 정부와 국제기금측(HS센터)간 정례회의 개최 합의

정부 대표단은 금번에 논의된 사항 중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 및 향후 추가로 제기되는 사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정례회의 개최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사무국측이 정부 대표단 제의에 동의함에 따라 세부적인 개최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참고로 정부와 HS센터간 제1차 정례회의는 집행이사회 직후인 2008년 7월 2일 개최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2~4주 간격으로 계속 개최되고 있다.

2.3 제13차 총회 및 제42차 집행이사회

-
- 일시/장소: '08.10.13(월)~10.17(금) / 영국 런던
 - 참가국 : 56개국 대표단 및 정부 비정부간 기구 180여명 참가
 - 정부 대표단 : 총 13명(자문 4명 포함)
-

2.3.1 집행이사회

가. 추정피해액 상향 조정

국제기금의 사무국장(W. Oosterveen)은 2008년 10월 7일 기준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의 최대 추정피해액을 2008년 6월 당시의 5,735억원에서 278억 원 증가한 6,013억 원으로 상향하여 보고하였는데, 그 증액사유로 2008년 6월 이후 계속된 방제작업을 지적하였으며, 수산 및 관광분야의 추정피해액도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사무국장은 초기 피해보상 지급률을 금년 6월 회의에서 결정된 35%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회원국들은 동 제안에 찬성하였다.

이에 정부 대표단은 발언을 통하여 피해주민들의 방제활동 인건비 지급 지연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지적하며, 조속한 사정 및 보상을 중점 촉구하는 한편, 피해입증자료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어민 등에 대하여도 별도 배려를 요청하였다. 또한, 피해지역 일부 해수욕장 이용률이 전년 대비 20%에 불과하여 국제기금 사무국의 추정피해액(최대 2,330억 원)의 상향 조정 필요성을 지정한 바, 이에 대해 사무국장은 현 피해 추정액보다 다소 증가 가능성은 있으나, 현시점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충청남도에서 참석한 대표단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에 대한 국제기금 회원국의 관심에 감사를 표현하고 특히 국제기금 사무국의 업무협력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특히 충청남도 대표단은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등을 담은 CD와 2009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홍보자료를 회원국에게 전달하고 서해안 피해에 대한 국제기금 회원국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나. 허베이 스피리트호 분담금 징수 일정

사무국장은 지난 2008년 6월 회의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보상 분담금 5,000만 파운드를 2008년 11월 1일까지 조성하기로 한 경과를 설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무국장은 필요시 2009년 중에 추가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보상을 위한 분담금 3,350만 파운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총회는 이를 승인하였다.

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원 억류 관련

인도대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보상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도국적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및 1등 항해사의 출국금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한민국 정부 당국이 동 선원들의 출국금지가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 대표단은 발언을 통해 선원들은 구금이나 구속 상태가 아니고 호텔에 머물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며, 동 선원들에 대한 항소심은 2008년 11월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됨을 설명하였고, 아울러 인도 대표단이 제기한 사항을 본국에 전달할 예정임을 표명하였다.

2.3.2 사무국과의 비공식 회의

가. 피해보상 정보공유

정부 대표단은 원활한 피해보상은 물론 정부와 국제기금의 피해보상금 이 중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인 ‘피해보상 정보공유 시스템’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설명하고 전문가간 협의회 개최 등 세부적인 정보공유 방안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사무국측은 우리 정부의 정보공유 방안에 공감하고, 국제기금측 피해보상 상세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엑셀파일의 형태로 매주 국토해양부(HS피해보상지원단)에 제공하기로 동의하였다.

나. 정부 대부지원시 대부금 상환절차

정부 대표단은 피해보상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기금의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 피해청구인에 대한 대부지원을 시행함을 설명하고 원활한 대부금의 상환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보상금 지급 계좌 관리 등에 대한 사무국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에 사무국 측은 피해보상금에 대한 질권 설정 등의 권리제한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청구인간의 문제이나, 청구인이 대부 신청과정에서 자신의 청구권에 대해 대한민국정부가 질권설정하는데 동의할 경우 국제기금의 보상금 지급 시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대부금 상환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정부 대표단과 사무국은 정부의 대부금 상환에 필요한 협력사항을 정부와 HS센터간의 정례회의를 통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 피해보상금 이중지급 방지를 위한 MOA 체결

정부 대표단은 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피해보상 대지급금과 국제기금의 피해보상금이 피해보상 청구인에게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양자 간 실무급 양해각서(MOA)의 세부 내용을 국제기금측과 협의하였다.

정부 대표단은 최근 정부측에 전달된 국제기금측 양해각서(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정부측 최종 검토의견을 조속히 전달하기로 하는 한편, 국제기금측은 HS센터장이 서명의 주체임을 표명하고, 양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동 양해각서를 체결기로 합의하였다.

라. 방제비용에 관한 신속한 사정 촉구

정부 대표단은 국제기금측에서 방제비용 등 민간 피해보상 청구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현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충남도 등 지방정부에서 지역주민의 생계난을 완화하기 위해 2008년 3월~6월의 주민방제인건비를 조만간 대지급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충남대표단은 주민인건비 대지급을 위해선 HS센터에 제출된 주민인건비 청구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국제기금측의 자료협조가 요구됨을 설명하고 이러한 자료 요청은 지방정부와 청구인간의 정보 공개 동의하에 요청됨을 설명하였다.

국제기금측은 청구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업무창구 단일화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관련 사항을 국제기금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표단과 국제기금은 지방정부가 국토해양부를 경유하여 국제기금측에 정보제공을 요청기로 협의하고, 충청남도는 문서에 의하여 관련 정보를 요청기로 하였다.

마. 관광분야의 사정에 관한 사항

정부 대표단은 영세 민박업 등 일부의 경우 국제기금측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피해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역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국제기금의 입장을 질의하였다.

국제기금측은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충분한 피해입증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박 등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추계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기금측은 방제업체 등 일정수준 이상의 피해보상 청구인은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였다.

바. 주요 회원국과의 면담

정부 대표단은 오찬 면담 등을 통해 스페인, 프랑스 및 필리핀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고 프레스티지호, 에리카호 등 주요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 사례 등을 교환기로 협의하였다. 특히 정부 대표단은 스페인 대표단과 프레스티지호 사고 관련 정보를 스페인 측에 문의하여 스페인 입법 사례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였다.

사. 맨손어업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합의

유류오염사고 이후 보상기대 심리로 맨손어업 피해신고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신속하고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도록 함은 물론, 허위 피해신고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대표단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 피해어업인대표 등과 협의를 통해 사고이후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취득한 피해신고자는 일정한 기준을 통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합의하고, 특별법에 근거한 조정위원회를 통해 2008년 9월 26일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최종 확정하였음을 설명하였다.

국제기금측은 동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맨손어업자들이 자동적으로 보상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피해어업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부 대표단은 동 조사대상자 그룹에 속하지 않은 자의 경우에도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피해를 주장할 경우 조사대상자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아. 굴 양식장 철거비용 후순위 신청

정부 대표단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태안군(신두리) 일부지역의 오염된 굴 양식장(172ha) 철거작업이 당초 계획대로 신두리 해수욕장 개장이전인 2008년 7월 24일 완료하여 2차 오염의 예방 및 관광분야 피해를 최소화하였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철거 사업비는 당초에 1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최종 124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지난 2008년 6월 국제기금(IOPC Fund)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선언한 바와 같이 후순위 청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제기금측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명하면서 양식장 철거사업비 등을 포함한 후순위 요청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 조업재개 시점을 기준으로 한 피해 보상

정부 대표단은 정부가 사고당일 취한 출어자제 조치와 4월 18부터 시작된 조업재개 조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이므로 그 시점에 근거하여 출어자제 기간 동안의 어업인 피해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제기금측은 출어자제 기간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정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출어자제 조치의 의미와 출어자제 위반시 처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바, 추후 정확한 법령 확인 후 국제기금측에 통보기로 하였다.

국제기금측은 우리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취한 출어자제의 필요성과 과학적 근거 및 합리적인 조업해제 절차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제공한 출어자제 및 해제 조치에 대한 근거자료가 너무 방대하여 영문번역에 애로가 있음을 언급하며, 간단히 요약된 출어

자제 및 해제 조치 근거자료를 대상으로 정부조치 사실을 확인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대표단은 출어자제 및 조업재개 조치와 관련한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추가적으로 국제기금측에 제공키로 하였다.

차. 태안지역 바지락 폐사원인

정부 대표단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유류유출사고로 발생한 어장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어장복원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3개년간 연구용역사업(주관: 국립수산물과학원)을 실시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2008년도에 1차로 사고해역의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지락 폐사원인이 기름유출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국제기금측에서 동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기금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청구되지 않은 사안이므로 정보가 제공된 후 바지락 폐사와 기름사고 연관성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대표단은 동연구가 국제기금측 보상매뉴얼에서 요구하는 연구기법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설명하고 관련 중간연구결과보고서 및 요약 자료를 조속히 국제기금측에 제공할 예정임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동 사항에 대해 관련 자료가 제공되는 대로 지속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카. 신속한 사정을 위한 조사인력 증원

정부 대표단은 맨손어업 등 보상청구가 사고이후 1년이 경과되는 2008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대부분 2009년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맨손어업자에 대한 인터뷰를 조속히 실시하기 위해 협성의 조사인력(현재 9명)을 일부 증원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기금측은 신규 조사인력 증원시 업무효율성이 오히려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확한 인터뷰 대상자 범위가 구체화 될 때 동 사항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의하였다.

타. 기타 수산분야 피해

정부 대표단은 태안지역 종묘배양장과 전남지역 김양식장 피해보상청구 관련, 한국해사감정(KOMOS) 측에서 각각 피해주민들이 제출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인정하지 않거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피해산정방식을 고집함에 따라 피해어업인들이 향후 사정금액이 예상보다 낮을 가능성을 우려함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제기금측은 동 사항은 어업인들이 수집한 피해증거를 첨부하여 HS센터에 청구한 후 검토될 사항임을 지적하고, 청구 후 중간사정 결과를 받아본 후 해당 피해어업인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증거를 보완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종묘배양장 피해 등 기타 수산분야의 피해에 대해 양측간 정례회의에서 계속 논의기로 합의하였다.

2.4 제44차 집행이사회

-
- 일시/장소: '09.3.25(수)~3.27(금) / 영국 런던 IMO 본부
 - 참가국 : 54개국 대표단 및 정부 비정부간 기구 180여명 참가
 - 정부 대표단 : 총 15명(자문 4명 포함)
 - 의장 : Mr. Daniel Kjellgren(Sweden)
-

2.4.1 집행이사회

가. 추정피해액 및 초기지급률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이후 사무국장은 첫 번째 회의(제40차 집행이사회)에서 추정피해액(3,520~4,240억원)을 보고한 이후, 제41차 및 제42차 집행이사회에서 추정피해액을 상향조정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도 사무국장은 추정피해액을 종전의 6,013억원('08.10)에서 6,023억원으로 상향 보고하였다.

피해사정액에 대한 국제기금의 초기지급률은 2008년 10월 회의(제42차 집행이사회)에서와 같이 35%를 유지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2008년 6월 회의(제

41차 집행이사회)에서 초기지급률이 35%로 결정된 이후 추가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정부 대표단은 피해보상 현황 및 정부의 각종 지원활동을 소개하고 국제기금의 조속한 사정 및 보상을 촉구하였다. 캐나다 등은 사고발생이 상당히 경과한 시점이므로 사무국장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업무 추진이 필요함을 제기하였고, 사무국장은 국제기금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하였다.

나. 국제기금의 삼성중공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

국제기금이 2009년 1월 18일 중국 Ningbo 해사법원에 신청한 삼성중공업에 대한 구상소송 관련 사항 논의를 비공개로 시작하였다. 옹저버, NGO 등은 모두 퇴장하고 국제기금 회원국만 참석한 가운데 구상소송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부 대표단은 최초발언을 통하여 삼성중공업에 대한 구상소송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즉 우리나라 법원에서 책임제한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사국이 아닌 중국 법원에 구상소송을 제기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제기금이 책임제한제도의 원칙에서 벗어나 법원을 편의적으로 선택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정부 대표단은 후속발언을 통해 삼성중공업에 대한 구상소송은 국제기구로서 중대한 문제가 있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삼성에 대한 책임제한을 결정한 우리나라 법원의 결정이 국제기금에도 구속력이 있어야 하고 국제기구인 국제기금이 관할권과 무관하게 유리한 판결만을 고려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포럼쇼핑”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정부 대표단의 발언 이후 캐나다를 비롯한 14개국이 발언을 통하여 사무국의 구상소송을 지지하였다.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발언국이 회원국의 분담금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라는 이유 등으로 사무국의 구상소송을 지지하였다. 다만, 프랑스는 국제기금이 구상소송을 할 경우에는 회원국의 분담금 경감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역할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의장은 집행이사회가 사무국장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사후 승인하는 것으로 논의를 종결하였으며,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회의록에는 집행이사

회가 사무국장의 구상소송을 승인하였다는 결과만 기록되었다.

정부 대표단은 삼성중공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 관련, 차기 회의에 의제문서 제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의장은 구상소송에 대한 의제문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모든 대표단이 제출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2.4.2 사무국과의 비공식 회의

가. 무자료 피해주민에 대한 소득추계방식 적용 협의

정부 대표단은 피해 입증자료가 부족한 피해주민에 대한 사정시 동업종 타 사업자의 자료를 적용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제기금측은 추후 자료 검토 후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정부 대표단은 소득추계 연구 결과물을 국제기금에 제출하고, 사고발생 이후의 상거래 자료 또한 피해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우리 정부가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음을 전달하였다.

나. 주민 장비 임차비가 포함된 민간 방제비용의 조기사정

정부 대표단은 어선 등 주민 장비 임차비가 포함된 민간 방제비용 2008년 1월~2월분은 금년 3월 중으로, 2008년 3월~6월분은 금년 4월부터 사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에 국제기금측은 2008년 1월~2월분 민간 방제비용에 대해서는 최종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3월말부터는 보상이 개시될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국제기금측 사정전문가는 3월~6월분 방제비용도 빠른 시일 내(가능한 4월 중)에 사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다. 출어자제 조치 중의 어민 피해보상에 대한 협의

국제기금측은 출어자제 조치가 적정할 경우 동 기간 중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음을 천명하며, 이와 관련된 출어자제 및 재개조치와 관련한 추가정보를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 대표단은 국제기금측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라. 보상정보의 공유협력 강화 추진

정부 대표단은 우리 정부가 구축한 보상 관련 「HS보상지원시스템」의 세부 내용과 사용방법 등을 소개하고, 양측은 질권설정 통보 등 정보공유 방안을 지속 협의기로 하였다.

마. 수산분야의 신속한 피해사정 방안 협의

정부 대표단 및 국제기금 양측은 올 상반기 중 수산분야 피해 보상청구 본격화에 대비하여 사정작업 우선순위 설정 및 전문가 추가확보 등의 방안을 논의하였다.

2.4.3 대표단 특별활동

정부 대표단은 회의기간 동안 사고지역 특성 및 현안사항(어획감소, 방제비 사정지연 등) 관련 홍보물 배포 및 발언을 통하여 회원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3월 27(목) 사무국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하여 민간방제비용의 조속한 사정에 대하여 추가로 상세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국제기금측 IT 및 보상전문가의 방한시(3.30 및 4.6)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기로 하였다.

2.5 제14차 임시총회 및 제45차 집행이사회

-
- 일시/장소: '09.6.15(월)~6.18(목) / 영국 런던 IMO 본부
 - 참가국 : 48개국 대표단 및 정부 비정부간 기구 150여명 참가
 - 정부 대표단 : 총 13명(태안지역 주민 대표 2명, 자문 2명 포함)
-

2.5.1 집행이사회

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보상 관련 사항

사무국은 제44차 집행이사회('09.3)에서 보고한 추정 피해액 6,023억 원을 금번 회의에서 6,1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고하였으나, 보상금 지급률은 35%를 유지기로 결정하였다. 국제기금 사무국은 이번 조정은 일부지역에서의 방제작업 재개 및 맨손어업 등 수산분야 청구액 증액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였다. 다만, 보상금 지급률은 2008년 6월 제41차 집행이사회에서 35%로 조정된 후 불변이었다.

정부 대표단은 이번 사고로 기인한 해양생태계 변화와 피해주민의 경제난을 설명하는 영상물을 상영하고 원활한 보상을 위한 회원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카메룬, 나이지리아, 스페인, 러시아 등의 회원국은 우리 정부의 영상물이 피해주민의 어려운 현실을 잘 설명하여 주었다는 발언과 함께 신속한 보상 필요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또한, 대표단은 피해지역 관광분야의 경제적 손실은 이번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임을 강조하고 신속한 보상을 촉구하였다. 통계자료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피해지역의 현저한 관광객 감소가 유가인상 및 경기침체 등과 무관함을 설명하였다.

국제기금측 사무국은 우리 정부의 수산분야 조업재개 조치가 과학적 근거에 비해 지연되었으므로 지연기간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거절할 방침임을 집행위에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하였다. 정부 대표단은 조업재개 결정은 과학적 근거뿐만 아니라, 경제적 요인 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사항은 우리 정부와 국제기금 간의 양자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집행이사회는 보상기간은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세부사항은 우리 정부와 국제기금측 양자간 추가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집행이사회는 무면허, 무허가 및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카테고리 3”에 속하는 맨손어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사무국장의 의견을 승인하였다. 이에 정부 대표단은 무면허, 무허가 어업인

에 대해서는 탄력성 적용이 필요하며, “카테고리 3”의 맨손어업자에 대하여는 후순위 조건으로라도 사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부 대표단은 대형사고시 사정 및 보상업무를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보상 전문가 풀 운영의 필요성을 집행위에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사무국장은 우리 정부측의 제안은 재정확보의 어려움 등 현실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일부 회원국은 신속한 보상업무 추진방안을 사무국이 마련토록 촉구하였다. 이러한 회원국의 지지에 따라 사무국장이 신속한 보상업무 추진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이를 차기 회의시 보고하기로 하였다.

나. 펀드의 삼성중공업 구상소송 관련 논의

정부 대표단은 지난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된 펀드의 삼성중공업에 대한 중국내 구상소송은 “포럼쇼핑”의 우려가 있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의 논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기금 분담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구상소송에 대한 국제기금의 기본 원칙에 따라 동소송은 이미 결정된 사항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반해 프랑스, 남아공 등은 국제기구로서 국제기금은 정당성을 갖춰야 하므로 포럼쇼핑의 우려가 있는 펀드의 현재의 구상소송 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만, 사무국장과 의장은 국제기금의 기본정책은 총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정부 대표단은 사무국장의 입장은 이해하나, 차기 총회에 관련 의제문서 제출을 필요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5.2 사무국과의 비공식 회의

가. 무자료 피해주민에 대한 소득추계 방안 설명

정부 대표단은 사무국이 검토 중인 무자료 피해주민에 대한 손해 사정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 사례별 소득추계 적용방안을 설명

하고 조속한 사정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사무국 클레임 담당과장은 대표단이 제시한 소득추계 적용실패와 통계자료를 사정전문가와 같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민간 방제비용 조기 사정방안 협의

정부 대표단과 사무국은 방제비용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사무국과 방제업체간의 간담회를 개최기로 합의하였다.

다. 손해보상 절차에 관한 협력방안 협의

국제기금측이 보상금을 지급률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복잡한 정산절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 문제 해결을 위해 선주보험사와 같이 사정액 전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기로 제안하였다. 국제기금은 선주보험사(100% 지급)와는 달리 가변적인 지급률(35%)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이중지급 및 복잡한 정산절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내 법률문제(은행 등의 배상금 가압류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부 지원단과 국제기금측 법률대리인이 대응방안을 직접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표단은 정부 대지급금에 대한 에스크로우 이자(보험사의 배상금에 대한 연 6%의 이자) 산출기점 이전에 대한 선주보험사측 조정안을 청취하고 조속히 검토 후 재협의하기로 하였다.

2.6 제14차 총회 및 제46차 집행이사회

-
- 일시 : 2009. 10. 12 ~ 10. 16 (5일)
 - 장소 : 영국 런던 IMO 본부
 - 참가국 : 44개 회원국 대표단 및 비정부간 기구 관계자 등 120여명 참가
 - 정부 참가자 : 총 18명(자문 7명 포함)
 - 의장 : Mr. Daniel Kjellgren(Sweden)
-

2.6.1 집행이사회

가. 추정피해액 및 초기지급률

사무국은 추정피해액을 5,420~5,770억원(무면허 양식장 관련 600억원 감소)으로 보고하고, 지급률은 35%로 유지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정부 대표단은 생계형어업 사정이 위법소득이라는 이유로 사정이 거부된 금액만큼 예상피해액이 감소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피해액이기 때문에 이를 감액하지 말아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표 4-1> 국제기금 사무국의 추정피해액 조정현황

(단위 : 억원)

분야	'08.3	'08.6	'08.10	'09.3	'09.6	'09.10
방제		1,345	1,623			
수산		2,060	2,060			
관광		1,980~2,330	1,980~2,330			
합계	3,520~4,240	5,385~5,735	5,663~6,013	6,023	6,150	5,420~5,770
초기지급률	60%	35%	35%	35%	35%	35%

나. 소규모 민박업자에 대한 시범적 소득추계방안 적용

민박업자(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대해 시범적(trial basis)으로 소득추계방안을 적용기로 승인하였는 바, 개별 인터뷰를 기반으로 샘플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사안별로 적용하되 정규적용 확대여부는 향후 확정기로 하였다.

다수의 무자료 소액 피해자에 대한 일반 보상원칙 및 절차(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이외의 향후 발생사고 포함여부 등)는 가능한한 2010년 4월 회의 시까지 초안을 마련, 이번에 구성된 작업반(의장 독일 V.Shöfisch)에서 검토하여 보고하기로 하였다.

다. 관광피해에 적용된 25%의 공제적용을 폐지

국제기금 사무국은 관광분야 피해와 경기침체 및 고유가의 영향이 아직 명확하지 않음을 전제로 2008년 4월 이후의 관광피해에 대해서는 25%의 공제조정률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동 조정률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국제기금측 사정전문가가 관련 자료를 지속 확보하여 조정율의 합리성을 지속 검토 중에 있었다.

그러나 금번 회의에서 국제기금측은 정부(국토해양부)가 제공한 자료 및 설명에 따라 경기침체 및 고유가 영향을 이유로 관광 피해에 대해 적용하는 조정률(25%)은 폐지기로 결정하였다.

라. 출어자제 기간

출어자제 기간에 대한 이견(합리적 정책결정 기간 인정 여부)은 양자협의(농식품부 소관)를 계속 실시하여 조율기로 하였다. 국제기금측은 현재는 과학적 정보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으나, 시장 신뢰도 문제는 향후에 별도로 논의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출어자제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사무국 측간에 여전히 간격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무국 측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뒤의 손해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제기금은 사무국장과 우리 정부가 상의할 것을 결정하였다.

2.6.2 사무국과의 비공식 회의

사무국은 2008년 1~2월분 민간 방제비는 사정완료 단계(1건 외 사정완료)이므로, 잔여분의 조기사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해대책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한 확인절차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우리 정부 사무국간 협의를 진행기로 합의하였다.

충남도의 가로림만 등에 대한 보상 필요성 검토 요청에 대해 사무국은 제공가능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가압류 발생 등에 대한 정보공유, 에스크로우 이자 적립방안 등은 2009.11월초 방한예정인 선주보험사 및 사무국 실무진과 지속 협의기로 하였다.

2.6.3 대표단 특별활동

정부 대표단은 피해주민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우리 정부 측의 입장을 담은 동영상 상영·배포하여 주요 회원국의 지지 발언을 유도하였다. 정부 대표단 이외의 기타 대표단은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및 캐나다 대표와의 접촉을 통해 이들 여론 주도국들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정부 대응의 주안점과 성과

3.1 사고처리의 투명성 및 피해보상에 관한 전반적 지지 확보

유류오염손해의 피해보상에 관한 국제기금 매뉴얼에 의하면 모든 유류오염 피해보상의 청구 및 보상은 “객관적, 합리적, 과학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배경은 유럽 국가의 전통, 관습, 역사, 법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상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국제기금 매뉴얼을 집행하는 국제기금의 사무국 직원들(사무국장 포함)의 대부분이 국제기금에서 발언권(의사결정권)이 강한 회원국가들의 대부분 유럽국가들인 상황에서 우리 피해주민들의 피해현실과 조업 및 영업행태, 거래관행 및 과세제도 등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이다.

유류오염 피해보상의 청구 및 보상에서 객관적, 합리적, 과학적인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국제기금 사무국 및 유럽의 주요 회원국가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고처리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사고처리의 투명성이란 사고발생의 사실, 사고의 원인, 유류유출의 규모 및 피해현황, 오염방제 및 피해복구의 방법과 실적, 증거확보 등 피해보상 청구를 위한 노력 및 현황, 오염으로 인한 피해주민의 생계의 심각성 정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의미한다.

2007년 12월 7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이후 국제기금 회의는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총회 2회 및 집행이사회 6회가 개최되었다.⁹⁸⁾ 위의 국제기금

98) 국제기금의 총회 및 집행이사회는 같은 회의기간에 개최되고 개별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무엇보다 사고처리의 투명성을 통한 사무국 및 주요 회원국들의 피해보상에 관한 지지를 얻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는 “유일호” 및 “씨프린스호” 사고 등 과거 유류오염사고시의 일방적 투쟁과 호소와는 전혀 다른 방법과 전략을 택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사고처리의 투명성을 통한 피해보상에 관한 전반적인 지지를 확보하였던 주요한 노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년 회의 개최 전에 사고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을 알 수 있는 공식적인 의제문서를 제출하였다. 물론 이러한 의제문서는 사전에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 의해 철저히 연구되고 논의되어 작성되었다. 이 의제문서를 통해 회원국가들은 회의 개최 전에 사고처리의 전 과정과 현재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제 회의시에 정부 대표단은 발언권을 확보하여 의제문서에 근거하여 사고처리에 관한 설명을 함으로써 사무국과 주요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지지를 확보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충남도)도 그동안 국제기금 사무국 및 주요 회원국들이 사고처리 및 피해보상을 위해 취한 조치에 감사하며, “안면도 꽃박람회” 등 충남을 방문하기를 원하며 환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유류오염피해의 직접 당사자가 투쟁과 압박보다는 감사와 환영의 표시를 함에 따라 동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전회원국의 지지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둘째, 회의기간 중 정부 대표단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관한 동영상(DVD)을 수차례 걸쳐 방영하였는데, 이는 유류오염사고의 전반을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국제기금 사무국 직원들과 주요 회원국의 대표단들은 국제기금 회의장에서 동영상을 통해 국가 재난적인 사고의 현장, 유조선으로부터 기름이 유출되는 장면, 전 서해안과 남해일부의 양식장, 어장, 해안의 피해현황, 1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의 방제활동, 전국의 방제자원과 외국의 방제자원까지 동원된 방제활동, 피해주민의 절박함과 생계의 막막함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보다도 더 상세히 알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정부 대표단은 국제기금의 총회 및 집행이사회 등과 같은 공식적인 회의 이외에도 사무국 직원들과의 비공식회의를 매년 개최하여 시간 및 자료의 한계상 공식회의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사항을 실무적으로 논의하였다.

에 관한 주요 논의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보상관련 회의는 6회 개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공식 회의를 통해 우리 대표단은 국제기금 사무국의 정책과 입장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사무국 직원도 우리의 현실과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다.

넷째, 회의기간의 휴식 및 식사시간에 정부대표단 및 전문가들은 주요 회원국 대표단과의 접촉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또한 정부 대표단은 사고처리에 관한 많은 홍보물을 전시하고 제공하여 회원국들의 지지와 협조를 구했다.

다섯째, 정부 대표단은 사무국 직원을 가능한 한 자주 한국을 방문토록 하여 방제 등 정부 및 주민이 취한 조치의 합리성, 피해의 심각성, 우리나라의 관습, 전통, 법제도 등을 이해시켰다.

위와 같은 정부 대표단의 노력으로 인하여 국제기금 사무국 및 주요 회원국들로부터 우리나라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처리에 관한 투명성과 피해보상에 관한 전반적인 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발생 후 약 3개월 이후인 제40차 집행이사회에서 피해보상 초기 지급률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다른 사고에 비해서 매우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된 것이다. 사고자체가 재난적 사고로 규모가 커서 당시에 피해 조사와 청구가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의 고통 경감을 위해 신속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대다수 회원국가간 조성되며 결정되었다.

둘째, 제42차 집행이사회('08.10)에서는 러시아의 “불고네프 139호” 사고의 대응과 피해보상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 많은 회원국들이 러시아 정부의 사고처리의 불투명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반대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매우 신속하고 투명한 조치를 강조하고 치하하는 발언을 하여 대조를 이루었다.

셋째, 제45차 집행이사회('09.10)에서 국제기금 사무국은 우리 정부가 취한 조업재개 조치는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기간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거절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대표단은 조업재개 결정은 과학적 근거뿐만 아니라, 경제적 요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회원국가들은 피해보상을 축소하기

위해 사무국의 입장을 지지하게 되는데, 동 집행위원회에서는 향후 우리 정부와 국제기금 사무국간에 추가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다.

3.2 제도적 자료 이외의 방법에 의한 피해 입증사례 도입

92CLC 및 FC, 국제기금 매뉴얼은 유류오염 피해보상 및 배상은 ‘객관적·합리적·과학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유류오염피해자는 이와 같은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어업인 또는 연안의 주민들은 평소에 생업에만 열중하지 만약의 유류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국제기금이 요구하는 입증자료를 확보할 필요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국제기금이 요구하는 입증자료 제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영세한 업자나 개인인 경우에 어려움이 더 많았거나 불가능했다.

따라서 정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증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피해자 및 피해분야에 대하여 국제기금이 피해를 인정하도록 주안점을 두었는바, 주로 우리의 제도와 관행을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국제기금 사무국을 설득하고 이해시켰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는 민박업자를 포함하여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수많은 영세업자 및 개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이들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영세업자 및 개인들은 대부분 제도적으로 피해입증에 필수적인 과거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납세현황을 보면 납세인원의 44.5%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과세미달자이며, 과세미달수준을 넘는 매출액을 신고한 사업자 가운데도 장부에 의해 자기소득을 신고하는 기장신고자는 55.4%에 불과하다. 즉, 나머지 44.6%는 추계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인바, 유류오염에 의한 비수산 분야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추계소득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교적 큰 규모의 음성·탈루소득이 존재하고, 전체 납세대상자 중 44.5%가 과세미달자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소득신고자 중에서도 추계에 의한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비율이 44.6%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국세청 소득신고 금액을 피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기에

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피해 입증자료가 부족한 영세업자의 소득추계 연구 결과물을 국제기금에 제출하고, 이들의 피해에 대한 사정시 동업종 타사업자의 자료를 적용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그 결과 국제기금은 민박업자(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대해 시범적(trial basis)으로 소득추계방안을 적용키로 하였다.

맨손어업은 영세한 지역주민의 대표적인 생계형 직업이며 입증자료의 제시가 어려운 분야이다. 맨손어업의 손해사정을 위해서는 맨손어업 종사자가 손해입증자료를 제시하기 보다는 국제기금이 인터뷰 등 현장의 조사를 통해 피해를 추정하여야 한다. 또한 맨손어업자의 수자가 많기 때문에, 먼저 정부가 조사대상자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국제기금이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정부는 국제기금에 피해입증자료의 제시가 어려운 영세업자 및 개인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제도와 관행을 설명하고 소득추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적 입증자료의 제출이 어려운 분야에 대한 피해입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3 국제기금 사무국과의 협조체제 구축

일반적으로 유류오염사고시 효과적인 피해조사, 청구, 보상 및 배상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해자 및 정부와 국제기금과의 협조체제가 요구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의 경우는 92CLC 및 FC의 보상한도액내의 피해보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특별법 시행을 위해서도 피해자 및 정부와 국제기금 사무국과의 협조체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제기금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에 노력하였다.

우선, 정부는 피해보상 및 배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의 논의를 위하여 매주 정례회의 개최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사무국은 정례회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부의 제의에 동의하였다. 우리 정부와 사무국은 그동안 정례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해결하여 왔다.

그리고 특별법상의 대지급은 국제기금의 사정액을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국제기금측이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피해청구금액, 사정금액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고, 이에 사무국은 청구인이 관련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이러한 정보제공 행위가 국내법상 불법이 아닌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키로 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정부가 구축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인 ‘피해보상 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공유키로 합의하였다.

제 2 절 선주보험사와의 협력체계 구축

1. 2차 협력계약 체결 및 에스크로우 계좌 개설

1.1 논의배경 및 진행경과

선주측은 2008년 1월 15일 서산지원에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은 2008년 2월 4일 첫 심리를 진행하고, 차기 심리기일은 추후 결정키로 한 상태였다.

2008년 3월 19일 선주보험사(Skuld P&I)는 선주책임제한절차와 관련하여 신속한 보상을 위해 피해액을 중간지급(interim payment)한 다음, 법원이 선주책임제한절차에 따라 공탁명령⁹⁹⁾을 하는 경우 동일 피해액의 이중지급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중지급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2008년 3월 20일 선주보험사는 전액공탁, 보상지급 및 정부·펀드 공탁부담, 보상지급 및 정부 공탁부담 등 3가지 옵션 제시하였다.

※ 선주보험사 제안내용

- ① 1안 : 법원 공탁명령에 따라 선주보험사가 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서를 제출하는 방안
 - ② 2안 : 선주보험사가 사정액의 지급률에 따라 지급한 금액만큼을 최종 공탁시 정부 및 IOPC가 대신 현금공탁하는 방안
 - ③ 3안 : 선주보험사가 사정액의 지급률에 따라 지급한 금액만큼을 정부가 대신 현금공탁하는 방안
-

99) 책임제한 절차법 제14조(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명령) ‘법원은.... 공탁보증인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6%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법원에 공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현금공탁인 경우에는 유배법 제35조).

만약, 법원의 공탁명령에 따라 선주보험사가 책임한도액을 공탁하게 되면 해당법원의 배당결정이 있을 때까지 배당금 지급이 유보되어 손해 배상금 또는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선주보험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1.1.1 선주보험사 및 국제기금과의 1차 실무협의('08.4.10)

- 유조선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92민사책임협약(CLC)상의 책임한도액 법원 공탁시 국제기금의 지급 가능성 논의
 - 선주보험사는 선주책임제한절차상 공탁과 관련한 정부의 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별도의 정부안이 없을 경우 공탁의사 표명
 - 국제기금(IOPC Fund)측은 집행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할 사항이라 밝힘
 - 6월 국제기금(IOPC Fund) 집행위위원회 의제로 검토할 것을 보고서에 언급한 바 있으나, 결국 그렇게 하지는 않았음

1.1.2 선주보험사 제안사항에 대한 법률자문('08.4~5)

- 선주보험사가 제안한 사항과 관련하여 실제 공탁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동 분야 변호사 및 서산지원 담당판사 자문 실시
 - 서산지원 담당판사(장동혁) 방문 및 협의('08.5.2)
 - 중간지급금에 대한 공탁회피 및 절차폐지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 공탁문제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확인함에 따라 신속보상, 공탁이자 재원 확보 등을 감안하여 선주측 제안에 대한 협의를 합의함

1.2 2차 협력계약의 체결

1.2.1 체결경과

가. 선주측의 초안 제시('08.5.14)

선주측은 피해배상 또는 피해보상금은 사정액 중 국제기금에 의해 승인된

비율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한도액은 89.77백만 SDR)과 피해보상·배상금이 공탁되는 경우 당해 피해에 대한 보상·배상은 정부가 지급하고, 공탁이자에 대하여는 정부와 선주보험사(Skuld P&I)가 비례하여 부담하기로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초안을 제시하였다.

나. 선주보험사와의 2차 실무협의('08.5.14)

선주측이 제안한 초안을 검토한 다음, 정부의 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선주보험사간에 의견조율을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되었다.

※ 정부안 내용

- 책임한도액 중 선주보험사가 기지급한 배상금에 대해 이중부담이 발생치 않도록 정부가 공탁금 대납 등에 협조하되 선주보험사는 공탁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협력
 - 선주보험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배상금 지급시점까지의 이자를 공탁이자(6%)수준으로 부담하고, 국제기금 지급률과는 상관없이 사정액 100% 지급하기로 함
-

선주측과의 협의한 결과 정부가 국제기금의 사정액을 초과하는 한도초과보상액 전부(10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선주보험사는 국제기금의 사정금액 전부를(100%) 지급하기로 하고, 선주보험사는 정부의 제시안과 같이 사고발생일 이후 배상금 지급시점까지의 이자를 공탁이자 수준인 6%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1차 수정안('08.6월초)

- 1차 실무협의 합의내용과 상반된 내용 일부 포함
 - 삼성-허베이호 간의 책임소재 관련 부분 삭제
 - 초안에 있던 '선주측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표현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수정

- 배상금 지급비율을 100%로 명시하고, 초과한도보상금 언급
- 중간지급 없이 현금공탁시 총공탁액으로 함으로써 클럽지급 한도액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배상한도액에 공탁이자를 포함하기로 함으로써 공탁이자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함
- 사정승인 금액을 확인하고, '합의'한 경우에만 피해보상·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피해보상·배상금을 공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언급
- 정부로 양도된 청구권에 대하여는 이를 후순위 채권(SLQ)에 포함하는 것으로 함

라. 2차 수정안('08.6.10)

- 배상한도액을 89.77백만SDR에 공탁이자 6%를 더한 금액으로 수정
- 공탁수준의 이자 계산방법 및 시점, 환율계산방법 명시
- 법정이자와 한도액과의 관계 명시
- 공탁이자 포함에 따라 공탁 필요시 조치사항 수정

마. 선주보험사와의 3차 실무협의('08.6.11)

- 정부측의 문구 수정요구를 대다수 수용
 - 해당 국제조약의 Full name 명기, 청구적용시한 등
 - 합의가 안 된 경우는 '정부가 대지급한 금액에 대해 선주보험사는 정부에 지급한다'로 정부의 의견을 반영
 - 공탁수준 이자 관리를 위한 에스크로우 계좌 개설

바. 3차 수정안('08.6.16)

- 관련 국제법규 명칭의 실명을 정확히 기재
- 선주측의 이자지급과 관련하여 이는 선주측의 배려사항 아니며, 공탁

부담을 면제해 준 것에 대한 조치로 당연히 정부측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임을 표명하고, 선주측은 정부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자 지급관련 선주측 배려사항 표현을 삭제함

- 신속한 피해자 배상 진행을 위한 정부의 요청사항을 받아들여 배상금 지급을 위한 ‘합의’ 조건을 삭제함
- 공탁수준 이자 관리를 위한 에스크로우 계약 내용 신설
 - 양자 합의에 의해 계좌를 개설하여 6% 이자를 적립하고, 향후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함
- 책임한도 초과 보상금 대상 범위 수정
 - 국제기금에 의한 사정결과와 법원에 의한 확정판결, 지급명령, 조정 및 화해로 지급되는 청구의 합계까지로 확장하기로 함
- 전액보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액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함
- 선주측에서도 공탁폐지 등에 노력을 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 정부 대위권 SLQ 관련 내용 삭제

사. 선주보험사와의 4차 실무협의('08.6.16)

- 정부의 대위권 행사를 위한 제약조건 해제
 - 전액보상이 불가한 경우 계약에 따라 양도된 권리는 행사하지 않으나, 양도된 권리 외에 제3자에 대한 청구권, 책임제한절차에 대한 참가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 책임제한절차 폐지를 위한 상호 노력 의무 부과 합의
- 에스크로우 계좌 관련 사용시점 및 용처 확정
- 추가약정 제정 및 내용 관련 합의
- 협력계약서 등 계약내용 자구 수정('08.6.16~6.30)

아. 업무협력계약 체결('08.7.1)

선주보험사측에서 한도초과보상금 범위 내에 소송결과 등으로 사정결과가 확정되는 경우도 포함됨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공문을 송부하였다('08.6.30).

다만,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력은행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크로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2차 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부록 3> 2차 협력계약서).

1.2.2 주요내용

국토해양부와 선주보험사(Skuld)측과 체결한 2차 협력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속한 배상을 위해 선주보험사측이 선주책임한도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초기의 신속한 배상이 곤란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클럽과 국제기금이 지급가능한 것으로 사정·승인한 손해 배·보상청구에 대하여는 인정액 전액을 배상하기로 하였다.

둘째, 선주보험사의 손해 배·보상액 총액을 법정한도(89.77백만SDR)¹⁰⁰⁾와 사고발생일로부터(또는 법원지정일)로부터 손해 배·보상금 지급이 이뤄진 날까지 연 6%의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하였다.

셋째, 선주책임제한액을 공탁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공탁금 분담방안을 정하였다. 즉 선주보험사가 손해 배·보상금의 일부를 공탁해야하는 경우 선주보험사는 개별 합의 및 보상을 중단하고, 책임한도액에서 이미 지급한 손해 배·보상금을 제외한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6%)를 법원에 납부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정부는 법원이 납부토록 한 금액 중 선주보험사측에서 공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공탁이자를 공탁하기로 하였다.

넷째, 정부가 공탁금을 납부할 경우 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만약, 확정손해액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100) 2차 협력계약 체결일 기준 : 1SDR = 1,707원('08.7.1)

<표 4-2> 손해 배·보상 재원 관리방안별 장·단점 비교

(단위 : 억원)

구분	현금공탁	배당공탁	2차 협력계약
근거	책임제한절차법(제11조)	책임제한절차법(제14조)	2차 협력계약서
보험사 부담액	총액 : 1,532	- 총액 : 1,808 - 책임한도액 : 1,532 - 연 이자(6%) : 276	- 총액 : 1,744 - 책임한도액 : 1,532 - Escrow 이자 : 212
배·보상 재원	- 총액 : 3,308 - 배·보상한도 : 3,216 - 3년간 공탁이자 : 92 (공탁금 관리 수수료 공제 후 잔여이자 : 연2%)	- 총액 : 3,492 - 배·보상한도 : 3,216 - 공탁이자(3년) : 276	- 총액 : 3,445 - 클럽·펀드한도 : 3,216 - 에스크로우이자 : 212 ※ 에스크로우이자에 대한 추가적립 이자 : 17
장·단점	- 장점 - 선주보험사에 대한 법적 처리가 간명 - 단점 - 선주보험사의 배·보상참여 가능성이 낮아 국제기금의 보상참여가 지연될 경우 보상금 지급이 지연 -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과 한도초과보상청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피해주민 및 행정불편 - 대지급·한도초과보상금 수요증가에 따른 정부 재정부담 증가		- 장점 - 선주보험사가 초기 배·보상을 주도 - 선주보험사에 의한 단독배상이 가능 - 정부 재정부담 경감 - 단점 - 공탁할 경우보다 재원이 적음 - 법원의 공탁명령시 정부부담 발생

※ 보험사 부담액은 배상기간을 3년으로 추정한 것이며, 에스크로우 이자는 선주보험사가 3년 동안 각각 232억원, 600억원, 700억원씩 배상한다는 전제하에 산정된 금액임

1.2.3 협력계약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우선, 선주측과 업무협력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법원의 최종 피해액 사정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5~7년 소요예상) 책임한도액이 법원에 묶이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선주책임제한절차와는 별도로 책임한도액이 신속하게 피해배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협약에 선주보험사가 신속히 사정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반영함으로써

써 선주보험사는 사고발생 시점부터 배상액지급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부담하게 될 6%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사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사고발생일로부터 배상액 지급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공탁이자 수준의 이자를 선주보험사가 부담하고, 보관계좌(escrow account)에 이를 납부함으로써 그 이자를 손해 배·보상과 관련된 정부의 추가부담을 경감시키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 4-3> 협력계약 체결시 경제적 이익분석

(단위 : 억원)

연차	사정 후 지급액	6%이자(단리)	escrow 계좌 이자 ^{주1)}
1	300	18	3.2
2	500	60	7.2
3	600	108	6.5
총액	1,400	186	17

※ 주1) 선주책임한도액 지급 후 1년 뒤 활용하는 경우를 가정(금리 6%, 단리)

※ 약 200억원(186+17)을 피해배·보상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선주보험사의 공탁에 의해 정부대지급을 예방하여 역으로 이에 상응하는 이자부담을 경감

1.3 에스크로우 계좌개설

1.3.1 에스크로우 협력은행 선정

정부는 2008년 7월 1일 사고 선주·보험사와 신속한 피해배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2차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현금공탁 부담을 덜게 된 선주·보험사에게 피해배상금 지급 건마다 해당 배상금 지급시까지 공탁이자에 해당하는 6% 이자를 부담토록 하여 향후 적립될 동 6% 이자 상당의 금액과 동 금액에 대한 이자를 피해 보상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선주보험사측에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을 에스크로우 협력은행으로 선정할 것을 희망함에 따라 이들 은행의 견적서를 수령하여 검토('08.7.2.~7.14)하였다.

그 결과 외환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수수료, 이자율 면에서 유리하지만, 허베이 스피리트호에서 외환은행(내자지점)을 선호함에 따라 협력은행 선정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내용의 공문송부를 조건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Hebei Spirit Interest)측의 의견에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1.3.2 에스크로우 계약체결

2008년 8월 18일 국토해양부,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 보험사(Skuld P&I), 그리고 외환은행은 7월 1일에 체결된 제2차 협력계약에 따라 향후 배상금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하게 된 공탁이자 수준의 보상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에스크로우 계약’을 체결하였다(<부록 5> 에스크로우 계약서 및 송금지시서).

4자간에 에스크로우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배상 협력계약을 통해 확보되는 공탁수준 이자에 대한 관리방안이 비로소 확정되었고, 이로 인해 정부는 선주보험사의 피해보상한도액(약 1,400억원)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제2차 협력계약의 이행을 위한 부속계약으로 이번에 체결된 에스크로우 계약에 따라 선주·보험사가 손해 배상금에 대한 사고일부터 배상금 지급일까지의 6% 이자를 배상금이 지급된 다음 달 1일에 에스크로우 계좌에 입금하게 되면 계좌관리은행은 이를 일체의 관리비용이나 은행수수료 없이 1년 정기예금 또는 국토해양부·선주 및 보험사가 정하는 예금으로 관리하게 되며, 에스크로우 계좌에 입금된 원금과 이자는 국토해양부와 선주·보험사의 공동지시에 따라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해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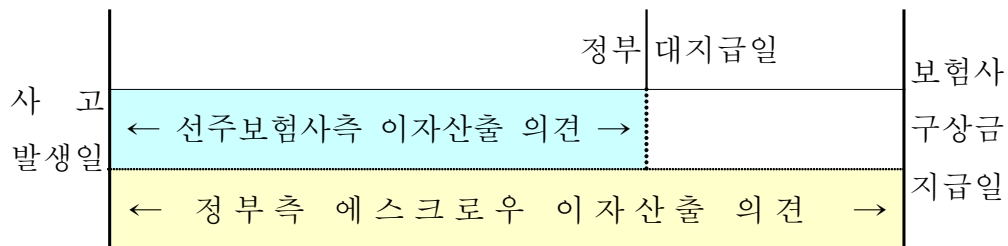
1.4 에스크로우 이자 적립현황 및 관리·운용

1.4.1 보험사측의 이자에 대한 이의제기

2008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와 선주보험사간 제2차 협력계약서를 체결하여

이자(6%)는 국제기금보상한도액(3,216억)과는 별개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위한 추가자금으로 활용키로 하였다(계약서 제4조(d)).¹⁰¹⁾

그런데 정부의 대지급금 구상금과 관련하여 2008년 10월 집행위 비공식 회의에서 이자산정기간을 정부가 대지급금을 청구자에게 지급하는 날까지로 축소하여 산정할 것을 요청하고, 2008년 10월 30일 이에 대한 협의요청을 하였다.



<그림 4-2> 에스크로우 이자 산출방식(기산일) 의견 도식표

※ 정부 대지급금 대위청구 현황 : 105건, 총 175억원

※ 이중 30건 161억원은 SKULD로부터 구상금 회수 완료('09.3)

선주보험사측은 이메일 통지를 통하여 그동안 피해주민들에게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협력계약서 등을 체결하는 등 정부측과 협력해 왔으나, 에스크로우 이자 부분에 대한 정부측 주장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선주보험사측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2차 협력계약서 4(b)에 따른 이자는 「'07.12.7부터 각 청구인에게 대하여 해당 청구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진 날까지 계산」 되어야 하나,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클럽 등으로부터 구상금을 단순 회수한 정부는 동 청구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향후에도 클럽은 정부 대지급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청구인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까지만 연 6%이자를 기산하여 에스크로우 계좌로 입금하겠다는 것이었다.

101) 2009년 5월 11일 현재 지급된 손해배상금(354억원)에 대한 이자로 19억원 입금되었다.

<표 4-4> 2008년도 선주보험사의 에스크로우 이자 입금현황

(단위 : 원)

배상기간	배상금 지급액	6% 이자		비 고
		입금액	입금일	
'08.2~7월	11,211,859,050	116,919,850	'08. 8. 29	배상금
'08. 8월	693,365,417	30,192,346	'08. 9. 2	배상금
'08. 9월	1,261,207,679	57,608,085	'08.10. 1	배상금
'08. 10월	1,333,961,078	70,499,996	'08.10.31	배상금
'08. 11월	1,782,380,825	102,447,554	'08.12. 1	배상금
'08. 12월	824,929,870	49,910,823	'09. 1. 2	배상금
합 계	17,107,703,919	427,578,654		

※ 2차 협력계약서(제4조d항)에 의거 에스크로우 이자는 배상금이 지급된 달의 익월 첫 영업일에 입금하여야 함

※ '09.3월 정부 대지급금 구상금에 대한 클럽의 6% 이자 송금차액(598,846,459원)이 발생함에 따라 처리방안 협의·검토

1.4.2 선주보험사 제안에 대한 정부입장

선주보험사측에서 제시한 상기의 제안에 대하여 정부는 이메일 통지가 있는 다음날('08.10.31) 수용불가 입장을 통보하였다.

정부가 수용불가 통보를 한 이후 선주보험사의 담당자(Sebastian Walden)가 2009년 1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와 2009년 1월 21일에 있는 제11차 정례회의 등에서 동 건에 대한 추가협의를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였다.

그러나 선주보험사측이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그 이후에도 선주측에서 별다른 입장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2009년 4월 1일 선주보험사가 대지급금 구상상환금(161억원)의 이자산정기간을 당초 자신들이 주장한 대로 일방적으로 축소·산정하여 629백만 원을 송금해 옴에 따라 정부는 2009년 4월 20일 동 이자산정기간 축소와 관

련하여 선주보험사에 이자부족분(599백만원) 즉시 송금 요청하고, 미송금시 계약위반으로 간주함을 통보하였다.

1.4.3 에스크로우 이자관련 업무협의

2009년 5월 6일(수) 오후 2시 평촌 별관 회의실에서 국토해양부 피해보상 지원단과 선주보험사측이 에스크로우 이자 관련 업무협의를 가졌다.

선주보험사측은 상기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2차 협력계약서상의 에스크로우 이자관련 규정 제4조(b)의 기본원칙에 대해 클럽측 입장을 정부가 수용한다면, 구상합의 지연 등으로 정부 대지급과 구상상환시까지 상당한 기간차가 발생한 1차 구상상환금(160억원) 관련이자(약6억)에 대해서는 50%는 분담할 용의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에 정부는 클럽이 제시한 상기 협의안에 대하여 추가 요구한 이자 전액을 송금하여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2차 협력계약서 관련 조항 및 그동안의 이자 요구에 대한 진행경과를 설명하고, 2009년 3월에 상환된 정부 대지급금 구상금에 대한 선주보험사측의 에스크로우 이자 과소입금액(약6억원)은 추후 발생한 이자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추가 송금·적립할 것을 요청하였다.

에스크로우 이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자 산정기간과 해당조문(계약서 제4조(b) : 이자는 2007년 12월 7일부터 각 청구인에 대하여 해당청구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진 날)의 해석과 관련하여 선주측은 청구인을 원청구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지만, 정부는 원청구인으로 부터 대위권을 받은 정부도 청구권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다.

둘째, 대지급은 특별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해당 청구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피해자의 배상청구이든, 정부의 구상청구이든 관계없이 선주보험사가 배상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점까지의 기간동안의 이자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셋째, 만약, 클럽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 협력계약서 위반으로

간주하여 민사소송 등의 대응조치를 추진할 계획임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클럽측은 2009년 6월 22일 클럽 책임자인 클라우스 부사장 일행이 방한할 예정이므로 그때 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를 희망하였다.

※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 결과

- 선주측 보험사에서 협력계약서에 기한 채무이행을 거절할 경우,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약정금 지급의 訴 등을 제기하거나, 계약 해지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1.4.4 선주보험사측 수정제안 및 합의사항

정부가 예상보다 강경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선주보험사측은 2009년 7월 7일 구상금 지급일까지 이자를 적립하는 정부측 원칙을 수용하되, 구상금 지급을 위한 검토기간(2주) 중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수정안을 제안해 왔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선주보험사(Skuld)의 수정제안에 대한 수용의사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최종 합의서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다.

선주보험사가 수정 제안한 내용과 합의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주보험사는 대지급금에 대한 에스크로우 이자는 대지급일이 아니라, 구상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을 산출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수용기로 합의하였다.

둘째, 다만, 정부의 대위행사 및 선주보험사의 구상을 신속히 실시하기 위해 양측의 최소한의 업무 소요기간을 인정하여 정부의 대위청구 준비를 위해 대지급일로부터 2주간의 고정기간 동안 에스크로우 이자를 적립하고, 선주보험사(HS센터)의 구상준비를 위한 2주간은 이자 발생을 임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하였다(단, 2주 이후에는 구상일까지 이자가 다시 발생함).

[SKULD측의 에스크로우 이자적립 수정제안내용]

- ◎ 사고일
 - ⇒ 에스크로우 이자 발생
- ◎ 청구인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일
 - ⇒ 에스크로우 이자 발생
- ◎ 정부 대위청구서 제출기간 2주
 - ⇒ 에스크로우 이자 미발생
- ◎ 완전한 대위청구서가 제출된 날
 - ⇒ 에스크로우 이자 미발생
- ◎ 허베이 스피리트호 대위청구서 검토 인정기간 2주 기일
 - ⇒ 에스크로우 이자 발생
- ◎ SKULD의 대지급금 구상일

한편, 기존 대지급금 구상금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기 원칙과는 별도로 기존 대지급금 구상금(161억원) 및 구상되지 않은 대위청구분(약 15억원)은 구상합의서에 대한 양측 이견으로 대위 및 구상에 많은 시일(4~6개월)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에스크로우 이자는 선주보험사에서 50%를 적립하기로 하였다.

둘째, 2009년 8월 중에 정부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금 상환시 에스크로우 적립방안을 2차 협력계약서의 부속서인 에스크로우 계약서의 첨부합의서로 작성하거나, 별도의 실무합의서로 작성하여 협력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정부 대지급금 대위 청구시 세부절차(증빙서류 등)를 실무합의서에 반영시킴으로써 대위청구 및 구상 관련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표 4-5> 2009년도 선주보험사의 에스크로우 이자 입금현황

(단위 : 원)

배상기간	배상금 지급액	6% 이자		비 고
		입금액	입금일	
'09. 1월	-	-	-	배상금
'09. 2월	1,485,982,318	106,457,156	'09. 3. 2	배상금
'09. 3월	631,867,853	48,597,362	'09. 4. 1	배상금
	16,131,636,617	629,413,479	'09. 4. 1	구상금
'09. 4월	8,928,277,444	717,293,583	'09. 5. 4	배상금
'09.06월	3,485,337,575	317,075,647	'09.07.01	배상금
'09.07월	2,321,568,727	223,888,133	'09.08.19	배상금
'09.08월	2,341,241,471	235,245,407	'09.09.01	배상금
'09.09월	2,556,259,655	275,388,196	'09.10.06	배상금
	9,076,514,157	905,015,770	'09.10.05	대지급 구상금
'09.10월	4,813,848,100	535,293,447	'09.11.02	배상금
	571,813,774	59,980,552	'09.11.03	대지급 구상금
합 계	52,344,347,691	4,053,648,732		

※ 대지급 구상금에 대한 에스크로우 이자(6%)는 정부 대지급일까지 100% 적립하고 있으며, 대지급일부터 구상금지급일까지 이자는 클럼측과 협의 중이며 합의서 체결 시 추가 회수 예정

※ 2009년 1월과 5월의 경우 선주보험사의 배상금 지급 실적이 없음

2. 이중지급방지협약

2.1 추진배경 및 경위

피해보상 청구자들이 국제기금 사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HS센터에 배상금 수령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정부에 대지급을 신청함에 따라 정부와 HS센터에서 각각 배·보상금의 지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배상금·보상금의 이중

신청여부를 실시간으로 식별할 수 없어 이중 지급가능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문제되었다.

따라서 보상주체측(국제기금 및 선주보험사)에서 이중지급 방지책 강구를 위한 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부와 배상 및 보상주체(선주 보험사, 국제기금)간에 이중지급 방지를 위한 별도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보상주체측과 정부는 이중지급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방지장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지급절차에 대해 양당사자간 실무급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하였다(<부록 6> 손해 배·보상금 이중지급방지절차에 관한 합의각서).

2.2 추진경과

국토해양부 피해보상지원단과 보상주체(국제기금, 선주보험사, HS센터)는 2008년 8월 중 이중지급방지절차에 관한 실무급 MOA(이중지급 방지절차 합의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중지급 방지방안 협의를 개시하고, MOA 체결 전까지는 협의된 시행방안에 따라 상호 확인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 국토해양부와 HS센터의 특별실무회의

- 제1차 회의 : 2008.8.26, 10:00~13:40/ 국토해양부(평촌)
 - 제2차 회의 : 2008.8.29, 13:00~18:00/ HS센터 사무실
 - 국토부 피해보상지원단, 보상주체(국제기금, 선주보험사, HS센터)
 - 피해보상지원단(4명), 국제기금측(4명), 선주보험사측(3명), HS센터장
-

보상주체측에서는 정보공유시스템 구축만으로는 이중지급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중지급방지를 위한 합리적 체제정비를 요구하면서 이중지급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손해 배·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중지급방지를 위한 3가지 방안을 두고 각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 이중지급방지를 위한 3가지 방안

- ① 제1안 : 선주보험사에서 전액 지급(보상주체측이 선호)
 - ② 제2안 : 정부에서 모든 청구를 대지급한 후 대위청구
 - ③ 제3안 : 매 클레임에 대해 초기에 지급주체를 결정하여 지급절차 진행(한 쪽에서는 지급절차 중단)
-

상기 3가지 방안에 대한 협의결과 특별법상 대지급은 청구인이 선택하는 임의규정으로 제1안과 제2안은 현실적으로 시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제3안의 세부시행방안을 논의하였다. 2008년 11월~12월에는 그동안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MOA(안)을 마련하여 손해 배·보상 주체와 협의한 다음, 변호사 법률자문을 거쳐 국제기금측과 MOA최종(안)이 마련됨으로써 2009년 1월 21일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
- 체결일시 / 장소 : 2009. 1. 21 15:00 / HS센터
 - 서명인 : 국토해양부 피해보상지원단 지원제도팀장 vs HS센터장(선주보험사 및 국제기금 대리)
 - 주요내용 : 배상금 이중지급 방지를 위한 세부절차 규정
 - 적용범위 : 선주보험사의 재원으로 배상금 지급시까지 적용
 - 합의각서에 따라 정부는 대지급금 지급시 이중지급방지절차를 이행하게 됨
 - MOA에 따라 HS센터는 배상금 지급현황을 파악·관리하고, 배상금 지급시 지급내역을 지원단에 송부
-

2.3 합의각서(MOA)의 주요내용

이중지급방지를 위한 보상주체측과 정부의 양당사자간에 합의한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지급이 발생한 경우 양해각서 내용을 위반한 측에서 이중지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HS센터에서 합의서를 받은 후 통상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대지급을 위한 사정금액을 확인 요청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이를 통지하기로 하였다.

이중지급방지를 위한 세부시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주체 결정방안과 관련하여, 대지급 신청시기와 HS센터의 합의서 수령시기를 비교하여 먼저 진행되는 측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지급을 위한 사정액 조회기간 중 HS센터에서 합의서를 수령하는 경우 HS센터가 지급주체가 된다. 다만, 보상주체측에서 합의서 수령 후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정부에서 대지급 실시하기로 한다.

둘째, 지급주체 확인방법과 관련하여 지급주체측에서 지급의사를 상대측에 통지한 후, 통보를 받은 측에서는 동일 청구 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서명하여 상대방에 송부하기로 한다.

셋째, 지급절차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보상주체측과 정부 중 어느 일방이 최종 지급요청서를 받으면 상대측에 이 사실을 통보(서면 및 구두확인)하고, 상대측으로부터 해당 청구 건에 대해 지급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에 지급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지급완료 후에는 상대측에 지급사실을 서면 및 구두로 통보하여 확인하기로 한다.

이중지급 방지절차(정부 대지급시)

① 사정결과 통보(국제기금 → 청구인) ⇒ ② 대지급 신청(청구인 → 정부) ⇒ ③ 대지급 신청 통보(정부 → HS센터) ⇒ ④ 미지급 확인서 송부(HS센터 → 정부) ⇒ ⑤ 대지급 및 결과통보

- 배상금(대지급금 포함) 지급을 먼저 신청받은 측에서 배·보상금을 지급하고, 다른 지급주체는 동 건에 대한 미지급확인서를 통보
- 이중지급 발생시 책임소재 규정
 - 이중지급의 발생책임 지급주체가 이중지급금 처리
- MOA 적용범위
 - 국제기금측의 요청에 따라, 동 MOA는 선주보험사의 재원(선주책임한도액)으로 지급시까지만 적용
 - 국제기금측은 선주보험사(제2차 협력계약서에 의거 사정액의 100% 지급)와 국제기금(지급률 : 사정액의 35%)의 지급률이 달라 별도 서면합의가 없는 한, 국제기금에 의한 보상금지급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음

제 3 절 정부와 HS센터 정례회의

1. 회의 운영개요

2008년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영국에서 개최된 제41차 국제기금(IOPC Fund) 회의 기간 중 우리 대표단과 국제기금측은 비공식 협의를 통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보상방안 협의를 위한 주간 정례회의 개최에 합의하고, 정례회 개최 장소, 주기, 참가범위, 의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결과는 첫째, 회의는 매 2주마다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둘째, 정례회의 장소는 HS센터와 정부측 지정장소(국토해양부 HS피해보상지원단)를 교대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셋째, 개최 요일 및 일시는 격주 간격으로 월요일 15:00에 개최하기로 하였고, 넷째, 회의 진행방식은 이전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의 추진경과 등에 대해 우선 협의하고 새로운 의제에 대해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국제기금측 회의참가자는 HS센터장을 비롯하여 KOMOS, ITOPF, 협성검정, 스파크인터내셔널 등 관계자들이 사안에 따라 필요시 참석하기로 하였고, 정부측은 국토해양부 및 농수산식품부의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되 필요시 기술자문을 위한 전문가를 옵저버로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토해양부(국제해사팀) 사무관이 국제기금측과의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coordinator 역할을 수행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HS센터간 정례회의는 2008년 7월 2일 HS센터에서 제1차 정례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2~4주 간격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2009년 12월 15일 제20차 정례회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운영되어 왔다.

2. 주요의제 및 논의결과

정부와 HS센터간 정례회의는 방제인건비 등 신속한 사정과 보상촉구, 소득추계방식 적용방안, 정보공유 등의 상호 협력방안 등 그간의 주요 협의 사항들을 회의안건으로 다루고 있으며, 피해보상 업무추진에 국제기금측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나 지역주민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 정보를 공유해야 할 사항 등을 회의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수산분야에 국한된 사항은 농식품부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특정 클레임에 대한 사정진행상황 문의 및 보상촉구 등은 지양해야 한다.¹⁰²⁾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총 20회의 정례회의가 개최되었고, 주요 의제 및 논의결과는 <표 4-6>와 같다.

<표 4-6> 정례회의 주요의제 및 결과

구분	일시 장소	참석자	논의내용 및 결과
1차 (사전)	08.7.2 HS센터	- 정부측 - 국토부(4명) - 농식품부(4명) - 국제기금측 - HS센터(3명)	- 장소 : Home & Away방식 - 주기 : 격주(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 시간 : 15:00-17:00(2h) - 대상 : 정부관계자 및 전문가 - 농림부 어민참석 주장에 HS센터는 거부
2차	08.7.14 평촌	- 정부측 - 국토부(10명) - 농식품부(5명) - 지자체(3명) - 국제기금측 - HS센터(5명) - KOMOS(2명) - 김&장(1명)	- 상호 정보공유방안 - 맨손어업 피해보상 방안 - 오염도가 낮은 굴양식장 피해보상 방안 - 방제비용 중간사정 상황 - 관광분야 피해사정 정보제공
3차	08.7.28 HS센터	- 정부측 - 국토부(6명) - 농식품부(2명) - 지자체(3명) - 국제기금측 - HS센터(2명)	- 정보공유 업무협약서 체결 합의 - 방제인건비 중간사정률 - 맨손어업 피해보상 추가 논의

102) 다만, 많은 지역주민들이 공통으로 연관된 클레임의 경우 협의 가능(클레임번호, 청구일자, 청구 금액 등 구체적인 자료 첨부).

구분	일시 장소	참석자	논의내용 및 결과
4차	08.8.18 농식품부	- 정부측 - 국토부(7명) - 농식품부(3명) - 지자체(3명) - 국제기금측 - HS센터(2명)	● 맨손어업 피해보상방안 기준안 협의 ● 근해어업 피해조사 추진방안 ● 가두리 양식장 어류폐사 관련 사항 ● 펀드-정부간 정보공유방안 및 배·보상 관련 일반사항 논의
5차	08.9.1 HS센터	- 정부측 - 국토부(9명) - 농식품부(3명) - 지자체(3명) - 국제기금측 - 국제기금(2명) - P&I Club(1명) - ITOPF(1명) - HS센터(2명)	● 손해 배·보상 청구 건에 대한 신속한 사정 ● 최종사정액에 대한 이자보전 ● 대지급 위한 사정정보, 대위통지서안 검토 ● 정보공유 세부방안 검토 ● 맨손어업 및 근해어업 피해 조사방안 ●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 어류폐사 관련사항
6차	08.9.22 농식품부	- 정부측 - 국토부(7명) - 농식품부(2명) - 지자체(3명) - 국제기금측 - HS센터(2명)	● 사정결과 동의 청구인 배·보상 절차 ● 피해배상 관련 이자지급 문제 ● 배상-대지급 이중지급 방지 ● 대지급에 따른 대위채권 청구 ● 지자체 청구 주민방제비 사정·지급 ● SLQ 관련 정부채권 사정 관련 사항 ● 정보공개 절차, 방법 관련 합의 ● 대부채권 확보방안 협의 ● 맨손어업·근해어업 조사관련 논의 ● 바지락 폐사 원인 조사 ● 출어자제 및 재개조치 설명 등
7차	08.10.8 HS센터	- 정부측 - 국토부(8명) - 지자체(1명) - 국제기금측 - HS센터(1명) - HS TCRO(1명)	● 소득추계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펀드측에서 피해조사 실시 요청 ● HS센터에서 정보공개동의서 발송 설명 ● 관광분야 청구 및 조사 현황 등 논의
8차	08.11.3 국토 해양부	- 정부측 - 국토부(6명) - 농식품부(3명) - 지자체(3명) - 국제기금측 - 사무국 2, KOMOS 1 - P&I Club(1명)	● 손해 배·보상 현황 및 애로사항 ● 피해보상 정보공유 및 대부금 지원 관련 협조 요청 사항 ● 정부의 대위 청구에 관련 사항 ● 정부채권 후순위(SLQ) 관련사항

구분	일시 장소	참석자	논의내용 및 결과
9차	08.11.26 HS센터	- 정부측 - 국토부(7명) - 농식품부(2명) - 지자체(3명) - 국제기금측 - 사무국 (1명) - P&I Club(1명) - HS센터 (1명)	- 피해보상 거절(반려)현황 공유 -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 - 기금측 현지조사업체와의 협의 - 배·보상 이중지급 방지관련 협의 - 정부 후순위 채권 관련사항
10차	08.12.16 국토 해양부	- 정부측 - 국토부(7명) - 농식품부(3명) - 지자체(3명) - 국제기금측 - HS센터(2명)	- 피대위에 위임장 제출시 정보공개동의 제출 생략 - 국토해양부 계좌로 보상금지급시 수령자 클레임번호 표시 요청 1~2월분 민간방제비용 조기사정 촉구 - 맨손어업자 조기면담 요청 - 이중지급방지 MOA 체결시기 협의
11차	09.1.21 HS센터	- 정부측 - 국토부(7명) - 농식품부(4명) - 지자체(4명) - 국제기금측 - 사무국 (1명) - P&I Club(1명) - HS센터 (1명)	- 이중지급방지절차 MOA 서명 - 양측이 번갈아 회의주재 할 것을 제안하고 참석인원 등은 추후 계속 협의기로 함 - 정부 대지급금 구상합의서 중 변호사 비용수정 문안제시, 추후 법률적 검토 후 조속히 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합의 - 그룹 청구분내 개별 청구인의 자료제공 요청, HS센터는 비 전산방식 제공 가능표명 - 민간방제비용 등 피해보상청구의 접수·사정 및 지급지연 사례를 소개·전달하고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상추진 촉구
12차	09.2.11 농식품부	- 정부측 - 국토부(6명) - 농식품부(3명) - 지자체(3명) - 국제기금측 - HS센터(2명)	- 양측이 번갈아 회의주재, 정부측 12명 이내로 제한 등 회의 진행방식 합의 - 관광분야 청구 반려건의 사유나 유형 등 정보를 HS센터가 정부에 제공하기로 합의 - 관광분야 소득추계방식 적용, 정부대지급금 구상합의서에 대한 추가협의필요, 민간방제비용의 신속한 사정 등 정부요청사항 전달 - 보상청구관련 정보의 주기적 제공 등 정보공유 관련사항 협의 완료
13차	09.3.10 HS센터	- 정부측 - 국토부(7명) - 농식품부(3명) - 지자체(2명)	정부 대지급금 1차 대위분 129억원 구상합의 - 1차 구상합의서 서명 및 2차 대위분 합의서 내용검토

구분	일시 장소	참석자	논의내용 및 결과
13차 (계속)		- 국제기금측 - HS센터(2명)	- 민간방제비용에 대한 신속한 사정 촉구 - 기금측도 우선과제로 추진중이며 3월 집행 위 이전 완료를 위해 노력 - 대부 질권설정 및 개별 청구자 관리방안 협의 - 질권설정통지서 개정 및 국제기금측 DB시스템 보완관련 협의
14차	09.4.30 HS센터	- 정부측 - 국토부(6명) - 농식품부(3명) - 지자체(3명) - 국제기금측 - HS센터(2명)	- 맨손어업 신속한 접수, 민간방제비 및 그룹청구권 등 신속한 사정촉구 - 지난 회의(4.16)에서 제기한 태안 맨손어업 440건 등 접수 완료, 직원충원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함 - 대부 질권설정 관리 등을 위해 기금측의 DB시스템을 개별 청구자 등록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정부측과 소그룹 미팅을 갖기로 함 - 지자체 주민인건비 분리지급, 에스크로우 이자, 방제비 부가세 등 현안에 대한 정부측 요구사항 전달
15차	09.6.1 국토 해양부	- 정부측 - 국토부(5명) - 농식품부(4명) - 지자체(3명) - 국제기금측 - HS센터(2명)	- 센터측은 '08.1~2월분 민간 방제비용에 대한 국제기금의 승인이 2~3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완료되어 proposal letter를 작성 중에 있으며, 지자체 선지급분을 분리하여 지급하겠다는 입장 - 유가상승, 경기침체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등으로 비수산분야 청구에 대한 사정과 보상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광분야 통계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함 - 손해배상(보상)금에 대한 가압류 관련, 법률적으로 공동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함
16차	09.7.9 HS센터	- 정부측 - 국토부(5명) - 농식품부(3명) - 지자체(4명) - 국제기금측 - HS센터(2명)	전남 김양식장 피해배상과 관련, 행사계약자 명단 및 배상금 수령 위임장을 무안군 4개 어촌계로부터 제출받아 김&장에서 검토하고 있고, 이와 병행하여 사정결과통지서 및 배상 합의서를 작성 중임(배상금 수령 위임장 : 행사계약자 → 어촌계장)

구분	일시 장소	참석자	논의내용 및 결과
16차 (계속)			- 지역주민 생계난 및 방제업체 경영난을 고려, 방제비용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50% 선지급(보령시 등 요구), 방안 등을 펀드측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 관광분야통계 및 소득추계방식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관광클레임사무소 및 정부측 책임자간 실무협의를 진행기로 함 - 배상금 수령권한 위임시 인감증명서 폐지방안, 대부금에 대한 질권 설정 통보서류 간소화 등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정부측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센터측에서 적극 법률검토 등 추진기로 함 - 당진군 관광분야, 서산시 굴양식시설 철거비용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가 설명하고 긍정적인 검토와 사정 촉구
17차	09.8.4 농식품부	- 정부측 - 국토부(4명) - 농식품부(4명) - 지자체(4명) - 국제기금측 - 사무국(1명) - HS센터(1명)	- 전남지역 김양식(총유어업권) 피해 관련, 정부의 대지급금 지급방안 및 세부절차에 대한 국제기금측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HS센터는 무안지역 김양식 주민들과의 배상금 지급 합의에 관한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추진기로 협의 - 민간 방제비용에 대한 선지급 추진 및 출어자제 관련 업무협의 등에 대한 국제기금측의 신속한 대응과 협력을 촉구 - 국제기금측은 내부방침이 마련되면 이에 관한 사항을 정부측과 협의할 계획이라는 입장 표명 - HS센터측은 관광분야 피해에 대한 조사업체(INTECO, 국제검정공사)가 추가·선정되어, 현장 조사업무에 투입될 것임을 통보 - 국제기금측은 이번 조치로 20% 가량의 조사 인원이 증원되었기에 보다 신속한 관광분야 피해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18차	09.8.26 HS센터	- 정부측 - 국토부(3명) - 농식품부(4명) - 지자체(2명) - KORDI(1명) - 국제기금측 - HS센터(1명)	- 지원단은 맨손어업 피해보상청구 등에 대한 HS센터의 접수지연 사례를 지적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원활한 대부지원 등을 위해 신속한 피해보상청구 접수 처리를 협조 요청 - HS센터측은 국제기금의 전산시스템 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접수지연에 관한 문제점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전망

구분	일시 장소	참석자	논의내용 및 결과
18차 (계속)			- 지원단은 맨손어업 피해보상청구 등에 대한 HS센터의 접수지원 사례를 지적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원활한 대부지원 등을 위해 신속한 피해보상청구 접수 처리를 협조 요청 - HS센터측은 국제기금의 전산시스템 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접수지원에 관한 문제점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전망
19차	09.11.5 HS센터	- 정부측 - 국토부(5명) - 농식품부(3명) - 지자체(7명) - 국제기금측 - 사무국(1명) - P&I Club(1명) - HS센터(1명)	- 국제기금은 방제비 사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2월말까지 방제업체 청구분에 대한 KOMOS 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 - 국제기금측은 대부금(우선)상환 확인서, 에스크로우 이자 협약서 등 피해보상 절차마련을 위해 상호 협의 중인 문서에 대한 검토(안)을 전달하고 정부측에 검토 요청 - 국제기금이 그 동안 유보적 입장이던 피대위 명칭 변경에 대한 확인절차 개선방안을 정부측과 협의·모색해 가기로 함 - 국제기금측은 태안 남면수협이 피해청구에 대한 사정이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전망
20차	09.12.15 평촌	- 정부측 - 국토부(3명) - 농식품부(명) - 지자체(명) - 펀드측(3명) - HS센터장 - 사무국 - Skuld	- HS센터측은 연말까지 민간 방제비 조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임을 설명 * HS센터는 지난 회의(11.5)시 조사 완료를 내년 2월로 전망한 바 있음 - 태안 남면수협 청구의 수산분야 사정현황(ITOPF 참여 하에 막바지 사정 중) 및 맨손어업 조사현황(I그룹 91% 인터뷰 실시) 등을 확인하고 신속한 사정 필요성 전달 * 다만, HS센터는 수산분야 사정은 국제기금측의 출어자제조치 인정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무국 입장을 전달 - 펀드측 현지 조사업체에서 무자료 민박은 물론 소규모 식당 등에 대해서도 소득추계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 * HS센터는 소득추계 적용대상이 사무국으로부터 정식 통보된 바 없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국토해양부로 통보하기로 함

3. 정부의 노력과 성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정부측과 보상주체측간의 의견조율 및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피해보상에 관한 현안사항 협의를 위해 2008년6월 제41차 IOPC Fund 회의시 국제기금측과 정례회의 개최를 합의하였다.

이후 정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손해 배·보상이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국제기금(HS센터)측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으며 2008년 7월 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9년 12월 15일까지 총 20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정부와 HS센터에서 교대(Home & Away방식)로 개최하는 정례회의에 국토해양부(보상지원단, 해사안전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지자체 및 HS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보상현안에 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이러한 정례회의는 보상주체인 국제기금측과 피해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나라 정부간의 실무적인 접촉 창구로서 손해 배·보상 관련 상호간의 정보 및 의사를 전달하여 이해를 증진시키고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을 하였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손해 배·보상에 관한 국제기금 사무국 및 집행이사회가 결정한 사항들을 실무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협의하여 국제기금등의 결정사항들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성과를 제시해 볼 수 있는 데 하나는 특별법 제정시행에 따른 우리 정부와 국제기금간의 업무협력 및 손해 배·보상체계 구축을 들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손해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주민과 국제기금간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례회의 시스템을 통해 손해 배·보상 관련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HS 피해보상지원시스템" 구축·운영과 국제기금등의 보상청구자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졌으며, 특별법령에 의한 정부의 손해보전지원(정부대지급, 대부 등) 따른 대위행사 및 채권확보 방안, 국제기금과 합의된 2차 협력계약의 세부이행사항 등이 협의되어 국제기금과의 업무협력 및 손해 배·보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피해주민에 대한 손해 배·보상이 원활히 이

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표 4-6>에 기술된 바와 같이 피해주민에 대한 손해 배·보상 과정에서 도출된 지역현안사항의 전달, 분야별·업종별 손해 배·보상관련 정보자료의 제공, 민간방제비용의 지급 촉구, 국제기금등의 손해 배·보상 결정사항의 이행 확인 등을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본 백서의 내용에 열거된 성과의 상당부분이 정례회의가 기초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 5 장 손해 배·보상 현황

제 1 절 유류오염 손해 배·보상제도 개관

1. 국제협약 개요

선박의 해양유류오염사고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은 ‘1954년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Prevention of the Sea by Oil 1954)’인데, 동 협약은 주된 내용은 해양유류오염방지를 위한 공법적인 사항만을 규율하고,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피해배·보상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당시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은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 전통적으로 다른 영역과 달리 해운영역에서의 책임제한주의가 적용되고 있었다. 당시 선주책임제한에 관한 국제협약은 ‘1957년 선주책임제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the Limitation of the Liability of Owners of Sea going Ships 1957)’¹⁰³⁾이 있었다.

이후 1967년 토리캐년(Torrey Canyon)호 사고¹⁰⁴⁾를 계기로 해운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1957년 선주책임제한협약’의 한계를 인식하고 유류오염사고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협약의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1957년 선주책임제한협약’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1.1 CLC 및 FC체계의 성립

IMO의 전신인 IMCO는 ‘1957년 선주책임제한협약’의 재검토를 통하여 유류오염사고와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 새로운 국제협약을 채택하게 되는데,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103) 그러나 동 협약은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피해구제 내지 해양오염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상운송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었다. 피해보상에 있어서도 해상법 일반 법리인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선주의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최고한도액이 480만 달러에 불과해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104) 선박이 좌초되어 약 3만톤 가량의 기름이 유출되어 영국과 프랑스는 선주를 상대로 각각 850만 불과 750만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1957년 선주책임제한협약상의 책임한도액이 480만달러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이하 ‘69CLC’이라 함)”과 이를 보충하기 위해 채택된 “1971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of Oil Pollution Damage: 이하 ‘(이하 ‘71FC’라 함)’이라 함)”이다.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는 그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자인 어민 등이 보험으로 위험을 분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선박소유자(또는 ‘선주’)의 책임제한제도로는 만족스러운 피해보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채택된 국제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1957년 선주책임제한협약’이 모든 종류의 선박에 적용되는 선주책임제도(LLMC)라고 한다면, 69CLC는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를 별도로 분리시켜 제정한 국제협약이다. 동 협약은 첫째, 69CLC상의 일반선주책임제한제도에 비하여 선주의 책임한도액을 2배로 상향조정하였다.¹⁰⁵⁾ 둘째, 선주는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책임한도액을 담보하도록 보험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그 증서를 선상에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피해자에게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였다.

71FC는 유조선의 대형화 및 물동량 증가 등으로 69CLC에 따른 선주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대형유류오염사고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선주의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류운송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정유사 등 석유업계에게도 유류피해에 따른 책임을 분담시키고 있다. 즉 69CLC상의 선주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유조선을 이용하여 유류를 수입하는 정유사 등으로 하여금 별도의 국제기금(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 IOPC Fund)을 마련하도록 하여 선주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¹⁰⁶⁾ 및 유조선 선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도 국제기금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⁰⁷⁾

105) 선주의 책임한도를 1톤당 133SDR, 최고 1,400만SDR로 상향조정하였다(제3조 제2항).

106) ‘1971년 국제기금협약’은 석유업계의 손해분담에 관한 국제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으로 유류오염피해액이 ‘1969년 민사책임협약’에 다른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한도액을 포함하여 보상한도를 3,000만SDR로 하였다. 이후 6,000만SDR로 상향조정되었다. 국제기금의 재원은 가입국 영역 내에서 연간 15만톤 이상의 특정유류를 수입하는 정유사 등의 분담금으로 조달한다.

107) 김인현, “유류오염손해배상 및 보상법 관련 최근 동향”, 『인권과 정의』 2008/10 제386호), pp.

1.2 92CLC 및 92FC체계의 성립

69 CLC와 71 FC 체계의 성립 이후에도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대형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보상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69 CLC와 71 FC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69CLC와 71FC에 대한 1984년 개정의정서(84CLC 및 84FC)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협약의 발효요건이 가입국 분담유 수량이 7억 5천만톤으로 함으로써 연간 4억 톤을 수입하는 미국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1989년 엑슨발데즈호(Exxon Valdez) 사건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선주책임제한을 인정하는 CLC체계 및 FC체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결국 미국은 동 개정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고 선주의 무한책임을 인정하는 유류오염법(OPA, Oil Pollution Act 1990)을 제정하여 IMO체계와는 달리 독자 노선을 취하게 되었다. 미국의 가입이 무산됨에 따라 사실상 미국의 가입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는 84CLC 및 84FC는 결국 폐기되었다.

이후 국제사회는 미국이 참여하지 않아도 발효가 가능하도록 한 69CLC에 대한 '1976년 개정의정서'와 '1992년 개정의정서(이하 '92 CLC'라 함)'¹⁰⁸⁾, 그리고 71 FC에 대한 '1992년 개정의정서(이하 '92 FC'라 함)'¹⁰⁹⁾를 채택하였다.

1.3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성립

92CLC 및 92FC는 1990년대까지는 잘 운영되어 왔지만, 1999년 12월 에리카(Erika)호 유류오염사고 및 2002년 11월 프레스티지(Prestige)호 유류오염사고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기존의 협약체제로는 사고 피해를 전액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유류오염사고의 보상한도를 더욱 증기시킬 필요를 인식하고, IMO는 유조선 선주의 손해배상 책임한도와 국제기금의 피해보상 한도액을 기존의 92CLC 및 92FC에 비해 각각 50%씩 인상한

71-72.

108) 92CLC의 정식명칭은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이다.

109) 92FC의 정식명칭은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이다.

“1992년 국제기금협약의 개정의정서¹¹⁰⁾(이하 ‘2003년 추가기금협약’이라 함)”를 2003년 5월 채택하였는데, 동 2003년 추가기금협약은 2005년 5월부터 발효되었다.¹¹¹⁾

1.4 우리나라의 CLC 및 FC체제 편입

우리나라는 1978년 12월 18일에 1969년 민사책임협약에 가하여 1979년 3월 18일부터 위 협약이 국내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였으며, 1992년 12월 8일에는 1969년 민사책임협약에 대한 1976년 개정의정서 및 1971년 국기금협약에 가입하고, 이들 협약을 국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국내입법으로서 1992년 12월 8일 법률 제4532호로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하여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1997년 3월 7일에는 1969년 민사책임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에 대한 각각의 1992년 개정의정서(92CLC 및 92FC)에 가입하여 이들 개정의정서가 1998년 5월 16일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들 개정의정서에 의하여 성립된 92CLC 및 92FC를 시행하기 위하여 1997년 1월 13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여 동 개정 법률은 1997년 7월 13일부터 발효되어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7년 12월 7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당시 우리나라는 92CLC 및 92FC를 비준하고, 이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수용한 상태였지만, 2003년 추가기금협약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2003년 추가기금협약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가입여부를 검토하였지만, 2003년 추가기금협약에 가입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체약국으로서 상당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2003년 추가기금협약은 92FC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대규모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¹¹²⁾ 납부하는 분담금에 상당하는 만

110) 협약(SF)의 영문명칭은 ‘Protocol of 2003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이다.

111) IOPC Fund, Annual Report 2007. p. 165 : 2008년 11월 말 현재 가입국가는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스페인, 독일, 스웨덴, 그리스, 노르웨이, 포르투갈,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슬베니아, 헝가리 등 총 21개국이다.

112) 제1차적으로 선주가 배상을 하고, 제2차적으로 1992 IOPC Fund가 보상을 한 다음에도 손해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보상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기금협약이 작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최소한 1992 FC의 보상한도액인 3천 20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2003년 추가기금협약이

금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였다. 이에 정부는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실제적인 배상가능성을 고려한 실리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에서 결국 후자의 실리를 선택함으로써¹¹³⁾ 2009년 현재 우리나라는 2003 추가기금협약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¹¹⁴⁾

2. 민사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

2.1 민사책임협약(92CLC)

2.1.1 책임주체

92CLC는 책임의 주체를 사고 당시의 등록선주 및 선박의 실제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를 구체화하고 있다. 즉, ①선주의 사용인, 대리인, 선원, ②도선사 기타 선원이 아니면서 선박에 역무를 제공하는 자, ③선박의 용선자(나용선자 곧 선박임차인 포함), 관리인, 운항자, ④선주의 동의에 의하여 또는 권한있는 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구조작업을 하는 자, ⑤방제조치를 취하는 자, ⑥이상 ③~⑤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는 협약이나 다른 근거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4항). 이는 아모코 카디즈호 오염사고 당시 미국 법원이 등기된 선박소유자 이외에 선박운항자에게도 책임을 부담시킨 것을 계기로 책임의 단일화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용선자나 선박관리회사 및 운항자를 면책범위에 포함시켰으며,¹¹⁵⁾ 구조활동과 방제조치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구조업자와 방제조치자에게 면책권을 부여한 것이다.¹¹⁶⁾

손해를 보상하게 된다.

113) 김인현, 전제서, p.76.

114) 다수의 체약국들이 쉽게 가입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제기금(IOPC Fund)의 형평성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즉, 일부 국가나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의 경우 오염사고가 발생하여도 현재의 92CLC 및 92FC의 피해보상한도액을 초과한 경우가 드물거나 없는 반면, 선진국의 경우 후진국과 동일한 규모의 사고발생에도 소득수준이 높아 피해보상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다수 국가의 출원금으로 구성된 국제기금이 일부 국가나 선진국의 유류 오염피해만을 보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5) Wu Chao, Pollution from the Carriage of Oil by ea: Liability and Compensation, Kluwer law, 1996, p. 170.

116) 목진용,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과 국내법 개정에 관하여”, 해법연구 제8권 제2호,

2.1.2 선박소유자의 책임

통상 해상법은 과실책임주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92CLC는 예외적인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소유자나 선장, 기타 사용인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선박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엄격책임주의(strict liability)를 취하고 있다. ①오염손해가 전쟁, 적대행위, 내란, 폭동 또는 예외적이고 불가피하며 불가항력적 성질의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하거나, ②당해 오염손해가 전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로서 행한 제3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③당해 오염손해가 전적으로 기타 항로시설의 유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정부, 기타의 당국의 그 시설 유지에 관한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제3조 제2항). 그리고 오염손해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선박소유자가 입증한 경우는 그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1.3 손해 배·보상의 원칙

92CLC는 지속성 유류를 화물로서 산적(散積) 운송하는 선박, 즉 유조선에 의해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발생한 오염손해에 대하여 배·보상하고 있다. 적용대상인 선박에서 화물로 운송되던 유류가 유출된 경우뿐만 아니라, 연료로 사용하던 유류가 유출된 경우도 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배·보상되는 손해는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에 불구하고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초래된 유류오염에 의하여 그 선박의 외부에서 생긴 손실 또는 손해가운데, 환경손상으로 인한 손해는 이익의 상실과 환경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할 상당한 조치비용에 한정되며, 방제조치 비용 및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도 배·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¹¹⁷⁾

한국해법학회, 1996. 10, p. 152-153.

117) 69CLC는 손해의 유형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협약상의 유류오염손해의 해석과 관련하여 천연자원에 대한 손해의 배상여부, 손상된 해양환경의 회복비용의 배상여부 등에 관하여 각국 법원의 해석이 달라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 92CLC는 이를 명시적으로 해결하고자 단서조항을 추가하였다.

2.1.4 책임 한도

협약은 선박소유자에게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게 하는 엄격책임주의를 채택하는 대신에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정하고 있는데¹¹⁸⁾, 선박톤수를 기준으로 하되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우선, 5,000톤 이하의 선박은 선박의 크기에 관계없이 300만SDR로 동일한 책임을 지며, 총톤수 5천톤을 초과하는 선박은 300만SDR에 초과된 톤당 420SDR을 곱한 금액을 더한 총액이 책임한도액이지만, 그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5,970만SDR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5조 제1항).

한편, 1996년에 발생한 러시아선적의 나호드카(Nahoda)호 유류오염사고¹¹⁹⁾와 1999년에 발생한 몰타선적의 에리카(Erika)호에 의한 유류오염사고¹²⁰⁾가 92CLC 및 92FC의 최고보상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2000년에 92CLC 및 92FC의 보상한도액을 50% 인상하였다.

<표 5-1> 92CLC 및 2000년 개정의정서의 책임한도액

구 분	책임한도액
92CLC	① 5,000톤까지 : 300만SDR ② 5,000톤이상 : ① + 매 톤당 420SDR 단, 최고한도액은 5,970만SDR
92CLC 2000년 개정의정서	① 5,000톤까지 : 451만SDR ② 5,000톤이상 : ① + 매 톤당 631SDR 단, 최고한도액은 8,977만SDR

118) 이것은 특히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은 하주가 만든 기금에서 충당하므로 큰 문제가 없이 인정되었다(Gottahard Gauci, Oil Pollution at Sea Civil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John & Sons(1977), pp.77-78).

119) 1996년 12월 20일 유조선 나호드카호(러시아 선적, 13,157G/T, 중유 19,000톤 적재)가 상해항을 출항해서 러시아의 페트르 파브로스키항(Petropavlosk)으로 항해하던 중 1997년 1월 2일 시마네현(Shimane) 오키섬(Okishoto) 북북동 약 100km의 공해상에서 황천을 만나 선체가 선수부와 선미부 2부분으로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약 6,200톤 이상의 중유가 유출되었다(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정체된 일본 방제제도 일대 개선- 유조선 NAKHODKA호 오염사고 -” 「깨끗한 바다, 밝은 미래」, 2001년 신년호. p.15).

120) 1999년 12월 12일에 중질 연료유 약3만톤을 적재한 유조선 에리카호(몰타 선적, 19,666G/T, 37,280DWT)가 프랑스 비스케이만 해상(47°12'N, 004°36'W)에서 선수와 선미부는 2개로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약 14,000톤의 화물유가 해상에 유출되었고, 약 400km에 이르는 프랑스 연안이 오염되어 염전, 굴, 조개 양식장 등 엄청난 어업피해가 발생하였다(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유조선 ERIKA호 오염사고” 「깨끗한 바다, 밝은 미래」, 2000년 창간호. p.16).

2.1.5 책임제한 배제사유

92CLC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배제사유를 “선박소유자 자신이 그 손해를 일으킬 의도로 한 작위나 부작위 또는 그러한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4항 단서).

여기서 “손해의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무모하게 한 행위”라는 용어는 영미법상의 ‘wilful misconduct’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1929년 바르샤바 국제항공운송협약에 대한 1955년 헤이그 의정서에서 처음 사용되었다.¹²¹⁾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이 개념에 비교적 익숙하므로 해석상 큰 문제가 없으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어서 그 적용요건에 관하여 다수의 논란이 남아 있다.

2.1.6 보험가입강제

92CLC는 이 협약상의 책임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체약국에 등록된 선박이 유류를 산적화물로서 2,000톤 이상을 수송하는 경우 그 선박소유자는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책임이행을 보증하는 은행 보증 등의 재정보증을 취득·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제7조 제1항). 또한 각 체약국은 이를 확인한 뒤 재정보증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고, 재정보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국선박에 대해서는 취항을 불허하고,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자국항 입출항을 금지시키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유류오염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선박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자 또는 재정보증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2 국제기금협약(92FC)

2.2.1 국제기금의 보상책임

국제기금이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경우는 첫째, 오염손해가 92CLC상의 선

121) Chao, op. cit., p.178, 주 211.

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오염손해가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피해자는 92FC에 의해 설립된 1992년 국제기금(IOPC Fund)에서 보상받는다.

둘째, 92CLC에 의하여 책임 있는 선박소유자와 재정보증자가 전액보상을 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주체인 선박소유자가 무자력이고,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와 보험에는 가입하였으나, 보험자가 무자력인 경우, 또는 보험조건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92FC는 2,000톤 이상의 유조선만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2,000톤 미만의 선박소유자가 무자력인 경우는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1992년 국제기금(IOPC Fund)이 보상한다. 보험자가 면책되는 경우는 오염사고가 피보험자인 선박소유자의 ‘고의’나 ‘무모한 행위(wilful misconduct)’에 의해 발생한 경우 통상 보험조건상 보험자는 면책되므로 이 경우 선박소유자가 무자력이면 1992년 국제기금(IOPC Fund)에서 보상한다.

셋째, 92CLC에서 선박소유자가 면책되는 경우는 ① 전쟁, 적대행위, 내란, 폭동, ② 예외적이고 불가피하며 불가항력적 성질의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한 경우, ③ 전적으로 제3자의 의도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④ 전적으로 기타 항로시설의 유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정부, 기타 당국의 그 시설 유지에 관한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이다. 이 중에서 ‘① 전쟁, 적대행위, 내란, 폭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92FC에 의해 보상된다.

2.2.2 보상책임한도

당초의 92FC의 책임한도액은 1억 3천 5백만SDR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에리카(Erika)호 사고 이후 2000년도에 IMO는 법률위원회를 소집하여 보상한도액을 50% 인상하는 개정의정서를 채택함으로써 2003년 11월부터는 2억 3백만SDR를 한도로 보상하고 있다.

2.2.3 면책사유

92FC상 국제기금이 책임을 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염손해가 전쟁, 적대행위, 내란 또는 폭동으로 발생한 때이다.

둘째, 군함과 비상업적 용도에 쓰이는 정부소유의 공용선으로부터 유출된 기름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이다.

셋째, 청구자가 오염손해가 적용대상선박에 의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지 못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오염손해가 92FC의 적용대상 선박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이다.

넷째, 오염손해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한 경우이다.

상기의 경우에는 1992년 국제기금(IOPC Fund)은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한다.

한편, 92FC는 선박소유자가 92CLC 제3조 제3항에 따라 오염손해가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이 없다(제4조 제3항).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92FC와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면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2.2.4 국제기금조성

각 체약국은 기금의 분담의무자의 명단과 전년도 유류수령량을 사무국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15조).

92FC에 따르면, 전년도에 15만톤 이상의 분담유를 해상운송에 의하여 체약국의 항 또는 터미널시설에서 수령한 자에게 기금납입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만약, 단독으로는 15만톤 미만이라 하더라도 계열회사 등에 의하여 수령된 양의 합계가 15만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담금 납입의무를 진다(제10조). 분담금은 연차분담금과 특정사고 분담금으로 구분된다.

2.2.5 재판관할권

92FC협약상의 재판관할권은 유류오염손해로 피해를 입은 체약국의 법원이 이를 행사하는데, 각 체약국은 92CLC에 따라 개시된 재판상의 절차에 92FC

가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국의 관할법원에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각 당사자가 국제기금에 대하여 그 절차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 2003 추가기금협약

2.3.1 성립 목적 및 배경

국제해사기구에서 2000년에 92CLC 및 92FC의 개정을 통해 보상한도액을 인상한 것과는 별도로 유럽연합은 에리카 사고에 따른 대책으로 이른바 ‘에리카 패키지(package) I·II’를 발표하였다.¹²²⁾ 동 패키지는 유조선을 포함한 선박의 해상안전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자체적인 유류오염 보상기금의 설치구상으로 유럽연합 역내에서 발생한 오염사고의 총액이 IMO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을 두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구상에 대해 영국이 반대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새로운 국제협약을 채택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 2002년 11월에 프레스티지호 침몰에 의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자, IMO는 2003년 5월에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설립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2003 추가기금협약”)”¹²³⁾를 채택하였다. 이는 유조선 프레스티지호 사고 이후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국제적인 피해보상제도의 개편을 끊임없이 요구해 온 유럽연합(EU)도 일단은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¹²⁴⁾

122) 에리카 패키지는 1999년 프랑스 연안에서 일어난 에리카호 침몰사고 이후 유럽연합이 작성한 선박안전 강화조치로 패키지 I 과 II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선박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오염사고를 유발시킨 선사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국선박 검사 및 항만국 통제강화, 로로 여객선의 안전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패키지 III을 준비 중에 있다.

123) 이 협약의 영문명칭은 Protocol of 2003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이다.

124) 유럽연합은 당초 대다수의 전문가가 예측한 4억SDR보다 훨씬 많은 7억 5천만 SDR(10억달러)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는 2003년 11월에 발효한 92FC의 보상한도액의 3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2.3.2 추가기금협약의 주요내용

가. 보상주체

2003 추가기금협약의 보상주체는 동 협약에 의해 설치된 2003년 국제유류 오염 추가기금(이하 ‘2003FC’이라 함)이다.

나.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

2003년 추가기금협약은 유류오염손해가 92FC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992년 국제기금에서 완전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보상한다.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책임이 개시되는 시기는 1992년 국제기금(IOPC Fund) 총회가 피해자의 청구 총액이 92FC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서 청구액에 대해 잠정적으로 결정한 경우 또는 중 국적으로 비례 배분할 것을 결정한 때이다(제5조).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최고보상한도액은 92CLC 및 92FC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최고 7억 5,000만SDR(10억 달러)인데(제4조 제2항), 만약, 확정된 손해 배·보상액이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최고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청구자에게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된다(제4조 제3항).

<표 5-2> IMO 유류오염손해배상협약의 책임한도 비교

구분	선박소유자(P&I)	정유사(국제기금)
92CLC 및 92FC	5,970만 SDR (76.5백만 달러)	1억 3,500만 SDR (173백만 달러)
92CLC 및 92FC 개정지정서(2000)	8,977 SDR (115백만 달러)	2억 300만 SDR (260백만 달러)
2003추가기금협약	위와 같음	7억 5,000만 SDR (10억 달러)

※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다. 하주의 분담금

92FC에 따라 92국제기금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화주는 전년도에 15만톤 이상의 분담유를 해상운송에 의하여 체약국의 항만이나 터미널시설에서 수령한 자이다(동 협약 제10조). 그러나 2003 추가기금협약은 해상운송에 의하여 수령하는 분담유 이외에 육상으로 운송되거나 파이프라인 등으로 운송되어 수령한 유류도 분담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해상으로 운송된 유류를 2003 추가기금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국가의 항만이나 터미널에 하역한 후, 다시 육상운송 또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2003 추가기금협약의 체약국의 영역내의 시설로 이동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는 92FC에 의하면, 해상으로 운송된 유류를 항만이나 터미널에서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분담금 부담의무가 면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해상으로 운송된 유류를 수령한 국가가 2003 추가기금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경우는 육상운송 등을 통해 최초로 수령한 체약국의 화주에게 분담금 분담의무를 지우고 있다(제10조).

이는 1992 FC와 달리 2003 추가기금협약은 임의 가입대상이었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다만, 2003 추가기금협약의 체약국이 연간 유류수령량의 합계가 1백만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체약국은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분담유량 최저한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제14조).

라. 가입 조건 및 발효요건

2003 추가기금협약은 92FC의 가입국만이 비준할 수 있는 임의적인 협약이다. 따라서 2003 추가기금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92FC의 체약국은 기존 협약 체제에 남아 있으면서 유조선 오염사고가 나는 경우 최대 2억 300만 SDR의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동 협약은 92FC 가입국 중 8개국 이상이 가입하고, 이들 국가의 전년도 분담유 합계가 4억 5천만톤이 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발효되도록 하고 있다.¹²⁵⁾

125) 2005년 추가기금협약의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2005년 3월부터 발효되었다.

<표 5-3> 유류오염사고에 관한 국제협약의 주요내용 비교

(단위 : SDR)

협약 내용	69CLC	92CLC	71FC	92FC	03FC
가입 주체	선주, 실제 소유자	좌동	연15만톤이상 유류수령자	좌동	좌동 (92FC가입국)
대상 선박	유류화물수송선	좌동 (공선상태의 유조선 및 겸용선 포함추가)	69CLC동일	92CLC동일	92CLC동일
보상 기준	수송중의 선박으로부터 유출에 의한 오염손실 및 손해, 방제조치비용 및 조치에 의한 손해	좌동 (환경파괴에 의한 이 익의 상실외의 의 보 상은 합리적 회복조 치비용에 한정 추가)	69CLC동일	92CLC동일	92CLC동일
보상 한도	● 최소 2,000프랑 ● 최대 1,400만	● 최소 1차: 300만 2차: 451만 ● 최대 1차: 5,970만 2차: 8,977만	● 최대 6,000만	● 최대 1차: 1억3천 5백만 2차: 2억3천 5백만	● 최대 7억5천만
발효 요건	8개국(100만톤 보유 5개국포함)	10개국(100만톤 보유 4개국 포함)	8개국, 유류수 령량 7.5억톤	8개국, 유류수 령량 4.5억톤	좌동 (92FC가입 국에 한함)

3.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우리나라는 69CLC에 1978년 12월 18일에 가입하였으며, 동 협약은 3개월 후인 1979년 3월 18일부터 국내 발효하였다. 1992년 12월에는 1971년 국제기금협약에 가입하고, 이들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법률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1992년에 제정하여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1997년 3월에는 92CLC 및 92FC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1997년 1월 13일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였다. 특히 2000년에 92CLC 및 92FC의 책임한도액을 50% 인상한 2003년 추가기금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이를 반영

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였고,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2009년 5월에 전면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92CLC 및 92FC의 이행을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의 내용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협약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협약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3.1 책임주체

92CLC는 등록선주에게 책임을 집중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철저히 하기 위해 단순히 선박소유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뿐만 아니라 용선자 등의 면책을 규정하고, 구조자 및 방제조치자에 대해서도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즉 ①선주의 사용인, 대리인, 선원, ②도선사 기타 선원이 아니면서 선박에 역무를 제공하는 자, ③선박의 용선자(나용선자 곧 선박임차인 포함), 관리인, 운항자, ④선주의 동의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구조작업을 하는 자, ⑤방제조치를 취하는 자, ⑥위 ③ 내지 ⑤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92CLC와 달리 책임의 주체를 선박소유자에 한정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의 선박을 나용선한 경우에 선박소유자로서 등록된 자와 나용선자를 모두 선박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호). 이 경우 선박소유자와 나용선자는 연대책임을 진다(제4조 제4항).

3.2 강제보험가입 대상선박

92CLC는 2,000톤 이상 산적유류를 화물로서 운송하는 선박소유자는 반드시 보험이나 기타의 재정보증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200톤 이상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보장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제14조 내지 제15조). 따라서 200톤 이상 2,000톤 미만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운송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당해 선박이 기항하게 될 외국이 92CLC 체결국으

로서 이러한 강제보험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더라도 우리나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이나, 기타 손해보상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

4.1 선주책임제한제도의 개요

해상기업의 보호를 위해 선박소유자에게 인정된 유한책임제도를 말하는데, 해상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는 위험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중세의 코멘다(commenda) 이래로 각국에서는 해상기업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상기업 활동에 수반되는 채무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가 발전하여 왔다.

유럽 대륙에서는 중세 이래, 영국에서는 1734년, 미국에서는 1851년부터 책임제한을 인정하였으며,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나라가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일정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일반원칙인 무한책임의 예외인데, 이러한 책임제한제도가 오늘날도 법률상의 특수한 제도로 존속하고 있는 이유는 중세 코멘다 이래 전통화된 책임제한제도의 연혁적 영향력과 위험 및 손해의 대규모성을 고려하여 자국의 해운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인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우리 상법(제769조)은 해상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하여 제3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경우 선박소유자 등의 피해보상액을 일정금액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유조선 사고로 인한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그 피해범위가 광범위 하고 국제성을 띠기 때문에 국제협약을 제정하여 선주의 책임제한금액을 비교적 높게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이들 국제협약을 수용하고 있다. 책임제한의 주체는 해상기업의 주체인 선박소유자, 용선자, 선박관리인이 되며 선박사용자가 인적회사인 경우 무한책임사원 역시 그 주체가 된다. 또한 선장, 해원, 도선사 등 기타 선박사용인과 해난구조자, 책임보험자가 된다.

선박소유자 등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사고선박의 종류와 중량에 따라 정해진 책임제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책임제한액을 책임제한기금으로

공탁하고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4.2 선주책임제한 개시결정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여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채권신고기간(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30일이상 90일미만)을 정하여 피해신고를 받는다. 피해신고가 완료되면,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이 제한채권신고서와 입증서류를 검토하여 인정금액과 인정되지 않은 금액을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이때 피해자는 인정되지 않은 제한채권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며 이에 양당사자간 합의가 안될 경우 ‘사정재판’에 회부된다. 사정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피해자나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로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법원의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으로 선주책임제한절차가 진행된다면, 피해자들은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이 공탁된 책임제한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갑과 을에게 각각 3천만원과 6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책임제한 기금액이 6천만원인 경우 甲과 乙은 공탁된 책임제한 기금에서 각각 2천만원과 4천만원을 배당받게 된다.

만약, 유류오염사고가 유조선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국제기금에서 추가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즉 위의 예에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이 9천만원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甲과 乙은 유조선 선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나머지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국제기금에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주의할 점은 위의 예에서 유조선 선주의 책임이 6천만원이고,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이 9천만원인 경우에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액의 총액은 1억 5천만원이 아니라,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인 9천만원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유조선 선주의 책임제한액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유조선 선주가 배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국제기금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위와 같이 유조선 선주의 책임제한절차가 개시한 경우 유조선 선주

가 먼저 배상을 하고, 보상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국제기금에 나머지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 원래의 손해 배·보상 순서이지만, 실제로는 국제기금이 유조선 선주에 앞서 먼저 피해보상을 한 다음, 국제기금이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선주가 신청한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¹²⁶⁾

4.3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필요성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를 유발시킨 선주 등 누군가가 책임제한절차를 신청하여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손해 배·보상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반드시 제한채권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책임제한절차 참가신고서)를 하여야 한다.

만약, 유류피해에 대한 손해조사기간 중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할 제한채권액이 확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손해액보다 다소 증액하여 신고하고, 이 경우 손해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제한채권액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신고서에 기재하여도 된다.¹²⁷⁾

5. 국제기금보상청구매뉴얼(IOPC Fund Claims Manual)

국제기금에서는 '69 CLC 및 '71 FC와는 별도로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배·보상하기 위하여 기존의 보상사례들을 기초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 획정과 손해보상액 산정 등에 관한 실무처리 지침으로 보상청구매뉴얼(claims manual)을 마련하고 있다('04.10).

보상청구 매뉴얼은 협약과는 달리 매뉴얼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사실상 이에 따라 클레임이 처리되므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¹²⁸⁾ 2004

126)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유류오염사고의 피해배상에 관한 매뉴얼, 2008. 12, p.36.

127) 상계서, p. 37.

128) 민사책임조약과 국제기금조약과는 별도로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오염손해의 유형과 손해는 각국이 처한 개별적, 구체적,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침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효력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국제기금은

년 10월 국제기금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2008년 6월에 일부 규정이 개정되었다. 매뉴얼은 3개의 편(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¹²⁹⁾

5.1 보상제도의 운용(제1편)

보상제도는 1978년에 성립되었으며 92CLC와 92FC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국제기금은 회원국들에 의해 결정, 관리되는 정부간 기구이다. 총회와 집행위원회에 의해 관리된다. 집행위원회는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총회에 의해 선출된 하부기관으로 주요 기능은 클레임을 승인하는 것이다.

한편, 집행위원회는 통상적으로 국제기금의 사무국장에게 클레임을 승인하고 지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보상한도는 92FC는 92CLC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2억 3백만SDR이고, 추가기금협약은 민사책임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7억 5천만SDR이다.

보상하는 사고의 유형에는 ①방제 및 예방조치(clean up and preventive measures), ②재산 손해(property loss), ③간접손실 또는 결과적 손실(consequential loss), ④순수 경제적 손실(pure economic loss), ⑤환경손해(enviromental damage), ⑥자문비용(use of advisers) 등 6가지 유형이 있다.¹³⁰⁾

5.2 클레임의 제출 및 사정(제2편)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서 유류오염손해로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나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다. 통상 국제기금과 선박소유자의 보험사 간에는 긴밀한 협

가능한 본 지침서에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다. 동 매뉴얼은 체약국의 손해배상법리, 유류오염사고 지역의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동 매뉴얼의 보상기준에 근거하여 손해액이 산정·청구된다면, 청구된 보상액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29) 보상청구매뉴얼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정의, 청구절차, 인정되는 손해배상보상기준 등 손해보상과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를 수록하고 있다.

130) 이러한 유형의 손해는 ①실제로 발생된 것이고, ②합리적이며 타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치와 관련된 것이며, ③유류유출의 결과에 따른 오염에 의하여 야기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 범위에 해당하고, ④보상청구에 포함되는 비용, 손실 또는 손해와 유류유출에 의해 야기된 오염 사이에 합리적인 밀접한 관련이 존재해야 하며, ⑤보상청구자는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이어야 하고, ⑥손실 또는 손해액은 적합한 자료 또는 기타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조가 이루어지므로, 클레임 청구는 선박소유자의 보험사인 P&I 클럽 또는 국제기금 중 한 곳에만 제출하면 된다. 클레임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통상 1992년 국제기금과 P&I 클럽은 공동으로 지역 클레임사무소를 설치하고는 있지만, 지역 클레임사무소는 보상가능여부 및 보상금액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다.

손해사정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와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각 항목마다 작업일지, 설명서, 계산서 및 사진과 같은 입증자료 또는 영수증이 수반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1992년 국제기금은 클레임의 사정을 위해 전문가를 지정한다. 1992년 국제기금과 P&I 클럽은 ITOPF의 조언을 활용하고 있다. 클레임의 승인과 거부는 전적으로 1992년 국제기금과 P&I club의 권한이다. 1992년 국제기금과 P&I 클럽이 클레임에 대한 결정을 하면 통상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연락한다. 사무국장은 클레임을 승인, 지불 또는 거부할 권한이 있으나, 보상 원칙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집행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

청구인이 국제기금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피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3 클레임의 유형별 제출에 대한 지침(제3편)

가. 방제 및 오염예방조치 비용에 대한 클레임

합리적인 방제조치비용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며, 오염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진다.

① 방제비용

방제작업에 대한 클레임은 인건비와 장비·도구의 임대 및 구매비용을 포함하며, 실제 사용되지 않고 대기한 장비의 비용에 대한 클레임은 장비의 소모율을 반영하여 낮은 비율로 사정된다. 그리고 방제장비의 세척·수리와 방제조치 기간 동안 소모품의 교체 등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은 허용되며, 특정 유출사고를 위해 구입한 장비비용은 그 장비가 다른 목적 또는 향후 사고에 사용이 가능할 경우 그 장비의 잔존가치는 보상에서 공제한다. 그 외에 수거

된 폐기물의 저장 및 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¹³¹⁾, 해당 당국 또는 기관, 공공단체 또는 준 공공단체는 방제조직의 고정비용 및 초래된 합리적인 추가비용 등이 보상된다.

방제비용을 위한 보상청구는 조치비용이 취한 조치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입증서류와 더불어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성공적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무슨 이유로 무엇을 하였는지, 언제 어디서 하였는지, 누구에 의해, 어떤 자원으로 얼마나 많이 수행되어졌는지를 명백하게 설명되어야 하고, 그 핵심은 기록을 잘 유지하는 것이다.

② 오염 예방조치

92CLC(제1조 제7호)에 의하면, 오염예방조치란 오염사고 이후 손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말하기 때문에 해안과 해상에서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거의 모든 방제작업은 92CLC상의 방제조치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국제기금은 유류오염손해로 보상하고 있다(92CLC 제1조 제6호). 일례로 중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유류에 민감한 자원(연안 서식지, 산업공장의 취수구, 양식시설, 요트장 등)보호, 오염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난작업 등에 투입된 합리적인 오염예방조치비용도 포함된다(92CLC 제1조 제8호)

또한, 오염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도 역시 보상범위에 포함하지만¹³²⁾, 오염으로 입은 피해를 보수하는 범위를 벗어난 시설개선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

나. 재산손해에 대한 클레임

재산손해에 대한 클레임은 유류에 의해 오염된 재산을 세척하거나 수리 또는 대체하는데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청구이다.¹³³⁾

131) 청구인이 수거된 유류의 판매로 일정수입을 얻는다면 이러한 수익은 통상 지불될 보상금에서 공제된다.

132) 예를 들면, 정화작업으로 인하여 도로·안벽·제방에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수하는데 소요된 비용도 보상된다.

133) 재산피해는 재산이 청소되거나 수리 또는 대체될 때까지 그 소유자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로 경우에 따라 소유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한다. 예를 들어, 양식시설이 유류에 의해

재산손해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물적 재산에 직접 가해진 재산적 피해를 말하는데, 재산이라 함은 어장·염전이나 양식장, 해변 근처의 건물 및 기타 시설물, 토지(토석), 선박 및 기타 동산(농작물·과수) 등 민법상의 물건과 유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재산손해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전부멸실과 일부멸실로 나누어 보상하게 되는데,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그 배상액은 멸실 당시 그 물건의 가치 상당액 및 그 후의 지연이자로 계산하고¹³⁴⁾, 일부 멸실인 경우에는 시장가격에 의한 가격평가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이때 보상은 수리비보상¹³⁵⁾이 원칙이고, 교환가치의 감소액은 보통 사고 당시의 시장가격에서 수리 후의 시장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청구서에는 ①재산오염의 피해정도와 피해발생사유에 대한 설명, ②파손되거나, 피해를 받았거나, 대체가 필요하거나, 보수 또는 청소가 필요한 물품의 내역과 사진, ③물품의 수선비, 청소비 또는 대체비용과 대체물품의 연령, ④정화작업으로 피해가 발생한 도로 등에 대한 방제이후의 복구비용과 일상적인 보수계획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어업·해양양식업·어업가공분야에서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클레임

유류유출에 의해 오염된 재산의 소유자가 상실한 수입손실분에 대해 보상이다(간접손해¹³⁶⁾, consequential loss). 유류유출에 의해 재산이 오염되지는 않았지만, 유류오염에 의해 소득 손실을 받은 경우의 보상이다(순수한 경제적 손실¹³⁷⁾). 급유업자, 얼음사업자, 생선운반업자, 수산물창고업자, 소매상

오염된다면 양식업은 중단될 것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된다. 또한, 선체, 유람선, 어선(어업장비) 또는 양식장비 등 유류에 오염된 물건의 세척·수리·대체 등 재산의 합리적인 피해복구비용도 재산손해에 해당한다.

134) 다만, 보상액 산정시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만큼을 공제한 가액으로 보상한다. 예를 들어, 2년 된 어업그물이 심한 오염으로 인해 교체되어야 하나, 3년 사용 이후에 교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교체비용의 1/3만이 보상된다.

135) 수리비용은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 훼손된 물건의 수리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 그 수리비가 훼손된 물건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물건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상되지 않는다.

136) 유류오염으로 인한 물적 손해의 결과로써 야기된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즉 재산에 대한 물리적 침해가 있고, 그로 인하여 재산의 소유권자 또는 이용·사용권자에게 발생한 소득 또는 수익상실을 의미한다.

137) 유류사고로 재산이 오염되지는 않았지만, 보상청구자가 벌어들이는 일련의 수익이 상실된 경우

등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역시 보상받을 자격이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오염과 손실 또는 피해 사이에 충분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¹³⁸⁾

양식자원이나 갑각류 등이 폐사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에 한하여 보상되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과학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하다. 이때 주의할 것은 공공기관의 어업 또는 수확 금지조치는 그러한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은 생산물이 폐사되었다는 정당한 사유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류오염사고 후 어류나 양식물이 폐사한 경우 보상청구자가 보관 중인 어류 또는 양식물의 표본, 사진, 피해의 성격과 범위를 나타낼 수 있는 기타 기록물에 의해 그 피해를 입증해야만 하며, 국제기금은 수산물 및 양식물 등의 폐사로 인한 폐기가 합리적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 보상한다. 국제기금의 판단요소는 ①생산물의 오염여부, ②정상적인 수확시기 이전에 오염이 없어질 가능성, ③각종의 폐기대상 생산물을 수중에 보관할 경우 더 이상의 생산을 못하게 되는지 여부, ④해당 생산물이 정상적인 수확 시기에 판매될 가능성 등이다.¹³⁹⁾

라. 관광분야에서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클레임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광분야에서의 경제적 손실 역시 보상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오염된 지역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 활동의 지리적

를 말하며, 순수 경제적 손해로써 보상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익의 감소가 유류오염에 의해 야기된 손실이어야만 한다.

- 138) 보상청구자가 입은 손실 또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과 유류오염사고간의 합리적인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①청구자의 사업활동과 유류오염지역간의 지리적 근접성(ex: 유류오염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 청구자의 주된 사업지역인가, 유류오염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 어장 또는 가공시설이 근접하는가, 관광호텔·야영장·식당·술집 등이 유류오염지역과 어느 정도 근접하는가 여부 등), ②청구자의 사업이 오염된 어업장소와 같이 영향을 받은 자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 정도(ex: 유류오염지역과 근접하지만 영향이 미치지 않은 어업지역을 개발하였는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대체어장을 개발할 수 있는가, 호텔·식당 등이 유류오염지역과 어느 정도 근접한가 등), ③청구자가 대체시킬 수 있는 수입원 또는 사업기회가 존재하는지 정도(ex: 어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가, 방제작업 등으로 인한 수입에 의해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수익의 감소가 어느 정도 보전되었는가 등), ④경제적 활동에 본질적인 구성요소가 기름유출에 의해 영향을 받은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정도(ex: 청구자의 사업이 오염지역에 위치하는가 등) 등이다.
- 139) 생산물 폐기가 합리적인가의 여부는 과학적인 증거 내지 기타 증거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에 표본을 추출하여 오염여부를 검사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사고지역에서 추출한 표본과 사고지역 이외에서 추출한 표본을 분리하여 동일시기, 동일수량을 검사하여야 한다.

근접성, 대체사업의 기회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유류유출의 영향을 받은 지역의 관광객 감소에 따라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호텔, 캠프장, 술집, 식당 주인)으로, 이는 보상의 대상이 된다.

마. 순수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비용에 대한 클레임

어업 및 관광분야에서의 오염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을 방지하여 순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예방하는 조치비용도 입증되는 범위 내에서 보상된다. 이러한 순수 경제적 손실방지조치가 보상에 적합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①조치에 소요된 비용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②조치비용과 경감하고자 하는 순수 경제적 손실 또는 손해간에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며, ③취한 조치가 적절하고 합리적이며 성공가능성이 있어야하고, ④판로회복을 위한 홍보활동의 경우, 그 취한 조치가 실제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과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¹⁴⁰⁾

순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비용은 이러한 조치가 실제 취해지기 전까지는 인정하지 않으며, 판로활동에 관한 비용사정시 그러한 홍보활동으로 인하여 오염의 부정적인 영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등을 고려한다.

바. 환경피해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로부터의 이익상실과 사실적으로 수행되거나 수행될 복구의 합리적인 조치비용에 한정된다. 해양공원이나 자연 유원지 입장료 감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은 자연회복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 합리적인 복구 조치비용¹⁴¹⁾과 환경피해 복구조치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140) 홍보비용청구시에는 ①부가적으로 수행된 각 마케팅 활동을 위한 성격·목적·시간·대상집단의 세부내역, ②비용을 입증할 관련된 영수증·서류를 포함하여 사고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마케팅 전략 또는 캠페인 비용의 세부내역, ③청구인의 통상적인 마케팅 전략과 캠페인의 비용 및 세부내역, ④조치결과가 측정이 가능한 경우 부가적인 마케팅활동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41) 이 외에 추가적으로 ①자연의 회복과정을 상당부분 가속화해야 하고, ②사고의 결과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③가능한 한 다른 서식지에 악화시키는 영향을 주거나 자연적 또는 경제적 자원에 대해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아니 되고, ④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여부 결정, 그리고 유출에 의해 야기된 환경피해의 정도와 특성을 규명할 연구를 포함하여 유류유출 후의 연구비용이 동 협약의 오염손해 정의에 포함되는 손해와 관련된다면 그 연구비용도 보상된다.

환경손해는 유류유출이 일어나기 전과 동일한 생태학적 상태로 피해지역을 되돌리는 것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복구조치의 목적은 사고당시에 현존하고 정상적으로 기능한 유기체 특성을 가진 생물학적 공동체로 재확립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일반적인 근접성의 범위 내에서 시행한 복구가 환경피해를 받은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복구에 진전이 되었다는 것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보상이 허용된다.¹⁴²⁾

제 2 절 손해 배·보상 절차 및 현황

1. 손해 배·보상의 한도와 범위

1.1 손해 배·보상의 한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설치에 관한 협약(1971년)은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더불어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협약 및 1992년 개정의정서에서 정하는 선박소유자의 책임 중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국제기금(IOPC Fund)을 설립하여 운용해 오고 있다.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관련 국제협약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자는 손해 배·보상청구를 통해 배·보상을 받을 수 있다.¹⁴³⁾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손해 배·보상을 위해 2,000톤

있어야 하며, ⑤초치비용은 피해의 범위 및 기간과 달성될 이익간에 불균형이 되서는 아니 된다.
142) 환경 복구조치 및 관련된 연구비용에 대한 보상청구에는 ①오염의 정도, 분포와 수준, 유류에 의해 영향 받은 자원들을 설명하는 유출영향을 받은 지역의 스케치(예를 들어 지도나 해도를 사용하거나 사진, 비디오테이프 또는 다른 기록매체에 의해 증거화), ②사고와 관련된 선박을 가지고 유류오염을 연결시키는 분석 및 기타 증거(샘플의 화학적 분석, 관련된 바람·조석·조류자료 및 부유유류의 이동경로의 관찰 및 경로), ③관련된 비용의 명세와 더불어 제안된 복구조치의 효율성을 감독하고 환경피해를 사정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결과 및 세부 내역들, ④비용의 명세 및 수행된 또는 수행되어질 복구조치의 세부 기술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143) 법적인 의미에서 손해배상과 손해보상은 책임요건과 그 책임발생 근거에 있어서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다. 우선, 손해보상은 책임요건과 책임발생근거에 있어서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 즉 행위

이상의 산적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소유자는 국제협약상 보상한도액 이상의 유류오염사고를 담보하는 보장계약체결이 강제되며,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보장계약에 의해 선주측이 부담하는 최대 배·보상한도는 8,977만SDR이며, 국제기금측이 부담하는 최대 배·보상한도는 선주측이 배·보상하지 못한 손해 등에 대하여 최대 2억 3백만SDR이다.¹⁴⁴⁾

1.2 손해 배·보상의 범위

위와 같이 손해 배·보상 한도를 기준으로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의 배상청구지침서에 따라 손해 배·보상이 이루어지는 데, 큰 틀에서 손해 배·보상이 인정되는 범위는 '69 CLC 및 '71 FC에 의한 손해로서 실제로 배출된 유류에 의한 손해, 유류오염사고 후의 예방조치 비용, 오염예방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해,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 손실, 환경복구를 실제로 취한 비용이다.

국제기금의 일반적인 보상기준은 모든 비용 및 손실은 실제 지불된 것이어야 하고, 모든 비용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조치와 관련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비용 및 손실 또는 손해는 유류오염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와 범위까지 인정된다. 또한 클레임에 포함되는 비용 및 손실 또는 손해와 유류유출에 의거 야기된 오염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적절한 자료 또는 증거제시에 의거 그의 손실 또는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만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기금에 의해 배·보상의 대상이 되는 유류오염 피해의 종류와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보면 아래의 <표 5-4>와 같다.

자의 고의·과실을 책임요건으로 하지 않고, 행위자의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전보책임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행위자의 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과실을 책임요건으로 하고, 또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행위가 위법성을 띠어야 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질을 갖는다.

144) 1992CLC와 1992 FC의 책임한도액은 각각 5,970만SDR과 1억 3천 5백만SDR이었다. 그러나 에리카호 사고 이후 2000년 IMO는 법률위원회를 소집하여 보상한도액을 각각 50%인상하는 개정의 정서를 채택하여 2003년 1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표 5-4> 배·보상의 대상이 되는 유류오염 피해

종 류		요 건	내 용
가. 방제비용		오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방제활동에 소요된 비용	● 방제비용(장비·인원·재료·선박·차량·항공기) ● 청소비용(도로, 선착장, 제방) ● 예방적 조치비용
나. 재산피해		물리적인 피해	● 청소비용(선박, 요트, 어구) ● 보수비용(선박, 요트, 어구) ● 대체비용(선박, 요트, 어구)
다. 간접피해		오염으로 재산에 오염피해가 발생함	● 휴업손실(어업자)
라. 순수 경제손실	오염으로 재산에 오염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휴업손실(오염지역의 어업자) ● 휴업손실(오염지역 숙박업 및 음식점업) ● 손실방지비용(판로회복캠페인비용)
	① 수산물 및 양식물 피해	물리적인 피해	● 생산물의 폐사 ● 생산물의 오염
	② 보상금청구 작성비	전문가 필요성	● 전문가 용역비(합리적인 금액)
마. 환경피해		화폐단위로 수량화 되는 부분	● 합리적인 원상 회복비용 ● 환경훼손 연구비용

※ 수협중앙회, 유류오염피해조사지침, 2009.

2. 손해 배·보상 절차

2.1 손해 배·보상의 청구

국제기금(IOPC Fund)의 보상청구 매뉴얼에 의하면 손해 배상 또는 보상 청구(클레임)의 프로세스는 누가(청구주체), 누구에게(보상주체), 언제까지(청구기한), 무엇을(청구내용), 어떻게(청구방법)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손해 배·보상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구의 주체는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나 청구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개인이나 회사, 공공단체 등을 불문한다. 유사한 피해로 손해를 입은 경우는 클레임의 사정과 처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둘째, “누구에게 신청할 것인가?” 이다. 배·보상주체로만 놓고 보면 국제기금과 선주보험사는 손해 배·보상과정에서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곳에만 청구하면 되는데 통상 사고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P&I 클럽/지점 또는 기금에 청구하고, 손해 배상 또는 보상 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동으로 지역 클레임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서울 종로에 국제기금 사무소인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이곳에 손해 배·보상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청구서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처 : 국제기금 HS센터
 - 주소 : (110-110)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사서함 2242 HS센터
 - 접수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 이메일 : HebeiSpirit@pandi-centre.com
 - 팩스/전화번호 : 02-767-2694(Fax)/02-767-2690~3(Tel.)
-

셋째, “어떻게 청구하는가?” 즉 청구방법인데 클레임 신청은 국제기금의 HS센터가 요구하는 청구양식에 필요한 입증자료(보상청구서상의 보상청구 항목에 대한 작업일지, 설명서, 계산서, 사진 등)를 구비하여 문서(팩스나 전자메일 포함)로 하여야 한다.

넷째, 클레임에 포함해야하는 내용인데 보상청구서에는 보상청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사고선박의 명세, 사고일자, 사고발생 장소, 기타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형태 및 보상청구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언제까지 청구해야하는가?” 즉 청구기한 문제인데 1992 기금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선박 소유자 등을 상대로 법적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1992 기금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면 손해 배·보상 청구권은 소멸된다. 또한 사고가 발생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대한 소송은 6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손해 배·보상 청구의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상기 ‘1.2 손해 배·보상 청구범위’에서 기술한 국제기금의 보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전제로 하여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손해 배·보상 청구시 관련 입증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손실 또는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국제기금 등은 청구인의 손해액을 사정함에 있어 재산피해, 수산피해, 관광분야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업구역의 오염여부와 인과관계, 청구인 사업활동의 지리적 근접성, 오염된 자원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의존도 등을 중요한 척도로 삼는다. 그러기 때문에 청구인은 국제기금 보상청구 매뉴얼상의 클레임 유형별 제출에 대한 지침에 따라 해당 클레임별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포함한 손실의 특징, 클레임기간 동안의 실제소득과 이전 3년 기간 동안의 소득비교를 통한 손실액 산정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직접 입증자료를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같은 대규모 오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청구인이 선임한 손해사정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조사 및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국제기금 등에 구체적으로 청구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손해 배·보상금의 신속·정당한 수령 여부가 신속하고 정확한 청구여부에 달려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2 손해액의 사정 및 지급

국제기금 등이 청구인의 손해액에 대한 사정 및 지급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는 청구의 접수 및 등록, 손해 배·보상액 조사 및 사정, 손해사정 금액의 승인 및 지급단계의 순서로 진행된다.

여기서 “피해조사”라 함은 국제기금 등의 위임을 받은 손해사정인, 감정인, 감정평가사 등 손해 감정인에 의해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상금 지급이 결정될 때까지 사고발생 사실 및 원인, 손해의 정도 확인 및 손해액 산정, 관련 법규 적용의 적격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손해 사정”이라 함은 손해 감정인의 피해조사금액을 심사·승인하여 손해 배·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P&I club과 국제기금은 통상 상호 협의를 통해 피해조사를 위한 서베이어(surveyor), 소위 손해감정인을 직접 선임하거나, ITOPF를 통하여 손해감정인을 선임하고, 이들 손해감정인으로 하여금 관련 증거자료 수집과 사고조사

를 통해 발생한 손해액의 정도를 평가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분야별 사정 및 지급절차와 피해 조사기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수산분야 및 방제비용

HS센터에 피해주민의 피해보상 청구서가 접수되면, 수산분야는 양식 및 마을어업 등 면허어업과 신고어업·어선어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주)한국해사감정(KOMOS), 협성검정(주)에 피해조사를 의뢰한다.

피해조사 의뢰를 받은 각각의 조사기관은 청구자료의 검토 및 실사를 통해 피해액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ITOPF에 보고하고, ITOPF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제기금 등의 보상원칙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P&I클럽 및 국제기금에 제출한다.

최종 손해 배·보상 사정금액에 대한 결정은 P&I클럽 및 국제기금의 고유 권한으로 국제기금의 사무국장이 해당 클레임의 승인·지불 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특정한 상황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이 집행위원회에 회부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국제기금의 사무국은 조사기관의 사정결과에 대하여 청구인의 동의를 묻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해당 클레임 사정결과에 동의하면 최종 배·보상금으로 확정되고, 청구인이 사정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정재판·본안소송과 같은 별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방제비용의 청구 및 사정절차도 수산분야와 동일하다

나. 관광 등 비수산분야

관광 등 비수산분야의 경우에도 HS센터에 청구서가 접수되면 피해액의 조사 및 사정절차는 수산분야와 흐름과 같다.

다만, 조사기관 및 심사기관이 다른데 비수산분야는 손해 사정업체인 스파크 인터내셔널과 국제검정이 지역별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손해사정액 심사는 영국의 관광·레크레이션 분야 컨설팅업체인 L&R사에서 담당한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제기금 등이 피해조사 및 사정절차를 거쳐 최종 사정금액을 결정하면, 청구인에게 청구금액에 대한 사정결과 통보 및 동의 여부를 묻는 제안서가 보내어 지고 청구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손해 배·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이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손해 배·보상금을 직접 지급받는 방법 이외에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손해 배·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국제기금 등에서 사정한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지급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인의 손해 배·보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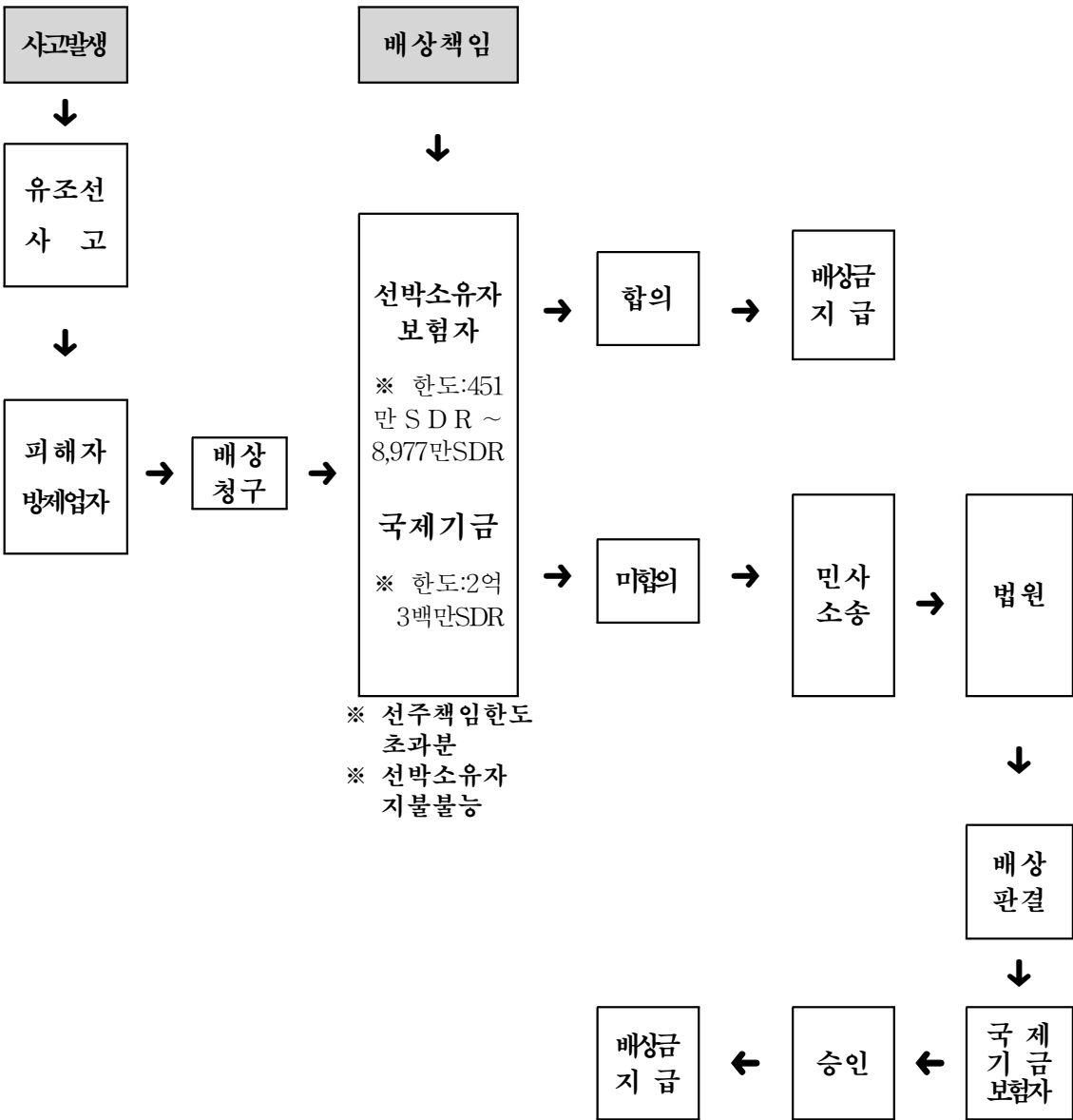
2.3 사정재판 및 소송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게 되면 손해를 입은 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기금 등에 손해 배·보상을 청구하는 한편,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의 절차(제3절 선주책임제한절차의 개시 및 제한채권 신고 참조)에서 기술하고 있는 선주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여 손해 배·보상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관리인이 조사하여 제시한 금액에 동의 또는 불복할 수 있고, 불복하는 경우에는 사정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때 사정재판부는 별도의 피해액의 조사와 선주측 및 제한채권자의 의견 진술을 통해 피해액을 제시하고 중재를 하는데, 이에 대해 양측이 모두 동의하면 피해금액이 확정되고,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관할법원에 선박소유자 및 보험자, 국제기금을 상대로 손해 배·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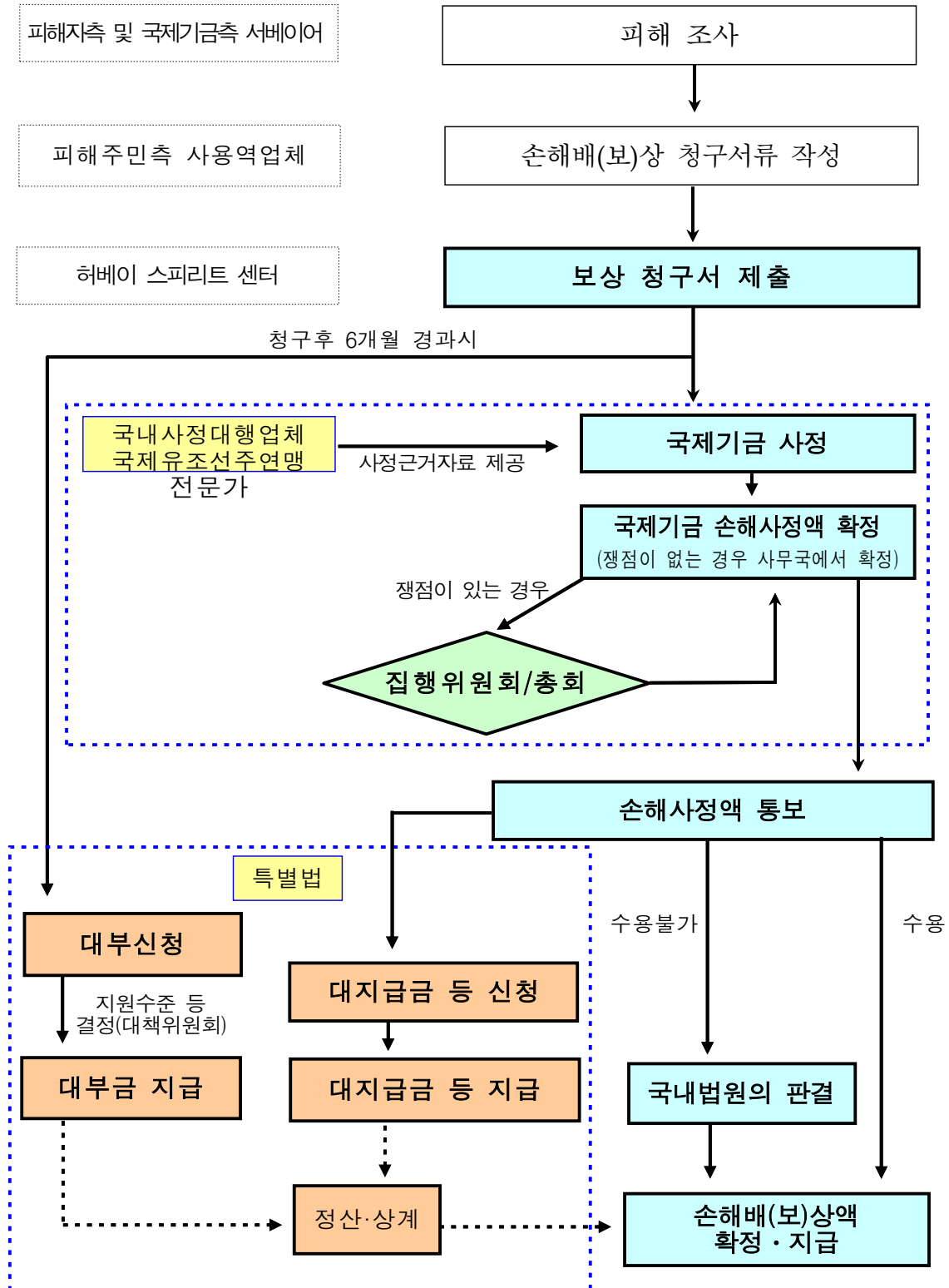
현행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건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에 의하면 이러한 이의의 소 제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해져 있다.

유류오염사고 손해 배·보상 일반절차



<그림 5-1> 유류오염사고 손해 배·보상 일반 절차

유류오염사고 손해 배·보상절차(특별법 반영)



<그림 5-2> 유류오염사고 손해 배·보상 절차(특별법 반영)

3. 손해 배·보상 진행상황

2008년 3월 2일 서울 종로에 국제기금/보험사 공동 사무소인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가 개설되어 손해 배·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0년 1월 현재 까지도 청구 및 접수가 진행되고 있고, 손해사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손해 배·보상의 청구/사정/배·보상금 지급 등 손해 배·보상 현황과 분석을 하기에는 때가 이르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2010년 1월 기준으로 간략히 손해 배·보상 진행현황만 기술하였다.

3.1 손해 배·보상금 청구현황

2010년 1월 현재 관광분야, 방제비용, 수산분야, 양식분야 기타 피해분야별 손해 배·보상 청구건수는 11,365건(1,419,238백만원)으로 대다수의 청구가 2009년 선주책임제한 채권신고 종료('09.5.8)이후인 2009년 하반기에 집중되어 청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수산분야 청구의 경우는 그룹으로 청구가 이루어져 개인 청구인으로 환산할 경우 약 9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분야별 청구건수 및 청구금액의 상세현황은 아래의 <표 5-5>와 같다.

<표 5-5> 손해 배·보상금 청구현황(2010.1.4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청 구	
	건 수	금 액
합 계	11,365	1,419,238
관광분야	6,146	147,797
방제비용	253	193,186
수산분야	694	720,917
양식분야	1,473	290,131
기 타	2,799	67,207

2009년 5월 8일 종료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책임제한 절차에 따른 제한 채권 신고 건수 약 12만 6천여 건의 채권과 2010년 1월 기준 단체 청구를 개별 청구로 환산하여 추정한 청구 건수 약 9만여 건을 비교해 보면 아직도 상당수의 클레임이 청구되지 아니하였고, 접수된 청구 건수도 2009년 하반기에 집중된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2007년 12월 7일 사고발생 이후 2년이 지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청구가 상당히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① 우선 유출유의 확산으로 인해 3개 도와 11개 시·군(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피해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까지 합하면 15개 시·군)에 걸친 광범위한 유류오염피해가 발생하여, 제한채권 신고 기준 약 12.6만여 건에 이를 만큼 청구 건수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고, ② 이러한 광범위한 피해지역 및 수많은 청구건수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금등이 클레임 접수 및 피해조사를 위한 인력 확보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흡했다는 점 ③ 특별법령이 정하는 손해보전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일부 피해지역 주민들의 손해 배·보상 기대심리를 이용한 일부 손해사정업체의 청구 독려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의 청구가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은 향후 유사한 대규모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피해주민의 손해 배·보상 청구가 좀 더 빨리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주민, 보상주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3.2 손해 배·보상청구 사정현황

2010년 1월 현재 관광분야, 방제비용, 수산분야, 양식분야 기타 피해분야별 손해 배·보상 청구에 대한 사정건수는 총 2,388건으로 사정건수에 대한 인정건수는 1,049건(43.9%), 반려건수는 1,339건(56.1%)이다.

2010년 1월 현재 피해분야별 사정건수 대비 인정건수 비율은 관광분야가 약 37.8%, 방제분야가 약 92.8%, 양식분야가 약 75.5%, 기타의 분야가 약 11.2%정도이며, 피해분야별 사정건수와 인정건수·인정금액 및 거절건수 상세현황은 아래의 <표 5-6>와 같다.

<표 5-6> 손해 배·보상청구 사정현황(2010.1.4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정			
	계 (사정건수)	인정건수		반려 건수
		건수	금 액	
합 계	2,388	1,049	85,370	1,339
관광분야	1,926	728	7,606	1,198
방제비용	180	167	68,081	13
수산분야	10	-	-	10
양식분야	192	145	9,331	47
기 타	80	9	352	71

2010년 1월 4일 기준 손해 배·보상 청구의 사정현황을 놓고 볼 때 아직까지는 사정결과가 본격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데 이 결과를 놓고 피해 인정율이나 피해액 사정율을 논하기는 이르다.

다만, 순수 경제적 손실로 볼 수 있는 관광분야가 인정율이 38% 수준이고, 시설 및 자본이 수반되는 양식분야의 인정율이 76%인 점은 국제기금등이 오염사고와 피해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자료 제출 및 제출자료의 신뢰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향후 분야별 인정율을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3 손해 배·보상금 지급현황

2010년 1월 현재 관광분야, 방제비용, 수산분야, 양식분야 기타 피해분야별 손해 배·보상 청구건수 총 11,365건(관광분야 6,146건, 방제비용 253건, 수산분야 694건, 양식분야 1,473건, 기타 2,799건) 중에서 손해 배·보상 건수는 상기에서 언급한 이유 등으로 인해 977건에 불과하다.

이들 피해분야별 전체 청구건수에 대한 청구액 총액은 1,419,238백만원(관광분야 147,797백만원, 방제비용 193,186백만원, 수산분야 720,917백만원, 양식

분야 290,131백만원, 기타 67,207백만원)이다.

이 중에서 지급된 손해 배·보상금 지급액은 78,373백만원(선주보험사 933건, 73,509백만원/정부대지급 44건, 4,864백만원)이다. 피해분야별 배·보상금 지급 상세현황은 아래의 <표 5-7>와 같다.

<표 5-7> 손해 배·보상금 지급현황(2010.1.4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배 · 보상				지자체 및 KOEM 선지급금 ^{주2)} (B)	총 지급액 (A+B)
	계(A)		선 주 보험사	정 부 ^{주1)} 대지급		
	건 수	금 액	금액	금액		
합 계	977	78,373	73,509 (933건)	4,864 (44건)	16,350	94,723
관광분야	673	7,135	7,059 (657건)	76 (16건)	-	7,135
방제비용	153	61,565	56,875 (127건)	4,690 (26건)	16,350	77,915
수산분야	-	-	-	-	-	-
양식분야	144	9,326	9,228 (142건)	98 (2건)	-	9,326
기 타	7	347	347 (7건)	- (-건)	-	347

※ 주1) 대지급 지원실적은 총 332건/30,733백만원이나 선주보험사로부터 구상완료한 288건/25,869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구상완료된 대지급금(288건/25,869백만원)은 선주보험사의 배·보상금 금액에 포함됨.

※ 주2) 지방자치단체 및 KOEM(해양환경관리공단)의 선지급 내역 : 총 18,550백만원(이중 지자체 선지급분 2,200백만원 구상 완료)

- 지자체 : 약 146억원('08.1~2월분 방제인건비 중간사정 차액 45억원 및 '08.3~6월분 주민 방제인건비 101억원)
- KOEM : 약 39.5억원('08.1~6월분 주민인건비 선지급금 31.4억원, '07.12~'08.6월분 장비임차료 선지급금 8.1억원)

2010년 1월 현재 피해분야별 손해 배·보상 청구건수 대비 손해 배·보상 건수비율은 관광분야가 약 10.9%, 방제분야가 약 60.4%, 양식분야가 약 9.7%, 기타의 분야가 약 0.2%정도로 전체 청구건수 대비 평균 보상건수는 약 8.7%

에 불과하다.

다만, 현재 제한채권 신고 종료 이후 2009년 하반기에 집중 청구된 클레임에 대한 사정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청구액 대비 보상액 비율, 즉 사정률은 큰 의미를 갖지 않고 있으며 수산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사정결과가 나와야 그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4. 손해 배·보상관련 정부의 지원 노력

사고발생 이후 피해주민의 손해 배·보상이 신속하고 원활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정부가 기울인 노력은 본 백서 각장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지원 노력보다는 손해 배·보상에 큰 획을 그은 주요한 사항만 개략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향후 유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 배·보상관점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주요사안들이기 때문이다.

4.1 주민 방제인건비 조기지급을 위한 중간사정 추진

정부는 사고발생 초기 방제작업에 참여한 피해주민의 방제 인건비 사정의 지연으로 인해 방제인건비 조기지급 민원 및 지자체 등의 지원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국제기금 등의 중간사정(여기서 중간사정이라 함은 2008년 1~2월분 방제비용 중 주민 방제인건비만 사정하여 지급하는 과정을 의미함)을 이끌어내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대지급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2008년 1~2월분 주민 방제인건비 조기 지급을 통한 민심 및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선주보험사를 설득하여 2008년 1~2월분 주민인건비(23개 클레임, 138억원)가 5개월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속히 분리사정해 줄 것을 협의하고, 방제업체에 대한 유류오염구제자금을 활용한 용자지원, 주민 방제인건비 중간사정액의 정부 대지급, 청구액 대비 중간사정 결과의 차액 보전 등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¹⁴⁵⁾

145) 구체적인 추진과정 및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장 제2절 1. 민간방제비 지원’ 부분 참조.

4.2 손해 배·보상금의 초기지급률 100% 지급

정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피해보상 지원을 위해 국제유류오염피해 보상체계에 부합하면서 특별법상 정부지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손해 배·보상금의 초기지급률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국제기금 등은 통상적으로 초기지급률을 35% 수준으로 정하여 손해 배·보상금을 지급해 왔으며 이 기준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 배·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최종 보상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주민에 대한 손해 배·보상금 지급은 지연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특별법상의 정부 대지급에 따른 구상회수에 있어서 국제기금등과의 복잡한 정산절차 등이 예상되어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선주보험사측에 사정금액 전액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후 무려 네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 끝에 선주보험사와 최종 협의한 결과 정부가 국제기금의 사정액을 초과하는 한도초과보상액 전부(10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선주보험사는 국제기금의 사정금액 전부를(100%) 지급하기로 하고, 선주보험사는 정부의 제시안과 같이 사고발생일 이후 배상금 지급시점까지의 이자를 공탁이자 수준인 6%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정부는 국제기금이든 피해주민에게 국제기금 등이 사정한 손해 배·보상액 100%를 지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4.3 입증자료가 부족한 영세업자에 대한 소득추계방식 적용

92CLC 및 92FC, 국제기금 보상청구 매뉴얼에 의하면 유류오염 손해 배·보상은 ‘객관적, 합리적, 과학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과세제도 및 납세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납세인원의 44.5%에 달하는 인원이 과세미달자이고, 과세대상자 중 44.6%가 장부에 의해 소득을 가장하지 않고 납세편의 제공 등을 위해 적용하는 사업소득의 추계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⁴⁶⁾.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금 등은 ‘객관적, 합리적, 과학적’인 입증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

146) 국토해양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삼일회계법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지원 (유류오염 피해입증을 위한 소득추계방안)』 2008.12 참조.

고 있는 소규모 민박, 맨손어업, 노점상 등 사업규모가 영세한 유류오염피해자 대부분은 국제기금이 요구하는 입증자료 제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거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증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피해자 및 피해분야에 대하여 국제기금이 피해를 인정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국제기금 등과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해 이들 피해 입증자료가 부족한 영세업자의 소득추계 연구자료 등을 국제기금에 제출하고, 이들의 피해 사정시 동업종 타사업자의 자료 적용 필요성과 한국적 상행위 및 과세 제도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이해·설득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제14차 총회 및 제46차 집행이사회에서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민박사업에 대한 소득추계방안」을 적용기로 승인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의 영세 민박업자는 소득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동종업종의 샘플자료 및 인터뷰 등을 통한 소득추계방식을 적용하여 손해 배·보상이 가능하게 되었고, 피해지역 주민의 대표적인 생계형 업종이며 입증자료의 제시가 어려운 맨손어업을 비롯한 다른 분야의 소규모 영세업종을 영위하는 피해주민에 대한 손해 배·보상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정부는 이밖에도 국제기금 사무국 및 HS센터와의 공식·비공식 협의와 국제기금 총회 및 집행이사회에 공식안건 제출 및 보고를 통해 국제기금 등으로 하여금 국제기금 등의 보상 및 정부의 손해보전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 그 동안 국제기금측이 경기침체 및 고유가 영향을 이유로 관광피해에 대해 적용해 오던 사정금액의 25%를 조정하는 제도의 폐지를 결정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수산분야에 대한 조속한 사정 및 손해 배·보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제 3 절 선주책임제한절차의 개시 및 제한채권 신고

1. 선주책임제한절차의 개념과 제한채권 신고의 의의

선주책임제한이란 해상 활동과 관련하여 선주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

우 선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한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상법상의 특수한 제도로써 해상 운송의 높은 위험성 및 피해의 규모성을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선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하고 있다.

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상법 해상편 제4절의 규정들(제769조~제776조)이 있으며, 특히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한 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규율하는 특별법으로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9740호, 2009.5.27 전부개정)」이 제정되어 있다. 비록 상법과 유배법에 규정된 책임제한 절차상의 책임한도액은 각각 다르지만(상법 제770조, 유배법 제8조) 그 이외 큰 차이점은 없다.

이와 별도로 선주책임제한 규정의 적용 및 관련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법률 제9833호, 2009년 12월 29일 일부 개정, 이하 ‘책임제한 절차법’)」이 별도로 제정·시행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의 선주책임제한과 관련하여 상법 해상편의 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그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책임제한 절차법이 적용된다(상법 제776조 제2항, 책임제한 절차법 제1조). 한편,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유조선으로서 특별법인 유배법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유배법 제2조 제1호) 동법에 규정된 책임제한 절차 관련 규정들이 상법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유배법이 적용되는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경우에도 책임제한 절차에 관해서는 책임제한 절차법이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책임제한 절차법 제41조).

1.1 책임제한절차의 개시신청

책임제한 절차법 제9조에 의하면, 선주 또는 보험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책임제한 절차의 개시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유류오염사고 발생지 관할 지방법원이 이를 관할하게 된다.

선주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한채권에 의하여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

분 또는 담보권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책임제한 절차법 제16조 제1항). 또한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신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책임제한 절차법 제88조).

유배법에 따르면 채권자로부터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상법은 1년)에 신청할 수 있다(유배법 제6조 제2항)¹⁴⁷⁾.

1.2 책임제한 신청인의 현금공탁 또는 보증인의 공탁보증서 제출

책임제한 신청인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책임한도액 상당액 및 그에 대한 6% 이자를 공탁하여야 한다. 위 금액을 공탁한 신청인은 즉시 법원에 공탁서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SDR로 표시된 책임한도액은 공탁지정일에 가까운 날의 원화표시 금액으로 산정한다(책임제한 절차법 제11조).

보증인에 의한 공탁보증으로 현금공탁을 갈음할 수 있다. 즉 책임제한 신청인이 보험사(P&I Club 포함) 등을 공탁보증인으로 지정하여 법원에 공탁보증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공탁보증 허가 결정을 할 경우 현금공탁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책임제한 절차법 제13조). 공탁보증인이 된 자는 추후 배당을 할 때 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탁보증 허가 결정에서 법원이 정한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 6%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책임제한 절차법 제14조).

1.3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면, 선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정액을 한도로 제한된다(상법 제769조, 유배법 제7조 등). 책임제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한채권자는 공탁된 금전과 이에 대한 이자의 합계액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기금 외에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책임제한 절차법 제27조).

147) 그러나 채권자의 청구가 책임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책임 제한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본 사건도 이에 따랐다.

그러나 유류오염 사고의 경우 총 보상 한도액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국제기금의 최대 피해보상 한도액(3,216억원) 범위 내에서 선주 측과 국제기금측의 분담액이 결정될 뿐이며, 법원이 선주 책임제한 절차를 개시하였더라도 기존의 국제기금에 의한 피해보상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한채권자는 제한채권을 가지고 선주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책임제한 절차와 관계없는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책임제한 절차법 제28조).

선주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 및 수익채무자로서 법원에 신고한 자 외에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소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책임제한 절차법 제21조).

법원은 선주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상 90일 이내의 제한채권 신고 기간 및 신고기간 만료 후 7일 이상 30일 이내의 신고된 채권의 조사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책임제한 절차법 제20조).

1.4 제한채권과 제한채권자

선주책임제한절차개시에 따라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때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제한채권이란 사고로 인한 손해를 원인으로 하여 선주 측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을 의미한다. 제한채권 신고에 대해서는 책임제한 절차법 제42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한채권자는 제한채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피해주민(단체, 법인 등)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지방정부), 선주(보험사), 국제기금 등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1.5 제한채권신고 이후의 절차

제한채권 신고가 완료되면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은 신고서와 증거서류를 검토하여 제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채권의 내용을 조사한

다(책임제한 절차법 제53조). 관리인은 통상 조사기일을 정해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경우 선주, 보험사 및 피해자가 출석하여 신고된 채권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 수 있으며(책임제한 절차법 제54조) 만약 이의가 없으면 관리인은 피해액을 확정하게 된다(책임제한 절차법 제56조).

조사기일에 이의가 제기됨으로써 피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제한채권은 사정재판에 회부된다(책임제한 절차법 제57조, 제58조). 법원은 사정재판을 열어 이의를 제기한 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피해액을 제시한다.

사정재판에서 제시된 피해액에 대해서도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로 간주되어 이때부터 정식 소송절차가 진행된다(책임제한 절차법 제59조 등).

이와 같은 전체 제한채권액 확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원은 개인별 배당률에 따라 배당액을 결정·통보한다. 만약 이에 대한 관련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공탁금을 피해자에게 배분하고 책임제한 절차를 종료한다.¹⁴⁸⁾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 및 진행

2.1 선주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 및 결정

2.1.1 선주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

2008년 1월 15일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선주인 HS선박 주식회사가 서산지원에 선주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을 구하였다¹⁴⁹⁾.

원칙적으로 책임제한절차개시신청은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그 날로부터 6월 이내 신청할 수 있지만, 본 사건의 경우 피해보상액이 책임 한도액을 초과할 것이 쉽게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배상액 확정을 통한 조속한 피해 보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급 청구일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미리 책임제한절차개시를 신청한 것이다.

148) 이처럼 긴 시간이 소요되면서도 전체 피해액의 일부만 지급되는 선주 책임제한 절차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기금의 사정액 전액을 신청 즉시 대지급하도록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2009.5.27 법률 제 9740호)에 규정되어 있다.

149) 담당 재판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2민사부

책임제한절차개시를 위해 요구되는 공탁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는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선주보험사측 P&I Club인 Skuld의 공탁보증서를 현금공탁¹⁵⁰⁾에 갈음하여 제출하였다.

2.1.2 절차개시 결정여부에 관한 제1차 심리('08.2.4)

제1차 심리에서 재판부는 형사재판 기록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수용하여 심리를 추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서산수협은 채권 조사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늦어도 2008년 말에는 개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1.3 국토해양부와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간 협력계약 체결('08.7.1) 및 에스크로우계약 체결('08.8.18)

선주책임제한절차의 개시가 결정되면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가 책임 한도액 상당액의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게 되는데, 이는 법원이 배당 결정을 할 때까지 피해 주민에 대한 배·보상이 지연되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공탁 문제에 협조하는 대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는 신속하게 피해를 사정하여 책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정액 전액을 배·보상하고 6%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하여 이를 문서화하였다.

2.1.4 절차개시 결정여부에 관한 제2차 심리('08.8.20)

선주 측은 조속한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들은 손해사정 결과가 2009년 초에야 나오며 또한 현재 피해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12월 이후에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150)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른 현금 공탁금액은 책임 한도액 (8,977만SDR) + 가산이자(연6%, 사고일로부터 기산)이다.

2.1.5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09.2.9)

법원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의 책임제한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당초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 측은 조속한 개시 결정을 희망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채권 신고에 필요한 피해조사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2008년 말 이후로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을 미뤄줄 것을 희망함에 따라 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은 2009년 2월 9일에야 내려지게 되었다.

2.1.6 결정의 주요내용

국제 민사책임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법원이 원용하여 8,977만SD R¹⁵¹⁾(책임제한절차 개시일인 2009년 2월 9일 환율기준으로 원화 1,852억원¹⁵²⁾)을 선주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한도액으로 인정하였다. 서산시에서 개업 변호사로 활동 중인 고선근 변호사를 관리인으로 지정하였다.

공탁 지정일은 향후 신고 될 전체 채권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후 제한채권이 확정되어 배당을 위한 현금이 필요할 때 지정하기로 하였다.

2.1.7 선주책임제한절차개시 관련 지역 토론회 개최('09.2.25~3.17)

국토해양부는 선주 책임제한 절차의 개시와 관련된 토론회를 70여명이 참석한 서산지역을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 지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선주 책임제한 절차 개시의 영향, 진행 절차, 절차 참가를 위한 제한채권 신고 방법 등이 설명되었다.

2.1.8 선주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2009년 3월 10일 장기욱 변호사가 유조선주의 고의 또는 무모한 작위·부

151)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총 톤수가 146,848톤이므로 유배법 제6조 내지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책임 한도액을 계산해보면 94,016,088SDR이 된다(4,510,000SDR+(146,848톤-5,000톤)×631SDR). 그러나 이는 최고 한도액인 89,770,000SDR을 초과하기 때문에 본 사안에서는 최고 한도액을 책임 한도액으로 삼게 되었다.

152) 원화 환산액은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법원이 공탁 지정일을 결정할 때 확정된다.

작위에 의하여 손해 발생분의 89%가 증폭 또는 확대되었기 때문에 법원의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즉시항고 하였고, 다음날에는 삼성중공업이 즉시항고 하였다.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책임제한 절차는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었으며, 즉시항고는 대전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2.2 전주 책임제한채권 신고('09.5.8)

법원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전주 책임제한 절차에 따른 제한채권 신고를 2009년 5월 8일 종료하였으며, 총 12만 6천여 건의 채권이 접수되었다.

2.3 관할법원의 심리

2.3.1 신고된 제한채권에 대한 제1차 조사기일 심리('09.6.5)

제한채권자 확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제한채권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실시되지 못하였다. 손해사정인 교체 문제에 관하여 피해 주민과 국제기금측의 의견이 대립하였다. 피해 주민 및 손해사정 업체 대리인들은 국제기금측 사정인이 부적격자이며 사정 결과의 신뢰성도 의심되므로 재판부에서 사정인을 선임하여 직접 사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기금측 대리인은 현 사정인은 유류오염 사고 전문 사정인으로서 유류오염 사고 피해보상 매뉴얼에 따라 공정하게 사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금까지와 같이 전 세계 공통 절차에 따라 사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사기일의 진행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채권자 대표 선정을 제안하였으며, 피해 주민 및 손해사정 업체 대리인은 이 문제가 피해 주민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2.3.2 제한채권자 확정 완료 및 개별 열람 실시('09.7)

제한채권자들의 개별 열람을 통하여 채권자 인적사항, 접수번호,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2.3.3 제2차 조사기일('09.8.25)

서산시 농어민 체육센터에서 제2차 조사기일이 열렸으며, 신고된 제한채권이 워낙 방대하여 제2차 조사기일 개최 후 다음 조사기일은 무기한 연기되어 있는 상태이다.¹⁵³⁾

3. 삼성중공업의 상법상 책임제한 절차 개시 및 진행

3.1 책임제한 절차 개시 및 결정

3.1.1 전주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08.12.5)

2008년 12월 5일 삼성중공업은 구 상법 제746조 제1호(개정상법 제769조 제1호), 제747조(개정상법 제770조)에 근거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예선 및 부선 전주로서의 책임제한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¹⁵⁴⁾ 원칙적으로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배상 청구액이 책임 한도액을 초과할 것이 쉽게 예상되며 또한 유조선주, 보험사, 국제기금의 구상권에 의한 청구¹⁵⁵⁾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신청하였다.

3.1.2 전주 책임제한 절차의 개시결정('09.3.2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중공업의 신청에 따라 전주 책임제한 절차의 개시

153) 정식 소송 절차와는 별개로 채권자 간담회라는 이름의 약식 월례 회의를 통하여 향후 처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54)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달리 유조선이 아니므로 유배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법인 상법 규정(구 상법 제769조, 제773조 내지 제776조 등)이 적용된다.

155) 신청 얼마 후인 2009년 1월 18일 실제로 국제기금은 중국 Ningbo 해상법원에서 구상권에 의한 2억 달러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를 결정하여('09.3.23) 이를 공고하였다('09.3.25) 법원의 결정으로 인하여 기존 피해보상 절차나 피해 주민에 대한 총 배상액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삼성중공업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2,307,776SDR(한화 5,634,200,895원)을 한도로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책임제한액을 초과하는 배상 책임은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예인선과 피예인선의 책임한도액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을 책임한도액으로 한 대법원 판례¹⁵⁶⁾에 따른 것으로 총톤수 300톤 미만인 주예인선(292톤), 부예인선(213톤) 및 앵커보조선(89톤)에 각각 인정되는 83,000SDR과 11,828톤인 크레인 바지선에 인정된 2,058,776SDR(167,000SDR +11,328톤×167SDR)을 합산한 금액이다. 관리인으로 법무법인 세창의 송해연 변호사가 선임되었고 채권신고기간은 2009년 6월 19일 18시까지로 결정되었다.

3.1.3 선주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삼성중공업에 대한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에 대하여 총 8건의 즉시항고가 접수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되고 있다. 법원의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책임제한 절차는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

3.2 책임제한 채권의 신고

법원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 책임제한 절차에 따른 제한채권 신고를 2009년 6월 19일 종료하였다. 접수된 채권은 23,364건(약 1조8천억)으로 서산지원에 중복 신고된 건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된다.

3.3 관할법원의 심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한채권이 서산지원과 중복 신고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아직 제한채권에 대한 법원의 정식 심리가 열리지 않고 있다.

156) 대법원 1998. 3. 25. 선고 97마2758 판결 등.

제 4 절 손해 배·보상 관련 소송

1. 손해배상 청구소송

1.1 소의 제기

2008년 5월 30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 사고와 관련하여 태안지역 비어업인 국응복 외 5,391명이 대한민국 외 삼성중공업, 삼성화재보험, 현대오일뱅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¹⁵⁷⁾

1.2 청구취지

원고들은 삼성중공업, 삼성화재보험, 현대오일뱅크, 정부에게 그들의 손해액 중 일부인 1인당 20만원(합계 1억 7천 8백만원) 및 그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과 그에 대한 가집행을 청구하였다. 또한 소송비용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할 것도 함께 청구하였다.

1.3 청구원인

1.3.1 삼성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우선, 원고들은 삼성중공업에 대하여 해상 크레인 운용자로서의 책임을 추궁하였다. 즉, 악천후로 인하여 통제를 벗어난 해상 크레인을 즉시 정박시키지 않고 무모하게 항해를 계속한 중과실을 범함으로써 예인선의 의도와 관계없이 표류하던 해상 크레인이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한 결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삼성중공업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상의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규정(상법 제769조 단서)이 적용되지 않는 무한책임이라고 주장하였다.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1187, 담당 재판부: 제14재판부

해상 크레인은 스스로 운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법상의 선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인선단이 악천후를 만나 예항 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예인을 강행하도록 한 예인선단 운전자 삼성중공업의 지시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무모하게 행한 행위임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원고들은 삼성중공업의 예인선 운전자로서의 책임도 물었다. 예인선의 통제를 벗어난 해상 크레인의 운전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주예인선의 운전자로서 선박소유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기상 정보 파악을 소홀히 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감행한 것은 업무상 과실이며, 예인선 선장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삼성중공업의 의지가 반영되어 항해를 감행하였으므로 삼성중공업에게도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업무상 과실은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이므로 구 상법 제746조 단서(개정 상법 제769조 단서)에 따라 선주 책임제한 규정이 배제되는 무한책임이라고 주장하였다.

1.3.2 삼성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들은 삼성중공업이 운용하던 선박의 해상 운송에 관한 책임보험 계약의 보험자인 삼성화재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삼성중공업이 원고들에게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할 책임이 보험자인 삼성화재에 있으므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인정된 직접청구권을 이용하여 삼성화재에게 보험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한 것이다.

1.3.3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그 자체에 대한 현대오일뱅크 측의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유출된 원유의 소유자로서 현대오일뱅크도 삼성중공업과 연대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1.3.4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 국가배상법상의 책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정부에 의하여 크게 확대되었으므로 정부에게도 다른 피고들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청구의 근거는 ①국토해양부(당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사고 발생 직후 만 이틀 동안이나 사고 유조선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②유출된 원유의 해안 도착 시간을 잘못 예측·발표하고 사고 발생 후 4시간이 지나서야 오일펜스를 설치하였으며, ③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 이후 2000년까지 동종 사고의 방제 능력을 2만 톤으로 높이기로 했는데 이를 2011년까지 미루어 놓았고, ④국토해양부가 초기 방제 능력이 3일 간 해상에서 16,500톤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사고 발생 후 24시간 동안 수거된 원유는 약 225톤에 불과하였다는 점이었다.

나. 특별법상의 책임(본 소 청구취지 및 원인 일시보류)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정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와 그 보험사(P&I Club)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책임이 제한될 경우 약 1,300억원)과 국제기금 보상 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보상액(위 책임제한액에서 약 3,000억원까지에 이르는 약1,700억원)을 원고들에게 대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위 국제기금의 보상한도를 넘는 초과손해에 대하여도 국제기금 등이 인정한 전체 손해사정액을 한도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제소일 당시 특별법이 발효되지 않았고 특별법 시행령도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제한 여부 및 유배법에 따른 배상 절차의 진행, 국제기금의 협약에 따른 보상절차의 진행,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발효 후 대지급 등 관련 절차의 진행을 지켜보기 위하여 특별법에 기초한 청구취지와 원인을 당분간 보류하였다.

1.4 심리의 진행경과

2008년 7월 1일 본안심리 전 준비절차로 제1차 변론준비기일¹⁵⁸⁾이 민사법정 동관 559호에서 속행되었다. 2008년 7월 23일 검증기일에는 오염사고 지역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 한편, 제2차 변론준비기일이 2008년 8월 26일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기일 변경되어 2008년 10월 8일에 민사법정 동관 356호에서 속행되었다.

이후 본안 심리에 돌입하여 2008년 12월 17일 제1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한 차례 기일 변경('09.2.11)된 후 2009년 3월 11일 제1차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 2009년 4월 17일에는 거제도에서 현장검증이 실시되었다. 제2차 변론기일은 2009년 5월 20일 및 2009년 7월 15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각 기일 변경되었으며 현재까지 아직 속행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¹⁵⁹⁾

1.5 병합심리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

2008년 10월 30일 태안지역 주민 김규상 외 2,234명(비수산 분야 비상대책위 소속)이 삼성중공업, 삼성화재, 현대오일뱅크 및 정부를 상대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¹⁶⁰⁾.

원고들이 지급을 청구한 금액은 자신들이 입은 손해의 일부라고 주장한 1인당 20만원씩 총 4억 4천 7백만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이다. 현재 먼저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법 2008가합51187)과 병합 심리되고 있다.

2. 생계비지급 가처분신청

2.1 소제기 및 청구취지·원인

2008년 9월 12일 태안지역 주민 국응복 외 6,863명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

158)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 및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여 이후 열릴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말한다.

159) 책임제한절차의 결과를 지켜본 후 손해배상에 관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판단된다.

160)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106674.

해배상 채무자인 삼성중공업이 신청인 1인당 300만원(15개월×20만원)씩 총 205억 9천만원의 생계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해 줄 것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였다.¹⁶¹⁾ 뒤이어 2008년 9월 30일에는 주민 763명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총 22억 8천 9백만원(1인당 300만 원(15개월 × 20만원씩))의 생계비 지급 가처분을 신청하였다.¹⁶²⁾

2.2 심리진행경과

먼저 제기된 2008카합3176 사건의 재판부는 2008년 10월 2일 제1차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2008년 10월 31일 열릴 예정이던 제2차 심문기일은 기일 변경되었고 언제 열릴지는 미정인 상태이다.

2008카합3439 사건의 심리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2008카합3176 사건과 병합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조사업체에 대한 업무중지 가처분 신청

3.1 소의 제기(2008카합758)

2008년 3월 5일 백영곤 등 충청남도 지역 피해주민 5명이 한국해사감정(KOMOS)과 협성검정의 손해사정업무 취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3.2 청구취지 및 원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한국해사감정과 협성검정이 ①유조선 선주, 보험자, 국제기금의 의뢰에 의한 피해금액 사정이나 산정에 관한 업무 및 ②선주, 보험자, 국제기금의 자문업무 수행을 위하여 피해자를 방문하거나 피해자와 면담하는 행위를 직무범위 확인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줄 것을 신청하였다.

161) 서울중앙지법 2008카합3176, 담당 재판부: 제14민사부(나).

162) 서울중앙지법 2008카합3439.

피신청인들이 현행법상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조사, 손해액의 산정, 유류오염 손해의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보험자와 국제기금의 의뢰를 받아 손해 조사 및 손해액 산정 업무를 행하고 있음을 청구이유로 제시하였다.¹⁶³⁾

3.3 심리진행경과

2008년 4월 14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였다. 재판부는 손해사정업무 취급금지 가처분 신청의 이익을 부정하였다. 손해사정 결과는 보상주체의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지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이며, 만약 결정액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정당한 배상·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의 손해사정 결과는 신청인들의 청구권 등 권리와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의 사정업무 자격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법원은 ① 구 유배법 제4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르면 피신청인들과 같이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사업 면허를 받은 법인도 유류오염 손해 감정인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점, ② 1999년 2월 5일 유배법 개정 및 그에 따른 1999년 4월 7일 시행령 제4조의2 삭제를 통하여 유류오염 손해 감정인 자격 제한 제도가 일단 폐지된 취지는 전문적 능력이 있는 기관은 누구라도 유류오염 손해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는 사실, ③ 피신청인들이 지금까지 여러 건의 유류오염 사고에서 선주 보험사 및 국제기금의 의뢰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 것을 볼 때 피신청인은 손해 사정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신청인들의 자격을 인정한 것이다.

2008년 5월 3일 신청인들이 제1심의 각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다. 그러

163) 1999년 2월 5일 개정되어 동 사건에 적용된 구 유배법 제44조의2[유류오염손해의 감정]은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조사, 손해액의 산정, 유류오염손해의 감정을 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조를 신설한 1997. 1. 13. 당시에는 “---갖추어야 할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었으며, 1999년 2월 5일 법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유류오염손해의 감정요건]은 삭제되었다(’99.4.7).

나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2009년 4월 3일 항고를 기각하였다(2008라945). 2009년 4월 28일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지만 2009년 7월 24일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2009마705).

4. 삼성중공업의 대응조치

4.1 삼성 출연금

4.1.1 삼성중공업의 1천억원 출연제안

사고 발생 직후 삼성중공업이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금 제공 의사를 당시 해양수산부에 비공식적으로 표명함에 따라('07.12), 관련 정부 부처는 지원금이 국제기금의 보상 액수에서 차감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2008년 2월 29일 삼성중공업은 정부 주도의 서해연안 생태계 복원 활동 지원금 및 피해지역 발전 기금으로 1천억 원을 출연하고 어촌 마을과의 자매결연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출연금 관리 방안에 대하여 삼성중공업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08.3~4),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개최('08.4.23)하는 등 삼성 출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의견의 수렴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삼성중공업의 출연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완전한 피해 보상과 지역 경제 회생을 견인할 대규모 투자사업 등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대안을 요구하였다. 또한 당시 사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정부(국토해양부)가 삼성중공업의 출연금을 수용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사고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도 정리되었는데,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반면 충청남도는 수용을 전면 반대하였다.

결국 2008년 6월 9일 국토해양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반대하므로 출연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삼성중공업에 전달하였다.

4.1.2 기금출연 제안 이외의 노력

가. 삼성중공업과 피해 주민들 사이의 교섭을 위한 노력

2008년 6월 15일 삼성중공업은 태안군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위원장: 이용희 태안군 의회 의장)가 제안한 ‘대화창구 일원화 및 정례회의 개최’ 제안을 수용하였다.

그 후 2008년 8월 말까지 2차례에 걸쳐 공식 회의를 가졌으나 가시적 성과는 없었다. 그 후 태안군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가 삼성중공업에 실무협의회 구성을 제안('08.8.25)하였는데, 삼성중공업은 이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히고 피해주민을 대표하는 통일된 기구 구성을 태안군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에 요청하였다.

나. 1사 1촌 운동

태안지역 방제 활동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마을회관 건립, 환경 개선 등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하여 삼성그룹과 태안지역 마을 사이 1사 1촌 운동을 실시하였다('08.7).

대상은 태안지역 15개 마을이었으며 삼성중공업이 5개 마을, 기타 관계사들이 10개 마을을 담당하였다.

다. 태안사랑 상품권 구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0억 원 상당의 태안사랑 상품권을 구매하여(삼성중공업 10억원, 관계사 40억원 구매) 사용하도록 하였다('08.7).

라. 하계휴양소 설치를 통한 임직원 태안 방문유도

삼성중공업은 2008년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만리포 외 인근 14개 지역에 하계 휴양소를 설치하고, 임직원과 그 가족을 포함하여 약 1만여명이 태안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4.2 보험사 및 국제기금의 구상권 행사

2009년 1월 국제기금이 중국 Ningbo 법원에서 삼성중공업에 대하여 2억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구상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¹⁶⁴⁾

3월에 열린 국제기금 집행이사회에서 위의 소제기가 공식 승인되었다. 2009년 6월 국제기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책임 있는 기관인 국제기금이 법정지 쇼핑(Forum Shopping)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장래의 구상 소송에 대한 사항이므로 집행이사회가 아닌 총회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우리 정부의 이와 같은 입장을 지지하였다.

제 5 절 국내·외 손해 배·보상 사례 비교

국내·외 유류오염사고 손해 배·보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프랑스, 스페인, 우리나라 등 3개국을 대상으로 이들 국가가 관련 특별법 및 정부정책에 의거 국제기금의 보상한계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에리카(Erika)호, 프레스티지(Prestige)호 유류오염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¹⁶⁵⁾

프랑스, 스페인 및 우리나라는 에리카호, 프레스티지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각각 발생하자 정부가 직접 보상과정에 관여하였다. 특히, 스페인과 한국 정부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정부 관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프랑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없이 정책적 결정에 의해 관여 하였다.

1. 보상한도액의 초과피해액에 대한 피해보상

스페인 정부는 프레스티지호 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지역을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고수습 및 보상을 위해 특별법(Royal Decree)을 제정하였다.

164) http://www.iopcfund.org/pr-pdf/Hebei%20Spirit%20recourse%20action_e.pdf.

165) 조동오, 목진용, “프랑스·스페인·한국의 대형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해양환경 안전학회, 제14권 제3호, 2008. 9.

동 법에 의하면 피해액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보상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상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즉, 스페인 정부는 동 법률에 의해 피해자에게 일정한 피해청구서류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스페인 정부가 보상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에 동의하여 국제기금 대신에 스페인 정부에 청구 하였다.¹⁶⁶⁾

스페인의 경우, 정부가 프레스티지호의 피해배상 및 보상과 방제비용에 지출한 비용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훨씬 초과하였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는 어민 등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 중 일부를 국제기금으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보상액 1억 7천만 유로를 보상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스페인 정부는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한도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확신 하에 자국 피해자에게 선 보상을 유연하게 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지역을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고의 조속한 수습과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동법 제9조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해액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제기금(IOPC Fund) 집행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피해액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그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법에 의거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프랑스 정부는 에리카호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수습 및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에리카호 사고시 정부의 방제비를 포함한 총 피해액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정부는 특별한 정책적 판단을 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정부채권의 후순위(SLQ)¹⁶⁷⁾선언이다.

따라서 어민 등 일반피해자의 피해보상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채권을 후순위로 하는 것을 국제기금에 선언하였다. 이는 국제기금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사례이다.

166) 약 29,000명의 피해자가 스페인 정부에 피해를 청구하고 보상받았으며, 피해금액의 총액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 초과여부를 불문하였음.

167) SLQ : Standing Last in the Queue

우리나라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 6월 개최된 제40차 IOPC Fund 집행위원회에서 정부채권 후순위(SLQ) 선언을 하였다.

2. 손해사정기간 및 피해보상의 지급시기

손해사정기간이 장기간 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제기금의 유류오염손해배상의 지급은 사고 이후 1~2년이 지난 후부터 이루어진다. 또한 피해총액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 대해 국제기금과 피해자가 합의한 때에도 이를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일정비율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는 국제기금이 모든 피해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피해총액의 전체규모를 파악하면서 지급하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경우 프레스티지호 유류오염사고의 피해액 사정은 스페인 국영비영리보험회사에서 수행하였고, 정부가 국제기금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일시에 지불하였기 때문에 손해사정기간이 매우 단축되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의 경우도 총 피해액이 국제기금의 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국제기금이 손해액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라도 국제기금은 피해액의 일정비율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총 피해액의 규모를 파악하면서 지급할 예정이다. 이 경우 피해자가 국제기금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액에 대하여 정부에 요청하면 정부가 대지급을 하도록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국제기금과 피해액에 관해 합의만 된다면 피해청구총액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 초과여부를 기다릴 필요 없이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3. 무자료 영세업자에 대한 피해보상

유류오염사고에 의한 피해자 중에는 피해청구를 위한 입증자료가 원천적으로 없는 자가 많이 있다. 세계적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생계형 어민들인 바,

국제기금에서는 이들 생계형 어민들의 피해사정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였고, 2008년 6월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이 지침서를 국제기금의 정식문서로 승인하였다.

스페인 정부는 어업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한 피해산정방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입증자료 여부에 크게 구애되지 않고 피해보상을 하였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는 정부차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이 없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제기금과 협의, 2,400만원 이하의 영세한 민박업자에 대하여는 소득 추계방식을 적용하고, 실질적인 조업을 한 맨손어업의 경우 입증자료가 없어도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인터뷰 등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4. 사고초기의 생계지원

대형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중 특히 영세한 개인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때까지 많은 생계상의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국제기금은 이러한 면을 고려하지 않고 증빙자료를 첨부한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후에야 피해보상에 착수하게 된다.

프랑스의 경우 에리카호 사고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피해자에 적용되는 세금감면 등의 조치와 생계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국제기금의 보상이 장시간 소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일차적으로 어업금지로 손해를 입은 어민에 대해 대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제기금에서 지급률을 50%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보충적인 차원에서 피해액의 50%를 대부하기로 하였다. 대부금은 농수산부에서 주관하였고, 산하기관인 OFIMER(국가해양생산양식)을 통해 피해사정을 하였다. 대부금 지급은 일부 관광업자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지급하였다. 대부금을 지급한 경우는 피해자로부터 청구권을 양도 받았다. 이러한 대부는 국제기금에서 보상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시행되었으며, 약 1,100만유로가 지급되었다.

반면, 스페인의 경우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직접 피해를 사정해서 곧바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통상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에 걸리는 시간이 약 3~4년 이상이고, 법정분쟁까지 고려하면 약 6~7년 소요되지만 스페

인은국가가 직접 피해를 사정해서 보상하였기 때문에 사고 후 2년 내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중앙정부가 768억원, 지방정부가 150억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였으며, 일반국민들도 254억원의 성금을 모아 지원하였다. 이들 국가지원금 및 국민성금은 국제기금의 피해보상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지원금이다. 그 외 국제기금의 보상에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손해보상청구일로부터 6개월 내에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생계지원차원에서 대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특별법 제8조 제5항).

생계지원을 위한 정부조치에서 주의할 점은 동 지원이 피해보상의 일부인 경우는 국제기금이 피해보상액 중 이 금액을 차감하고 지불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생계지원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동 지원금이 보상의 일부가 아닌 단지 국가적 또는 국민적 생계지원이라는 사실을 국제기금에 알릴 필요가 있다.

5. 평가 및 시사점

최근까지 각국 정부는 유류오염사고의 예방, 사고 대응, 사고 원인조사, 환경복원 등 공적인 분야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왔으나 피해보상은 오염행위자와 피해자 당사자간의 민사상의 문제로 취급하여 배상 및 보상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민사책임협약(CLC) 및 국제기금협약(FC) 등 관련 국제협약의 채택이나 비준 및 국내법 제정 등에만 관여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의 에리카호 사고, 스페인의 프레스티지호 사고에 이어 이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사고에서는 피해배상 및 보상과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비록 3개국 정부가 피해배상 및 보상과정에 관여하는 방식은 상이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관여는 근본적으로 국제기금의 피해보상한도액, 손해사정에 대한 상당한 기간 소요, 증빙자료에 대한 엄격한 심사, 사고초기 영세민의 생계문제 등 국제기금 보상제도의 한계에 기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기금의 보상제도의 한계로 스페인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

여 충분한 피해보상과 효과적인 방제를 수행하였다. 프랑스도 특별법을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정책에 의거 방제비용 및 초기 생계지원 등에 막대한 정부예산을 지출하였다. 우리나라도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보상, 환경복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하고 국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에리카호 사고, 스페인의 프레스티지호 사고는 현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한 유류오염사고들이고, 동 사고로 인한 유류오염피해보상에서 현 국제기금의 제도를 벗어나 각 국가의 정부가 특별한 조취를 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응하여 사고 초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피해주민에 대한 긴급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였고, 아울러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주민의 손해 보전 지원(정부 대지급, 대부) 및 한도초과보상금 지급,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 및 경제 활성화사업 지원 등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보면 된다.

비록 현 국제기금의 회원국이 101개국으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현 국제기금 체제에 참여하고 있지만,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 있고 국제기금에서 발언권이 높은 프랑스, 스페인, 우리나라 정부가 대형유류오염사고의 피해보상과정에서 직접 관여함으로써 향후 국제기금의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 6 장 주요 정책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제 1 절 정부의 선 보상체계 도입

1. 시사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같이 초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핵심적으로 이슈화 되는 문제는 방제비용 및 경제적 손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 배·보상”이다. 이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손해 배·보상 과정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항이 선결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먼저 국제기금등의 보상한도 초과분에 대한 보상주체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국제기금의 추정피해규모는 약 5,420억원 내지 5,770억원('09.10 집행이사회 추정 기준)인데, 92CLC 및 92FC에 따른 최대 보상한도는 3,216억원에 불과해 국제기금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하여 “누가 보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두 번째는 피해신고 건수가 12.6만여 건에 이를 만큼 많은 손해 배·보상 청구에 대해 “어떻게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손해 배·보상의 신속성 문제이다.

전자는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제기금 등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도초과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해소하였고,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에 대비해 2003 추가기금협약에 가입하면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자의 “신속한 보상” 문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 배·보상과정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피해신고 건수가 워낙 많아 피해액 조사 및 청구, 손해액 사정, 손해 배·보상금 지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이 전반적으로 늦어졌다는 점이다. 물론 다른 유사사고에 비해 늦은 편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피해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보상의 속도는 청구서 제출 후 보상이 이루어지기 까지 당초 기대(청구 후 6개월 이내 사정 가능)와는 달리 1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손해

배·보상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속한 보상 문제는 엄격한 절차와 객관적 입증주의 기준을 중요시하는 국제기금등의 손해 배·보상 체계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진행된다면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기금측의 손해 배·보상 절차와 더불어 일정 부분 국가가 개입하여 선 보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정부의 선 보상체계 구축과 특별법 제정 방향을 중심으로 향후 과제를 기술해 보고자 한다.

2. 향후 과제

2.1 정부의 선 보상체계 구축

정부의 선 보상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데 손해 배·보상 재원확보 문제와 손해액의 사정주체에 관한 문제이다.

정부의 선 보상 사례인 프레스티지호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스페인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재정기금을 마련하고, 지정 국영보험회사가 국제기금 보상체계에 따라 손해사정을 실시하여 선 보상을 실시한 다음 정부가 지급한 손해 배·보상금에 대해 국제기금등에 대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지원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약 3,790 여건의 손해 배·보상 청구가 국제기금등의 대위행사와 관련하여 쟁송하고 있는 문제를 낳았다.

따라서 프레스티지호 유류오염사고의 선 지급사례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보상체계를 거울삼아 정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 보상을 위한 재원확보 및 보상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해 본다.

우선 선 보상을 위한 재원마련이 문제인데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할 수 있는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보상금 지급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손해 배·보상을 위한 막대한 예산편성보다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차입하여 보상금 재원으로 활용하며, 차입에 따른 이자만 부담(이차보전 예산 편성)하는 방식으로 보상금 재원을 확보 운영하면 된다.

두 번째 사정주체 문제는 사정과정 및 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선 보상

에 따른 대위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처럼 국제기금측이 사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래야 정부와 보상주체간의 정산 기준이 같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의 해결을 바탕으로 국제기금측의 중간사정¹⁶⁸⁾ 등을 통해 제시한 중간사정금액의 일정비율(50% 수준)을 우선 정부가 지급하고, 최종 사정결과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 보상을 한 후 국제기금등에 대위 청구하는 방식이다. 다만, 여기서 최종 사정금액이 중간사정을 기준으로 지급한 선 보상금보다 적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 차액을 손해 배·보상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시스템을 추가로 보완하면 된다.

이러한 선 보상체계의 도입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하고, 특별법을 바탕으로 선주보험사 및 국제기금등과 선 보상에 관한 세부적인 약정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 협력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2.2 대규모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특별법 제정방향

대규모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2003 추가기금 가입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로부터 특별법 제정 요구가 예상되고, 위에서 검토한 정부의 선 보상체계의 도입을 위해서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유사사고 발생에 따른 특별법 제정 시는 국제기금 등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한도초과보상제도와 정부의 선 보상 제도를 도입하되, 피해를 입지 않은 주민들까지 손해 배·보상 심리를 부추겨 손해 사정 및 보상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대부,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과 같은 손해 보전 지원제도의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손해 배·보상금의 선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여 손해 배·보상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정부의 선 보상체계 구축”, “특별법 제정방향”은 개괄적인 정책제언이기에 향후 전문가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68) 국제기금의 중간사정은 국제기금등의 위탁을 받은 피해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의미하는데, 이를 실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반영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전에 국제기금등과 협의가 필요하다.

제 2 절 신속한 주민 방제인건비 지급체계 구축

1. 시사점

금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방제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한 부분은 제3장 제2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피해지역 주민의 방제활동 참여에 따른 주민 방제인건비 지급 문제였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유사사고 발생시 주민 방제인건비의 신속한 지급방안 검토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다.

먼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방제인건비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노력하여 얻은 성과를 요약하면, ① 2007년 12월분은 사고선박인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대한 압류조치를 통해 선주보험사로 하여금 민간방제비 112억원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주민방제인건비 97억원을 100% 수준으로 지급하였고, ② 2008년 1~2월분은 정부가 국제기금등과 방제업체 설득을 통해 방제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만 중간사정¹⁶⁹⁾을 유도하여 사정금액 약 93억원을 정부가 대지급하였고, 청구금액과 중간사정금액의 차액(45억원)은 해당 지자체에 특별교부금을 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주민 방제인건비는 100% 지급하였다. ③ 2008년 3~6월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채를 통해 주민 방제인건비 청구액 101억원을 100% 지급함으로써 주민 방제인건비와 관련된 현안을 대부분 해소하였다.

상기의 주민 방제인건비 지급 현안 해결사례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대규모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해안방제의 경우 피해지역 주민을 통한 방제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그러한 주민 참여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일시 고용한 방제업체는 국제기금에서 방제비용을 사정하기 전까지는 방제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둘째, 2008년도 1~2월분의 사정차액 보전과 3~6월분 선지급에서 보듯이 청구액과 사정액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169) 여기서 중간사정이라 함은 각주 169와는 의미를 달리하는 것으로 국제기금측 보상절차에 따라 전체 방제비용 중 주민방제인건비에 대해서만 별도로 우선 사정한 것을 의미한다.

의 결손이 발생하게 되는데 향후 유사사고 발생시 주민 방제인건비의 선 지급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구액과 사정액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주민 방제인건비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제기금 등의 손해 배·보상 주체, 정부 및 해당지방자치단체, 방제업체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방제인건비 지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주민 방제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전액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별도의 기금형태의 재원을 마련해 두거나,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에서 제기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주민 방제인건비 지급사례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유사사고 발생시 보다 더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주민 방제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향후과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유출유의 약 3분의 1 정도에 의해 해안이 오염되며, 오염된 해안은 지역주민에 의해 방제될 수밖에 없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문제가 된 주민 방제인건비는 생계비 차원에서 다른 클레임에 비해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이는 원천적으로 선주보험사 및 국제기금으로부터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 대규모 유류오염사고가 발생에 대비하여 최소한 주민 방제인건비만큼은 방제조치 주체가 선 지급을 하고 국제기금 등에 대위행사 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2.1 해안방제 활동 관리체계 구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시 해상방제활동은 국가긴급방제의 형태

로 해양경찰청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기 때문에 방제비용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해안방제의 경우 방제의무자의 방제 조치 또는 방제조치 기관의 긴급 방제형태로 진행되며, 대부분 방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할 수밖에 없다. 방제업체는 해안방제활동의 일부분을 피해지역 주민의 장비를 임차하고, 피해지역 주민을 일시적으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방제 의무자 등과의 약정한 해양오염방제 역무를 제공한다.

이러한 방제역무의 제공에 따른 비용 산출을 위해서는 장비 및 자재의 사용실적, 방제작업 인원 투입실적 등이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히 기록되어야 하고, 그 자체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손해 배·보상 주체인 국제기금 등의 신속한 사정 및 방제비용 지급이 가능하게 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한 주민 방제인건비의 선 지급이나 대지급을 주저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급주체를 불문하고 주민 방제인건비의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을 위해서는 대규모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사고 초기부터 방제 종료 시까지 전반적인 방제활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즉시 구축하여 운영해야 된다는 점이다.

먼저, 해안방제 활동에 대한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상의 해안방제 조치 주체는 시장·군수이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방제활동 경험 부족 및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실제로 방제대책본부와 해당지역의 해양경찰관서장의 지휘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협력형태로 진행되어 방제업체의 구체적인 방제역무 제공에 대한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유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 초기부터 방제활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해안방제활동을 지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상의 방제체계를 고려해 볼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만,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대응 체계로 할 경우 방제대책본부와 시·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지역별 방제업체 투입에서부터 방제종료 시까지의 구체적인 방제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해안방제 관리주체는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상 설립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공적 기능과 방제활동 경험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해안방제활동의 관리를 위탁하여 수행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상방제와 해안방제로 나누어져 있는 현행 해양오염방제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해안방제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사고발생 초기단계에서부터 해안방제 관리주체, 방제의무자, 국제기금 및 선주보험사 등 손해배·보상주체, 민간방제업체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안방제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방제비용 청구 및 사정에 대한 상호간 이견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신속한 방제비용의 청구 및 사정이 이루어져 국제기금 등이 민간 방제비를 신속히 지급하게 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지급 또는 선지급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2.2 주민 방제인건비 선지급을 위한 재원확보

상기의 시사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규모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해안방제를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참여가 불가피하고, 현행 보상체계 및 방제업체의 영세성을 고려할 때 국제기금에서 방제비용을 사정하기 전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주민 방제인건비만큼은 선 지급 형태로 청구금액 전액 지급을 요구할 것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03 추기기금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국제기금 등의 보상한도액만 증가할 뿐 청구 및 사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제비용의 선 지급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또한 주민 방제인건비가 선 지급된다 하더라도 선 지급 주체가 국제기금 등에 대위행사를 하기 때문에 재정적 손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에 기여할 뿐이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안방제활동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주민방제 인건비 선 지급을 위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며, 재원확보 주체, 운용규모, 관리·운영방안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누가 주체가 되어 주민 방제인건비 선지급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재원확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되, 그 주체는 방제활동을 총괄 지휘·감독하는 해양경찰청이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역할을 수행하는 국

토해양부가 될 수 있는 데 논리적으로 보면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해양환경 관리법상 방제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해양경찰청이 주관해야 된다고 보며, 실질적인 집행은 해상·해안 오염방제 활동 지원 및 관리가 가능한 해양환경 관리공단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재원확보 방안과 규모인데 재원확보방안으로는 기금조성과 국가 예비비 사용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대규모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주민 방제인건비 등 민간방제 비용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대비 차원에서 보면 기금 조성방안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보며, 그 규모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시 주민 방제인건비로 지급된 금액 수준인 500억원 규모를 목표로 하되, 단기적으로 현재의 유류오염 구제자금 약 80억원과 일정규모의 정부 및 지자체의 출연금과 특정기업의 출연금 등으로 최소한 300억원 규모를 확보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전입 또는 같은 법 제69조에 의한 방제분담금의 일부 전입(해당 목적사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의 금액)을 통해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기금조성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해대책 관련 목적 예비비를 사용한 주민 방제인건비 선 지급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방제조치기관의 자체방제비용과 함께 주민 방제인건비 등 민간방제비용을 포함하여 예비비 청구·심사 및 지급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고려할 사항은 주민 방제인건비의 청구 주체도 방제업체인 만큼 방제업체의 동의 없이 국제기금등과 주민 방제인건비만 우선 사정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조성된 기금에서 방제업체에 용자지원방안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주민 방제인건비 지급재원이 확보되어 운영되면 대규모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주민 방제인건비가 지급되어 피해지역 주민의 생계안정은 물론 국제기금 등의 손해 배·보상금 사정 및 지급도 원활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절 손해사정 신속화 및 사정을 제고방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한 손해 배·보상과 관련하여 상술한 바와 같

이(제5장 제2절 손해 배·보상 절차 및 현황) 광범위한 피해지역 및 12.5만 건에 달하는 청구 건수를 감안하더라도 손해 배·보상의 청구 및 사정이 상당히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그 결과로 국제기금 등의 손해 배·보상액 사정이 지연되어 피해주민의 불만이 야기되는 것은 물론, 피해주민·보상주체·정부 간의 갈등 요인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한 손해 배·보상 과정에서 시사해 주는 바를 교훈으로 삼아 유사사고 발생 시 피해주민·보상주체·정부가 각각 신속하고 정당한 손해 배·보상을 위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시사점

대규모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정당한 손해 배·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해주민의 손해 배·보상의 청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보상주체인 국제기금 등은 해당 클레임에 대한 신속한 사정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양자 간의 역할이 어느 한쪽이라도 미흡하면 손해 배·보상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정부가 일정부분 개입하여 피해주민의 손해 배·보상 청구를 지원하고 국제기금 등의 신속한 사정을 중재하는 역할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이번 유류오염사고에서 피해주민의 손해 배·보상 청구 과정에서의 몇 가지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피해주민이 맨손어업, 소규모 민박 등 영세사업자로 손해 배·보상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소득입증자료가 미비했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의 피해신고서 작성 및 입증자료 확보에 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사고초기 방제활동에 치중한 나머지 피해사실 입증자료 확보를 간과하여 청구에 애로 및 지연이 발생된 측면이 있다.

셋째, 주민들의 보상 기대심리를 이용, 피해주민을 상대로 한 손해사정업체의 무분별한 청구권유 행위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아니한 피해주민의 청구를 불러일으켜 청구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이다.

넷째, 피해지역 지자체에 신고된 피해대책위원회의 업무역량 및 활동내용에 따라 신속한 청구 여부가 결정되어졌다는 점이다.

다섯째, 수산분야의 경우 사고당시 기준 무면허, 무신고어업(특히 맨손어업)이 상당히 존재하였으며, 업종 특성상 조업활동과 청구행위의 병행이 어렵고, 판매자유화 이후 정확한 소득입증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더불어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 배·보상의 관건이 되는 또 하나의 절차는 국제기금 등의 손해사정 절차인데 상당부분 국제기금 등의 의지에 달려있고, 청구 및 증빙자료의 정확성과 정부의 지원여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시 피해주민의 손해 배·보상 사정진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보상주체인 국제기금 등이 12.5만건에 이르는 청구를 신속하게 접수·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 특별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민에 대한 손해 보전지원제도가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국제기금 등의 손해 배·보상 절차의 진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셋째, 운영초기에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HS보상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수많은 클레임에 대한 사정진행 상황 및 정부 대지급, 대부업무의 관리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넷째, 주민 방제인건비 지급,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소득추계방안 적용과 같이 정부가 국제기금등과의 협의를 통해 손해 배·보상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사정기간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점이다.

위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대규모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 배·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해주민, 보상주체, 정부가 각자의 입장에서 향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의 과제를 던져준다.

2. 향후과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손해 배·보상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피해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국제기금 등이 클레임의 접수 및 사정을 어느 정도 신속하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로 “손해 사정 절차의 신속성”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주민이 청구한 손해 배·보상액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느냐?”의 문제인 “손해 배·보

상액 사정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문제는 피해주민과 손해 배·보상 주체, 그리고 정부가 얼마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손해사정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만족할 수 있는 손해 배·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주민, 손해 배·보상 주체,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1 피해주민의 역할

먼저 청구주체인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일반적이고 극히 상식적인 논리이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평소 일정기간(3년) 동안의 소득액에 대한 자료를 확보·유지하고,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스스로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피해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 동안 대규모 유류오염사고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사고가 여수·광양항, 울산항, 대산항 등 대량의 석유류를 취급하는 항만과 부산항, 인천항과 같이 규모가 큰 항만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항만과 연접한 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의 주민들은 항상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평소에 자신의 소득 자료를 투명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사업규모가 큰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회계장부, 매출실적 등 과세자료에 의한 소득금액 산출이 가능하도록 평소에 납세의무 이행 및 장부 등 회계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영세율 적용을 받는 영세사업자나 소득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도 자신의 매출액이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처 및 매출 장부만이라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그래야 피해조사기관이 해당 장부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손해 배·보상을 위한 피해금액 산정 또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류오염사고와 청구인의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상당부분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사고초기 피해주민 스스로 오염여부 및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오염물질 채증 등)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해안방제활동에의 참여나 영위하는

사업의 영업행위는 그 다음 문제이다. 이를 간과하면 손해 배·보상 청구가 유류오염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피해지역안에서 동종업종을 영위하는데 손해 배·보상의 결과가 다른 이유이다.

피해 주민의 역할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준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 배·보상 청구를 자제하여야 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일부 피해지역 주민의 집단적 보상심리와 특정 손해 사정업체의 영업차원의 손해 배·보상 청구 독려가 어우러져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손해 배·보상을 청구한 사례들이 나타났다. 향후 유사사고 발생시 이러한 청구행위가 재발하게 되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의 손해 배·보상을 방해할 뿐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것을 주민 스스로 알고 양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2.2 국제기금 등의 역할

위 시사점에서 기술했듯이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 배·보상의 관건이 되는 또 하나의 절차는 국제기금 등의 손해사정 절차이다. 피해주민의 신속·정확한 청구를 전제하더라도 국제기금 등 보상주체가 피해주민의 청구접수·등록, 손해액 사정절차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신속·공정한 손해 배·보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기금 등이 손해 배·보상업무를 관장하는 사무소의 설치, 피해조사 및 손해 사정 시스템 구축 등을 신속히 이행해야 된다고 보며, 이때는 해당 유류오염사고의 피해규모를 고려하여 신속하고 정당한 손해 배·보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응한 국제기금 등의 일련의 조치사항을 평가해 보면 손해 배·보상업무를 관장하는 사무소인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의 개설·운영과 관광클레임 조사기관 및 인력증원은 시의·적절했다고 볼 수 있으나 센터 본연의 업무인 청구서 접수·등록 인력의 부족으로 청구서 접수가 늦어진 점은 12.5만 건이라는 청구건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추후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유류오염사고의 손해 배·보상과 관련하여 국제기금 등이 손해 배·보상의 교과서로 삼고 있는 「국제기금 보상청구 매뉴얼」 적용문제를 들 수 있는데 국제기금측은 사고발생 국가의 제도적·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매뉴얼상의 기본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지만 해당 국가의 정부나 피해주민의 강력한 이의 제기 등에 기인한 것이다. 국제기금 등의 일관된 손해 배·보상 방침이 적용되면 해당 국가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기금 등과 해당 국가의 정부 및 피해주민과의 갈등만 노출될 뿐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번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국제기금과 우리 정부 및 수산분야 피해주민 사이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수산부문에 대한 정부의 조업자제 기간” 문제도 손해 배·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지연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국제기금 등의 입장도 이해되지만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2.3 정부의 역할

정부는 평상시 신속·공정한 손해 배·보상에 지장을 주는 손해 배·보상 체계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하고, 유류오염사고 발생시는 피해주민과 국제기금등과의 사후적 가교 역할을 통해 큰 틀에서의 손해 배·보상 절차 등 현안을 중재하고, 피해주민의 신속·공정한 손해 배·보상 청구를 위한 홍보활동의 전개와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손해 배·보상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손해 배·보상을 제고를 통해 피해주민의 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손해 배·보상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규모 유류오염사고시 신속·공정한 손해 배·보상을 위한 사전적 의미의 대비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규모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주민이 신속하게 피해 입증자료 확보 및 청구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고 개연성이 높은 연안지역의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정도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 교육·홍보활동의 내용에는 국제기금 등의 손해 배·보상 체계

및 절차, 국제기금 보상청구 매뉴얼, 소득 및 피해 입증자료 확보방법 등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 배·보상의 우수사례 및 실패사례집을 발간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들을 현행 「대규모 유류오염사고 대응 표준(실무) 매뉴얼」의 부록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사고수습 주관기관 및 협조기관의 대응능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 배·보상 청구과정에서 나타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청구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손해 배·보상 청구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피해를 입지 아니한 청구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의 손해 배·보상 절차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해당 영업행위에 대한 인·허가 등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사고발생 이후 맨손어업 신고 경신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맨손어업 조사대상자 선정」과 같은 절차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맨손어업 등 신고어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국제기금은 무면허 또는 무허가 어업에 대한 손해 배·보상에는 소극적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제도권 밖에 있는 어민들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규모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 의미의 신속·공정한 손해 배·보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먼저, 국제기금 등의 손해 배·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금 등이 피해주민의 손해 배·보상 청구를 신속히 접수·등록하고 사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기금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손해 배·보상시스템을 조기에 가동하도록 해야 한다. HS센터의 적기 가동, 선주 보험사와의 협력계약 체결 등을 통해 손해 배·보상 절차를 신속히 진행되도록 유도한 점은 손해 배·보상 과정의 우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유류오염사고 발생 초기에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피해 지역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국제기금 등의 손해 배·보상 체계 및 절차에 대한 안내와 함께 피해주민으로 하여금 사고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피해 입증 및 소득 자료를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주지시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주민이 손해 배·보상 청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초기에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청구의 지연 및 손해 배·보상금액이 낮아지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방제조치 이전 또는 방제조치와 병행하여 과학적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손해 배·보상과 관련하여 정부가 기울인 노력 중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의 하나는 입증자료 등의 부족으로 손해보상 청구서 제출이나, 정당한 보상금 수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 등 비수산분야의 피해주민들을 위하여 소득추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09년 3월 국제기금(IOPC Fund) 집행이사회 참가시 연구결과자료(영문 요약자료)들을 국제기금측에 제공하는 등 소득추계방안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매출액 2,400만원 미만의 피해주민에 대해 소득추계방식에 의한 피해금액 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시 손해 배·보상 청구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최종현, 「선박에 의한 오염손해의 보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박사 학위 논문, 2001. 2
- 황갑수, 「우리나라의 유류오염 피해보상 사례 및 문제점과 대책」, 수산경제연구원, 2002. 3
- 행정안전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방제 활동 자원봉사 활동 백서」, 2008. 12
- 대한변호사협회, 「유류오염사고의 피해배상에 관한 매뉴얼」, 2008
- 국토해양부, 「해양오염손해배상 및 보상관련 국제협약의 국내수용방안에 관한 연구」, 2008. 12
- 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충청남도(한국해양연구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방제부문 백서」, 2008. 12
- 국토해양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삼일회계법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지원(유류오염 피해입증을 위한 소득추계방안)」, 2008. 12
- 김창수, 「해양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내외 피해보상체제 비교분석」, 부산대 석사학위 논문, 2009. 8
-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Ruth Yender, Jacqueline Michel & Christine Lord), 「Managing Seafood Safety after an Oil Spill」, 2002. 11

〈부록 1〉 HS센터 신고서양식

HEBEI SPIRIT CENTRE Claim Registration Form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 신고서 양식

M/V "Hebei Spirit" collision with Crane Barge "Samsung No.1"- December 7, 2007, off
Daesan, Korea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크레인 바지선 “삼성 1호”간의 충돌사건-2007.12.7. 한국 대산
앞바다

Claim for compensation for pollution damage under the Civil Liability Convention
1992 and the Fund Convention 1992, as enacted in Korea by the Oil Pollution
Compensation Guarantee Act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1992년 기금협약과 위 조약들을 국내 입법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오염피해 보상청구

1. Claimant(s) (please use a separate sheet, if necessary) 신고인(필요시 별지 사용)

	Claimant(s) (Company or Individual)	Representative(Individual) (if any) 대리인 (개인)(해당할 경우)
Name (in Korea) 이름 (국문)		
Name (in English) 이름 (영문)		
Residence Registration Number 주민등록번호		
Address 주소		
Phone Number 전화번호		
Fax Number 팩스번호		
E-mail Address 이메일주소		

2. Claim for Oil Pollution Damages 유류오염손해 관련 채권

	Type of Claim 피해의 종류	Amount of Claim 피해액	Period of Loss 피해보상청구하는 기간
A	Cost of clean-up and pollution prevention measures 방제작업 및 오염예방조치 비용		
B	Property damage 재산상 피해		
C	Economic loss in the fishies, mariculture and marine product processing sectors 어업, 양식업 및 수산가공업의 경제적 손실		
D	Other economic loss, including in the tourism sector 관광업분야를 포함한 기타 경제적 손실		
E	Other losses(please specify) 기타 손실(구체적으로 기재요)		
	TOTAL 합계		

3. Have you filed a claim with the limitation proceedings commenced with the Seosan Branch Court of the Daejeon District Court? 귀하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개시된 책임제한절차에 채권 신고를 하였는지요?
Yes 예 / ___No 아니오

If yes, please submit a copy of the evidence of such filing and indicate the Receipt No. for your claim. 위 책임제한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였다면, 채권 신고의 증빙서류 (제한채권신고 접수 증명) 사본을 제출하고 귀하의 채권 접수 번호를 표기하십시오.

Receipt No. 접수번호 : _____

Date 일자 :

Claimant 신고인 :

서 명 _____(인)

Representative 대리인 :

서 명 _____(인)

※ This is a claim in the last standing in queue by the Korean Government.

〈부록 2〉 1차 협력계약서(국문)

협 력 계 약 서

본 계약은 아래 당사자 사이에서 2008. 1. 5. 체결되었다.

- (1) 허베이 스피리트호(이하 "이 건 선박")의 소유자 (이하 "선주")인 허베이 스피리트 셉핑 캄파니 리미티드
- (2) 이 건 선박의 선주상호보험인 스컬드 어슈어런스 포레니겐 (이하"클럽")
- (3)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하 "KMPRC")
- (4)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이하 "MOMAF")

전문:

1. 2007. 12. 7. 예인선들에 의해 예인되고 있던 크레인 바지선인 삼성 1호가 이 건 선박과 충돌하여 바다에 원유를 유출시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대한민국정부 (이하 "한국 정부")는 이 사건 사고를 국가 재난사태로 선포하였다. 어업 및 수산업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해양 및 관련 해안 부분에 광범위한 오염을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초래되었다. 이에 당사자들 및 한국정부는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기를 원한다.

3. 피해 지역의 방제 작업 기타 오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야기된 오염 손해에 대한 책임은 1992년 민사책임조약("CLC 1992")과 1992년 기금 조약("기금 조약")에서 정한 국제법에 따른다. 대한민국은 위 두 조약의 체약국이고, 위 두 조약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국내 법률로 입법화되었다.
4. 이 사건 사고가 이 건 선박 또는 선박에 승선한 자의 과실 없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주는 CLC 1992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인정은 선주가 이 사건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여하한 구상 청구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클럽은 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s의 회원이다. 클럽은 이 건 선박의 선적국(홍콩)에 의하여 CLC 1992에 따라 선주의 책임에 관하여 보험 또는 기타 금융 담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승인되었다. 또한 이는 클럽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른 국가가 선적국인 다른 유조선에 관하여 유사하게 승인된다. 이는 선적국에 의해 발행되고 선박에 비치된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오염 손해에 대한 청구에 대한 지불은 CLC 1992의 조건에 따라 클럽에 의해 보장된다.
6. CLC 1992에 따라, 선주와 클럽의 책임은 SDR 89.77백만의 금액으로 제한된다. 오염 손해에 대하여 인정된 청구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금 조약에 따라 선주와 클럽이 지불한 모든 금액을 포함하여 총 SDR 203백만까지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 1992("IOPC기금")으로부터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인정되는 청구의 총액이 기금조약에 따른 위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청구인들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비율에 따라 이루어 지게 된다.

7. CLC 1992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야기된 오염 손해에 대한 청구는 CLC 1992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선주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선주의 사용자 내지 대리인, 선박의 관리인, 선원 또는 용 선자 에 대하여 여하한 청구(CLC1992에 따라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를 할 수 없다. 그러나 CLC 1992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앞서 기술한 크레인 바지와 예인선의 선주와 선원에 대한 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8. 클럽은 이 사건 사고로 야기된 오염 손해에 대한 청구서의 제출, 평가, 지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IOPC기금, MOMAF와 협의한다. 당사자들은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긴밀한 협조의 강구가 중요함을 인식한다.
9. 클럽의 의사는 CLC 1992과 기금 조약이 적용된 주요 기름 유출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처리된 방법에 따라 청구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오염 손해에 대한 청구의 승인을 위한 IOPC 기금의 기준(98개 국가에서 승인됨)에 따르는 청구의 평가를 포함한다. 이는 또한 모든 오염 사고피해자들을 평등하게 취급할 것을 확실히 보장하는 전제에서 이루어 지는 중간지급을 포함한다.
10. 2007. 12. 24. KMPRC는 선박우선평권에 기초하여 이 건 선박의 압류를 신청하여 압류결정을 받았다(사건번호 2007타경14945, 압류 명령). KMPRC는 또한 같은 날 이 건 선박에 대한 감수보존 신청을 하여 이를 발부 받았다(사건번호 2007타기449, 감수보존 결정)
11. 선주와 클럽은 위 결정은 국제법에 따라 보장된 배상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선주와 클럽은 신의 성실하게 MOMAF 및 KMPRC와 협조하는 청구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12. MOMAF 와 KMPRC는 제안된 절차에 동의하며, KMPRC는 이 건 선박의 압류를 해제하고자 한다.

이에, 본 계약에서 정한 상호 약속, 약정 및 조건을 약인으로 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압류 명령 및 감수보존

1. 당사자들에 의한 본 계약의 체결시, KMPRC는 즉시 2007. 1. 7. 오전 중으로 압류 결정 및 감수보존에 대한 취하신청을 하고, 같은 날("출발일") 이 건 선박이 대한민국에서 출항하여 대한민국 영해를 떠날 수 있도록 한다. 선주와 클럽은 KMPRC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서류를 제공한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이 건 선박이 출발일까지 선주 및/또는 클럽의 귀책사유가 없이 또는 법원의 압류 해제 및 감수보존 해제 절차의 지연 이외의 사유로 대한민국을 출발하여 대한민국의 영해를 떠나지 못한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서면으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3. 이 건 선박이 대한민국과 그 영해를 출발한 후, 클럽은 일천오백만원 (15,000,000원)을 한도로 감수보존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다.

Receipt Office의 설립 및 Review Process

4. 이 건 선박이 대한민국과 그 영해를 출발한 후, 클럽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야기된 오염 손해의 배상을 위한 CLC 1992 및/또는 기금 조약에 따른 청구의 수령을 위한 사무소 또는 센터("Receipt Office")를 마련하여야 한다. Receipt Office는 클럽이 상당하다고 이해하는 바에 따라 클럽이 IOPC기금과 함께 관리 및 운영한다.
5. 클럽은 Receipt Office에 제출된 모든 정보와 서류를 IOPC기금과 함께 ITOPE 및 지정된 컨설턴트, 자문역들과 협의하여 수령, 검토 및 평가하여야 한다("Review Process"). Review Process는 IOPC기금 회의에서 채택되고 현재 IOPC 기금 Claims Manual에 정리된 오염 손해 배상에 대한 청구의 승인을 위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6. Review Process에 기초하여 클럽은 그들이 승인하고 해당 청구에 대한 합리적 금액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사정금액 ("Assessed Amounts")을 결정하기 위하여 IOPC기금과 협의하기로 한다.
7. 클럽은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Assessed Amounts의 중간지급 ("Interim Payment")을 위하여 IOPC 기금과 협의한다. 그러한 지급의 목적은 모든 청구인들이 평등하게 취급되는 것을 보장하는 전제에서 보상이 가능한 조속히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8. Interim Payment은 수령인이 Interim Payment의 수령을 확인하고 CLC 1992과 기금 조약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권리 및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적절한 범위에서 양도하는 문서의 작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9. Interim Payment은 Receipt Office를 통하여 충분한 정보와 증거를 포함하는 청구를 제출 받은 때로부터 6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단, 추가적인 정보와 증거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해안방제작업과 관련한 인건비

10. 이 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수의 인원이 해안 방제작업을 위하여 고용되었고, MOMAF는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일당에 대한 긴급한 지급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MOMAF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긴급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비용에 대한 산정을 위한 아래와 같은 긴급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11. 관련 청구인들(즉, 제10항에 언급된 인원들의 고용주와 작업지시에 의하여 인건비 지급의무를 지닌 당사자)은 2007. 12. 7.부터 2007. 12. 31.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사고의 결과로 이루어진 해안 방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건비("인건비")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2008. 1. 10. 이전까지 Receipt Office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정보와 서류의 제출은 클럽이 요구하는 요건과 형식에 충분히 따라야 한다.
12. 클럽은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정보와 서류를 IOPC기금과 함께 ITOPI 및 지정된 컨설턴트, 고문들과 협의하여 검토하기로 하고, 합리적인 금액의 최종적 사정(Assessed Labour Costs: "ALC")이 이루어진다. 이 절차는 제5조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13. 클럽은 ALC관련 금액을 2008. 2. 4. 까지 총 합계액이 120억원(12,000,000,000원, "인건비 지급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다만, 그러한 지급액의 수령자들은 적절한 문서를 제때에 작성하여야 한다.

14. MOMAF는 이 건 사고로 인한 총 청구액이 CLC 1992및 기금조약에 정한 책임제한액을 초과하는 지 여부가 알려 지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초과하는 경우 청구인들이 수령할 보상은 안분비례됨을 인정한다. 따라서, 위 13조의 클럽의 약속을 인지하고, MOMAF는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클럽의 이익을 위하여, 클럽에 의한 인건비의 지급이 위에 언급한 안분비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대한민국은 클럽의 청구가 있는 때에 즉시 그 초과 부분을 클럽에 지급하여야 한다.

추후의 협조

15. 관련 당사자들의 긴밀한 협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MOMAF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오염사고피해자들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며, 클럽이나 IOPC 기금이 선임한 consultant 및 자문역들이 해안오염평가를 포함한 해양오염영향조사 등 기타 검정에의 참가 등을 포함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MOMAF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에 필요한 협조의 제공에 최선을 다한다.
16. 책임의 제한.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여하한 내용도 CLC 1992과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야기된 청구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는 선주와 클럽의 권리를 해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7. 준거법 및 관할. 본 계약은 대한민국법률에 준거하고,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18. 본 협력 계약서는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작성되며, 그 효력에 있어서는 한글본이 영문본에 우선한다.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회사를 대리하여

이름:

직위:

SKULD 보험 회사를 대리하여

이름:

직위:

해양수산부를 대표하여

이름:

직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백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대표하여

이름:

직위:

이름:

직위:

<부록 2> 1차 협력계약서(영문)

Cooperation Agreement

This Agreement is made this 5th day of January 2008 by and between the following parties:

- (1) Hebei Spirit Shipping Company Limited, the owners of M.V. "Hebei Spirit" (the "Vessel") ("Owners"),
- (2) Assuranceforeningen SKULD (Gjensidig), the P&I Club of the Vessel, ("Club"),
- (3) Korea Marine Pollution Response Corporation ("KMPRC"), and
- (4) The Korean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OMAF").

WHEREAS:

1. On December 7, 2007, the crane-barge "Samsung No. 1," which was being towed by tugboats, collided into the Vessel, causing crude oil to spill into the sea ("Incident").
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Government") has declared the Incident a national disaster. It has caused widespread pollution of Korean waters and related coastal interests, including substantial damage to fishing and maricultural industries,

resulting in financial hardship to the Korean people in the affected areas. The Parties and the Korean Government therefore wish to cooperate in taking appropriate measures to relieve such hardship.

3. Liability for pollution damage resulting from the Incident, including costs of clean-up and other measures to prevent or minimize pollution damage, is governed by international law as established by the Civil Liability Convention 1992 ("CLC 1992") and the Fund Convention 1992 ("Fund Convention"). Korea is a party to both Conventions, which are enacted in Korean law by the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4. The Owners accept that they are liable to pay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LC 1992, notwithstanding their contention that the Incident occurred without their fault or that of anyone on board the Vessel. This is accepted without prejudice to any rights of recourse which the Owners may have against parties responsible for the Incident.
5. The Club i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Group of P & I Clubs. It is approved by the Vessel's flag State (Hong Kong) as the party providing insurance or other financial security in respect of the Owners' liability under the CLC 1992. It is similarly approved in respect of other tankers which it insures and which fly the flags of other States. It is named in the certificate of insurance issued by the flag State and carried on board the Vessel. Due payment of claims for pollution damage in respect of this Incident is accordingly guaranteed by the Club on the terms of the CLC 1992.
6. Under the CLC 1992 the liability of the Owners and of the Club is

limited to an amount of SDR 89.77 million. If admissible claims for pollution damage were to exceed this figure, supplemental compensation is available from 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1992 (the "IOPC Fund") under the Fund Convention, up to an overall limit of SDR 203 million, inclusive of any amounts paid by the Owners and the Club. In the event that the aggregate of admissible claims for oil pollution damage exceeds the above limit applicable under the Fund Convention, the compensation payable to the claimants is to be apportioned pro-rata.

7. In accordance with the CLC 1992, Article III.4, no claim for pollution damage as a result of this Incident may be brought against the Owners otherwise than under the CLC 1992 nor may any such claim be brought (under the CLC 1992 or otherwise) against any servant or agent of the Owner, or against the manager, operator or charterer of the ship. However, the CLC 1992 does not preclude claims against the owners or operators of the above-named crane-barge or tugboats in respect of their responsibility for the Incident.
8. The Club is in discussion with the IOPC Fund with the object of establishing appropriate arrangements to facilitate presentation, assessment and payment of claims for pollution damage resulting from the Incident. The Parties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promoting close cooperation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such arrangements.
9. The Club's stated intention is to process claims in accordance with the usual practice in cases of major oil spills governed by the CLC

1992 and Fund Convention. This will involve assessment of claims in accordance with the IOPC Fund's criteria for the admissibility of claims for pollution damage (as approved by its 98 member States). It will also involve interim payments of compensation, subject to safeguards to ensure that all parties suffering pollution damage are treated equally.

10. On December 24, 2007, KMPRC applied for and obtained an arrest order based on a maritime lien against the Vessel (case no. 2007 *Takyung* 14945; "Arrest Order") and a maintenance and preservation order against the Vessel (case no. 2007 *Taki* 449; "Maintenance Order").
11. The Owners and the Club contend that these Orders are unnecessary in view of the compensation guarante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owever, they are willing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as confirmation of their good faith and of their desire to establish claims processing procedures in co-operation with KMPRC and MOMAF.
12. MOMAF and KMPRC endorse the proposed procedures, and KMPRC wish to release the Vessel.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mutual promises, covenants and conditions set forth in this Agreement, the Parties hereby agree to the following:

IT IS HEREBY AGREED:**Arrest Order and Maintenance Order**

1. Upon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by the Parties, KMPRC shall immediately withdraw and cancel their applications for the Arrest Order and Maintenance Order in the morning of January 7, 2008, and cause the Vessel to depart from Korea and leave Korean territorial waters that same day ("Departure Date"). The Owners and the Club shall provide to KMPRC the necessary assistance and documentation to accomplish this.
2. In relation to Clause 1 above, if the Vessel fails to depart from Korea and leave Korean territorial waters on or by the Departure Date, for reasons not attributable to the Owners nor to any delays resulting from the court procedures in cancelling the Arrest Order and the Maintenance Order, this Agreement shall automatically terminate, unless there is a written agreement by the Parties to the contrary.
3. After the Vessel departs from Korea and its territorial waters, the Club shall pay the costs of the Maintenance Order, which shall not exceed Fifteen Million Korean Won (KRW 15,000,000).

Set-up of Receipt Office and Review Process

4. After the Vessel departs from Korea and its territorial waters, the Club shall set up an office or centre for the receipt of claims under the CLC 1992 and/or Fund Convention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arising from the Incident ("Receipt Office").

The Receipt Office shall be managed and operated by the Club together with the IOPC Fund.

5. The Club shall receive, review, and assess all of the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ubmitted to the Receipt Office, together with the IOPC Fund and in consultation with ITOPF and any appointed consultants and advisors ("Review Process"). The Review Process is to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for the admissibility of claims for pollution damage adopted by the Assembly of the IOPC Fund, and summarized in the current IOPC Fund Claims Manual.
6. Based on the Review Process the Club will consult with the IOPC Fund to determine what claims they are prepared to accept as admissible and the reasonable amounts of such claims ("Assessed Amounts").
7. The Club will consult with the IOPC Fund with the object of making provisional payments in respect of the Assessed Amounts if undue financial hardship would otherwise be suffered ("Interim Payments"). The purpose of such payments will be to pay compensation which is as prompt and adequate as possible whilst ensuring that all claimants receive equal treatment.
8. Interim Payments shall be made on the execution of documentation by the Recipients acknowledging receipt of the Interim Payments and transferring to the appropriate extent rights to receive the corresponding compensation under the CLC 1992 and Fund Convention and rights against third parties.

9. Interim Payments shall be made within six (6) months of receiving through the Receipt Office submissions of claims containing sufficient supporting information and evidence, provided that further time will be needed in the event that supplementary information and evidence are needed.

Claims in respect of Personnel Employed in Shoreline Clean-up Operations

10. A number of personnel have been employed for the purpose of clean-up labour in shoreline response operations as a result of the Incident, and MOMAF has identified a particularly urgent need for payment of the wages of such personnel to relieve financial hardship. Accordingly, at the request of MOMAF, it is agreed that the following urgent measures will be taken to assess claims for labour costs in respect of such personnel.
11. The relevant claimants (i.e., employers of the personnel mentioned in Clause 10 and parties that instruct such personnel, thereby incurring an obligation to pay remuneration for their labour) shall submit to the Receipt Office by no later than January 10, 2008, information and documents substantiating the labour costs incurred in the shoreline clean-up work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Incident during the period of December 7, 2007, up to and including December 31, 2007 ("Labour Costs"). Such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hall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and format specified by the Receipt Office.
12. The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ubmitted as described in Clause 11 above shall be reviewed by the Club, together with the

IOPC Fund and in consultation with ITOPF and any appointed consultants and advisors, and a final assessment shall be made of the reasonable amounts of the Labour Costs ("Assessed Labour Costs"). This process is to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mentioned in Clause 5 above.

13. The Club undertakes that payments in respect of the Assessed Labour Costs shall be made by February 4, 2008, up to an aggregate amount not exceeding Twelve Billion Korean Won (KRW 12,000,000,000; "Labour Costs Payments"), provided that the recipients of such payments execute the necessary documentation in a timely manner.
14. MOMAF acknowledges that it is not yet known whether the total claims resulting from the Incident will exceed the amounts available under the CLC 1992 and Fund Convention, in which case the compensation that claimants are entitled to receive will be subject to pro-rating. Accordingly, in recognition of the Club's undertaking in Clause 13 above, MOMAF, for and on behalf of the Korean Government, hereby covenants and promises for the benefit of the Club that, in the event the Labour Costs Payments exceed the compensation that would be payable after such pro-rating, the Korean Government shall reimburse the Club such excess immediately upon demand by the Club.

Future Cooperation

15.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close cooperation among all parties concerned, MOMAF undertakes to extend cooperation in respect of procuring the execution of the necessary documentation by parties

receiving compensation and, in so far as this is within the control of MOMAF, to use best efforts in extending to the consultants and advisors appointed by the Club and/or the IOPC Fund all cooperation reasonably requested to assist them in carrying out their work, including facilitating their full participation in any assessments of environmental impact on the seas, including shorelines, and in any other surveys.

16. Limitation of Liability. For the avoidance of doubt, neither this Agreement nor anything contained therein shall in any way prejudice or affect the rights of the Owners and the Club to limit their liability for the claims arising from the Incident under the CLC 1992 and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17.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relation to this Agreement shall be exclusively referred to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For and on behalf of
Hebei Spirit Shipping Company Limited

Name:

Title:

For and on behalf of
Assuranceforeningen SKULD (Gjensidig)

Name:

Title:

For and on behalf of
Korean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Name:

Title:

For and on behalf of
Korea Marine Pollution Response Corporation

Name:

Title:

Name:

Title:

<부록 3> 2차 협력계약서(국문)

2차 협 력 계 약 서

본 계약은 아래 당사자 사이에서 2008. 7. 1. 체결되었다.

- (1) 허베이 스피리트 호(이하 "이 건 선박")의 소유자(이하 "선주")인 허베이 스피리트 셉핑 캄파니 리미티드
- (2) 이 건 선박의 선주상호보험인 스컬드 어슈어런스 포레니젠(이하 "클럽"), 및
- (3)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를 대리하고 대신하여 국토해양부

전문:

- A. 2007. 12. 7. 예인선들에 의해 예인되고 있던 크레인 바지선인 삼성 1호가 이 건 선박과 충돌하여 바다에 원유를 유출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
- B. 한국 정부는 이 사건 사고를 국가 재난사태로 선포하였다. 어업 및 수산업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해양 및 관련 해안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광범위한 오염을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방제비용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초래되었다.
- C. 피해 지역의 방제 작업 비용 및 기타 오염 손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야기

된 오염 손해에 대한 책임은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CLC 1992")과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기금 조약")에서 정한 국제법에 따른다. 대한민국은 위 두 조약의 체약국이고, 위 두 조약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국내 법률로 입법화되었다.

- D. 선주는 CLC 1992에 의거하여 배상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인정은 선주가 이 사건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여하한 구상 청구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E. 클럽은 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s의 회원이며, CLC 1992에 따른 선주의 책임에 관한 책임보험자이다.
- F. CLC 1992에 따라, 선주와 클럽의 책임은 SDR 89.77백만의 금액으로 제한된다("책임협약 한도액"). 오염 손해에 대하여 인정 가능한 청구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금 조약에 따라 책임협약 한도액을 포함하여 총 SDR 203백만까지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 1992("IOPC기금")으로부터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유류오염 손해에 대하여 인정 가능한 청구의 총액이 기금조약에 따른 위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청구인들에게 지급되는 배·보상은 비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 G. 선주가 CLC 1992에 따른 책임 제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상 책임협약 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가 접수된 후 6개월 이내에 책임제한 절차("책임제한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위 절차에서 선주는 책임협약 한도액 상당액의 책임제한 기금("책임제한 기금")을 한국의 관할 법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책임제한 기금은 처음에는 보증서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으나, 일반적 형태의 보증서상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책임제한 기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책임협약

한도액에 대하여 2007. 12. 7. (또는 법원이 달리 정하는 일자)부터 위 현금 공탁이 이루어진 때까지 연 6%의 비율로 발생한 이자("6% 법원 공탁이자")와 함께 공탁한다는 내용이어야 한다.

- H. 청구의 예상 건수 및 규모, 그리고 CLC 1992에 따라 청구에 적용되는 시한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법원이 책임제한 기금을 청구인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 I. 2008. 1. 5., 선주와 클럽,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KMPPRC") 및 대한민국 해양수산부("MOMAF")간에 협력 계약서가 체결되었다. 위 계약서(이하 "2008.1. 5.자 협력 계약서"라고 한다)는 여타 조항들 중 특히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보상청구 접수를 위한 사무소 혹은 센터의 설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또한 IOPC 기금 회의에서 채택된 청구의 허용 기준에 따라 청구액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클럽은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중간지급을 위하여 IOPC 기금과 협의하도록 규정하였고, 해안방제작업 인건비에 대한 특정 청구액을 정산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다.
- J. 이후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HSC")가 설립되었고, 2007. 12. 해안방제작업 인건비 관련 청구는 2008. 1. 5.자 협력 계약서에 따라 지급되었으며 방제비용 관련 청구도 일부 지급되었다.
- K. 2008. 1. 15. 클럽과 선주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 법원에서 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클럽은 아래 전문 P항 기재와 같이 책임제한 기금을 제공하고자 한다.
- L. CLC 1992에 따라 어떠한 당사자도 모든 청구에 대한 최종 사정 및 배상 가능한 금액의 배분이 이루어 질 때까지 중간 지급을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본 계약서의 당사자들은 배상금 지급을 가능한 신속하

게 하고자 한다.

- M. 2008. 3. 개최된 제40차 회의에서 IOPC 기금 집행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를 검토하고 CLC 1992 및 기금 조약에 따라 인정 가능한 청구 총액이 두 조약에 따른 전체 보상한도액 SDR 203백만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위원회는, 배·보상 가능한 금액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기 위하여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배·보상금의 어떠한 중간 지급도 인정 가능한 것으로 사정된 청구 금액의 60%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N. 그 후 대한민국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 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위 특별법은 특히 특별대책위원회("특대위")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CLC 1992 및 기금 조약에 따라 지급 가능한 배·보상금 이외에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규정하였다.
- O. 특별법에 따라 한국 정부를 대리하여 국토해양부는 인정 가능한 모든 청구가 합계 SDR 203백만을 초과하더라도 IOPC기금과 클럽이 인정 가능한 것으로 사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전액 보상되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인정 가능한 청구 금액이 사정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청구금 전액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P. 클럽은 책임협약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총액 한도 내에서 위와 같이 지급을 하고 현금 공탁이 아니라 보증서의 형식으로 책임제한 기금을 제공할 의사가 있으나, 이는 (1) 모든 청구인들이 인정 가능한 청구액에 대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2) 보증서에 따라 향후 법원에 공탁하도록 요구될 수 있는 총액을 포함하여 클럽이 지급한 총액이, 중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책임제한절차 개시 당시 현금 공탁의 방법으로 책임제한 기금이 제공된 경우 한국 국내 통화로 법원에

납부해야 할 총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됨을 전제로 한다. 클럽은 또한 본 계약서 제4조에 정하여진 바와 같은 적절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본 계약서에 규정된 위 사항을 클럽에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정부를 대리하여 선주 및 클럽과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 Q. 국토해양부가 2008. 6. 30. 자로 클럽에게 발송한 서신에 의하여 특대위가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정 가능한 청구들에 관하여 IOPC 기금 및 클럽이 사정하여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승인한 범위 및 범원의 확정판결, 지급명령, 조정 및 화해로 인용된 범위에서는 비록 SDR 203 백만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그 전액 지급을 승인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클럽은 IOPC 기금과 함께 청구의 승인을 위한 기금의 기준에 따라 배·보상 청구액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사정한다.
2. 클럽은 클럽과 IOPC 기금이 인정 가능한 것으로 승인한 청구에 대한 배·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다. 위 청구에 대하여 클럽이 지급하는 금액은 그 청구가 사정되어 인정 가능한 것으로 승인된 전액이다.
3. 제2조에 따른 클럽의 지급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CLC 1992 및 기금 조약에 따라 가지게 되는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액을 최고 한도로, 선주와 클럽 및 IOPC 기금에 대한 영수증, 면책(release) 및 양도에 대한 증서(위와 같은 양도는 대위, 양도, 대출금 계약 또는 IOPC 기금과 클럽이 승인한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뿐 아니라 클럽 및 IOPC 기금이 사정하여 승인한 금액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a) (2008. 1. 5.자 협력 계약서 또는 기타 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사

고로 야기된 오염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클럽이 지급하였거나 향후 지급할 여타 금액과 더불어 제2조에 따라 클럽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하는 총액은 SDR 89.77 백만과 이에 대한 2007. 12. 7. (또는 법원이 지정한 날)부터 기산되는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b) 위 6% 이자는 2007. 12. 7. (또는 법원이 지정한 날)부터 각 청구인에 대하여 해당 청구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진 날까지 계산되고, SDR 89.77 백만 중 본 계약 하에서 향후 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잔액에 관하여는 이자 계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위 이자 계산은 클럽에 의하여 총합계 SDR 89.77 백만이 지급될 때까지 또는 아래 제6조 (b)에 따라 법원에 기금을 공탁할 때까지 중 더 먼저 시점에 도달하는 경우까지 이루어진다.

(c) 본 제4조의 목적상 상기 최고액 SDR 89.77 백만은 보증서에 의하여 책임제한 기금이 제공된 날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국 국내 통화로 환산된다.

(d) 본 계약의 목적상 위 (b)에 규정된 6% 이자는 본 계약에 첨부 1로 첨부된 에스크로우 계약서에 따라 설정되고 운영되는 에스크로우 계좌로 지급될 것이다. 위 에스크로우 계좌에 위 6% 이자는 적립되고 클럽 및 IOPC 기금이 인정 가능한 것으로 사정한 청구에 관한 배·보상금 지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자금으로 이용된다. 지급된 배상금에 대한 위 6% 이자의 지급은 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진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에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그 다음달 1일이 공휴일이나 은행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위 6% 이자의 지급은 그 후 첫 은행영업일에 이루어질 것이다.

5.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지급된 배상금에 대한 법정 이자 관련 청구는, 위에서 논의한 6% 이자나 6% 법원공탁이자와 별도의 개념으로, 클럽이 IOPC 기금과의 협의 하에 검토하고 사정하기로 한다. 클럽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모든 법정 이자는 위 제4조에 언급된 최고 금액

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그러나, 청구인들과 사이에 이자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된 사항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위 제4조 (a)에 정하여진 최고 금액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클럽 또는 선주가 책임제한 기금 및 6% 법원공탁이자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그 일부를 현금으로 관할 법원에 공탁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

(a) 제2조 및 제4조 (d)에 따른 클럽의 의무는 중단된다

(b) 클럽 및/또는 선주는 다음의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기로 한다.

- 1) 책임제한기금이 보증서에 의하여 제공된 날짜의 환율에 따라 한국 국내 통화로 환산된 책임협약 한도액에서 클럽 및/또는 선주가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총 금액(청구인들에게 지급된 법정이자 포함)을 공제한 금액
- 2) 위 금액에 대하여 2007. 12. 7. (또는 법원이 지정한 날)부터 법원에 현금 납부가 이루어진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
- 3) 클럽 및/또는 선주가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총 배상금에 대하여 2007. 12. 7.(또는 법원이 지정한 날)부터 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진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되는 이자. 다만, 위 제4조 (d)와 에스크로우 계약에 따라 에스크로우 계좌에서 청구인들에게 위 6%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급되지 않은 한도로 한정된다.

(c) 한국 정부는 클럽의 최초 서면 요청서를 수령하는 즉시, 클럽이 위(b)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에 더하여 요구될 수 있는 추가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여 법원에 납부된 총 합계액이 법원에 공

탁되도록 요구되는 위 공탁일 당시의 환율에 따라 한국 국내 통화로 환산하여 계산된 책임제한 기금 금액과 이에 대한 6% 법원 공탁이자를 더한 금액이 되도록 한다.

- (d) 만일 법원이 한국 정부의 법원에 대한 위(c)에 따른 공탁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법원에 직접 공탁하는 대신 클럽에게 이를 지급하여, 요구되는 액수 전액을 클럽 자신이 법원에 제 때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한다.

7. 한국 정부가 위 제6조에 언급되어 있는 금액을 납부함과 동시에, 한국 정부는 위 지급 범위 내에서 제3조에 언급되어 있는 문서에 의하여 양도된 배상권을 취득한다. 클럽은 한국 정부로의 권리 양도가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하여 타당하게 요구되는 문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클럽 및 IOPC 기금이 승인한 청구들과 법원의 확정판결, 지급명령, 조정 및 화해로 인용되는 청구들의 총합계 중 SDR 203백만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다른 청구인들이 클럽 및 IOPC 기금이 승인한 청구들과 법원의 확정판결, 지급명령, 조정 및 화해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청구권에 대하여 전액 배·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또는 그 범위에서는 본 계약에 따라 양도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한국 정부가, 선주 및 클럽 외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또한 한국 정부가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8. 당사자들은 법원에 책임제한 기금을 공탁할 필요가 없이, 클럽과 선주의 책임 제한 권리가 인정되고 유지되며, 청구인들의 배상청구권이 만족될 수 있는 방법으로 책임제한절차를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협조할 것에 동의한다.
9. 위 제6조 (c)에 따른 클럽의 서면 요청서 및 본 계약과 관련한 기타 통지 또는 교신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 앞으로 팩스(번호

+82-31-436-8934)로 발송하고 원본을 우송함으로써 한국 정부에게 보내어진다.

10. 본 계약은 대한민국법률에 준거하고,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11. 본 계약은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작성되며, 그 효력에 있어서는 한글본이 영문본에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토해양부

이름 :

직위 :

SKULD 보험 회사를 대리하여

이름 :

직위 :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회사를 대리
하여

이름 :

직위 :

〈부록 3〉 2차 협력계약서(영문)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This Agreement is made 1st day of July 2008 by and between the following parties:

- (1) Hebei Spirit Shipping Company Limited, the owners of MV *Hebei Spirit* ("the Owners" of "the Vessel"),
- (2) Assuranceforeningen SKULD (Gjensidig), the P&I Club of the Vessel, ("the Club"), and
- (3) The Korea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LTM"), acting for and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Government").

WHEREAS:

- A. On 7 December 2007 the crane-barge *Samsung No 1*, which was being towed by tugboats, collided into the Vessel, causing crude oil to spill into the sea ("the Incident").
- B. The Korean Government has declared the Incident a national disaster. It has caused widespread pollution of Korean waters and related coastal interests, including substantial damage to fishing and maricultural industries, resulting in substantial clean-up costs and economic losses to the Korean people in the affected areas.
- C. Liability for pollution damage resulting from the Incident, including costs of clean-up and other measures to prevent or minimize pollution damage, is governed by international law as established by the Civil Liability Convention 1992 ("CLC 1992") and the Fund Convention 1992

("Fund Convention"). Korea is a party to both Conventions, which are enacted in Korean law by the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 D. The Owners accept that they are liable to pay compensation, pursuant to and in accordance with CLC 1992, which provides for strict liability. This is accepted without prejudice to any rights of recourse which the Owners may have against parties responsible for the Incident.
- E. The Club i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Group of P & I Clubs and is the insurer of the Owners' liabilities under CLC 1992.
- F. Under CLC 1992 the liability of the Owners and of the Club is limited to an amount of SDR 89.77 million ("the CLC Limit"). If admissible claims for pollution damage were to exceed this figure, supplemental compensation is available from 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1992 ("the IOPC Fund") under the Fund Convention, up to an overall limit of SDR 203 million, inclusive of the CLC Limit. In the event that the aggregate of admissible claims for oil pollution damage exceeds the above limit applicable under the Fund Convention, the compensation payable to the claimants is to be apportioned pro-rata.
- G. In order to avail themselves of the right of limitation under CLC 1992 the Owners are required by Korean legislation to commence limitation proceedings ("Limitation Proceedings") within 6 months of the receipt of claims exceeding the CLC Limit. In any such proceedings they are required to establish a limitation fund in the amount of the CLC Limit ("Limitation Fund") with the competent Korean Court. The Limitation Fund may initially be established by guarantee, but the normal form of guarantee must provide for the cash equivalent to be deposited as

and when required by the Court, together with interest that has accrued on the CLC Limit, at the rate of 6% per annum, from December 7, 2007 (or a date otherwise fixed by the Court) to the time of making such a cash deposit ("6% Court Deposit Interest").

- H. Taking into account the anticipated number and magnitude of claims, and the time limit applicable to claims under CLC 1992, it may not be possible for a Limitation Fund to be distributed to claimants by the Court until a considerable time after the Incident.
- I. On 5 January 2008 a Co-operation Agreement was entered into between the Owners, the Club, Korea Maritime Pollution and Response Corporation ("KMPRC") and the Korean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OMAF"). The said Agreement (referred to herein as the "Co-operation Agreement of 5 January 2008") provided, among other thing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office or centre for the receipt of claims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and for claims to be reviewed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for the admissibility of claims adopted by the Assembly of the IOPCFund. It also provided for the Club to consult with the IOPC Fund with the object of making interim payments if undue financial hardship would otherwise be suffered, and for urgent measures to be taken to settle certain claims in respect of shoreline labour costs.
- J. Subsequently the Hebei Spirit Centre ("HSC") was established and the claims for the December 2007 shoreline labour costs were settled in accordance with the Co-operation Agreement of 5 January 2008, as well as a portion of the clean-up costs.
- K. On 15 January 2008 the Club and the Owners filed an application with the Seosan Branch of the Daejeon District Court to commence Limitation Proceedings. Once the application has been accepted by

the Court the Club intends to establish a Limitation Fund as described in Recital P below.

- L. Under CLC 1992 there is no obligation on any party to make interim payments pending final assessment of all claims and distribution of the available compensation. However,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wish to facilitate the payment of compensation as promptly as possible.
- M. At its 40th Session in March 2008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IOPC Fund considered this Incident and noted that the aggregate of admissible claims under CLC 1992 and the Fund Convention was estimated to exceed the overall limit of compensation under both Conventions of SDR 203 million. The Committee decided that, in order to ensure fair distribution of the available compensation, any interim payments of compensation should be limited until further notice to 60% of the amounts for which the relevant claims were assessed as admissible.
- N. The Republic of Korea has subsequently enacted the Special Act Concerning Support to Residents Suffering Damages from the *Hebei Spirit* Oil Spill and Restoration of Marine Environment (the "Special Act"). The said Act provided among other thing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Response Committee ("SRC"), and for State and local authorities to be empowered to pay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in addition to that available under CLC 1992 and the Fund Convention.
- O. Pursuant to the Special Act, the MLTM has decided on behalf of the Korean Government to make sufficient funds available to ensure that all admissible claims are compensated in full to the extent to which they are assessed as admissible by the IOPC Fund and the Club, even if they exceed SDR 203 million in total; and it has decided that it

wishes to facilitate full payment of claims as promptly as possible after their admissible amounts have been assessed.

P. The Club is willing to make such payments, up to a total amount not exceeding the CLC Limit, and to establish a Limitation Fund by guarantee rather than by cash deposit, subject to safeguards to ensure that (1) all claimants receive the same proportion of their admissible claims, and (2) the total amount paid by the Club (including any sums it may later be required to deposit in Court pursuant to the guarantee) does not exceed the total amount which would be payable into Court in Korean national currency, if no interim payments were made and a Limitation Fund were established at the commencement of Limitation Proceedings by means of cash deposit. The Club is also willing to pay appropriate interest thereon, as set out in Clause 4 of this Agreement. The MLTM has therefore also decided on behalf of the Korean Government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with the Owners and the Club,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the Club with such safeguards, as set out herein.

Q. By the letter of the MLTM to the Club dated 30 June 2008, the SRC has confirmed its approval on behalf of the Korean Government that all admissible claims shall be compensated in full to the extent to which they are assessed as admissible and approved by the IOPC Fund and the Club and awarded by final court judgements, payment orders, mediations and settlements, even if they exceed SDR 203 million.

ACCORDINGLY IT IS HEREBY AGREED AS FOLLOWS:-

1. The Club shall continue, together with the IOPC Fund, to review and assess claims for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the Fund's criteria

for the admissibility of claims.

2. The Club shall provide the funds required for prompt payment of compensation in respect of claims which it and the IOPC Fund approve as being admissible. The amount paid by the Club in respect of any such claim shall be the full amount for which the claim has been assessed and approved as admissible.
3. Any payment by the Club under Clause 2 above shall be conditional on the execution by the claimant of documentation containing the amount assessed and approved by the Club and IOPC Fund, in addition to a receipt, release and transfer to the Owners, the Club and the IOPC Fund of the benefit of his rights to compensation under CLC 1992 and the Fund Convention, up to the amount of the payment. (Such transfer may be by way of subrogation, assignment, or loan agreement or in any other form approved by the IOPC Fund and the Club.)
4. (a) The aggregate amount paid by the Club to claimants under Clause 2 above, together with any other amounts paid or to be paid by the Club as compensation for pollution damage caused by the Incident (whether under the Co-operation Agreement of 5 January 2008 or otherwise), shall not exceed a maximum amount being the sum of SDR 89.77 million plus interest thereon at 6% per annum from 7 December 2007 (or a date otherwise fixed by the Court).

(b) The said 6% interest is to be calculated from 7 December 2007 (or a date otherwise fixed by the Court) up to the date on which compensation is paid to the Claimant(s) in respect of that claim(s), and is thereafter to continue in respect of the balance of SDR 89.77 million remaining available for payment of compensation under this Agreement. This calculation is to continue until a total

amount of SDR 89.77 million has been paid by the Club, or until funds are deposited in Court in accordance with Clause 6(b) below, whichever first occurs.

- (c) For the purposes of this Clause 4 the said sum of SDR 89.77 million is to be converted into Korean national currency at the exchange rate prevailing on the date when a Limitation Fund is established by guarantee.
 - (d)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6% interest specified in (b) above will be paid to an escrow account to be established and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Escrow Agreement attached to this Agreement as Annex 1, where such interest shall be accumulated and used as additional funds available for the purpose of paying compensation in respect of claims assessed as admissible by the Club and by the IOPC Fund. For compensation payments made in any given month, payment of such 6% interest thereon shall be made on the first day of the following month, provided however that if the first day of the month falls on a public holiday or non-banking day, the date of such payment shall fall on the first banking day thereafter.
5. Any claim for statutory interest on compensation paid for oil pollution damage, distinct from the 6% interest discussed above and 6% Court Deposit Interest, shall be reviewed and assessed by the Club in consultation with the IOPC Fund. Any such statutory interest paid by the Club to claimants shall count towards the maximum amount referred to in Clause 4 above. However the terms actually agreed with claimants, with respect to payment of interest, if any, shall not affect the calculation of the maximum amount specified in clause 4 (a).
 6. In the event of the Club or the Owners being required to deposit with

the competent Court a cash amount representing the Limitation Fund, plus the 6% Court Deposit Interest, or any part thereof: -

(a) the Club's obligations under Clauses 2 and 4(d) above shall cease;

(b) the Club and/or the Owners shall pay into Court: -

1) the CLC Limit, converted into Korean national currency at the exchange rate prevailing on the date when the Limitation Fund was established by guarantee, less the aggregate amount of compensation paid by the Club and/or the Owners to claimants (including any statutory interest which may have been paid to them);

2) interest on the above sum at 6% per annum from 7 December 2007 (or a date otherwise fixed by the Court) up to the date of the cash deposit into Court; and

3) interest on any compensation paid by the Club and/or the Owners to claimants, calculated at 6% per annum from 7 December 2007 (or a date otherwise fixed by the Court) up to the date on which such compensation was paid, if and to the extent that such interest has not already been paid to Claimants out of the escrow account in accordance with Clause 4(d) above and the Escrow Agreement

(c) the Korean Government shall, on receipt of the Club's first written request to do so, pay into Court such further sum as may be required, in addition to the amount payable by the Club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b) above, to bring the total sum paid into Court to the full amount which the Court requires to be deposited in respect of the Limitation Fund, plus the 6% Court Deposit Interest, converted into Korean national currency at the

exchange rate prevailing on the date of such deposit.

(d) if the Court is unable to accept payment into Court by the Korean Government, payment shall instead be made to the Club, so that the Club itself is able to make timely payment into Court of the full amount required.

7. Upon the payment by the Korean Government of the amount referred to in Clause 6 above, it shall, to the extent of such payment, acquire the benefit of the rights to compensation transferred by the documentation referred to in Clause 3 above. The Club shall procure the execution of any documentation reasonably required to effect such transfer of rights to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undertakes to ensure that all claims approved by the Club and the IOPC Fund and awarded by final court judgments, payment orders, mediations and settlements in excess of the SDR 203 million are paid in full, and accordingly it shall not exercise any rights transferred to it under this Agreement if and to the extent that this would result in other claimants receiving less than full compensation of the claims approved by the Club and the IOPC Fund and awarded by final court judgments, payment orders, mediation and settlement in respect of such claims. This is without prejudice to the Korean Government's rights to claim against any third parties who may be responsible for the Incident, excluding the Owners and the Club,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Korean Government's rights to participate in the Limitation Proceedings.
8. The parties agree to co-operate in using best endeavours to conduct the Limitation Proceedings in such a manner that the right of the Club and the Owners to limit liability is established and preserved, and that claimants' entitlement to compensation is satisfied, without the need for a Limitation Fund to be deposited in court.

9. A written request by the Club pursuant to Clause 6(c) above, and any other notice or communication relating to this Agreement, shall be addressed to the Korean Government by being sent to the Deputy Minister for Logistics and Maritime Affairs, MLTM, Fax: (+82) 31-436-8934, with the original to follow by post.
10.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relation to this Agreement shall be exclusively referred to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July. 1, 2008

For and on behalf of The Korean
Government
Korea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For and on behalf of
Assuranceforeningen
SKULD(Gjensidig)

Name :
Position :

Name :
Position :

For and on behalf of Hebei Spirit
Shipping Company Limited

Name :
Position :

<부록 4> 2차 협력계약 부속계약서(국문)

부 속 계 약 서

1. 2차 협력계약서에 관하여 2008. 7. 1.까지 서명되지 않는 경우, 정부는 2차 협력계약서 제4조에 언급된 6%의 이자가 2008. 7. 2.부터 2차 협력계약서의 서명일까지(위 서명은 2008. 7. 15.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한다. 2차 협력계약서가 서명되면 6%의 이자는 2007. 12. 7.(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날)부터 2008. 7. 1.까지 발생하게 된다. 그 후 이자는 2차 협력계약서 서명일까지 발생하지 아니하고, 위 서명일 다음날부터 이자 기산이 새로이 이루어지며 2차 협력계약서 제4조에서 정하여진 바와 같이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산된다.
2. 2차 협력계약서가 서명되기 이전에 정부가 1월과 2월 해안 방제작업 인건비를 방제회사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정부는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에 그 대위청구권을 행사하고 Skuld가 2차 협력계약서가 서명되는 대로 곧 이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3. 당사자들은 만일 2차 협력계약서가 2008. 7. 15. 이전에 서명되지 못하는 경우에 Skuld와 선박소유자가 책임제한 법원에 대하여 책임협약한도액을 공탁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한다.
4. 2차 협력계약서 제4조에서 책임협약 한도액 SDR 89.77 백만은 보증서에 의하여 책임제한 기금이 제공된 날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국 국내 통화로 환산되도록 정하여져 있다. Skuld와 선주가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아직 책임제한기금 제공명령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보증서에 의하여 책임제한기금이 제공될 때까지, Skuld는 2차 협력계약서의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을 할 것임을 확인한다.
5. 당사자들은 2차협력계약서 체결시에 에스크로우계좌가 2차 협력계약서의 제4조 (d)에 따라 설정되고, 에스크로우 계좌가 개설된 후 10 영업일 이내에 Skuld에 의하여 오염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2008. 1. 5.자 협력계

약서 또는 기타 계약서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한 2차 협력계약서 제4조에 따른 6% 이자가 Skuld에 의하여 에스크로우 계좌에 적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2008. 7. 1.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토해양부

SKULD 보험 회사를 대리하여

이름 :

직위 :

이름 :

직위 :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회사를 대리하여

이름 :

직위 :

〈부록 4〉 2차 협력계약 부속계약서(영문)

Side Letter of Agreement

1. In the event that there is delay in signing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beyond 1 July 2008 it is agreed by the Government that no 6% interest, as referred to in clause 4 of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will accrue from July 2, 2008, until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is signed which is to be no later than 15 July 2008. Once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is signed the 6% interest will accrue as from 7 December 2007 (or a date otherwise fixed by the Court) up to and including July 1, 2008. It will then stop until the date of signing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and from the day following such date of signing by Skuld and the Government, the interest will restart and continue until payment is made as outlined by clause 4 of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2. In the event that the Government pays the January and February shore labor claims to the contractors before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is signed the Government agrees to place their subrogated claim to the Hebei Spirit Centre ("HSC") whereupon Skuld will settle it as soon as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is signed.
3. It is understood that if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cannot be signed promptly by 15 July 2008 Skuld and Owners will have no option but to deposit the CLC limit into the Court of the Limitation Proceedings.
4. Clause 4 of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provides that, for the purposes of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the CLC limit of SDR 89.77 million is to be converted into Korean national currency at the exchange rate prevailing on the date when a Limitation Fund is established by guarantee. Whilst Skuld and Owners have filed an

application to commence limitation proceedings, the court has not yet issued an order to establish the limitation fund. However, until such time that the limitation fund is established by guarantee, Skuld confirms that it will make payments pursuant to the terms of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5. The parties agree that upon the execution of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an Escrow Account will be established pursuant to Clause 4(d), and within ten (10) banking days of establishing the Escrow Account, the 6% interest, as provided in clause 4 of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accrued on the amounts already paid by Skuld as compensation for pollution damage, whether under the Cooperation Agreement of 5 January 2008 or otherwise, shall be deposited into the Escrow Account by Skuld.

July. 1, 2008

For and on behalf of The Korean Government
Korea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For and on behalf of Assuranceforeningen
SKULD(Gjensidig)

Name :

Position :

Name :

Position :

For and on behalf of Hebei Spirit
Shipping Company Limited

Name :

Position :

<부록 5> 에스크로우 계약서 및 송금지시서(국문)

에스크로우 계약서

본 계약은 아래 당사자 사이에서 2008. 7. 1. 체결되었다.

- (1) 허베이 스피리트 호(이하 "이 건 선박")의 소유자인 허베이 스피리트 쉽핑 캄파니 리미티드(이하 "선주")
- (2) 이 건 선박의 선주상호보험인 스컬드 어슈어런스 포레니겐(이하 "클럽"), 및
- (3)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를 대리하고 대신하여 국토해양부
- (4) [추후 결정될 은행] ("은행")

전문 :

- A. 선주와 클럽(이하 "HS Interests")은 국토해양부와 2008. 7. 1. 2차 협력계약서(이하 "2차 협력계약서")를 체결하였고, 2차 협력계약서에서 HS Interests는 삼성 1호와 이 건 선박의 2007. 12. 7. 충돌에서 발생한 유류 오염 손해 배상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에게 지급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 B. HS Interests는 2차 협력계약서 제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이하 "6%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 법에서는 선주에 의하여 개시된 책임제한 절차에서 선주가 현금으로 제공한 책임제한 기금에 대하여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 C. 위 6%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HS Interests와 국토해양부는 2차 협력계약서에서 은행에 에스크로우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과 사이에 본 에스크로우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 D. 에스크로우 계좌로 입금된 6% 이자는 적립되고 클럽 및 IOPC 기금에 의하여 인정 가능한 것으로 사정된 청구에 관한 보상금 지급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가 자금으로 이용되거나, 법원이 선주 및/또는 클럽에 대하여 6%의 법원공탁이자에 추가된 책임제한 기금의 현금 공탁을 요구하는 경우

책임제한 절차 법원으로 송금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되었다.

1. HS Interests와 국토해양부는 은행에 에스크로우 계좌(이하 "에스크로우 계좌")를 개설한다.
2. HS Interests는 2차 협력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에스크로우 계좌에 6%의 이자를 적립하기로 한다.
3. 2차 협력계약서에 따라서 HS Interests가 청구인들에게 SDR 89.77 백만 전액의 지급을 종료할 때부터, 에스크로우 계좌에 적립된 6% 이자와 그 6% 이자에 대한 은행이자 HS Interests를 대리하여 클럽이나 IOPC 기금에 의하여 인정 가능한 것으로 사정되는 청구와 관련된 청구인들에 대한 보상금의 중간 지급 또는 최종 지급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4. (a) 그러한 중간 지급 또는 최종 지급은 은행에 대하여 붙임 1 양식과 같은 HS Interests와 국토해양부의 공동 서면 지시에 의하여 해당 청구인들에게 송금될 것이다. 은행은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을 에스크로우 계좌에서 인출하여 해당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한다. 에스크로우 계좌에 적립된 6% 이자는 아래 제4조 (b)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들에 대한 배·보상금의 중간 지급 또는 최종 지급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b) 만일 2차 협력계약서 제6조에 따라 HS Interests가 책임제한 기금에 상당하는 현금을 책임제한절차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는 경우, HS Interests는 2차 협력계약서 제6조 (b) 3)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에스크로우 계좌에 남아있는 잔금이 법원에 공탁될 수 있도록 이를 인출할 수 있다.

5. 에스크로우 계좌와 관련된 일체의 관리비용 및 은행 수수료는 에스크로우
계좌에 입금된 금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에서 지급된다.
6. 본 계약서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고, 본 계약서로부터 또는 본 계약서
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속적인
관할권을 가진다.

2008. 7. 1.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토해양부

SKULD 보험 회사를 대리하여

이름 :

직위 :

이름 :

직위 :

--- 은행을 대표하여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회사를 대리
하여

이름 :

직위 :

이름 :

직위 :

붙임 1.

송금지시서

[은행] 귀하

귀하는 아래 지정된 수령인 또는 첨부물에 기재된 수령인의 은행계좌로 다음 금원을 송금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수령인 성명 :

송금 계좌 : () 은행 ()

송금액 : () 원

일자 :

서명 :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고 대표하
는 국토해양부

스컬드 어슈어런스 포레니겐

◇◇은행

Side Letter of Agreement (부속계약서)

1. 2차 협력계약서에 관하여 2008. 7. 1.까지 서명되지 않는 경우, 정부는 2차 협력계약서 제4조에 언급된 6%의 이자가 2008. 7. 2.부터 2차 협력계약서의 서명일까지(위 서명은 2008. 7. 15.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한다. 2차 협력계약서가 서명되면 6%의 이자는 2007. 12. 7.(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날)부터 2008. 7. 1.까지 발생하게 된다. 그 후 이자는 2차 협력계약서 서명일까지 발생하지 아니하고, 위 서명일 다음날부터 이자 기산이 새로이 이루어지며 2차 협력계약서 제4조에서 정하여진 바와 같이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산된다.
2. 2차 협력계약서가 서명되기 이전에 정부가 1월과 2월 해안 방제작업 인건비를 방제회사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정부는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에 그 대위청구권을 행사하고 Skuld가 2차 협력계약서가 서명되는 대로 곧 이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3. 당사자들은 만일 2차 협력계약서가 2008. 7. 15. 이전에 서명되지 못하는 경우에 Skuld와 선박소유자가 책임제한 법원에 대하여 책임협약한도액을 공탁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한다.
4. 2차 협력계약서 제4조에서 책임협약 한도액 SDR 89.77 백만은 보증서에 의하여 책임제한 기금이 제공된 날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국 국내 통화로 환산되도록 정하여져 있다. Skuld와 선주가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아직 책임제한기금 제공명령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보증서에 의하여 책임제한기금이 제공될 때까지, Skuld는 2차 협력계약서의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을 할 것임을 확인한다.

5. 당사자들은 2차 협력계약서 체결시에 에스크로우 계좌가 2차 협력계약서의 제4조 (d)에 따라 설정되고, 에스크로우 계좌가 개설된 후 10 영업일 이내에 Skuld에 의하여 오염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2008. 1. 5.자 협력계약서 또는 기타 계약서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한 2차 협력계약서 제4조에 따른 6% 이자가 Skuld에 의하여 에스크로우 계좌에 적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2008. 7. 1.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토해양부

SKULD 보험 회사를 대리하여

이름 :

직위 :

이름 :

직위 :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회사를 대리
하여

이름 :

직위 :

<부록 5> 에스크로우 계약서 및 송금지시서(영문)

Escrow Agreement

This Agreement is made 1 July 2008 by and among the following parties:

- (1) Hebei Spirit Shipping Company Limited ("the Owners"), the owners of MT Hebei Spirit ("Vessel"),
- (2) Assuranceforeningen SKULD (Gjensidig), the P&I Club of the Vessel, ("Club"),
- (3) The Korea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LTM"), acting for and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 (4) [BANK TO BE DETERMINED] ("Bank").

WHEREAS:

- A. The Owners and the Club ("the HS Interests") have entered into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dated 1 July 2008, with the MLTM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under which the HS Interests have agreed to make payments to the claimants of oil pollution damages resulting from the collision between Samsung No 1 and the Vessel on December 7, 2007 ("Claimants").
- B. The HS Interests have agreed to pay interest at the rate of 6% per annum in accordance with Clause 4 of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6% Interest"). Under Korean law, interest at the rate of 6% per annum would apply to the Limitation Fund established by the Owners in cash for the Limitation Proceedings commenced by them.
- C. For the purposes of the payment of the 6% Interest specified above, the HS Interests and the MLTM have agreed in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to open an escrow account with the Bank and enter into this Escrow Agreement with the Bank.

D. The 6% Interest deposited into the Escrow Account shall be accumulated and used as additional funds available for the purpose of paying compensation in respect of claims assessed as admissible by the Club and the IOPC Fund and/or transferred to the Court in the Limitation Proceedings, should the Court require the Owners and/or the Club to make a cash deposit of the Limitation Fund plus the 6% Court Deposit Interest.

IT IS HEREBY AGREED AS FOLLOWS:

1. The HS Interests and the MLTM shall open an escrow account with the Bank ("Escrow Account").
2.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the HS Interests shall deposit the 6% Interest into the Escrow Account.
3. Upon the payment of the full SDR 89.77 million to Claimants by the HS Interests, in accordance with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the 6% Interest deposited into the Escrow Account, together with any interest accrued thereon, shall be used to make interim or final payments of compensation in respect of claims assessed as admissible by the Club and the IOPC Fund to Claimants on behalf of the HS Interests.
4. (a) Such interim or final payments shall be remitted to the relevant claimants with the joint, written instructions by the HS Interests and MLTM to the Bank, as per the form attached hereto as Annex 1, and the Bank shall thereby be required to withdraw the relevant amounts from the Escrow Account and remit the same to the bank accounts of the relevant Claimants. The 6% Interest deposited in

the Escrow Account may not be used for any purposes other than for making interim and final payments of compensation to Claimants save for Clause 4(b) below.

(b) If the HS Interests are required to deposit with the Court in the Limitation Proceedings a cash amount representing the Limitation Fund, pursuant to Clause 6 of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the HS Interests may withdraw any balance that remains in the Escrow Account, so that it can be deposited into the Court in satisfaction of their obligations under sub-paragraph 3) of Clause 6(b) of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5. Any administrative costs and bank charges related to the Escrow Account shall be paid from the amounts deposited with the Escrow Account and the interest accrued thereon.
6.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ny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exclusively referred to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July. 1, 2008

For and on behalf of The Korean Government Korea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For and on behalf of Assuranceforeningen SKULD(Gjensidig)
Name :	Name :
Position :	Position :
For and on behalf of * * bank	For and on behalf of Hebei Spirit Shipping Company Limited
Name :	Name :
Position :	Position :

Attachment 1

Remittance Instructions

To: [BANK]

You are hereby instructed to remit the following sum(s) to the bank account(s) of the party(ies) indicated below or as provided in the attached:

Recipient: [NAME]

Bank Account: [ACCOUNT DETAILS]

Amount: [KRW -----]

Dated:

Signed:

Name :

The Korea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cting
for and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Name :

Assuaranceforeningen
SKULD(Gjensidig)

Name :

For and on behalf of [BANK]

Side Letter of Agreement

1. In the event that there is delay in signing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beyond 1 July 2008 it is agreed by the Government that no 6% interest, as referred to in clause 4 of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will accrue from July 2, 2008, until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is signed which is to be no later than 15 July 2008. Once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is signed the 6% interest will accrue as from 7 December 2007 (or a date otherwise fixed by the Court) up to and including July 1, 2008. It will then stop until the date of signing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and from the day following such date of signing by Skuld and the Government, the interest will restart and continue until payment is made as outlined by clause 4 of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2. In the event that the Government pays the January and February shore labor claims to the contractors before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is signed the Government agrees to place their subrogated claim to the Hebei Spirit Centre ("HSC") whereupon Skuld will settle it as soon as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is signed.
3. It is understood that if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cannot be signed promptly by 15 July 2008 Skuld and Owners will have no option but to deposit the CLC limit into the Court of the Limitation Proceedings.
4. Clause 4 of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provides that, for the purposes of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the CLC limit of SDR 89.77 million is to be converted into Korean national currency at the exchange rate prevailing on the date when a Limitation Fund is

established by guarantee. Whilst Skuld and Owners have filed an application to commence limitation proceedings, the court has not yet issued an order to establish the limitation fund. However, until such time that the limitation fund is established by guarantee, Skuld confirms that it will make payments pursuant to the terms of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5. The parties agree that upon the execution of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an Escrow Account will be established pursuant to Clause 4(d), and within ten (10) banking days of establishing the Escrow Account, the 6% interest, as provided in clause 4 of the Second Cooperation Agreement accrued on the amounts already paid by Skuld as compensation for pollution damage, whether under the Cooperation Agreement of 5 January 2008 or otherwise, shall be deposited into the Escrow Account by Skuld.

July. 1, 2008

For and on behalf of The
Korean Government
Korea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For and on behalf of
Assuranceforeningen
SKULD(Gjensidig)

Name :

Position :

Name :

Position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백서

For and on behalf of Hebei
Spirit Shipping Company
Limited

Name :

Position :

<부록 6> 손해 배·보상금 이중지급방지절차에 관한 합의각서(국문)

손해 배·보상금 이중지급 방지절차에 관한 합의각서(MOA)

국토해양부와 Skuld 클럽 및 IOPC Fund는 손해 배·보상 청구인(이하 '청구인')이 사정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대지급금 지급을 신청」 하거나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를 통해 IOPC Fund와 Skuld 클럽에게 적법하게 서명한 최종합의서(수령증 및 대위증서(첨부 1)를 첨부) 또는 중간지급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송부」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손해 배·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 따라 손해 배·보상금(이하 '특별법'에 따른 대지급금을 포함하여 '배·보상금')의 이중지급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청구인으로부터 대지급 신청서 또는 합의서를 먼저 제출받은 지급주체(이하 '지급주체')가 당해 클레임의 배·보상금을 지급한다.
2. 배·보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와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배·보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지급주체는 이를 즉시 다른 지급주체에게 통지한다.
3.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는 청구인의 합의서를 수령한 경우, 합의된 양식(첨부 1-A)을 이용하여 관련사항(단, 청구인이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의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만 관련 정보 전체를 제공할 수 있음)을 국토해양부에 이메일 또는 Fax로 통보하고 이를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는 7일 이내에 「미지급 확인서(첨부 2)」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Fax로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에 송부한다.
4. 국토해양부는 특별법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대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합의된 양식(첨부 1-B)을 이용하여 관련사항을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에 이메일 또는 Fax로 통보하고 이를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한다. 이 경우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는 7일 이내에 합의된 양식(첨부 1-B)과 「미지급 확인서(첨부 3)」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Fax로 국토해양부로 송부한다.
5. 만약 국토해양부에 수령된 대지급 신청과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에 수령

된 청구인의 합의서 중 어느 것이 먼저 수령된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와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가 상호 협의를 통해 지급주체를 결정하여야 한다.

6. 합의된 양식 및 미지급 확인서를 이메일 또는 Fax를 통해 수령한 지급주체는 배·보상금의 지급절차를 개시한다.
7. 지급주체는 이메일 또는 Fax를 통해 합의된 양식 및 미지급 확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배·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8. 배·보상금이 송금된 경우, 지급주체는 이메일 또는 Fax를 통해 이를 다른 지급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합의된 양식 및 미지급 확인서는 본 MOA에 첨부되어 있다.
10. 본 MOA와 이를 통해 합의된 이중지급방지절차는 Skuld Club이 청구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즉, 효력에 관한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본 MOA는 IOPC Fund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009. 1. OO

국토해양부를 대리하여

Assuranceforenignen SKULD (Gjensidig)와
IOPC Funds를 대리하여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보상지원단
지원제도팀장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장

첨부 1-A(양식)

hsc.admin@pandi-centre.com

To...

Cc...

Bcc...

Subject: Receipt of Settlement and Receipt and Subrogation Agreement Document

Attachment 1-A (Template)

We have today received signed Settlement and Receipt and Subrogation Agreement documents

in respect of the following claim;

Claim No	Claimant	Category	Disclosure Form	Claimed Amount	Approved Amount

We confirm that we will instruct payment on receipt of your acknowledgement of this e-mail and signed waiver, confirming that you will not make any payment in respect of these claims.

Regards,

Head of HSC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2242, 우편번호 110-110

팩스 (02) 767-2694, 전자우편 hsc.admin@pandi-centre.com

첨부 1-B(양식)

Inquiries for the purpose of compensation for Hebei Spirit Incident

[국토해양부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보상지원단 (Tel : 031-436-8753 / Fax : 031-436-8934)]

Contents for inquiry		Confirmed
1. Applicant information	applicated Date : claim Number : Claimant :	• correct ☐ • wrong ☐ (claim Number :) (claimant :)
2. Amount claim to be assessed :		• correct ☐ • wrong ☐ (amount :)
3. Payment of Compensation		• paid ☐ • not paid ☐ • partially paid in advance ☐ (advanced payment : won) [if not : won]
4. R&R Documentation		• signed ☐ (date of received : 2008..) • not signed ☐
5. Whether any written notice affecting/restricting the claimant's right under the 1992 CLC and Fund Convention such as assignment, pledge, waiver or attachment order including pre-judgement attachment order or a measure of similar nature was served upon HSC / MLTM.		• Yes ☐ • No ☐
[Any restriction of rights]		

Your requests have been confirmed as above.

[Jan. , 2009]

Head of HSC

첨부 2.

국토해양부의 미지급 확인서
(Waiver form to be signed by MLTM)

배 · 보상 청구인(Claimant Name) :

배 · 보상 청구번호(Claim Number) :

상기 배 · 보상 청구에 대한 Skuld 클럽과/또는 IOPC Fund의 배 · 보상금 지급 절차가 Skuld 클럽과 IOPC Fund의 사정결과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는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In consideration of you (Skuld Club and/or the IOPC Fund) making payment of the above referred claim, and provided that the payment is in accordance with the assessment of the claim by the Skuld Club and the IOPC Fund, w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nform you that;

1. 국토해양부는 동 배 · 보상 청구에 대해 어떠한 지급도 시행하지 않았음
We have not made any payment in respect of this claim
2. 국토해양부는 동 배 · 보상 청구에 대해 어떠한 지급도 시행하지 않을 것임
We will not make any payment in respect of this claim and,
3. 국토해양부가 상기 1, 2항을 위반하여 배 · 보상금의 이중지급이 발생할 경우, 국토해양부는 동 배 · 보상에 대해 1992 국제기금협약의 제9.3항 및 특별법과 민법에 따라 취득하였거나 혹은 취득할 수 있는 청구권 일체 및 대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

In the event we violate any of the foregoing No. 1 or No. 2 and it turns out that a double payment has been made, we waive any rights of subrogation we might acquire, or have acquired under Article 9.3 of the 1992 Fund Convention in respect of this claim as well as any rights to claims under the Special Law and the Civil Code.

2009. . .

국토해양부를 대리하여 HS 피해보상 지원단 지원제도팀장

For and on behalf of the Korea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Director of Hebei Spirit Compensation T/F

첨부 3.

Skuld 클럽과 IOPC Fund를 대리하는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의 미지급 약속서
(Waiver form to be signed by HSC on behalf of Skuld Club and IOPC Fund)

배 · 보상 청구인(Claimant Name) :

배 · 보상 청구번호(Claim Number) :

상기 배 · 보상 청구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대지급 절차가 Skuld 클럽과 IOPC Fund의 사정결과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Skuld 클럽과/또는 IOPC Fund는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In consideration of you (the Korean Government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aking advance payment of the above referred claim, and provided that the payment is in accordance with the assessment of the claim by the Skuld Club and the IOPC Fund, we (Skuld Club and/or the IOPC Fund) inform you that:

1. Skuld 클럽과/또는 IOPC Fund는 동 배 · 보상 청구에 대해 어떠한 지급도 시행하지 않았음

We have not made any payment in respect of this claim

2. Skuld 클럽과/또는 IOPC Fund는 동 배 · 보상 청구에 대해 어떠한 지급도 시행하지 않을 것임

We will not make any payment in respect of this claim and,

3. Skuld 클럽과/또는 IOPC Fund가 상기 1, 2항을 위반하여 배 · 보상금의 이중지급이 발생할 경우, Skuld 클럽과 IOPC Fund는 국토해양부의 동 배 · 보상 청구에 관한 지급을 근거로 1992 국제기금협약의 제 9.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행사하는 대위청구권에 대해 항변을 하지 않을 것임

In the event we violate any of the foregoing No. 1 or No. 2 and it turns out that a double payment has been made, we will waive any defence against your right of subrogation under Article 9.3 of the 1992 Fund Convention based on your payment in respect of this claim.

2009. .

Skuld 클럽과 IOPC Fund를 대리하여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장

For and on behalf of Assuranceforenignen SKULD (Gjensidig) and IOPC Funds Head of Hebei Spirit Centre·

〈부록 6〉 손해 배 · 보상금 이중지급방지절차에 관한 합의각서(영문)

Memorandum of Agreement (MOA)
[Procedure to avoid double payments]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LTM), the Skuld Club and the IOPC Fund, conscious that the claimants have two methods to receive compensation for pollution damage resulting from the Hebei Spirit Incident on December 7, 2007, based on the assessed amounts of their claims namely,

- by applying for an advance payment from MLTM under the Special Law concerning Support to Residents Suffering Damages from Hebei Spirit Oil Spill and Restoration of Marine Environment, etc. (the Special Law); and
- by sending a duly signed "Full and Final Settlement Agreement," together with the signed Receipt and Subrogation attached as Appendix 1, or an "Interim Receipt and Subrogation" ("R&R forms") to the Skuld Club and the IOPC Fund via the Hebei Spirit Centre (HSC)

and, aware that there is a risk of double payment has agreed as follows:

1. The party who first receives an application for payment from the claimant or signed R&R forms (as described above) will pay the claim ("Paying party").
2. In order to avoid double payment it is essential that MLTM and HSC co-operate and that each party informs the other immediately when an application for payment is received.
3. When HSC receives signed R&R forms, they will immediately inform MLTM by email or fax, using the agreed template (Attachment 1-A), followed by a telephone call, provided however that the full

information will only be provided where relevant claimants have consented to the release of such information by the HSC. MLTM will complete the waiver form (Attachment 2) and return it to HSC within seven days by email or fax.

4. When MLTM receives an application for advance payment pursuant to the Special Law, they will immediately inform HSC by email or fax, using the agreed template (Attachment 1-B), followed by a telephone call. HSC will complete the template (Attachment 1-B) the waiver form (Attachment 3) and return them to MLTM within seven days by email or fax.
5. If there is any doubt as to whether the MLTM received an application for payment first or whether the HSC received the signed R&R forms first from the claimant, MLTM and HSC shall decide on the Paying party upon consultation with each other.
6. Upon receipt of the template and waiver form by email or fax, the Paying party will trigger the payment process.
7. The Paying party will use its best endeavors to make sure that payment is made within two weeks of receiving the template and waiver form by email or fax.
8. Once bank remittance has been made, the Paying party will inform the other party by email or fax.
9. Templates and waiver forms are attached to this MOA.
10. This MOA and the agreed procedure for avoiding double payments shall be applicable to the compensation payments made by the Skuld Club to claimants. For the avoidance of doubt, this MOA shall not apply to the compensation payments made by the IOPC Fund, unless there is an agreement in writing to such effect.

January , 2009

For and on behalf of the Korea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Director of Hebei Spirit Compensation T/F

For and on behalf of Assuranceforenignen
SKULD (Gjensidig) and IOPC Funds

Head of Hebei Spirit Centre

<부록 7> 유류오염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통지서(국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상)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통지서

수신인 : (1) 허베이 스피리트 쉬펑 컴퍼니 리미티드,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

(2) 어슈런스포레닝엔 스쿼드 (젠시디그) P&I 클럽

(3) 1992년 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 (“국제기금”)

1. 이 통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41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000(질권설정자)**이 발행한 **2000.0.0.**자 질권설정동의서 및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질권설정자에게 지원한 대부금 금 ____원과 관련됩니다.
2.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국토해양부는, 질권설정자가 대한민국에게 부담하는 금 ____원의 대부금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질권설정동의서에 의하여 질권설정자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1992년 민사책임협약, 1992년 국제기금협약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지게 되는 **클레임()**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상)청구권을 대한민국에게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양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3. 국토해양부는 질권설정자로부터 그를 대신하여 이 통지를 할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는바, 질권설정동의서에 따라 유효하게 담보가 설정되었다는 이 통지에 의하여 귀 수신인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의 지시에 따를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4. 위 사정에 따라, 귀 수신인은 1992년 민사책임협약,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지급될 ()의 손해배상(보상)금을 청구인의 대부금 상환약정서에 따라 국토해양부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금된 ()의 손해배상(보상)금은 대부금을 차감한 후 그 잔액을

청구인의 대부금 수령계좌로 입금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은행명 : 수협

계좌번호 : 026-01-196031

예금주명 : 국토해양부

5. 첨부 질권설정동의서 및 대부금상환약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질권자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국토해양부 허베이스피리트피해보상지원단 지원제도팀장 000

대부금 지원에 따른 질권설정동의서

대부신청인 ① 성명
② 주소

피담보채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제8조 제
5항해양환경의단부신청인에게 지원되는 대부금의 상환채
무

질권설정채권 ① 채권자(질권설정자) : 위 대부신청인
② 채무자(제3채무자) : (가.채권)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
주, 보험자, 1992국제기금 (“국제기금등”) (나.채권)
대한민국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등”)
③ 채권액 : (가.채권) 국제기금등에 대한 청구액 금
원
(청구번호 :)
(나.채권) 대한민국등에 의하여 지급될 대지급
금 또는 한도초과보상금
④ 채권의 종류 : (가.채권)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상)청구권 (나.채권)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청구권 및 특별법 제
15조에 따른 한도초과보상금청구권

대부신청인은 대부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등
을 위하여 위 표시된 질권설정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한민국등에
게 대부신청인을 대리하여 확정일자 등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의 통지를 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200 . . .

대부신청인(질권설정자) (인)

대부금 상환 약정서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상기 본인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8조제5항 및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대부를 신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약정함

1. 국제기금으로부터 손해사정 결과를 통보받고,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보상금 수령계좌를 국토해양부 계좌(계좌번호 : 수협 026-01-196031, 예금주 : 국토해양부)로 지정함
2. 국토해양부가 국토해양부 계좌에 입금된 본인의 보상금에서 본인의 대부금을 상계하고, 그 잔액을 본인의 계좌로 지급하는데 동의함(보상금 잔액 수령계좌는 본인의 대부금 수령계좌로 함)
3. 국토해양부가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을 지급하거나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대부금을 우선 상환하고 그 잔액을 본인의 계좌로 지급하는데 동의함(대지급금 또는 한도초과보상금 잔액 수령계좌는 본인의 대부금 수령계좌로 함)
4. 국토해양부 계좌에 입금된 본인의 보상금으로 본인의 대부금 전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상환하겠음
5. 본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본인이 질 것임

200 . . .

국토해양부장관, ○○ 시장(군수) 귀하

<부록 7> 유류오염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통지서(영문)

NOTICE OF PLEDGE FOR THE CLAIMS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To : (1) Hebei Spirit Shipping Company Limited, the owners of MV *Hebei Spirit*
(2) Assuranceforeningen SKULD (Gjensidig), the P&I Club
(3) 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1992

Dear Sirs,

1. We refer to:

- (a) the Acknowledgment of Pledge dated **0. 0, 2009 issued by** _____ ("the Pledgor") in favour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Concerning Support of Compensation to Residents Suffering Damages from the Hebei Spirit Oil Spill as enacted on 17th Dec, 2008 (Notification No. 2008-741 of the MLTM) and
- (b) the loan in the amount of **KW** _____ given by the Korean Government to the Pledgor under the Special Act Concerning Support to Residents Suffering Damages from the Hebei Spirit Oil Spill and Restoration of Marine Environment.

2. We, the Korea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LTM") acting for and on behalf of the Korean Government, notify you that, by the Acknowledgment of Pledge, the Pledgor assigned to the Korean Government absolutely by way of security and pledged, for the repayment by the Pledgor of the amount of **KW** _____, its rights and claims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Claim No.** the P resulting from the Hebei Spirit oil spill that the Pledgor has or may have under the Civil Liability Convention 1992, the Fund Convention 1992 and/or the Korean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the Pledged Claims"))

3. Upon this notice, which MLTM has been duly authorised by the Pledgor to give you on its behalf, that the security granted by the Acknowledgment of Pledge has become enforceable, you are authorised and requested to comply with the instructions of the MLTM in relation to the Pledged Claims.
4. Subject to the above, you are authorised and directed to pay the Pledged Claims payable to the Pledgor pursuant to the Civil Liability Convention 1992, the Fund Convention 1992 to the following MLTM account:

Name of Bank: 수협

Account Number: 026-01-196031

Account Name : 국토해양부

The sum deposited into the said MLTM account for payment of compensation shall be applied in repayment of the loan as aforesaid and the balance, if any, shall be paid over to the Pledgor's bank account, which is the same account as used in receipt of loan.

5. For your reference, we attach the Acknowledgment of Pledge and the Agreement for Repayment of Loan hereto.

0.0, 2000

000

Authorised Signatory for and on behalf of The Korean Government
Director of Hebei Spirit incident compensation T/F
Korea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s Pledgee

ACKNOWLEDGMENT OF PLEDGE IN RELATION TO THE GRANT OF LOAN

Borrower: (1) Name :
(2) Address :

Claim Secured : the Borrower's obligations and liabilities to the Korean Government to repay the loan given by the said Government under Article 8, paragraph 5 of the Special Act Concerning Support to Residents Suffering Damages from the *Hebei Spirit* Oil Spill and Restoration of Marine Environment (the "Special Act")

Descriptions of Claim under Pledge:

- (1) Creditor (Pledgor): the Borrower aforementioned.
- (2) Debtor (the Original Debtor): (for Claim Ga) the owners of MV *Hebei Spirit*, its insurer, and/or 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1992 (the "IOPC Fund etc.") (for Claim Na) the Korean Government or local authorities (the "Government etc.")
- (3) Amount of Claim: (for Claim Ga) **KW** — payable by IOPC FUND etc. (**Claim No.:**) (for Claim Na) the compensation payable by the Government etc. on behalf of the obligors and for its subrog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as assessed as admissible under the CLC and IOPC Fund limits or the compensation in addition to that available under CLC and IOPC Fund limits payable by the Korean Government etc.
- (4) Type of Claim: (for Claim Ga) the claim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caused by the escape of oil from MV *Hebei Spirit* (for Claim Na) the claim for compensation of subrogation payable by the Government etc. under Article 8 of the Special Act and the claim for compensation beyond the CLC and IOPC Fund limits payable by the Government etc. under Article 15 of the Special Act.

The Borrower hereby agrees and acknowledges that as security for the repayment of the aforesaid loan, the Borrower assigns and pledges to the Government etc. the Claim under Pledge as described above and gives the Government etc. full power and authority to notify, for and on behalf of the Borrower, the Original Debtor of the security created by this Acknowledgment of Pledge in writing with a certified fixed date or in other proper manner.

. , 20 .

Authorised Signatory

Borrower as Pledgor

AGREEMENT FOR REPAYMENT OF LOAN

To : Korea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ayor/County Governor of ____ City/County

Address :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Name :

I, the above named person, applying for the loan under Article 8, paragraph 5 of the Special Act Concerning Support to Residents Suffering Damages from the Hebei Spirit Oil Spill and Restoration of Marine Environment (the "Special Act") and Article 7 of the Regulation Concerning Support of Compensation to Residents Suffering Damages from the Hebei Spirit Oil Spill, hereby agree as follows:

1. In case an application for subrogation payment under Article 8, paragraph 1 of the Special Act has not been made after I was given the notice of the assessment of my claim by IOPC FUND, I shall designate the account of Korea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LTM") (Name of Bank: 수협, Account Number: 026-01-196031, Account Name: 국토해양부) as the account for my receipt of the payment of compensation from IOPC FUND.
2. I authorize MLTM to apply the sum for payment of compensation deposited into MLTM account in repayment of my loan aforesaid and remit the balance, if any, on my bank account, which is the same account as used in receipt of loan.
3. In the event that advance payment given by MLTM under Article 8, paragraph 1 of the Special Act and Article 8, paragraph 1 of the presidential Decree or compensation over IOPC FUND limit given by MLTM under Article 9, paragraph 1 of the Special Act and Article 15, paragraph 1 of the presidential Decree, I authorize MLTM to apply the

sum for advance payment(or compensation over IOPC FUND limit) of MLTM in repayment of my loan aforesaid and remit the balance, if any, on my bank account, which is the same account as used in receipt of loan

4. In the event that the amount received in MLTM account in respect of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is insufficient to repay the loan in full, I shall be liable for the deficiency and shall pay the same to MLTM within the term for payment set by the mayor/county governor acting as agent for MLTM.
5. If I fail to perform the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I will bear all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ies consequent on or arising out of such failure.

Yours faithfully,

Signature : _____

Date : ____ . ____ , 20 ____ .

<부록 8> 정부 대지급금 지급에 따른 대위행사 통지서

수신인 : (1) 허베이 스피리트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 및 어슈어런스 포레니겐
스킬드 견지드그를 대리하는 김&장법률사무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223 세양빌딩)
(2) 유류오염손해보상 국제기금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 10층)
(3)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242)
발신인 : 국토해양부 HS 피해보상지원단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중앙공원로 43 대고빌딩 3층)

제목 : 정부 대지급금 지급에 따른 대위행사 통지서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충돌 및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대한민국(국토해양부)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수신인에게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한민국(국토해양부)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에 따라 붙임 '정부 대지급금 지급내역'에 기재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손해 배·보상 청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정부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권리는 대한민국(국토해양부)이 대위행사함을 통지합니다.

붙임 : 정부 대지급금 지급내역

2009. 11.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국토해양부 허베이스피리트피해보상지원단 지원제도팀장

<부록 9> 대부금에 대한 확인서(국문)

확 인 서

수신: "허베이 스피리트"호 소유자 ("선주")
어슈어런스 포레니젠 스쿼드 견지디그 ("클럽")

제목: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삼성 1호"간의 충돌 건 - 대한민국 태안 근해
- 2007년 12월 7일

청구인: [] ("청구인")

청구번호: [] ("청구")

상기 청구인 및 청구와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1. 본인은 일금 []원("본건 지급금")을 본인의 은행계좌(수협), 계좌번호 026-01-196031, 명의인 국토해양부 이하 "국토해양부 은행계좌")를 통하여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건 지급금은 클럽 및 선주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지급을 위하여 청구인과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지급되었고, 청구인이 작성한 "대부금 상환 약정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계좌가 아닌 국토해양부의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2. 본인은 본건 지급금을 청구인의 본인에 대한 대부금의 상환 및 청구인의 클럽, 선주 및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받을 권리에 대하여 본인이 설정한 질권의 만족을 위하여 사용할 것임을 보장합니다. 만일 본건 지급금에서 상기 대부금을 상환한 후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본인은 동 잔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할 것입니다.
3. 본인은 이 사건 합의금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아닌 국토해양부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의무 및 책임으로부터 선주 및 클럽을 면책할 것입니다.
4. 본인은 본인이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HSC")에 []자로 통지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상)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의 권리에 대하여 적법하게 질권을 설정하였다는 점을

보장하고 진술합니다.

5. 본인은 또한 정부 및/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권리에 대하여 질권, 채권양도, 가압류명령 기타 일체의 부담이 설정되거나 발행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보장하고 진술합니다.
6. 본 확인서는 본건 지급금이 국토해양부 은행계좌로 송금되었음을 보여주는 은행 송금증을 첨부하였을 때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일자: []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고 대신하여
국토해양부

성명: [] [인]

직위: [지원제도팀장]

<부록 9> 대부금에 대한 확인서(영문)

PLEDGE
Letter of Confirmation

To: The Owners of M/V "Hebei Spirit" ("Owners")
Assuranceforeningen Skuld Gensidig ("Club")

Re: "Hebei Spirit" c/w "Samsung No. 1" - Off Taaen, Korea - December
7, 2007

Claimant: [] ("Claimant")

Claim No.: [] ("Claim(s)")

In connection with the above Claimant and Claim(s),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as follows:

1. We hereby confirm receipt of the amount of Korean Won [] ("Payment"), which is remitted to our bank account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Bank, Account No.: of Fisheries CoAccount Holder: MLTM; "MLTM's Account"). This sum was paid by the Club and Owners toward so settling the Claim(s) of the Claimant, pursuant to an agreement executed between them, and it was remitted to the MLTM's Account, rather than to the Claimant directly, pursuant to the Agreement for the Repayment of Loan executed by the Claimant.
2. We hereby warrant that the Payment shall be used to repay the loan we extended to the Claimant and to satisfy the pledge of the Claimant's rights to receive compensation from the Club, Owners and the IOPC Fund, with respect to the Claim(s). If, after the repayment of the said loan, there is any balance remaining of the Payment, we shall remit the balance onward to the Claimant.

3. We hereby relieve the Owners and Club from any and all liability and responsibility whatsoever in connection with the fact that the Payment was remitted to the MLTM's Account, rather than to the Claimant's bank account.
4. We hereby warrant and represent that we have duly received a pledge of the Claimant's rights, as set forth in the notice of the Pledge we sent to the Hebei Spirit Centre ("HSC") dated [].
5. We also warrant and represent that there are no outstanding pledges, assignments, preliminary attachment orders or any other encumbrances established or issued with respect to the Claimants' rights to receive the payment of compensation from the Government and/or the municipal bodies thereof.
6. This Letter of Confirmation is effective and valid, provided that there is attached hereto the bank remittance slip showing the remittance of the Payment to the MLTM's Account.

Date: []

For and on behalf of The Korean Government
Korea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Name:

Title: Director of the HebeiSpirit Incident Compensation Task Force

〈부록 10〉 수협업무협약서

**국토해양부와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간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국토해양부와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부금 및 대지급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업무협약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6조에 따른 대부, 대지급 및 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국토해양부(이하 “갑”이라 한다)의 업무 중 금융지원업무를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이하 “을”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위탁 수행토록 함으로써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협약의 범위) 업무협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 및 대지급(한도초과보상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관한 업무
2. 대부금 및 대지급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대부 및 대지급 업무를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4. 기타 “갑”과 “을”이 동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한 업무

제3조(사업집행세부계획 수립) “을”은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구분 관리) “을”은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위한 자금은 “을”의 타 사업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대 부 금

제5조(대부금 재원조달) 대부금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조달은 “을”이 담당한다.

제6조(대부금 지급수준 등) 대부금의 지급수준 및 조건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대부금의 지급 및 정산) ① “갑”이 대부 신청인에게 대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 신청인의 성명, 입금할 금융기관 계좌번호, 대부금액 등이 기재된 대부금 지급의뢰서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의뢰서를 통보받은 “을”은 “갑”이 통보한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지정일에 대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을”은 매월 대부금 지급내역을 익월 1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차보전) ① “을”이 제7조에 따른 대부금의 지급을 위하여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은 월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은 이차보전 발생금액에 대하여 익월 15일까지 “갑”에게 신청한다.

③ 대부금의 이차보전금리는 기준금리에서 대부금리를 뺀 금리로 하되 기준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유통수익율+가산금리(1.04%)”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성예금증서(CD)유통수익율은 이차보전 대상월의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율을 평균한 금리로 한다.

⑤ 이차보전 대상금액은 이차보전 대상기간 동안의 대부금 평균잔액으로 한다.

⑥ 이차보전은 제15조에 의한 정부의 손실보전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한다.

제 3 장 대 지 급 금

제9조(대지급금 재원조달) 대지급금에 필요한 자금조달은 “을”이 담당한다.

제10조(대지급금 지급수준) 대지급금 지급수준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대지급금의 지급 및 정산) ① “갑”이 대지급금 신청인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신청인의 성명, 입금할 금융기관 계좌번호, 대지급금액 등이 기재된 대지급금 지급의뢰서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의뢰서를 통보받은 “을”은 “갑”이 통보한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지정일에 대지급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을”은 대지급금 신청인이 이미 제7조에 따라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부금과 대지급금을 상계하여 대지급금액에서 대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 “을”은 매월 대지급금 지급내역을 익월 1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차보전) “을”이 제11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자금관리 및 손실보전

제13조(자금관리) ① “을”은 “갑”명의로 예금계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관리한다.

1.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갑”이 국제기금등에 대위행사하여 수령한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2. “갑”이 한도초과 보상금 지급을 위해 국가예산으로 확보한 자금
3.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반납되는 대지급금
4.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상환되는 대부금

② “을”은 제1항에 의한 계좌로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자금이 입금되면 “을”이 대부 및 대지급한 금액에서 상계 처리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의 관리와 제2항에 의한 상계처리 세부방법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을”은 제2항에 의한 상계처리를 위하여 제1항에 의한 예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는 경우 예금청구서 및 통장없이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손실보전 대상자금) “손실보전 대상자금”이란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한 납부기한일까지 반납되지 않은 대지급금과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정한 납부기한일까지 상환되지 않은 대부금을 말한다.

제15조(손실보전 절차) ① “갑”은 제14조에 따른 손실보전 대상자금이 발생하면 익월 10일까지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을”은 통보받은 월의 20일까지 “갑”에게 손실보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손실보전금에 대하여 신청월 말일까지 “을”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갑”과 “을”은 대지급금, 대부금 및 한도초과보상금 업무와 관련하여 “갑”과 “을”,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금, 선주보험사 간의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정보공유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구축·운영한다.

제17조(대부금 등의 지급 전 확인사항) “을”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대부금과 제11조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지급지정일 직전 영업일 18시까지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시스템의 소유권) 제16조에 따라 구축한 시스템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 6 장 기 타

제19조(수수료) 이 협약에 따른 금융업무를 위해 발생하는 수수료는 “을”이 부담한다.

제20조(“갑”의 의제) 제7조제1항부터 제3항, 제11조1항부터 제3항에서의 “갑”은 해당지역 시장·군수로 본다.

제21조(분쟁의 해결) ① 협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협약 당사자는 분쟁처리절차수행기간 중에도 협약 상의 의무를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 (보고의무) “갑”은 이 협약에 따른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을”에게 정기 및 수시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사정 변경으로 인해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4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의 일방 당사자가 협약의 조건을 위배하여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지 이전에 이 협약에 따라 “갑”과 “을”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며 이 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
- ③ 협약의 해지는 계약체결 당시 양 당사자의 주소로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25조(협약의 종료) ① 이 협약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양 당사자가 협약 종료에 합의하면 종료한다.

- ② 협약의 종료에 따라 정산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이 협약이 적용된다.

제26조 (비밀유지) ① “을”은 업무수행상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사항을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비밀유지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준수되어야 한다.

- ③ 관련법령이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공개해야 할 경우에는 위 제1항,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갑”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협약서 보관) 본 협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은 각각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협약의 시행일은 2008년 6월 15일로 한다.

2008년 6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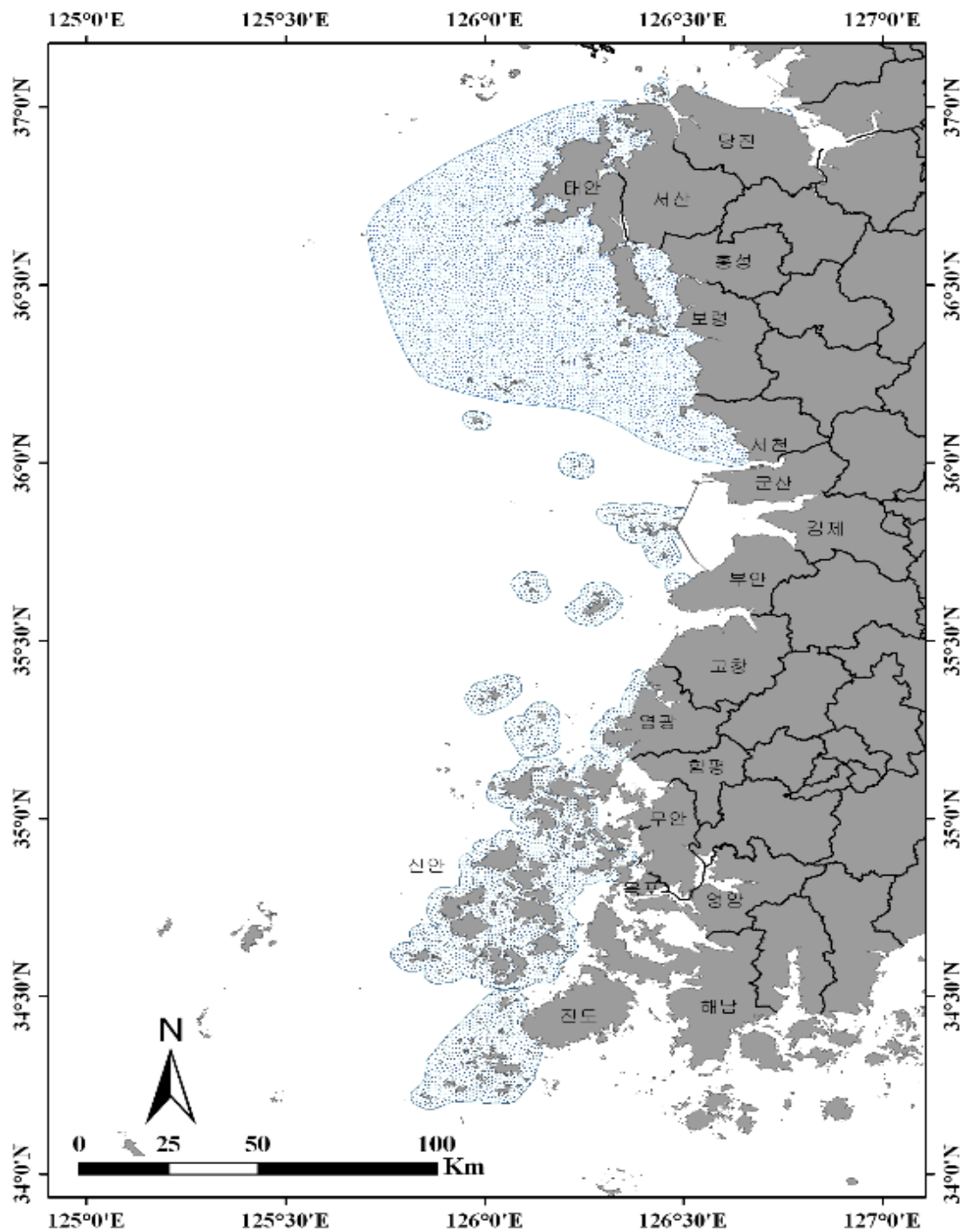
갑 : 국토해양부 피해보상지원단장

을 :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대표이사

<부록 11> 해양환경 복원지역 지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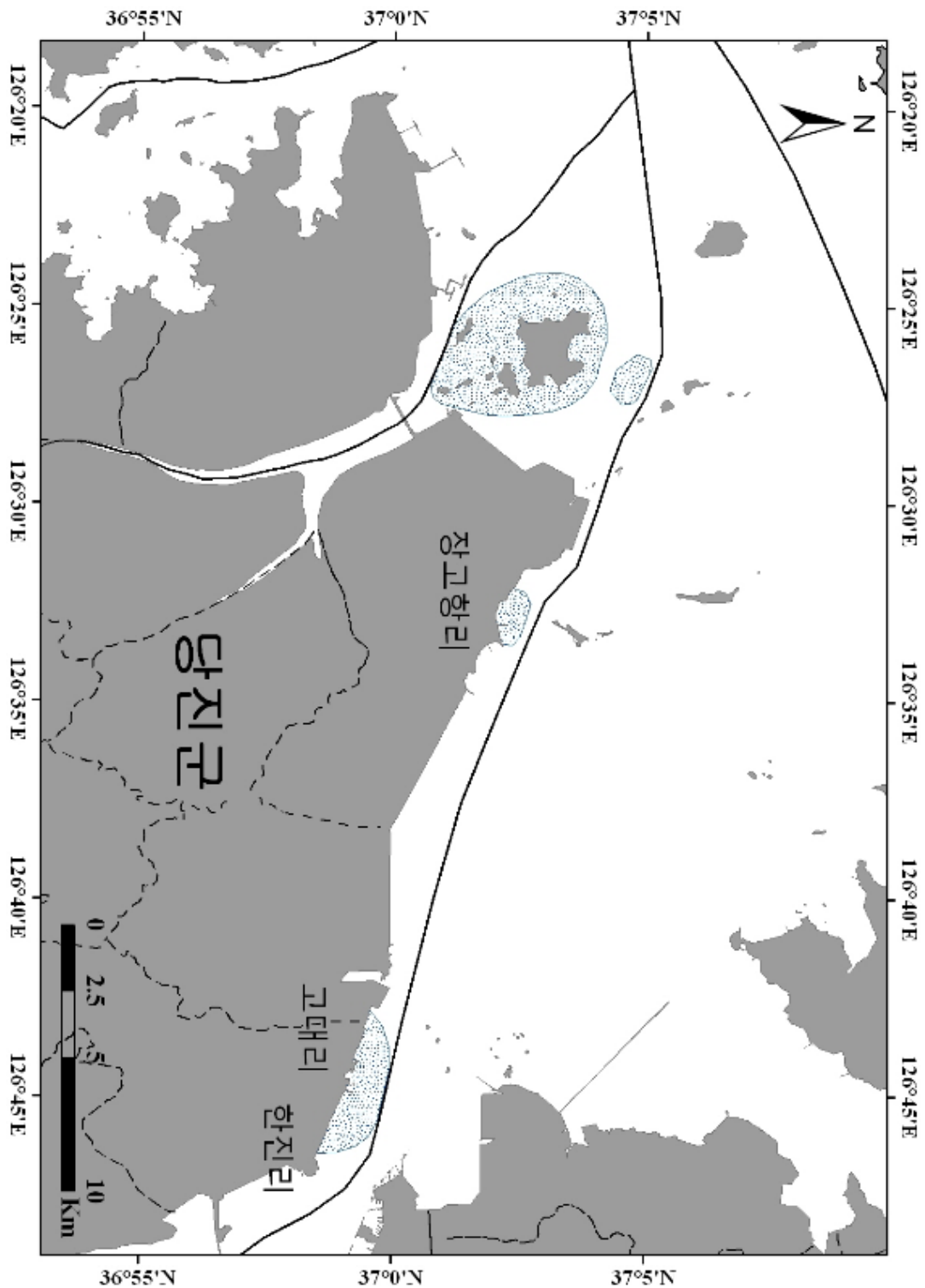
□ 지정지역 전체

- 해역면적 : 6473.7km²
- 작 업 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지도
-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 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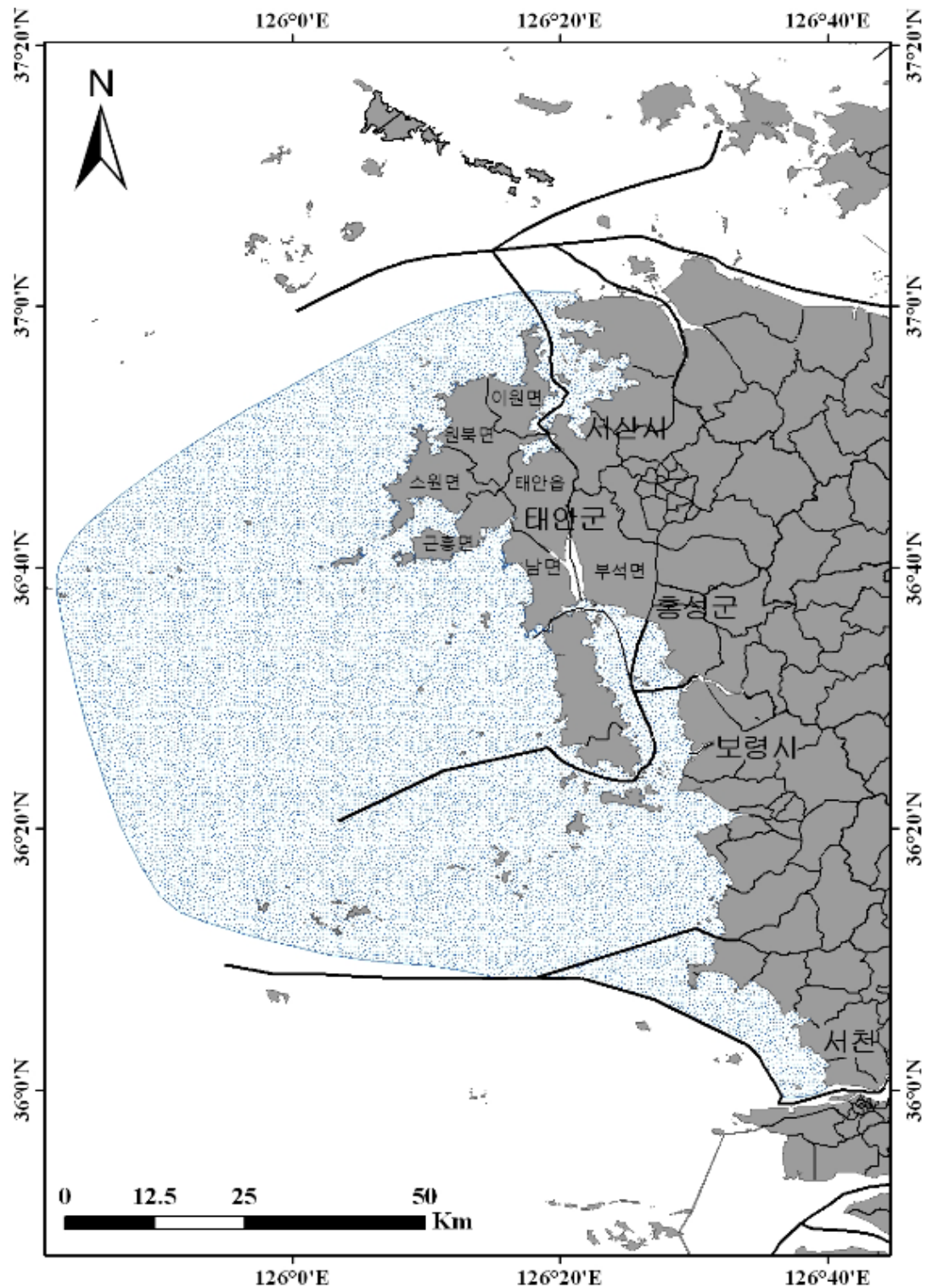
□ 당진지역

- 해역면적 : 30.94km²(30.940040)
- 작 업 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 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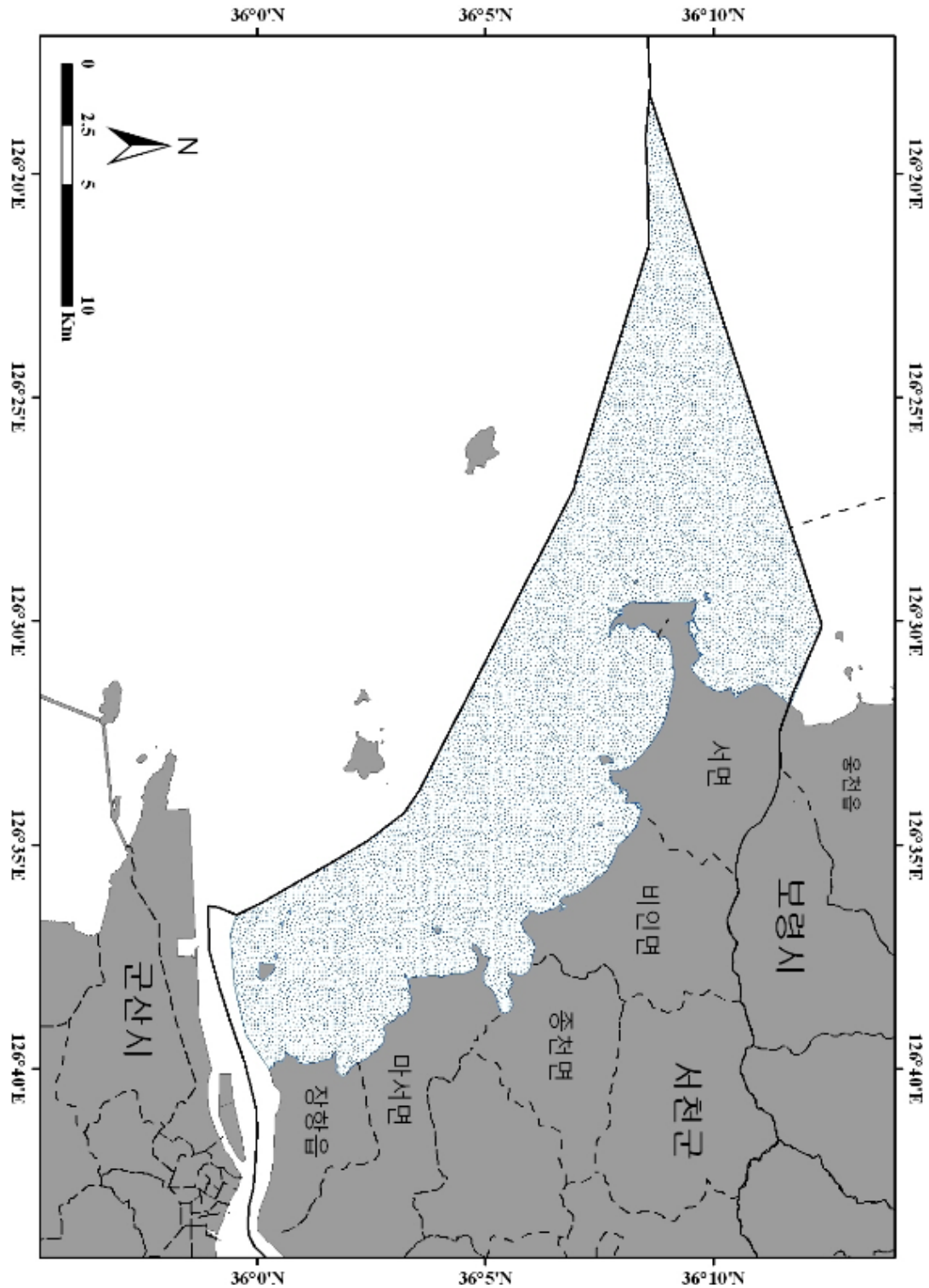
□ 서산·태안·홍성·보령지역

- 해역면적 : 4703.66km²(4703.661764)
- 작 업 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 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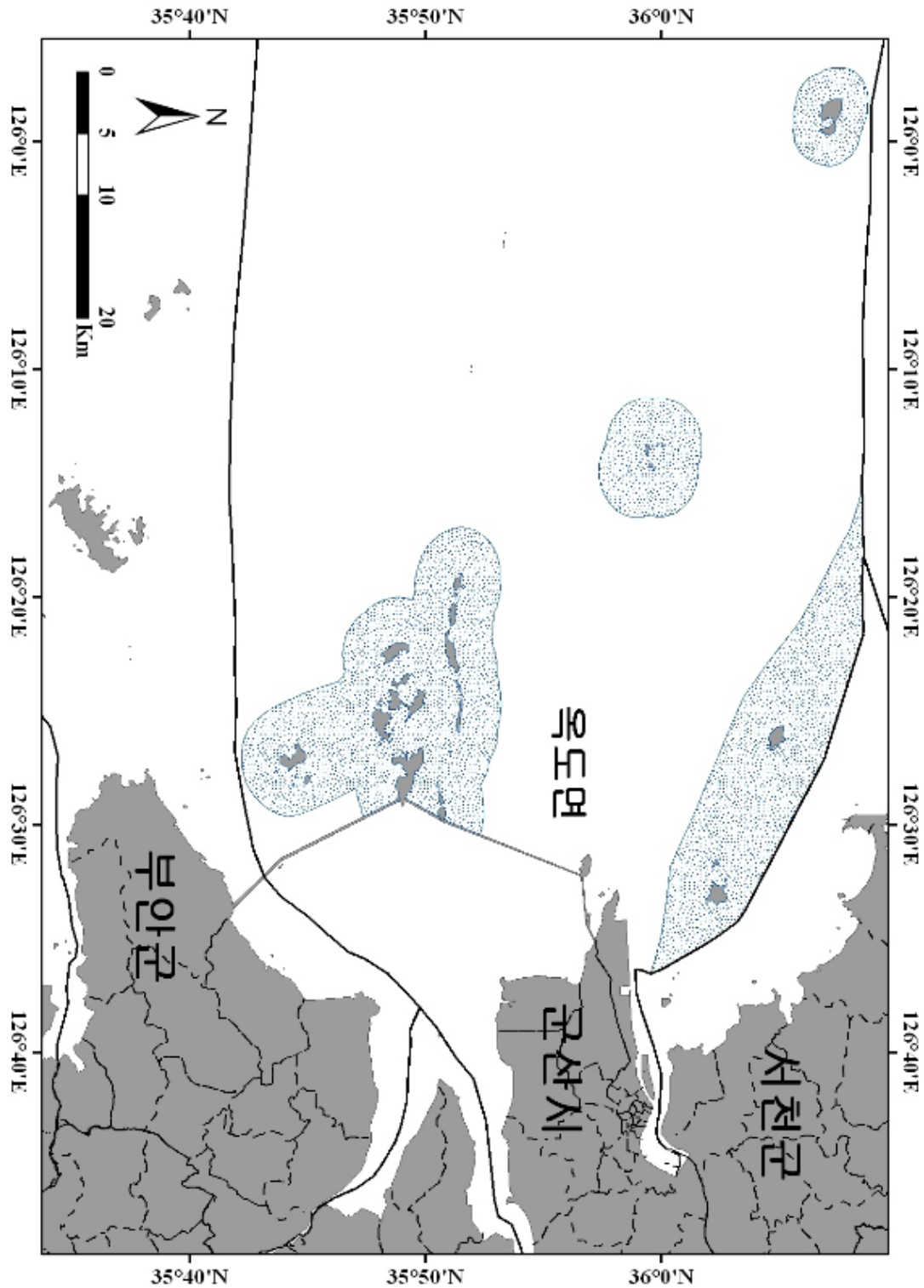
□ 서천지역

- 해역면적 : 234.05km²(234.054576)
- 작 업 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 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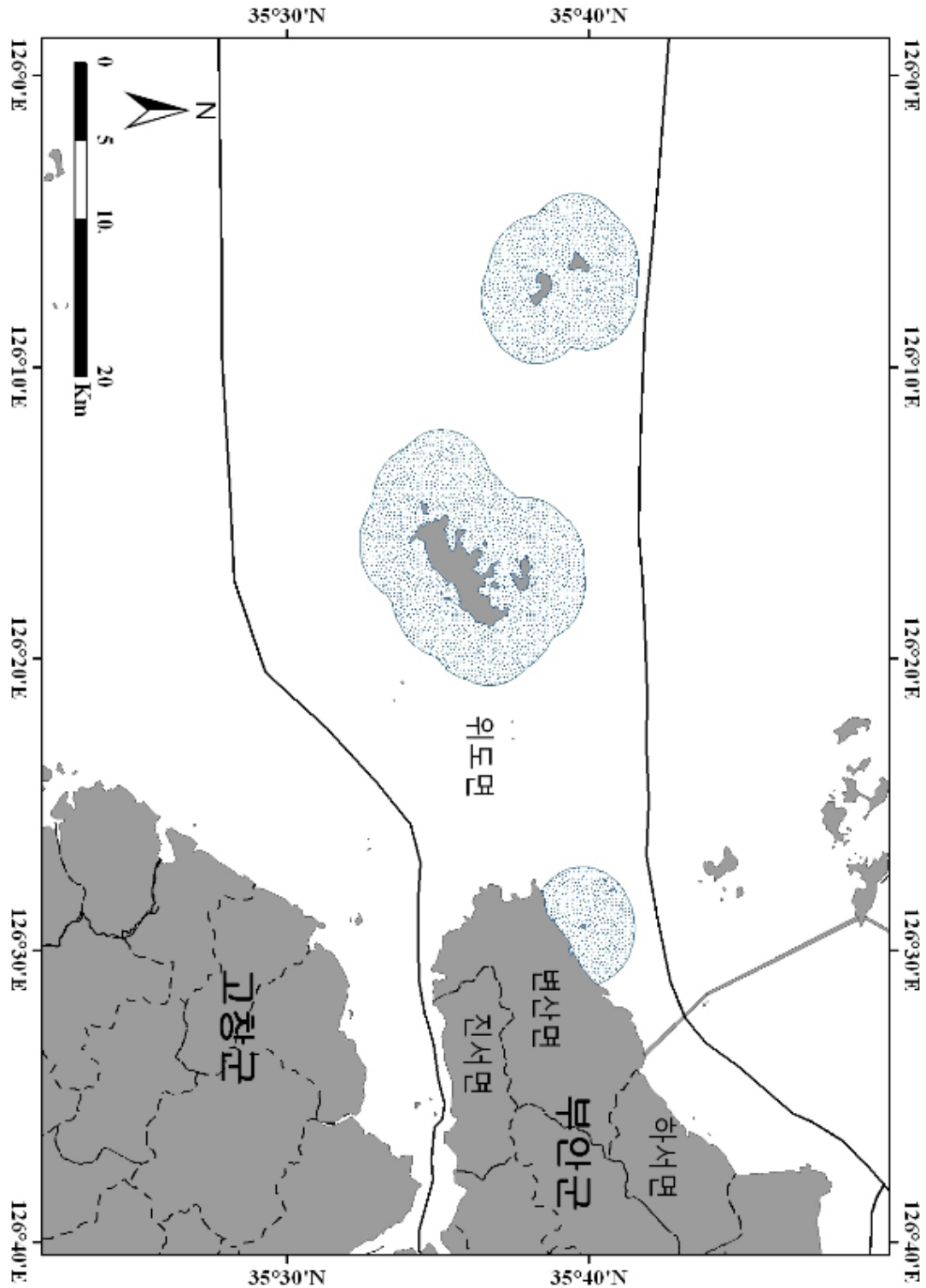
□ 군산지역

- 해역면적 : 482.95km²(482.953685)
- 작 업 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 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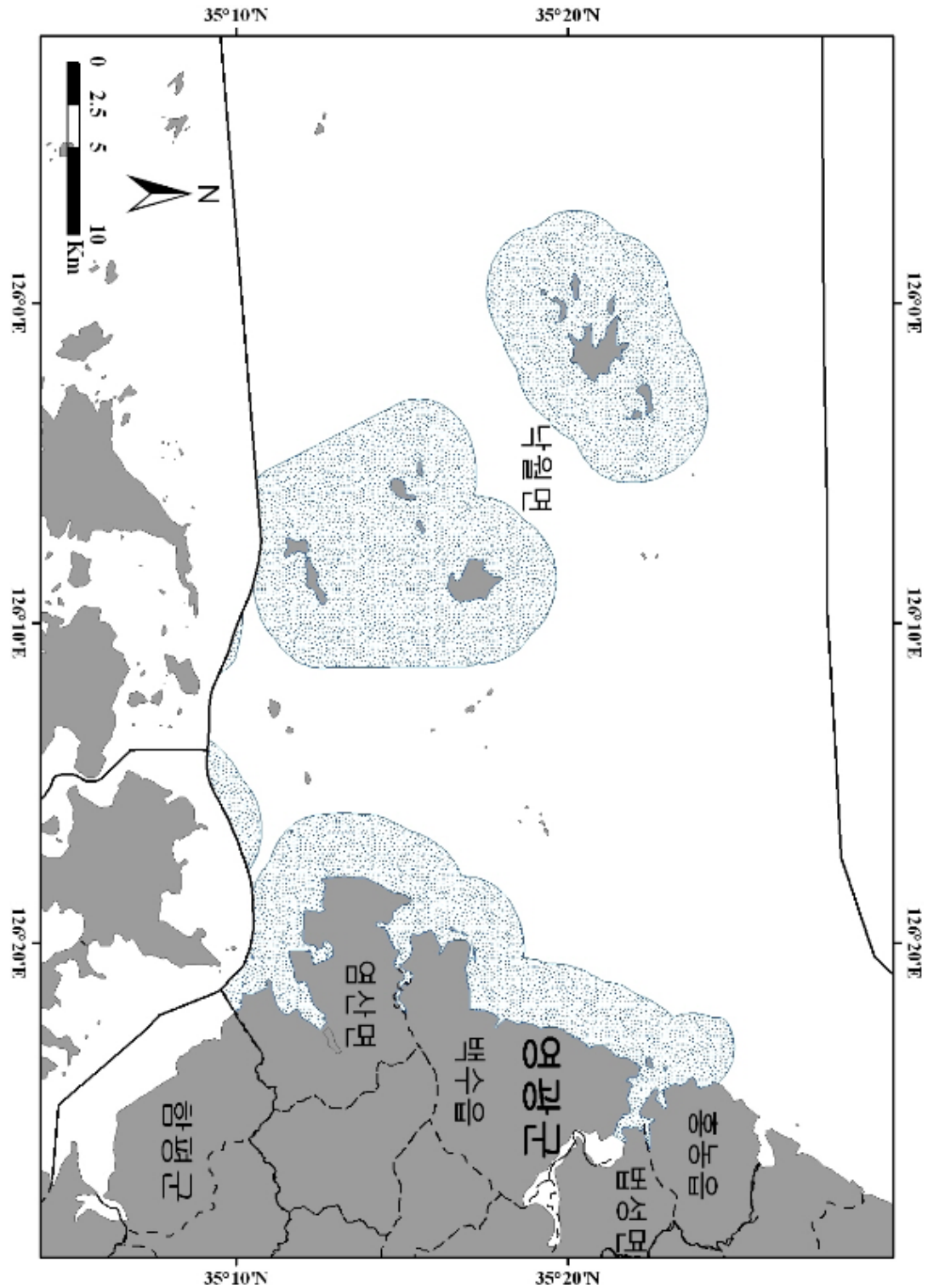
□ 부안지역

- 해역면적 : 195.47km²(195.474830)
- 작 업 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 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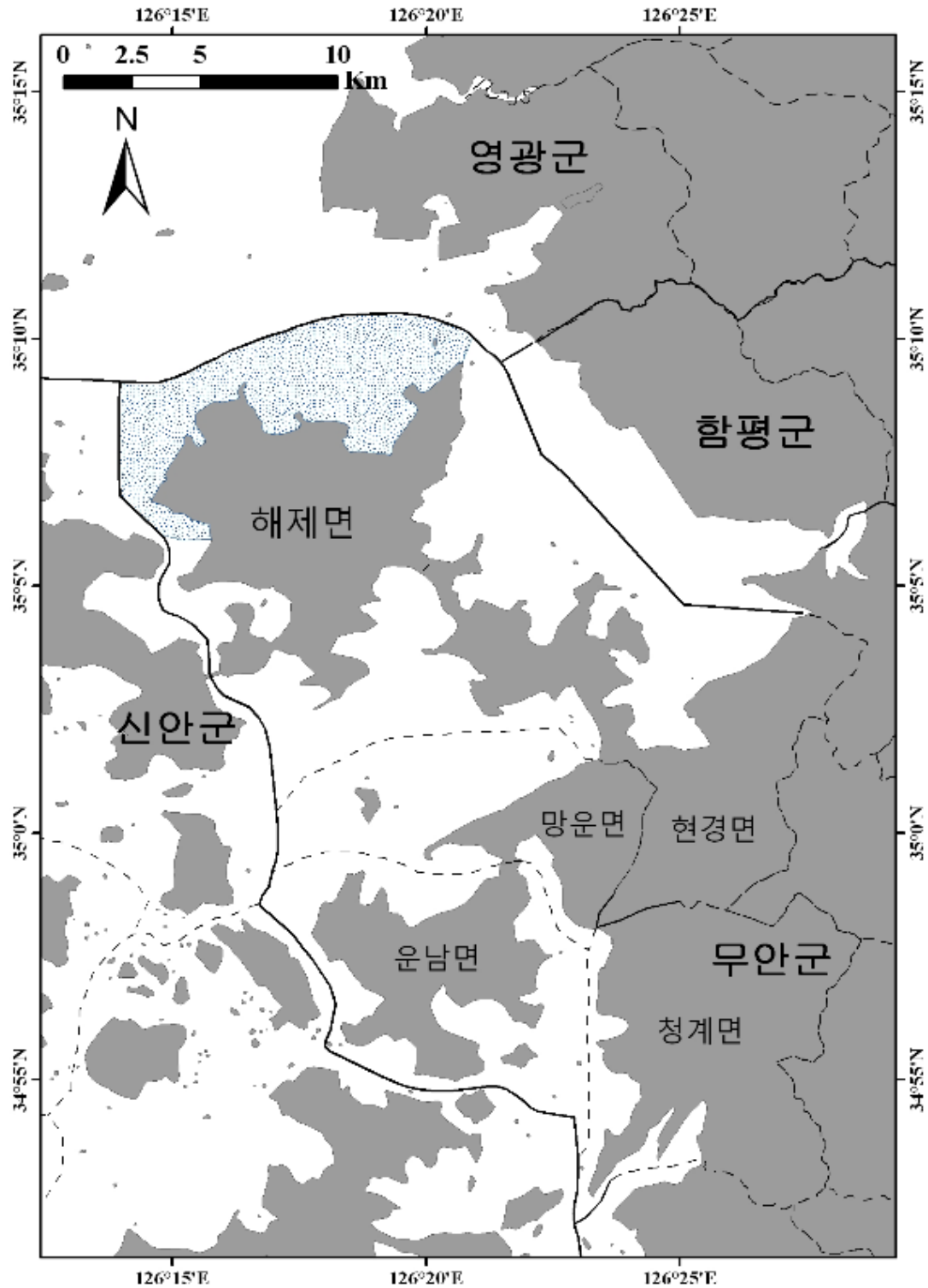
□ 영광지역

- 해역면적 : 387.88km²(387.875402)
- 작 업 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 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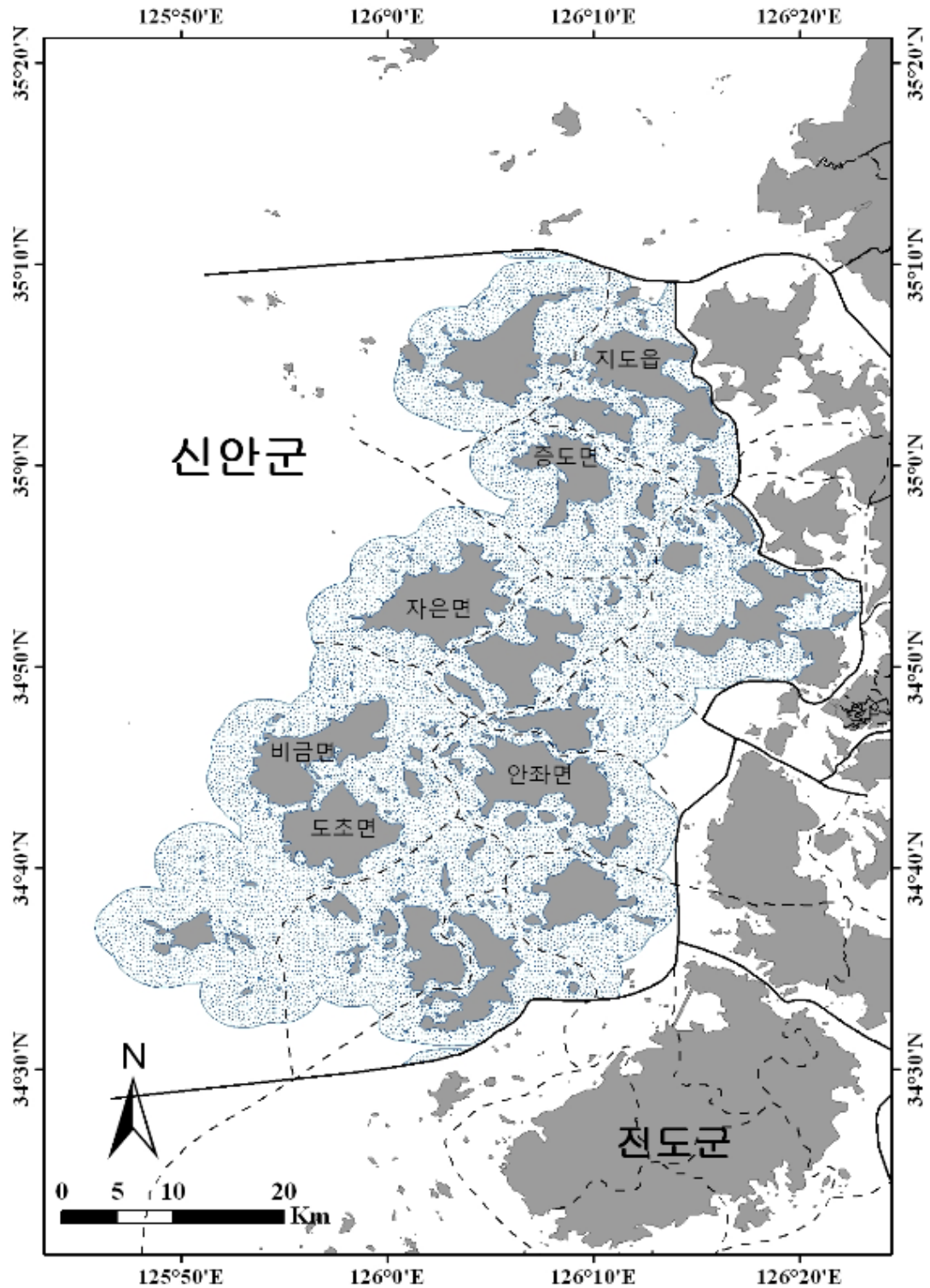
□ 무안지역

- 해역면적 : 36.91km²(36.914316)
- 작 업 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 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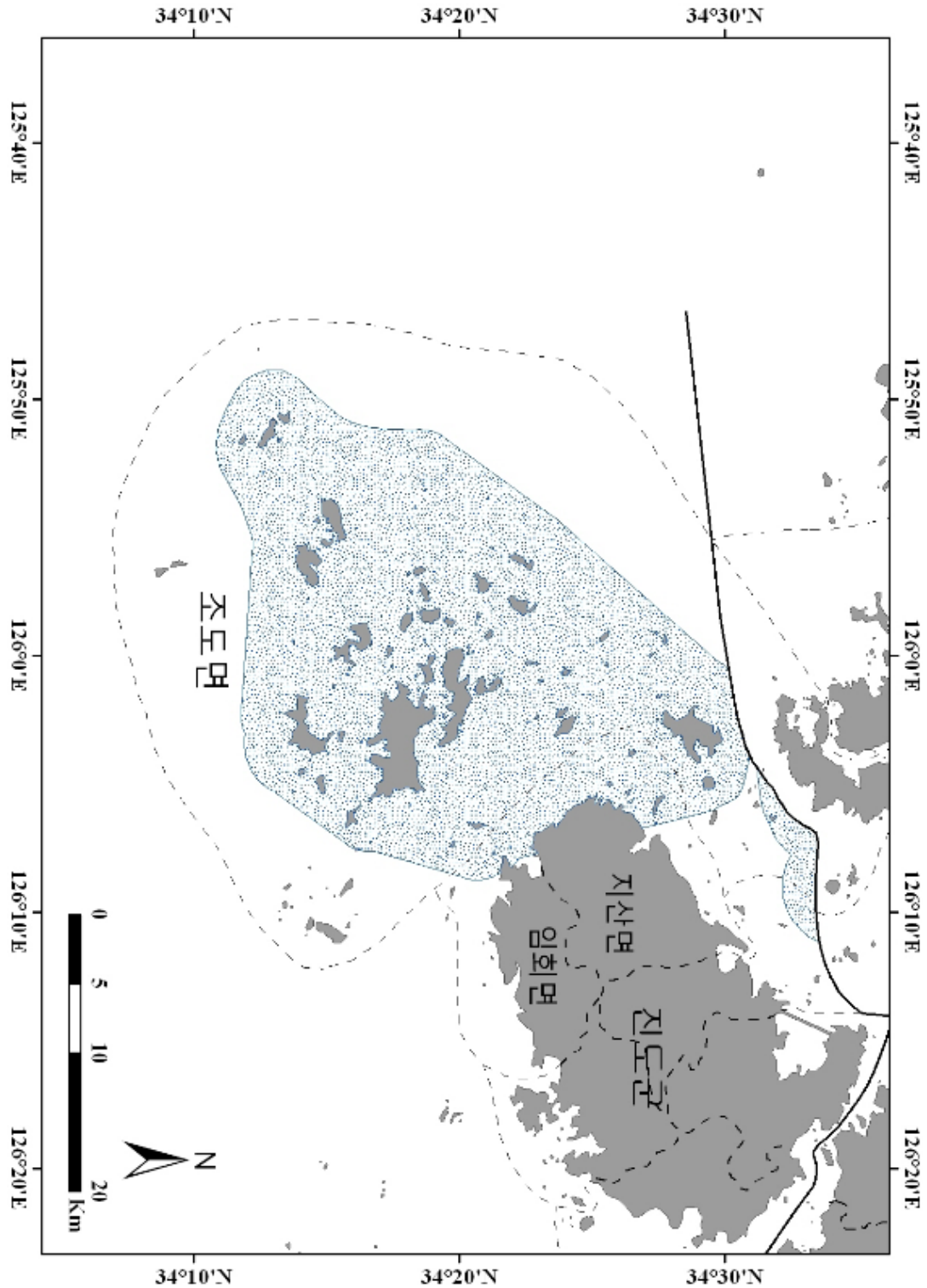
□ 신안지역

- 해역면적 : 498.58km^2 (498.579222)
- 작 업 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 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계산



□ 진도지역

- 해역면적 : 332.11km^2 (332.114047)
- 작 업 도 :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
- 면적 및 좌표 계산 : GIS 프로그램인 ArcGIS(ESRI사)를 이용·계산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백서

〈부록 1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상황일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사고수습 및 보상지원 상황 일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백서

▶ 사고수습 조동조치 단계('07. 12. 6 ~ 12. 10) ◀

12. 6.(목)

- 삼성크레인선단 인천항 출발(14:50)
-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만리포 북방 5마일 부근 정박(19:23)

12. 7.(금)

- 서해남중부 먼 바다 풍랑주의보 발효(03:00)
- 삼성 크레인선,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 원유 유출(07:06)
- 사고발생상황 접수(07:15/대산청 관제실)
- 사고발생상황 본부(상황실, 장·차관 등) 보고(07:35)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대산청 지방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청와대, 총리실, 국정원 등에 사고상황 보고·통보
- 해양경찰청 방제정, 사고현장 도착 및 방제작업 착수(09:05)
- 해양수산부장관 주재 긴급 대책회의 개최(09:10)
- 전국 가용 방제장비 대산항 집결지시
-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09:30/행정자치부)
- 인천청, 평택청 지방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10:00)
- 해양수산부장관 현장 시찰(10:50~12:00), 사고현장 대책회의(14:45)
- 관계 장관 회의 보고(총리 주재, 14:30)
- 오염현황 및 조치계획 기자 브리핑(14:30)
- IOPC펀드에 사고내용 통지(14:44)
- NOWPAP을 통한 한·중·일·러간 유류오염 공제체제 가동준비 문서발송(14:50)
-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보고 및 대책회의(장관주재, 20:30)
- 충남도, 종합상황실 설치, 비상근무 실시
- 전북도, 충남 태안군에 대책상황실 설치·운영
- 해양수산부 현장지원반 운영
- 유류오염사고 합동조사단 구성·운영(국립수산과학원)

12. 8.(토)

-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보고 및 대책회의(장관 주재, 09:05)
- 해양수산부장관, 헬기탑승 현장시찰 및 해안오염현장 확인(10:30~13:40)
- 환경 민감해역 보호를 위해 오일펜스 8.5km 설치
 - ※ 가로림만(양식장) 4.2km, 학암포(해수욕장) 1.5km, 근소만(양식장) 2km 등
-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32사단 병력(400명) 지원요청
- 연안유류 수거차량(탱크로리) 등 방제지원 세력 지원요청(16:20)
 - 요청기관 : 산자부, 석유 협회, 폐기물 처리협회 등
- P&I 보험사 및 ITOPF 관계자 사고현장(태안군 만리포) 방문,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사고처리방안 논의
- 재난사태 선포(1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 9.(일)

- 사고 유조선 파공부 응급봉쇄(전문구난업체 알파 잠수)
- 방제활동 지원 어촌지도사(30명) 일선 어촌계 투입
- 사고발생 뉴스를 듣고 달려온 자원봉사자 활동 개시(약 1,000여명)
- 태안지역 유류오염방제지침 수립·배포
- 한국해사감정·P&I SKULD·ITOPF 관계자 사고해역 방문
- 장관, 관계 장관회의 참석
- 피해지역 돕기 직원모금운동 전개
- 유류 수거선 세양호(950톤급) 태안항 정박지 도착(22:20)

【주요인사 방문】

* 총리, 중앙사고수습본부 방문	* 이영호 의원 중앙사고수습본부 방문
* 이규용 환경부장관 사고현장 방문	* 문원경 소방방재청장 사고현장 방문
* 이완구 충남지사 오염해역 순시	* 문석호 의원 해양경찰청 방제대책본부 방문
* 대선 후보(정동영, 이명박, 이인제) 사고 현장 방문	
* 전 충남지사 심대평 만리포 방문	

12.10.(월)

- 세양호(950톤급) 본선 접안 이적작업(08:06~18:30)
-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보고 및 대책회의(장관 주재, 08:30)

- 해양수산부차관, 해양방제활동지원 관계부처 차관회의 참석(14:00)
- 충남 태안 등 6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보고 및 대책회의(장관 주재, 22:00)

【주요 인사 방문】

- *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 방문
- *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선후보 방제대책본부 방문
- *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선후보 방제대책본부 및 천리포 방문

▶ 사고수습 확대 및 긴급 생계안정 지원 단계('07. 12. 11 ~ '08. 1. 31) ◀

12.11.(화)

- 목포청 지방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 충남도, 유류오염사고 현지대책반 편성·운영(태안지역)
- 충남 태안 등 6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 중앙사고수습본부 현장지원반 확대 구축·운영(서산수협)
 - 태안군 수협에 설치/차관 반장으로 4개팀 운영
- 재해대책 예비비 74억원 지원 의결(국무회의)
- 해양오염영향조사 예비조사 실시(한국해양연구원)
- 자원봉사자 1만명 돌파

【주요 인사 방문】

* 노무현 대통령 유류오염 방제현장 방문,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격려

12.12.(수)

-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보고 및 대책회의(장관 주재, 09:00)
- 해양환경기획관, 「유류오염사고대책 T/F회의」 참석(14:00/청와대)
- 해양수산부장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참석(18:00)
- 해양수산부 차관 일일 방제대책회의 주재(20:00/태안해양경찰서)

【주요 인사 방문】

* 김태호 경남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정우택 충북지사 방제현장 방문

* 박홍렬 육군참모총장, 김은기 공군 참모총장 방제현장 방문 군장병 위로

12.13.(목)

-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보고 및 대책회의(장관 주재, 09:10)
- 유조선 세양호(1,873kl), 유조선 동주호(1,819kl)에 잔존유 이적
- 풍랑예비특보 발효에 따른 재해예방 강화 지시
- 유류오염 보상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10:00~12:00)
- 해양오염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회의 개최(14:00~16:00)

- 해양수산부차관, 일일 방제대책회의 주재(20:00/태안해양경찰서)

【주요 인사 방문】

- * 한덕수 국무총리 신두리 해수욕장 시찰·격려 및 방제작업
- * 김우식 교육부총리 재난종합상황실 및 피해현장 방문
- * 이재정 통일부장관 학ampo 방제작업 * 김종민 문화관광부장관 신두리해수욕장 방문
- * 박성호 대전시장 학ampo 방제작업 * 김학기 동해시장 꾸지나무골 방제작업

12.14.(금)

- 해양수산부장관,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참석(07:30/중앙청사)
- 해양수산부 차관 2007 회계연도 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 관계차관회의 참석
-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보고 및 대책회의(장관 주재, 09:00)
- 해양수산부장관 방제대책본부(해경상황실) 방문 격려 및 방제작업 참여
- 신두리 보호구역 우선 방제조치 지시(10:00/해양생태과)
- 미국 연안경비대(태평양지부) 기동타격대 3명, 해양대기청 연구관 1명 사고현장 방문
- 스페인 국립 바르셀로나대학교 루링스 램코프 박사 등 4명 태안 사고현장 방문
- 크레인 부선 삼성1호 인천항 대기 묘박지로 이동조치

【주요 인사 방문】

- * 황민영 대통령 자문 농어촌특별대책위원장 방제현장 방문
- *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 피해현장(이원간척지구) 방문
- * 김석동 재정경제부차관 의항2리 방제작업
- * 이택순 경찰청장 만리포 방제작업

12.15.(토)

- 미국 방제전문가 4명 현장 방문
 - 모항부근 및 방제작업지역인 만리포 해수욕장
-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보고 및 대책회의(장관 주재, 14:00)
- 싱가포르 항공방제기(1기), 유처리제(15.5톤) 및 고압세척기(4종 42대), 연안 방제장비 김포공항 도착
- 중국지원 유흡착포 1차분(35톤) 도착(인천항/위동 카페리)
- UNDP·UNEP·EC 방제전문가(8명) 중앙사고수습본부 방문(18:10)

【주요 인사 방문】

- * 천태종 정산 총무원장 방문, 의연금 1,000만원 기탁
- *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대통령 후보 현장방문
- * 인천시 어윤덕 정무부시장 방문, 의연금 2,000만원 기탁
- * 청와대 수석비서관 3명, 해경과 학ampo 현장 방문
- * 안덕수 강화군수 꾸지나무골 방제작업

12.16.(일)

- 싱가포르 방제전문가 6명 도착(08:30) 및 방제항공기 도착(17:20)
- 중국 지원 유흡착포 20톤 추가 도착(10:30)
- 일본 해상보안청 방제전문가 도착(12:45)
- 해양수산부장관 2007회계연도 정부 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방안 발표(태안현장)
- ITOPF 및 보험사측 관계자와 오염피해현장 조사
- 국제방제전문단 오염및 방제 현장방문 및 각종 자문활동
- 해양수산부, 유류유출 피해보상 청구절차 설명회 개최(태안군 문예회관)
- 해양오염영향조사 긴급 실시 여부 및 조사기관 지정(책임연구기관: 한국 해양연구원) 서면심의(해양오염영향조사평가위원회 / 12.16~12.17)

【주요 인사 방문】

- * 한덕수 국무총리 해양경찰청 방제대책본부(태안해경서) 방문
- * 김장수 국방부장관 학ampo 현장 방문 및 방제작업
- * 한상률 국세청장, 태안군 방문 격려

12.17.(월)

- 타르 관련 전문가 회의(14:00/산자부/KORDI, 해경청,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피해지역 돕기 직원모금운동 전개
- 충남도, 서해안 유류사고 대책지원총괄본부 설치(1본부 2팀/태안지역)
- 사고 유조선 파공부 용접봉쇄 완료
- 가로림만·천수만지역 해역오염상황 조사(국제 방제전문가)
- 피해어민 손해배상 관계기관 대책회의(재경부 주관, 국제해사팀장 참석)
- 태안해역 광역정밀조사 실시(국립수산과학원, 12.17~12.22)

【주요 인사 방문】

- *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학ampo 현장 방문 및 방제작업
- * 허평환 국군 기무사령관 방제작업 군장병 격려
- * 통도사 정우 큰스님, 태안군 및 신두리 현장 방문

12.18.(화)

- 해양수산부장관, 사고수습관련 국무회의 참석(09:30)
- 싱가포르(EARL사) 항공기 해상오염군 탐색(09:30~11:00)
- 원활한 해안방제를 위한 기관별 임무역할 조정회의(12:18)
- 외국 오염방제전문가 회의 개최(15:00/태안교육청)
-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보고 및 대책회의(장관 주재, 16:45)
- 피해보상 관련 현지설명회(차관 주재, 태안군청, 15:00)
- 부산 삼성 1호 장안서 묘박지에서 거제도 출항(18:10)
- 사고 유조선 선체세척 후 대산항 현대 오일뱅크 원유부이 도착
 - 세관 신고 등 관련절차 완료 후, 원유 하역 개시(18:24)
- 차관보, 충남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대책에 관한 브리핑
- 해안방제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 환경부 · 지자체 · 방제조합 · 국립공원관리공단 참석, 협조방안 논의
- 해양조사선이용, 광역해양오염영향조사실시('07.12.18~23, 한국해양연구원)

【주요 인사 방문】

- *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원 및 구름포 현장 방문
- * 서승진 산림청장 방제대책본부(태안해경 상황실) 및 신두리 방제현장 방문 격려
- * 김인식 농촌진흥청장 태안군 방문 의연금 전달 및 만리포 현장 방문
- * 김영관 대전시의회의장 태안군 방문 의연품 전달
- * 김용우 장성군수(권한대행) 태안군 방문 의연품 전달

12.19.(수)

- 해양수산부장관, 태안지역일대 방제현장 방문격려 및 방제작업
- 사고선박 화물유 검량결과 발표(12,547kl)
-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제도개선 마련 T/F 1차 회의
- 일본지원 무상 유흡착재(10.1톤) 인도 · 인수(16:00/인천공항)

【주요 인사 방문】

- * 정동영, 이회창, 권영길, 문국현 대통령 후보 방제현장 방문
- * 김명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만리포 현장 방문 의연품 전달

12.20.(목)

-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보고 및 대책회의(장관 주재, 09:00)
- 피해보상을 위한 수협, 유류오염사고 보험 및 기금관계자 회의
- 허베이 스피리트호 접안하역 완료(15:12)

【주요 인사 방문】

- * 전윤철 감사원장 태안군청 상황실 및 신두리 방제현장 방문
- * 안광찬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만리포 방제작업
- * 임채진 검찰총장 태안군 및 방제현장 방문 의연품 전달
- * 오현섭 여수시장 태안군 방문

12.21.(금)

- EC/UN, USCG/NOAA 공동조사단 조사결과 합동설명회(10:30)
- 해수욕장 복원 전문가 회의(12:00, 한국해양연구원, EC/UN 대표단)
- “오염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관리” 관계기관 실무회의
- 어류 가두리 양식장 밀집지역(천수만, 가로림만) 예찰
- 이은 해양수산부 차관, 태안지역 방제현장 방문 자원봉사자 격려(13:00~16:00)
- 차관보, 충남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대책 인터뷰(18:00)

【주요 인사 방문】

- * 이민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천리포 방제현장 방문
- * 김성진 조달청장 파도리 방제현장 방문
- * 남인희 행복도시건설청장 태안군 방문
- * 박성중 서울 서초구청장, 이종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태안군 및 방제현장 방문

12.22.(토)

- 암반, 갯바위 등의 안전사고 우려지역은 작업 시 안전요원 배치 및 작업 전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주재, 방제상황 점검 및 대책 관계기관 회의 개최

-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해양생태계 복원연구』 용역을 위한 전문가회의 개최

【주요 인사 방문】

- * 신중대 안양시장 만리포 방제현장 방문 및 방제작업
- * 최승우 예산군수 의항리 방제현장 방문 및 방제작업

12.23.(일)

- 백사장 복원에 관한 공동조사 세부계획 수립
- 서해상 광역 오염실태 조사
- 충남 서천군 비인만 김 양식장 피해합동조사(KOMOS, ITOPE, 군산대, 정부 등)

【주요 인사 방문】

- * 임채정 국회의장 의항리 개목항 방제현장 방문 격려
- * 이완구 충남도지사 태안군청(상황실) 방문 관계자 격려
- *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원북면 마외지구 방제현장 방문 격려
- * 최양식 행정자치부 제1차관 의항2리 항포구 방제현장 방문 및 방제작업
- * 아시타페레아 주한 스리랑카 대사 꾸지나무골 방제현장 방문
- * 김시환 청양군수 태안군 방문 의연품 전달

12.24.(월)

- 사고해역에 대한 해수 및 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매일 1회)
-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20억원 충남지역 지원
- 허베이 스피리트호 가압류 결정
 - 해양오염방제조합 신청 → 서산지원 가압류 결정
- 국가해양 환경 측정망 정점을 이용한 광역오염 실태조사
 - 시험조사선 2척 투입, 6개 정점(고창연안~전주포) 조사

【주요 인사 방문】

- * 김영호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 천리포 방제현장 방문 격려

12.25.(화)

- 서산수협 유류피해대책위원회 회의
 - 피해보상 대책 및 보상증거자료 확보 등에 관한 설명 및 질의·답변
- 해양수산부장관, 헬기 탑승 방제현장 순시(14:20~17:00)

- 유류오염사고 관련 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 기준 검토 보고(충남도)

【주요 인사 방문】

- * 김대유 청와대 경제정책수석 해양경찰청 방제대책본부/방제현장/태안군 방문

12.26(수)

- 유류오염사고 관련 긴급생계안정자금 배분 부시장·부군수 회의(충남도)
-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생태계 복원연구 전문가 회의(해수부/수과원, 해양연구원 등)
- 유류오염 피해관련 대책회의(서산수협/유류오염 피해조합 대책위원장 8명)

【주요 인사 방문】

- * 강재섭 한나라당 총재, 구례포 방제현장 방문 및 방제작업
- * 오충일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만리포 방제현장 방문 및 방제작업
- * 김태랑 국회 사무총장 등 차관급 6명, 의항리 개목항 방제현장 방문
- * 최양식 행정자치부 제1차관, 파도리 방제현장 방문
- * 김상기 특전사령관 구름포 방제현장 방문 군장병 격려
- * 김동완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 태안군 및 방제현장 방문

12.27(목)

- 언론 보도 “영광군 안마도 인근해상 타르덩어리 발견 비상(21:10)
- 유류오염사고 국고보조금(긴급생계안정 지원) 교부요청(충남도→해양수산부)

【주요 인사 방문】

- * 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장 태안지역 방문
- * 김시환 청양군수 태안군 방문 의연품 전달

12.28(금)

- 차관보, 굴양식 피해지역 방문(10:30) 및 피해어민 현장지원반 방문(14:00)
- 피해보상 관련 질의 및 정부의 준비·지원 등 설명
-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 관련 민간대책위원회 창립선포 및 설명회개최(15:00)
- 차관보 주관, 신두리 무허가 굴양식장 철거와 관련 대책회의(16:00)

【주요 인사 방문】

- * 채광호 충남도 교육위원회 의장 태안군 방문 의연금 전달
- * 홍기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방문

12.29(토)

-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보고 및 대책회의(장관 주재, 10:30)
- 2007 회계연도 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해양수산부→충남도)
- 오염해안 복원을 위한 국제공조 정밀조사계획 교육 실시
 - 태안군 교육청 회의실/캐나다 전문팀 6명 외 관련 전문가 50여명
- 허베이 스피리트호 가압류 해제 및 출항(목적지 : 중국 청도항)

【주요 인사 방문】

- *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 만리포 방제현장 방문 의연금 전달

12.30(토)

-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보고 및 대책회의(장관 주재, 10:30)

【주요 인사 방문】

-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 방문 방제작업 격려 및 지역현안 파악

12.31(월)

- 신안군 관내 타르덩어리 발견 접수·전파
- 전남도, 무안군에 방제대책상황실 설치·운영
- 태안군 피해지역 현장설명회(파도리 회관)
 - 국제유류오염피해 배상청구절차 등 설명 등 설명
- 해양수산부 차관, 어업인간 간담회 개최(서산수협)
- 통합민주당 특별법안 발의(문석호 의원 외 110명)
- 태안 자원봉사자를 “올해의 환경인”으로 선정(한국환경기자클럽)
-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해양오염 현장조사 개시('07.12.31~'08.1.11)
 - 해안유류오염평가 실시 : 국내·외(캐나다 등)전문가 및 지역NGO 등이 참여

【주요 인사 방문】

- * 정당인(이회창, 심대평, 강삼재) 모항항 방제현장 방문

2008. 1. 1(화)

【주요 인사 방문】

- * 이완구 충남도지사, 의항리 방제현장 방문

2008. 1. 2(수)

-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해역 조업 재개
- 전라남도지사 방제현장 방문 방제작업 현장 방문 격려 및 방제작업 실시
- 태안군 피해지역 현장설명회(모항 어촌계회관)
 - 국제유류오염피해 배상청구절차 등 설명 등 설명
-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보고 및 대책회의(장관 주재, 16:00)
- 순수 자원봉사자 50만명 돌파

【주요 인사 방문】

- *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모항항 방제현장 방문 의연금 전달 및 방제작업

1. 3(목)

- 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검사원) 회의(안면수협)

【주요 인사 방문】

- * 문석호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태안군 방문

1. 4(금)

- 문석호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주관, 태안군 관내 어촌계장 회의(서산수협)

1. 5(토)

- 국토해양부/선주보험사 제1차 협력계약 체결
- 해양수산부 차관보, 전남지역 유류오염 상황 점검차 방문
- 태안군 피해지역 현장설명회(태안 남면수협)
 - 국제유류오염피해 배상제도 안내 및 피해신고 절차 등 설명

【주요 인사 방문】

- * 문원경 소방방재청장 방제현장 방문
- * 김용달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장 방제현장 방문

1. 6(일)

- 수산분야 피해조사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반 운영 강화(전남지역 및 태안 지역 수산지원반 편성·운영)

1. 7(월)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관련 주민지원 등 특별법안 의견조회
- 허베이 스피리트호 출항(중국청도)
- 총 방제인력 100만명 돌파

【주요 인사 방문】

- * 강현석 미국 환경위원 방문

1. 8(화)

- 해양경찰청, 기본적인(1차) 해상방제작업 완료
- 특별법 제정 법률안 공청회 개최(태안 문화예술회관)
- 전라남도, 예비비 1억 원 긴급방제 지원

【주요 인사 방문】

- *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방제현장 방문
- * 홍사순 국제라이온스협회 회장, 방제현장 방문
- * 황성대 건국대(충주) 부총장 방제현장 방문

1. 9(수)

- 충남도, 유류사고관련 정부 긴급생계안정자금 추가 지원 요청
- 유류오염해안 생태계 복원방안 최종 설명회 개최(해양수산부)

【주요 인사 방문】

- * 이상욱 제203특공여단장, 해안방제작업 군장병 격려 및 지휘
- * 이강종 서울 성북구의회 의장, 방제현장 방문
- * 김경훈 서울 구로구의회 의장, 방제현장 방문
- * 최종섭 충북 제천시의회 의장, 방제현장 방문

1. 10(목)

- 해양수산부장관, 전남 신안 타르피해현장 방문 피해어민 위로
- 유류오염 피해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영상물 촬영(KBS 6시 내고향)
- 제주 원유유출로 형성된 타르 발견
- 삼성크레인선/허베이스피리트호 해난사고 특별심판부 구성(인천해양안전심판원)

【주요 인사 방문】

- * 권오만 중앙신용협동조합회장, 태안군 방문 및 의연금 전달, 구례포 방제작업

1. 11(금)

- 태안군수, 충남도·군의원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방문, 특별법 제정 등 건의
- 해외 전문가(캐나다 등) 해안유류오염평가 결과 발표(태안해양경찰서)

【주요 인사 방문】

- *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의연금 전달 및 태안군 구룡포 방제작업
- * 남기명 법제처장, 의항해수욕장 방제현장 방문 및 방제작업
- * 노민기 노동부 차관 파도리 방제현장 방문 및 방제작업
- * 현동훈 서울시 서대문구청장, 태안군 개목항 방제현장 방문 및 방제작업
- *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태안군 방제현장 방문

1. 12(토)

-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보고 및 대책회의(장관 주재, 10:30)
- 기상특보(풍랑주의보) 발효에 따른 타르확산 예찰활동 강화 지시(12:55)
- 해양오염영향조사 관련, 캐나다 전문가와 기자 간담회 실시(해양수산부)

【주요 인사 방문】

- * 박성호 대전광역시장, 방제현장 방문
- * 신영섭 서울 마포구청장, 방제현장 방문

1. 14(월)

-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보고 및 대책회의(장관 주재, 10:30)
- 해양수산부 피해조사단 현지설명(안면도농협)
- 충청도, 유류오염사고 관련 긴급생계안정자금 배분 및 집행절차 협의회 개최

- 월럼 오스터빈 IOPC-Fund 사무국장, 주민 방제인건비 지급 등 협의차 방한

【주요 인사 방문】

- * 김학원 한나라당 태안유류유출대책 특별위원장 태안군 및 방제현장 방문
- * 심대평 의원, 문석호 의원, 태안군 및 방제현장 방문
- * 변웅전 전국회의원 태안군 및 방제현장 방문

1. 15(화)

- 월럼 오스터빈 IOPC-Fund 사무국장, 태안 방제현장 방문
- 전남도, 어업인 생계대책 등 특별지원 건의
- 전주(허베이 스피리트호)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서산지원)

1. 16(수)

- 전남도, 어업인 생계대책 등 특별지원 건의
- 전남 타르오염지역 현장간담회(전남지역 수산지원반/전남 신안군 지도읍)
- 전남 신안군 안좌면 등 김 양식장 피해 합동조사(KOMOS, ITOPI, 정부 등)

【주요 인사 방문】

- * 이규용 환경부장관 태안군 방제현장 방문
- * 전상우 특허청장, 태안군 방문 생필품(3.5억원 상당) 전달

1. 17(수)

- 태안군 의회 의장(이용희), 한나라당 방문 특별법 제정 건의
- 월럼 오스터빈 IOPC-Fund 사무국장 사무국장 일행 해양수산부 방문

1. 18(금)

- 전남지역 3개 군(신안군, 무안군, 영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해양수산부장관, 피해주민 지원 긴급생계지원금 관련 기자간담회
- 충남도, 유류오염사고 관련 긴급생계안정자금 배정 결정 시장·군수 합의
- 태안 유류피해투쟁위원회,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정부 촉구대회 개최

【주요 인사 방문】

- *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신진도 현장 방문
- * 외신기자클럽 35명 태안군 방제현장 방문

1. 19(토)

- 해양수산부장관, 태안해양경찰서 방제현황 보고 청취
- 전남 신안군 증도면 등 김양식장 피해 합동조사(KOMOS, ITOPI, 정부 등)

【주요 인사 방문】

-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신진도 현장 방문
- * 전여옥 한나라당 국회의원 태안 방문
- * 외신기자클럽 35명 태안군 방제현장 방문

1. 20(일)

- 경기도 안산시 풍도 앞바다에 타르덩어리 발견

【주요 인사 방문】

- *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태안 방제현장 방문

1. 21(월)

- 2007회계연도 국고보조금(긴급생계안정 지원) 송금(충남도 → 6개 시·군)
- 한나라당 특별법안 발의(김학원 의원 외 129명)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등 형사소송 제기(대전지방법원 제1부 제1회 합의)
 - 과실선박과괴죄, 해양오염방지법위반 등 혐의
- 사고발생 77일 만에 자원봉사자 100만 명 돌파

1. 22(화)

- 삼성중공업측 사고발생 47일 만에 대국민 사과문 발표
- 기상악화(대설특보)로 방제작업 일시 중단(1. 22~1. 23)

【주요 인사 방문】

- * 성대경 KBS연수원장 태안군 방문 성금 1,800만 원 전달 및 백리포 방제작업

1. 23(수)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태안군 주민 서울역 집회

【주요 인사 방문】

- * 조지프 필 미 8군 사령관 태안 방제현장 방문

1. 24(목)

- 민주노동당 특별법안 발의(강기갑 의원 외 9명)
- 강설 등 기상악화로 중단되었던 방제작업 재개
-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 개소(서울)

1. 25(금)

- 유류피해지역 생계안정 자금 추가지원 관계차관회의
- 전남도, 국고보조금(긴급 생계안정자금) 조기배정 요청

【주요 인사 방문】

- * 황우려 한나라당 국회의원 태안지역 방문 의연금 전달

1. 26(토)

- 해양수산부장관, 전남지역 타르유입현장(무안군 해제면 도리포항) 및 목포해양경찰서 방문 자원봉사자 및 방제관계자 격려

1. 27(일)

【주요 인사 방문】

- *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당원 등 6,500명),태안군 모항항 등 12개 지역 방제활동

1. 28(월)

- 전남도, 국고보조금(긴급 생계안정지원자금) 지급기준 대책회의 개최
- 전남지역 국고보조금(긴급 생계안정지원자금) 168억 원 배정

1. 29(화)

- 설 연휴(2. 6~10, 5일간) 방제작업 일시중단 결정 및 홍보
- 유류오염사고 국고보조금(2차 긴급생계안정 지원) 교부 요청(전남도, 충남도→해양수산부)
- 유류오염 피해보상관련 “질의답변집” 발간 배포
- 행정자치부/자원봉사센터 주관 서해안 살리기 간담회 개최(태안군청 회의실)
- 자유선진당 특별법안 발의(변웅전 의원 외 32명)

1. 31(목)

- 2008회계연도 긴급생계안정자금(국고보조금) 교부(해양수산부→충남도, 전남도)
- 2008회계연도 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 국고보조금 송금(전남도→3개 군)

【주요 인사 방문】

* 임상규 농림부장관, 태안지역 방문 의연금 전달

▶ **정부지원 기반 구축 및 사고수습 안정화 단계('08. 2. 1 ~ '08. 12. 31)** ◀

2. 1(금)

- 2008회계연도 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 국고보조금 송금(충남도→6개 시·군)

2. 2(토)

【주요 인사 방문】

- * 한상률 국세청장, 신두리 워크숍 참석
- * 김관용 경부도지사 의항리 방제현장 방문

2. 4(월)

- 전주(허베이 스피리트호)책임제한절차 제1차 심리(대전지법 서산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청, 서해안 수산물 안전성 발표

2. 5(화)

- 특별법안 관계부처 조정회의

2. 13(수)

- 태안군 피해대책위 국회에서 시위

【주요 인사 방문】

- * 이완구 충남지사, 바람재비 방제현장 순시
- *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 태안군 개목항 두영재 방제현장 방문

2. 15(금)

- 전남도, 타르피해 특별재난지역(3개 군)에 재해구호성금 송금

【주요 인사 방문】

- *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직원 100명), 태안군 모항항 방제작업
- *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회원 50명),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태안군 모항항 방제작업

2. 16(토)

- 충남도서 지역 유류오염영향조사 실시('08.2.16~24)

2. 18(월)

- 특별법안 공청회 및 법률심사 소위원회 개최(농림해양수산위원회)

【주요 인사 방문】

- *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 태안군 개목항 두멍재 방제현장 방문 및 방제작업

2. 19(화)

- 특별법안 국회 상임위(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결

2. 20(수)

- 굴 양식장 폐기물 적정처리방안 협의회(환경부 별관 중회의실)

2. 21(목)

-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보고 및 대책회의(장관 주재, 10:30)
- 제주 원유유출로 형성된 타르 발견
- 자원봉사자 100만 명 참여 기념행사 개최(만리포 흥익대 연수원)

2. 22(금)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안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

2. 26(화)

- 국고보조금(긴급생계안정 지원) 김양식업 지급기준 추가 협의

2. 29(금)

- (가칭) 태안군 해상유류피해대책 연합회 발기인 회의(농업기술센터)
- 삼성중공업, 피해지역 발전기금 1천억원 출연 표명

【주요 인사 방문】

- * 이민길 대법원 기획조정심의관, 태안지역 방문 의연금 전달

3. 1(토)

-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내정자, 국토해양부/태안군 간부 토론회 참석

【주요 인사 방문】

* 김재현 서울시 강서구청장, 태안군 파도리 방제현장 방문 및 방제작업

3. 2(일)

-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내정자(직원 75명), 백리포 해수욕장 방제작업

3. 3(월)

- 전라해안 및 도서지역 유류오염영향조사 실시('08. 3. 3~11)

3. 5(수)

- 국고보조금(긴급생계안정 지원) 무신고 맨손어업 지급기준 추가 협의

3. 6(목)

-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보상지원단 구성·운영 개시

【주요 인사 방문】

* 한승수 국무총리, 태안해양경찰서 방문 및 태안군 소원면 방제작업

3. 11(화)

- IOPC-Fund 회의 제40차 집행이사회 참석(3. 11~3. 14 / 모나코)
 - 사고 및 피해상황 설명, 민사책임협약 및 국기제금협약에 따른 보상 개시(한도 3,216억원) 설명·채택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주요 인사 방문】

* 조병인 경기도교육감 구름포 방제현장 방문 및 방제작업

3. 12(수)

- 행정안전부 주관 태안수산물 소비촉진행사 개최(중앙청사, 과천청사 등)

【주요 인사 방문】

* 최성룡 소방방재청장, 태안군 구름포 방제현장 방문 및 방제작업

3. 14(금)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법률 제8898호) 제정 · 공포

3. 15(토)

- 시범연수원생 680명, 구름포 및 개목항 일대 방제작업
- 국토해양부 제2차관, 사고 100일 방제현장 방문 방제관계자 자원봉사자 격려

3. 18(화)

- 한국해운조합/태안군 근흥면 안흥 어촌계 “어촌사랑 자매결연” 체결

3. 21(금)

- 특별법시행령안 관계부처 협의(3. 21~3. 31)

3. 22(토)

- 환경부 주관, “환경행정 선진화 워크숍” 개최 및 구름포 방제작업(3.22~3.23)
- 태안관내 해저타르 실태조사 실시(관계기관 및 현지주민 공동조사 실시)

3. 28(금)

- 태안군 비수산분야 통합피해보상대책위원회 개소

3. 29(토)

- 전남 피해주민(무안, 신안, 영광군 약 1,500명), 삼성중공업 무한배상 촉구 집회

4. 1(화)

- 태안군 선주협회 소속 주민, 정부 항의방문
- 주민 약 300명, 국토해양부, 농수산부 방문, 출어자제에 따른 보상 요구 등

4. 2(수)

-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08.4.2~4.22)

4. 4(금)

- 태안지역 조업재개결정을 위한 해저환경조사(12개소) 및 시험조업 실시

4. 7(월)

- 태안군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창립

4. 8(화)

-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보상지원단 구성·운영방안 확정

4. 10(목)

- HS센터 초청, 비수산분야 보상관련 설명회

4. 12(토)

【주요 인사 방문】

- * 김황식 대법원 대법관, 태안군 원북면 양쟁이 방제현장 방문 및 방제작업

4. 15(화)

- 특별법 시행령(안) 공청회(4.15~16/태안, 보령, 무안)

【주요 인사 방문】

- * 변웅전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당선자 등 17명, 태안군청 및 방제현장 방문

4. 16(수)

- 한국해양연구원/태안군 가의도리 어촌계 “어촌사랑 자매결연” 체결

【주요 인사 방문】

- *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 차관, 태안군 피해지역 순시

4. 18(수)

- 태안지역 조업재개결정을 위한 해저환경조사 및 시험조업 결과 발표
- 유류오염구제자금을 활용한 방제업체 1차 대출 지원(16개사, 16억원)
 - '08.1~2월분 방제비용 중 주민인건비 분리청구 조건

4. 22(화)

- 러시아 사할린 거주 귀국동포(380 여명) 의항리 해수욕장 방제작업 동참

【주요 인사 방문】

- * 재외동포 기자단(63명), 태안군 방제현장 방문(한국기자협회)

4. 24(목)

【주요 인사 방문】

- *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태안군청 방문

4. 25(금)

- 생태계 복원 전문가회의 개최(16:00~18:00/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 환경부, 한국해양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참석, 생태계복원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전문가 협의회 구성, 특별해양환경복원 지역 지정·고시 등 논의

4. 29(화)

- 국제기금 및 선주보험사측과 주민 방제인건비 중간사정, 우선 지급방안 협의
- 특별법 시행령안 법제처 협의

【주요 인사 방문】

- * 김옥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모항항 방제현장 방문
- * 이용삼 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태안군청 방문

5. 6(화)

- 특별법시행령안 법제처 협의
- 태안군 선주협회 소속 주민, 삼성중공업 본사 항의방문

5. 10(토)

- 유류오염사고 전문가회의 개최(14:00 / 한국해양수산개발진흥원)
 - 국토해양부,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광주과학기술원 등 참석,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고시, 동 지역 생태계 조사 및 연구·모니터링·복원계획 등 논의

【주요 인사 방문】

*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태안군 지역 방제현장 군장병 격려 및 타르방제작업 참여

5. 14(수)

- 국제기금 및 선주보험사측과 선주책임제한절차, 정보공유 등 협의

5. 15(목)

- 특별법시행령안 법제처 심사요청

5. 19(월)

- HS센터 비수산분야 현지 조사사무소(관광분야피해조사사무소) 개소
- 삼성출연금 관련 장관님 보고

5. 22(목)

- 특별법시행령안 차관회의 상정·의결
- 특별대책위원회 운영규정 관계부처 협의

5. 27(화)

- 특별법시행령안 국무회의 상정·의결
- 제2회 서울국제해사포럼 개최, 피해보상방안 논의(5. 27~28)

5. 28(수)

- 태안군 선주연합회 해상시위 개최
 - 당초 수백척 규모 계획이었으나 기상악화로 수십척 이동 후 곧바로 해산
- 태안군 대책연합회, 삼성측의 무한책임 촉구 집회 개최(5. 28~5. 29)
 - 이견희 삼성회장 자택 앞, 삼성본사 앞 단식투쟁, 대산 삼성토탈(계열사) 앞 집회(1,500명)
- 특별법 관련 유류오염사고피해지역 지정검토 보고
 - 피해지역 지정 신청지역 : 전북도 3개 시·군(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 검토의견 유류피해 및 방제현황 등을 고려 군산시와 부안군 2개 지역을 추가지정 필요

- 피해지역 해유류오염 피해지역 하계수욕장 개장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16:00~18:00 / 국토해양부)
 - 해수욕장 개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및 개장 관련 추진 사항·계획 등 논의, 6월말 또는 7월초 개장을 목표로 기관별 조치사항 추진 협의

5. 29(목)

-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위원회 대통령 면담 요청 및 공개질의서 접수
 - 정부가 피해조사 실시, 삼성의 무한책임 등 요구

5. 30(금)

- 삼성중공업 등 상대 태안주민(5,392명)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 유류오염 피해지역 하계 해수욕장 개장을 위한 관계기관 조치사항 통보

6. 2(월)

- 여름휴가 태안에서 보내기 캠페인 실시
- 피해지역 주민 생계지원을 위한 특별공공근로사업 추진 결정(기획재정부 등)

6. 3(화)

- 방제인건비 대지급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6. 5(목)

- 태안군 비수산분야 비상대책위, 이재균 국토해양부 제2차관 면담
 - 국도확장, 방제인건비 조기지급 등 요구

6. 9(월)

- 유류오염피해지역 해수욕장 관능조사 실시(1차/6.9~6. 11)

6. 13(일)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시행령 제정·공포(대통령령 제20821호)
- 국토해양부/수협중앙회간 보상지원관련 금융업무대행 협약 체결

6. 15(일)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시행령 시행
- 유류오염 피해지역 해수욕장 개장 가이드라인 수립

6. 17(화)

- 국제기금 및 선주보험사측과 방제인건비 대지급 및 정보공유방안 협의

6. 18(수)

- 대부기준 마련 등 피해조사 지원방안 용역 착수(KMI, 국민연금연구원)
- 유류오염 피해지역 하계 해수욕장 개장 관련 현지 공청회 개최(14:00/태안군)
 - 우리부, 충남도, 태안군, 국립수산물과학원, 한국해양연구원, 환경단체, 지역 주민(번영회) 등 참석

6. 19(목)

- 제1회 특별대책위원회 개최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추가지정(전북 군산, 부안) 및 정부 손해 배·보상 채권 후순위 결정

6. 23(월)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등 형사소송 사건선고(서산지원)
 - 서산지원(예인선단측 유죄, 유조선측 무죄 선고)
- IOPC-Fund 회의 제41차 집행이사회 참석(6.23~6.27/영국 런던)
 - 청부채권 후순위(SLQ)선언, '08.1~2월분 방제인건비 중간사정 완료기한 협의 등
- 유류오염피해지역 해수욕장 관능조사 실시(2차)

6. 25(수)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등 형사소송 사건 피고인(삼성중공업)측 항소
- 유류오염 피해지역 해수욕장 관능조사 실시(3차)

6. 26(목)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등 형사소송 사건 검찰측 항소

- HS 유류오염사고 손해 배·보상액 정부대지급금(방제비, 457백만원) 최초 지급
- 유류오염 피해지역 생태계복원 프로그램 현지 토론회(16:00/태안 선셋리조트)

6. 27(금)

-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 개장 선포

【주요 인사 방문】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 개장행사 참석

7. 1(화)

- 삼성중공업 등 상대 태안주민(5,392명) 손해배상청구 소 변론기일 참석
 - 국토해양부 소관사항에 대한 준비서면(답변서) 제출
- 국토해양부/선주보험사 제2차 협력계약 체결
- 전광판공익광고 문자 표출(10초) : 서해안에서 여름휴가 보내기(7.1~7.31)
 - ‘올 여름 휴가는 꿈과 낭만, 즐거운 축제가 있는 충남 태안 등 서해안으로!’ 등 2편

7. 2(수)

- 정부/HS센터 제1차 정례회의(개최주기, 의제 등 정례회의 운영방안 협의)
- 유류오염구제자금을 활용한 방제업체 2차 대출 지원(16개사, 13.2억원)
- '07.12월분 방제비용 수령 시 우선상환 조건

7. 7(월)

- 연안지역 기본적인 해안방제 완료(해양경찰청/지자체)
- 유류오염피해지역 해수욕장 관능조사 실시(4차)

7. 9(수)

-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10:00/국토해양부)
 - 3개 부처(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협의체 구성 협의

7. 10(목)

- 특별대책위원회 운영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15호) 제정

7. 11(금)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장관 보고
 - 추진경위 : 피해지역 지자체 지원요청사업(271건, 13조8천억원)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완료
 - * 검토결과 : 수용 9건, 일부수용 30건, 중장기 47건, 균특회계 등 185건
- 유류피해지역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관계기관(환경부/보건복지부) 협조 요청
 - 유분 및 유막 접촉 등 관련 역학조사, 질병 응급조치 등 대응조치 준비 요청

7. 12(토)

- 제4회 국토해양부장관배 태안국제바다수영대회 개최(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주요 인사 방문】

- *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태안국제바다수영대회 행사 참석

7. 14(월)

- 정부/HS센터 제2차 정례회의(방제인건비, 정보공유, 수산분야 보상등 협의)
- 유류오염 피해지역 해수욕장 관능조사 실시(5차)

7. 16(수)

- 태안군의회, 방제인건비 전액지급요청 건의문 채택 및 국토해양부 제출

7. 17(목)

- 피해조사 지원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대부기준(안), 비수산부문 소득추계(안)등 보고 및 의견 수렴

7. 21(월)

- 주민 방제인건비 사정차액 지원 관계기관회의(물류항만실장 주재)
- '08.1~2월분 주민 방제인건비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 피해지역 홍보전략 마련을 위한 홍보컨설팅 실시(문화체육관광부 주관)

7. 23(수)

- 삼성중공업 등 상대 태안주민(5,392명) 손해배상청구 소 재판부 현장검증(태안)

7. 24(목)

- 외국선원 출국정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 소제기(서울행정법원)
- 외국선원 출국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울행정법원)
- 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정 관계부처 협의
-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20여개)과 서해안 해수욕장간 자매결연 추진

7. 28(월)

- 정부/HS센터 제3차 정례회의(방제인건비, 정보공유, 수산분야 보상등 협의)

【주요 인사 방문】

- *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내정자, 태안군 천리포 해수욕장 방제현장 시찰

8. 1(금)

【주요 인사 방문】

- * 이재균 국토해양부 제2 차관, 태안지역 해수욕장 개장 관계자 격려

8. 4(월)

- 제1회 조정위원회 개최
 - 조정위원회 운영규정(공동 훈령) 제정 및 2008년 1~2월분 주민방제인건비 중간사정 차액 지급 결정
- 월럼 오스터빈 IOPC-Fund 사무국장, 방한 보상현안 협의

8. 5(금)

- 월럼 오스터빈 IOPC-Fund 사무국장, 보상현안 협의(충남도청)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해양환경정책관 세미나실)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안) 검토 및 추진일정 등 협의(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8. 7(목)

- 조정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공동 훈령) 제정
- 외국선원 출국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서울행정법원)

8. 11(월)

- 피해지역 경제활성화사업 타당성검토 전문가 회의

8. 12(화)

- '08. 1~2월 방제인건비 사정차액(45억 원) 대위 지급방안 협의
-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대부기준(안) 피해지역 설명(8.12~13)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관련 관계부처 및 전문가 회의(대전컨벤션센터)
- 조사기관별 유류오염 조사결과 발표 및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안) 검토

8. 14(목)

- 외국선원 출국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서울행정법원)
-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사업관련 추진현황 설명

8. 18(월)

- 방제인건비 중간사정액('08. 1~2월분 129억원) 대지급 및 대위권 행사
- 국토해양부/선주보험사/은행(외환은행)간 에스크로우 계약체결
- 정부/HS센터 제4차 정례회의(정보공유, 신속·공정한 보상방안 등 협의)

8. 19(화)

- 태안군 선주연합회 어업용 면세유 유가급등 대책마련 호소집회
 - 과천 청사앞 집회 후 삼성중공업측 면담, 전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집회와 연계

8. 20(수)

- 선주(허베이 스피리트호)책임제한절차 제2차 심리(대전지법 서산지원)

8. 22(금)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관계지자체 회의 개최(14:00 / 한국해양연구원)

8. 26(화)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사업 평가 설명회(KMI 대강당)
 - 71개 대상사업(일부수용 및 중장기 검토)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설명 및 전문가 그룹평가

8. 28(목)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관련 공청회 개최(태안군 문예회관, 10:00~12:00)

9. 1(월)

- 정부/HS센터 제5차 정례회의(맨손어업 및 근해어업 피해조사방안 등 협의)

9. 3(수)

- 유류오염피해지역 전면 조업 재개(농림수산식품부)
- 방제업체의 산재·고용보험료 납부기간 연장(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과 협의)
 - '09.3.31까지 납부기한 연장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관련 주민설명회(전남지역)개최(전남도청, 14:00~16:00)

9. 4(목)

- 외국선원 출국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서울행정법원)
- 삼성크레인선/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사고 재결 및 고지

9. 10(수)

- 외국선원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심리 개시(서울행정법원)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사업 평가결과 통보(KMI→ 국토부)
 - 전문가 그룹 계층화분석(AHP) 평가결과 3.0이상(총점 5.0만점)인 32개 사업의 타당성 인정

9. 12(금)

- 삼성중공업 상대 태안주민(6,864명) 생계비지급 가처분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9. 18(목)

- 삼성크레인선/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해양사고 관련자, 2심 청구(중해심)
-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9. 22(월)

- 정부/HS센터 제6차 정례회의(대지급 이중지급방지, 대지급금 대위행사 등 협의)

9. 26(금)

- 조정위원회 민간위원(4명) 위촉
 - 최종현(고려대 교수), 강연실(전남대 교수), 이정열(군산대 교수), 정종관(충남발전연구원 팀장)
- 제2회 조정위원회 개최
 - 대부 수준 및 절차,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등 결정

9. 30(화)

- 외국선원 출국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심리(서울행정법원)
- 삼성중공업 상대 태안주민(763명) 생계비지급 가처분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10. 1(수)

- 외국선원 출국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서울행정법원)

10. 2(목)

- 삼성중공업 상대 생계비 지급 가처분 신청 심리(서울중앙지방법원)

10. 8(수)

- 국고보조(생계안정자금 지원)사업 실적보고 요청(국토해양부→충남도, 전남도)
- 정부/HS센터 제7차 정례회의(관광분야 청구·조사, HSC의 정보공개방안 등 협의)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관련 전북지역 주민 공청회개최(14:00/군산수협)

10. 10(금)

- 도서지역 기본적인 해안방제 완료(해양경찰청/지자체)

10. 13(월)

- IOPC Fund 회의 제42차·제43차 집행이사회 참석(10. 13~10. 17/영국 런던)
 - 펀드측 보상정보 공유 합의, 방제업체 방제비용 청구자료 제공방안 협의 등

10. 16(목)

- 해사안전정책관, 충남 국정감사(농림수산위)시 참석(태안군청)

10. 24(금)

-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회의 개최(14:00 /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참석

10. 28(화)

-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
 - 정부법무공단·전남대학교 공동연구(용역비 185백만원)

10. 29(수)

- 외국선원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심리 완료(서울행정법원)

10. 30(목)

- 충남 보령 유류피해민대책 총연합회 결성
- 삼성중공업 등 상대 태안주민(2,235명) 손해배상청구 소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10. 31(금)

- 유류오염영향조사 제2차 중간결과 발표(국토해양부 기자실, 11:00)

11. 3(월)

- 국고보조(생계안정자금 지원)사업 실적보고(전남도→ 국토해양부)
- 정부/HS센터 제8차 정례회의(피해보상 정보공유 및 대부금 지원관련 협조 사항, 정부 대지급금 대위청구·구상절차 및 후순위 채권(SLQ) 규모 등 협의)

11. 7(월)

-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농식품부, 정부법무공단, 전남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등 24명 참석

11. 10(월)

- 국고보조(생계안정자금 지원)사업 실적보고(충남도→ 국토해양부)

11. 18(화)

- 물류항만실장, 유류피해지역 현장 방문(태안)
- HS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개정안 변웅전 의원(외 33인) 대표발의

11. 19(수)

-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보상지원단 별도 정원 확보(3.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개정안 발의 보고

11. 21(금)

-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원회 재결성

11. 26(수)

- 정부/HS센터 제9차 정례회의(정부 후순위채권 규모,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협의)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개정안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조회

11. 27(목)

- 특별법(변웅전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11.27~12.8)

11. 28(금)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1주년 국제심포지움(태안군 환경보건센터 주관)

12. 4(목)

- 삼성크레인선/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사고 2심 재결 및 고지(중해심)
 - 1심결과 인정, 관련자 징계 및 권고 조치

12. 5(금)

- 전주(삼성중공업)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중앙지방법원)
- “제3회 자원봉사자의 날” 방제유공 군장병 및 자원봉사자 정부포상 실시

12. 8(월)

- 2008 태안국제환경포럼 초청 세미나(희망제작소 주관)

12. 10(수)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등 형사소송 사건 항소심 선고(대전지방법원)
 - 쌍방과실, 관련 피고인 전원에 유죄 선고

12. 11(목)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등 형사소송 사건 상고(삼성중공업)
- 유류오염사고 피해조사 지원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평촌 별관)

12. 13(토)

- 제1회 국토해양부장관배 전국바다낚시대회 개최(태안군 모항 앞 해상)

12. 16(화)

- 정부/HS센터 제10차 정례회의('08. 1~2월분 민간방제비 조기사정 촉구, 이중지급방지 MOA 최종안 및 체결시기 등 협의)
- 손해 배·보상 청구에 따른 최초 대부금 지급(충남 보령 면허양식업)
-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업무조정회의개최(기재부·지경부·농식품부 참석)

12. 17(수)

-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741호)
- 삼성중공업 등 상대 태안주민 손해배상청구 소 병합심리(서울중앙지방법원)

12. 19(금)

- 보상지원을 위한 지자체와의 합동 워크숍 개최(서산)

12. 29(월)

-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 수립·시행, 관계기관 회의(수자원공사, 14:00)

12. 30(화)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1주년, 피해주민 상경집회
-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입장(안) 마련

12. 31(수)

- 국고보조(긴급생계안정 지원)사업 중간정산 및 잔액 활용방안 통보
(국토부 → 시·도)

▶ 본격적인 정부 지원단계('09. 1. 1~'09. 12. 31) ◀

1. 2(수)

- 전남도, 국고보조금(긴급생계안정 지원) 집행잔액 활용방안 통보(도→3개 군)
-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입장(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1. 5(월)

- 유조선(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및 1항사 보석신청

1. 6(화)

- 외국선원 출국정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 소송 취하
- 피해주민 대부채권 관리 매뉴얼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국가보훈처) 협의

1. 7(수)

- 충남도, 국고보조금(긴급생계안정 지원) 집행 잔액 활용방안 통보
(충남도→ 6개 시·군)

1. 15(목)

- 피해보상 소식지 창간호 발간(500부, 이메일)
- 유조선(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및 1항사 보석
- 특별법 개정안 관련 변웅전 의원실 설명(정부지원사항 및 특별법 등)

1. 19(월)

- 조정위원회 민간위원 변경 위촉
- (당초)고려대학교 최종현 교수 → (변경)부산대학교 김인현 교수

1. 21(수)

- 정부/HS센터 제11차 정례회의(이중지급방지 절차 MOA 서명, 민간 방제비 지급 지연사례 전달 및 신속 보상 촉구 등 협의)

1. 23(금)

- 유류오염구제자금을 활용한 방제업체 3차 대출 지원(10개사, 5.5억원)
- '08.1~2월분 방제비용 수령 시 우선상환 조건

2. 9(월)

-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대전지법 서산지원)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위원 법안 설명

2. 10(화)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정 건의(진도군)

2. 11(수)

- 정부/HS센터 제12차 정례회의(관광분야 청구반려사유 및 관련유형 파악 등)

2. 19(목)

- 특별법 개정안 국토해양위 상정(법안소위원회 회부)

2. 25(수)

- 충남도, 국고보조금(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 정산 보고(도→국토해양부)
- KBS 1TV 환경스페셜 “바다가 주는 경고” 방영(저녁 10:00~10:50)
- 1주년 홍보계획의 일환으로 환경스페셜 제작비(77백만원) 지원

3. 10(화)

- 정부/HS센터 제13차 정례회의(정부대지급금 1차 대위 청구분 129억원 구상 합의)

3. 11(수)

- 전남도 국고보조금(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 정산 보고(도→국토해양부)
- 삼성중공업 등 상대 태안주민 손해배상청구 소 변론기일 참석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해안 명품 브랜드화 사업태안 세계 민족궁 대축전, 서천 비치사커대회, 고창 갯벌스포츠축제, 영광군 갯벌마라톤축제) 선정

- 진도군의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정 건의에 대해 지정 곤란 의견 회신

3. 12(목)

- 정부 대지급에 따른 제1차 대위청구분(22건 / 12,948백만원) 구상회수
- 방제업체의 산재·고용보험료 납부기간 1차 추가 연장(노동부와 협의)
 - '09.9.30까지 납부기한 연장

3. 13(금)

- 대지급금·대부업무 지침, 대부금 채권관리매뉴얼 등 제정·시행

3. 19(목)

- 정부 대지급에 따른 제2차 대위청구분(8건 / 3,183백만원) 구상회수

3. 23(월)

- (삼성중공업)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중앙지방법원)
- 국고보조금(긴급생계안정 지원) 정산 및 확정 통보(국토해양부→충남·전남도)

3. 24(화)

- 정부지원제도 마련에 따른 보상업무 담당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인재개발원)

3. 25(수)

- IOPC-Fund 회의 제44차 집행이사회 참석(3. 25~3. 27/영국 런던)
 - 관광분야 영세업자 소특추계방안, 수산분야 신속한 피해사정 방안 협의
- 해양오염영향조사 1차년도 최종결과 현지 설명회 개최(10:00, 태안군청)
 - 1차년도 조사결과 설명 및 2차년도 조사내용, 항목 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3. 26(목)

-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평촌별관)
 - 외국 사례분석, 피해지역 의견수렴현황 및 전문가 평가내용(평가기준, 사업분류 등), 분야별 지원 대상사업 111개 선정 및 추가건의사업 등

3. 27(금)

-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추가지원사업 선정결과 및 추진계획 통보(부→지자체)
 - 피해주민 체감·밀착사업의 정책(예산)사업화
- * 정책사업(안) 마련(3~4월) : 중앙정부 지원대상 및 지자체 고유사업의 재분류 및 규모화 등

3. 31(화)

-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평촌별관)

4. 1(수)

- HS 보상지원업무시스템 구축·운영 개시
-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지원계획수립(안면읍 꽃지·수목원일원/4.24~5.20)
- 허베이 스피리트호 2차년도 유류오염영향조사 실시('09.4.1~'10.3.31)

4. 3(금)

- HS 피해보상지원단 / 유관기관·단체 역량강화 워크숍(충남 태안 안면도)

4. 6(월)

- (삼성중공업)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중앙지방법원)

4. 9(목)

-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홍보이벤트(우리부 홈페이지 퀴즈대회/4.9~4.18)
 - * 응모자 1,345명, 정답자 958명, 당첨자 524명(박람회 입장권 2매 경품 제공)
- 해양오염영향조사 1차년도 최종결과 전라남도 설명회 개최(14:00, 전라남도청)

4. 16(목)

- 국제기금측과 피해보상 현안(방제비 지급, 정부 대지급금 대위권 행사 등) 협의

4. 17(금)

-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삼성중공업 등 상대 태안주민 손해배상청구소 현장(삼성크레인선) 검증 실시

- 해양오염영향조사 1차년도 최종결과 전라북도 설명회 개최(14:00/부안수협)

4. 20(월)

- 대지급,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 시행

4. 21(화)

- 특별법 개정 법률안 법안소위원회 의결

4. 23(목)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등 형사소송 사건 상고심 선고(대법원)
 - 과실선박 파괴죄의 유죄 인정은 위법, 파기환송

4. 24(금)

-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안면읍 꽃지·수목원 일원/4. 24~5. 20)
-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지원관련 선정사업에 대한 협조요청(우리부→관계부처)
 - 피해주민 체감·밀착형 지원사업 선정결과 통보 및 부처별 '10년 예산(안) 반영 적극 협조
-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지원사업 추가발굴) 용역결과 송부 및 관련 조치사항 알림(우리부→충남·전남·전북도)
 - 추가발굴사업 재분류 및 규모화 등 정책사업(안) 마련, 관련부처 '10년 예산요구서(안) 제출

4. 29(금)

- 특별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고시 관련 관계기관 회의(10:30/국토해양부 주관)
 -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유류오염 피해지역 3개도 11개 시군, 한국해양연구원 등 참석

4. 30(목)

- 정부/HS센터 제14차 정례회의(맨손어업 청구 신속 접수, 민간방제비 및 그룹 청구건에 대한 신속한 사정 촉구)

5. 6(수)

- 유조선 보험사-우리부간 손해배상 관련 주요현안 협의(Skuld P&I Club)
 - 대지급금 구상금 에스크로우 이자 산출방법, 지자체의 주민방제인건비 선지급금 분리지급 방안 등

5. 7(목)

-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책임제한절차 관련 우리부 채권 신고
 - 서산지원 / 4,088억원

5. 8(금)

-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책임제한절차 제한채권 신고 마감(서산지원)
 - 2009. 5. 13 기준 125,665건 제한채권 신고

5. 10(일)

- 최장현 국토해양부 제2차관, 2009 안면도 꽃 박람회장 방문

5. 15(금)

- 태안지역 마을어업 조업재개 관련 설명회 참석(태안군)
 - 유류피해 어업 보상을 제고관련 워크숍 참석(서산수협)
 -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대책 장관님 보고(5.15)

5. 19(화)

- 삼성출연금 관련 장관님 보고

5. 20(수)

- 강기갑 의원실 주관, “유류오염피해 손해배상제도 개선” 토론회 참석(국회)
- 「2009 안면도 꽃박람회」 성황리 폐막(4.24~5.20, 안면도 꽃지)
- 피해대책위별 수산분야 피해신고 접수/조사현황 보고

5. 21(목)

- 비수산분야 보상청구 설명회 개최

5. 23(토)

- 주민방제인건비 가지급방안 관계기관(지자체, 수협) 협의

5. 27(수)

- 특별법 개정 법률안(의원입법) 공포·시행(법률 제9739호)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전부개정 법률안 공포·시행(법률 제9740호)

6. 1(월)

- 정부/HS센터 제15차 정례회의(손해 배·보상금 가압류 관련, 상호 대응 방안, 지자체 선지급 방제비 분리지급방안 등 협의)

6. 2(화)

- 대부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개선 유관기관 협의

6. 5(금)

-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책임제한절차 1차 조사기일(대전지법 서산지원)

6. 10(수)

-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추진현황, 총리실 보고
 - HS 피해신고 및 청구 현황, 배·보상 단계별 문제점과 대응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등 설명

6. 11(목)

-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형사소송 사건 파기 환송 심 선고(대전지방법원)
 - 유조선장 및 유조선 1항사 선박 파괴죄 무죄
- 대부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개선안 지역 설명(충남지역/6.11~6.12)
- 삼성중공업 선주책임제한절차 참가방안 수립

6. 15(월)

- IOPC-Fund 회의 제45차 집행이사회 참석(6. 15~6. 18/영국 런던)
 - 조기피해보상 촉구 홍보 동영상 및 소득추계방안 적용 필요성에 관한 프리젠테이션 실시 등

6. 16(화)

- 대부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개선안 지역 설명(전남북지역/6.16~6.17)

6. 17(수)

- 태안해역 유류오염피해지역 해저타르 민관합동정밀조사 실시(6.17~21)

6. 18(목)

- 삼성측 책임제한절차 관련 우리부 채권 신고(서울중앙지법 / 637억원)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공청회(태안군청 대강당, 14:00~17:00)

6. 19(금)

- 삼성중공업 선주책임제한절차 제한채권 신고 마감(중앙지방법원)

6. 22(월)

- 태안비치골프대회 개최(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등 9개 해수욕장/6.22~6.27)

6. 25(목)

- 국제기금측(HS센터)과 관광분야 소득추계방식 적용방안 등 협의
- 민간 방제비지급 관련 방제업체 간담회(평촌별관)

6. 26(금)

- 서산지원장 주관, 선주책임제한채권 조사대상자 범위 등 협의

6. 27(토)

-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 개장 선포

6. 30(화)

- 변웅전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주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간담회 참석
- 2010년도 예산요구 국토해양부안 최종 확정(44,334백만원)

7. 1(수)

- 정부 대지급, 대부 지원사항 SMS 문자서비스 개시
- 전광판공익광고 문자표출(10초) : 서해안에서 여름휴가 보내기/09.7.1~31
 -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태안의 기적!', '다시 살아난 꿈과 낭만의 청정 서해안!' 등 2편
 - 올 여름 서해안에서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7. 4(토)

- 서해안 명품브랜드화사업 '제1회 서천군수배 비치사커대회' 개최
(춘장대/7.4~7.5)

7. 9(목)

- 정부/HS센터 제16차 정례회의(전남 김양식장 피해배상 사정현황 확인, 민간방제비 추석전 지급 촉구 등 협의)
- 국세청과 정부 대지급금(방제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합의

7. 10(금)

- 정부 대지급금 대위통지 방침("확정일자부 내용증명"으로 송달) 국제기금 측에 통보

7. 15(수)

- 선주(삼성중공업)책임제한절차 1차 조사기일(중앙지방법원)
- 태안관광클레임사무소 방문 관련 전문가와 관광분야 사정방안 등 협의
-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방안 연구용역 점검회의 개최(평촌 별관)

7. 25(토)

- 서해안 명품 브랜드화 사업 '제1회 영광갯벌마라톤대회' 개최
(두우리갯벌/7.25~7.26)

7. 28(화)

- "보상금 청구일"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보고

- 국제기금측이 청구인에게 청구서 접수 의사표시문서의 시행일을 보상금 청구일로 해석

7. 30(목)

- 전남 신안지역 김양식장 배·보상금 대지급 신청 관련 현장 설명(신안수협)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고시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충남·전남·전북 12개 시·군) 해안 및 도서 6,474 km²

7. 31(금)

- 전남 무안지역 김양식장 배·보상금 대지급 관련 현장 설명(도리포 어촌계)

8. 4(화)

- 정부/HS센터 제17차 정례회의(전남 신안·무안·영광지역 어촌계 총유 어업권 김양식장 손해 배·보상액 정부대지급방안 및 세부절차 협의)

8. 10(월)

- 제3회 조정위원회(서면심의) 개최(8.10~8.17)
 - 대부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개선안

8. 13(목)

- 국제기금측과 손해배상 관련업무 간소화방안 실무협의(HS센터)
 - 손해배상금 이중지급 방지절차, 대지급금 대위통지 및 대부금 질권통지 등 간소화

8. 14(금)

- 전남 신안·무안지역 김양식장 배·보상금 정부 대지급
 - 신안지역 119건 약 48억원, 무안·함평지역 8건 약 28억원

8. 19(수)

- 관광분야 손해 배상을 제고를 위한 관련통계분석 자료 등 국제기금측에 전달

8. 24(월)

-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692호)
- 피해보상지원 관련 국무총리실 추진현황 보고

8. 25(화)

- 선주(허베이 스피리트호)책임제한절차 2차 조사기일 참석(대전지법 서산지원)

8. 26(수)

- 정부/HS센터 제18차 정례회의(HSC측 손해 배·보상 청구인력 보강 및 그룹 클레임 신속 접수방안, 출어자제 관련 양자협의 추진방안 등 협의)

8. 31(월)

- 피해보상지원 관련 국무총리실 추진현황 보고(추가)

9. 4(금)

- 정부지원제도 개선 관련 보상지원단/유관기관·단체 역량강화 워크숍(충남 보령)
- 전남 영광지역 김양식장 배·보상금 정부 대지급(6건, 541백만원)

9. 7(월)

- “대지급·대부 실무 업무처리 지침” 개정·시달

9. 8(화)

-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방침 결정
 - 배·보상 청구인의 대부 신청 기준일의 명확화를 위한 배·보상 청구일의 정의 및 신청서류 등 보완
- 어촌계 총유어업권 손해 배·보상 대지급제도 주민설명회(보령, 당진수협)

9. 9(수)

- 어촌계 총유어업권 손해 배·보상 대지급방안 시행 서천지역 주민설명회

9. 10(목)

- 어촌계 충유어업권 손해 배·보상 대지급방안 시행 태안·서산지역 주민설명회

9. 11(금)

- 국제기금과의 손해배상 관련 주요 현안사항 실무협의회 개최
- 특별법시행령 개정안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조회('09. 9. 11~9. 21)

9. 12(토)

- 서해안 명품 브랜드화 사업 '제1회 고창갯벌스포츠축제' 개최(만돌갯벌체험장)

9. 15(화)

- 어촌계 충유어업권에 대한 정부대지급방안 전북지역 주민설명회(군산시수협)
- 2009 상하이 국제해사포럼 참가(9. 15~9. 16)

9. 17(목)

- 월럼 오스터빈 IOPC-Fund 사무국장, 보상현안 협의차 방한 피해보상지원단 부단장 면담

9. 23(수)

- 방제업체의 산재·고용보험료 납부기간 2차 추가 연장(노동부와 협의)
 - '10.3.31까지 납부기한 연장

9. 28(월)

- 관계기관(국토부, 농식품부, 충남도) 합동, 국제기금 사무국 방문(9.28~29)
 - 방제비용(주민 장비대) 선지급, 출어자제기간 최대 인정 및 10월 총회 시 협력방안 등 협의
- 정부 대지급에 따른 제3~10차 대위 청구분(232건/9,076백만원) 구상회수

9. 29(화)

-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9.29~10.19)

10. 9(금)

- 제2회 국토해양부장관배 전국바다낚시대회 개최(태안군 모항 앞 해상)
-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방안 연구용역 설명회 개최(천안아산역)

10. 10(토)

- 제2회 국토해양부장관배 전국바다낚시대회 개최(태안군 모항 앞 해상)

10. 12(월)

- IOPC-Fund 회의 제46차·제47차 집행이사회 참석(10.12~10.16/영국 런던)
 - 민박사업자에 대한 소득추계방안 시범적용 결정, 경기침체 및 고유가 관련 관광분야 피해 사정액 25% 공제 조정률 폐지 결정

10. 15(목)

- 정부 대지급에 따른 제11차 대위청구분(13건 / 546백만원) 구상회수
-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평촌 별관)

10. 22(목)

- 국제기금 전문가(L&R C.Morton)관광분야 소득추계 세부 적용방안 파악·협의
- 어촌계 총유어업권 대지급 방안 보완 조치
-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부패영향평가 심사의뢰('09.10.22~11.3)

10. 23(금)

- 제4회 조정위원회 개최(10.23~11.2/서면)
 - 피해지역 특별해양환경 복원계획(안) 심의(1건) 및 대부기준 개정 등 추진현황 보고(1건)
-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완료

10. 28(수)

- ‘2009년 서해안 명품브랜드화 사업’ 추진성과 보고회 개최

10. 29(목)

- 정부 대지급에 따른 제12~13차 대위 청구분(7건 / 26백만원) 구상회수

10. 30(금)

- 대부에 따른 국가채권 관리계좌 운영 개선방안 수립(10.30)
 - 11개 피해지역 지자체 명의의 관리계좌를 국토해양부 명의의 관리계좌로 개설후 개선

11. 2(월)

-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의뢰('09.11.2~11.3)

11. 3(화)

-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 확정(조정위원회 심의완료)

11. 4(수)

- 국제기금 10월회의 결과 설명회 개최(평촌별관)

11. 5(목)

- 정부/HS센터 제19차 정례회의(정부/클럽간 에스크로우 이자확약서 및 대부금 상환확인서 등 세부내용협의, 피해대책위원회 명칭변경 확인절차합의 등)
- 대부에 따른 국가채권 관리계좌 운영 개선방안 수립

11. 12(목)

- 보령지역 주민방제비(장비대) 지원관련 방제업체 간담회(부산)

11. 13(금)

- 보령지역 주민방제비(장비대) 지원관련 현장설명(보령)

11. 18(수)

- 대지급·대부 실무 업무처리 지침 개정·시달
-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법제처 심사의뢰('09.11.18~12.29)

11. 19(목)

- HS·씨프린스 피해주민과 합동 토론회 참가(11.19~20/여수)

11. 23(월)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백서(보상부문) 편찬용역 중간보고회
- 사고 2주년 관련 보령시 보고대회 개최(류근찬의원, 보령시장 등 약3천명 참가)

11. 25(수)

- 서천군수협피해대책위원회 대표단 국토해양부 방문

11. 26(목)

- 태안군 연합회, 삼성 선주책임제한절차 철회·기각요구 집회(태안군문예회관)
- 정부 대지급에 따른 제14~15차 대위청구분(6건/89백만원) 구상회수

11. 27(금)

-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책임제한절차 채권자 간담회(대전지법 서산지원)

12. 2(수)

- 피해보상 현안(출어자제 및 방제비 지급) 관계기관 업무협의(농식품부, 지자체)

12. 3(목)

- 사고 2주년 대전MBC(시사플러스) 전화인터뷰

12. 4(금)

- 사고 2주년 KBS 1라디오 열린토론회 출연
- 사고 2주년 서산시 주민보고회 참석(서산 문예회관)

12. 7(월)

- 사고 2주년 대전MBC 생방송 집중토론 출연
- 사고 2주년 태안군 주관 피해주민 대상 설명회 참석(태안군청 대강당)

12. 8(화)

- 중장기 주민건강영향조사 1차 결과발표회(태안환경보건센터/서울교육문화회관)

12. 10(목)

- 태안군 연합회 주관, 대정부 상경집회 개최(과천청사앞)

12. 15(화)

- 삼성중공업 책임제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 심문(서울고등법원)
- 정부/HS센터 제20차 정례회의(민간방제비용 1차 조사 2009년 12월말까지 완료 예정 확인, 에스크로우 이자 협약서 체결 합의 등)

12. 18(금)

- 정부대지급금 구상금에 대한 「에스크로우 6% 이자 합의서」 체결(12.18)
- 유조선 선주 책임제한절차 진행관련 사정재판 리허설(12.18 / 서산지원)

12. 21(월)

- 서천군 서면 방제인건비 지급을 위한 협의
- HS 유류오염사고 백서(보상부문) 편찬방침 변경

12. 30(수)

- 피해보상 현안(출어자제 기간 적용) 관계기관 업무협의(농식품부, 지자체)
- 설 명절 전 주민방제비(인건비 및 장비대) 지급방안 협의(충남도, 태안군, 보령시)

12. 31(목)

-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차관회의 상정·의결
 - 동 시행령은 2010년 1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0년 1월 11일 공포·시행(대통령령 제21989호)

<부록 13> HS 유류오염사고 수습 및 보상업무를 함께한 사람들

<2010년 6월 현재 기준>

성 명	직 급	주요 업무	근무 기간
서병규	부이사관	지원기획팀장	2008. 3. 6 ~ 2008. 9.21
박광열	부이사관	지원기획팀장	2008. 9.22 ~ 2010. 2.24
정광용	부이사관	지원기획팀장	2010. 2.25 ~
황종우	서기관	지원제도팀장	2008. 3. 6 ~ 2008. 6. 9
홍래형	서기관	지원제도팀장	2008. 6.10 ~
김남규	행정사무관	대책위, 조정위 운영 대내·외 보고	2008. 3. 6 ~ 2008. 7.31
김연빈	행정사무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이미지 개선사업	2008. 3. 6 ~ 2010. 1.26
김형대	행정사무관	청구지원, 피대위 관리	2008. 3. 6 ~ 2008.12. 7
임지현	행정사무관	보상지원 총괄, 대내·외 보고	2008. 3. 6 ~ 2008. 7. 1
김종성	행정사무관	대부 관리 총괄	2008. 3. 6 ~ 2009. 3. 4
김창수	행정사무관	보상지원 총괄, 대내·외 보고	2008. 3. 6 ~ 2009. 5.25
박기국	행정사무관	주민 생활안정 총괄	2008. 3. 6 ~ 2008.11.23
안완수	행정사무관	특별법령 운용 총괄	2008. 3. 6 ~ 2008.11.23
이인수	해양수산 사무관	국제협력 총괄	2008. 3. 6 ~ 2010. 1.19
장근호	해양수산 사무관	방제비, 국제협력 총괄	2008. 3. 6 ~ 2009. 5.25
이근호	행정주사	보상지원 총괄	2008. 3. 6 ~ 2009. 2. 4
전재훈	행정주사	지역경제 활성화, 이미지 개선	2008. 3. 6 ~ 2009.12.28
권오승	행정주사	예산, 국회	2008. 3. 6 ~ 2008.11. 4
박상혁	행정주사	주민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2008. 3. 6 ~ 2009. 6.30
정문수	행정주사	대부 관리	2008. 3. 6 ~ 2008.12.21
이승영	해양수산주사	특별법령 운용	2008. 3. 6 ~ 2009.12.27
남창섭	해양수산주사	국제협력, 정보공유	2008. 3. 6 ~ 2009. 8. 2

성 명	직 급	주요 업무	근무 기간
강석진	해양수산주사	방제비, 국제협력, 정보공유	2008. 3. 6 ~
김준옥	해양수산주사	보상지원 총괄	2008. 3. 6 ~ 2009.12.28
정성규	행정주사보	청구지원, 피대위 관리	2008. 3. 6 ~ 2008.12.21
김민지	기능9급	서무, 문서관리	2008. 3.18 ~ 2010. 6. 2
김근오	서기관	대책위, 조정위 운영 총괄 대내·외 보고	2008. 8. 5 ~ 2008. 9.23
이종배	행정사무관	지역경제 활성화, 이미지 개선	2008.10.20 ~
안종구	행정주사보	대부 관리, 보상백서 제작	2008.11. 5 ~
김기현	시설주사	청구지원, 소송 선주책임제한	2008.12.22 ~
전용철	시설주사보	대지급 관리	2009. 2. 5 ~
이상열	시설사무관	청구지원, 소송 선주책임제한	2009. 3. 5 ~ 2010. 3.28
김병섭	행정사무관	대부·대지급 관리 보상백서 제작	2009. 3. 5 ~
이호찬	행정사무관	특별법 운용 보상 받지 못한 자 지원	2009. 5.27 ~
성차연	행정주사	지역경제 활성화, 대부 관리	2009. 7. 1 ~
이영섭	해양수산주사	방제비, 에스프로 계좌 보상지원시스템 관리	2009. 8. 3 ~
조경주	해양수산주사	지역 경제 활성화 이미지 개선	2009.12.29 ~
전찬호	행정주사	보상지원 총괄	2009.12.29 ~
최금성	해양수산주사보	특별법 운용, 예산	2009.12.29 ~
박병곤	해양수산 사무관	국제협력 총괄	2010. 1.19 ~
신만철	행정사무관	보상지원업무 총괄	2010. 1.27 ~
고시학	시설주사보	대지급 관리	2010. 4.11 ~

※ 이 명단은 국토해양부 출범 후 조직된 HS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지원단 발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유류오염사고백서(피해보상편) 발간사업 참여자 명단

□ 백서발간 주관기관

- 국토해양부 HS피해보상지원단 지원제도팀
- 백서발간 총괄 홍래형 팀장
- 감독 및 편집 : 김병섭, 안종구

□ 백서발간 연구수행기관

-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국제해양문제연구소)
 - 연구책임자 : 조동오(한국해양대학교)
 - 공동연구원 : 김상구, 정문수, 조경우, 최진이(한국해양대학교)
 - 자문위원 : 김인현(고려대학교)

□ 백서발간 편찬위원

- 서병규(위원장/해양환경정책관)
- 김창수(연안해운과)
- 이종배(지원기획팀)
- 김종성(해외건설과)
- 이호찬(지원기획팀)
- 장근호(해사기술과)
- 김연빈(해양정책과)
- 김준옥(해사안전정책과)
- 이승영(마산해양항만청)
- 최동용(충청남도)
- 김달진(태안군)
- 서우락(해양환경관리공단)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 부조리신고센터 ◀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부조리신고센터

주 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국토해양부 감찰팀

전화상담

TEL : 02) 2110-8045 FAX : 02) 504-9146

※ 신고인의 신분은 반드시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백서 - 피해보상부문 -

발행처	국토해양부
발행일	2010. 6.
문의처	국토해양부 HS피해보상지원단 지원제도팀(031-436-8751)
인쇄처	효성문화사(051-462-7207)

* 본 백서는 국토해양부 허베이스피리트 피해보상지원단의 지원활동 자료를 중심으로 제작하였습니다.